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045-10

www.agrix.go.kr



2024년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2024. 1.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이용 안내

1. 사업시행지침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소관 주요 지원사업(용자사업 포함)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사업시행지침서 책자는 농림축산식품 사업 중에서 농업인, 농업법인, 관련 분야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 위주로 작성되었으며, 사업수행자가 정해진 사업이나 지자체·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등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제외되었습니다.
3. 사업지침이 개정 중에 있는 사업은 지침서는 책자에 수록되지 않았으며 개정 완료 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아그릭스)에 게시되오니, 자료가 필요할 경우 농림사업 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사업시행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침서의 연락처나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시행지침서의 사업비, 지원내용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2024년도 사업시행지침서는 농업인·수요자 중심으로 분류하여 수요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구분하고 농식품 주요정책도 나타나도록 배열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이 연계되어 있거나 품목이나 분야가 유사한 사업은 하나로 묶어 농업인 등 수요자가 관심있는 분야의 사업을 찾기 쉽도록 노력하였습니다.
7. 사업시행지침서의 상세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의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책자로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8. 사업시행지침서 책자가 개별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여유분에 한하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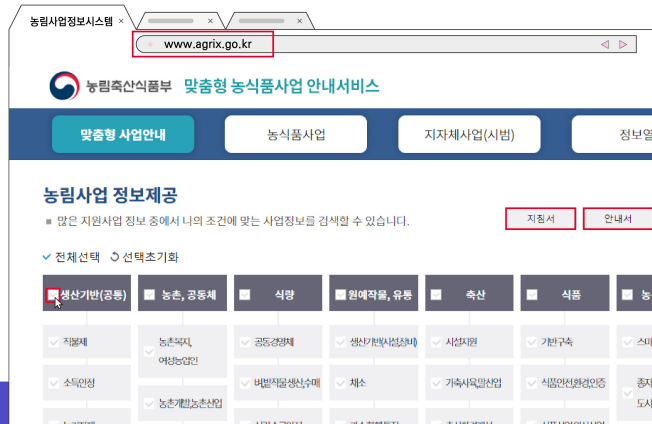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침서 인터넷 검색 방법



인터넷

## 맞춤형농식품사업 안내서비스

-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창에 ‘농림사업정보’ 입력 하거나
- **www.agrix.go.kr 접속** → 맞춤형 사업안내(사업지침서) 클릭  
→ 맞춤형농식품사업 안내서비스
  - 전체사업** 상단의 “지침서”, “안내서” 클릭하여 다운로드
  - 세부 검색** 담당과, 신청자격, 사업명, 키워드 등 조건으로 검색
  - 분야별 검색기** 분류표 앞의 체크박스를 체크하여 관심 분야별 사업 목록 및 내용 확인
- 시범적으로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정보도 검색 가능





# 농식품분야 지원사업 분류

2024년

<b>대분류 (9)</b>	생산기반 (공통)	농촌, 공동체	식량	원예작물, 유통	축산	식품	농생명 산업	탄소중립, 기후변화	임업	
	<b>중분류 (41)</b>	직불제	농촌복지 여성 농업인	공동 경영체	생산기반 (시설, 장비)	시설·장비 지원	기반구축	스마트 농업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확충
		소득 안정	농촌개발 농촌산업	벼, 밭작물 생산, 수매	채소	가축사육, 말산업	식품안전, 환경, 인증	종자, 곤충, 미생물, 도시농업	에너지 전환	
		농기자재	농촌 공동체, 환경	식량 수급 안정	과수, 화훼, 특작	축산환경 개선	식품, 외식산업	동물 복지	저탄소 농축산	
		농지	지역 먹거리	기반 조성	유통, 가공 효율화	가공·유통 수급, 소비	식생활, 식품소비	창업, 농산업 인력	저탄소 인증, 지원	
		인력, 일자리	귀농귀촌, 인력육성	수매, 가공·소비	수급안정 소비촉진	가축방역, 위생지원	농식품 수출	농산업 수출, 국제개발	기후변화 대응	
		<b>패키지 (3)</b>	농기계 지원 통합안내		산지 조직화 통합안내		조사료 지원 통합안내			

## 농식품사업 지침서 분류 세부기준

대분류(8)	중분류(39)	내용(소분류)
생산기반 (공통)	1. 직불제	1. 기본직불 2. 선택직불
	2. 소득안정	1. 재해지원 2. 경영안정
	3. 농기자재	1. 비료농약 2. 농기계, 장비
	4. 농지	1. 농지구입, 임차
	5. 농촌인력, 일자리	1. 인력
	6. 농기계지원(통합안내)	
농촌, 공동체	1. 농촌복지, 여성농업인	1. 농촌복지 2. 취약계층
	2. 농촌개발, 농촌산업	1. 농촌개발 2. 농촌산업
	3. 농촌공동체, 환경	1. 농촌공동체 2. 농촌환경
	4. 지역먹거리	1. 푸드플랜
	5. 귀농귀촌, 인력육성	1. 인력육성
식량	1. 공동경영체	1. 공동경영체
	2. 기반조성	1. 농촌용수 2. 수리·배수 3. 기반조성
원예작물, 유통	1. 시설·기반(시설, 장비)	1. 기반조성, 하우스온실설치 2. 내외부 시설장비
	2. 채소(노지, 시설)	1. 노지채소
	3. 과수, 화훼, 특작	1. 과수 2. 화훼, 특작
	4. 유통, 가공 효율화	1. 유통, 보관시설 2. 물류, 마케팅 3. 가공, 원료확보
	5. 수급안정, 소비촉진	1. 수급조절 2. 소비촉진
	6. 산지조직화(통합안내)	
축산	1. 시설·장비지원	1. 축사시설 2. 축사부대시설
	2. 가축사육, 말산업	1. 소 2. 가금, 양봉등
	3. 축산환경개선	1. 환경개선 2. 자원화 3. 퇴액비활용
	4. 가공, 유통, 수급, 소비	1. 축산물 위생안전 2. 축산물유통, 수급관리 3. 축산물소비촉진
	5. 가축방역, 위생지원	1. 방역대응
	6. 조사료지원(통합안내)	
식품	1. 기반구축	1. 산업기반
	2. 식품안전, 환경, 인증	1. 식품안전
	3. 식품산업, 외식산업	1. 식품산업 2. 외식산업
	4. 식생활, 식품소비	1. 식품소비촉진
	5. 농식품 수출	1. 농식품 수출지원 2. 해외판로
농생명산업	1. 스마트농업	1. 스마트 시설장비 2. 스마트 실증 보급 3. 데이터구축 및 활용
	2. 종자, 곤충, 미생물 도시농업	1. 종자, 묘목 2. 곤충
	3. 동물복지	1. 동물복지 2. 동물산업
	4. 창업, 농산업인력	1. 농식품창업 2. 농산업인력 3. 농산업지원
	5. 농산업수출, 국제개발	1. 농산업수출
탄소중립, 기후변화	1. 친환경농업	1. 친환경농업 2. 친환경농산물 유통, 소비
	2. 저탄소농축산	1. 탄소저감
	3. 저탄소인증지원	1. 저탄소인증
	4. 에너지전환	1. 에너지전환

I. 2024년 농식품사업 사업별 요약 .....	1
II.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	19

## 생산기반(공통)

<b>1-1</b> 직불제 .....	<b>33</b>
>>> 기본직불	
1. 기본형 공익직불 .....	35
>>> 선택직불	
2. 전략작물직불 .....	58
3. 친환경농업직접지불 .....	72
4. 친환경축산 직접지불제 .....	79
5. 경관보전직불 .....	89
<b>1-2</b> 소득안정 .....	<b>101</b>
>>> 재해지원	
6.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	103
>>> 경영안정	
7. 농업자금이차보전 .....	108

**1-3 농기자재 ..... 149**

»»» **비료농약**

8.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 151

**1-4 농지 ..... 161**

»»» **농지구입, 임차**

9. 맞춤형농지지원사업 ..... 163

10.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 176

**1-5 농촌인력, 일자리 ..... 185**

»»» **인 력**

11. 농촌인력중개센터 ..... 187

12. 농업 근로자 숙소사 건립지원 ..... 200

**1-6 농기계지원(통합안내) ..... 207**

»»» **농기계지원**

13. 농기계임대 ..... 209

**농촌, 공동체**

**2-1 농촌복지, 여성농업인 ..... 223**

»»» **농촌복지**

14. 농촌형교통모델(자율) ..... 225

»»» **취약계층**

15. 영농도우미 지원 ..... 229

**2-2 농촌개발, 농촌산업 ..... 235**

»»» **농촌개발**

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237

17. 농촌공간정비사업 ..... 244

18.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 252

»»» **농촌산업**

19. 농촌유희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 260

**2-3 농촌공동체, 환경 ..... 265**

»»» **농촌공동체**

20. 농번기 돌봄지원 ..... 267

21. 농촌아이돌봄지원, 찾아가는 돌봄교실 ..... 273

22. 꾸러미사업지원 ..... 280

23. 농촌돌봄활동지원 ..... 286

»»» **농촌환경**

24.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 299

**2-4 지역먹거리 ..... 309**

»»» **푸드플랜**

25.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 311

**2-5 귀농귀촌, 인력육성 ..... 323**

»»» **인력육성**

- 26.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 325
- 27. 청년창업농장학금 ..... 338
- 28. 스마트팜 현장실습형 교육 ..... 341
- 29.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지원(현장실습교육 WPL) ..... 346

**식 량**

**3-1 공동경영체 ..... 353**

»»» **공동경영체**

- 30. 전략작물산업화(밀 교육·컨설팅지원) 사업 ..... 355
- 31. 전략작물산업화지원(밀 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 ..... 365
- 32. 전략작물산업화지원(밀 시설·장비지원)사업 ..... 377

**원예작물, 유통**

**4-1 시설·기반(시설, 장비) ..... 387**

»»» **기반조성, 하우스온실설치**

- 33.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 389
- 34.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온실신축) ..... 398
- 35.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시설보급, 컨설팅) ..... 406

## »»» 내외부 시설장비

- 36.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시설) ..... 418
- 37.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432

## 4-2 채소(노지, 시설) ..... 441

### »»» 노지채소

- 38.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 443
- 39.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 450
- 40. 채소가격안정지원 ..... 465

## 4-3 과수, 화훼, 특작 ..... 475

### »»» 과 수

- 41.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 477
- 42.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 487
- 43.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 494
- 44. 과원규모화 ..... 502

### »»» 화훼, 특작

- 45. 저온유통체계구축(화훼류습식유통) ..... 517
- 46.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사업 ..... 524
- 47.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 녹차, 약용 등) 사업 ..... 531

## 4-4 유통, 가공 효율화 ..... 541

### »»» 유통, 보관시설

- 48. 유통시설현대화 ..... 543
- 49.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 549
- 50.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지원 ..... 561

51.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 570  
52.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사업 ..... 582  
53.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591

»»» 물류, 마케팅

54. 공동선별비지원 ..... 597  
55.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 604  
56. 도매유통활성화지원(화훼유통개선) ..... 612  
57.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운영 지원 ..... 620  
58.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상품화 기능 확대 ..... 628

»»» 가공, 원료확보

59. 산지유통활성화지원 ..... 633

**4-5** 수급안정, 소비촉진 ..... 641

»»» 수급조절

60. 자조금지원 사업 ..... 643

»»» 소비촉진

61. 온라인 직거래 기반 육성 ..... 655  
62. 과실브랜드 육성 ..... 661  
63. 직거래장터지원 ..... 669

**4-6** 산지조직화(통합안내) ..... 675

»»» 산지조직화

64.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통합지침) ..... 677



## 축 산

<b>5-1</b>	<b>시설·장비지원</b> .....	<b>689</b>
>>>	<b>축사시설</b>	
	65.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691
>>>	<b>축사부대시설</b>	
	66.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 .....	705
<b>5-2</b>	<b>가축사육, 말산업</b> .....	<b>721</b>
>>>	<b>소</b>	
	67.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	723
>>>	<b>가금, 양봉등</b>	
	68. 말별퇴치장비 지원사업 .....	728
	69.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 .....	733
<b>5-3</b>	<b>축산환경개선</b> .....	<b>739</b>
>>>	<b>환경개선</b>	
	70.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축산악취개선) .....	741
	71.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악취측정ICT기계장비) .....	748
>>>	<b>자 원 화</b>	
	72.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공동자원화시설 신규) .....	751
	73.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	760
	74.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공동자원화시설 마을형퇴비저장시설) .....	767

»»» 퇴액비활용

- 75.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가축분뇨이용촉진) ..... 774
- 76.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자연순환농업활성화) ..... 787

**5-5** 가축방역, 위생지원 ..... 793

»»» 방역대응

- 77. 가축 사육제한 보상금 사업 ..... 795

**5-6** 조사료지원(통합안내) ..... 801

»»» 조사료지원

- 78.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 803

**식 품**

**6-1** 기반구축 ..... 813

»»» 산업기반

- 79. 식품기능성평가지원(식품기능성평가지원) ..... 815

**6-2** 식품안전, 환경, 인증 ..... 823

»»» 식품안전

- 80.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 ..... 825
- 81.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사업 ..... 838

## 6-3 식품산업, 외식산업 ..... 847

### »»» 식품산업

82. 찾아가는 양조장 ..... 849

## 6-4 식생활, 식품소비 ..... 855

### »»» 식품소비촉진

83. 농축산물 할인 지원 ..... 857

## 6-5 농식품 수출 ..... 863

### »»» 농식품 수출지원

84. 생산기반조성 ..... 865

85. 판매조직육성 ..... 870

86. 농식품우수기업육성 ..... 875

87.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 881

88. 외식산업 수출지원 ..... 885

89. 온라인·모바일 마케팅 ..... 889

90. 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 ..... 893

91.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 897

### »»» 해외판로

92. 우수농식품콜드체인구축 ..... 902

93. 우수농식품판로개척 ..... 906

94. 뉴미디어 마케팅 ..... 910

95. 온라인플랫폼 운영 ..... 914

## 농생명산업

### 7-1 스마트농업 ..... 919

#### 스마트 시설장비

- 96.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 921
- 97.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 926

#### 스마트 실증 보급

- 98.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 ..... 934
- 99.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사업 ..... 943
- 100.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농업농촌 교육 훈련) ..... 955

#### 데이터구축 및 활용

- 101.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 959
- 102. 농식품 ICT 융복합 촉진 ..... 971

### 7-2 종자, 곤충, 미생물 도시농업 ..... 979

#### 종자, 묘목

- 103. 과수 무병묘목(보급종) 생산·공급 지원(무병화 및 무병묘 검정) ... 981
- 104. 과수 무병묘목 생산·공급 지원(무병묘목 구입비 지원) ..... 986
- 105. 과수 무병묘목 생산·공급 지원(무병묘 모수포 조성) ..... 991
- 106. 과수 우량묘목(원종) 생산지원(생산지원, 기반조성) ..... 996

#### 곤충

- 107. 곤충사육시설현대화 ..... 1000
- 108. 곤충산업화지원 ..... 1006
- 109. 곤충유통사업지원 ..... 1015

## 7-3 동물복지 ..... 1023

### »»» 동물산업

- 110. 수출 공동 대응체계 마련 ..... 1025
- 111. 수출시장 개척 ..... 1029
- 112. 시장조사 및 전파 ..... 1033

## 7-4 창업, 농산업인력 ..... 1037

### »»» 농식품창업

- 113. 농식품벤처육성지원 사업 ..... 1039
- 114.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사업 ..... 1045

### »»» 농산업지원

- 115. 농산업체 판로지원 ..... 1049
- 116. 농식품 클라우드펀딩 활성화 지원 사업 ..... 1053
- 117.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 1057

## 탄소중립, 기후변화

## 8-1 친환경농업 ..... 1063

### »»» 친환경농업

- 118.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 1065
- 119. 유기농업자재 지원 ..... 1075

**8-2** 저탄소농축산 ..... 1087

»»» 탄소저감

- 120.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분야) ..... 1089
- 121.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1097

**8-3** 저탄소인증지원 ..... 1103

»»» 저탄소인증

- 122.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농산물 인증) ..... 1105

**8-4** 에너지전환 ..... 1111

»»» 에너지전환

- 123.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 1113

**산 립**

- 124. 직접지불금 지급 ..... 1129
- 125.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 1143
- 126. 양묘시설 현대화(공모) ..... 1149
- 127.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1154
- 128.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사업 ..... 1161
- 129.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1169
- 130.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 1177
- 131. 글로벌 기반구축(글로벌특화시설) ..... 1193
- 132. 임산물 상품화지원 사업 ..... 1200
- 133.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사업 ..... 1205

# CONTENTS

134.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 .....	1211
135.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 .....	1217
136. 임산물 소비촉진 공모 .....	1223
137. 조 림 .....	1226
138.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	1231
139. 공공산림가꾸기사업 .....	1235
140. 정책숲가꾸기 사업 .....	1239

2024년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PART

I

2024년  
농식품사업 사업별 요약



## ■ 사업시행지침 사업별 요약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	---------------	------------	--------------------	---------------

### 1. 생산기반(공통)

#### 1-1. 직불제

1. 기본직불	기본형공익직불	<p><b>[지원자격]</b>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p> <p><b>[지원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농직불 : 130만원/농가</li> <li>• 면적직불 : 농지의 논/밭, 진흥/비진흥을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체계로 최소 100만원/ha 이상 지급</li> </ul>	2,633,487	100
	전략작물직불	<p><b>[지원자격]</b>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p> <p><b>[지원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직불금 지원 (지원단가 50~430만원/ha)</li> <li>• 대상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계작물: 밀,보리, 귀리 등 동계 식량 사료작물</li> <li>- 하계작물: 두류, 가루쌀, 조사료, 옥수수</li> </ul> </li> <li>• 지급단가: 50~430만원/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금액: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농지면적(㎡)</li> <li>- 동계 밀 또는 조사료와 하계 두류 또는 가루쌀 이모 작시 ha당 100만원 추가 지급</li> </ul> </li> </ul>	186,450	100
	친환경농업직불	<p><b>[지원자격]</b>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p> <p><b>[지원내용]</b> 인증유형 및 농지이용에 따라 35만원/ha~140만원/ha의 단가로 신청면적(농가당 0.1~5ha 한도)에 따라 직불금 지급</p>	22,832	100
2. 선택직불	친환경축산직불	<p><b>[지원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li> </ul> </li> <li>• (교육홍보) 친환경축산협회</li> </ul> <p><b>[지원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li> <li>• 친환경축산 교육 및 홍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축산 소비기반 확대 및 소비촉진 홍보</li> <li>- 유기축산 환경기여도 연구</li> <li>- 유기축산 전환 컨설팅 및 인증교육</li> <li>- 온라인 홍보를 위한 단행본 제작 등</li> </ul> </li> </ul>	1,585	100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2. 선택직불	경관보전직불	<p><b>[지원자격]</b>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p> <p><b>[지원내용]</b> 농업인들이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직불금 지급(경관작물 : 170만원/ha, 준경관작물 : 100만원/ha,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ha)</p>	16,830	50 준경관 초지작물 80

### 1-2. 소득안정

1. 재해지원	농업인안전재해 보험 보험료 지원	<p><b>[지원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안전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li> <li>•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li> </ul> <p><b>[지원내용]</b>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 지원</p>	94,798	50 영세 농업인 70
2. 경영안정	농업자금 이자보전사업	<p><b>[지원자격]</b> 농업인 등 융자 100% 지원, 금융기관 이차보전</p> <p><b>[지원내용]</b> 농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차차액을 보전</p>	557,722	100

### 1-3. 농기자재

1. 비료, 농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p><b>[지원자격]</b>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p> <p><b>[지원내용]</b>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게 규산 및 석회비료 지원</p>	62,031	규산 60 석회 80 공동살포 50
2. 농기계, 장비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p><b>[지원자격]</b>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p> <p><b>[지원내용]</b> 경운기, 트랙터에 등화장치(저속차량 표시등, 방향지시등) 부착 지원</p>	800	40

### 1-4. 농지

1. 농지구입, 임차	맞춤형농지지원	<p><b>[지원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영농복귀자 - 세부요건은 사업별로 상이</li> </ul> <p><b>[지원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매매 : 비농업인, 직업전환 또는 은퇴농 등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li> </ul>	1,241,260	융자금
----------------	---------	--	-----------	-----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1. 농지구입, 임차	맞춤형농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임차임대 :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공사가 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임대</li> <li>• 농지교환분합 :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상호간에 논 또는 밭을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li> <li>• 선임대후매도 : 청년농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간 장기 임차하여 경작하고 토지 매매대금이 완납되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li> <li>• 공공임대용농지매입 :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여 2030 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 장기임대</li> <li>•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 청년농을 대상으로 저활용 농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지구를 지정하고, 농업기반 정비 후 청년농에게 매도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li> <li>• 맞춤형농지지원 활성화 : 청년농 지원 및 육성 등 농지은행 역할과 기능 홍보를 통한 농지은행사업 인지도제고 및 정책적 가치확산, 사업 참여유도를 통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안정적 관리도모</li> </ul>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용자)	<p><b>[지원자격]</b> 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p> <p><b>[지원내용]</b> 매입농지 해당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을 보장</p>	233,700	용자금

### 1-5. 농촌인력, 일자리

1. 인력	농촌인력증개센터	<p><b>[지원자격]</b>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운영 기관을 선정하는 등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자체</p> <p><b>[지원내용]</b> 농촌인력증개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 중개하는 사업</p>	11,081	50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p><b>[지원자격]</b> 농업 분야 근로자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건축물 사업부지가 확보(소유권, 지상권 등)된 지자체</p> <p><b>[지원내용]</b> 사업대상지 내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전기통신 시설 등 기반조성비를 포함한 시설 건축비 또는 개·보수비</p>	860	50

### 1-6. 농기계지원(통합안내)

1. 농기계 지원	농기계임대사업소	<p><b>[지원자격]</b>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거나 하려고 하는 지자체(시·군·구)</p> <p><b>[지원내용]</b>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p>	6,750	50
--------------	----------	---	-------	----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	---------------	------------	--------------------	---------------

## 2. 농촌, 공동체

### 2-1. 농촌복지, 여성농업인

1. 농촌복지	농촌형교통모델	<b>[지원자격]</b> 전국 82개군 <b>[지원내용]</b>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지원	24,924	50
2. 취약계층	영농도우미 지원	<b>[지원자격]</b> 경작농지 5ha미만 농업인이, ①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④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천원)의 70%인 58.8천원 국고 지원(30% 농가자부담)</li> <li>- 연간 최대 10일 지원</li> </ul>	7,000	70

### 2-2. 농촌개발, 농촌산업

1. 농촌개발	일반농산어촌개발	<b>[지원자격]</b>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 <b>[지원내용]</b>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	578,438	70
	농촌공간정비	<b>[지원자격]</b>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b>[지원내용]</b> 농촌 난개발 요소 정비 및 정비부지를 활용한 재생사업 지원	68,000	50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	<b>[지원자격]</b>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b>[지원내용]</b>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보육·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포함) 조성 지원(개소당 90억원)	15,200	50
2. 농촌산업	농촌유휴시설 활용지역활성화	<b>[지원자격]</b> 시장,군수가 유휴시설을 100% 소유하고 있거나, 유휴시설의 소유자와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b>[지원내용]</b> 유휴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개소당 4.5억원)	2,770	50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	---------------	------------	--------------------	---------------

### 2-3. 농촌공동체, 환경

1. 농촌 공동체	농번기돌봄지원	<p><b>[지원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li> <li>•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영유아 1인당 2.64㎡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은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 유지계약 체결)</li> </ul> </li> <li>• (운영) 보육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이 확보되어, 사업추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li> <li>• (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자격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의 돌봄수요, 시설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운영능력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li> </ul> </li> </ul> <p><b>[지원내용]</b> 농번기 동안 주말돌봄방 운영 경비 지원</p>	1,380	50
	농촌아이돌봄지원	<p><b>[지원자격]</b> 읍·면 도서지역 중 3-10인 국공립 어린이집이거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p> <p><b>[지원내용]</b> 운영비, 시설비 지원</p>	1,996	50
	꾸러미사업지원	<p><b>[지원자격]</b> 마을공동체 등 농업법인</p> <p><b>[지원내용]</b> 마을공동체의 꾸러미사업화 지원</p>	200	100
	농촌돌봄활동지원	<p><b>[지원자격]</b>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등</p> <p><b>[지원내용]</b>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운영비 등</p>	5,754	70
2. 농촌환경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p><b>[지원자격]</b> 주민협의회 구성 및 행정담당자 지정 등이 갖춰진 사업대상 지역 마을</p> <p><b>[지원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활동비 및 사업관리운영비</li> <li>• 전문지원조직 운영비</li> </ul>	5,020	주민 활동비 및 사업관리·운영비 50 전문지원 조직 운영비 100

### 2-4. 지역먹거리

1. 푸드플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p><b>[지원자격]</b> 기초지자체</p> <p><b>[지원내용]</b>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건축·설계·감리·시설·장비, 부대시설 등 지원</p>	2,400	40
---------	---------------------------------	--	-------	----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	---------------	------------	--------------------	---------------

## 2-5. 귀농귀촌, 인력육성

1. 인력육성				
	청년농업인영농 정착지원금	<b>[지원자격]</b> 만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독립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등 <b>[지원내용]</b>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에게 영농 초기 소득 보전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등을 지원	83,370	70
	청년창업농장학금	<b>[지원자격]</b> 졸업 후 농식품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 <b>[지원내용]</b> 졸업 후 농식품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우수 후계인력 육성 및 농업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	8,517	100
	스마트팜 확산 교육 지원(현장실습형 교육)	<b>[지원자격]</b> 스마트팜 농가 및 스마트팜 교육을 희망하는 자 <b>[지원내용]</b> 농업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스마트팜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비 지원	930	70~50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지원(현장실습 교육 WPL)	<b>[지원자격]</b> 농식품부 장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농업인 실습교육장, 학교·기관 실습교육장) <b>[지원내용]</b> 현장실습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2,626	70~100
	예비농업인교육 지원(농업계고교 교육지원)	<b>[지원자격]</b> 농업계 고등학교 <b>[지원내용]</b> 농고 산업연계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1,530	100
	농업계고교실습장 지원	<b>[지원자격]</b> 농업계 고등학교 <b>[지원내용]</b>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스마트축사 가능) 구축 지원, 영농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지원, 실습장 시설 확충 및 개보수, 기자재·장비 구입 등 시설·장비 지원	3,500	100
	예비농업인교육 지원(미래농업선도 고교 지원)	<b>[지원자격]</b> 농업계 고등학교 <b>[지원내용]</b>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및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실습학년제 등 현장실습 지원	3,510	100
	농업계대학실습장 지원	<b>[지원자격]</b> 농업계 대학교 <b>[지원내용]</b> 실습장 시설 확충 및 개보수, 기자재·장비 구입 등 시설·장비 지원	2,100	70
	농업계대학지원	<b>[지원자격]</b> 농업계 대학교 <b>[지원내용]</b> 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융복합 과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2,389	100
	영농창업특성화 대학	<b>[지원자격]</b> 농업계 대학 <b>[지원내용]</b>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및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실습학년제 등 현장실습 지원	5,683	100
	졸업생 영농영어 정착 우수과제사업 공모 지원	<b>[지원자격]</b> • 한농대 졸업생 또는 당해 연도(2월) 졸업 예정자 - 기 사업수행자 중복선정 불가 <b>[지원내용]</b> 농기계, 시설보수 등 초기 영농영어 정착을 위한 자본형성 지원	131	70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	---------------	------------	--------------------	---------------

### 3. 식량

#### 3-1. 공동경영체

1. 공동 경영체	전략작물산업화 (가루쌀 시설·장비)	<b>[지원자격]</b>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b>[지원내용]</b>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비용 지원	7,500	50
	전략작물산업화 (밀 교육·컨설팅지원)	<b>[지원자격]</b>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b>[지원내용]</b>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1,275	50
	전략작물산업화 (밀 건조·저장시설)	<b>[지원자격]</b>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b>[지원내용]</b> 밀 건조저장 시설 지원	1,460	40
	전략작물산업화 (밀 시설·장비지원)	<b>[지원자격]</b>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b>[지원내용]</b> 밀 생산유통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1,500	50

#### 3-2. 기반조성

1. 농촌용수	가뭄대비용수개발	<b>[지원자격]</b> 시장·군수·구청장 <b>[지원내용]</b> 가뭄 우려가 발생한 지자체(시군구)에 관정 개발, 간이양수장 설치, 하천바닥 굴착, 양수급수(저류), 저수지 준설 등 가뭄대책비 지원	11,800	80
	농촌용수개발	<b>[지원자격]</b> 한국농어촌공사(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b>[지원내용]</b> 안정적인 농촌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 설치 사업 지원	251,348	100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80)
	농업용수 수질개선	<b>[지원자격]</b> 한국농어촌공사, 시장·군수·구청장 <b>[지원내용]</b>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관리목표인 IV 등급 초과 호소에 인공습지, 침강지 등을 설치하는 수질 개선 사업비 지원	31,054	국가관리 100 시군관리 80
2. 수리·배수	배수개선	<b>[지원자격]</b> •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b>[지원내용]</b> •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조사비 지원 •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453,525	100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2. 수리·배수	수리시설개보수	<b>[지원자격]</b>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b>[지원내용]</b> 수리시설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자재대 포함), 용지매수 보상비 및 시설부대경비 등 사업비 지원	746,169	100
3. 기반조성	국가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	<b>[지원자격]</b> 시설물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시장·군수, 시도지사) <b>[지원내용]</b> 재해예방 등을 위한 시설물 성능개선과 기능유지 및 내구연한 연장등을 위한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지원	43,400	국가관리 100 지방관리 50
	논범용화용수 공급체계구축	<b>[지원자격]</b>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 시장·군수) <b>[지원내용]</b> 시설재배단지 내 용수공급을 위한 양수장, 정수시설 및 급수관로 설치	900	80

#### 4. 원예작물, 유통

##### 4-1. 시설·기반(시설, 장비)

1. 기반조성, 하우스 온실설치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시설원예 기반조성)	<b>[지원자격]</b> 노후온실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또는 신규로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 <b>[지원내용]</b> 부지정지, 용수, 전기, 도로 및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지원	5,935	70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및 시설보급)	<b>[지원자격]</b> • 채소·화훼·특용작물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 버섯, 인삼, 약용채소로 시설보급만 지원대상임(온실 신·개축 미지원) <b>[지원내용]</b>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비용, 스마트팜 시설 장비, 시설원예현대화 장비,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19,104	20~25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운영비 및 컨설팅)	<b>[지원자격]</b> • 채소·화훼·특용작물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 버섯, 인삼, 약용채소로 시설보급만 지원대상임(온실 신·개축 미지원) <b>[지원내용]</b> 사업운영비 및 스마트팜 시설 장비 컨설팅(사전, 설치) 비용 지원	427	100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2. 내외부 시설장비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b>[지원자격]</b>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농업인 교육 연구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 <b>[지원내용]</b> 지열·폐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 지열 천공, 열교환기, 폐열 이송배관, 열원 저장시설 등	17,363	30~70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b>[지원자격]</b> 집단화된 원예단체에 재생에너지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 <b>[지원내용]</b> 지열 천공, 열교환기, 폐열·수열 이송배관, 축분고체연료난방시설, 열원 저장시설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1,680	70

#### 4-2. 채소(노지, 시설)

1. 노지채소	고추비가림재배 시설 지원	<b>[지원자격]</b> 견고추를 재배 또는 재배하는 자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b>[지원내용]</b> 고추비가림하우스시설(관수, 환경관리시설 포함)	2,079	20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b>[지원자격]</b> • 자치단체 :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 지자체의 수립·승인된 원예산업발전계획 내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 필요 • 행정경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b>[지원내용]</b> • 자치단체 : 발작물공동경영체에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강화, 생산비절감,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 행정경비 : 발작물공동경영체 운영 지원 및 관리를 위한 평가, 점검 등 행정경비	9,680	공동 경영체 지원 50  행정경비 100
	채소가격안정지원	<b>[지원자격]</b> 당해연도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지역·품목), 법인(영농조합·조합공동사업·농업회사) 및 최근 3년간 사업참여 희망 품목의 연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b>[지원내용]</b> 가격차보전(평년 도매가격의 80% 이하 하락 시), 사전면적조절·출하정지 시 약정 비용, 출하장려금(운송비, 작업비 등) 등 지원	55,190	30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	---------------	------------	--------------------	---------------

### 4-3. 과수, 화훼, 특작

1. 과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b>[지원자격]</b>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 등 <b>[지원내용]</b> 생산비용절감과 품질고급화 촉진을 위해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방조시설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	27,125	20
	과수분야스마트팜 확산	<b>[지원자격]</b>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b>[지원내용]</b> 사업별 지원단가는 실단가를 적용, 사업비 상한액 기준은 200백만원	840	20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	<b>[지원자격]</b>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 이상이며,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 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 <b>[지원내용]</b> 경쟁력 있는 과수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단화된 생산단지, 수출전문단지를 대상으로 생산기반 정비를 지원	22,613	80
	과원규모화	<b>[지원자격]</b> • 과원매도·임대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 • 과원매입·임차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b>[지원내용]</b> 과원 매매 및 임대차를 위한 용자 지원	29,662	국고용자 100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생산단지 조성	<b>[지원자격]</b>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 등을 통해 과원 확보 가능한 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b>[지원내용]</b> 꽃가루 채취단지 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입, 관리시설 설치 등	725	50
2. 화훼, 특작	산업식품용 햄프산업클러스터 조성	<b>[지원자격]</b> • 햄프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생산자조직 구성, 계약재배 및 수매, 기술지원, 인지도 및 판로 등 제반 인프라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 햄프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및 지방비를 확보하였거나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 햄프 산업화를 위한 시설 및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며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b>[지원내용]</b> 지역단위의 공동 전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햄프 원료의 품질 균일성 및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가공기업의 설비투자 부담 저감	1,250	50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2. 화훼, 특작	저온유통체계구축 (화훼류습식유통)	<b>[지원자격]</b> 공판장에 출하하는 화훼재배농가 및 생산자 단체 <b>[지원내용]</b> 습식유통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70	50
	특용작물시설 현대화(인삼)	<b>[지원자격]</b> 의무자조금을 납부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삼 재배(하려는)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b>[지원내용]</b> 철재해가림시설 등 인삼 내재해시설,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1,260	20
	특용작물시설 현대화(버섯, 녹차, 약용 등)	<b>[지원자격]</b>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b>[지원내용]</b> 버섯류, 특용작물에 대하여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 지원	1,460	20
	특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b>[지원자격]</b> •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및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 특용작물 연구개발 및 우수 특용작물종자 보급 기반을 조성하여 원료 공급지로 생산기반이 구축되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 특용작물산업화를 위한 시설 및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며,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b>[지원내용]</b>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 및 장비	4,050	50
	버섯배지관리센터	<b>[지원자격]</b> • 생산자단체(농협, 버섯배지 및 버섯생산 관련 법인 또는 조합) - (배지원료공급센터) 농업인 15인 이상 참여 및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및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b>[지원내용]</b> 버섯배지관리센터(배지원료공급센터,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500	50

#### 4-4. 유통, 가공 효율화

1. 유통, 보관시설	유통시설현대화	<b>[지원자격]</b>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b>[지원내용]</b>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선별·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을 대상으로 규모화·현대화를 지원	510	30
-------------	---------	---	-----	----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1. 유통, 보관시설	농산물산지유통 센터지원	<b>[지원자격]</b> 지자체, 생산유통 통합조직(승인형, 육성형) <b>[지원내용]</b>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21,000	30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b>[지원자격]</b> • 출하조절시설 지원·관리 또는 출하조절시설 운영계획을 지자체 원예산업발전계획에 포함하거나 연도 내 포함할 계획이 있는 지자체(의무자조금 가입대상 품목의 경우 거출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대상 품목: 노지채소류 중 주요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해 출하 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b>[지원내용]</b> 저온저장시설, 예냉·예건시설, 가공시설 및 장비, 위생설비 및 장비, 선별시설, 포장장비 등	5,200	40
	과수거점산지유통 센터 건립 지원	<b>[지원자격]</b> 지자체 및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b>[지원내용]</b>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산지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를 위해 과수주산지역을 대상으로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	3,606	공공유형 50 일반유형 40 보완사업 30
	인삼특용작물유통 시설지원	<b>[지원자격]</b> • 일정 시설규모 이상 및 인삼을 연간 60톤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단지를 갖춘 생산자단체 등 • 일정 시설규모 이상 및 인삼을 연간 60톤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단지를 갖춘 생산자단체 등 <b>[지원내용]</b> • 인삼 생산 주산지를 대상으로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생산·가공·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 인삼 생산 주산지를 대상으로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생산·가공·유통시설 현대화 건설탕 지원	126	30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b>[지원자격]</b>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외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각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b>[지원내용]</b>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풍기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충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3,614	30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2. 물류, 마케팅	공동선별비지원	<b>[지원자격]</b> •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b>[지원내용]</b> 농산물공동선별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3,512	매취 10 수탁 25
	물류기기공동이용 지원사업	<b>[지원자격]</b>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 <b>[지원내용]</b>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팔릿,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 지원	10,404	40
	도매유통활성화 지원 (화훼유통개선)	<b>[지원자격]</b> • 선도금 -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 결제자금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 (소매유통업체)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으로부터 화훼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유통업체 중 자체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b>[지원내용]</b> 화훼농가 출하선도·유치자금, 중도매인의 화훼공판장 경매물량 구매자금, 소매유통업체의 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으로부터 화훼류 구매자금	9,000	100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운영지원	<b>[지원자격]</b> 통합마케팅조직, 산지유통혁신조직에 참여하는 도서지역 내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 등) <b>[지원내용]</b>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예농산물을 온라인, 산지경매 등을 통해 내륙거점 통합물류로 출하하는 경우 내륙지선 물류비, 운영비 일부 지원	1,850	50
	농산물 공영도매 시장 상품화 기능 확대	<b>[지원자격]</b> 도매시장 개설자 <b>[지원내용]</b> 소분·재포장 시설 건립에 필요한 토목, 건축공사, 전기, 상품화 기능 확대에 필요한 설비·장치류 구축 비용 지원	3,600	30
3. 가공, 원료확보	산지유통활성화 지원(용자)	<b>[지원자격]</b>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b>[지원내용]</b> 원료확보자금(계약금, 중도금, 선지금, 잔금) 지원	320,000	용자금 80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	---------------	------------	--------------------	---------------

#### 4-5. 수급안정, 소비촉진

1. 수급조절	유통협약명령	<p><b>[지원자격]</b>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 단체 등</p> <p><b>[지원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요에 따라 지원</li> <li>* 산지폐기 비용, 출하비용, 협약 및 명령 이행 관리를 위한 경비 등이 지원 대상이며, 구매, 시설지원, 폐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li> </ul>	400	100
	자조금지원	<p><b>[지원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산 자조금단체(의무, 임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하는 자조금단체</li> </ul> </li> <li>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li> </ul> <p><b>[지원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자율적 수급안정, 품질향상, 소비촉진, 수출활성화 등 사업비 지원</li> <li>품목별 자조금단체 운영 지원 및 관리를 위한 평가, 점검 등 행정경비</li> </ul>	13,110	단체 50 행정경비 100
2. 소비촉진	농식품거래소 지원 (온라인 직거래 기반 육성)	<p><b>[지원자격]</b> APC 보유 생산자단체</p> <p><b>[지원내용]</b> 온라인 직거래에 필요한 장비, 컨설팅, 홍보, 고객관리, 운송비 등</p>	870	1년차 70 2~3년차 50
	과실브랜드 육성	<p><b>[지원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공동브랜드) 전국, 광역 단위 브랜드 경영체</li> <li>(지역공동브랜드) 지자체 단위 브랜드 경영체</li> </ul> <p><b>[지원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국적 과실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과실을 대표할 공동브랜드 육성하기 위해 전국공동브랜드 전문경영체 육성을 지원</li> <li>다국적 과실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과실을 대표할 공동브랜드 육성하기 위해 지역 공동브랜드 전문경영체 육성을 지원</li> </ul>	540	전국 70 지역 30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p><b>[지원자격]</b> 농업 관련 기관 및 법인</p> <p><b>[지원내용]</b> 직거래장터 운영비 지원</p>	1,350	70

#### 4-6. 산지조직화(통합안내)

1. 산지조직화	산지조직지원 (생산유통 통합조직)	<p><b>[지원자격]</b> 생산유통 통합조직(승인형)</p> <p><b>[지원내용]</b> 농가 조직화, 상품 개발, 홍보 및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p>	805	50
----------	-----------------------	--	-----	----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	---------------	------------	--------------------	---------------

## 5. 축산

### 5-1. 시설·장비지원

1. 축사시설	축사시설현대화	<b>[지원자격]</b> 농협경제제주 <b>[지원내용]</b>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수혜농가에 대한 성과 분석으로 지원효과 분석 및 향후 사업지원 개선방안 수립	475	100
2. 축사 부대시설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	<b>[지원자격]</b>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 관기관(지자체)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b>[지원내용]</b>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축산 농가에 스마트 축산 ICT 융복합 장비 설치 지원	21,357	30

### 5-2. 가축사육, 말산업

1. 소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	<b>[지원자격]</b> 낙농조합, 지역축협, 낙농가 5인 이상이 구성된 공동출자법인 <b>[지원내용]</b> • 농가에서 육성우 전문관리 목장에 출산 직전까지 송아지 사육을 위탁 • 체계화된 육성우 사양관리를 통해 경제수명을 연장하여,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가격경쟁력 제고	3,200	-
	축산물수급안정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b>[지원자격]</b>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 농가 <b>[지원내용]</b> 송아지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시 보전금 지원	200	100
2. 양봉	CCTV 등 방역 인프라(말벌퇴치 장비 지원사업)	<b>[지원자격]</b> 양봉농가 <b>[지원내용]</b> 말벌 퇴치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100	30
	우수 여왕벌 보급 경상지원	<b>[지원자격]</b> 양봉농가 <b>[지원내용]</b> 양봉농가의 응애, 꿀벌질병 등 피해 발생 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질병 저항성 및 수밀력이 우수한 여왕벌 구입비용 지원	600	30

### 5-3. 축산환경개선

1. 환경개선	축산악취개선	<b>[지원자격]</b>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b>[지원내용]</b> •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 가축분뇨처리시설: 퇴·액비화, 정화처리, 에너지화 시설·장비 등 - 악취저감시설·장비: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바이오필터 등 - 부대기계·장비: 로더, 고액분리기, 퇴·액비 운반차량 등	7,560	20
---------	--------	---	-------	----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악취측정ICT기계 장비	<p><b>[지원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산악취개선사업 및 공동자원화시설 신규·개보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취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li> <li>- 축산악취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농가·시설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우선 설치</li> </ul> <p><b>[지원내용]</b> 축산환경 정보(악취, 온도, 습도 등) 감지센서 및 측정정보의 모니터링·분석을 위한 통신장비 등을 갖춘 기계·장비</p>	500	50
2. 자원화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공동자원화시설 신규)	<p><b>[지원자격]</b>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에 한함)</p> <p><b>[지원내용]</b>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p>	15,012	50
	공동자원화개보수	<p><b>[지원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축: 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 가동 시설</li> <li>개보수: 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 가동 시설</li> </ul> <p><b>[지원내용]</b> 자원화시설 증축 및 개보수 자금 지원</p>	1,600	40
	공동자원화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p><b>[지원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내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축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li> <li>연계: 기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설치·운영 중인 마을형 퇴비저장시설</li> </ul> <p><b>[지원내용]</b> 퇴비저장시설, 고체연료 생산시설, 바이오차 생산시설, 악취저감시설 등</p>	400	40
3. 퇴액비 활용	가축분뇨이용촉진	<p><b>[지원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작 및 축산농각간 액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한 유통전문조직</li> <li>- 전년도 운영실적에 대해 자원화조직체 점검을 받아야 함</li> <li>- 축산농가 관리, 살포농경지 및 살포량에 대하여 AgriX에 의해 관리</li> <li>- 농식품부 주관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교육 등 연간 5시간이상 이수</li> </ul> <p><b>[지원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비 및 액비 살포비</li> <li>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이용촉진비</li> </ul>	3,200	50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3. 퇴액비 활용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p><b>[지원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종·축산 조직 간 자연순환농업 협약식을 체결한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li> <li>가축분뇨 퇴액비, 바이오차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li> </ul> <p><b>[지원내용]</b> 퇴액비, 바이오차 이용 활성화 자금을 용자로 지원(단, 총사업비 30% 자부담 원칙)</p>	6,125	70 (용자)

#### 5-4. 가공, 유통, 수급, 소비

1. 축산물 위생안전	축산물HACCP 인증관리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p><b>[지원자격]</b> 축산업 등록 가축사육농가 및 생산자단체, 축산물 영업자</p> <p><b>[지원내용]</b>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위생·방역·질병 컨설팅, 살모넬라 백신구입비 지원</p>	406	40
2. 축산물 유통, 수급관리	낙농통계관리 시스템운영	<p><b>[지원자격]</b> (사)낙농진흥회</p> <p><b>[지원내용]</b> 낙농 관련 통계조사(생산, 가공, 유통, 소비)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소비분석 지원</p>	600	100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p><b>[지원자격]</b> 시술 당시 14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p> <p><b>[지원내용]</b> 난소결찰 비용의 일부 지원(마리당 6만원)</p>	1,200	30
	오리민간비축	<p><b>[지원자격]</b> 오리 계열화사업자로서 정부의 수급정책에 따라 하절기에 오리고기를 생산·비축한 후, 동절기 수급불안 시 비축물량을 방출하려는 업체</p> <p><b>[지원내용]</b> 사업대상자의 오리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보관, 판매 등에 소요비용</p>	10,000	용자금
	계란유통센터시설 현대화(계란공판장 활성화지원)	<p><b>[지원자격]</b>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계란공판장 개설자</p> <p><b>[지원내용]</b> 계란가격 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공판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란 공판장 경유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운송비, 수수료, 선별비) 지원</p>	4,456	100
3. 축산물 소비촉진	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p><b>[지원자격]</b> 낙농진흥회와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도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원유수요자</p> <p><b>[지원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대상자가 사업대상 기간 생산계약 체결 낙농가 또는 타 집유주체에서 구매한 원유에 대해 일부 지원</li> </ul> </li> </ul>	43,257	100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3. 축산물 소비촉진	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공유 사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대상 기간 중 생산계약을 체결한 낙농가에서 구매한 원유를 원유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데 발생하는 차액 등의 비용 지원</li> <li>원유수요자에게 원유(음용유용, 가공유용)를 판매하고도 남은 원유는 낙농진흥회가 수매하여 분유 등으로 가공 및 판매하며, 이때 발생하는 원유 구입비 및 제비용(임가공비, 보관비, 제품운송비 등)과 임가공 제품 판매액과의 차액(수매에 따른 손실)에 대해 지원</li> </ul> </li> <li>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유생산량 감소 등 국내 가공유용 원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가공유용 원유 사용량에 대해 지원</li> </ul> </li> </ul>		
	원유소비활성화	<b>[지원자격]</b> 국산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자 <b>[지원내용]</b> 원유구입비, 유제품 생산 R&D, 판촉비용 등 지원	7,000	융자금

### 5-5. 가축방역, 위생지원

1. 방역대응	방역 위생 인프라	<b>[지원자격]</b> 양돈 및 가금 가축사육농가 및 종축업농가 <b>[지원내용]</b>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비 지원	9,900	30
	가축사육제한 보상금	<b>[지원자격]</b> 축산농가 <b>[지원내용]</b> 동절기 오리농장 사육제한에 따른 보상금 지원	4,628	50

### 5-6. 조사료지원(통합안내)

1. 조사료 지원	조사료 생산 지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b>[지원자격]</b>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b>[지원내용]</b> 국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는 자에게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등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건비 지원 등을 관할 지자체를 통해서 개별농가 및 농업법인 등에게 지원	77,213	30~50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	<b>[지원자격]</b>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 자 또는 등록하거나 등록하려는 자,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하려는 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지방자치법」에 제2조에 따른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비, 초지 기반시설 등</li> <li>울타리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등</li> </ul>	888	50~100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	---------------	------------	--------------------	---------------

## 6. 식품

### 6-1. 기반구축

1. 산업기반	식품기능성평가 지원	<b>[지원자격]</b> 식품기업·농업법인 등,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3,156	40~100
		<b>[지원내용]</b> 국산 농산물 유래 우수 소재의 기능성 규명을 위한 임상실험 등 과정 지원, 국산 기능성 식품소재 산업화를 위한 기능성 실증·소재화·제품개발 지원		

### 6-2. 식품안전, 환경, 인증

1. 식품안전	GAP 안전성 분석 지원	<b>[지원자격]</b>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b>[지원내용]</b> GAP 인증을 받은자 또는 받기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경우 분석 비용 지원	2,543	50
	GAP위생시설 보완 지원	<b>[지원자격]</b>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b>[지원내용]</b>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시설 또는 농산물우수관리 시설로 지정을 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에 대해 위생시설 보완 지원	1,170	30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신고의무자 교육	<b>[지원자격]</b> 전국 단위로 조직화된 활동인원(명에 감시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별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의무대상자(수입·유통업체)에 대한 전화 및 대면 교육·홍보가 가능한 기관 <b>[지원내용]</b>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제도 시스템 관련 업무매뉴얼,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신고대상자에게 제도 설명 및 운영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교육·홍보, 언론보도를 통한 제도 홍보 등 추진	354	100

### 6-3. 식품산업, 외식산업

1. 식품산업	찾아가는 양조장	<b>[지원자격]</b> 국내 전통주 등 생산업체 <b>[지원내용]</b> 양조장 환경개선, 프로그램 개발 소요 비용 (최대 80%지원)	192	40
2. 외식산업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b>[지원자격]</b> 지자체(외식업체 등) <b>[지원내용]</b> 외식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및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1,850	50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	---------------	------------	--------------------	---------------

#### 6-4. 식생활, 식품소비

1. 식품소비 촉진	농축산물 할인지원	<b>[지원자격]</b> 유통업체	108,000	100
		<b>[지원내용]</b>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에 농축산물 구매액 20% 지원		

#### 6-5. 농식품 수출

1. 농식품 수출지원	생산기반조성	<b>[지원자격]</b> 농식품 수출농가, 수출업체 등 <b>[지원내용]</b>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출단지 조직화 교육 및 안전성 관리,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수입국 검역관 초청 등 지원	9,760	90~100
	판매조직육성	<b>[지원자격]</b> 농식품 수출농가, 수출업체 등 <b>[지원내용]</b>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효율화를 위해 전문판매조직인 수출통합·선도조직 육성, 수출협의회 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교육 등 지원	26,880	60~100
	농식품우수기업 육성	<b>[지원자격]</b> 농식품 수출농가, 수출업체 등 <b>[지원내용]</b> 보험가입, 선도유지제 구입, 수출컨설팅 제공, 상품화, 현지화, 해외인증 등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	54,447	70~100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b>[지원자격]</b> 농식품 수출농가, 수출업체 등 <b>[지원내용]</b>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선도할 프런티어 인큐베이팅 업체의 현지시장에 부합하는 제품개선, 포장·디자인 개발, 현지마케팅, 상담회 및 품평회 등 지원	919	80
	외식산업 수출 지원	<b>[지원자격]</b> 외식프랜차이즈 기업 등 <b>[지원내용]</b>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및 맞춤형 바우처 사업 등 추진을 통해 국내 우수 외식기업 글로벌 홍보 및 해외 진출 확대	779	80~100
	민관합동협의회 운영	<b>[지원자격]</b> 농식품 수출업체 등 <b>[지원내용]</b> 수출환경 변화 대응, 수출 애로수집·해소를 위한 점검회의, 현장간담회 등 운영	315	100
	온라인모바일 마케팅	<b>[지원자격]</b> 농식품 수출농가, 수출업체 등 <b>[지원내용]</b> 온라인·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유통·소비환경에 대응, 농식품 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플랫폼 진출 지원	2,533	80~90
	우수농식품선선도 제고	<b>[지원자격]</b>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수출통합·선도조직, APC, 물류업체 등 <b>[지원내용]</b> 수확 후 저장·운송 등 수출선적 준비 동안 선선도 유지 및 유통비용 절감 위해 CA기술 활용 가능한 '일체형 CA유통 구축지원'	1,652	70
	신선농산물저온 유통체계구축	<b>[지원자격]</b> 국내산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원재료 포함) 수출업체(대기업 제외) 등 <b>[지원내용]</b>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원재료 포함)의 품질관리비용, 저온유통 처리비용 등을 지원하여, 원료단계부터 선적단계까지의 선도유지 관리체계 강화 및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	1,900	80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1. 농식품 수출지원	해외정보조사·전파	<b>[지원자격]</b> 농식품 수출업체 등 <b>[지원내용]</b> 통상환경 변화, 해외 비관세장벽 강화 등 농식품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생산농가와 수출업체 등에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 및 경쟁력 제고	3,695	100
	우수농식품 콜드체인 구축	<b>[지원자격]</b> 농식품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 <b>[지원내용]</b>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냉동·저온 유통지원을 통해 수출 농식품의 신선도 향상, 품질 유지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4,660	50~90
2. 해외판로	우수농식품 판로개척	<b>[지원자격]</b> 농식품 수출업체 등 <b>[지원내용]</b> 농식품 수출 소비저변 확대를 위한 국제박람회 참가, K-Food Fair 개최, 바이어초청 상담회, 해외 안테나숍 운영, 수출농식품 홍보관 운영 등 지원	35,412	50~100
	검역해소품목 및 전략품목육성 지원	<b>[지원자격]</b> 농식품 수출농가, 수출업체 등 <b>[지원내용]</b> 시장에서 검역이 타결된 품목의 초기 시장 정착을 지원하고, 주요 전략품목에 대해 시장진입부터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식품 수출확대 도모	4,000	80~100
	해외식품인증지원 센터	<b>[지원자격]</b> 농식품 수출농가, 수출업체 등 <b>[지원내용]</b> 할랄·코셔 등 해외 식품인증에 필요한 식품 성분 분석, 국내외 할랄 상호인정을 위한 기술지원, 국제 공인 할랄연구실 운영 등을 통해 중동 등 신규 시장 진출 지원	1,080	100
	시장개척플랫폼 구축·운영	<b>[지원자격]</b> 농식품 수출농가, 수출업체 등 <b>[지원내용]</b>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정보·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및 청년해외개척단 파견 운영, 선도기업의 수출상담회 참여, 수출 유망품목 육성, 다변화전략국 현지 마케팅 등 지원	4,230	80~100
	뉴미디어마케팅	<b>[지원자격]</b> 농식품 수출농가, 수출업체 등 <b>[지원내용]</b> 해외 현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 SNS 등 새롭게 부상하는 유망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한국농식품 홍보	5,290	80~100
	온라인플랫폼 운영	<b>[지원자격]</b> 농식품 수출농가, 수출업체 등 <b>[지원내용]</b> 유력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관' 구축을 통한 수시 홍보·판촉 및 신규 입점 지원, 공동마케팅 진행을 통한 농식품 수출기업 해외진출 확대	1,287	100
	해외 新유통채널 연계 현지시장 진출	<b>[지원자격]</b> 농식품 수출업체 등 <b>[지원내용]</b> 해외진출 식품기업 중심으로 국가별 협의회를 구성, 신규 수출기업을 위한 판로 공동활용, K-Food 공동마케팅 등 수출 확대 지원	469	100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	---------------	------------	--------------------	---------------

## 7. 농생명산업

### 7-1. 스마트농업

1. 스마트 시설장비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p><b>[지원자격]</b>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p> <p><b>[지원내용]</b>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 기반 조성, 자동화 장비·기계 구축, 사업단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p>	17,980	50~100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p><b>[지원자격]</b>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p> <p><b>[지원내용]</b> 기반조성, 온실 및 에너지 냉난방시설 조성 사업비</p>	28,000	70
2. 스마트 실증 보급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p><b>[지원자격]</b> 스마트팜 ICT기자재 농산업체</p> <p><b>[지원내용]</b>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적용을 위한 컨설팅, 제품개선, 검정, 재직자 교육 등 지원</p>	3,900	90~100
	보육운영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p><b>[지원자격]</b>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 4개소(전북·전남·경북·경남)의 지자체 보육센터</p> <p><b>[지원내용]</b> 청년대상 스마트팜 창업에 필요한 장기교육 운영비 지원</p>	8,000	100
	스마트팜 실증단지 사업	<p><b>[지원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증지원·기술혁신 서비스)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지자체(4개소)</li> <li>- (1차지역) 전북(김제), 경북(상주) / (2차지역) 전남(고흥), 경남(밀양)</li> <li>(실증기업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참여 기업</li> </ul> <p><b>[지원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실증지원 서비스)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데이터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위탁사업비 등) 지원</li> <li>(실증기업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기업의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li> <li>(기술혁신 지원서비스) 기술혁신 지원서비스 사업을 위한 비용 지원</li> </ul>	6,074	50
	권역별현장지원 센터(농업농촌교육 훈련)	<p><b>[지원자격]</b> 농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농가의 지원 및 확산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 시군)</p> <p><b>[지원내용]</b> 스마트팜 농가 및 예비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유지보수(A/S) 등 지원</p>	300	50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3.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 확산 지원	<b>[지원자격]</b> 스마트팜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과 농업인 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b>[지원내용]</b>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생산 성 향상, 비용 절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솔루션·서비스를 농가에 적용 및 고도화 비용 지원	6,235	70~100
	농식품ICT융복합 촉진	<b>[지원자격]</b>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b>[지원내용]</b> 스마트팜코리아(빅데이터플랫폼) 시스템 운 영 및 관리 지원	2,568	100

### 7-2. 종자, 곤충, 미생물, 도시농업

1. 종자, 묘목	국내채종기반구축 사업	<b>[지원자격]</b>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 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수출 전용품종 은 예외) <b>[지원내용]</b> 국내 종자업체가 농가와 채종(종자생산)계약 하고 실제 지급한 구매대금의 50%를 종자 업체에 지원	7,362	50
	종자 구입비 지원	<b>[지원자격]</b> • 2025년 농식품부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 참여 업체 • 2024년산 밀 보급종 우선 신청·공급 업체 <b>[지원내용]</b>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 계약 면 적에 파종할 밀 보급종 구입비의 최대 50% 지원	1,920	50
	과수 무병묘목 (보급종) 생산·공급 지원(무병화 및 무병묘 검정)	<b>[지원자격]</b> 무병화 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장비, 인력 구 성 등의 기반을 갖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업법인 등 관계 전문기관 <b>[지원내용]</b> 무병화 관리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료 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800	100
	과수 무병묘목 생산·공급 지원 (무병묘목 구입비 지원)	<b>[지원자격]</b> 5대 과수의 무병화 인증을 받은 무병묘를 구매한 농가 <b>[지원내용]</b> 5대 과수 무병묘 구입비용의 차액 일부 지원	600	100
	과수 무병묘목 생산·공급 지원 (무병묘 모수포 조성)	<b>[지원자격]</b> 5대 과수의 무병 모수를 보유하고 있거나 모수를 보유하고자 하는 종자업 등록자 또는 농업단 체 등 <b>[지원내용]</b> 무병 모수를 생산관리 할 수 있는 모수포를 조성하도록 시설하우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200	40
	과수 우량묘목 (원종) 생산지원 (생산지원, 기반조성)	<b>[지원자격]</b> 묘목 생산자 단체로 무병 원종 생산·관리 기관(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중앙과수묘목관리 센터) <b>[지원내용]</b> 무병묘를 생산하기 위해 상위단계 우량묘목 (원종) 생산에 소요되는 원종생산비 등을 지원	755	생산지원 60 기반조성 100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1. 종자, 묘목	우수종묘증식보급 기반구축	<b>[지원자격]</b> 지자체, 농업법인, 농업인(국내채종계약) <b>[지원내용]</b> 품목: 온실, 저온저장고, 관련 장비 등 종자·묘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씨감자, 고구마종순, 특수미, 약용작물 종자, 버섯종균, 육묘, 딸기종묘, 과수묘목, 화훼종묘, 녹비·사료작물, 종묘삼, 마늘종구, 생강종구, 차나무, 병나무 등	4,500	30~50
	민간육종가 육성 지원	<b>[지원자격]</b> 개인육종가,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의 법인 및 민간육종가 협의회 회원 대상의 공동사업만 신청 가능 <b>[지원내용]</b> • (홍보·마케팅, 입식비 지원) 민간육성품종의 수출 등 홍보용 다국어 카탈로그 제작 등 온·오프라인 광고, 화훼류 신제품 입식비 지원 • (종자전문인력 양성 지원) 종자관련 해외 온·오프라인 전문기관 연수 및 세미나, 개별 소그룹 해외 기획 연수, 해외 박람회 참가 체재비 지원 • 신제품 육성, 생산, 품질관리, 판매, 수출 등 소요 실비 지원	244	50~70
	원원종 및 원종생산	<b>[지원자격]</b> 주요 농작물(벼, 콩, 밀, 보리 등)의 원원종 및 원종을 생산하는 지방자치 단체 <b>[지원내용]</b> 상위단계종자(원원종, 원종) 생산에 소요되는 직접생산비	6,328	100
2. 곤충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b>[지원자격]</b>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곤충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예정인 자 <b>[지원내용]</b> 곤충 생산 관련 시설·설비(신축 또는 개보수)과 기자재 구비(신규 구비 또는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1,000	융자금 80
	곤충산업화지원	<b>[지원자격]</b>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업 또는 가공업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b>[지원내용]</b> 거점기관은 협력농가에 곤충종자 보급, 곤충 생산 장비 보급 및 관리, 먹이원 공급, 수매·가공 등을 통해 지원하고 협력농가는 균일한 품질의 곤충 생산	600	30
	곤충유통활성화 (곤충유통사업 지원)	<b>[지원자격]</b> 생산자단체·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하여, 규모화·조직화·전문화에 기반하여 단일화된 마케팅 창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가칭, 곤충유통사업단) <b>[지원내용]</b>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홍보·마케팅 경비 지원	360	50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	---------------	------------	--------------------	---------------

### 7-3. 동물복지

1. 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 인증제활성화 (동물복지인증 생산품 판로 지원)	<b>[지원자격]</b>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축산물 유통업체, 방 송매체 등 <b>[지원내용]</b> 동물복지축산농장 생산 축산물의 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인증농가 연계 흥 보프로그램, 방송매체 홍보 등 추진	200	100
	동물복지축산 인증제활성화(동물 복지축산 컨설팅)	<b>[지원자격]</b> 동물복지축산농장 신규 참여희망 경영체(개 인·법인) 및 기 인증 경영체(개인·법인) <b>[지원내용]</b> 동물복지축산농장 컨설팅 자문비(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124	40
2. 동물산업	수출 공동 대응체계 마련	<b>[지원자격]</b>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 <b>[지원내용]</b>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Chewy.com 등) 입 점 및 해외 진출 공동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비 지원	50	100
	수출시장 개척	<b>[지원자격]</b>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 <b>[지원내용]</b> 박람회, 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로 제품 홍보 강화 및 현지 법률 자문, 홈페이지·카탈로그 현지화, 해외인증 지원, 해외진출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440	70~100
	시장조사 및 전파	<b>[지원자격]</b>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 <b>[지원내용]</b> 수출 유망국 시장조사 및 K-Pet 수출박람회 개최, 상품화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사업비 지원	1,100	70~100
	GMP 컨설팅 지원	<b>[지원자격]</b>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업체 <b>[지원내용]</b> 국제기준의 동물용의약품 GMP 지정 희망 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100	40
	수출혁신품목육성	<b>[지원자격]</b>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업체 <b>[지원내용]</b> 동물용의약품 수출을 위한 임상시험, 해외등 록 관련 비용 등 지원	800	40
	동물용의약품 수출시장개척지원	<b>[지원자격]</b>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업체 <b>[지원내용]</b> 동물용의약품 관련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수출마케팅, 시장개척단파견 지원	491	70

### 7-4. 창업, 농산업인력

1. 농식품 창업	농식품벤처육성 지원	<b>[지원자격]</b>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첨단기술 분야 혁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b>[지원내용]</b> • (농식품 분야) 사업화 자금, 창업 상담 및 컨설팅, 제 품 판로 제공 등 • (첨단기술분야) 혁신기술·제품의 사업모델 고도화 자 금 및 특화 교육·투자 IR, 멘토링 프로그램 등	13,125	70
--------------	---------------	--	--------	----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1. 농식품 창업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b>[지원자격]</b> 농식품 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 또는 발굴 의지를 지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b>[지원내용]</b> 현장실습 지원(2~3개월) 및 인턴지원금, 창업교육 및 멘토링 등	302	100
	기술평가지원	<b>[지원자격]</b> 농식품 분야 특허기술 및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권 또는 노하우를 보유한 벤처·창업기업 <b>[지원내용]</b> 농식품 기술평가 수수료 지원	200	90 / 50
2. 농산업 인력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b>[지원자격]</b> • (액셀러레이터)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있는 액셀러레이터 • (스타트업) 농식품 및 농산업 기술 분야 창업기업으로 공고 마감일 기준 7년 이내 (예비) 창업자 <b>[지원내용]</b> 농식품 스타트업 대상 액셀러레이팅 운영 자금	3,300	100
3. 농산업 지원	농산업체 판로지원	<b>[지원자격]</b> 농식품 벤처육성기업 등 온오프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7년 이내 농식품창업기업 <b>[지원내용]</b> 농식품 창업제품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	805	100
	농식품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지원	<b>[지원자격]</b>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 기업 등 <b>[지원내용]</b> 클라우드펀딩 관련 컨설팅 및 수수료 지원	600	100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b>[지원자격]</b>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b>[지원내용]</b>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우수 창업기업 대상 투자금과 매칭한 사업화자금 지원	7,500	70

### 7-5. 농산업수출, 국제개발

1. 농산업 수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b>[지원자격]</b>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또는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등 <b>[지원내용]</b>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에 필요한 전문교육, 진출지역 사전환경조사 및 컨설팅 지원, 영농지원센터 운영, 정보제공 및 교류 지원 등	3,000	100
-----------	--------------	--	-------	-----

## 8. 탄소중립, 기후변화

### 8-1. 친환경농업

1. 친환경 농업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자율, 세종)	<b>[지원자격]</b>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관리하는 생산자 단체 <b>[지원내용]</b>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 지원	4,390	30
-----------	--------------------	---	-------	----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 자격 및 내용	'24년 국비예산 (백만원)	국비 보조율 (%)
1.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자재지원	<p><b>[지원자격]</b>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p> <p><b>[지원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및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 지원</li> <li>녹비작물 종자(ha):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li> <li>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li> <li>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li> </ul>	6,206	20 토양검정 · 컨설팅 100
2. 친환경 농산물 유통, 소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농자)	<p><b>[지원자격]</b>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p> <p><b>[지원내용]</b> 친환경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생산한 농축산물 직거래 구매 자금</p>	22,800	융자금

### 8-2. 저탄소농축산

1. 탄소저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경종 분야)	<p><b>[지원자격]</b> (경종) 전년도 및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이며,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소속된 개별 농업인 및 법인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경우</p> <p><b>[지원내용]</b>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p>	4,056	100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p><b>[지원자격]</b>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농업경영체</p> <p><b>[지원내용]</b> 감축량 모니터링·검인증 및 인센티브 지급 등</p>	819	100

### 8-3. 저탄소인증지원

1. 저탄소 인증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농산물 인증)	<p><b>[지원자격]</b> (농산물인증)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사전에 취득하고, 인증 대상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18개)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집단</p> <p><b>[지원내용]</b> 저탄소 농산물 인증 컨설팅,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지원</p>	1,747	100
--------------	-----------------------------	---	-------	-----

### 8-4. 에너지전환

1. 에너지 전환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p><b>[지원자격]</b> 농촌 지역 4개 지방자치단체(시·군)</p> <p><b>[지원내용]</b> 마을발전소 및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치,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에너지 진단 등 패키지 지원</p>	2,766	50
--------------	---------------------	--	-------	----

2024년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PART

II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생산기반(공통)

---

## 1-1. 직불제



## 1

## 기본형 공익직불

## I

## 사업 개요

## □ 목적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 □ 사업내용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
-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각각 10%를 감액하여 지급

## □ 지원 자격 및 요건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하나 제외 대상\*\*인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하천구역 농지, 임야, 초지,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제외 대상\*\*인 경우 직불금을 미지급
  - \* (기존수혜자)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2030 세대 등, (신규대상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영농종사한 경우
  - \*\*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1천㎡ 미만인 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하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농직불금 지급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 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합	3,800만원 미만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기준 : (소농직불금) 130만원/농가,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비진흥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 지급
- '24년 예산 : 2,633,487백만원(국비 100%)

## □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 '24년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의 정보를 활용 일부 자격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신청 안내(1~2월)
-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사무소에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는 비대면 간편 신청 가능
  - \* (신규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 신청기간 : (비대면) 2월, (방문) 3~4월

## □ 대상자 선정

- 자격요건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격요건을 자동 검증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9.10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읍·면·동 제출
-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분할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농관원·지자체 합동점검 추진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사무관 박상호 주무관 신영택	044-201-1776 044-201-1777
공익직불제 콜센터	-	-	1334

## II 주요 내용

### 1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 ①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 다만, '97.12.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

○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다만, '11.12.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

○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② 상기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중 기본직불 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 상의 농지이어야 함

나. 다만,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 ①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다만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배에 대해 시장·군수가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②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약이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해당 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③ 「농지법」 제36조·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약의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농지가 해당 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지급 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2016.1.21.일 이전에 형질 변경하여 농지로 인정받아 종전의 직불금을 지원받던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다만 농지로 인정받기 위하여 농지 대장에 등록하여야 함

⑤ 부정수급(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수령, 농지를 분할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 부정수급자가 (1)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농지이거나 (2) 등록제한 처분 이후 새로 구매한 농지 등으로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를 의미

⑥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되,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지구·지역·단지의 농지 중 (1)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 분에 대해 (2)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 대상 농지로 인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⑦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 제3자에게 임대하였더라도 처분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⑧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지급 대상 확정(9.30일 이전) 전까지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농지대장 시행(22.8.18일)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규·갱신이 필요한 경우 농지대장의 등록정보를 활용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부동산업이 금지되어 농업인이 임대차 등을 통해 기본직불을 신청·등록 불가(「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19조의5)

**⑨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신청(기본직불 신청 면적 합이 공부상 농지면적을 초과)한 경우**

- 공동소유, 공동경작하는 경우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분의 면적을 인정
- 같은 농지를 중복하여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자 확정(9.10일) 이전에 지자체는 실제 경작자의 실경작 농지면적으로 수정 → 9.30일 이후 중복신청 필지는 기본직불 등록한 농업인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

**⑩ 필지 기준 지급대상 농지 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면적\* (폐경)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골재채취장·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
- 기본직불 등록한 농지가 필지 단위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전체 폐경 : 건물, 공원, 호수, 텃밭\* 등)인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종전에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조치
  - \*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에서 제외
  - \*\* 공부상 지목이 농지의 이용과 관계없는 공장용지, 철도용지, 잡종지, 주유소 등이라고 하더라도 주용도 이외 일부만 경작할 때에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 농작물 경작·재배에 이용(휴경 포함)되며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는 농지 면적만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포함

☞ 필지 기준 기본직불에서는 경작에 이용될 수 없는 면적을 신청한 경우(일부 폐경) 해당 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하여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 감액 대상

☞ 다만, 「농지법」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농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은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면적에서 제외되나 감액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음

**⑪ 기본직불 등록한 농지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 취소된 농지**

☑ 농지전용(②), 지목이 임야인 농지(④), 농지처분명령(⑦), 임대차계약(단계적 적용)에 대한 정보(⑧)는 농지대장의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검증

- ☑ 부정수급자 소유 농지(⑤), 폐경(⑩), 경영체 등록취소 농지(⑪)은 등록신청연도에 사전검증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여 안내
- ☑ 하천구역 농지(①), 개발지역 농지(⑥), 중복신청 농지(⑨), 기본직불 등록 이후 경영체 등록취소 농지(⑪)는 읍·면·동에서 점검하여 검증

## 2 지급대상 농업인등 자격요건

가.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일부 위탁경영 포함)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

- ① (기존수혜자) '16~'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또는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 ②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청년농업인법」 제8조제1항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 (전업농업인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 ③ (신규대상자) 기존수혜자 및 정책대상자가 아닌 농업인등은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

〈〈 신규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증명해야 함 〉〉

- ◆ 기본직불 등록하려는 이전 연도부터 계속해서 직불로 신청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유지 여부
- ◆ 전년도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을 제외하고 신규 농업인이 실경작했다고 증명이 되는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여부

- (농업인) 농지 1천㎡ 이상(휴경·폐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농지 50천㎡ 이상(휴경·폐경면적은 제외)에서 ▽농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 ④ (승계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 「농지법」 제9조에 따른 해당 농지를 완전위탁경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함. 다만, 같은 법 제6호에 따라 일부 위탁하는 경우는 승계의 사유가 될 수 없음.
  -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 등록자의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2)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3)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 3개월 미만의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포함 가능
- 승계자는 읍·면·동에 승계처리 요구 전까지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를 완료
- 직전 연도 또는 지급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승계사유 발생으로 인한 승계처리
  - [직전 기본직불 지급 ~ 신청·접수 전]에 승계 사유 발생이 된 경우 기본직불 신청·접수 전 농업경영정보를 수정하고 승계대상자로 접수
    - \* 그러나 기본직불 신청접수 당해 연도 이후에 승계('23년 승계사유 발생 → '24년 기본직불 미승계 및 미신청 → '25년 기본직불 신청)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본직불 등록 ~ 지급전]에 기본직불을 등록한 자가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 기본직불 등록정보 변경
- 지급대상자가 소농직불을 신청·등록하였고, 승계자가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소농직불승계 인정
  - \* 그러나, 지급대상자가 면적직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승계자는 소농직불 자격요건 충족 여부 관계없이 면적직불로 승계
- 승계자는 농외소득, 주업요건 등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상속 등에 따른 승계자인 경우 지급대상 농지는 상속된 지분만큼만 인정하고, 상속되지 아니한 지분은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 기본직불 등록자가 사망하였으나 승계자가 없거나 승계자격 요건이 맞지 아니할 경우 당해 연도 직불금 미지급
- ⑤ '04.12.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 (공통)농지면적 10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
- (농업법인) (공통)농지면적 50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500만원 이상

다. 다만,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농업인등에서 제외

- ① 등록연도에 농업에 이용(폐경 및 휴경면적 제외)하는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1천㎡ 미만인 농업인등
- ②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농업인만 적용)
- ③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농업인등
- ④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농업인등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등록 또는 수령한 농업인등
- ⑤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등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농업인등
  - \*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은 개월 수가 아닌 연단위로 반영
- 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부 재정사업의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농업인등
- ⑦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3호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농업인등
- ⑧ 기본직불 등록한 농업인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 취소한 농업인등

## 3 소농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

가.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기본직불 등록자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농가 단위로 소농직불금(130만원) 지급

- ① (소농직불대상 농지요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nabla$  1천~5천 $m^2$  범위이거나,  $\nabla$  5천 $m^2$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30만원 미만(이하 '역전구간')
- ② (농촌거주)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직전 주소 등을 검토하여 농촌거주기간 연속 3년 유지 여부 확인
    -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촌에 있어야 인정. 다만,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이 아닌 질병의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3개월 이내) 그 기간에 한해서는 농촌에 거주한 것으로 봄
- ③ (영농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 \* (1) 농업경영체에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의 농지를 연속해서 직전 3년 이상 등록한 경우 또는  
(2) 직전 3년 연속 직불금 수령
- ④ (농업인 소득검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 ⑤ (농가 소득검증)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합이 4500만원 미만
- ⑥ (농지소유)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 면적합(지목이 전·답·과수원(지급대상+비지급대상), 임야·대지 등 기타 지목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모두)이 15.5천 $m^2$  미만
  - 검증결과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중 공동소유 또는 종중 농지, 지목은 전·답·과수원이나 개발이 완료되어 농지로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 등은 농업인이 읍면동 직불담당자에게 소명
- ⑦ (축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이 5600만원 미만
- ⑧ (시설재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합이 3800만원 미만

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기본적으로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 지급

- ① 자격요건, 현장 확인 등 검증된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을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로 지급

〈 면적직접직불금 지급단가 〉

(단위 : 만원/ha)

단계 \ 구간	면적직불금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
논·밭 진흥지역(a)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b)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c)	134	117	100

- ② (지급상한)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 이 경우 공동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를 적용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쌀고정, 밭고정,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논+밭) 면적의 합이 지급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을 인정

- ③ (논·밭 구분) 지목 관계없이 과거 기준연도 이용 형태로 지급

\* ▽ **쌀직불** 지원받던 농지는 **논**, ▽ **밭직불·조건불리** 지원받던 농지는 **밭**으로 적용

- ④ (진흥·비진흥 구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재된 정보로 확정

〈〈 적용예 〉〉

- ◆ 구간별 단가는 가 → 나 → 다 순서로,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
  - 가. 논·밭 진흥지역 : 면적에 따라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가장 먼저 적용
  - 나. 논 비진흥 : ‘가’의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 다. 밭 비진흥 : ‘가’ 또는 ‘나’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 ◆ (예시) 논·밭 진흥지역 면적 4ha, 논 비진흥 면적 3ha, 밭 비진흥 면적 2ha인 경우  
 ⇒ 1,506만원(지급금액) = (논·밭 진흥지역 804) + (논 비진흥 502) + (밭 비진흥 200)

(단위 : 만원/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금액 합계
논·밭 진흥 4ha	2ha×205=410	2ha×197=394		804
논 비진흥 3ha		2ha×170=340	1ha×162=162	502
밭 비진흥 2ha			2ha×100=200	200

## 5 재배면적 조정의무

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본직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 가능(법 제13조)  
 \*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 후 추진

나. 재배면적 조정의무는 필요할 경우 농식품부 주관으로 발동되는 준수사항이며,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조정 대상인 경우 해당 농지는 품목전환 또는 휴경을 하여야 함 →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는 포함

- ① 농식품부 품목과는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경우 생산자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 수립
  - \* 다만, 미곡의 경우에는 「양곡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 작목선정, 조정면적 규모 등을 정하며, 필요할 경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 자문
- ② 농식품부 품목과는 결정 사항을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수행할 자조금단체, 생산자 단체,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공익직불정책과, 경영체 담당과에 통지
  - 공익직불정책과는 해당 품목을 고시 또는 지침에 반영하여 통지
  - 농업경영체 담당과에서는 해당 품목 재배 농가의 정보를 품목과 등에 제공
    - \* 경영체 담당과는 매년 4월(하계작물), 10월(동계작물)에 농업경영체 품목 정보 변경 추진
  - 각 지자체 품목 담당부서에서는 직불금 담당부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공익직불금을 신청·등록한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 추진
    - \* 생산자단체는 자조금사업 등을 활용하여 별도 홍보, 대책 마련 등 병행
- ③ 각 지자체 품목 담당부서에서는 직불금 담당부서,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공익 직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통지서 송부
  - 대상 작목, 재배면적 조정 면적 및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

④ **지자체 품목 담당부서는 생산자단체, 농관원과 협조하여 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 추진**

-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업인의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대상 농지에 한정하여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4)

**6 공익직불 준수사항**

가.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

- \* 여러 건의 준수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준수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비율을 합산(최대 100%)
- \* 동일 의무사항을 차년도에 반복 위반할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 적용(최대 40%)

※ 세부내용은 본 지침서 ‘제2장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침’ 참고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법 제12조제1호 및 시행령 제12조)**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폐경면적(불경지 등) 지급제외 + 10% 감액)
-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는 활동 시행(10% 감액)

- ▶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 ▶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② **농약의 안전사용·잔류허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

-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 \* 국내 미등록 농약(밀수농약),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난 농약(폐기농약)이 검출되었으면 잔류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③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3)**

- 이산화황 등 기타 유해물질의 임의사용으로 인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다만, 중금속, 방사능, 독소류(유해미생물, 바이러스) 등의 비의도적 오염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잔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

④ 비료 사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을 준수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비료량 기준을 준수할 것

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법 제12조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

- 농업인은 매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 전(9.30)까지 농관원, 지자체, 농진청, 민간 등이 주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 고령 농업인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별도의 방법을 정하여 교육 추진

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할 것

\* (1) 농업인 또는 법인의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2) 농지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재배품목(쌀,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등 16개)**, 시설현황

⑦ 지급대상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3)

- ▶ 영농폐기물을 임의로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 등에 보관하여 농지등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할 것
- ▶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을 농지에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않을 것
- ▶ 시·군·구 : 마을에서 모아둔 폐기물을 마을순회 회수차 등을 운영하여 수거
- \*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소각, 투기 등을 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강화

⑧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⑦동일 조항)

- ▶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또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과 관련한 마을 공동활동\*에 참여할 것
- \* ▽ 마을 주변 영농·생활폐기물 공동 수거·처리 ▽ 마을공동공간 청소·정비·경관개선 ▽ 생태교란 식물 제거 ▽ 농경문화의 계승을 위한 공동체 활동 ▽ 지자체, 마을 자율조직 등이 운영·개최하는 마을축제, 농업기술교육, 문화활동 등 공동행사

### ⑨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⑦동일 조항)

- ▶ 영농활동과 관련된 (1) 종자(종묘)·농약·비료 구매내역, 사용내역 등(영수증 포함) (2) 경운일자 (3) 수확·판매 등 기타 영농활동 등을 재배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할 것
- ▶ 농관원 등 관계기관에서 기본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적합 발생시 농약·비료 구매·사용기록을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시 협조할 것

### ⑩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⑦동일 조항)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를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

### ⑪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⑦동일 조항)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농약 및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유출·방치하지 않을 것

### ⑫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⑦동일 조항)

-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하천수 이용 시 허가 등을 받고, 같은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량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 ⑬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⑦동일 조항)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 시 허가 등을 받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 ⑭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⑦동일 조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지 아니하고 액비살포 기준을 지킬 것

### ⑮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⑦동일 조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 ⑯ 병해충 발생 신고(⑦동일 조항)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 및 그 주변에 규제병해충,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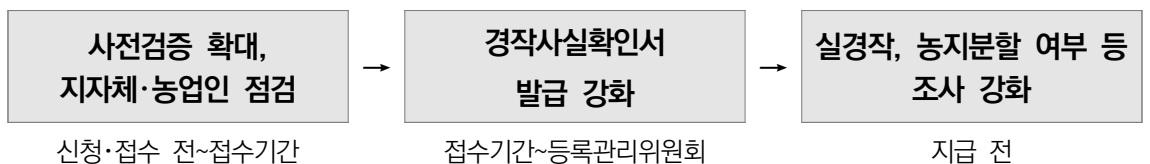


⑰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③동일 조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연기, 폐기 등의 출하제한 명령 준수

**7 부정수급 방지**

- 가. 기본직불 신청·접수 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전에 검증하여 부정등록을 사전에 방지하고 맞춤형 지원(법 제6조의2 신설)**
- 나.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등에 대하여 **실경작 여부 확인을 마을 단위로 확대하고 관리 강화(시행규칙 제11조 개정)**
- 다. **조사의 범위에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강제하여 관계기관 책임 강화(법 제17조 개정)**



① **(사전검증 강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지 등의 정보 및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전에 자격요건 검증을 확대하여 적격인 대상에게 직불금 신청 안내**

-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사전에 정보를 수집 및 현행화하여 **정보오류 최소화**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주민번호)·농지(PNU)를 기준으로 주민정보, 토지대장, 과거 농지형상 점검사항, 농지대장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전 현행화
- 지급대상 농업인·농지·소농자격요건에 대한 **사전검증을 확대**하고 적격인 농업인등 (기존수혜자+신규대상자)에게 신청 안내하여 부적격자 신청 방지

- ▶ **(제외대상)**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1천㎡ 미만, 사망·해외거주자, 부정수급으로 등록 제한 기간에 있는 농업인등, 농지대장(농지전용, 처분명령, 농지 이용실태조사 결과 등), 직불금 기준연도 미충족 농지 등
- ▶ **(사전안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충족 여부, 임대차계약 신규·갱신, 영농종사·농촌거주 3년, 신규신청자 및 관외경작자(50km 이상)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시설재배업·축산업 초과자 등

- 신청·접수 전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지급대상 자격요건 사전 검증 및 농업인 안내  
\* (중전) 신청·접수 이후 개인정보 활용 → (개선) 신청·접수 전 개인정보 활용

\* (중전) 기존수혜자 중심 신청·접수 안내 → (개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모두 사전 안내

- 신청·접수단계에서 읍·면·동에서 자격요건을 추가 확인·검증\*하여 부적격자 기본직불금 등록을 사전 차단

\*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0.1ha 미만, 신규대상자 자격요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등

**② (경작사실확인서 발급강화) 신규대상 등의 경작사실 여부 점검을 농지소재지 마을 단위로 확대하고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정등록 차단**

○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이 경작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50km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I ~ 인지지원 등급)는 농지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이 확인해주는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

○ 경작사실증명서 발급에 관한 기록이 없어 허위서류 제출 검토가 어려운 사항을 개선하여 이·통장은 발급 후 '발급대장 기록'하여 읍·면·동 제출

○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작사실확인서 및 발급대장 교차점검

\* 허위로 제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및 등록제한' 처분

**③ (불법임대차 차단) '23년 이후 신규·갱신이 필요한 임대차정보는 농지대장을 통한 증빙 방법으로 개선하여 단계적으로 불법 임대차계약 차단**

○ 농지법 개정·시행('22.8.18.)에 따라 공익직불사업 및 농업경영체는 임차농지 신규·갱신이 필요할 경우 농지대장의 농지정보를 확인 후 등록

**④ (현장조사 강화)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I ~ 인지지원 등급)를 중심으로 실경작 및 농지 분할 등을 위반하여 부정등록이 우려되는 대상으로 합동점검 추진**

○ 실경작 여부에 대하여 각종 검증정보를 활용하여 부정등록 우려자 중심으로 농관원·지자체 특별합동조사를 추진('24.5~9월)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위반, 관외경작자(50km 이상), 농자재구매이력無, 보조사업불일치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I ~ 인지지원등급) 등 대상

## 8 부정수급, 착오등, 감액지급 등 행정처분

가. 기본직불 등록자가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행정처분

나. 아울러 준수사항 위반, 행정질서 교란, 자격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에서 제외

① (전부 미지급) 행정조사 결과 기본직불 등록대상 농업인의 부정수급 발생, 자격요건 미충족 등이 확인된 경우 직불금 전부를 환수 또는 미지급

- 기본직불 등록 연도에 직불금 지급 전에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 조치, 징역 또는 벌금 처분 등을 받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 신규대상자 자격요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1천㎡ 미만 등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3호, 제4호)
- 농관원·지자체 등의 기본직불 관련 행정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8호 및 시행령 별표5 카목)
-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 전(9.30.)까지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3호)

② (일부 미지급) 행정조사 결과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증빙자료 미보완), 재배 조정의무 또는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기본직불금의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행정조사 결과 지급대상 농지의 폐경확인, 농지전용, 타용도사용, ‘무단점유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미제출 등이 확인된 경우(해당 필지 제외)
-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대상 농지등에 한정하여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당 필지 등분 제외, 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4)
- 준수사항 미이행자로 확인된 경우(각각 10% 감액, 법 제19조제1항제6호)

③ (착오 등) 농업인등 또는 행정기관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법 제19조제1항제9호)

④ (과태료) ▽조사기관의 조사·수거·열람 등을 거부·방해·기피,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법 제36조제1항)

① (개인정보 활용) 기본직불을 등록하려는 농업인등은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 등을 검증 및 준수사항 관리를 위하여 등록자의 개인정보 활용 필요

- (사전 안내) 공익직불제 적용 대상에게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가능(법 제6조의2 신설)
-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주민정보, 토지대장, 농업외소득 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하여 정보 보유기관에 자료를 요청, 정보 수집, 분석 등 추진
  - \* 소농직불 등록자의 경우 농가 구성원도 농업외소득, 농지소유면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가 필요
- (본인정보 공동이용) 「민원처리법」 개정('21.10.20.)에 따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MyData)이 가능하도록 규정
  - \* 2024년부터 직불시스템과 행안부 MyData와 연계될 예정으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 등 서류제출 간소화 등 가능

② (공익직불 통합정보망 구축) 공익직불사업의 관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확산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관리, 대국민 성과홍보 등을 위하여 정보화 사업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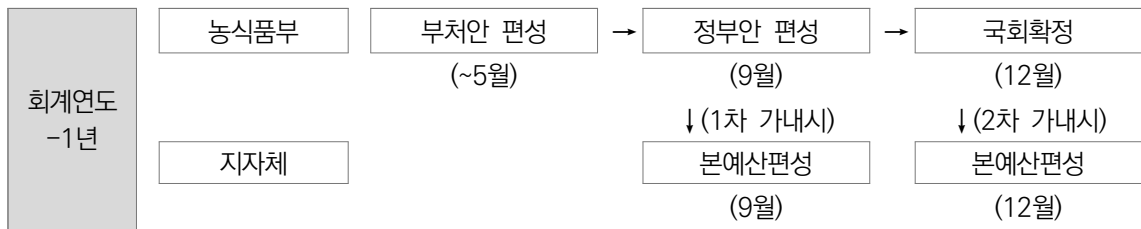
- (검증시스템) 착오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농지·소농 자격요건을 실시간 자동검증 시스템 구축
  - 자격요건, 실경작 여부 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확대
    - \*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장기요양판정등급(복지부), 농지대장(농어촌공사), GAP·친환경인증정보(AGRIX) 등(법 제6조의2, 제36조 반영)
- (사전검증) 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주민번호)·농지(PNU)를 기준으로 공적정보, 농지점검결과, 농지대장 등의 정보를 반영하여 사전에 표준화하고, 신청·접수 전 자격요건 사전 검증을 확대하여 부정신청 방지 및 맞춤형 지원 안내
- (통합접수) 차세대 아그릭스 구축에 대비하여 기본직불 시스템을 기반으로 경관보전, 친환경농업, 전략작물직불 등 통합 운영('25년~)

## 10 보조금 예산편성~정산, 환수금 반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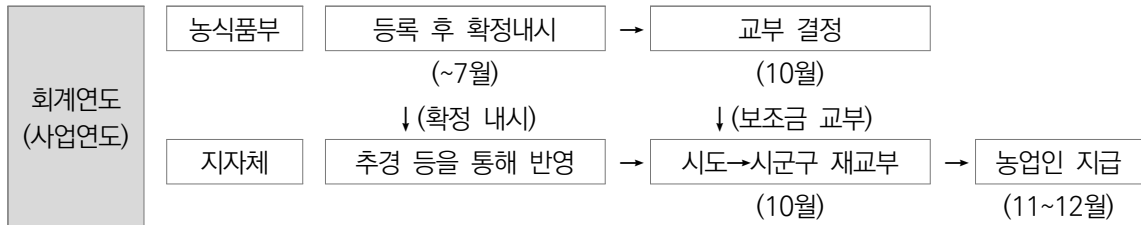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직불금 예산편성, 교부(농식품부 → 지자체), 집행(지자체 → 농업인), 정산, 반납 등의 절차를 준수

### ① 예산편성(사업연도 직전) : 지자체는 사업연도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안, 국회 확정안에 맞게 지자체 본예산편성

\*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기본직불금은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단가 또는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예산이 편성할 것으로 예상. 다만, 선택직불제 확대 등에 따라 지속 확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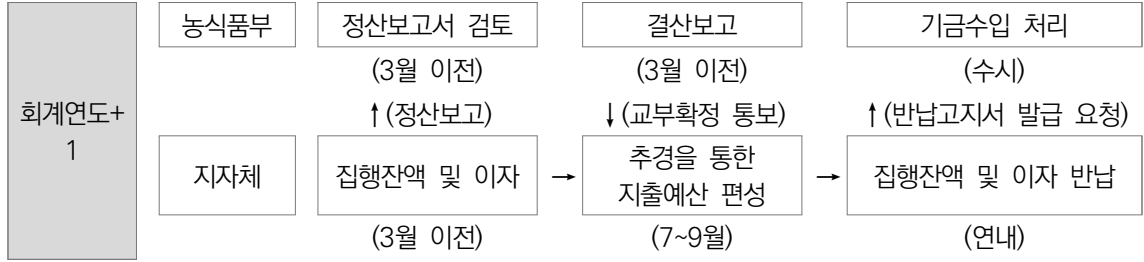
### ② 교부(사업연도) : 농식품부는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확정내시, 교부결정 통보하여 자금을 집행하고 지자체는 사업연도 내에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확정 내시 금액이 본예산편성 금액과 상이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자금이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조정 편성
- 농식품부는 지급대상자 확정 후 기본직불 시스템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시·도에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하고 시·도는 각 시·군·구의 예산에 맞게 재교부
  - e나라도움을 통해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시도 맵핑 작업 선행 필요하고 시·도는 e호조를 통해 각 시·군·구 사업 맵핑
- 시·군·구는 기본직불 시스템의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집행

\* (소농직불금) 관할 읍면동이 포함된 시·군·구, (면적직불금) 직불금 총액을 시·군·구 내의 농지면적 비율에 따른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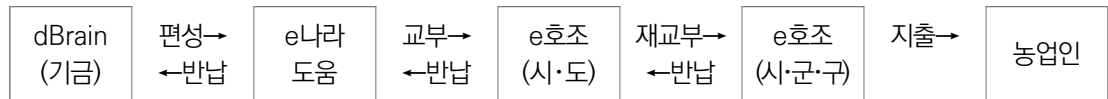
③ 정산(사업연도 직후) : 지자체는 보조금의 집행결과,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는 연도 내에 반납 조치



- 각 시·도는 시·군·구의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보고받아 농식품부에 정산결과 보고(시도 → 농식품부, 3월 이전)
- 농식품부는 집행 결과 등을 검토하여 집행잔액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교부 확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 3월 이전)
  - 교부 확정 통보를 받은 지자체는 집행잔액을 연도 내에 반납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지출예산 편성하고 반납하고자 할 때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문서)

※ 사업비\*의 교부, 집행, 정산, 반납 등에 관한 절차를 재정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 공익직불금(기본직불, 경관보전, 친환경, 전략작물), 지자체 행정경비, 토양검정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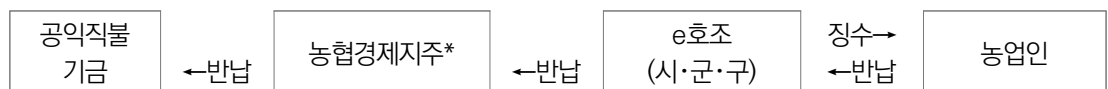


④ 부정수급액 및 제재부가금 등 반납 : 직불금 지급 이후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된 직불금의 환수, 제재부가금 반납 등이 발생된 경우 공익직불기금 수입계좌로 반납

- 시·군·구는 지급된 직불금의 환수,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 및 반납고지서를 발급한 경우 기본직불 시스템에 등록(수시)
- 시·군·구에서 환수금,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등을 반납할 때 시·도 및 농협경제 지주(양곡부, 문서24 수신처)에 문서로 반납 통보

\* 시·도는 시·군·구에서 반납한 내용(대상자, 금액)를 상시 관리

※ 지급된 직불금의 환수, 부정수급액 및 제재부가금·가산금 등은 공익직불기금에 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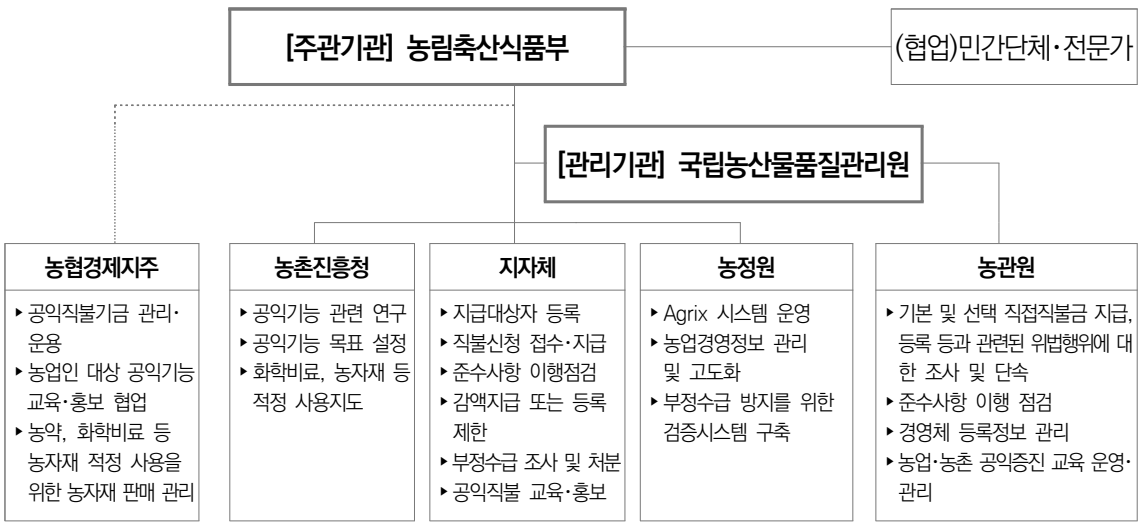
기본형 공익직불	301-0286-2693-51	친환경농업직불	301-0286-2705-71
경관보전직불	301-0286-2724-21	전략작물(논이모작)	301-0286-2731-61
쌀변동직불금	001-01-322590	쌀고정, 밭직불 등	농특회계(구조조정)

## 11 공익직불 지도·감독 등

가. 공익직불제의 운영과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등록부터 지급·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지도(법 제38조)

\* 대상 : 기본직불 및 선택직불 대상 농업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지자체

### ① (관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 ② (관리업무 분야) 공익직불제 운용과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지자체, 농업인, 교육기관 등 지도, 조사 및 단속(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지급대상자 등록신청·등록, 변경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지도 및 단속
- 선택직접지불금의 지급, 지급대상자 선정·등록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선택직접지불금 지급제한·환수, 지급대상자 선정·등록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지도 및 단속

- ③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 관리기관은 농식품부 지도등의 시행계획에 따라 관련 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그 추진 결과를 매년 11.30일까지 보고
- 농관원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점 점검항목은 매년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결정



### III 사업추진 절차

업무 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23.12~ '24.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수요 등을 반영 등록연도 시행지침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수사항 관련 사업시행지침(점검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li> </ul> </li> <li>▶ 농업인 대상 기본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방송, 일간지·전문지,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li> </ul> </li> <li>▶ 사업연도 기본직불 대상 사전정보 구축 및 자격요건 검증</li> </ul>
② 직불금 신청·등록	(비대면) 2.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등록연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결과 적합한 대상 비대면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문자발송 →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자동 접수 → 접수완료 문자발송</li> </ul> </li> </ul>
	(방문) 3.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지·소농직불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합한 대상에게 전부 신청서 인쇄, 안내 문자 발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 신청·접수하지 아니한 기존 대상으로 등록신청서 인쇄·배포 등</li> </ul> </li> </ul>
③ 지자체 등록증 발급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관외거주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li> <li>▶ 기본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소재지 기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1~ 인지지원등급), 공동경작 등 경작사실 확인서 필수 첨부</li> </ul> </li> <li>▶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대상자 정보 공개</li> <li>▶ 지급연도 기본직불금 가내시 통보(6월)</li> </ul>
④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	5~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정보 변경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지속(~9.30.)</li> <li>▶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대상 등 농관원·지자체 특별합동 현장점검(5~9월)</li> <li>▶ 준수사항 이행점검(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li> <li>▶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9.30.)</li> <li>▶ 기본직불 자격요건 최종 점검(농업외소득, 빅데이터분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은 시·도 담당자 조정</li> </ul> </li> </ul>
⑤ 지급금액 산정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 및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li> </ul> </li> <li>▶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시스템)</li> <li>▶ 기본직불금 교부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 시군구)</li> </ul>
⑥ 직불금 지급	1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li> <li>▶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직불금 지급 완료 후 15일 이상)</li> </ul>
⑦ 사후관리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불금 콜센터(1334) 및 시·군 신고센터</li> </ul> </li> <li>▶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li> </ul>

### □ 목 적

-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

### □ 사업내용

-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직불금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
-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농업인), 전략작물재배 1,000㎡ 이상(작기별) 등

### □ 지원내용 및 예산

- 대상 품목
  - 동계작물 :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호밀, 귀리, 조사료 등
  - 하계작물 : 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
- 예산 : 186,450백만원(국비 100%)
- 지원단가
  - 동계작물 : 50원/㎡
  - 하계작물 : 100~430원/㎡(가루쌀·두류 200원/㎡, 조사료 430원/㎡, 옥수수 100원/㎡)
- \* 동계 밀·조사료 + 하계 두류·가루쌀 이모작 시 100원/㎡ 추가 지급

### □ 사업 신청

- 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
- 등록기간 : 동계작물 '24.2.1.~3.31, 하계작물 '24.2.1.~5.31

□ 지급 절차

- 신청서 등록(2~5월) → 전략작물직불금위원회(4월, 7월) → 이행점검(4~6월, 7~10월) → 지급대상자 검증(7월, 10월) → 지급대상자 확정(7월, 11월) → 직불금 지급(8월, 12월)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총괄)	서기관 곽기형 주무관 이종훈	044-201-1835 044-201-1843
	식량산업과 (두류)	사무관 노규진 주무관 신민경	044-201-1838 044-201-1837
	전략작물육성팀 (가루쌀)	서기관 한태희 주무관 김혜진	044-201-2915 044-201-2916
	축산환경자원과 (조사료)	사무관 김보민 주무관 조영웅	044-201-2355 044-201-235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공익직불 상담 및 부당수령	1334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농업정보실 (Agrix)	시스템 상담지원	1588-6830

## II

## 자격요건 등 주요 내용

### 1 지급대상 농지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 ☑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전락작물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畓)

-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12조
<p>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 직접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p>	<p><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li> <li>2.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할 것</li> <li>3. 이웃한 농지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할 것</li> <li>4.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li> </ol>

- ③ 하계조사료의 경우, '23년에 정상적으로 하계조사료 전락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18~'20년 기간 중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21~'23년 기간 중 지자체 벼재배 자율감축협약(공공비축미 인센티브)을 통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23년도 벼를 재배한 농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 ①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다만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배에 대해 시장·군수가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②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③ **부정수급(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수령하거나 농지를 분할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 (1)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농지이거나, (2) 부정수급자가 새로 농지를 구입하더라도 등록제한 처분 기간(3년)이 경과하지 않은 모든 소유 농지(기존+신규 구입)
- ④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약이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해당 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 ⑤ 「농지법」 제36조·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약이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가 해당 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 ⑥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되,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지구·지역·단지의 농지 중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 ⑦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지급대상 확정(5.31일 이전) 전까지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참고 1)  
 △ 농지대장 시행(22.8.18)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규·갱신이 필요한 경우 농지 대장의 등록정보를 활용

-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 등을 통해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 농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토지대장 등 “원인 관련 증빙자료” + 해당 필지 사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산세납부확인서”(「지방세법」 제107조제3항) + “경작사실확인서”를 모두 증빙할 필요

\* 다만,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인 농지는 제외(소송 등 분쟁 여부 확인 곤란시 해당 사실이 아닌 경우 부정수급자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는 확인서 작성 - 양식은 별도 송부)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부동산업이 금지되어 농업인이 임대차 등을 통해 공익직불 신청·등록 불가(「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19조의5)

⑧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신청(전략작물 직불 신청면적합이 공부상 농지면적을 초과)한 경우

△ 공동소유, 공동경작하는 경우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분의 면적을 인정**

△ 같은 농지를 중복하여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자 확정(5.31일) 이전에 지자체는 실경작 확인 후 실제 경작자만 인정 → **5.31일 이후 중복신청필지는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

⑨ 지급대상 농지(필지기준) 중 “농지의 형상”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면적(폐경)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콘크리트 등 타설, 골재채취장·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 전략작물 직불 신청한 농지가 필지 단위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전체 폐경, 호수 등)이고 종전에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조치

※ 전략작물직불 등록자는 경작에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여 신청하고, 사전에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을 하여 현행화 필요

⑩ 전략작물직불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 확정(5.3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농지

\* 다만, 하계작물, 이모작 대상으로 신청한 농지는 10.31까지 농업경영체 유지

⑪ 동일한 작기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다만, 작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개정 시 적용, '24.2월 예정)

- ⑫ 과수원, 다년생작물재배농지, 온실·비가림시설과 같은 고정식시설이 설치된 농지는 제외하되, 단동 비닐하우스와 같이 철거가 가능한 이동식온실이 설치된 농지는 비닐 및 파이프 제거를 조건으로 인정 가능

〈동계 예시〉

구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인, 신청농지)	[동계작물 재배 기간 표시]											충족
	(신청 후 경영정보 삭제 또는 삭제 후 재등록)											미충족
농지정보 분할·합필 등	[동계작물 재배 기간 표시]											충족
	(신청 후 자격요건 유지기간 중 변동)											보류

\* 신청 후 자격요건 유지기간 중 농지정보가 변동 된 경우 농업경영체정보 변경 필요

2 지급대상 농업인 등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작기별로 논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동계작물은 11~6월, 하계작물은 6~11월 사이의 기간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정상적으로 관리한 경우 지급

\* 녹비용으로 재배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

-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 (참고 2)
-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 (참고 3)
- ③ (승계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락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산입 가능

△ 승계자는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급대상 농지가 임차인 경우에는 무단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함

△ 전략작물직불 등록자가 사망하였으나 승계자가 없거나 승계 자격요건이 맞지 아닐 경우 당해 연도 **직불금 미지급**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농업인등에서 제외**

①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등록자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농업인만 적용)

② 등록신청 작기별로 전략작물 재배 등에 이용(폐경 및 휴경면적 제외)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 미만인 자

③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 기간 중에 있는자

④ 논활용직불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 기간은 개월수가 아닌 연단위로 반영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자

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부 재정사업의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⑦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3호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 전략작물직불 등록자의 승계처리



① '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전에 승계 사유가 발생된 경우 전략작물직불 신청·접수 전 농업 경영정보를 수정하고 승계대상자로 접수

② 전략작물 직불 등록 ~ 지급 전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 전략작물직불 등록정보 변경

- 동일 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승계하는 경우 기존 기본직불 등록자를 승계대상자로 전환
- 다른 경영체에 등록한 자가 승계하는 경우 기존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삭제하고 승계대상에 따라
  - ① 기존수혜자인 경우 해당 농지 추가
  - ② 경영체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 승계처리



### 농업인 자격유지 기간 참고

구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농지정보 분할주민정보(G4C) (신청인 주소 등) 합필 등	 (신청 2.1. ~ 유지기간 (동계) 5.31 / (하계): 10.31.)										충족	
	 (신청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다 유지기간 내 도시지역으로 전출)										보류	

\* 자격요건 유지기간 내 주소변동으로 인한 도시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3 지급대상 품목

- (동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고정시설면적 제외)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
- (하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또는 하계조사료**
  - \* 하계조사료는 10월말까지 수확 완료, 총체벼는 이삭이 있는 상태에서 예취해야 함
  - \* 다년생작물 사이작이나 고정식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이모작 인정기준) 논(畓)에서 동계에는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하계에 두류 또는 가루쌀을 재배한 경우

- ①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동계 식량작물**
  - \* 다만,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
- ② **알팔파, 청예보리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 조사료 : (목초)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아라이그라스, 토끼풀, 툴페스큐, 티모시 등 34종 (풋베기사료)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등
- ③ **가루쌀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채종단지, 시범단지 등 포함)에 포함된 농지에 한함**
- ④ **두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 두류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6~10월 기간에 재배하는 경우로, 전후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 없음)
- ⑤ **하계조사료는 총체벼(청예벼), 옥수수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곡물, 목초 및 풋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별지 15호 서식) 또는 종자공급증명서(선택) 제출

△ '18~'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조사료를 재배한 경우 및 '21~'23년까지 지자체의 벼재배 자율감축협약(공공비축미 인센티브)을 통해 조사료를 재배한 경우 지자체에서 사실확인

△ '23년 벼를 재배한 농지의 경우 벼 재배사실확인서(별지 14호서식) 제출

- ⑥ 이모작 인센티브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며, 동계 밀·조사료와 하계 두류·가루쌀을 같은 농지에서 재배한 경우 하계직불금에 더하여 추가 지급

#### 4] 지급단가 등

- ☑ (동계작물) 50원/㎡
- ☑ (하계작물) 가루쌀·두류 200원/㎡, 하계조사료 430원/㎡, 옥수수 100원/㎡
  - 동계 밀·조사료 재배 후 하계에 두류·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100원/㎡을 하계에 추가하여 지급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농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전략작물직불금 대상품목 재배양식별 지급대상 면적 산정

- ① 한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 지을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하여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
- ② 한 필지 내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혼작, 간작, 색동재배, 디자인재배 등)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비대상품목 재배면적은 제외
  - \* (예시) 필지면적 1,000㎡, 색동재배 시 대상품목 재배비율이 80%일 경우 지급대상면적은 1,000㎡ × 80% = 800㎡
- ③ 한 필지 내에 일부는 대상품목을 식재하고, 일부는 휴경할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휴경면적은 제외
- ④ 이모작 인센티브 지급액(1ha당 100만원)은 동·하계작물 식재면적 중 적은 면적 적용하고 각각 1,000㎡ 미만인 경우는 각각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 (예시) 동계작물로 10,000㎡를 재배하고 하계에 같은 필지에 콩을 5,000㎡ 재배한 경우 이모작 인센티브는 5,000㎡ × 100원 = 500,000원
  - \*\* 2,000㎡에 밀을 재배하고 하계작물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경우 동계작물 직불금만 지급

- 지원형태(재원) : 국고 보조 10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 : 30ha (300,000m<sup>2</sup>)

△ 농업법인 : 50ha (500,000m<sup>2</sup>)

△ 공동농업경영체(들녘경영체) 농업법인 : 400ha (4,000,000m<sup>2</sup>)

\*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 면적에 관하여는 농업인 30ha를 적용

\* 지급상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농지를 모두 접수하되, 직불금은 지급상한 면적까지만 지급

## 5 전략작물직불 부정수급 등

- ❑ 전략작물직불 등록자가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법 제43조) 엄격하게 처분
- ❑ 부정수급,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지급한 직불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①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을 기망한 경우 ① 전략작물 직불금 전액 환수, ② 3년 등록제한, ③ 부정수급자 정보공개,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조치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43조(벌칙), 제44조(양벌규정), 동법 시행령 제50조(전략작물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강제징수),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제40조(벌칙)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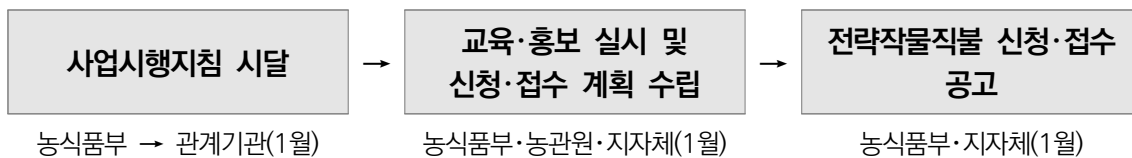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구성요건상 행위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질 것으로 규정(대법원 2002.12.24. 선고 2002도5085판결등)
  -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행정기관이 이로 인하여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
  - 불법영득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직불금 수령 등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 ▶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인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03판결)
- ▶ (착오 등) 행위자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벌하지 아니함(「형법」 제16조)
  - 착오 등(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또는 행위자 모두 발생할 수 있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는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 착오 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지급한 금액'은 수령한 금액 전부가 아닌 착오 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환수(대법원 2019.2.21., 선고 2014두12697)

### Ⅲ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업무 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신청·접수 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지침 시달</li> <li>▶ 농업인 대상 전략작물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li> <li>▶ 사업 교육·홍보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자체별 자체 교육·홍보 계획 수립 및 실시</li> <li>* TV방송, 지역언론, 새해영농실용화 교육, 이통장 월례회,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한 홍보 실시</li> </ul> </li> </ul>
② 신청·접수	2~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신청(농업인 등) 및 접수(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전략작물직불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 제출</li> <li>* 임차 농업인은 농지의 신규임차, 임대차 종료 등 적법한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안내</li> </ul> </li> <li>▶ 신청서 전산입력(읍면동)</li> <li>▶ 동계와 하계를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함</li> </ul>
③ 신청자 정보공개	4~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지번, 면적, 품목 등 신청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부(agrix.go.kr) 및 시군구 홈페이지</li> </ul> </li> </ul>
④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4~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서류 및 현지조사</li> <li>▶ 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대상농지 적격여부,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li> </ul> </li> <li>▶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대상 제외자에게는 해당 사유 통보</li> </ul> </li> </ul>
⑤ 등록사항 변경 및 동계작물 이행점검	4~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하계는 6월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li> </ul> </li> <li>▶ 동계작물 이행점검(농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 등</li> </ul> </li> </ul>
⑥ 지급요건 검증	4~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요건 검증(대량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자 및 등록농지 전수검증</li> <li>* 유관기관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li> </ul> </li> </ul>
⑦ 하계작물 이행점검	8~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계작물 재배 및 이모작 재배 여부 이행점검(농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 등</li> </ul> </li> </ul>
⑧ 직불금 지급	1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li> </ul> </li> <li>▶ 전략작물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Agrix홈페이지)</li> </ul>
⑨ 사후관리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불금 콜센터(1334) 및 시·군 신고센터</li> </ul> </li> <li>▶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li> </ul>

## 1 전략작물직불 신청·접수 전



###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시달

### ② 신청·접수 전 사전준비(농관원, 지자체)

△ 농관원은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先 경영체등록정보 변경, 後 공익직불금 신청체계 정착을 위한 농업경영체 신청·접수계획 수립

△ 농관원·지자체는 현장조사원 및 전산보조원 채용 등 사전준비 철저

\* 사무소, 읍·면·동 여건(신청·접수 건수, 소농직불 대상 등)을 고려하여 인력 배분

### ③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 농식품부는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순회교육(영상회의) 실시

△ 시·도(광역시·도)는 관할 시·군·구(기초)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실무교육 실시

**시·도(시·군·구)는 자체 실무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2월말까지 농식품부로 제출**

### ④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 지자체는 및 농관원은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동장·이장단 원례회·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홍보지·지방지·현수막·홈페이지 배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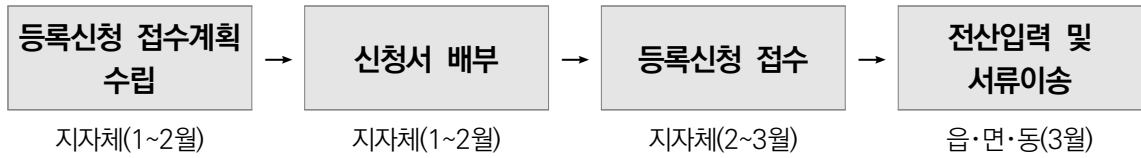
### ⑤ 등록신청 공고(농식품부, 지자체)

△ 농식품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접수일 7일 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등록신청 공고

\*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 향후 홍보 미흡에 따른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고 실시

## ② 등록신청 접수 등



### ① 등록신청 접수계획 수립(지자체)

△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등록신청 계획을 수립

△ 시·군·구 직불담당자는 읍·면·동 직불담당자 대상 전략작물직불 주요 자격요건 및 전산 보조원 전산입력 사항 등을 숙지하고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

### ② 신청서 배부(지자체)

△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각각 전략작물직불 등록신청서 인쇄 및 배부(1~2월)

△ 신청서는 전년도 지급 수령자를 기준으로 배부하며, 신청서를 배부받지 아니한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접수

### ③ 사업신청(농업인 등)

△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등록신청

### 전략작물직불 등록·신청은 농업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기본원칙

\* 다만, 고령 농업인 등을 감안하여 이장·동장 등의 협조는 가능하나, 신청 누락 등 향후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 등록신청 기간

- (동계작물) 2. 1. ~ 3. 31.

- (하계작물) 2. 1. ~ 5. 31.

#### △ (등록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이 원칙, 다만 민원인 요구 및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면적과 관계없이 담당공무원의 재량으로 신청접수 가능

### ④ 신청시 제출서류(농업인 등)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 (참고 6)

\* 그 밖의 등록신청 담당 공무원이 지급대상자임을 조사·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구 분	기존 수급자	신규 신청자	비고
<b>I. 전락작물직불 신청서</b>			
1-1. 전락작물직불 신청서	☑	☑	
<b>II. 지급대상 농지 증명</b>			
2-1.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2-2. '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2-3. 지급대상 제외 농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되는 농지 * 하천농지, 전용취소, 주·상·공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	☑	
2-4.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 * 국·공유지, 불가피하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농지, 종종농지 등 포함	☑	☑	
<b>III. 지급대상자 증명</b>			
3-1.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	☑	☑	
3-2.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둔 자		☑	
3-3.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승계자	☑	☑	

⑤ 신청서류 확인(지자체)

△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 후 접수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 미비한 신청서류는 접수받은 읍·면·동에서 보완 완료 후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

**전락작물직불금 대상품목 재배양식별 지급대상 면적 산정**

① 직불금 수령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직불금 신청자는 신청서 상 “수령자”와 동일해야하며, 신청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번항목 중 ④

④(수령자 성명) <i>직불금 신청자 성명 기재</i>	(연락처)	(은행명) <i>(계좌번호) 직불금 신청자 명의 계좌만 가능</i>
-----------------------------------	-------	--

② 임대차계약기간 확인 및 입력 철저

- 임대계약 기간 종료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이나, 전년도와 변동이 없을 시 면제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임대계약기간 종료시점 확인 필수

③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지급대상 제외 가능여부 안내 철저

- 공동경작 농업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 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자격 요건을 필히 안내하여 민원사례 예방

## I 사업 개요

## □ 목적

-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

## □ 사업내용

-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월~당년 10월)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 단, 친환경인증은 사업 기간인 전년 11월부터 당년 10월까지 유효해야 함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지원 기준: 국고 100%, 지자체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지급한도: 0.1~5.0ha/농가
  - 지급기한: 유기 5년(무농약 3 + 유기 2), 무농약 3년
  - 지급단가

구분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논		700천원/ha	500천원/ha	350천원/ha
밭	과수	1,400천원/ha	1,200천원/ha	700천원/ha
	기타	1,300천원/ha	1,100천원/ha	650천원/ha

- '24년 예산: 22,832백만원(국비 22,832)



□ 사업 신청

- 장소: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 기간: 3~4월

□ 대상자 선정

- (선정) 사업 신청 기간 내 신청한 자로서 지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5월)
- (확정)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자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 기간(전년 11월~당년 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11월)

\* ①시·군·구에서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지급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②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 준수 여부, 인증 변동사항 확인, 위반 의심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박치형 주무관 정인화	044-201-2435 044-201-2434

###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 지원대상 농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24년도 사업기간('23.11월~'24.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등과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 지급대상 제외 농지 〉

-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培地)나 재배용기·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등(다만, 토양을 관리하면서 종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식재 후 상당 기간이 경과 되어 외관 상 자생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을 포함함)을 굴취·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
-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등,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등
-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 등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지원형태: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단위: 천원/ha)

인증단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기본형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 농지는 친환경직불도 논단가로 지급. 그 외 농지는 농지의 이용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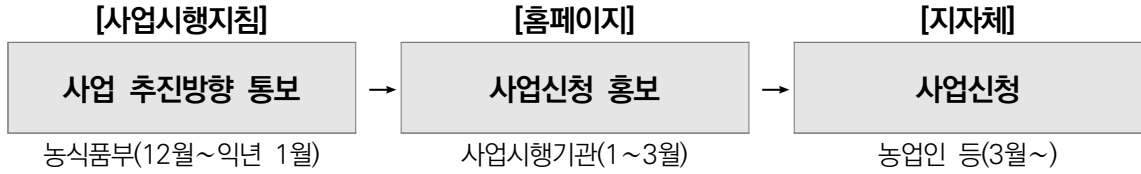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0.1~5.0ha
  -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5ha를 초과할 수 있음. 이 때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5ha를 초과할 수 없음
  - \* 예시) 법인에 소속된 개별 생산자 A(7ha), B(6ha), C(4ha)의 경우 법인 대표가 14ha를 신청, A, B, C는 각각 5ha, 5ha, 4ha에 대한 직접지불금 수령
- 지급 기간 및 방법: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기지속직접지불금은 수령 가능
  - 같은 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유기·무농약)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에는 추가 2년(2회) 지급
  - \* 최초 인증필지(유기·무농약 인증 종류 무관) 3년(3회) + 유기는 추가 2년(2회)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농약→유기 또는 유기→무농약)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접지불금 지급
  - \* 이행점검 종료일(10.31)을 기준으로 함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접지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홍보 및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인증기관 등에 시달(12월~익년 1월)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1월~3월)
  -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읍·면·동)에 제출하도록
    - \*\* 사업기간 중 인증종류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인증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갱신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사업기간 내 인증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공지

#### 가. 사업신청

- (개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필요시)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 신청서류: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②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 (생산자단체)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 가능
  - \* 신청서류: ①, ②와 신청인 정보, 입금계좌, 인증종류, 품목, 농지 소재지, 재배면적이 포함된 신청 세부현황

나. 사업신청 기간: 3.1.~4.30.(전산입력 기간: 3.1.~5.10.)

다. 사업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 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 전년도 10월 이전 신규 인증을 받은 필지는 금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직불금 지급 시 신청 필지에 대한 인증이 유효해야 하므로 사업 기간 내 인증 갱신 필요)

## 2. 사업 선정 및 이행 단계

###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5.10. 까지)
  - 신청 자격, 논·밭 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면적 한도, 지급횟수 초과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 단가 조정
    - \* 읍·면·동 담당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기간, 인증필지·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

### 나. 사업 선정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 일체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 인증기관에 인증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 승계가 승인된 경우에 한하며, 직접지불금은 사업기간 내에 승계를 받은 농업인에게 지급
    - \*\* 인증사업을 승계받은 농업인은 직접지불금 이행점검 만료일(10.31.)까지 인증정보 변경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인증기관) 사업 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 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 농지의 주소(지번) 변경, 필지 수 및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 상의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지속되어야 함
- 변경신청 기간: 변경 및 승계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장(읍·면·동)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 변경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AgriX 운영기관(1588-6830)에 변경기능 허용 요청 후, 자료 입력(AgriX 운영기관은 시·군·구의 요청 시 즉시 조치할 것)

## 다. 사업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5.20.까지)

## 라.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31. 까지)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별지 제2호 서식]
  - \* 단,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 마.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대상자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11조와 제54조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 및 인증 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기관별 점검 사항
  - (인증기관) 인증정보의 유효성 전산 검증
    - \*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과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지자체에 전송
  - (시·군·구)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지급 한도(면적·횡수) 초과 여부, 중복신청 등
    - \* 인증기관이 전송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 인증기준 위반 의심 농가는 현장점검 의뢰
-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 인증기관)
  - 시·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의 신청정보에 대해 인증기관 전산검증 요청(5.21. 까지) / 신청정보 변경 시 수시 요청
    - \* 전산(Agrix) 운영기관(1588-6830)에서 수정 권한 부여 후 이행점검 기간 중 입력 가능
- 이행점검 기간: 5.21.~10.31.
  - (시·군·구) 인증기관에서 회신한 전산검증 결과 확인 후 조치
  - (인증기관) 인증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 발생 시 생산과정조사 등 추진(실경작자 의심 등 중요 불일치 사항은 농관원과 협조하여 추진)
-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정기/수시, 10.31.까지)
  - 필요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면적과 신청면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산(Agrix)으로 입력(통보)

## I 사업 개요

## □ 목 적

- 친환경축산 농업경영체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 사업내용

- 신청일 현재 HACCP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유기)을 받은 농업경영체에게 직불금 지급

## □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받고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에서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HACCP 농장인증의 경우 업종이 ‘가축사육업’이어야 함

- 동일 농장이나,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농장인증을 받은 자가 다를 경우(가족 등)에도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취소 등의 처분이 없다면 지원 가능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에게 직불금 지급
- '24년 예산: 1,585백만원(국비 100%, 직불금 960백만원, 교육·컨설팅 625)

##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장소재지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24.3.2.~3.31.)
- 대상자 선정: 신청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24.4.12.)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 장 서준한 서기관 김 성 주무관 이주희	044-201-2351 044-201-2352 044-201-235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과 장 전익성 사무관 노미숙 주무관 곽아름	054-429-7800 054-429-7807 054-429-7809



## II 주요 내용

###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과 같음. 이하 같음) 인증을 받은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고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에서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 HACCP 농장인증의 경우 업종이 ‘가축사육업’이어야 한다.
- 동일 농장이나,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인증을 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도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취소 등의 처분이 없다면 지원 가능

### 3. 지원기준 및 지급기간 산출방법

- 지원기준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 지급 (불연속인 경우 총 5회 지급)
- 지급기간 산출방법
  -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5년간만 지급
  - 5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이 5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 다만, 가족일 경우라도 개별적으로 친환경인증 및 HACCP인증을 받고 독립 축사를 관리·운영시 각각 직불금 지급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경영체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농업농촌공익증진기능직접지불기금(공익증진기금)
- 지원형태 : 국고 보조 100%
- 지급대상 기간 : '23. 11. 1. ~ '24. 10. 31.
  - HACCP 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지급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다만, 근거자료에는 친환경인증 여부를 알 수 있는 문자(유기인증)나 인증도형 표시가 있어야 함
  -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종축,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단가
  - 한 우 : 170,000원/마리
    - \* 육우는 한우 지급단가 보다 50% 감액 지급
  - 젖 소(우유) : 50원/L(우유 1ℓ 는 1.03kg임)
  - 산 양(산양유) : 4,584원/마리(산양유 34원/리터)
  - 돼 지 : 16,000원/마리
  - 육 계 : 200원/마리
    - \* 토종닭은 육계 지급단가 보다 30% 증액 지급
  - 산란계(계란) : 10원/개
    - \* 다만,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음.  
산식 : {(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입증량 × 단가)} × 0.5
  - 오 리 : 400원/마리
  - 오리알 : 20원/개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3천만원

- 아래 지정 농장(①~③) 중 하나 이상의 지정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직불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직불금 지급기간('23. 11. 1. ~'24. 10. 31.) 보다 짧은 경우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를 가산 함

- ①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
-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
- ③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에 따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

- \* 직불금 지급 시점에 지정이 유효할 필요는 없음
-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

○ 지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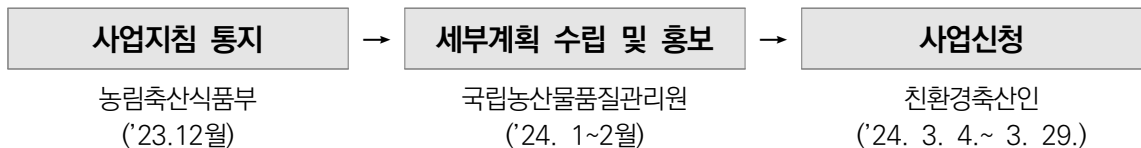
- '23. 11. 1.부터 '24. 10. 31.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24. 12월 지급
  - \* 다만, 산란계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1개월 미만은 제외)
-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상기간 중에 친환경 및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인증을 연장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당해연도에 종료된 경우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
  - \* 직불금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은 유효하나 당해연도 기간(사업신청일로부터 지급대상기간 종료시까지) 중에 인증 유효기간이 연속되지 못하고 인증기간의 공백이 생긴 경우에도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
  - \*\* 단, 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직불금 지급을 할 수 있으나,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기간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음

### 1.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축산물의 생산·판매실적을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관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2. 사업신청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홈페이지 공고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전체 농업경영체에게 개별 통보 등 홍보 실시('24. 1~2월)
- 사업신청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장 소재지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24. 3. 4. ~ 3. 29.)
- 신청서 양식 :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신청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 사업신청자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해야 함

### 3.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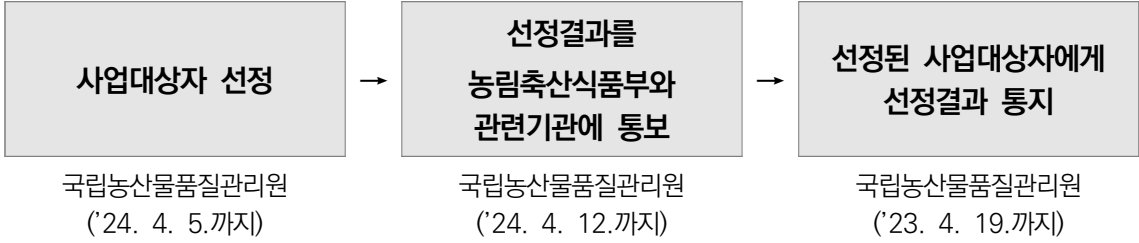
#### 가. 사업대상자 선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신청 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①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 ②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 ③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 ④ 친환경 인증과 HACCP인증을 받은 일자가 빠른 농가(두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
- ⑤ '④'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 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 ⑥ '④'와 '⑤'가 모두 같은 경우 사육 규모가 큰 농가

-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기자로 선정·관리
- 불용예산 발생 시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선정
  - 사업대기자 중 위의 사업대상자 선정순위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통지 양식 :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대상자(사업대기자 포함)로 선정된 인증사업자에 대해 인증 교육을 실시하고, 인증사업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 \* 친환경축산직불 교육·홍보 사업 활용 가능

## 나.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축사)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 사업대상 축사(농장)의 경영주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경영체에 지급 함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 (농지현황)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지번)변경, 인증 품목 축소, 필지 수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에 기재된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 변경신청 기간 : 인증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별지 제3호서식]의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 제출
  - 변경신고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 변경된 인증서 사본,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 등 변경 건에 맞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4. 이행점검 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민간인증기관에서는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축산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이행점검 요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관원 지원·사무소 및 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은 직불금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지원·사무소 및 인증기관(HACCP 및 친환경 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이행점검을 요청('24. 4. 26.까지)
- 이행점검 기간 : '23. 11. 1. ~ '24. 10. 31. (1년간)
- 기관별 수행사항
  - (인증기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표 5(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에 따른 연 1회 이상의 생산과정조사
  - (농관원 지원·사무소) 인증번호·인증농장·축종 등 일치 여부 등 인증 정보 유효성 검증, 농업경영체등록·변경 여부, 직불금 중복신청 여부 등 점검
- 점검결과 통보(농관원 지원·사무소 및 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관원 지원·사무소 및 인증기관은 이행점검 결과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에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행점검 결과 등을 종합 검토('24. 11. 11.까지)

####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농업경영체는 거래내역서(정산서, 세금계산서 등)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직불금을 신청('24. 11. 1.~11. 8.)

- 신청서 양식 :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신청서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대상자의 자금 신청결과 직불금의 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지급대상자를 선정·통보하고, 해당 지원·사무소로 세금계산서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
  - \*\* 직불금 신청 기간 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이 제출한 이행점검 결과와 자체 점검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24. 11. 15.까지)
  - 인증취소, 인증기간만료, 신청포기, 사업장소재지 및 인증품목 불일치 등 부적격자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가에서 제출한 직불금 신청서, 자격요건 및 생산·판매 실적 확인('24. 11. 15.~11. 29.)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생산·판매 실적 확인 결과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24. 11. 29.까지)

#### 나. 사업비 배정 및 직불금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사업비 배정('24. 12. 9.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농가에게 직불금 지급('24. 12. 13.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비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지급대상 기간 내 입증된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직불금 지급

#### 6.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제재)

- 당해연도 기간 중에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포기한 날부터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인증기관은 이행점검 종료('24. 10. 31.) 후에도 직불금 지급 시까지 지급대상자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통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직불금은 환수하고, 향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직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이후 신청 포기 시, 다음 연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7. 이행점검 등 전(全)단계 협조사항

-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은 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I 사업 개요

## □ 목 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과 준농촌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사업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와 마을(지구) 단위의 경관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직불금 지급
- 지원 기준 : (경관, 준경관작물) 국고 50%, 지방비 50%,  
(준경관초지작물) 국고 80%, 지방비 20%
  - 지원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ha
  -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24년 예산 : 32,850백만원(국비 16,830, 지방비 16,020)

## □ 사업 신청

- 농업인등은 마을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제출(5월 15일)
- 시장·군수는 사업 신청지구를 시·도지사에게 추천(5월 말)하고, 시·도지사는 추천 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작물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6월 10일)

##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 신청 현황, 전년도 협약체결 실적 및 이행실태 점검 결과, 예산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사업대상 면적을 배정(7월 말)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 신청 현황, 전년도 협약체결 실적 및 이행실태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사업면적을 배정(8월 10일)
- 시장·군수는 신청받은 사업 신청지구에 대해 경관 전문가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게 한 후 시·도에서 배정받은 면적 한도 내에서 사업 대상지구를 선정(8월 말)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9~10월)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사무관 이지숙	044-201-156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사무관 노미숙 주무관 곽아름	054-429-7807 054-429-780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스마트농정실(AgriX)	콜센터	1588-6830

## II 주요 내용

###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이하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

\* 관련법령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6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또는 초지는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 ※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 이전(이행점검일 포함)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나. 지급대상 농지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 이상이어야 함

❖ 경관작물 집단화 기준 ❖

○ 집단화는 원칙적으로 필지끼리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한 농지면적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관작물 집단화 면적에 포함 가능함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또는 1필지 이내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집단화 포함)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건물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집단화 포함)

※ 집단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기준으로 격리 거리 측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원받는 농지

② 해당 작물의 정부수매 또는 녹비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및 초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은 농지

③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 이전(이행점검일 포함)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지

④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프로그램 등과 연계되지 않는 농지

⑤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약이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

⑥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약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농지

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의 농지

⑨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⑩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 ⑤~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라도 사업신청서 제출일부터 이행 여부 확인·점검 시까지 경관작물의 재배·관리가 가능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초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초지
  -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초지로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초지
    - ※ 준경관초지작물의 경우 집단화 최소면적 미적용
    - ※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 이전(이행점검일 포함)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초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① 「초지법」 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또는 목초·사료작물 이외 실제 논·밭·과수 농업에 이용되는 초지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초지
    -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제8조에 따른 국가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의 초지
    - ④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초지
    - ⑤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지
    - ※ ②~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지라도 사업신청서 제출일부터 이행 여부 확인·점검 시까지 경관작물의 재배·관리가 가능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초지로 봄

###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작물은 초화류로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
  - 대상 작물 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을 혼합구성), 디자인재배도 가능
  - 준경관초지작물의 경우 경관·준경관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목초의 경우에는 다년생 목초를 포함
  - 아래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을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할 목적으로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후 재배 가능(사전 공문으로 협의)

### 〈경관직불금 대상작물(예시)〉

구분	농지		초지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
대상 작물	갯,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아라이그라스, 호밀 등	경관, 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들이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직불금 지급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국고)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지원 기준
  - 경관·준경관작물 : 국고 50%, 지방비 50%
  - 준경관초지작물 : 국고 80%, 지방비 20%
  -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ha
  - ※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 준경관작물로 간주
- 준수사항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경관작물의 재배·관리 및 그 밖의 마을 경관보전 활동에 관한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지원대상 농지는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야 하며, 경관작물 재배지에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로 등을 구축·정비하여야 함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지등 상한 면적 : 농업인 30만 제곱미터, 농업법인은 50만 제곱미터
  - 농지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하여 각각 면적의 상한을 적용
  - 초지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구분하지 않고 1회에 한해서만 지급

### Ⅲ

## 사업추진체계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4월	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 또는 리 단위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li> </ul>
4월 말	추진위원회→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 제출</li> <li>* 전년도 추진실적, 추진계획 등 첨부</li> </ul>
5월 15일	읍·면→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 제출</li> <li>*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 사업신청 농지의 위치도 첨부</li> </ul>
5월 말	시·군→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신청지구 추천</li> <li>* 집단화기준 충족여부, 신청서 등 적격여부 조사·확인</li> </ul>
6월 10일	시·도→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관직불 사업수요조사 결과 보고</li> </ul>
7월 말	농식품부→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별 사업대상 면적배정</li> <li>* 시·도의 사업신청 현황, 전년도 협약체결 실적, 이행실태 점검결과, 예산확보 현황 등 고려</li> </ul>
8월 10일	시·도→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별 사업대상 면적배정</li> <li>* 시·군의 사업신청 현황, 전년도 협약체결 실적, 이행실태 점검결과 등 고려</li> </ul>
8월 말	시·군→읍·면장, 추진위원장, 사업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대상지구 선정 및 통보</li> </ul>
9~10월	시·군→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공고(10일 이상)</li> <li>* 동·하계사업 구분없이 협약기간은 1년으로 체결하여 경관보전활동 수행</li> </ul>
11월 10일	시·군→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대상지구 선정 및 지구별 면적배정 결과 입력(AgriX)</li> </ul>
11월 말	시·도→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별 협약체결 및 면적배정 결과 보고</li> </ul>
12월 말	농식품부→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별로 예산 배정</li> </ul>
차년도 1월 31일	시·도→시·군→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별 면적 배정,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 선정결과 입력·보고(AgriX)</li> </ul>
(동계) 3월 말 (하계) 8월 15일	시·군→농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행점검 의뢰(AgriX)</li> <li>* 농관원과 협의하여 이행점검 의뢰 시기 조정 가능</li> <li>* 이행점검 의뢰 후 필지 변경 불가능</li> </ul>
(동계) 5월 15일 (하계) 10월 15일	농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하계 사업별로 이행점검 실시</li> </ul>
(동계) 6월 10일 (하계) 11월 10일	농관원→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행점검결과 확정·보고</li> </ul>
	시·군→시·도→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행점검 마감조치 후 직불금 지급액 결정 및 보고(AgriX)</li> <li>* 이행점검 결과 확정 이후 AgriX시스템 정보입력 및 수정 불가</li> </ul>
12월 말	시·군→시·도→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불금 지급 및 지급결과 보고</li> </ul>



## 1. 사업신청 단계

### 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위원회

- 경관보전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마을 경관보전 및 관리활동, 경관작물 재배 등에 대한 계획수립·사업신청 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과 이행여부 확인 등 마을 경관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이하 “지구”)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1.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대상 마을대표 및 주민
-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 ④ 이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함

※ (예시) 주민대표(이장 등), 경관작물 재배농가(2명 이상), 경관작물 재배자 이외 마을주민(2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

### 나. 사업신청

####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에게 제출(4월 말)
  - 신청서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②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실적
      - ※ (예시) '23년 사업신청서 제출 시 '22년 추진실적을 말함
      - ※ 신규 사업지구와 준경관초지작물 사업지구는 작성 제외
    - ③ 경관작물 재배 연도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계획

④ “마을공동기금조성 참여 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 ※ 마을공동기금 조서를 희망하는 지구에 한하여 제출
- ※ 참여자의 2/3 이상 찬성 시 조성 가능

- 읍·면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농지대장 사본 등을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 시 활용하도록 협조

### 읍·면

-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 대상지의 적격 여부 등에 대한 조사 실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농업인등인지 여부 확인
  - 신청인의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통하여 농업인들이 신청한 대상지의 소재지·면적 등 확인
    - ※ 농업경영정보에 신청인에게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집단화 기준 충족 여부는 지적도를 통하여 확인
  - 농업경영정보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임차·위탁 영농인지 여부 등 확인(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 읍·면장은 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에게 송부(5월 15일)
  - ①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 ②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 결과” [별지 제4호 서식]
  - ③ 사업 신청 농지의 위치도(축척 1/1000 지형도)

### 시·군

- 시장·군수는 읍·면장이 송부한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 결과, 사업 신청 농지의 위치도에 대한 적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사업 신청지구를 시·도지사에게 추천(5월 말)
  - 사업 신청지구 중 농지의 집단화 기준 충족 여부는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추진위원회 위원장, 경관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경관보전직불제 지구별 집단화 확인”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확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군/지구별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결정 결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마을공동기금 조성을 희망하는 시·군별 또는 지구별 마을공동기금 최소 적립 비율을 결정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 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직불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6월 10일)

**2. 사업대상지구 선정단계****가. 시·도별 사업대상 면적 배정****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신청 현황, 전년도 협약체결 실적 및 이행실태 점검 결과, 예산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대상 면적을 배정(7월 말)

**나. 시·군별 사업대상 면적 배정****시·도**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한 사업대상 면적 한도 내에서 시·군의 사업신청 현황, 전년도 협약체결 실적 및 이행실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사업대상 면적을 배정(8월 10일)

**시·군**

- 시장·군수는 읍·면에서 신청받은 사업신청 지구에 대해 경관 전문가 또는 담당 공무원이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시·도에서 배정한 사업대상 면적 내에서 사업대상 지구를 선정(8월 말)
  - 전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약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구별 협약면적 대비 파종면적 비율이 70% 이하인 경우 사업대상 지구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지구를 선정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구, 대상지, 대상자 등을 읍·면장, 추진위원장, 사업참여자에게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선정 통지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일괄 통보

## 다.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 시·군, 추진위원회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지구별 추진위원회와 “마을 경관보전 협약서(예시)”[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1년 단위로 마을경관보전 협약을 체결(9~10월)
  - ※ 협약기간은 1년으로 체결하여 동계/하계사업 구분 없이 경관보전활동 수행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 협약을 체결한 내용을 시·군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 라. 사업대상지구 선정 결과 보고 및 확정

### 시·군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 협약체결 후 사업대상 지구 선정 및 지구별 면적 배정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하여 시·도에 보고(11월 10일)

### 시·도

- 시·도지사는 AgriX시스템에 입력된 정보 등을 검토한 후 시·군별 협약체결 및 면적배정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1월 말)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협약체결 및 면적배정 결과, 예산확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별로 예산 배정(12월 말)
- 시·도지사는 시·군별로 면적을 확정 배정하고, 시장·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 선정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하여 시·도에 보고(차년도 1월 31일)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생산기반(공통)

---

## 1-2. 소득안정



## I 사업 개요

## □ 목 적

-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등을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 영농 도모

## □ 사업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에 따른 재해(부상, 질병, 장애,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국고지원
  -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를 국고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50% 지원
    - \* 단, 항공방제기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보험료의 50% 지원
  - 농기계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인안전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자신의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농기계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은 보험료 지원 가능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 50%,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50% (담보와 할증에 따른 제한이 있음)
  -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70%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50%, 70%(영세농업인)
- '24년 예산 : 농업인안전보험 62,645백만원, 농기계종합보험 32,153백만원

## □ 사업 신청

- 보험사업자(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는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요청
- 정부는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사업자에 사업비 교부

## □ 대상자 선정

-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농업인안전보험), NH농협손해보험(농기계종합보험)
  - 피보험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험 가입 시 국고지원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사무관 이교남 주무관 김지향	044-201-1796 044-201-1797
(농업인안전보험) NH농협생명	정책보험추진팀	팀 장 장경만 과 장 정재균	02-3786-7303 02-3786-7312
(농기계종합보험) NH농협손보	정책보험인수팀	팀 장 최찬식 차 장 채필성	02-3786-7891 02-3786-7893



## 1. 사업대상자

### ○ 농업인안전보험

1)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②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2)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2.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인안전보험

1) 농업인안전보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2)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

###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농기계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은 보험료 지원 가능

### 3. 지원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 일반1형, 일반2형, 일반3형, 산재형 등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
  -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정부 보조금은 농업인이 가입하는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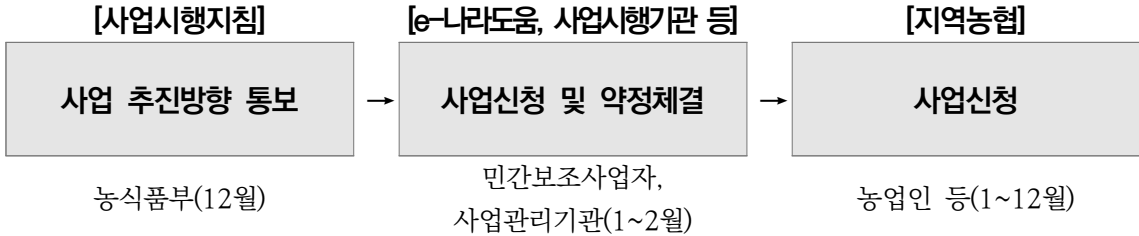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 50%, 70%(영세농업인) 지원
  -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 50%,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50%(담보와 할증에 따른 제한이 있음)
  -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1. 사업 공고 및 신청



생산기반  
(공동)  
1-2  
소  
득  
안  
정

- 농식품부는 세부사업 계획 등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계획 수립 및 약정 체결 등을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민간보조사업자)은 보험가입 촉진계획, 보험상품 개선·개발 계획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관리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사업관리기관은 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 등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연구 및 상품 개선회의 운영, 보험상품 홍보 등 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험사업자와 약정체결
  - 사업시행기관은 홈페이지, 유선, 문자 등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사업을 홍보하고, 농업인들은 지역농협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신청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경영체에 미등록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보험 가입 진행

**□ 목 적**

- 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사업내용**

-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차차액을 보전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인 등 용자 100% 지원, 금융기관 이차보전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농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차차액을 보전
- '24년 예산 : 557,722백만원(이차보전금)

**□ 사업 신청**

- 장소 :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등 금융기관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자 선정**

- 세부자금별 별도 적용

□ 재해 지원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참고, '22.12.11. 시행)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안광현 주무관 방윤미	044-201-1760 044-201-175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류상현 차 장 박정운	02-2080-7561 02-2080-7568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사업별로** 아래에 기재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과 입니다.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① 농축산경영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안광현 주무관 방윤미	044-201-1760 044-201-175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홍희령 과장보 이수민	02-2080-7590 02-2080-7589
② 농업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안광현 주무관 방윤미	044-201-1760 044-201-175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③ 농업경영회생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안광현 주무관 방윤미	044-201-1760 044-201-175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홍희령 과 장 신승곤	02-2080-7590 02-2080-7586

-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사업 중 아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담당과에서 사업시행 지침을 별도로 지자체 등에 시달함**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 (사업담당과) 첨단기자재 종자과, (담당자) 이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896, 1897

-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및 농기계사후관리지원 사업시행지침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www.kamico.c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사업담당과) 농촌경제과, (담당자) 이영은 사무관, 김한승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0, 1592
  -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 (사업담당과) 식량산업과, (담당자) 노규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838, 1839
  - **후계농업인육성, 우수후계농업인추가지원** : (사업담당과) 청년농육성정책팀 김태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5, 1597
  - **농촌주택개량사업** : (사업담당과) 농촌계획과, (담당자) 성순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59
  - **귀농인창업지원** : (사업담당과)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정성문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39, 1540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 (사업담당과) 축산유통팀, 축산경영과 (담당자) 홍성현 사무관, 민동명 사무관, 홍석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18, 2323, 2338, 2339, 2340, 2341
  - **축사시설현대화** : (사업담당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박일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35, 2334
  - **축산경영종합자금** : (사업담당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민동명 사무관, 박일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35, 2334, 2338, 2339
  - **인삼작물계열화(수매), 인삼계열화계약** : (사업담당과) 원예산업과, (담당자) 김동훈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238, 2239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자금** : (사업담당과) 농촌경제과, (담당자) 정명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84, 1585
  - **산지유통활성화** : (사업담당과) 유통정책과, (담당자) 정성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223, 2224
  - **특용작물계열화자금, 특용작물시설현대화(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포함)** : (사업담당과) 원예산업과, (담당자) 최수빈 사무관, 이남윤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2240, 2242, 2236, 2237
  - **온실현대화지원자금** : (사업담당과) 원예경영과, (담당자) 김승동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2256, 2259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자금, 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자금 : (사업담당과) 원예경영과, (담당자) 장미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254, 2255
  - 해외 곡물망 확보 용자지원 : (사업담당과) 식량정책과, (담당자) 홍성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829, 1817
  - 사료구매자금 : (사업담당과) 축산환경자원과, (담당자) 서주형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59, 2360
  - 축산물 수급안정 자금(계란공판장출하촉진) : (사업담당과) 축산유통팀, (담당자) 홍성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18, 2323
  - 축산물 수급안정 자금(송아지계약생산) : (사업담당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김정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32, 2333
  - 제분업계 경영안정 자금 : (사업담당과) 식량정책과, (담당자) 김일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826, 1827
  - 쌀가루원료구매자금 : (사업담당관) 전략작물육성팀 (담당자) 정정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912, 2913
  - 외식업체육성자금 : (사업담당과) 식품외식산업과, (담당자) 강태원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157, 2158
- \*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사업(자금) 중 협동조합합병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부채대책자금 (정책자금 상환연기 자금 등), 재해대책비는 별도의 사업시행지침 없음

##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입니다.

### I 사업 개요

#### □ 목적

-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 도모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축산법」 제3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사업내용

- 농축산 농가에 필요한 경영비 등 운전자금(사료비, 비료·농약비 등)을 농가당 1천만원 이내(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로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농업경영자금), 소규모 축산농업인(축산경영자금), 재해를 입은 농축산업인(재해대책경영자금)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1회전 소요경비를 연 2.5%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
- '24년 예산 : 1,200,000백만원(용자규모)  
\*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용자로 지원

#### □ 사업 신청

- 장소 : 지역농·축협
- 신청기간 : 연중

#### □ 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 시 영농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확인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안광현 주무관 방윤미	044-201-1760 044-201-1761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홍희령 과 장 이수민	02-2080-7590 02-2080-7589

생산기반  
(공동)

1-2  
소  
득  
안  
정

## 1. 사업대상자

## 가. 사업대상자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농업인
  - 사업대상자는 영농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확인(다만, 마을 영농회·작목반·축산계 등의 「대출신청 및 배정금액 심의자료」를 근거로 확인 가능)
  - 대출 신청인은 전업적 직업보유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서식은 대출취급기관 비치)

## 나. 지원제외자

## ①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직업보유자

- \*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 확인생략 :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
  - 2.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대환하려는자  
(기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기한연기하려는 자 포함)

구분	세부내용
직업보유자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② 재해대책경영자금 중 기타사고(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 ③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 ④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을 재배하는 자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⑤ 농업종합자금 중 운전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 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단,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8호에 따른 “농가”는 지원 가능)

- ⑦ 대출대상자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다만,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부부 각각 지원 가능
  -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선정된 자는 경영주가 아니라도 지원 가능
- ⑧ 위탁농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및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
- ⑨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⑩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 대출포기, 대출 불가능한 자 등 발생 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한도는 각각 적용
  - 재해대책으로 상환 연기되거나 신규로 지원된 자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의 지원한도 및 대출금액 산정에서 제외
  - 복합농의 경우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의 지원한도는 각각 1천만원임.
- 지원한도는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원 이하 (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소요경영비 산출 및 생략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 각각 적용
  - 신규진입농은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만 지원
  -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
  - 영농규모 확인서류는 소요경영비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징구
    - \* 1회전 소요경영비란 동일 농경지(과수, 축종 등)에 대하여 투입에서 출하까지 1회전(1기작) 기간에 필요한 경영비를 말하며, 1회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경영비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함
- 신규 진입농은 농업경영체 증명서, 임차계약서(또는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등)(임차농), 영농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실질영농여부 및 경지면적 등을 확인하고 지원

## 나. 세부 지원요건

구분	세부 지원요건
① 농업경영자금	<p>㉞ 지원대상: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의 경영비</p> <p>㉟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천만원 이내 (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예시) '19년도 경영자금으로 8백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상환기일전에 전액 상환한 후 당해 연도 추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추가대출금액은 2백만원만 가능</p> <p>㊱ 지원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기간 : 1년 이내.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 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li> <li>-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li> <li>* 인삼분야 신규인삼식재자금은 당해년도 신규인삼식재면적이 2,975㎡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년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대출</li> <li>* 신규 인삼식재면적이 2,975㎡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농업종합자금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인삼식재자금 지원 가능</li> </ul>
② 축산경영자금	<p>㉞ 지원대상: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의 경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육)우·젓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 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li> </ul> <p>㉟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천만원 이내(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p> <p>㊱ 지원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기간 : 1년 이내</li> <li>-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li> </ul>
③ 재해대책 경영자금	<p><b>&lt;법령에 의한 재해&gt;</b></p> <p>㉞ 재해 신규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지원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li> <li>*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 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li> <li>ii) 지원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이내</li> <li>iii) 지원조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li> <li>* 다만 농업재해로 인하여 2년 이상 정상적인 생산이 어려운 과수, 인삼 농가는 3년 연장 가능하며, 대상농가는 재해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에 따름</li> <li>* 과수·인삼피해 농가 상환연기 연장개정(과수 '12년, 인삼 '24년) 이후 상환기간 미도래 과수·인삼피해농가는 일괄 상환기간 연장조치 가능</li> <li>*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 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li> <li>* 재해 신규자금 만기 도래 시 농업경영자금 또는 축산경영자금으로 대환 불가</li> <li>-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8%)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li> </ul>

<p>㉔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p> <p>i) 지원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p> <p>ii) 지원조건: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차등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단위 피해율 30~50%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li> <li>-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li> </ul>
<p><b>&lt;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gt;</b></p> <p>㉕ 지원대상 :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병해충대발생 등)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가 고의성 유무를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li> <li>*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 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li> </ul> <p>㉖ 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농가당 100만원이상 5천만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원(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도 및 소요경영비 계산방식을 달리 정하여 지원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가축사육(농작물 경작) 규모에 대한 품목별 1회전 소요 경영비</li> <li>* 복합농(농업과 축산업에 종사)은 최대 1억원(농업 5천만원, 축산업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li> </ul> <p>㉗ 지원조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li> <li>-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8%)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li> <li>*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li> <li>* 재해 신규자금 만기 도래 시 농업경영자금 또는 축산경영자금으로 대환 불가</li> </ul>

### 3. 대출방법

-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 범위내에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 대출 취급기한은 당해연도 말(12월)까지임

## ② 농업종합자금지원

### I 사업 개요

#### □ 목적

-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취급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

#### □ 사업내용

- 농업인 등에게 시설·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등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각 사업별 지원대상자로서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자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기본자격을 갖춘 자에게 타당성 평가 등을 통해 자금 지원

- '24년 예산 : 3,196,726백만원(용자규모)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다만, 당해년도 예산 중 스마트팜지원 1,000억원, 수출및규모화 및 농산물가공사업 8,000억원(전통주 500억 포함),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 100억원,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132억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350억원 및 기술창업자금지원 700억원, 농기계 생산지원 3,000억원, 농기계 구입지원 6,100억원,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220억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4,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 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 가능)

\* 농기계 생산지원 :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 농기계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 농기계수리용 장비, 농기계수리용 부품확보, 농기계 보관창고, 농기계수리용 시설 설비

## □ 사업 신청

- 장소 : 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
- 신청기간 : 연중

## □ 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 시 대출취급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선정

\* 단, 꿀·녹용가공산업육성, 쌀가공산업육성지원, 기술창업 자금지원,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사업,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은 대출대상자 선정·통지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대출취급기관은 업체별 지원액 선정 범위 내에서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최종 대출액 및 지원여부를 결정함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 ▶ 농업종합자금 시행지침 세부사업별 담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부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②-1. 농축산 생산 지원	가. 원예·축산 생산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안광현 주무관 방윤미	044-201-1760 044-201-1759
	나. 수출 및 규모화사업				
	다. 고품질우량 종자개발사업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라. 천적 및 곤충사업				
②-2. 스마트팜 종합자금	가. 스마트팜 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사무관 강태원 주무관 이정은	044-201-2421 044-201-2426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②-3. 가공사업 등 지원	가. 농산물가공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안광현 주무관 방윤미	044-201-1760 044-201-1759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나. 꿀·녹용가공 산업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박일수 주무관 주재호	044-201-2335 044-201-2334
		(사)한국양봉협회	총괄	전무선문규	02-3486-0883
		(사)한국사슴협회	총괄	사무총장 최춘태	02-587-4343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구분	세부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다. 쌀가공산업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서기관 이한병 주무관 이선희	044-201-1820 044-201-1821
			전략작물육성팀	사무관 조수영 주무관 김 현	044-201-2914 044-201-2917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라. 기술창업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사무관 권병철 주무관 이지원	044-201-2425 044-201-2422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센터	센터장 이정인 연구원 김지영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②-4.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가. 농기계구입/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사무관 이 현 주무관 이영동	044-201-1896 044-201-1897
			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	정책지원팀	팀 장 장길수 차 장 송동호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과 장 이명은	02-2080-7575 02-2080-7584
	나.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사무관 이흥숙 주무관 유진빈	044-201-1892 044-201-1893
			한국비료협회	-	이 사 박춘근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김미영	02-2080-7575 02-2080-7582
②-5. 농촌관광 산업지원	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나. 관광농원 다. 농촌민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사무관 김한승 주무관 한 울 사무관 이영은 주무관 김여진	044-201-1592 044-201-1583 044-201-1590 044-201-1591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 [용어의 정의]

- “농업종합자금(이하 “종합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출취급기관이 농업경영체 등에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금을 말함(정부에서는 대출취급기관 융자금의 이차차액을 보전함)
  - \* 이차보전 :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축산사업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차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함
-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를 말함
- 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다음 기관을 말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
  -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
- “자금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에서 총괄하며, 품목별·축종별 종합자금의 운용, 사업추진과 관련된 시책수립과 점검·평가업무는 각 사업담당부서 책임하에 추진함
- “세부시행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각 기관별로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의 세부지침은 농협은행에서 작성)
  -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운용부서로부터 지침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세부지침의 효력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 날부터 발생. 세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음

## [공통사항]

- 1) (기본자격) 각 사업별 지원대상자로서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자
- 2) (지원제외) 기본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가)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 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대출취급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확인을 생략함
  - 나) 농업경영체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단, 사업대상자를 비농업경영체로 하는 경우는 제외
    - \* 대출취급담당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징구하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확인” 또는 대출취급기관 전산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내용을 확인 및 출력하고 대출증서에 첨부
  - 다) 농업경영체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단, 시설부족 등으로 영농활동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또는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직접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지원가능)
  - 라)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운전자금(예, 계열주체로부터 가축, 사료 등을 지원받아 위탁생산하고 있는 경우)
  - 마)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다음의 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
    - 금차 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15억원 이상인 개인(단,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당해 사업 이외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최초 대출지원 이후 도래하는 결산기부터 재무제표 의무 제출)
    -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개인 및 법인)
    - 관광농원사업자(단,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7억원 이내인 신규사업자는 예외)
    - \*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와 지원금액 1천만원 미만의 농기계구입자금인 경우 재무제표 제출 생략(개인 및 법인)

바)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사) 미곡종합처리장(RPC)·도정공장(단,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은 적용 제외하며, 미곡종합처리장은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가능)

아)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하고 대출취급 가능

\* 타 농업정책사업 관련 추후 중복지원이 밝혀질 경우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회수

**〈지원한도 산출 예시〉**

- ‘보조금+자부담’ 지원 사업(예,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인 경우) : 총 사업비(1억원) 중 대출한도액(80%, 8천만원)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3천만원)만큼 지원 가능
- ‘보조금+융자+자부담’ 지원 사업 : 타 사업 자부담분 지원 불가

자)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민형사 사건으로 피소되어 분쟁이 진행 중인 종자개발업자. 다만,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

차) 축산법에 의거 축산업 허가대상이나 미허가인 자 또는 축산업 등록대상이나 미등록인 자(단, 허가대상이나 기 등록 중인 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카)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단, 농기계구입자금은 지원 가능)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 예는 지원 가능

\* 상기 품목 외에 임산물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소진 후 농업종합자금 지원 가능

##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 ②-1. 농축산 생산지원

#### 1. 사업대상자

- 원예·축산업자/ 수출 및 규모화사업 /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원예·축산 생산업

- 원예·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원예·축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정하는 농산물(임산물 제외)을 말한다. (친환경 묘삼 시설재배, 인삼 다단계시설물 포함)

##### 나. 수출 및 규모화사업(동일인당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지원)

- 대출취급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생산 고도화 또는 수출 확대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축산물 생산을 하는 농업경영체
  - 자가 생산한 농·축·임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업경영체

##### ※ 용자금의 회수

- '19.1.1부터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식품업체 및 생산자단체는 '농산물가공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지원하고,
- 기지원 받은 사업자가 만기도래한 용자를 '농산물가공사업'을 통하여 재약정(대환)할 경우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다.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민형사 사건으로 피소되어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라. 천적 및 곤충사업

-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 : 채무자별 신용도를 감안한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금리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이율 1.3%~2.8%를 차감한 금리 적용

#### 〈 지원 금액별 정부이차보전 금리 〉

- 지원금액 10억원 미만 : 2.8%
  - 1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 : 2.3%
  - 30억원 이상 : 1.3%
- \* 다만, 고정금리 이차보전 실시 후 농가 실질부담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리에 대하여 정부에서 추가 이차보전

라.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마.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가. 시설자금

#####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예, 농산물가공, 고품질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생산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온실 및 경질의 철골온실(인삼재배시설포함)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2) 지원용도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이란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10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

- i) 택지·도로·담·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ii)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토지에 작목재배·생산, 작목재배·생산용 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 iii) 벼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 iv)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중 가공사업,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 v)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나. 개보수자금

###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지원금액과 무관하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함
-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함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분뇨지원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다.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 다만,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4~6년 이내,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3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수량증자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가축입식자금, 농·축산물 매취자금(농산물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단, 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대한 가능(단, 종합자금이 농신보 보증서 담보인 경우에는 대환대상 농축산경영자금도 농신보 보증서 담보이어야 함)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 라. 기타 유의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 ②-2. 스마트팜 지원

### 1. 사업대상자

- 스마트팜지원사업자(일반 및 청년농업인)

###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스마트팜지원사업(동일인당 50억원 이내에서 지원. 단, 청년농업인 대출한도 30억원 포함)

- (일반 스마트팜 사업자) 해당분야 경력이 있으며 영농교육을 이수한 자로,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단, 농업생산과 관련없는 일반 법인과 농협 및 공공기관이 출자한 농업법인은 제외)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업자)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 연령기준 : 만 40세가 되는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원 가능(자금지원 가능년도=출생년도 + 40)
    - \* 단, 보육센터 교육이수자가 대출 신청 시점에 만 39세를 초과하더라도 보육센터 교육이수 또는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계약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인 자는 지원가능
- (상환유예) 스마트팜 사업자는 신청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할부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원금(시설 또는 개보수 자금)에 대해 상환유예를 할 수 있다.
- \* 최대 3회까지 할부유예 가능하나, 타 정책자금에 의한 할부금 상환유예와 중복수혜 불가하며, 휴·폐업 등 중도회수 사유 발생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농가 및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정상화된 경우에는 추가 유예 불가(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징구)

### 〈 스마트팜 종합자금 상환유예 사유 〉

-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 \*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정의를 준용
    - 확인서류 :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 ②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피해
    - 단, 해당 농가의 방화에 의한 화재의 경우 제외
    - 확인서류 :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 또는 화재현장조사서 등
  - ③ 가축질병 피해(살처분 포함)
    - 단, 가축질병 양성농가 및 방역의무 미이행 농가는 제외
    - 확인서류 :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가축질병 발생관련 축산농가확인서 또는 조건부 살처분 명령서 등
  - ④ 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에 의한 채무인수로 사업 승계한 경우
    - 확인서류 : 의료기관 진단서(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 해당 농가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할부금 상환유예 등록 후 사후관리 컨설팅 필수



### 3. 대출금리

-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1.0% 고정금리 적용(변동금리 적용 불가)
- 나. 운전자금 : 연리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 선택 가능
  -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다.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가. 시설자금

- 1) 대출기간 :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 \* 임대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대출기간 연장 시행일(2022.11.1.) 이전 시설자금 대출 보유자도 대출기간 확대 대상에 포함
- 2) 지원용도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 스마트팜 시설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시설물 자동 원격 제어장치를 설치한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시설(축사, 유리온실, 철골온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10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

- i) 택지·도로·댐·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ii)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토지에 작목재배·생산, 작목재배·생산용 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 iii) 벼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 iv)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중 가공사업,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 v)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 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95%

## 나. 개보수자금

###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지원금액과 무관하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함
-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함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분뇨지원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95%

## 다. 운전자금

###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 \* 가축입식자금, 농·축산물 매취자금(농산물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단, 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 운전자금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대환 가능(단, 종합자금이 농신보 보증서 담보인 경우에는 대환대상 농축산경영자금도 농신보 보증서 담보이어야 함)

###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 ②-3. 가공사업 등 지원

### ②-3-가. 농산물가공사업

#### 1. 사업대상자 : 농산물가공업자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축·임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축산물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축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전통주(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보유 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축·임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생산자단체

#### 3. 대출금리

-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1) 대출기간

- 시설자금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개보수, 운전자금 : <②-1. 농축산생산 지원>의 개보수, 운전자금과 동일

##### 2) 지원용도

- 시설자금 : 농산물가공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체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운전자금 : 지원대상자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 3) 지원한도 : 동일인당 50억원 이내
- 4) 용자금의 회수
- 농산물가공사업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운전자금 대출잔액(30억이상) 보유자에 대해 신규(추가) 운전자금 대출 제한

## ②-3-나. 꿀·녹용가공산업육성

### 1. 사업대상자

- 꿀, 녹용을 원료로 하여 벌꿀, 녹용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단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벌꿀 사용실적이 20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예외)로 <사>한국양봉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및 생산자단체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우선 선정
- 연간 녹용 사용실적이 1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예외)로 <사>한국사슴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및 생산자단체

### 3. 대출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시설, 개보수 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 2) 지원용도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3) 지원한도 : <사>한국양봉협회, <사>한국사슴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업체별 한도 이내
  - \* 꿀, 녹용가공산업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5억원 한도로 용자 지원
  - \* 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5억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 4) 용자금의 회수
  - 꿀·녹용 가공사업을 위하여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②-3-다. 쌀가공산업육성지원

#### 1. 사업대상자

- 쌀(정부 관리양곡 포함)을 원료로 하여 쌀가공제품(식품 및 비식품제품 포함)을 생산하는 업체
- 정부 관리양곡의 도정 및 보관업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쌀가공업체(일반) :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 쌀가공업체(신규) : 연간 쌀 사용실적이 없거나 10톤 미만이라도, 사업등록한지 1년 미만인 업체 혹은 식품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하였으나 쌀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한지 1년 이내인 업체
-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 정부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 업체

####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영·수매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가. 시설자금

-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2) 지원용도
  - 쌀 가공식품 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의 생산시설 등의 신·증축에 소요되는 자금 및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의 점포 시설비
  - \* 시설부지 및 건물 구입비 등은 지원제외
-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나. 개보수자금

-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2) 지원용도 : 기존 시설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다. 운전자금

-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 2) 지원용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 3)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금액 이내
- 4) 용자금의 회수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라. 구매자금

-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 2) 지원용도 : 가공용 쌀 계약재배 후 계약재배 된 쌀의 구매 지원자금
- 3)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금액 이내

## ②-3-라. 기술창업 자금지원

### 1. 지원대상

#### 가. 농식품분야 벤처·창업 기업

- 1) 창업 7년 미만의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기업
- 2)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기업

#### 나. 우수기술 보유 기업

- 1) 농림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 신청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농협은행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이상 (개인사업자, 8등급이상)
- 2) 정부의 NEP·NET·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신기술농업기계를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4)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5) 농식품 R&D과제 최종 및 추적평가 시 우수 이상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6) 농식품 과학기술대상·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2. 지원요건

- 농협은행 기업신용평가 결과 6C 이상(개인사업자, 8등급 이상)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화 소요자금규모 확인을 통해 “소요자금 규모 평가서” 보유
  - \* 단, 1.지원대상 나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우수기술확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우수기술 확인평가를 거쳐, “우수기술평가서”를 받아야 한다.
  - \*\* 우수 기술사업화 자금 규모는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 결과’를 반영

### 3. 대출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가. 운전자금

##### 1) 대출기간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2) 지원용도 : 농림축산식품분야 R&D에 대한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전자금(인건비, 원자재구입, 시제품생산비 등)

##### 3)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최대 20억원 이내

#### 나. 시설자금

##### 1) 대출기간 : 4년거치 6년 균분상환

##### 2) 지원용도

- 기술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토지구입비 및 건물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농산물·식품의 생산·가공시설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기술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장비 및 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3)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최대 50억원 이내

#### 다. 개보수자금

##### 1) 대출기간 : 4년거치 6년 균분상환

#####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자재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3)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최대 50억원 이내

## ②-4.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 ②-4-가.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 1. 사업대상자

-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및 농기계 해체재활용업 관련 업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농기계 구입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나.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유통업체

### 다.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기자재 생산업체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 라.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판매점, 농기계해체재활용업소 등으로 한국 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 3. 대출금리

가. 농기계구입·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다.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사업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가. 농기계 구입자금

###### 1) 대출기간

농기계구분		대출기간
신제품	기종에 따라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중고	잔여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균분상환
	잔여내용연수 3년 미만 또는 내용연수 경과	3년 이내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3) 지원한도

###### <신제품 농업기계>

- 용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패매 가격
  -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트랙터, 관리기, 등의 부속작업기는 7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지원가능 (다만, 가동시간계측기는 적용을 제외함)
  - \* 정부의 용자금과 지방비로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지원 대상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중고 농업기계>

- 중고 농업기계 용자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하되 해당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과 동시에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 기존 대출잔액을 채무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잔액까지 가능
  - \* 중고농업기계 관련 대출금이 농가부채 대책(2004)에 따라 중장기 대한대출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나. 시설자금

######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사후관리사업 중 농기계수리용 부품·장비지원사업
  -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시설자금은 '23.7.5.부터 지원(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23.7.5. 시행)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 신설로 인한 자금지원 필요)

## 2) 지원용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사후관리사업 중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 :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시설자금은 '23.7.5.부터 지원

## 3) 지원한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사후관리사업 중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 :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총 사업비의 90% 이내
  -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시설자금은 '23.7.5.부터 지원

## 다. 개보수자금

## 1) 대출기간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장비지원자금
  - \* 농기계생산사업과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개보수자금 지원 불가

## 2)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라. 운전자금

- \*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운전자금 지원 불가

## 1)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

## 2)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 마. 유의사항

### ○ 농기계 구입자금

-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대상 기종에 대하여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훼손되어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기로 작성된 경우 또는 제조번호가 중복된 경우에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함
- 트랙터, 콤팩트, 이앙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3에 의한 “농업기계신고관리 시스템”에 신고되지 않은 농업기계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함(2023.7.5.부터 시행)
- 대출사무소는 공급자가 농가에게 농기계를 인도할 때 용자금 지불 위임장 및 기계대금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만, 대출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②-4-나.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 1. 지원대상자

- 무기질비료 생산업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 3. 대출금리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 4. 운전자금 지원조건

- 1)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 2) 지원용도 : 무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원료구입자금
- 3) 지원한도 :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②-5.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1. 사업대상자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 농촌민박사업자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농촌체험휴양마을

-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증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 나.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서(사업계획 변경 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 다. 농촌민박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사업변경 시는 사업변경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 농업인이 아닌 민박사업자 신규대출 기한 : '20.5월~'20.12월까지(단, '21년 이후로는 재대출(대환)에 한하여 허용)

###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공동시설 및 장비(체험관, 판매, 음식, 숙박, 체육, 놀이, 휴양, 정보 및 커뮤니티 시설 등) 설치,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
- 관광농원 시설 설치,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매각 또는 임대 시설물은 자금지원 제외)
- 기존 민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증축(금차 증축 면적을 포함한 주택 연면적 230㎡ 미만)에 소요되는 자금(신축자금은 지원불가)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단, 관광농원은 15억원 이내로 하되 신규 및 재무제표 미제출 사업자는 금융기관 총대출금 포함 7억원 이내로 함)
- 4) 대출취급기관에 시설·개보수자금으로 대출 신청 전에 공사 및 대금결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용자 지원 불가함

####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②-1. 농축산생산 지원>의 개보수자금과 동일

2) 지원용도

- 농촌체험휴양마을 : 기존 시설 및 장비의 개수·보완, 증고시설 자재구입에 필요한 자금
- 관광농원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증고시설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함

- 농촌민박 : 기존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민박용도 개보수 또는 기존 민박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단 전부개축은 지원 불가)
-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단, 관광농원은 15억원 이내로 하되 신규 및 재무제표 미제출 사업자는 금융기관 총대출금 포함 7억원 이내로 함)

#### 다.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의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단, 농어촌민박은 최근 2년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연매출액 평균금액의 50%이내-사업신고를 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 연매출액의 50% 이내-로 하되 최대 700만원\*까지)

\* 농어촌민박 신규신고 등으로 전년도 연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 최대 700만원 한도

\*\* 연매출액 신고는 하였으나 해당사업으로 신고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추정매출액과 신고액 중 적은 금액을 연매출액으로 인정

#### 4) 융자금의 회수

- 농촌관광산업지원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기타사항(공통)

- i)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ii) 채권보전심사 등 대출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규정에 의함
- iii) 농촌관광분야(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기계구입,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쌀가공산업육성지원, 기술창업 자금지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 지원의 세부사항은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 시행하는 사업시행지침 참조

### ③ 농업경영회생자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입니다.

## I 사업 개요

### □ 목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 근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 □ 사업내용

- 일시적 경영위기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경영회생자금을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고정 1%, 5년거치 7년상환, 개인 20억원(법인 30억원) 이내 지원
- '24년 예산 : 15,000백만원(용자규모)

### □ 사업 신청

- 장소 :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 시 농협의 경영평가단 사전평가 및 경영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안광현 주무관 방윤미	044-201-1760 044-201-175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홍희령 과 장 신승곤	02-2080-7590 02-2080-7586

생산기반  
(공동)

1-2  
소  
특  
안  
정

## 1. 사업대상자

-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제외대상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지원대상 농업인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 연체 중인 농업인 우선지원
  - \* 농업경영위기(예시) : <별표 1>
  - \* 준전업농 규모 기준(예시) : <별표 2>

### 나. 지원제외 대상자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 이상 등록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주택,

농촌관광 및 체험활동 등 농업 관련 사업에 활용 중인 상가 등은 비농업용 부동산에서 제외(단,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비농업용 부동산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로 확인

### 3.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5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5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
  -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대출금은 제외
- 지원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5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으로 농업용 대출 대환 및 신규 자금(단, <별표1> 농업경영위기 사유로 인한 피해입증자료,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01.1.8 이후 타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시설 및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전자금.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전자금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

\*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상기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시·군 지부(또는 농협은행 지점) 등(대출취급기관, 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 5.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가. 경영평가

- 농협은행 중앙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에 회생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기본자격 대상여부 등을 사전평가한 후,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 시·군 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실시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경영평가단의 사전평가 결과와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 ※ 자금 신청액이 4억원이하는 경영평가위원회를 생략하고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사전+정밀)를 통해 지원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동 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 나.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대출금리 : 연리 1%(이자는 1년 후취)
- 대출기간 :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거치기간 중에는 재지원 불가. 단,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의결을 거친 경우는 가능
- 지원한도 : 회생(또는 인수)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다만, 위 금액은 20억원(농업법인의 경우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생산기반(공통)

---

## 1-3. 농기자재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

## □ 사업내용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규산·석회비료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게 규산 및 석회비료 지원
- 지원기준 : (규산) 국비 60%, 지방비 40%, (석회) 국고 80%, 지방비 20% (공동살포) 국비 50%(최대지원단가 500원/20kg), 지방비 50%  
\* 지자체, 지역농협, 농업경영체 등 여건에 따라 공동살포비 추가 부담 가능
- '24년 예산(안) : 62,031백만원

##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대상자선정 : 시·군·구는 신청면적, 토양검정에 따른 소요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 대상자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사무관 이흥숙 주무관 유진빈	044-201-1892 044-201-1893
농협경제지주	자재사업부	팀 장 손황제 과 장 김명관	02-2080-6401 02-2080-6406



###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이하 “농업인”)

### 3. 지원대상

- 규산 및 석회질비료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파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 신청에 의한 규산·석회질비료 구매, 공급 및 공동살포에 소요되는 제비용
- \* 개별살포는 공동살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
- 지원조건 : (규산) 국비 60%, 지방비 40%, (석회) 국고 80%, 지방비 20% (공동살포) 국비 50%(최대지원단가 500원/20kg), 지방비 등 50%
- \* 지자체, 지역농협, 농업경영체 등 여건에 따라 공동살포비 추가 부담 가능
- 예) 공동살포비 900원/20kg인 경우, 국고보조 450원/20kg + 지방비 등 450원/20kg  
1,100원/20kg인 경우, 국고보조 500원/20kg + 지방비 등 600원/20kg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별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농업인의 신청면적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법정 리·동 단위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요량을 반영하여 산정

\* 단위면적당 소요량 이견이 있는 경우 예산사정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과 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

## 1. 사업 안내 및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3년 1주기 토양개량제 신청계획 및 시행지침을 시·도(시·군·구)에 시달(3년 1주기 첫해의 전전년도 12월)

## 지자체

- 시·군·구는 농식품부의 계획 및 지침에 따라 3년 1주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에 보고 및 읍·면·동에 안내(3년 1주기 첫해의 전전년도 12월)
  -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관리
  - 시·도(시·군·구, 읍·면·동)는 농업인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 적극 홍보
- 읍·면·동은 시·군·구 사업계획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직접 또는 마을이장을 통해 신청을 받아 Agrix에 입력(~2.29.)하고 시·군·구에 제출(Agrix·공문, 전년도 1~2월)
  - \* Agrix 신청시스템은 2.29까지만 입력가능
  - 중금속 오염 농산물이 생산된 농지 및 중금속 오염농지의 관할 시·군·구는 해당 농지 경작자(경작자가 미신청시 소유주에게 신청 안내)에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된 농지를 사업대상지로 우선 포함
- 시·군·구는 읍·면·동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자 및 대상자별 공급면적을 Agrix에 입력·마감(~3.15.)하고, 시·군·구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통보받은 단위 면적당 기준소요량을 반영하여 공급물량을 산정하고, 농협경제지주의 토양개량제 단가를 반영하여 공급물량 및 예산신청서를 시·도에 제출(Agrix·공문, 전년도 3월)
  - \* Agrix 선정시스템(시·군·구)은 3.15.까지만 입력가능
- 시·도는 시·군·구의 제출자료 및 시·군·구별 사업대상자, 물량 및 예산을 검토하고 Agrix에 입력·마감(~4.15.)하고 공급물량 및 예산신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Agrix·공문, 전년도 4월)
  - \* Agrix 선정시스템(시·도)은 4.15.까지만 입력가능
  - \* 예산신청서 양식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른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정원은 시·도별, 시·군·구별 예산 신청내역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전년도 5월)

## 사업대상자

- (3년 1주기 신규신청) 사업대상자(농업경영체)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 마을이장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읍·면·동에 제출(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 경작농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경작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읍·면·동에 제출하고, 시·군·구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추가·변경신청) 3년 1주기 신청을 누락하였거나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변경 신청하고 신청 방법은 신규 신청과 동일함(전년도 1~2월)
- 토양개량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하며 경작면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경영체 등록정보 지속 현행화 필요

## 2. 기준소요량, 공급물량, 공급단가 산정

### 가.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 산정

## 농촌진흥청

- 시·군·구 농업기술센터는 농진청의 협조를 받아 대표 필지를 선정하고 해당연도 공급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검정 시행(흙토람, 전전년도 10월)
  - 각 시·군·구는 3년 1주기 사업계획 및 해당연도 공급대상지역을 각 시·군·구 농업기술센터로 공유하여 토양검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농진청(식량산업기술팀 및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는 토양개량제 공급지역의 토양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교육 추진
- 시·군·구 농업기술센터는 해당연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법정 리·동별 토양개량제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 산정결과를 전전년도 10월 초순까지 흙토람에 입력하고,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검토하여 전전년도 10월 중순까지 확정하면 시·군·구 농업기술 센터는 전전년도 10월말까지 시·군·구에 통보

\* '24년 지특회계 전환을 감안하여 2025년 기준소요량 산정결과는 2024년 10월까지 제출

-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 이견이 있는 시·군·구는 예산사정에 따라 시·군·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국립농업과학원과 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

- 농과원은 해당연도 법정리·동 단위 토양개량제 기준소요량을 농식품부 및 Agrix에 제공(Agrix 및 공문, 전전년도 10월)

\* '24년 지특회계 전환을 감안하여 2025년 기준소요량 산정결과는 2024년 10월까지 제출

## 나. 공급물량 산정

### 지자체

- 시·군·구는 신청면적 및 시·군·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통보받은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을 반영하여 농업인별 공급물량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공문, 전년도 3월)

\* '24년 지특회계 전환을 감안하여 2025년 공급물량 산정결과는 2024년 11월까지 제출

- 시·도는 시·군·구의 공급물량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공문, 전년도 4월)

\* '24년 지특회계 전환을 감안하여 2025년 공급물량 산정결과는 2024년 11월까지 제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정원은 지자체의 공급물량 산정내역을 농식품부로 보고하고 농협경제지주로 전송(전년도 5월)

\* '24년 지특회계 전환을 감안하여 2025년 공급물량 산정내역은 2024년 11월까지 제출

## 다. 토양개량제 단가 산정

###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전년도 11월)

- 외부전문 기관을 통해 원가조사(~10월) 및 예상소요물량에 따라 공급단가 입찰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11월)

\* 규산 구매업체 조건 : 규산질비료의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공급을 위하여 규산질(입상)은 우수단체 표준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가능

\* 석회 구매업체 조건 : 석회질비료의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공급을 위하여 석회고토(입상)는 우수단체 표준제품(입상)을 패화석은 GR인증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가능

- 제주계정으로 운영되는 제주지역의 공급단가는 해상운송비 지원지침(해수부 고시), 정부관리 양곡처리요율표의 해상운송비(항만하역료, 해상 운임)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 외 대 상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공급계약 체결 시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2023. 12월말 까지 [별표 1]의 사업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3.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수립, 예산 배정 등

### 가.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수립

####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토양개량제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농협 지역본부(시·군지부, 지역농협)에 통보(전년도 12월)
  -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별(비종별), 월별 소요량을 근거로 토양개량제를 적기 공급
  - 친환경인증농가에게는 친환경인증농가가 사용가능한 물질을 조립제로 사용한 제품을 공급
- \* 친환경인증농가에 신청물량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

### 나. 예산 배정 등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공급면적·물량, 농과원의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 농협경제지주의 공급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별 예산 배정(전년도 12월)

## 지자체

- 시·도는 시·군·구의 공급내역과 예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예산배정 (전년도 12월)
- 시·군·구는 선정 내역(선정면적,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 토양개량제 단가 등)과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및 공급물량 안내(전년도 12월)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생산기반(공통)

---

## 1-4. 농지



## I 사업 개요

## □ 목 적

- 고령은퇴, 이농·직업전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비농업인(상속·이농)의 소유농지 등을 매입하고, 이를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
- 농지의 매매와 임차임대 등을 통하여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 및 농지 집단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 및 농업경쟁력 확보

## □ 사업내용

- 경영규모·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청년농·귀농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영농복귀자
  - 세부요건은 사업별로 상이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농지매매 : 비농업인, 직업전환 또는 은퇴농 등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 농지임차임대 :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공사가 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임대
  - 농지교환분합 :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상호간에 논 또는 밭을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 선임대후매도 : 청년농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간 장기 임차하여 경작하고 토지매매대금이 완납되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임대용농지매입** :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여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 장기임대
  -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 청년농을 대상으로 저활용 농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지구를 지정하고, 농업기반 정비 후 청년농에게 매도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맞춤형농지지원 활성화** : 청년농 지원 및 육성 등 농지은행 역할과 기능 홍보를 통한 농지은행사업 인지도제고 및 정책적 가치확산, 사업 참여유도를 통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안정적 관리도모
- **지원 기준** : 각 세부 사업별 상이
  - **'24년 예산** : 1,241,260백만원(용자 1,236,700, 보조 4,560)

**□ 사업 신청**

- **장소**
  - **현 장** :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
  - **온라인** : 농지은행포털(<https://www.fbo.or.kr>)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자 선정**

- 신청자 자격요건 검토 후 지원대상자 결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사무관 김광희	044-201-1732
		주무관 박민지	044-201-1733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부 장 이기봉	061-338-5881
		차 장 한정민	061-338-5882
		차 장 이지선	061-338-5886

## 1. 사업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 지원 당시 경영중인 농지의 전체 면적이 6ha(소유농지와 임차농지 포함) 미만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
  -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만 18~39세 지자체선정), 2030세대(만 18세~39세), 후계농업경영인(만 18~49세, 지자체선정), 귀농인(만 55세 이하 지자체 귀농인 지원사업 참여자), 일반농업인(만 64세 이하)
- 전업농업인 :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만64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벼를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은 6ha 이상의 농지, 벼 이외의 작물을 주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은 2ha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
- 농업법인 : 벼 또는 밭작물을 주로 재배하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법인
  - 「농지법」 제2조 제3호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농업법인의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농업법인
  - 직접 경작하고 있는 논, 밭 또는 과수원의 면적이 5ha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경작면적이 10ha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영농복귀자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직업전환(轉業)한 자로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여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경영할 자

## 2. 지원자격

- 농지매매
  - 매입대상자 : 이농·직업전환자, 은퇴농, 비농업인, 비농업법인
  - 매도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 농지임차임대
  - 임차대상자 : 직업전환·은퇴농, 영농규모 축소 희망농, 비농업인\*
    - \* 농업인의 자경농지로부터 30km 이내의 농지 소유한 비농업인
  - 임대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제18조(농지매매사업등), 제19조(농지의장기 임대차사업), 제22조(농지의교환또는분리합병등), 제24조의2(농지의 매입.매도)

○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 지원대상자 :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상호간에 논 또는 밭을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공공임대·선임대후매도용 농지매입

- 매입대상자 : 농업인(이농·직업전환·상속, 고령·질병 등 은퇴농업인 등)
- 임대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 선임대후매도의 경우 농지 취득이력이 없는 만39세 이하 청년농

○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 지원대상 :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고자 하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정

### 3. 지원내용

○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육성 대상자	연령별·경영규모별·경력별 맞춤형 지원								우선 순위
	성장 단계	연령	경영 규모	영농 경력	지원 내용				
					농지매매	생애첫농지 취득지원	임차농지 임대	비축농지 임대	
가.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 경영인 선정자	진입	만18세~ 만39세	3ha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0.5ha 이내 1ha 이내	〈진입〉 0.5ha 이내	〈진입〉 3ha 이내	〈성장〉 6ha 이내	1
나. 2030세대	진입 성장	만18세~ 만39세	3ha 이하 3ha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진입〉 0.5ha 이내				
다. 후계농업 경영인 선정자	진입 성장	만18세~ 만49세	3ha 이하 3ha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진입〉 0.5ha 이내	〈성장〉 1ha 이내	〈성장〉 6ha 이내 *일반농은 4ha 이내	3
라. 귀농인	진입 성장	만18세~ 만55세	3ha 이하 3ha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성장〉 2ha 이내				
마. 일반농업인	진입 성장	만40세~ 만64세	3ha 이하 3ha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5			

\* 교환분합사업은 한도없이 지원

\*\* 선임대후매도사업의 경우 영농경력 2년 이하 0.5ha, 2년 초과 1ha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매매지원한도에 포함(농지 취득이력이 없는 만18세~만39세 청년농에 한함)

- 전업농업인
  - 농지매매, 임차농지임대 : 경영규모 10ha까지 지원
  - 농지 교환·분합 : 제한없음
- 농업법인
  - 농지매매 : 논·밭·과수원 소유규모 기준 20ha
  - 임차농지임대, 농지 교환·분합 : 제한없음
- 영농복귀자
  - 전업 당시 공사에 매도 또는 임대한 농지 규모 이내

#### 4. 매입·임차 대상농지

- 매매용 농지
  - 농업진흥지역안의 논·밭. 단,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답) 중 경지정리 및 받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는 매입 가능
    - 1)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매수청구를 신청한 농지
    - 2) 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협 구입자금 포함)으로 지원한 농지 및 지원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 다음의 경우에 매입 가능
      - 가) 65세 이상으로 소유농지 전부를 매도·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매도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
      - 다) 채권확보를 위해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3) 지원대상자의 소유농지와 연접한 농지로 그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농지
    -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되어 분양받은 간척농지로 8년 이상 경작하고 용자금 상환이 완료된 농지
    - 5)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 6)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서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잔여 지분 전부를 매도하는 농지
- 임대용 농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촌지역의 논 또는 밭(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토지 이용현황 기준)

○ 공공임대·선임대후매도용 농지

-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 다음의 경우에 매입 할 수 있다. 단,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답·과수원) 중 경지정리 및 받기반정비 사업이 완료된 농지(국토계획법 상 계획관리지역은 제외)는 매입 가능

1) 감정평가가격이 지역별 매입상한 이내인 농지

- 공사 사장은 지역의 지목별(논·밭등) 농지가격 수준을 감안하여 지역별 매입상한을 정하고, 매년 별도로 정하는 목표 면적 이상을 매입하여야 함

2) 동일인이 소유(공사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하는 서로 연결한 필지의 농지로서 그 면적의 합이 1,983㎡ 이상인 농지

3) 이농·직업전환,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소유농지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이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농지법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상속농지, 농지법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한 농지

\* 은퇴농업인의 기준은 별표2[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22호(‘23.3.31)]에 따름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3제2항제3호 따라 농지연금 가입자 중 담보농지로 채무변제를 신청한 농업인의 농지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0제2항제3호에 따라 경영이양형·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담보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

6)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고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에 따라 공사에 5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한 농지

8)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유농지

9)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10) 과수목이 있는 경우 과수목을 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매매계약 전에 이전(移轉) 조치할 농지

1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되어 분양받은 간척농지로 8년 이상 경작하고 용자금 상황이 완료된 농지



- 12)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매수청구 농지
- 13) 농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 농지를 매수청구한 농지(단,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에 한함)
  - 이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팎 농지, 공시지가(또는 실거래가가 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공사가 정한 지역별 매입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매입 가능
- 교환 또는 분리·합병 농지
  -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논·밭(경지정리 사업지구내 포함)

##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매매용 농지 매입비
  - 비농업인,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 농지 매입대금
- 임대용 농지 임차비
  -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장기 임차할 경우 선급금으로 일시 지급
- 농지의 교환·분합 지원
  -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상호간에 논 또는 밭을 교환 또는 분리·합병 대금
- 공공임대·선임대후매도용 농지매입비
  -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 농지 매입대금
-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생산기반 정비 및 집단화된 부지 매입대금

## 6. 지원방법

- 농지매매 :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사업 지원대상자에게 매도
  -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매매계약 체결
    - 1) 매도가격 :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준
    - 2) 지원한도 : '23년 2월 공사 홈페이지 '법령 및 내규'에 게시 예정(www.ekr.or.kr)
    - 3) 농지대금 납부방법 :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

\* 연령에 따라 최장 11~30년까지 원금균등분할 납부(연리 1%)

4) 지원농가 의무사항 : 지원농지가 논일 경우에는 최초 매매 계약일로부터 2년 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고, 타작물 재배기간 동안은 이자 감면

○ 임차농지임대 : 공사가 임차한 농지를 지원대상자에게 임대

-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임대계약 체결

1) 임대기간 : 5~10년(공사와 농지 소유자간의 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름)

2) 임대료 : 공사와 농지 소유자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공사가 선지급한 임차료 총액

\* 관행 임대차료 범위 내에서 농지 소유자와 합의 결정

3) 임대료 납부방법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대받은 농가는 일시불 또는 임대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매년 공사에 납부(분할납부시 이자 없음)

○ 비축농지임대 : 공사가 매입·소유한 농지를 지원대상자에게 임대

-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임대계약 체결

1) 임대기간: 5년(5년 단위로 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재임대)

\* 임대차 계약일 현재 만55세 이하의 자가 농업용 시설에 타작물을 재배 하려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함(휴경은 제외)

\* 농업용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임차인이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농신보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임대(단,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능)

\* 임대차 계약일 현재 스마트팜 보급 정부 정책사업 참여 또는 스마트팜 장기보육과정 수료 후 스마트팜 시설재배를 하려는 경우에는 최장 20년간 임대(기본 10년, 평가후 10년 연장)

\* 경영실습임대농장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비축농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농지법 제24조의2에서 정한 기간을 따른다

2) 임대료 : 해당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 작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차자와 공사간 합의된 금액으로 결정하되, 관행 임대료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3) 지원농가 의무사항 : 농가는 임차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대계약 기간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필요한 경우 휴경하여야 함

\* 논에 벼외 타작물을 재배(휴경 포함)시 임대료의 80%를 감면

○ 교환 또는 분리·합병

- 지원한도 및 방법

- 1) 농업인(농업법인) 상호간 교환 또는 분리·합병에 따른 가격 차액 지급
- 2) 교환 또는 분리·합병당사자 쌍방이 공사에 신청, 교환 후 농지의 평가액이 감소된 자에게 공사가 대위변제

- 환지청산금 지급
- 납부 방법 : 10년 이내 균등분할 납부(연리 1%)

#### ○ 선임대후매도

- (지원대상자) 18세 이상~39세 이하 청년농(청년후계농, 2030세대)
  - \* 세부순위는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의 우선순위 반영
- (사업신청) 선임대후매도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지사에서 계약 체결
  - \* 단, 매입예정농지와 신청인의 주소지가 동일 및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여야 함
- (지원대상자 선정)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 선임대후매도사업 공고 후 청년농의 신청을 받아 배정된 한도 내에서 선정
- (농지매입)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상한단가 내에서 매입가능한 농지 매입(감정평가금액)
- (계약체결) 공사에서 정한 제반조건 등에 농가가 동의 시 체결
- (지원한도) 1.0ha 이내
- 영농경력 2년 이하는 0.5ha 이내
  - \*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지원대상자는 0.5ha 이내
- (준수사항) 선임대후매도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아래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임대 및 매도조건 해지
  - 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이력이 없어야 함
  - ② 임대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한 이력이 없어야 함
  - ③ 지원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해야 함
- (임대·매도 계약체결) 매매대금 상환 완료 전까지 공사가 정한 임대·매도 조건으로 농업경영 의무
  - 1) 임대·매도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대·매도 계약을 체결
  - 2) (임대기간) 10년 ~ 30년
    - \* 최초 계약체결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농지대금 조기 납부 시 농지 취득 가능
- 단, 자연재해 등으로 원리금 상환기간 연기시 임대기간 또한 연장

\* 자연재해 등에 따른 원금 상환기한 연기 및 임차료 감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3) (임대료) 표준임차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공사와 합의하여 결정

4) 임대료 납부방법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대받은 농가는 임대기간 동안 매년 공사에 납부
- 공사는 납부약정일 20일전까지 농가에 고지

5) (매도가격) 임대계약 체결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

6) 매매대금 분할상환

(1) 납부기간 : 임대기간과 같음

(2) 납부방법 : 원금 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 후 상환 잔여기간 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가능

- 다만, 정해진 상환금액을 초과하는 조기납부는 임대계약 체결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만 가능하고, 이때 조기납부 수수료는 없음

(3) 상환금리 : 연리 1.0%

- (농업용 시설물의 설치) 농가는 공사의 승인 이후 계약농지에 농업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음

→ 단, 농가가 설치하려고 하는 농업용 시설물은 농지의 원상복구가 용이 하여야 하며, 농업용 온실은 비닐온실(파이프조 단동·연동형)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 승인 절차, 임대조건 및 농지 원상회복을 담보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채권)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1)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징구

2)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징구(2개년 임대차료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3) 연간 임대료를 담보금으로 예치

\* 채권확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소유권 이전) 선임대후매도 계약을 체결한 자는 지원농가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매매대금 상환이 완료된 후 공사 매입농지 소유권 이전

○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 유희부지, 국공유지 등을 공사가 매입한 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정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임대 및 매도

- (지원대상자) 18세 이상~39세 이하 청년농(소유농지가 0.5ha 이내인 자)
  - \* 지원자격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시행지침 참고
- (지원규모) 1인당 0.5ha이내 지원
- (지원방식)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또는 매도

### 가) 임대조건부 매매(先임대 後매도)

- 임대조건부 매매계약 체결 : 공사에서 정한 제반조건 등에 농가가 동의시 채권확보 등을 거친 후 임대조건부 매매계약 체결
  - \* 임대기간, 임대료, 임대료 납부방법, 매매계약 체결 등 세부내용은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 | 권(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시행지침) '임대조건부 매매'와 동일

### 나) 매입조건부 임대

- 매입조건부 임대계약 체결 : 공사에서 정한 제반조건 등에 농가가 동의시 채권확보 등을 거친 후 매입조건부 임대계약 체결
- 임대기간 : 10년
- 임대료 결정 : 해당지역의 농지임대료 수준, 작목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차농지 임대」 임차료 결정 방법에 따른 「표준임차료(해당지역 관행임차료 평균 수준)」의 50%~100% 범위 내
- 매도계약 체결 :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로 조성된 농지에 대해 매입조건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는 지원농가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임차농지에 대해 농지 매입 가능
  - 매매계약의 체결
    - ① 공사는 임대기간 종료 후 매매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계약 체결
    - ② 농가는 지원받은 농지를 직접 경영하여야 하며, 매매계약일로부터 8년간 전매·임대·위탁경영 등 금지
  - 매도가격 : 매매계약체결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
    - \* 감정평가 비용은 공사가 부담
  - 농지대금 납부방법
    - ① 매입 농가의 선택에 따라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납부

## ② 대금 일시납부

구 분	금 액	수 납 시 기	수납방법
계약금	매도대금의 10%	계약체결시	계좌입금
잔 금	매도대금의 90%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입금

## ③ 분할납부

- 매도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도대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매입 당시에 납부하고 잔액은 10년간 원금균등분할 납부
- 상환금리 : 고정금리(2.0%)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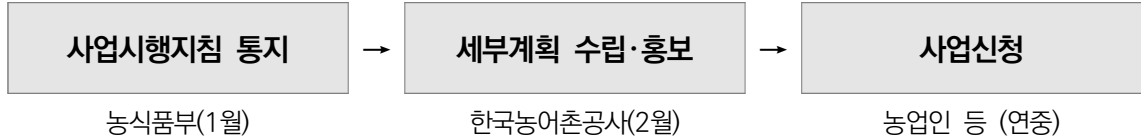
\* 매입대상자가 금리 적용방식 선택

- 채권확보 : 매도대금을 분할 수납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공사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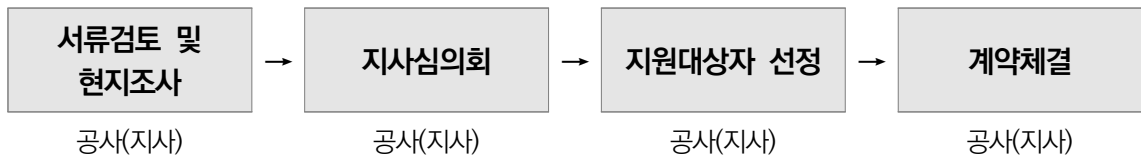
가. 사업시행지침 시달(1월) 및 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1월)

나. 사업시행계획의 공고(2월) 및 사업홍보(연중)

다.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연중 신청)

\* 신청서 및 선정기준 등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농지은행포탈 등에 게재

### 2. 사업자 선정



가. 매입·임차 대상농지, 매입가격(임차료) 협의 및 결정(한국농어촌공사)

나. SMS 등을 활용하여 매도·임대농지 정보를 농지소재지(시·군·구) 인근 지원 대상자에 제공하여 신청을 받아 지원기준에 따라 매도·임대 대상자 선정

\*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일반적인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로, '23년 신규로 추진된 선임대후매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의 경우 대상자 공고 등 기간과 절차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생산기반  
(공통)

1-4

농

지

## I

## 사업 개요

## □ 목적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라 함)이 부채를 갚고 경영회생 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농지등'이라 함)을 매입, 매입농지 등은 당해 농업경영체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안정성 도모

## □ 사업내용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장기임대하여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매입농지 해당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을 보장
- 지원 기준
  - 매입대상 : 농지(전·답·과수원) 및 부속된 농업용시설
  - 매입가격 : (농지) 감정평가금액 (농업용시설) 임대기간 만료시점 감정평가금액
  - 매입상한 : (지원한도) 6~11.3만원/m<sup>2</sup>(지역별 상이)  
(지원상한) 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해당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 농지의 형상, 경작여건, 작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차자와 공사간 합의된 금액으로 결정하되, 공사가 조사하여 정한 관행 임대료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 환매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매입가격에 연간이자(3%) 가산금액 중 낮은 금액  
(농업용시설) 당초 매입가격
- 환매포기농지 : (진흥지역 내) 임대관리, (진흥지역 밖·시설물) 매각관리
- '24년 예산 : 233,700백만원 (용자)

□ 사업 신청

- 장소 :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1577-7770, <https://www.fbo.or.kr>)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자 선정

- 신청농가의 지원자격 및 매입농지 적격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자 결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사무관 김광희	044-201-1732
		주무관 박민지	044-201-1733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부 장 강수환	061-338-5901
		과 장 백성민	061-338-5902

## 1. 사업대상자

-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다시 임차하여 농업경영을 지속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지원대상자

- ① 일반 농업경영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가 40백만원 이상
  -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
- ②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
  - ‘일반농업경영체’ 요건을 모두 충족하되, 환매가능성 평가지표가 100%이상이고, 시설·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이상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 나)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하여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신청년도 1월1일 현재 만 76세 이상인 농업인. 다만,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76세 이상도 지원 가능
  - \* 영농승계자가 없는 만 71세 이상 만 75세 이하인 농업인의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지원을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한국농어촌공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농가세대원 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외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 이상인 자
  -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증명원 등을 징구하여 확인
- 세대원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상가, 별장, 골프 또는 콘도회원권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 자녀교육·상속 등 불가피하게 소유가 된 주택은 2주택에서 제외

\* 주택, 상가 등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 등으로 확인

- 사치, 도박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부채가 있는 농업경영체
- 소유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시 매매대금으로 부채전액 상환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i) 자산을 매각하여 잔여 부채를 전부 상환한 경우
  - ii)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가능하고 잔여부채를 농업경영 회생자금으로 대환하는 경우
  - iii)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부채가 증장기 처리 정책자금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없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iv)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8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농지가 있거나 잔여부채의 규모, 조건 등이 상환에 어려움이 없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기타 사유로 공사 지사장 또는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

### 3. 매입대상

#### 가) 농지

-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최근 3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나)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

-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 소유의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 축사 1,000㎡,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3,000㎡, 버섯재배사 500㎡이상인 시설

### 4. 농지등의 임대

- 임대 대상자 :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한 당해 농업경영체

- 임대기간 및 임대료
  - ① 임대기간 : 7년,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② 임대료 : 해당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 농지의 형상, 경작여건, 작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차자와 공사간 합의된 금액으로 결정하되, 공사가 조사하여 정한 관행 임대료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임차료의 감면 :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임차료 감면기준 적용

## 5. 농지등의 환매

가. 환매 대상자 :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

나. 환매기간 : 임대기간(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기간)과 같음

다. 환매가격

- 전부환매가격
  - ① 농지 : '환매시점 감정평가 금액'과 '농지매입가격과 농지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율(연 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중 낮은 금액(감정평가 비용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
  - ② 농업용시설 : 당초 매입한 금액. 단,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초매입 금액에서 감가상각 선납액을 차감한 금액
- 부분환매가격
  - ① 농지 : 환매시점 감정평가 금액
  - ② 농업용시설 : 당초 매입한 금액. 단,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초매입 금액에서 감가상각 선납액을 차감한 금액
- 환매대금 수납
  - ① 일시납부

구 분	금 액	수 납 시 기	수납방법
○ 계약금	계약금액의 10%	○ 계약체결시	○ 계좌입금
○ 잔 금	계약금액의 90%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좌입금

② 분할납부

- 환매권자가 공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 중에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100분의 30이상을 환매 당시에 납부하고, 잔액은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영 제19조의6 제3항에 따른 부분환매의 경우에도 분할 상환 조건은 동일)

- 상환금리 : 고정금리(연 2.0%) 또는 농업정책자금의 변동금리

\* 환매권자가 금리 적용방식 선택

\* 분할납부 세부기준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③ 수시납부

- 환매권자는 공사법 시행령 제19조의6 제6항에 따라 임대기간 중 환매대금을 미리납부 할 수 있음

- 환매대금 공제 : 환매권자가 시행령 제19조의6 제6항에 따라 환매대금을 미리납부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의6 제1항에 따른 환매신청 시점에 당초 매입한 농지등의 환매가격에서 환매대금을 미리납부한 금액(이하 “환매대금 선납금”이라 한다)을 공제

- 환매대금 반환 : 공사 지사장은 환매권자가 공사법 시행령 제19조의6 제6항에 따라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환매신청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 선납금을 반환

## 6.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사에 소유 농지등을 매도하기로 합의한 농업경영체의 농지등 매입비

## 7.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시행기관인 공사에 농지등 매입비 대여(농지관리기금 용자 100%, 무이자)

○ 공사는 매입 농지등의 전체를 해당 농업경영체에 임대 및 환매권 보장

## 8.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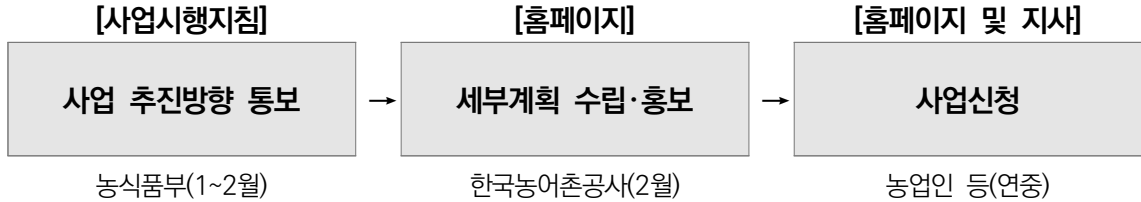
○ 부채규모의 1배 한도 내에서 매입하되, 경영체당 매입금액은 농업인은 15억원, 농업법인은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필지(시설)별 매입에 따라 매입액(감정평가액 기준)이 부채금액의 1배를 초과시에는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2030세대 또는 귀농인은 부채금액의 20%, 그 외 사업참여자는 부채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시납부 약정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매입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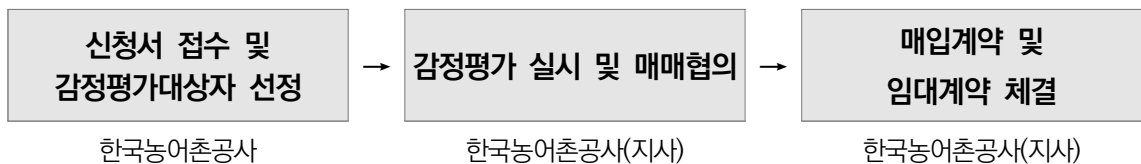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지침 시달(1~2월) 및 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2월)
- 사업시행계획의 공고(2월) 및 사업홍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협중앙회)
-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상담을 실시하고 「농업경영 회생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해당 농협 일선조합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국농어촌공사)
- 금융거래확인서(대출내역, 대출금용도, 담보제공 부동산 소유현황) 및 고객종합 상세정보서(타행 여신 현황, 예·적금 현황)를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신청인에게 제공(농협중앙회)
- 신청서, 경영회생계획서, 부채 증빙자료 등 서류를 신청자 주소지 관할 한국 농어촌공사 또는 농협중앙회에 제출(농업인)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농지은행포탈([www.fbo.or.kr](http://www.fbo.or.kr)) 자료실 및 공사 홈페이지 (<http://www.ekr.or.kr>) 주요사업에 게재

### □ 2. 사업자 선정



- 지원금액에 따른 감정평가대상자 선정기관
  - 4억원 이하(지사장), 4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지역본부장), 10억원 초과(공사장)

- (지사장)신청서 접수, 경영진단반 구성·운영, 현지조사, 농업경영실태 평가, 지사심의회를 통해 4억원 이하 지원적격자를 감정평가 대상자로 선정 및 4억원 초과 지원적격자는 지역본부장에게 추천
- (지역본부장)심의회를 구성하여 지사 추천자에 대한 지원 적격여부 및 평가의 적격성 검증하고, 농지은행심의회를 거쳐 부채규모가 10억원 이하인 지원적격자는 감정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고, 10억원 초과 지원적격자는 본사에 추천
- (공사장)지역본부장이 추천한 자에 대한 본사 농지은행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본부에 통보, 지원대상자 선정 점검 및 지도, 감정평가법인 선정
- 감정평가 실시, 현장조사 입회 및 감정평가 결과 검토(지사장)
  - 감정평가 실시 : 공사 본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 공사 지사장이 평가 의뢰
    -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은 매도 신청자가 부담
  - 현장조사 입회 :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위해 현장조사시 지사직원이 함께 입회하여 조사 실시
  - 감정평가 결과 검토 : 현지가격, 인근 실거래가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 금액이 공시지가의 2.0배를 초과하거나 공사가 조사한 현지가격보다 높은 경우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본사 및 지역본부 농지은행 심의회를 통해 감정평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
    - \* 본사심의 : 3.0배 초과필지, 지역본부 심의 : 2.0배 초과 ~ 3.0배 이하 필지
- 농지소유자와 매입가격 협의결과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준비하여 매매계약 및 임대계약 체결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생산기반(공통)

---

### 1-5. 농촌인력, 일자리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 사업 내용

- 농촌인력증개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증개하는 사업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촌형)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농촌형 인력증개센터 사업대상자 기준(붙임 참조)을 충족하며,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 (도시형) 농협중앙회(농촌지원부)
- (공공형 계절근로) 지자체가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 지원
  - (센터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 경상경비
  - (인력운영비) 교육비, 임차비, 교통·숙박비, 영농작업반장 수당, 보험료 등
    - (구인자) 교육비, 취약계층 우선 증개\* 추진
      - \* ① 독거노인,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② 고령농, 여성단독, 소규모 농가 등
    - (구직자) 교통·운송비, 숙박비, 식비, 교육비, 보험료 등
      - \* 농작업 참여자의 인건비는 농가에서 지급
- 지원기준 :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 지원

- (농촌형) 189개소\* × 70~90백만원 × 50%(국비 50%, 지방비 50%)
    - \* (시도형) 9개소, (시군형) 180개소
  - (도시형) 1개소 × 130백만원 × 70%(국비 70%, 자부담 30%)
  - (공공형 계절근로) 70개소 × 90~110백만원 × 50%(국비 50%, 지방비 50%)
- '24년 예산: 22,110백만원(국비 11,081, 지방비 10,990, 자부담 39)

**□ 사업 신청**

- (농식품부) 다음연도 사업 신청·접수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전년도 10월)
- (시·도) 시·군이 제출한 사업 신청자 기초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우선순위와 사업 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10~11월)
- (시·군) 농촌인력증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의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10~11월)

**□ 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전년도 11~12월)
- 선정 결과를 시·도, 시·군에 통보(전년도 11~12월)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서기관 김동일 주무관 임성현	044-201-1721 044-201-1722
지방자치단체(시·군)	사업담당과	-	-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김기태 팀장	02-2080-5567
		이승현 팀장	02-2080-5577

☞ 본 사업은 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해 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및 e나라도움운영지침에 따름

##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농협중앙회
- 사업대상자
  - (농촌형)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농촌형 인력증개센터 사업대상자 기준(붙임 참조)을 충족하며,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 (도시형) 농협중앙회(농촌지원부)
  - (공공형 계절근로) 지자체가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등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 \* 지자체(시·도, 시·군)의 인력수급 여건에 따라 복수의 농촌인력증개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
- 선정우선순위: 농촌인력증개센터가 미설치된 시·군에서 신규 신청하는 경우, 기존 운영센터에서 연속으로 신청하는 경우\* 우선 선정 고려
  - \* 단, 최근 2개년 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우선 선정 대상에서 제외

## 3. 지원 대상

-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비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운영비, 인력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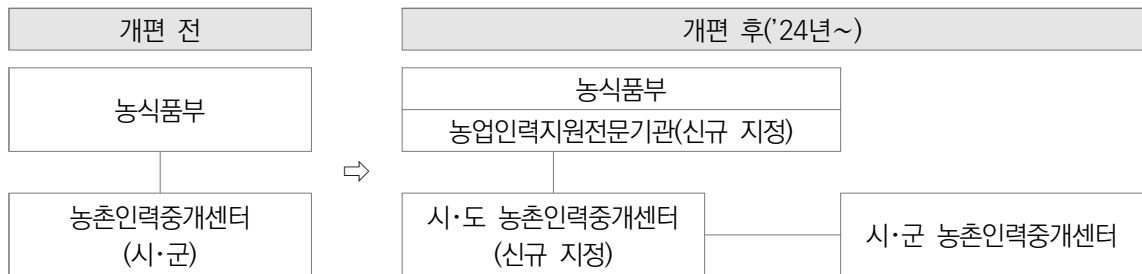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기간: '24.1.1.~'24.12.31.
- 사업규모: '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 260개소 운영(농촌형 189, 도시형 1, 공공형 계절근로 70)
- 총사업비: 22,110백만원(국비 11,081백만원, 지방비 10,990백만원, 자부담 39백만원)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도시형인력중개센터는 국비 70%, 자부담 30%)

## 6. 사업 추진체계 및 내용

- (추진체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 알선·중개

### 〈 사업 추진 체계 〉



- (농촌형) 시·도, 시·군에 농촌형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사업

- \* (시도형) 관내 인력수급 모니터링, 도시구직자 모집·구성, 시·군간 인력 조정, 내·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 등
- (시군형) 관내 인력풀 모집·구성 및 인력 중개·알선, 인력수급 상황 모니터링, 내·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 등

### 〈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업무 범위 〉

-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 농업 고용인력 및 사용자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 농업 고용인력 및 사용자에 대한 상담 및 무료직업 소개·지도
  - 농업 고용인력의 작업장 이동 지원 및 지역간 연계 협력
  - 관내 인력풀 모집·구성 및 시·군간 인력 조정 등 지원
  - 관내 인력수급 상황 모니터링(인력수급 현황, 농작업 동향, 인건비 동향 등)

■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지자체, 농협중앙회, 농업인단체, 인력지원 관련 단체\* 등)**

\* 출입국사무소, 다문화센터, 대학교,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자원봉사 단체 등

■ **관내 내·외국인 농업 고용인력 활용 지원(신설)**

- 내·외국인 농업 고용인력에 대한 농업기술·안전교육, 한국어 교육, 통역에 관한 사항
- 내·외국인 농업 고용인력 및 사용자에게 대한 고용·노무관리 등의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시도형 인력중개센터는 도시구직자 모집을 위한 홍보 업무 집중 추진(홍보 전단지 제작·배포, 플랜카드 게시 등)

- **(도시형)** 도시 유희인력을 모집·선발하여 농작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지자체 또는 농촌형 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하여 필요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

\* 도시형인력중개센터는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공공형 계절근로)**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

\* 공공형 계절근로의 자세한 운영조건 및 내용은 p.22~27 참조

○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추진내용)** 구인-구직자간 중개 업무, 구인·구직 상담, 일정 관리, 농작업 교육, 인력수급 모니터링, 내·외국인 근로자 활용 지원 등

① **센터 운영**

- **(중개)** 구인-구직자간 중개업무, 구인-구직 상담, 일정 관리 등
- **(홍보)** 관내·외 홍보, 유관기관 연계 구축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으로 구인자·구직자 모집 및 인력풀 구축
- **(모니터링)** 관내 인력수급 현황, 인건비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

•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주요·품목별 표본농가 등을 선정하여 모니터링 실시

\* 관내 주요 품목·규모별 농가, 이장, 농업인 단체, 품목 단체 등 관련 협회·단체 임원 등

- **(도농인력중개플랫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기관은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하여 구인-구직 홍보 및 등록, 데이터 관리 등 추진

•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한 구인 공고 게시(최소 월 2회 원칙, 필요시 수시)

•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생산되는 각종 통계자료\*, 인력수급 현황 등 모니터링 내용에 대해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입력 및 관리

\* 중개실적, 구인-구직자 정보, 인력풀 및 영농작업반 현황 등

② **인력 운영**

- **(운영대상)** 농가, 농업법인·조합(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도시·관내 유희

생산기반  
(공통)  
1-5  
일농  
촌  
자  
인  
력

인력 등 농작업 참여 희망자, 국내에 체류하며 농업분야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는 외국인

- **(운영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분야
  - \*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우선순위)** 인력증개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지원
  - (1) 독거노인,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2) 고령농, 여성 단독, 소규모 등 영세 농가, (3) 노지채소, 과수 등 인력 수요가 높은 농가
  - \* 단, 태풍·우박·폭설 등 자연재해, 시급한 인력수요 발생시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영농작업반)** 효율적인 인력증개를 위해 모집된 인력풀을 활용하여 영농작업반장 선정 및 영농작업반을 구성하여 인력지원
  - \* 영농작업반은 영농작업반장 포함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영농작업반장은 작업반 인솔, 일정 관리, 농작업 교육 등 진행
- **(농기계작업반)** 밭작물 농기계 소유자 또는 임대를 통해 밭작물 농작업 대행이 가능하도록 농기계작업반 운영 및 지원 가능
  - \* 농기계작업반을 모집 등록하고, 농가의 농작업 대행 수요에 따라 중개
- **(교육)** 내·외국인 농업 고용인력 및 농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인권보호, 농업기술 및 안전교육, 한국어 교육 등 관련 교육 지원(신설)
  - \* 농업관련 전문가, 센터 담당자, 영농작업반장, 우수 농가 등을 활용 관련 교육 진행
-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모집 강화, 계절근로 참여 확대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농가 수요접수, 홍보, DB 구축 등 지자체 행정지원\*\* 추진(신설)
  -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참여 대상자(해외도입이 아닌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 \*\* (지자체) 계절근로자 및 농가 DB 등을 기반으로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계약 추진 (중개센터)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참여 희망 농가에 대한 수요 접수, 홍보, 명부 작성 등 행정지원

### 〈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프로세스 〉

	등록		활용	
계절근로를 희망하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	↔	농촌인력증개센터 (인력 DB 구축)	↔	지자체 상시 인력 도입 국내체류 계절근로자 홍보·채용 활성화
국내체류 계절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농가				



##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농촌형 인력중개센터)

○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예산) '24년 15,120백만원(국비 7,560, 지방비 7,560)

- (지원기준) 189개소 × 70~90백만원 × 국비 5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추가 수립 가능

항목	세부항목	사용 용도
센터 운영비 (40%)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 전담인력 인건비</li> <li>■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연가보상비, 초과 수당, 기타 수당 등)</li> </ul>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용품, 인쇄비 및 유인비, 공공요금 등</li> <li>■ 센터 등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비</li> <li>■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 수선비, 각종 수수료 등 유지·보수비</li> <li>■ 각종 회의비, 간담회비 등</li> <li>■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수막, 간판 등 안내 물품, 사업 홍보 확산에 관련된 경비</li> </ul> </li> <li>■ 센터 전담인력 등의 출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여비업무처리 기준[별표 6]에 의거하여 집행</li> </ul> </li> <li>■ 기타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용도 범위내 비용</li> </ul>
인력 운영비 (60%)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외국인 농업 고용인력 및 농가 교육을 위한 비용(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준법 준수, 인권보호, 농작업 교육, 안전 교육, 한국어 교육, 통역지원 등</li> </ul> </li> <li>■ 고용주(농가 등)가 도시·신규 구직자 채용시 교육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자 1인 기준 20천원 지급(인당 최대 3일 지급가능, 일 최대 지급 상한 100천원)</li> <li>* 각 센터별 농작업 참여 기록이 없는 도시·신규 구직자가 농작업에 참여한 경우 지급</li> </ul> </li> </ul>
	임차비 및 차량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운영 등에 필요한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li> <li>■ 인력운영 등에 필요한 공용차량 유류비 등</li> </ul>
	농작업 참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비) 이동거리 30km 미만은 1일 5천원, 이동거리 30km 이상은 1일 10천원 지급</li> <li>* 구인자(농가)가 근로자를 직접 수송하는 경우 구인자(농가)에게 교통비 지급 가능(1일 지급 상한 10천원)(신설)</li> <li>- (기타) 자원봉사자 수송을 위한 전세버스 이용료 등 지원 가능</li> </ul> </li> <li>■ 참여자에 대한 숙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비) 1박당 20천원 지급</li> <li>* 단, 관외 구직자가 3일 이상 연속하여 농작업에 참여하는 경우 숙박비 지급</li> <li>* 작업개시일, 종료일을 제외하고 숙박비-교통비 중복 지급 불가</li> <li>- (기타) 지자체에서 관외 구직자를 위한 마을회관, 공동시설 등 숙박시설 지정·활용에 따른 비용 지출 가능</li> </ul> </li> <li>■ 참여자에 대한 간식비 등(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식비 등) 1일 5천원 지급</li> </ul> </li> </ul>

생산기반 (공동)  
1-5  
일농  
촌  
자  
인  
리  
력

항목	세부항목	사용 용도
	영농작업반장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작업반장 활동 수당</li> <li>- 영농작업반장의 활동일 기준으로 1일 10천원 지급</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참여자 상해보험료 지원</li> <li>■ 농작업 도구, 안전 장비 등 구입 비용</li> <li>■ 농작업 모니터링 조사와 관련된 비용</li> <li>■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시 필요한 비용 지급 가능</li> <li>■ 기타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용도 범위내 비용</li> </ul>

## ※ 사업비 편성·집행 기준

### 〈 사업비 편성 〉

- (용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교육비, 교통·운송비, 숙박비, 보험료 등 경상적 경비
- (편성) 국고보조 사업비는 센터운영비(40%), 인력운영비(60%)로 항목을 편성하여 신청하고, 반드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

\* 시도형 인력중개센터는 구직자 모집 강화 등을 위해 센터운영비-인력운영비간 예산 편성비율 조정 가능

- (변경사항) 불가피하게 사업비 변경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
  - 항목 간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 혹은 광역지자체(시·도)의 사전 승인\* 후 변경 가능

\* (센터운영비 → 인력운영비) 광역지자체(시·도)에서 사전 승인 후 조정 가능  
 (인력운영비 → 센터운영비) 농식품부에서 사전 승인 후 조정 가능

- 항목 내 세부 항목 간 예산 변경은 기초지자체(시·군·구) 사전 승인 후 변경 가능
- 농촌형 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계절근로 센터간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광역지자체(시·도)의 검토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 후 조정 가능

### 〈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
  - 토지 건물의 구입비 등 자본재 지출 불가
  - 중요자산(내구성물품)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입비용은 지원 가능

\* 중요자산(내구성물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50만원 이상)

\*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시설·장비 임차 비용의 지급 기준

-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시설·장비 임차 시에는 실제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을 수행하기위해 필요한 기간 범위내에서만 임차비를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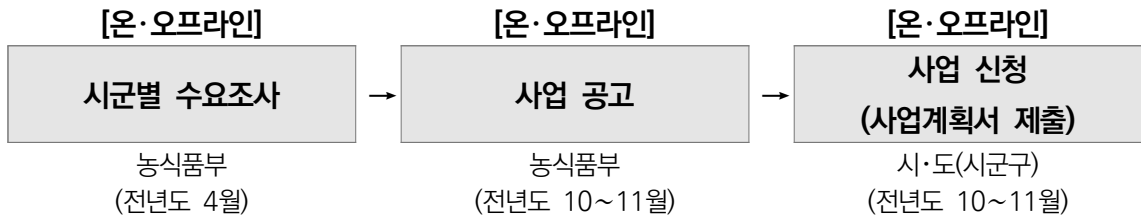
○ 간담회 비용 사용은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추진 내용	추진일정
① 사업 수요조사 (농식품부)	전년도 4~5월
↓	
② 사업 시행지침 안내 및 사업 공모·공고 (농식품부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전년도 10~11월
↓	
③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전년도 10~11월
↓	
④ 기초지자체 사업신청서 및 도별 1차 평가 결과 제출 (광역단체 → 농식품부)	전년도 10~11월
↓	
⑤ 사업 심사 및 선정 (농식품부 사업선정위원회)	전년도 10~11월
↓	
⑥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농식품부 → 광역단체 → 기초지자체)	전년도 11~12월
↓	
⑦ 사업 예산안 확정 통보 (농식품부 → 광역단체 → 기초지자체)	전년도 11~12월
↓	
⑧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사업수행기관 ↔ 지자체 ↔ 농식품부)	당해연도 1~2월
↓	
⑨ 사업 실시 (지자체, 사업수행기관)	당해연도 1월~
↓	
⑩ 지도·점검 (농식품부, 지자체, 농정원)	당해연도 1월~
↓	
⑪ 사업 평가 (농식품부, 지자체, 농정원)	당해연도 11~12월
↓	
⑫ 사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 → 농식품부)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 수요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통보(전년도 4~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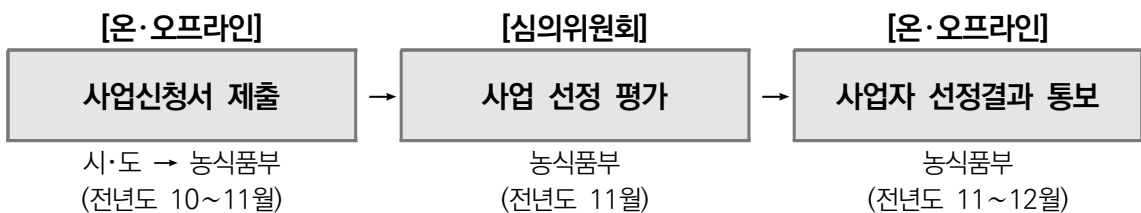
#### 시·도

- 시·도는 시·군에 수요조사 계획을 통보하고, 시·군의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전년도 4~5월)

#### 시·군

- 시·군은 관내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기관·단체, 기운영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4~5월)

## 2. 사업자 선정



### □ 사업 신청 및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통보(전년도 10~11월)

생산기반  
(공통)  
1-5  
일농  
촌  
자  
인  
리  
력

## 시·도

- 시·도는 시·군에 신청·접수 계획을 통보
- 시·도는 시·군이 제출한 신청자료를 기초로 지자체 추천 기준 [별표 1]에 의거하여 1차 평가 실시 후 사업 우선순위와 사업계획서 [별지 1호 서식]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전년도 10~11월)

## 시·군

- 시·군은 관내 사업대상 요건을 충족한 기관·단체에게 신청·접수 계획을 통보하고,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10~11월)

## □ 사업자 선정 및 예산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별도의 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전년도 10~11월)

\* 사업 선정위원회는 내·외부위원 5인 이상(외부위원 1/2 이상)으로 구성.

### 〈 선정위원 자격요건 〉

공통사항	자격요건
① 심의대상 관련 이해관계가 없는 자	① 대학 조교수(전문대 부교수) 이상
② 해당분야 전문성 또는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	② 5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③ 컨설턴트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④ 박사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보유자
	⑤ 석사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⑥ 학사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 보유자
	⑦ 단체·협회의 사무총장(중앙단위) 등

- 선정위원회는 사업 내용의 구체성, 인력 모집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 준비 및 경험, 시·도에서 제출한 1차 평가 우선순위 결과 등 선정평가 기준 [별표 2]에 의거하여 심사

\*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 선정평가 기준표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결과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시·도별로 가내시 통보(전년도 11~12월)

## 시·도

- 시·도는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 선정결과를 시·군에 통보(전년도 11~12월)
- 시·도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 준비(전년도 11~12월)

## 시·군

- 시·군은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 선정결과를 사업 신청자에 통보(전년도 11월~12월)
- 시·군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비 예산 확보, 전담인력 채용, 인력풀(pool) 확보 등 사업 추진 준비(전년도 11월~12월)

## I

## 사업 개요

## □ 목적

- 농업 분야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통한 농업 근로자 주거 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 확보

##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내용
  - 농업 분야 근로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거주시설 건립 신축비와 개·보수비 지원
- 지원자격
  - 농업 분야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건축물 사업부지가 확보(소유권, 지상권 등)된 지자체

## □ 지원내용

- 사업대상지 내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전기통신 시설 등 기반조성비를 포함한 시설 건축비 또는 개·보수비
  - \* 부지매입비,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비용, 민원해결 비용 등은 지자체가 부담

##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 시·도에서는 시·군·구가 제출한 사업 추진계획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식품부에 제출(23.12월)
- 대상자 선정
  -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서기관 김동일 주무관 임성현	044-201-1721 044-201-1722

### 1. 사업대상자

- 전국 시·군·자치구(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이하 지자체 또는 시·군·자치구라 함
  -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과 범위: 동 사업은 농업 근로자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건축물 건립 사업으로 사업 신청 전 사업 부지가 미확보된 지자체는 참여할 수 없음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농업 분야 근로자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건축물 사업부지가 확보(소유권, 지상권 등)된 지자체

**국고보조금법 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지원요건 : 「II. 사업추진체계 등」 참조

### 3. 지원대상

- 외국인 또는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
  - \* 지원근거 : 「농업식품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 육성), 「농어업인 삶의질법」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 육성) 등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분야 근로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거주시설 건립 신축비와 개·보수비 지원
  - 사업대상지 내의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전기통신 시설 등 기반조성비
  - 시설 건축비 또는 개·보수비, 주거 안전 및 편의 관련 기자재 구입·설치비
    - \* 부지매입비,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비용, 민원해결에 따른 비용 등은 지자체가 부담, 시설운영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조례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 지원 기준 및 사업규모(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분	내용
<b>거점형</b> (2개소, 총 48억, '24~'26년)	▶ 시군 단위, 100명 내외 수용 기숙사 * 식당 등 공동 시설 이용이 가능한 기숙사형으로 50실 내외 규모의 건축(신축·개축) ▶ 개소당 24억(국비50%, 지방비50%)
<b>마을형</b> (8개소, 총 120억, '24~'26년)	▶ 마을 단위, 50명 내외 수용 기숙사 * 취식이 가능한 원룸형 형태의 기숙사형으로 25호 내외 규모의 건축(신축·개축) ▶ 개소당 15억(국비50%, 지방비50%)

#### - 유형별 공통 지원 조건

- \* 지자체 부지확보(소유권, 지상권 등) 후 사업 신청, 시설관리계획 마련 및 관리 운영(부지매입, 시설 유지 보수·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
- \* 에너지 절약형 주택, 태양광 발전 도입 및 시설 이용자와 인근 주민들이 교육·문화·여가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편의시설 포함 설치 권장
- \* 상기 지원 기준 및 사업 규모 등은 국회 예산 확정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 사업기간 : 2024~2026(3년간)

### ○ 시설 기준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 \* 근로기준법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제58조(기숙사의 면적),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등 준수

### ○ 시설 이용대상

#### - 농업 분야 외국인·내국인 근로자

-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근로자는 절대 사용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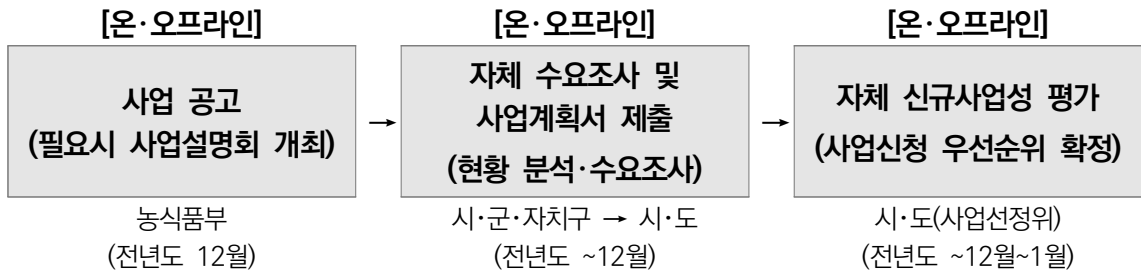
### III

## 사업추진체계

사업 신청 단계	사업공고	〈농식품부〉 (N-1 ~12월)	○ 사업 시행지침 확정·공개 및 사업 공고[농식품부] - 필요시, 사업설명회 개최
	↓		
	자체 수요조사 (사업부지 확보 및 위치 적정성 검토)	〈시·군·구〉 (N-1 ~12월)	○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사업 수요 및 사업 물량 계획 ○ 사업 신청 전 부지확보[주민, 관련 기관·부서 협의] ○ 사업 계획서 작성[시·군·자치구→시·도]
↓			
	자체 신규 사업성 평가	〈시·도〉 (N-1 ~12월)	○ 자체 수요 제출[시·군·자치구→시·도] ○ 자체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시·도] - 사업 신청 추천 순위(시·군·자치구) 등 작성
↓			
사업 선정 단계	사업 신청 및 접수	〈시·도, 농식품부〉 (N-1 ~12월)	○ 사업 신청[시·도→농식품부] - 자체 선정위 선정결과(추천)와 검토 의견서(붙임3) 첨부
	↓		
	신규사업성 평가 및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농식품부(농정원)〉 (사업연도 ~1월)	○ 1차(서류)·2차(현장) 평가 등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 사업대상자 통보[농식품부→시·도→시·군·자치구]
↓			
사업 시행 단계	시행계획 수립 및 자금 교부	〈시·군·구〉 (사업연도 2월~)	○ 시행계획 수립[시·군·자치구→시·도→농식품부] ○ 보조금 교부[농식품부→시·도→시·군·자치구]
	↓		
	사업 시행	〈시·군·구〉 (사업연도 2월~)	○ 관련 법에 따른 시공자 및 감리자 선정
	↓		
	준공 검사	〈시·군·구〉	○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군(검사)→시·도(보고)→농식품부]
↓			
사후 관리 단계	입주·입소 및 운영관리	〈시·군·구〉	○ 입주·입소자·주택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관리 운영
	↓		
	사후관리	〈시·군·구/시·도〉	○ 지자체 등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후관리 ○ 시·도는 이행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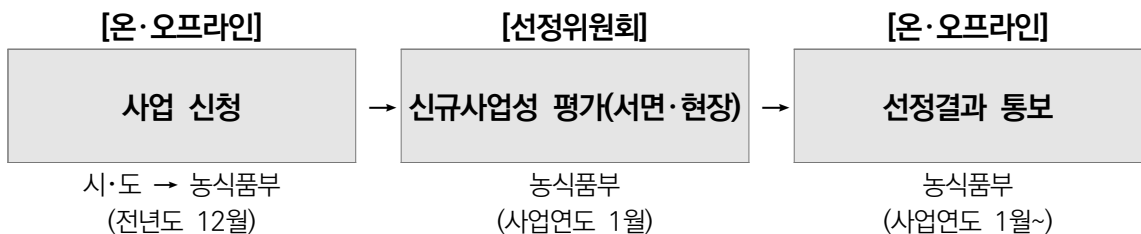
\* 상기 일정은 '23년 정부 예산 확정 등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각 시·도 및 시·군·자치구 대상으로 사업추진계획(시행지침안, 공모 계획안 등)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자치구는 사업신청서(별지 서식 1)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군·자치구는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본 사업의 시급성·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기획
    - \* 농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출퇴근 등), 정주·복지·문화·여가(커뮤니티) 등 검토
  - 시·군·자치구는 부지 선정 시 지역 주민,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한 부지 확보
    - \* 부지가 시·군·자치구·국유지일 경우, 소관 기관과의 협의 내용, 확보 비용 및 일정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 사유지일 경우, 취득방법(협의 매수/수용), 소요(예상) 비용(감정평가액), 취득절차·일정(토지매매 계획서 등)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시·도는 자체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자치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신규사업성 검토 및 사업신청 우선순위 확정

##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에서는 자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붙임 3의 검토의견서 첨부)

- 선정위원회 구성원 중 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농식품부는 5인 이상의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도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서면평가·현장실사 등을 종합 평가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
  - \*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2조(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의 공개) 준수
- 농식품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의가 확정되면 시·도(시·군·자치구)에 통보
  - \* 지자체 수요와 선정위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 신청유형 등 조정 가능  
(예시) 거점형 ⇔ 마을형 물량 조정 등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생산기반(공통)

---

### 1-6. 농기계지원(통합안내)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 □ 사업내용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지자체(시·군·구)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및 임대농기계
  - \*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  
(주산지일관기계화) 경운·정지, 수확까지 일관작업을 할 수 있는 임대 농기계 지원  
(노후농기계대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 교체
- '24년 예산 : 61,88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 사업 신청

- 시·도를 통해 시·군·구에서 농기계임대 사업신청서를 제출

## □ 대상자 선정

- 지자체의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사업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 □ 농기계 임대 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농업인

\* 임대농기계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사무관 김남진 주무관 강민우	044-201-1840 044-201-1841
시·군·구	친환경농업과 등	농기계 담당자	(해당 지자체 문의)

## ①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 1. 사업대상자

-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적기에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수수 및 관리, 사후관리, 홍보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 관리

##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농업인
- 운 용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3일 이상 임대 가능
    - \*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 도서지역 등 임대 여건이 어려운 농업인의 경우 3일 이상 임대할 수 있음
    - \*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반일 단위 임대농기계 운용 가능
    - \* 임대사업소 휴무 등으로 농기계 반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일자 감면 등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 시·군 농업인에게도 임대하여야 함
    - \* 다만, 주소지와 농경지가 다른 경우 임대 우선순위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되, 주소지와 경작지가 동일한 경우만 임대 운영하는 것은 금지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미세먼지 종합대책(국무조정실 주관) 추진과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방지를 위해 잔가지 파쇄기를 우선 구입하여 임대할 수 있으며, 마을단위의 잔가지 파쇄 작업을 위해 이장 등 마을 대표가 잔가지 파쇄기를 임대할 경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음
- 산림청 소속기관, 관내 산림부서 등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작업 대행을 위해 파쇄기 임대 요청 시 임대 지원 가능
  - \* 다만, 관내 농업인의 파쇄기 사용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임대 지원
- 국내 우수품종의 채종기반 유지를 위해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채종용 농기계를 구입 임대할 수 있음

#### 4. 지원자금의 용도

##### ○ 임대농기계 구입

- 밭농사용 농기계 및 밭농사용 부속작업기. 단, 밭농사용 부속작업기를 이용하기 위한 80마력 이하 트랙터는 구입가능
- 밭농업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를 40%이상 구입하여야 함
  - \*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할 수 있음(권고)(농사로 농업기술포털, <http://www.nongsaro.go.kr>)
- 여성농업인 등이 주로 사용하는 농기계\* 포함(부속작업기 포함)
  - \* 관리기, 파종·정식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예취, 굴취, 탈곡, 선별기 등 포함)
- 근골격계 질환 등 농부증 예방 및 농작업 편이를 위한 편이장비 구입 가능
  - \* 편이장비는 이장 등 마을대표를 통한 다수인 임차 때 연명 계약 가능

#####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및 관리시설(세차장, 임대농기계 관리 전산시스템)구축

- 보관창고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되, 필요하면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음
-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하는 “농기계임대사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임대농기계 관리에 반드시 활용하여야 함

#####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등 운영비(연간 30백만원 이내에서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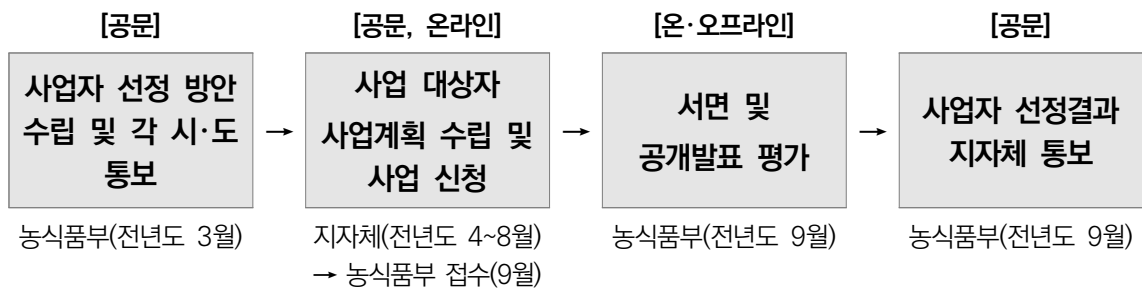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비와 지방비를 활용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 5.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15개소(차등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단가 : 900백만원 이내/개소
  - \* 매년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 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전년도 8월말 기준)된 지자체에 우선 지원
  - \* 편이장비 지원 시 사업단가는 50백만원 이내/개소 적용
- 사업비 : 13,50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 신규 :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에 따름
-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 : ① 신규, ② 분점, ③ 증설·이전
  -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 가능
  - \* 신규 : 시·군·구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
  - \* 분점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였으나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설치
  - \* 증설·이전 : 기존 임대사업소의 확장 또는 인근 부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장 이전 설치
- 사업대상자 선정은 다음의 선정 절차를 따름

### ※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 가. 사업진행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3월 중 각 시·도로 사업자 선정 방안을 통보하고, 각 시·도는 각 시·군에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신청 접수 실시(8월)
- 농식품부는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자체 통보(9월)

생산기반  
(공통)

1-6  
(농기계지원  
통합안내)

## 나. 사업자 선정단계

### 1) 사업자 선정단계 개요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내·외부 평가위원에 의한 서면 및 발표평가 실시
  - 단계별 종합평가 후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 1단계 : 서면평가 >

- 사업신청자의 관련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 검토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평가자 : 평가위원 5명 이내 구성(내·외부)
  - 평가내용 : 기본 구비 서류(토지대장 등)제출 유무, 사업 추진 필요성, 전략 및 계획·투자의 적절성(비용 및 예산검토), 향후 발전의 가능성 등
  - 조치내용 : 평가내용을 토대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
    - \* 평균 60점 미만은 발표평가 제외

### < 2단계 : 발표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 평가자 : 평가위원 5명 이내 구성(내·외부)
  - 참석대상 : 해당 지자체
  - 평가내용 : 사업 추진 여건, 부지·예산 확보와 사업의 지속가능성, 연내 예산 집행 계획, 임대사업 참여 등 종합평가
  - 조치내용 : 발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산 지원 순위 선정

### 2)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서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평가위원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농식품부로 제출
    - \* 차년도 예산 정부(안)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예산 확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

## ② 주산지 일관기계화

### 1. 사업대상자

-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주요 발작물의 규모화·집단화된 지자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지자체
  - \* 주요작물(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을 우선 지원하나, 그 외의 작물도 지원 가능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의 작물 재배면적일 것

###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발작물 공동경영체 조직(협약체) 등
  -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 ‘주산지일관기계화’ 既 참여 공동경영체조직 재참여 가능(발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포함)
- 운 용
  - 장기임대(임대농기계 내구연수 또는 그 이상 기간)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한 농기계는 임차자가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 임차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일정면적(“작물별·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임대농기계의 운영·관리실태 및 의무 농작업 면적 점검
  - 임대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공급한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표준재배양식과 농기계 사용방법 등을 상시 지도·교육하고 즉각적인 A/S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만약 공급한 농기계가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을 때 차년도 임대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육묘·파종부터 수확·저장까지 전 과정 일관 기계화를 위한 발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을 추진할 수 있음

[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

작물	작업명	농기계	연 작업면적/1대(ha)
콩1	파종	트)파종기	10
	예취	콩예취기	
	탈곡	콩탈곡기	
콩2	파종	트)파종기	15
	예취+탈곡	콩콤바인	
고구마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감자	파종	동력파종기	8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무	파종	트)파종기	6
배추	정식	동력정식기	7
고추	정식	동력정식기	6
마늘	파종	트)파종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양파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참깨	수확	참깨예취기	6
인삼	정식	정식기	5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 국립농업과학원 발작물 연 작업면적 산출 결과에 따른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산정

#### 4. 지원자금의 용도

##### ○ 임대농기계 구입

- 작물별 일관 기계화(경운·정지에서 수확까지)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되 파종·정식 및 수확 작업기는 반드시 포함하여 구입하여야 함
  - 단,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 구입은 한 기종을 구입하는데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사용(권고)
- \* 파종·정식 및 수확과 관련성이 적은 기종(트랙터, 동력운반차 등)의 다수 구입은 불가
  - 정식기 1대의 작업면적이 8ha이고, 수확기의 작업면적이 25ha이면 정식기 2~3대와 수확기 1대로 구성 가능하며, 운전자는 반드시 2~3명을 확보해야 함
  - 한 작물에 투입되는 일관 농업기계 구입비로 사업비(2억원/개소)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2~3 작물에 투입되는 농업기계 구입 가능



- \*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할 수 있음(권고, 발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포함)
- 마늘·양파 등 주요 발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을 추진하는 경우 임대농기계, 기계화 기반조성비(육묘상자, 육묘시설, 톨백 등), 생산량 조사 지원비, 교육·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5.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주산지 일관기계화
- 사업량 : 87개소
- 사업단가 : 200백만원/개소
  -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임대대상자에게 1~5개소를 지원할 수 있음
  - \* 우수모델 육성 참여 지자체의 발작물 기계화 현황, 현장 수요, 추진계획 등을 감안하여 사업단가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사업비 : 30,90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 신규 :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에 따름
  - \* 우수모델 육성 사업 참여 지자체는 주산지의 작목반, 지역농협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및 지원

### ③ 노후농기계 대체

#### 1. 사업대상자

-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농기계임대사업 평가결과 우수임대사업소(지자체)
  - \* 직전 2개년도 연속하여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의 경우 시·도별 신청상황에 따라 차순위 지자체를 선정하는 등 조정 가능
  - \* 다만, 농기계임대사업 집행실적 및 임대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는 평가결과 최종 순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생산기반  
(공통)

1-6  
(농기계지원  
통합안내)

### 3. 지원자금의 용도

-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대체하는 신형농업기계 구입
  - 발농사용 농기계와 발농사용 부속작업기에 한정하여 구입하여야 하며, 부속작업기에 필요한 트랙터(80마력 이하)와 보통형 콤바인은 구입 가능
- 자율주행농기계 시범 보급 참여 지자체는 트랙터·콤바인·이앙기 구입 가능
-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파쇄기에 한정하여 구입 가능

### 4.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53개소
- 사업단가 : 200백만원/개소
- 사업비 : 17,48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 신규 :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에 따름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
- 내역사업별 차년도 시·도 가내시 통보(9~10월)
  - \* 지자체 부지조성 등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내역사업(농기계임대사업소 등)의 경우 2년전 사업수요 조사 및 우선지원 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 포기시 이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시·도

- 내역사업별 차년도 시·군·구 가내시 통보(9월~10월)
  - \* 시·도는 가내시 사업 신청시 시·군·구별 차년도 본예산 반영 계획 등을 참고하여 사업 신청
- 사업시행지침을 시·군·구에 시달(12월)
- 시·군·구에서 제출한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임대농업기계 수요조사 결과[별지 제3호 서식]',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사항'에 대해 현지확인 등 사업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

#### 시·군·구

- 시·군·구는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농업분야 관련 심의회와 통합운영 가능
    - \* 사업계획 수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 활용

생산기반  
(공통)

1-6  
(농기계지원  
통합안내)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 \* 단,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2인 이상 포함
- 심의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함.
  - \* 단 구입할 임대농기계 선정,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시 업체선정, 지자체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시 장기적인 임대농기계 확보 계획을 감안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다단계재 방안 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 임대농기계의 세척·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세차장 및 정비시설 설치를 우선 고려

#### ○ 임대농기계 구입 기종 선정

- 임대농업기계 구입기종 선정은 별지 제3호 서식(임대농기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상시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와 임대사업소 여건 등을 검토·반영하여 구입
  -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 등 충분한 인원을 대상으로 상시 조사하며, 사업 신청을 위한 1~2개월 미만의 단기 조사 금지
  - \* 미세먼지 종합대책(국무조정실 주관)에 따라 영농부산물 소각방지 등을 위한 잔가지 파쇄기는 수요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기종으로 선정 가능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는 임대사업소 이용농가, 각종 농업관련 교육참석 농업인, 설문조사, 홈페이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 수렴
  - \*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에 공급되는 파종·정식기 및 수확기는 수요조사를 제외하되, 연·전시 등을 통해 수요자(지역농협 및 공동경영체)가 요구하는 농기계를 구입

#### ○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 사업신청시 시·군·구별 차년도 본예산 반영내역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2. 사업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을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함(당년도 1월)

- \* 지자체 본예산 반영 여부 및 실행률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량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선정·통보함 (당년도 1월)
  -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하고 임대농기계 수요조사서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 대상자를 확정된 경우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사업 대상자 변경 포함)
- 사업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해당지역의 경지면적 및 농가수, 전담인력 및 조직 확보여부, 농기계임대사업 부지확보 여부, 임대농기계의 수요조사 반영여부, 홍보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본예산 반영여부 등
  -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의 경우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을 위한 부지확보와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한 시·군·구를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

### 〈 적정 운영인력 확보 기준 〉

보유농기계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999	1000~
정규직	5	8	9	10	10	11	13	14	14	15
계약직	2	2	3	3	4	4	4	4	5	5
계	7	10	12	13	14	15	17	18	19	20

생산기반  
(공통)

1-6  
(농기계지원  
인내)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농촌, 공동체

---

## 2-1. 농촌복지, 여성농업인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교통취약 농촌 지역에 마을버스·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 제고로 농촌주민의 체감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 □ 사업내용

- 대중교통 취약지역(교통소외지, 농촌지역)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버스 또는 택시)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 □ 지원 자격 및 요건

- 군(郡)이 관할 지역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자로서 운수사업체(지방공기업 포함), 지역아동센터, 복지회관, 마을자치회, 비영리법인 등 활용 가능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공공형 버스) 버스 구입 및 개조비, 인건비, 유지비, 수선비 및 운영관리비, 정산시스템 구축·운영비 등, (공공형 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등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  
- 350백만원/군(버스 3억원, 택시 50백만원)
- '24년 예산 : 49,848백만원(국비 24,924, 지방비 24,924)

## □ 사업 신청

- 균특회계 시도자율편성 예산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기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기획재정부)」 참조

## □ 대상자 선정

- 군(郡)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도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 및 선정 후 해당 군(郡) 및 농림축산식품부로 통보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사무관 이지은 주무관 김경선	044-201-1552 044-201-1553

## 1. 사업대상자

- 예산배분 및 관리 : 광역시장·도지사
- 사업관리 및 시행 : 군수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34조제2항제1호 바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제1항제5호 및 제2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0조(재정지원)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제1항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각 군이 관할 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자로서 운수사업체(지방공기업 포함), 지역아동센터, 복지회관, 마을자치회, 비영리법인 등 활용 가능

## 3. 지원대상

-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한 농어촌 및 교통소외지역 등 취약지역의 주민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택시 등을 활용한 대체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공형 버스)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형 버스 추진을 위한 버스구입 및 개조비 등은 신규사업에 한해 지원. 공공형 버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유지비, 수선비 및 운영관리비와 정산시스템 구축·운영비 등 지원 가능
- (공공형 택시) 차량구입비는 지원 불가, 운행 손실보상금, 정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지원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시·도 편성)
  - 국고 50%, 지방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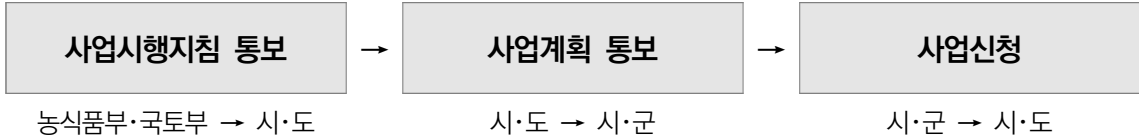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350백만원/군(버스 3억원, 택시 50백만원)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시·군 대상 사업 추진 일정은 시·도 계획에 따름

- 시·도는 본 지침을 활용하여 관할 군(郡)을 대상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계획을 통보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郡)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군(郡)은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거나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의 사업계획에 의한 제출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도에 제출
  - 사업모델별로 법적 제약요인 및 해소방안 검토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의 인허가 관계 등 적법성, 지침상 요건과의 부합 여부, 지원효과 등을 충실히 검토
  - 구비서류
    - 농촌형교통모델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당해 군의 행정지원계획
    -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는 기타서류 등

## I 사업 개요

## □ 목 적

-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 사업내용

- 사고,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 (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영농도우미 임금 일부
- 지원 기준 : 국고 70%(58,8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25,200원/일)
- '24년 예산 : 10,000백만원(국비 7,000, 자부담 3,000)

## □ 사업 신청

- 거주지 지역농협에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 대상자 선정

- 지역농협에서 영농도우미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하여, '영농도우미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중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사무관 홍경희	044-201-1574
		주무관 홍보기	044-201-1575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팀 장 박효숙	02-2080-5421
		차 장 진동성	02-2080-5422

## 1. 사업대상자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 (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고

- ④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 (예시)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 및 '기계화영농사교육',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창업경영' 등 공모교육과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창의력 및 리더십증진교육' 등

※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시 농협담당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받은 후 농협전산망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Agrix)으로 확인하고 신청

\* 신청인이 농업소득 외 별도의 주된 근로소득(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있을 경우, 가급적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 지원금액 및 조건

○ 국고 70%(최대 58,8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25,200원/일)

- 지원내용: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4,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다만,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만큼 추가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 (여성농업인 교육)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교육) 10일 지원, (1~9일 교육) 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
- 영농도우미 임금이 84,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에서는 58,8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84,000원/일 이하인 경우는 국고에서 70% 지원(자부담 30%)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 다만, 해당 농장여건, 작업량, 가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 세대당 1일 다수 파견시 연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3. 신청 절차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등,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 \* 증빙서류는 진단일자, 퇴원, 치료종료, 교육수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 \*\* (전화신청 시)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일수

항목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도우미 지원일수
진단 시	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	<b>최대 10일</b>
입원 시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통원치료 시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격리 시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교육참여 시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교육참여 일수 (최대 10일)

-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영농활동 가능 여부에 대한 의사소견서 제출로 지원가능하나, 신청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함
- \* 가사일이나 농장청소나 농자재 정리 등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해 영농도우미를 파견할 수 없음

#### 신청 제외 대상

-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4. 지원대상 선정

- 지역농협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을 실시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연중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농가와 파견될 영농도우미에게 통보
- 지역농협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농가명, 주소, 연락처, 작업장소, 작업종류, 작업량, 영농도우미 파견기간(작업일수), 작업시간, 영농도우미 임금과 농가부담액, 파견될 영농도우미의 주소와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신청농가와 영농도우미가 상호연락하도록 하여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등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영농도우미 임금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작업 인건비 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작업 성인 1인당 1일 작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농협과 신청인, 도우미가 합의하여 결정
  -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작업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환산

#### 5. 임무 및 선정

- 임무 :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발생 농업경영체의 영농작업을 대행
- 선정
  - 지역농협은 원활한 농작업을 위해 신청농가에서 추천한 영농도우미를 선정
    - \* 추천이 없을 경우, 지역농협에서 농작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영농도우미 선정
  - 신청농가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영농도우미의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함(단, 영농도우미가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된 경우 생략 가능)
  - 영농도우미로 활동 가능한 연령은 80세 이하로 정함
  - 영농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및 동거인,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영농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음

#### 6. 활동상황 확인

- 지역농협과 신청농가는 영농도우미의 영농작업 대행과정을 수시로 확인



## 7. 영농도우미 임금 지급

- 이용농가는 영농도우미 파견 전에 지역농협이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지역농협에 미리 납부(미납부시 지원 불가)
  - \* 농협에서 이용농가 자부담금 납부방법을 자체 세부시행지침으로 규정
- 영농작업을 대행한 영농도우미는 「영농도우미 임금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 후 신청농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역농협에 제출
- 지역농협은 작업일수, 작업시간, 작업물량 등 영농작업 대행사실을 확인한 후, 산정한 임금에 대한 국고부담금과 이용농가가 미리 납부한 자부담액을 합하여 영농도우미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 \* 별지 제2호 서식은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지역단위 농협으로 별도 배부

## 8.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영농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 및 해당 영농도우미(귀책사유 있을시)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진단서나 입원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
  - 영농도우미 활동일수, 활동시간, 작업량 등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 9. 기타사항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이용농가의 편의도모를 위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 신청농가 자부담액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 영농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 영농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및 기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 농협중앙회는 분기별로 지역농협별 영농도우미 신청 및 지원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지역농협은 익년 1월말까지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을 완료한 후, 농협중앙회로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과 사업관련 통계를 익년 2월중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영농도우미 교육을 전체 또는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농협중앙회 별도 사업비로 집행

## 1. 사업신청 단계

### 지역농협

-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사업 홍보
- 연중 영농도우미 신청 접수
- 전년도 연말까지 사업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 완료

##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 세부선정기준 설정 및 지역농협에 시달
  - 「영농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설정
- 영농도우미 신청자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영농도우미 연중, 전년도 말까지 지원대상자 선정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농촌, 공동체

---

## 2-2. 농촌개발, 농촌산업



## I 사업 개요

## □ 목 적

- 농촌 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을 통해 생활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등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

## □ 사업내용

- 농촌 지역에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  
\* 어촌지역 10개 시군은 별도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름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
- 지원 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
- '24년 예산안 : 826,340백만원(국비 578,438, 지방비 247,902)

## □ 사업 신청

- 지자체(시·군)에 사업 선정 일정 및 방법 통지

## □ 대상자 선정

- 시·도,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지원대상 시·군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사무관 이창학 주무관 정승규	044-201-1556 044-201-1557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차 장 김동욱 과 장 진미선	042-610-1910 042-610-1924

## 1. 사업대상자

-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장·군수
  - \* 어촌지역 10개 시·군은 별도 해수부 지침에 따름
  - \* 농촌지역의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개별 지침에 따름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
- 지원요건
  - 농촌중심지활성화 :
    - (일반형) 일반농산어촌지역 1~2계층 읍·면지역
    - \* (농촌협약 한정) 지역의 여건,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당한 경우 1·2계층 이외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 가능
    - \*\* 대규모 인구 유입이 협약기간 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생활권이 1·2계층 외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그중 한 지역이 거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 협약대상 시·군 선정 이후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 합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만 인정
  - (테마형) 일반농산어촌지역(계층구분 없음)
- 기초생활거점조성 : 일반농산어촌지역 1~2계층 외 읍·면지역
- 시군역량강화 : 일반농산어촌지역 113개 시·군

## 3. 지원대상 및 자금 사용용도

- 농촌지역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 지원
  - \* 일반농산어촌개발 기능별 사업내용 예시 참고

##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지원기준 : 국비 70%, 지방비 30%
  - 간판, 담장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유시설물 정비 : 시설비의 10% 자부담

- \* 시설물 지원기준(자부담 10%) : 보조 90%(국비 63%, 지방비 27%), 자부담 10%
- \* 사유 시설물의 정비는 10가구 이상 집단화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시행. 단,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및 빈집 철거·수리 등이 안전·위생과 관련된 경우 등 특수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0가구 미만이라도 시행 가능
  - 다만, 주택 이외 창고 등 일반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 불가
  - 빈집 수리(철거 제외)는 빈집 및 빈집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권을 시장·군수 또는 마을이 소유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공공·공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개인 소유 빈집 수리 지원 불가)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 사업비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사업유형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 역량강화
지원한도(억원)	150+ $\alpha$ 이하	40+ $\alpha$ 이하	3+ $\alpha$ 이하
사업기간(년)	5 이내	5 이내	1 이내

### ○ 추가사업비(+ $\alpha$ ) 지원분야

구 분	지 원 분 야
농촌중심지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인 이상의 지역개발 전담부서<sup>1)</sup> 운영 : 10억원</li> <li>▪ 시·군청 소재지 읍, 他 중심지(읍·면)와 연계 시 : 30억원<sup>2)</sup></li> <li>▪ 공공 임대주택 조성사업 포함 : 50억원<sup>2)</sup></li> </ul>
기초생활거점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준공예정 및 완료 후 2단계 배후마을 연계사업 신청 시 : 최대 20억원<sup>3)</sup></li> </ul>
시군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인 농촌지역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 관련 중간지원조직을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 운영을 위해 지방비를 지원 중인 경우 : 1억원<sup>4)</sup></li> </ul>

-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획, 신청, 시행, 준공, 사후관리까지 전체 공정을 관할하는 5인 이상의 단독부서(행정기구 설치·운영 조례 최소단위, 부서장 제외 최소 5인 이상)
- 2) 증액된 사업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 가능
- 3) 거점 구축 사업(1단계) 先 추진 후, 배후마을 연계 사업 희망 시 평가를 통해 지원, 거점 구축이 완료된 지구는 1단계 사업 추진 없이 배후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2단계 사업 신청(최대 20억원) 가능
- 4) 이 경우 매칭되는 지방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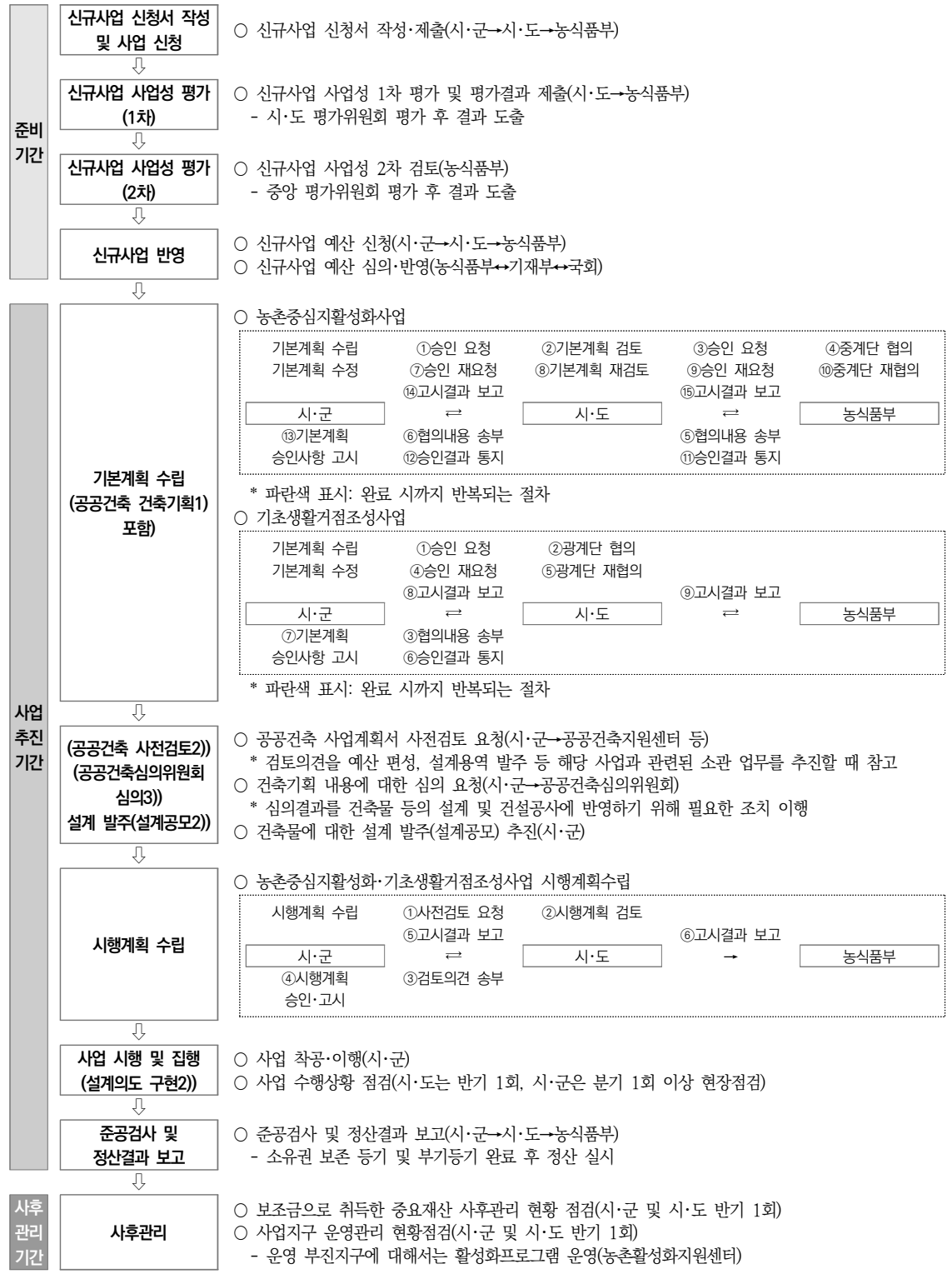
## 6. 포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2023년 이전에 착수한 사업지구에 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착수년도(예산 최초 반영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 ‘Ⅱ. 주요내용’의 ‘1. 사업대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3. 지원대상 및 자금 사용용도’,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Ⅲ. 사업추진체계’의 ‘1. 사업 신청 단계’, ‘2. 사업 선정 단계’, ‘5. 사업시행 및 집행 단계’의 <기능별·사업별 집행기준> 및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
  - ‘Ⅳ. 내역사업별 세부지침’, ‘Ⅴ. 사업 관련 조직 안내
  - 위 항목 외의 사안에 대해 착수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식품부와 별도 협의 필요(공문)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규정 또는 행정지시에 따름



### III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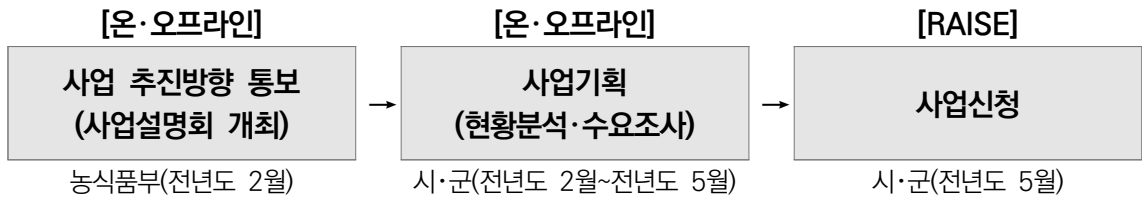


\* 시·군역량강화사업은 기본계획 생략(시행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 협의 후 시장·군수 승인, 시·도지사 및 농식품부 보고)

\*\*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통합지구)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형·테마형)에 준하여,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준하여 사업을 추진

-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2항
- 2) 동법 제21~23조(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 3) 동법 제22조의2 제4항(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각 시·도 및 시·군 등에 사업추진계획을 안내

### 시·군/지역주민

- 시·군은 지역 현황분석과 주민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신청서, 예비계획서, 증빙자료 등을 작성한 후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 제출
  - 주민 생활권(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중심지 기능 분석(계층 분석),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서비스 시설 분포·운영 현황분석,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성 분석 등을 실시하고, 시급성·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기획
    - \* 시급성·필요성 고려 시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KREI), 지역발전지수(KREI),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국토부), 기초생활인프라 취약성 진단결과(농진청) 등을 반영
  - 수요조사 시에는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며,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의 인구 비율, 성별·연령별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 조사하고 응답 결과를 도출·분석하여 사업 내용에 반영
- 시·군은 핵심시설 부지 선정 시 사업대상지 선정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핵심시설 부지를 포함하여 확보가 필요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한 부지 확보 계획을 반드시 제시

- 부지가 시·군·국유지일 경우, 소관 기관과의 협의 내용, 확보 비용 및 일정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사유지일 경우, 취득방법(협의 매수/수용), 소요(예상)비용(감정평가액), 취득절차·일정(토지매매계획서 등)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지역주민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군에 사업추진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군은 건의내용을 검토한 후 사업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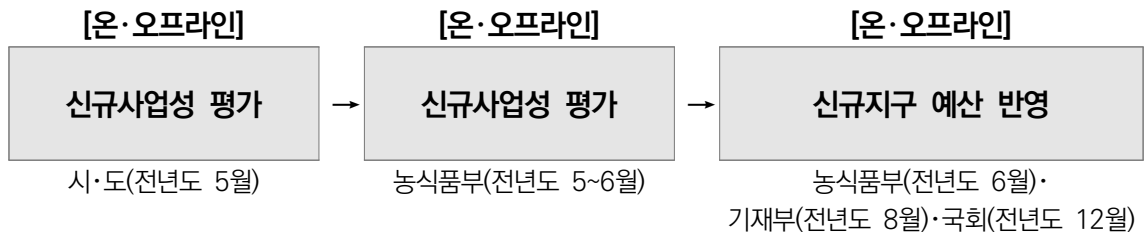
### 사업대상지 선정 원칙

◇ 적용 대상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 선정 원칙

-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핵심시설은 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는 반경 500m 이내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는 반경 300m 이내로 설정한 거점지구\* 내에 입지하도록 하거나, ②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와 복합화·단지화하여 조성
  - \* 거점지구는 최고 지가지 또는 중심지·기초거점의 기능시설 집적지 기준으로 설정
- 원칙적으로 ① 또는 ②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 신청·추진 불가
  - \* 단,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 경우 반드시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사업 추진 가능

##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

- 평가위원회\* 통해 신규사업성 평가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훈령)」 제40조 제2항 적용)

### 농식품부

- 신규사업성 시·도 평가 및 중앙평가 결과를 토대로 신규 사업지구 예산안 편성

\* 사업지구별 총사업비는 기본계획 승인 시 확정

## I 사업 개요

## 1. 사업 목적 및 방향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

- 단순 시설 정비 사업이 아닌,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재배치, 이전·집적화)를 목적으로 함
-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 방안과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관리 방안 등을 반드시 고려
  - \* 농촌공간재구조화 :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 이용, 보전하는 것으로 토지이용에 따른 지구를 설정하여 토지이용 관리의 목적을 실현
- 사업 추진 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수반되는 정비지구 내 정비대상 시설의 철거·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정비 및 이전지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

## 2. 지원내용

- 정비지역 내 유해성이 입증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철거·이전)
- 정비 부지 등을 활용한 재생사업

## 3.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8조, 제39조
- 「농어촌정비법」 제52조~제71조(생활환경정비사업) 및 제106조제2항 준용

## 4. 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

- 위탁시행 가능 :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사

\* 농어촌정비법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 5. 사업대상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농촌

## 6. 사업기간 : 5개년

## 7. 지원규모 : 개소당 50억원 ~ 180억원

- 유해시설 정비가 시급하여 우선 철거·이전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재생사업이 추진될 곳 대상으로, 유해시설 정비만 지원하는 경우 50억원~70억원(3년간)
- 총사업비의 50%이상을 정비대상 시설의 철거·이전에 투자
- 단, 연도별 지원규모는 정책 방향 및 재정 여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8.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도비 15%, 시군비 35%)

- 연차별 5%, 10%, 15%, 35%, 35% 비율로 지원
- 총사업비 중 15% 이상은 시·도비로 편성

## 9. 기 타

- 모든 사업지구는 본 지침 적용을 원칙으로 함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규정 또는 행정지시에 따름
  - 단, 총 사업비의 50%이상을 정비대상 시설의 철거·이전에 투자
- 단, 연도별 지원규모는 정책 방향 및 재정 여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10.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사무관 이지은	044-201-1552
		주무관 김경선	044-201-1553
농협중앙회	지역개발지원단	차 장 주연진	042-610-1930
		대 리 백승화	042-610-1921

## 1. 사업대상지(정비지구, 이전지구)

- 사업명 : □□시·군 ○○면 △△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 사업대상지는 정비지구와 이전지구로 구성(이전지구는 필수는 아님)

## 2. 정비지구

### 가. 정비지구 설정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인해 농촌 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철거·이전)가 필요한 지구

- ① 정비가 필요한 지역 관련 농촌공간계획(또는 유사 관련계획) 분석·반영
- ② 정비대상지가 포함된 읍·면 범위 정비대상 시설현황 등 분석
- ③ 유해성이 높고 정비가 시급한 시설의 우선순위 도출
- ④ 정비대상 시설의 영향권에 있는 마을(행정리)로 정비지구 설정
  -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공간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2개 이상의 마을(행정리)을 정비지구로 설정 가능
  - 정비의 용이성(주민 동의, 부지 매입가능성 등) 보다는 정비대상 시설의 유해성 및 집적화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 토지이용 관리의 목적을 실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

### 나. 정비대상

- ①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인해 농촌 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유해성 및 정비의 필요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인정되고,
- ② 소유주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시설물 정비에 동의를 확보한 시설

- 정비대상 시설 중 폐교는 안전성 진단(D등급 이하) 등을 통해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 정비대상 시설 중 빈집은 3등급\*에 한정하여 가능

\* 등급 판정은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2023)」에 따름

- 정비가 필요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장기적 정비 및 관리 계획 포함 필요

### 다. 유해성 입증

- 제기된 민원과 함께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 정비대상 시설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측정 자료 입증 필요

악취	악취 배출 물질·정도(ppm)	소음	직선거리 및 시간대별 소음 정도(dB)
진동	직선거리 및 시간대별 진동 정도(dv)	수질오염	지점별 및 항목별 오염 정도(mg/L)

\* 상기 표 이외 타 객관적 측정 자료 제출 가능

### 라. 지역주민 및 소유주 협의

- 주민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 협의과정을 회의록, 의견수렴 결과 보고서 등으로 증빙
- 반드시 정비대상 시설 소유주의 사업 참여를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을 신청하고, 협의 사실을 증빙 (인터뷰 기록, 사업참여 동의서 등)
- 정비대상 시설이 10년 내 시설정비·개선 관련 지원받은 여부 검토하여 제시
  -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 가능
  - 정비대상 시설 관련 유관 부서와의 사전 협의 실시 후 관련 내용 증빙
- 정비대상 시설 소유주가 폐업이 아닌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 추진 시·군은 이전 대상지를 탐색하고 연계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함

### 마. 재생사업

- 정비대상 시설을 철거·이전하고 남은 부지에 정주여건 개선 지원
  - \* 예시: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공원 등 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교육시설, 임대주택 등
  - 정비 부지 활용과 연계하여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한 사업도 추진 가능
  - \* 예시: 집수리, 유희시설(폐교, 빈집 등) 리모델링 등
- 주민 수요 및 지역내 필요성, 주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 타당성 확보
  - 주민수요 의견수렴 결과 분석
  - 읍·면(필요시 범위확대) 내 시설현황·인구분포 및 타 지원사업 분석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유사 시설 조사(시설 유무, 종류, 활용정도 등)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 수요 분석 및 활용방안 명시

○ 사업 항목별 운영·관리 방안 구체화

- 완공 후 운영주체, 자원조달방안, 이용대상, 프로그램 내용 등 제시
- 지역민 수익사업은 추진 불가하므로 지자체의 운영비 조달 방안 명확화 필요
  - \* 다만,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시설 운영비\*\* 총당을 위한 목적인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
  - \*\* 예)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인력에 대한 인건비, 공과금(전기료 등), 프로그램 운영비, 유지보수비 등

**정비지구 검토 사항**

- 정비지구 내 진행중이거나 사업완료 시점(준공)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의 중복성 검토
  - \* 일반농산어촌개발,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등

**정비지구 미지원 사항**

- 타 정책사업 지원시설 등과 중복되는 경우(송전탑·송전선 지중화 등)
- 사유화 우려가 있는 경우(농기계창고, 마을창고 등)
- 영리목적의 소득시설(공동판매장, 숙박시설, 전문식당 등)

**빈집 정비 고려사항**

- 정비대상에 빈집이 포함된 경우, '빈집 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정비시스템 등록 필요
- 빈집은 빈집 등급\*에 따라 유해성 여부 및 정비 방향 검토
  - \*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23.6.
- 빈집 철거는 3등급에 한정 (5백만원/호 한도)
- 빈집 정비 리모델링은 지자체가 소유권 확보 또는 최소 10년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실소요비용)
- 빈집 정비의 경우 빈집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
  - \* '농촌 빈집정비 업무 매뉴얼'('23.6.12.)의 빈집정비구역 예시 참고



### 3. 이전지구

#### 가. 이전지구 설정

- 정비지구의 정비대상 시설을 새로이 이전·집적화 하는 지구
- 정주공간(마을)과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 향후 동일한 업종, 종류의 시설을 집적화할 수 있는 지구
- 토지의 특성(생태자연도등급, 비오톱등급, 경사도, 지반상태 등) 고려

#### 나. 지역주민 협의

- 이전되는 지역 및 인근 마을의 사업 참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사업내용 설명 및 의견수렴 결과 제출
- 협의과정을 회의록 및 분석결과 보고서 등으로 증빙

#### 다. 이전사업

- 이전지구의 입지적인 인허가 필요사항 고려
  - \* 이전시설의 면적과 사업규모 등은 지나치게 과대해지지 않도록 주의
- 이전지구 구성에 필요한 부지 정비 및 인프라 조성 등 지원
  - 지구 구성에 필요한 부지 정비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
  - 지구 구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 정비대상 시설의 집적화 등으로 인한 차폐시설·녹지 등
- 지자체가 임대형 생산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지원

#### 라. 타 사업 연계

-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타부처 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 등과 연계
  - 스마트축산 ICT 시범사업 조성사업(부지정비비 지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건축비 등 지원) 및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ICT 시설·장비 등 지원) 등
  -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및 축사 등 생산시설을 철거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 선정 인센티브 부여

#### 이전지구 미지원 사항

- 이전되는 생산시설의 건축비 및 시설장비비
- 공공이 지속 관리할 수 없는 개인 사유화가 우려되는 기반조성

#### 4. 역량강화사업 및 부대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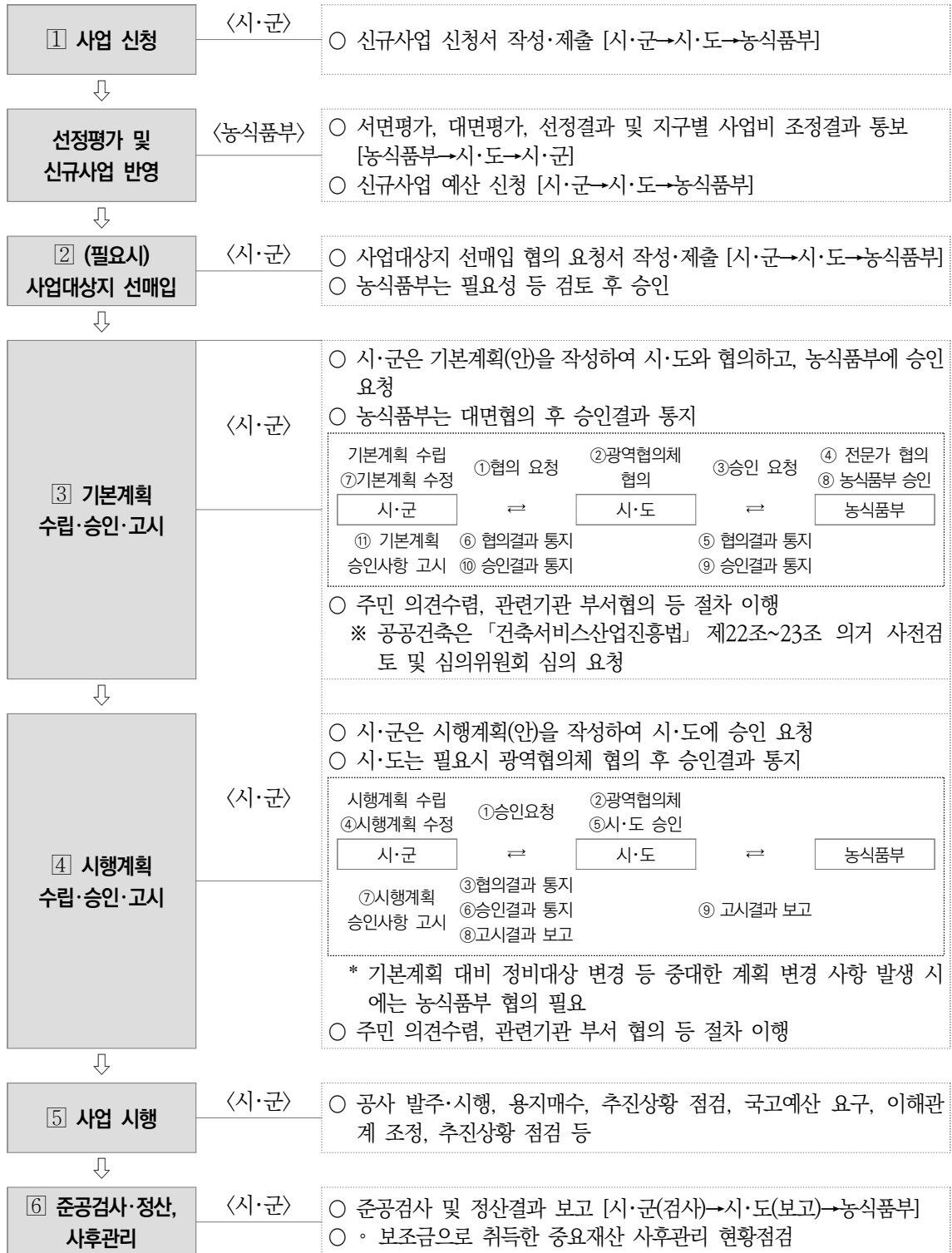
- 정비사업 및 정주환경 개선 등 동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주민교육·거버넌스 운영 등에 총 사업비의 2%내에서 지원 가능
- 주민대상 회의 및 설명회, 선진지견학, 마을규약 및 주민협정, 실무추진단 운영비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계획수립비, 설계비, 감리비, 사업관리비, 인허가비용 등 지원

#### 역량강화사업 미지원 사항

- 재생사업으로 신축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미지원  
(교육·의료·문화 프로그램 비용 및 인건비)

Ⅲ

사업추진체계



## I

## 사업 개요

## 1. 목 적

-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
- 청년층의 보육·문화·여가 등 수요를 충족시켜 농촌 삶의 질 개선

##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1항 각호 1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10호 가목 및 사목
- 「농어촌정비법」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내지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 「농어촌정비법」 제68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 지원요건 : 사업계획서(예비계획서) 평가 후 선정된 시·군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공임대주택(개소당 30호 내외), 공동보육(육아 나눔) 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개소당 각 1동)
  - (기반조성)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 시설 등 지원

- (시설 건축비) 임대주택·공동보육시설·커뮤니티시설 건축비와 운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비는 건축비에 포함
- \* 토지매입비, 비품구입, 유지관리 등 운영비,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비용, 민원해결에 따른 비용 등은 지자체가 부담

## 5. 입주대상(입주 신청일 기준)

-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또는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귀농귀촌 신혼부부
  -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5년 미만이면서 유자녀이거나, 혼인 기간 7년 미만이면서 무자녀인 부부를 의미
  - \*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기준 준용
-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이면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 ※ 시군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20% 범위 내에서 만 40세 미만 관내 청년층과 만 50세 미만 귀농·귀촌자 포함 가능

### 〈 귀농인·귀촌인 정의 〉

- ◆ 동 사업의 ‘귀촌인’이란 농업인이 아닌 자 중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자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함(입주 후 전입신고 완료 필요)
  - \* 다만, 도농복합시의 ‘동’지역에서 ‘관내 읍·면’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귀촌인’으로 인정
- ◆ 동 사업의 ‘귀농인’이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영농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말함(입주 후 전입신고 완료 필요)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 ‘농촌 외의 지역’이란 ‘동’ 지역을 의미하며, ‘동’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전입한 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귀농·귀촌으로 인정할 수 없음

## 6. 입주자 선발

- 입주 대상자 중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할 것을 권고
  - ① 만 40세 미만 귀농인(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 자녀 양육 가구 우선),
  - ② 만 40세 미만 귀농인(관외출신,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던 비농업 종사자가 영농에 종사하게 된 경우), ③ 만 40세 미만 귀촌인\*, ④ 관내 청년층, ⑤ 만 40세 미만이면서 자녀를 1명이상 양육 중인 가정, ⑥ 만 50세 미만 귀농·귀촌인

\* 회사,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지사근무, 순환보직 등 해당지역 일시적 거주를 위한 귀촌(동→읍·면)인은 선발 지양

- 가구 구성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부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무주택자,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23년 : 약 3억4천만원), 자동차 가액 5,000만원 이하

## 7.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사무관 이인애 주무관 안현수	044-201-1558 044-201-1553

## II

## 주요 내용

1.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4~2026(3년간)

3. 지원형태

- 재원(국고)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4. 사업규모 : 4개 지구(시·군)

- 지구(시·군)당 총사업비 9,000백만원(1년차 20%, 2년차 40%, 3년차 40%)

5. 사업내용

- 보육 수요, 문화·여가 생활 욕구 등 정책 수혜자인 청년층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공동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임대주택단지(개소당 30호 내외)를 조성하여 귀농귀촌 청년 및 신혼부부, 청년 양육가정에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 임대주택단지 내 공동보육시설, 단지 입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1개동) 설치
- (공공임대주택) 전원생활을 지향하는 청년층의 수요,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외 인정
  - 자녀 양육가정임을 고려하여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세대 당 전용면적 85㎡ 미만을 기본으로 하되, 「최저 주거기준」 등을 감안하여 가구 구성별 주거면적을 달리 조성할 수 있고, 단층 또는 복층 형태, 셰어주택(share house) 등으로 건축 가능
  - 전체 세대 수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년 단독가구 등을 배려하여 세대당 규모 및 형태를 달리 조성 가능

\* 청년 단독가구 주택과 가족가구 주택은 분리하여 배치 권장

- (농촌형)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개인 텃밭, 공동농장, 작업장, 창고 등이 딸린 형태로 조성 가능(다만, 추가 사업비는 자체 조달 원칙)
  - (에너지 절약형) 단지 유지관리비 절약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패시브 하우스), 태양광 발전 도입 등 권장
  -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연계)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경우는 혁신밸리 등 취업자들의 인적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설계·조정 허용
- \* 해당 지자체는 입주수요 분석 결과, 주택단지 조성 계획 등 사전 협의 필요

- (단지 분리) 단지별로 별도 운영 가능 커뮤니티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지역 여건에 따라 단지 분리 조성 허용(단, 분리된 단지가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경우, 부대시설을 공유 가능)

○ (커뮤니티시설) 입주민과 주변 농촌 주민들이 보육\*·문화·여가 활동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설치

\* 보육 운영형태에 따른 시설 기준(여가부 '아이돌봄 지원법' 등) 준수

- 주변의 보육·문화·여가 활동 공간의 분포 등을 조사하여 시설 중복성 및 연계성 등을 검토 후 설치하되, 기존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

\* 다만, 임대주택 단지외 도보로 5분 이내(또는 반경 500m)인 경우만 허용

- 기초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국토부), 농어촌 서비스기준(농식품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지 여건에 맞는 필수 생활SOC 시설 기능 확충

\* (예시)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작은 도서관, 공부방, 어린이 놀이공간 등의 기능을 복합 우선 검토

- 커뮤니티 시설은 주변 원주민들에게도 개방하고, 주민 주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수립

- 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인건비), 활동 프로그램 등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보육, 문화·복지 등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공동체 활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

- 보육시설은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정보교류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입주민 또는 지역민의 재능기부,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 필요, 주변 원주민·자녀들에게도 개방

\* 공동보육 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형태가 아닌 공동육아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 6. 추진체계 및 절차



※ 일정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 사업 신청단계

##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부지의 위치 적절성 검토한 후,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23.12월)

○ 사업제안서(예비계획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부지 확보)** 토지 100%확보 유무(진입도로 포함)

- 진입도로가 사유지인 경우 사업신청 전에 매입하여 확보해야 하며, 국공유지인 경우 사업신청 전에 매입하여 확보하거나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수용·사용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받아야 함

\* 부지 매입은 토지(임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

- 경사도가 높아 기반조성 공사비가 많이 드는 지역,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이 심한 지역은 지양

- 타법에 의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우선 고려

- 사업부지가 속한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수요 조사 결과)** 총 계획세대수 및 입주예정자 확보율

- 입주대상자 기준과 수요조사 절차를 마련하여 수요 파악

- 입주대상자 자격, 주택개요, 임대가격,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희망자(계획가구수)를 적절히 파악

○ **(관련법규 검토)** 사업부지를 개발(진입로 확보, 주택단지 조성, 건축물 건축)할 경우 검토가 필요한 관련법규에 대해 시·군 및 시·도, 관련부처의 검토 의견

\*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재해영향평가(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등), 부지면적 30,000㎡이상 경우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및 지적사항 등

○ **(관련 도면)** 사업성 검토 시 필요한 도면

\* 배치도(외부 공간 및 조경 부분 포함), 상하수도 계획도, 주택 및 복지시설 평면도(층별) 등

○ **(사업비 수지 예산서)** 사업비 검토에 필요한 검토 자료

\* 기반조성 공사비(토목, 조경, 상하수도 등)

\* 건축공사 공사비(임대주택, 육아나눔 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 **(임대 후 운영 계획)** 임대관리, 주택 및 공동시설 관리에 대한 계획

\*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거나 주민자율 관리, 지역내 사회적 경제조직 위탁 등

○ **(기타)** 귀농귀촌하여 입주하는 세대에 대한 추가 지원계획(추가 군비 투입 등)

\* 귀농하는 경우 정착지원(농업 연수, 임대농지 제공, 판로 보장 등), 귀촌자에 대한 지역 일자리 지원 대책, 자녀들을 위한 교육·보육 지원 대책 등을 수립하여 포함 가능(단, 지원내용 및 재원확보 방안 등 구체성이 있어야 함)

## 2. 사업대상 선정단계

###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된 사업제안서(예비계획서)를 평가 후 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24.1월)

###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관련 전문가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사업제안서(예비계획서), 현장실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업대상 선정 및 통보('24.1~2월)

## I 사업 개요

## □ 목 적

- 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희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및 귀농·귀촌인 등의 창업공간 및 사회적서비스 제공 공간\* 등으로 활용, 농촌 활력 제고

\* 농촌지역에 부족한 돌봄·교육·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

## □ 사업내용

- 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희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공사비 및 제경비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시장·군수가 “유희시설(사업부지 포함)”을 100% 소유하고 있거나, 시장·군수가 유희시설의 소유자와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 추진 가능

\* 유희시설의 활용 주체는 시·군이 발굴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및 기준 : 유희시설 개소당 450백만원 내외(국비 50%, 지방비 50%)

\* 연차별 사업비 배분(국고기준) : (1년차) 총사업비의 20%, (2년차) 80%

- '23년 예산 : 2,600백만원(국비 1,300, 지방비 1,300)

\* '24회계연도에 시·도에서는 자율편성사업 편성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하여 제출(계속지구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 예산 신청

- 시·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사업 전년도 4월까지)

- \* 시·군은 포괄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유희시설 및 활용주체를 발굴하여 시·도에 예산 신청하고 시·도는 적정성 검토
- \* 농식품부는 원활한 예산신청과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전년도 2월)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사무관 이인애 주무관 안현수	044-201-1558 044-201-1553

## II

## 주요 내용

### 1. 목적

- 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및 귀농·귀촌인 등의 창업공간 및 사회적서비스 제공 공간\* 등으로 활용, 농촌 활력 제고

\* 농촌지역에 부족한 돌봄·교육·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

\*\* 농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

###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제48조(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창업지원)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6조, 제58조, 제59조~62조, 제114조~제116조 등

###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6,000	3,860	4,690	3,600	2,600
국 고	3,000	1,930	2,345	1,800	1,300
지방비	-	1,930	2,345	1,800	1,300
농협중앙회	3,000	-	-	-	-

※ '23년 회계연도부터 농특에서 균특으로 회계 이관(지역자율계정)

### 4. 사업시행자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분·관리는 시·도지사,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

## 5. 활용·운영주체

- ① 지자체 운영, ② (청년)창업자 위탁운영, ③ 사회적경제조직 공동참여 운영 등 지자체 여건에 맞게 활용·운영방법 및 활용·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 결정
- 시장·군수는 리모델링 대상 유휴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 \* 이 경우 40대 이하 청년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을 1순위로 고려하고, 차순위로 지속적 운영가능 여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판단

## 6.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년
  - 1년차에는 활용·운영주체 결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착공하여 2년차에는 준공이 가능하도록 추진
- 지원규모 : 유휴시설 개소당 총사업비 45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연차별 사업비 배분(국고기준) : (1년차) 총사업비의 20%, (2년차) 80%
  - 국고보조금 및 의무지방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비로 부담

## 7. 사업비의 용도

- 리모델링\*에 필요한 공사비 및 제경비\*\*로 활용
  - \* 리모델링 범위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리모델링 및 제20호의 실내건축, 기타 지역 여건에 따른 추가 공사 등
  - \*\* 구조안전진단, 건축물 해체 및 폐기물 처리, 리모델링 설계, 공사감리, 계획자문단의 자문(※고용을 통한 인건비 지급은 불가) 등
- 시설 활용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은 사업의 목적에 맞는 경우에 한정하여 **총사업비(국비와 의무지방비)의 6.6% 이내에서 사용 가능**
  - \* 예시) 카페로 활용하는 경우 커피머신, 테이블 및 의자 등의 구입
  - 총사업비의 6.6%를 초과하는 기자재 구입 비용은 지방비(또는 자부담)로 추가 부담
- 노트북, 카메라 등 사유화가 가능한 제품, 주방용품(냄비 등) 등 소모성 물품 조달(구입 및 임대)에 사용 불가

### Ⅲ

## 사업추진체계

업무 흐름	일정	주요 내용
사전수요조사 (시·군·구)	전년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휴시설 활용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 수요를 사전에 조사</li> <li>○ 관내 시·군·구에서 활용(매입 또는 장기임대) 가능한 빈집 등 유휴시설 조사</li> </ul>
예산 신청을 위한 사업 준비 (시·군·구)	전년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집 등 유휴시설의 활용주체 발굴</li> <li>○ 예비 사업계획서 작성 논의 및 마련</li> </ul>
예산안 마련 (시·도 → 시·군·구)	전년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는 예산안 제출</li> <li>○ 시·도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li> </ul>
예산안 제출 (시·도 → 농식품부, 균형위)	전년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신청서(요구액) 제출</li> </ul>
예산 요구액 검토·통보 (농식품부)	전년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요구서 작성</li> <li>※ 지자체 신청서 및 균형위 의견 기초</li> </ul>
예산 요구 적정성 검토 및 정부안 확정 (기재부)	전년도 6월~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요구서 적정성 검토</li> <li>○ 사업내역 조정</li> </ul>
국고보조금 배정·교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계획 수립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li> <li>* 시장·군수는 지방비 매칭이 지연 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하고 국고보조금을 우선 사용 조치</li> </ul>
기본계획(활용계획) (시·군·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 시·도 및 농식품부 보고	1~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계획은 건축물 리모델링과 구체적 활용(사업) 내용을 담은 활용계획으로서 수립 전 시·도와 대면협의* 의무</li> <li>* 사업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선정 취소 및 미사용 국고보조금 환수</li> <li>○ 기본계획은 사업연도 7월말까지 수립</li> </ul>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시·군·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3~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계획·세부설계 바탕으로 시행계획 수립</li> <li>* 사업 추진 촉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세부설계 동시 진행 가능</li> </ul>
공사 발주 및 착수 (시·군·구)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발주</li> </ul>
준공 및 정산 보고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다음연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보고서 및 정산 결과 제출</li> </ul>
시설 관리·운영 (시설 운영 수탁자 및 시장·군수·구청장)	준공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구청장과 운영주체가 시설 운영 위탁 계약 체결 후 관리·운영</li> </ul>

※ 업무 추진 여건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농촌, 공동체

---

## 2-3. 농촌공동체, 환경



## I

##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2. 주요내용**

- 농번기 4~8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토록 지원
  - ※ 4~6개월 우선 배정 후 잔여예산이 발생 될 경우, 운영비 추가지원 방식으로 운영

**3.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4. 재원구성**

- 국비 50%, 지방비 50% (시설비, 운영비)
- 국비 100% (관리비)

**5. 추진경과**

- ('14)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사업 도입
  - \*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의 내역사업
- ('17)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
- ('20)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
  - 농번기 아이돌봄방으로 사업명칭 변경

- ('24)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사업(세부사업) 내의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사업 (내역)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
  - 농번기 돌봄지원으로 사업명칭 변경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팀 장 문혜숙	044-201-1565
		사무관 우미옥	044-201-1566
		주무관 박영현	044-201-1567
농어촌희망재단	복지팀	부 장 박봉수 대 리 김근영	02-509-2242 02-509-2444

### 1.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시설은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보육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이 확보되어, 사업추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자격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영유아의 돌봄수요, 시설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운영능력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

###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사용용도

- (시설비) 시설당 20백만원 이내 지원
    -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26백만원 내외 지원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 ※ 시설 및 운영기준, 심사기준, 지원한도액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1~3] 참고

### Ⅲ

## 사업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신청·접수	전년도 1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계획 수립 및 홍보(희망재단)</li> <li>▶ 접수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시도→희망재단)</li> </ul>
② 대상자 선정	전년도 12~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실사(희망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지원 시설 중 개보수 신청시설에 대해 실사</li> </ul> </li> <li>▶ 심의 및 선정(농식품부, 희망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 서면실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li> </ul> </li> </ul>
③ 시행지침 통보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지침 통보(농식품부)</li> <li>▶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희망재단)</li> </ul>
④ 사업추진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교부 및 집행(농식품부→시도→시군→아이돌봄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비는 시설 설치상황에 따라 집행</li> <li>- 운영비는 시설 설치 완료 후 시설을 운영하는 해당 달부터 집행</li> </ul> </li> <li>▶ 관리비 집행(희망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자교육, 워크숍, 모니터링 등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li> </ul> </li> <li>▶ 아이돌봄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여건에 따라, 4~8개월 운영</li> </ul> </li> </ul>
⑤ 이행점검	연중 (반기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기별 이행점검 및 보고(시도·희망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봄방 별 연 1회 이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기별로 이행점검 실시</li> </ul> </li> </ul>
⑥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	다음연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아이돌봄방→시군→시도→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재단은 관리비 운영결과와 정산결과를 다음 연도 1월까지 농식품부에 보고</li> <li>- 시도는 사업결과와 정산결과를 다음 연도 2월까지 농식품부(희망재단)에 보고</li> <li>- 시도는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즉시 반납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li> </ul> </li> </ul>
⑦ 사후관리	설치 후 5~10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보수 시설(10년), 기타재산(5년)</li> </ul> </li> </ul>

## 1. 신청접수

### 가. 신청접수 계획수립 및 홍보(시도, 시군, 희망재단) \* 전년도 11~12월

- 희망재단은 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희망재단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접수 계획을 시도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해당사실을 공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 실시
- 시도와 시군은 신청접수 계획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내 관계기관에 홍보

### 나. 신청접수 및 결과보고(시도, 시군) \* 전년도 12월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신청접수결과 및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 선발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그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희망재단)에 보고

## 2.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 내시

### 가. 서면실사(희망재단) \* 전년도 12월

- 희망재단은 계속지원 시설 및 개보수 신청시설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나. 심의 및 선정(농식품부, 희망재단) \* 전년도 12월~1월

- 희망재단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와 희망재단은 신청시설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기존 지원시설의 경우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를 토대로 심의
  - 신규 지원시설 및 개보수 신청시설의 경우 신청서류 및 희망재단의 서면실사 결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를 토대로 심의

※ 심사기준은 [붙임 2] 참고

### 다. 선정결과 통보(농식품부) \* 1월

- 농식품부는 선정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토록 요청

- 이 경우, 시군은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도에 제출 후 시도는 농식품부(희망재단)에 보고

**라. 예산내시 및 확보(농식품부) \* 1월**

- 농식품부는 시도별 사업량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시도별로 내시
- 시도와 시군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비 확보 등 준비 철저



## I

## 사업 개요

## 1. 사업목적

-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 2. 주요내용

- 농촌아이돌봄지원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 지원
- 찾아가는 돌봄교실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도서대여 등

## 3.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 4. 재원구성

- 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5. 추진경과

- ('12)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사업 업무조정(복지부→농식품부)
- ('13)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도입(사업명칭 변경)
- ('17)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
- ('20)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

○ (24)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사업 내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팀 장 문혜숙 사무관 우미옥 주무관 박영현	044-201-1565 044-201-1566 044-201-1567

## 1 농촌아이돌봄지원

## 1. 사업대상자

-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서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도지사·시장·군수 및 위탁운영자, 사회복지법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1) 기존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지원받으려는 경우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 농식품부의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운영 중인 주택단지나 농촌협약을 맺은 지역의 어린이집 우선 선발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단, 현원 3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운영 중단(폐원 포함) 또는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승인 후 지원가능
  - (심의)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상 신청·접수 기간 내 심의결과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연도 내에 제출하되, 제출전까지는 보조금 집행 제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운영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1, 2] 참고

## 2) 어린이집을 신설하려는 경우

- (지역) 어린이집(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단, 해당지역에 다른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심의)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영유아 수 현황,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도 및 시·군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 상 신청·접수 기간 내 심의결과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연도 내에 제출하되, 제출전까지는 보조금 집행 제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
- ※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어린이집 신설 및 운영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1, 2] 참고

##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사용용도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인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마을회관·기타 유휴시설의 리모델링비 또는 시설 신축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로 활용 가능(설계용역비 제외)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인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제세공과금으로 활용 가능
- ※ 지원한도기준 및 집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3, 4] 참고

## 2 찾아가는 돌봄교실

### 1. 사업대상자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이감·도서 등을 대여하고, 육아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위탁운영자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시설 소재지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역을 의미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사용용도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로 활용 가능  
※ 예산은 자유롭게 구성하되, 전체 사업비에서 인건비는 60% 이내로 제한
  - 지역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범위가 넓어 추가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까지 추가지원 가능  
※ 시·도에서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기관의 서비스 범위를 여러 시·군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도로 배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업기관 간 최대 20%까지 조정 가능

#### < 운영방법 >

- 월별 운영계획을 수립 후 정기적으로 방문
- 거점지역에서 단체활동을 하거나 아동 수가 적은 지역은 개별 가정 방문
- 연령대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놀이프로그램 및 동화책 등을 준비하고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활용

#### < 운영내용 >

- 놀이감 및 도서 대여
- 영유아를 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III

## 사업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신청·접수	전년도 1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계획 통보(농식품부)</li> <li>▶ 접수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에서는 농촌아이돌봄지원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를 함께 제출</li> </ul> </li> </ul>
② 대상자 선정	전년도 12~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 현장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li> </ul> </li> </ul>
③ 시행지침 통보	1월	▶ 사업시행지침 통보(농식품부)
④ 사업추진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교부 및 집행(농식품부→시도→시군→어린이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비는 시설 설치상황에 따라 집행</li> <li>- 장비 및 기자재, 차량은 시설 설치 완료 후 구입</li> <li>- 운영비는 시설 설치 완료 후 시설을 운영하는 해당 월부터 집행</li> <li>- 운영비는 매달 23일~말일까지 신청(어린이집 등)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집행(시군)을 원칙으로 함</li> </ul> </li> </ul>
⑤ 이행점검	연중 (분기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설치현황 점검결과는 농식품부에 보고</li> <li>-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은 시도에 보고</li> </ul> </li> <li>▶ 운영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지도(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경우 시군이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지도</li> </ul> </li> </ul>
⑥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	다음연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연도 1월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li> <li>-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즉시 반납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li> </ul> </li> </ul>
⑦ 사후관리	설치 후 5~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설치 및 리모델링 완료 후 시설은 10년, 주요 기자재 및 장비 등은 5년</li> </ul> </li> </ul>

## 1. 신청접수

### 가. 신청접수 계획 통보(농식품부) \* 전년도 11~12월

- 농식품부는 다음연도 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통보

### 나. 신청접수 및 결과보고(시도, 시군, 어린이집 등) \* 전년도 12월

- 시도는 시군에, 시군은 관내 어린이집 등에 신청접수 계획을 통보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등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시군에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신청접수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시군은 신청접수 결과와 함께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선발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시도에 제출

## 2.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 내시

### 가.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 전년도 12월

- 농식품부는 사업신청 내용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후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
  - 영유아·보육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현장점검 및 지방보육정책 위원회 심의결과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선정

### 나. 예산내시 및 확보(농식품부) \* 전년도 12~1월

- 농식품부는 시도별 사업량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시도별로 내시
- 시도와 시군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비 확보 등 준비 철저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마을공동체 육성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직거래 사업유형 확대

## □ 사업내용

- 농촌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한 꾸러미 사업 활성화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꾸러미사업을 희망하는 마을공동체(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등)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제품 기획 컨설팅 및 직거래 활성화 마케팅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100% (10개소 × 18백만원 × 100%)
- '24년 예산 : 180백만원

## □ 사업 신청

- 공고 방법 : 각 지자체 및 aT 홈페이지 등
- 신청 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 기간 : 공고문에 별도 표시

##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사무관 이효열 주무관 최영준	044-201-2285 044-201-228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온라인사업부	부 장 공영미 과 장 이동훈	02-6300-1831 02-6300-1835

### 1. 사업대상자

- 꾸러미 사업을 희망하거나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단체 10개소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농축수산물, 지역특산물을 직접 생산·가공하는 단체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으로 꾸러미 제품을 기획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법인(또는 추진하고 있는 법인)
  -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어야 함.
  - \*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사업 기간내 그 기간이 유효해야함.
  - \*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간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함.
- (선정우선순위) 사회적경제기업 및 마을기업 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 3. 지원대상

- 꾸러미 제품 기획·홍보·판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자산 구입 및 인건비는 지원 불가항목임.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온/오프라인 판매 관련 및 농식품 관련 **교육비 지원**
  - 농식품 제조·생산·보관·유통·마케팅 등 농식품 관련 교육
    - \* aT농식품유통교육원, 농업기술 센터 등 **공공 교육기관 교육과정에 한하여 인정**
  - 소속 농가 교육 또는 협의회 등 개최 비용(회당 1백만원 이내 실비)
- 꾸러미 제품 **상품화 지원**
  - 상세페이지·동영상 등 콘텐츠 제작 비용
  - 꾸러미 라벨링, 내부 패키지 디자인 및 제작 비용
  -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제품 기획 비용
- 온/오프라인 판매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 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비용
  - \* 자사 샘플 구입 비용 불인정
- DM발송, 배너 광고, 웹 광고 등 온라인 홍보 비용
- 꾸러미 제품 온/오프라인 판매에 따른 물류 지원
  - 택배 발송비 등 배송에 실제 투입된 물류 비용
  - 배송 상자, 완충재, 냉매 등 비용(총 예산의 20% 한도)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비 100%, 자부담 없음.
  - 사업기간 내 소속농가의 농식품을 구매하여 꾸러미 제품을 기획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판매 개시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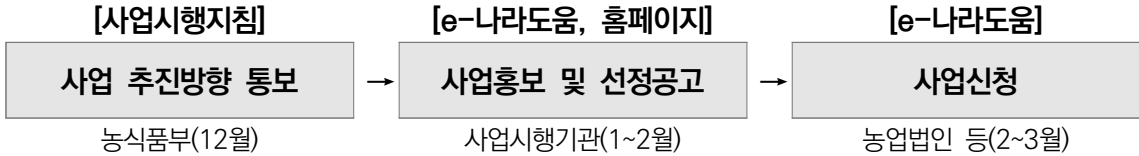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개소당 18백만원 한도

###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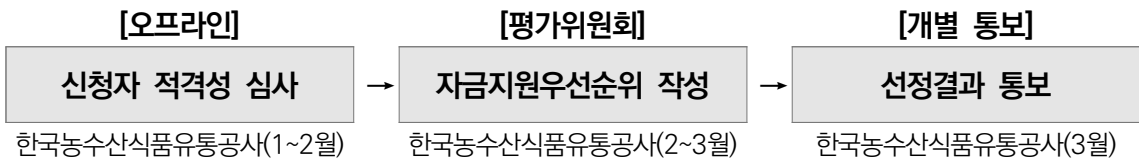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필요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 필요

### 2. 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확인**해야 함
  - \* e나라도움을 통한 자격검증,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 e나라도움을 통한 수혜이력,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이력을 확인하여 중복·편중 지원 방지

- 유사자금\* 지원제한(「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
  - \*\* 「기본규정」 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서 검토 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 1)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 2)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3)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 4)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규정」 제35조제7항)
  - 5) 기타 사업시행지침에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 경우
-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기본규정」 별표 6)에 적합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함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안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 사업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 I 사업 개요

## □ 목 적

-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 □ 사업내용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실천하는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 (농촌주민생활돌봄)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거점농장)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교육,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및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등
  -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르며, 농장의 위치가 농촌에 소재해야 함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운영비 등

- 지원 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
  - (농촌돌봄농장) 개소당 총 55백만원(1년차 20백만원)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개소당 총 80백만원
  - (농촌주민생활돌봄) 개소당 총 66백만원(1년차 50백만원)
  - (거점농장) 개소당 총 155백만원
- '24년 예산 : 8,220백만원(국비 5,754, 지방비 2,466)

**□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구
- 신청기간 : 시행지침 공고후 신청기간 중(전년도 9~10월중)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현장심사(지자체)를 거쳐 최종 선정(농식품부)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사무관 김화태	044-201-1572
		주무관 김시은	044-201-1573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농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부 장 양희경	031-8084-9561
		차 장 이혜경	031-8084-9564

## 1. 사업대상자

## 《 농촌돌봄농장 》

-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르며, 농장의 위치가 농촌에 소재해야 함

- ① 사회적 농업 :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

※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판단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일 것

## 사회적 농업 유형 예시

- ▶ (돌봄) ○○법인은 복지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들과 함께 발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장애인들은 농장 활동 과정에서 비장애인들(농장·인근 농장 사람들 등)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높이고 농작업을 통해 운동효과를 내고 있으며, 약 복용을 줄일 정도로 건강을 회복함. ○○법인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농업 활동을 익힘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마을에 정착하여 어울려 살 수 있기를 희망함
- ▶ (교육) △△법인은 과수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업기반이 없는 청년들의 창농 및 농촌정착을 목표로 농업기술·유통·판매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청년 창농 정보 플랫폼 구축과 청년 대상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인근농가 및 지역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농업회사의 경영교육 및 판매실습을 통해 청년들의 귀농·창농·농촌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 (고용) □□법인은 다양한 발작물을 재배하면서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직업훈련을 거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법인과 지역의 농업관련 법인으로서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치유) ◇◇법인은 정원형 텃밭을 조성하여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농장은 인근 소외계층 아이들의 쉼터이자 주변 노인들의 작업장이기도 함

\* 다만, 농촌관광, 단순 체험행사는 해당하지 않음

- (2) (1)의 활동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할 것

\*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아동, 귀농·귀촌 희망자,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등



- (3) 사회적농업 활동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을 것
- (4)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 다만, 심사일 기준 현재 (4)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더라도 사업계획서상 협력관계 구축 계획을 심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네트워크 구축 예시

- ▶ (네트워크 구축 대상) 지역사회 주민, 조직, 단체 및 타 사회적 농업 조직 등
  - 보건소·병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아동 소속 학교, 노인 및 장애인 소속 복지·요양시설,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사회적 농업 관련 분야(보건·복지·교육 등) 종사자 및 전문가 등
  - 판로 개척을 위한 판매장(농협, 수협, 생협, 소비자단체 등)
  - 타 사회적 농업 조직, 지역 주민, 외지인 등
- ▶ (네트워크 구축 내용) 사회적 농업 활동에 다양한 지역주민·외부전문가의 참여, 사회적 농업 생산품 판매 협력 등
  - 지역사회 주민, 조직, 단체 등 협력 주체들이 사회적 농업 활동의 기획, 실행, 평가 등에 참여
  - 사회적 농업이나 지역사회의 복지, 교육, 농업, 일자리 등에 관한 학습과 토론 활동 기획 및 실행
  - 사회적 농업 생산품을 지역생협, 꾸러미사업 등을 통해 판매

### ② 조직 형태 : 법인 또는 단체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법),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민법 상 법인·조합, 상법 상 회사, 마을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조직의 '23년도 전체 수입(매출액, 보조금, 기타수입 등) 중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따른 매출액이 30% 이상이어야 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 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 농업법인의 경우 설립요건, 총출자금 요건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야 함

- ③ 조직 구성 :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지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1명 이상 또는 농업법인을 포함할 것

### ○ 우대요건

- 여성이 조직 대표이거나, 조직구성원 중 70% 이상이 여성일 경우 가점 부여

##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

○ 사업대상자 :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협력하는 공동체

①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업: 인접한 곳에 위치한 개별 농장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확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판단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구성 농장들은 가급적 서로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함(리 또는 읍·면)

(2) 개별 농장들은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3) 구성 농장들은 지역 주민의 필요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여 활동을 위해 협력하여야 함

② 조직 형태·구성 : 중간지원 기관과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결합하거나 농촌돌봄 농장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비영리법인(민법)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1) 중간지원 기관(대표)과 최소 3개 이상의 농촌돌봄농장이 결합

\* 중간지원 기관 : 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여성농업인센터 등 농촌 활성화와 관계된 여러 분야에서 농업인 및 주민의 실천을 돕도록 시·군 수준에서 설립·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며, ② 지역 주민의 수요 파악,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농촌돌봄농장 간의 협력 지원, 지역사회 기여방안 기획 등의 역할을 담당함

(2) 대표농장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이상 농촌돌봄농장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비영리법인(민법) 또는 비영리단체

○ 우대요건

- 여성이 조직 대표이거나, 조직구성원 중 70% 이상이 여성일 경우 가점 부여

##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 사업대상자 : 농촌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한 법인 또는 단체

①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 :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 전반을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활동

\* 고용,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 〈 지역 서비스 제공 예시 〉

구분	예시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 이동 차량 운행</li> <li>○ 치매진단 검사, 건강교실</li> <li>○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원예치료)</li> <li>○ 심리, 정서, 건강 이상 시 복지기관 연계</li> </ul>
생활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용실 이동지원, 방문미용서비스</li> <li>○ 이동식 세탁, 반찬배달, 장보기, 청소서비스</li> <li>○ 고령자·장애인 방문 목욕 서비스</li> <li>○ 말동무, 단체급식, 생활 폐기물처리 서비스</li> </ul>
교육,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문학, 한글, 외국어, 독서, IT자격 등)</li> <li>○ 영유아 보육·교육</li> <li>○ 단체영화관람, 문화동아리 공연, 도서대여서비스</li> </ul>
정주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수도, 가전제품, 동파, 보일러, 전기 수리, 노후 불량 주택 점검</li> <li>○ 누전차단기, led등, 방충망, 가스차단기, 안전손잡이, 계단 난간 설치, 도배, 실내 장판 교체</li> <li>○ 경로당 입식공간 설치, 산책로 만들기, 방법순찰</li> </ul>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일자리 연계, 판로 연계, 창업·취업 컨설팅</li> <li>○ 농촌돌봄농장 직업훈련</li> </ul>

② **조직 형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비영리법인(민법)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③ **조직 구성** : 마을 돌봄반장(1명 이상)과 농촌 주민,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업체 등\*이 공동체를 구성

\* 사회·복지·의료 기관, 농촌돌봄농장, 세탁소, 반찬가게, 영화관, 수리업체 등

- 돌봄반장 역할 : 지역 내 돌봄 등이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수요 파악, 서비스 제공기관 탐색 및 연계, 사례관리 등

\* 돌봄반장은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조직이 위촉하고 그 활동을 직접 주관

### ○ 우대요건

- 여성이 조직 대표이거나, 조직구성원 중 70% 이상이 여성일 경우 가점 부여

## 《 거점 농장 》

○ **사업대상자** : 교육,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 농업 확산 활동을 위해 권역별 선정된 조직

\* 1년 이상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거나 지역 내 공동체, 지역개발, 복지 등 분야에서 중간지원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는 조직

- **우대요건** : 사회적 농업(사회적 경제 포함) 관련 전문 교육기관, 복지시설, 지역문화센터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가점 부여

## 2.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e-나라도움 사용하여 사업비 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에 의거

### 《 농촌돌봄농장 》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 전체 사업비(시설개선비 제외)의 60% 이상
    - **강사비**: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진행하는 강사의 각종 수업 및 레크리에이션 진행 비용 등, 사회적 농업 활동 중 장애인·고령자 등의 농업 실습 작업 보조, 건강상태 모니터링, 이동 보조(복지시설, 자택, 병원 등) 등 비용
      - \* 강사비는 강의·강연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농업 활동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경우 집행 가능(보조 활동의 경우 자격 무관)
      - \* 농촌돌봄농장 종사자(농장 대표 포함)도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부문에 한해 강사비 지원 가능
- (집행기준)

구분	지급기준	
	최초1시간	초과시간
주강사	100,000원	50,000원
보조강사	60,000원	30,000원

- 강사비는 시간당 지급기준을 준수하되 1일 최대 8시간 이내
  - \* 강사에게 별도의 여비는 지급 불가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타 시도 강사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 해당 지자체에 시간당 강사비에 대한 별도기준이 있는 경우 적용가능
- 보조사업 직전 연도 3회 이상 타 기관 출강 실적이 있는 경우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강사비 별도 산출 가능(지자체 담당자 승인 필요)
- 프로그램 운영 전 농작업 준비(농장 정리 등)가 필요한 경우 보조 강사비 지급 가능(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없는 농장관리비 집행은 불가)
- **재료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소모성 물품)
  - 사회적 농업 활동 및 참여자 수에 맞는 수량만큼 집행
    - \* 활동 회당 1인 재료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 다년생 묘목 구입은 원칙적 불가하며, 프로그램 특성 상 구매가 필요한 경우 다년간 활용이 원칙으로 사전 지자체 승인을 통해 집행 가능

- 묘종, 흙, 비료, 농기구 구매 등은 사회적농업 활동을 위한 만큼만 재료비로 산출하여 집행
- **시설사용료:** 교육·토론·축제 등 사회적 농업 활동 진행 시 장소 임차료, 장애인·고령자 등이 이용하는 논·밭·작업장 등에 대한 이용료 등
  - \* 사회적 농업 활동과 관계없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의 농지, 건물 매입 또는 임대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교통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이동 비용(자택-복지시설 간 이동 등)
- **기 타**
  - 식비는 1인 1식 기준 9,000원으로 수혜자 인원 수 만큼만 집행하며, 점심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일 경우만 집행 가능
  - 다과비는 1인 1회 기준 3,000원으로 수혜자 인원 수 만큼만 집행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조사업 수혜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필수)
    -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기준 충족)
- **소모임, 세미나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 :** 전체 사업비(시설개선비 제외)의 20% 이내
  - 사회적 농업을 위한 소모임, 세미나, 워크숍, 선진지 견학에 따른 장소 임차료, 다과비용, 교통비
- **기획비**
  - 농업실습, 기술교육, 지역사회 융화 등 대상에 맞춘 사회적 농업 활동을 발굴·기획·개발하거나 사회적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영 컨설팅 비용, 상품기획 및 마케팅 비용, 사회적 농업 우수사례 학습·견학 비용 등
- **판로 확보 및 사회적 농업 활동 홍보비용 등**(지역사회에 대한 단순 기부는 제외)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연간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 1년 차(예비단계)는 집행 불가하며, 2 ~ 5년 차 집행 가능
  - \* 타 사업비가 들어간 공동시설 내 설치 금지(ex.마을회관, 경로당 등)
  - 사회적 농업 이용자가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시설·휴식시설, 임시 거주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 \* 기존 건물·시설·농지 등 개조 포함
  - 냉·난방기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음향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 비용

- \* 다만, 임차를 우선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취득 허용
-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자활 및 소득 증가를 위한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 ※ 유의사항

-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할 수 없음. 단, 지자체장 승인을 받은 경우 거래 가능

- '24년도에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지방비 지원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과 구분하여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복지원 불가)

###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

-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네트워크비, 홍보비, 시설비
  - \* 활동비는 시설개선비, 인건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60% 이상 집행
  - \* 네트워크 구축비는 전체 사업비(인건비, 시설개선비 제외) 20% 이내 집행
  - \*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30% 이내 집행
- 지원 인력의 인건비(4대 보험 가입 필수) 및 활동비
  - \* 중간지원 기관이나 대표농장에 소속된 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활동비
- 그 외 농촌돌봄농장의 자금 사용 용도를 준용함

###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 서비스공동체가 수요자에게 서비스 공급 시 소요되는 서비스 비용
  - 사회적농업 활동의 경우 강사비는 농촌돌봄농장 강사비 기준 준용
  - 제공되는 서비스 연계 기관 위탁 시, 서비스 제공비는 위탁비로 처리
    - \* 활동비는 시설개선비, 인건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60% 이상 집행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운영비 등 기타 비용
  - 공동체 정기모임, 세미나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 우수사례 현장 방문, 홍보, 마케팅 등 운영 비용 전반
    - \* 네트워크 구축비는 전체 사업비(인건비, 시설개선비 제외) 20% 이내 집행
  - 재료비: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소모성 물품)

- 마을 경관 조성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 사용 물품 구입 시 사전 지자체 승인을 통해 집행 가능
- 지역 생활돌봄 서비스 지속 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입은 전체 사업비(인건비 제외)의 30% 이내 집행
  - \* 1년 차(예비단계)는 집행 불가하며, 2 ~ 5년 차 집행 가능
- 중간지원 인력의 인건비(4대 보험 가입 필수) 및 활동비
- 그 외 농촌돌봄농장의 자금 사용 용도를 준용함

### 《 거점 농장 》

-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
  - 기획비, 강사비, 재료비, 교육비, 자문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출장비, 유인물비, 홍보비, 회의비(다과, 식대 포함), 인건비(4대 보험 가입 필수) 등
-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 기존 시설 개보수, 기자재(집기) 구입 비용 등

## 3.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회적 농업 조직은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변경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내역 제출(반기별, 최종 11월 이내)
  - 사업비 조정금액이 총사업비의 30% 이내인 경우 시·군에서 변경 승인

##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기간 : '24년 예산 확정 시 변경 가능

### 《 농촌돌봄농장 》

- 지원한도액
  - 사회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수혜자 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소당 평균 55백만원 수준으로 기준액을 산정하며, 사업 대상자의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기준액에서 가감하여 차등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경쟁력 있고 준비된 농촌돌봄농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매해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비 단계로써 20백만원 수준에서 지원액 산정

○ 지원기간 : 5년(예비단계 1년 포함)

\* 매년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 축소·중단 가능

《 공동체 단위 농촌돌봄농장 》

○ 지원한도액

- 총 8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결합된 농장이 프로그램을 수행한 만큼 사업비(50백만원)를 분배
  - \* 농장별 역량을 고려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의
- 지원 인력(중간지원 기관 또는 대표농장 소속)에 대해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 및 활동비 지원

○ 지원기간 : 5년

\* 매년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 축소·중단 가능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 지원한도액

- 총 66백만원(공동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비용 36백만원, 중간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활동비 30백만원) 수준에서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매해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비 단계로써 50백만원(공동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비용 20백만원, 중간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활동비 30백만원) 수준에서 지원

○ 지원기간 : 5년(예비단계 1년 포함)

\* 매년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 축소·중단 가능

《 거점 농장 》

○ 지원한도액

- 사업대상자의 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개소당 평균 155백만원 수준으로 기준액을 산정하여 차등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

○ 지원기간 : 3년

\* 매년 농식품부, 농업농촌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 중단 가능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자 : 시·도(시·군)
- 사업추진절차(계속 사업자)



- 사업추진절차(신규 사업자)



2. 사업신청단계

《 공통 사항 》

- 농식품부는 매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5월)하고, 최종 확정된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한 후 사업 공모(10월)를 진행
- 농식품부는 시·도별 사업 수요를 바탕으로 가내시 통보(9월)

### 《 신규 사업자 》 : '24년 신규 사업자 공모는 '24년 예산 확정 후 별도 공지

- 사업을 희망하는 사회적 농업 조직은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서식)와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사회적 농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제출
-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사업 시행 가능성, 사회적 농업 활동의 적절성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에 사업대상자 추천
- 시·군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 추천

### 《 계속 사업자 》

- 기존 사업자는 '24년도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시·도가 12월까지 제출)

## 3. 사업자 선정단계

### 《 신규 사업자 》

- 시·군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서면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안을 시·도에 송부
- 시·도에서 서면심사로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 선정기준에 따른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선정안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
  - \* 선정기준은 농식품부에서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 예정
  - \* 현장심사 시 권역별 거점농장과 동행하고 선정안에 거점농장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을 포함해 5명 내·외로 구성
  - \*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와 사업자 간 조율에 따라 사업 계획이 일부 수정되거나 지원 금액이 계획서보다 감액될 수 있음

### 《 계속 사업자 》

- 기존 사업자는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점검 결과 및 사업계획서를 통해 심사

### 《 공통 사항 》

- 지원 대상이 선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결과를 시·도에 알리고, 시·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익년도 1~2월)

I 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예산 (백만원)	9,520		
사업목적	○ 농업인의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지역단위 농업환경 관리방안 추진 등을 통해 농업환경 보전·개선 도모							
국고보조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제11조(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등							
사업 주요내용	○ (주민활동비)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에 소요되는 개인·공동활동 이행 비용 및 사업참여자 안전보험 가입비 ○ (사업관리·운영비) 농업환경진단, 마을주민 대상 교육·컨설팅,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비용 ○ (전문지원조직) 사업 성과관리, 교육, 선정평가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자격 및 요건	○ 행정리 또는 법정리 단위를 기본으로 농업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과 주민 * 동일 시·군·구 내 동일 수계에 위치한 마을은 함께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주민활동비 및 사업관리비 : 9,000백만원 - 참여마을 당 5년간 650백만원(국고 325, 지방비 325) * 1년차 50백만원 / 2~5년차 연간 150백만원(사업이행 실적에 따라 조정) ○ 전문지원조직 : 520백만원							
사업 신청	○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사업신청 요건을 갖추고 시·군에 사업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선정	○ ‘농업환경사업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발표평가 → 현장평가 → 최종선정 및 사업비 배정」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 마을 선정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3,750	6,325	10,325	9,520			
	국 고	1,875	3,450	5,450	5,020			
지방비	1,875	2,875	4,875	4,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박치형 사무관		044-201-2435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정인화 주무관		044-201-2434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 환경사업부		김이부 부장 김재욱 차장		061-338-5821 044-864-6925			
관련자료	사업시행가이드라인							

## 1. 사업대상자

- (대상지역) 농촌 지역 마을단위(참여농경지 최소 20ha 이상)
  - 농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 \* 읍·면의 지역 또는 읍·면 외 지역 중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마을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마을
    - \* 농촌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동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 (사업대상) 사업지 내 마을의 농업인과 주민
  - 20인 이상이 참여하고 5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곳
    - \* 사업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업지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하는 자도 활동참여 가능
    - \* 동일 시·군 내 동일 수계에 위치한 마을은 함께 신청 가능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주민협의회 구성 및 행정담당자 지정 등이 갖춰진 사업대상 지역 마을

구분	주민협의회	행정담당자
역할	사업추진 의견수렴,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준수 및 참여유도, 사업에 대한 이견·갈등 조정, 사업관련 교육 등	행정협의회를 운영, 주민대상 활동 이행 독려·사업점검, 예산집행 등 사업 관리
구성	사업참여 농업인·주민(5인 이상, 10인 내외)	지자체 소관 부서 및 담당 공무원
운영	사업관계자(참여 주민, 시·군 담당자) 요청 및 필요 시 수시로 회의 개최	-

※ 신청제한 : 농식품부에서 지원한 “농촌지역 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대상자”로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사회적 물의 발생에 따른 보조금 환수 등 제재를 받았던 마을은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3. 예산 개요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4 예산 규모 : 9,520백만원(국고 5,020, 지방비 4,500)
  - 주민활동비 및 사업관리·운영비 : 9,000백만원(국고 4,500, 지방비 4,500)
  - 전문지원조직 운영비 : 520백만원

- 지원형태 : 보조 100%
  - 주민활동비 및 사업관리·운영비: 지자체경상보조(국고 50%, 지방비 50%)
  - 전문지원조직 운영비: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 지원기간
  - 주민활동비 및 사업관리·운영비(5년/사업지)
  - 전문지원조직 운영비(계속)

#### 4. 지원 항목 구분

- **주민활동비** :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중 개인활동\* 과 마을 공동체 활동 이행시 활동별 기본 단가에 따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비용 및 사업참여자 안전보험 가입비\*\*
  - \* 개인활동비는 2~3년차는 당해연도 총사업비 대비 15% 이상, 4년차 20% 이상, 5년차는 25% 이상이 되도록 편성(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개인활동비 인당 한도는 200만원/년
  - \*\* 안전보험은 농협조합원 단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및 개인 실비손해보험 미가입자에 한해 가입 및 사업비 집행 허용
- **사업관리운영비\*** : 농업환경 조사·진단, 마을참여 주민(농어민) 대상 교육·컨설팅, 우수사례마을 견학, 현장 모니터링 반장 운영비, 주민활동 이행에 필요한 사전준비 활동비용\*\*,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비용
  - \* (사업관리운영비) 1년차 100%(주민활동비로 집행 불가. '휴경기 녹비작물 재배 및 밭토양 환원 활동'의 경우 1년차에 동계 녹비 파종 후 2년차에 활동비 집행 가능), 2~5년차 총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집행(최소 35백만원, 최대 6천만원/년)
  - \*\* (사전준비 활동비용) 현장지원조직, 주민협의회를 통해 적정금액, 활동범위 등 사전협의
  - ※ 지원제외 : 공익직불제 등 각종 직불제, 친환경농자재, 지역개발 사업 등 타 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는 활동비, 각종 장비 및 시설 등 자산 취득비, 건물 임차비용 등
- **전문지원조직 운영비** : 사업의 성과관리, 교육, 이행평가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 \* (역할) 지자체 현장지원조직의 운영 지원, 지자체 사업계획 및 활동에 대한 성과점검, 지자체·현장지원조직 대상 교육 등 사업 전반 운영 지원

## <표준 개인활동 및 공동활동(34개)>

※ 표준활동 외에도 현장에서 제안한 개인/공동활동을 농식품부 심의를 거쳐 추가 가능

### ① 개인활동(20개)

분야	단위과제	세부활동(16개)	구분	지급단가
토양	1.적정양분 투입	①완효성 비료 사용하기	필수	2~5만원/10a
		②심층(深層) 시비(시범)	선택	1만원/10a
	2.외부양분투입 감축	①농사 후 남은 농업부산물 잘라 밭 토양환원	필수	4~7만원/10a
		②휴경기 녹비작물 재배 및 밭 토양환원 (단, 콩과 녹비작물을 선택하고 논물 얇게 대기, 중간 절수, 화학비료 감축 등 메탄 저감 조치를 한 경우 논에도 적용 가능)	필수	6~7만원/10a
		③논 배수물꼬 설치 및 물관리	필수	1~2만원/10a
	3.토양침식 및 양분유출 방지	①벼짚 등 농업부산물로 경사진 밭 덮기	선택	6~10만원/10a
		②경사진 밭 둘레에 빗물이 돌아가는 이랑 만들기	선택	4~6만원/10a
		③경사진 밭 끝에 초생대 설치하기	선택	4~6만원/10a
		④경사진 밭 끝에 침사구 설치하기	필수	5~6만원/10a
	생태	1.농약사용 저감	①천적으로 해충 방지하기	선택
②제초제 없이 잡초 제거하기			필수	5~7만원/10a
③과수원에서 초생 재배하기			선택	5~7만원/10a
④태양열로 토양 소독하기			선택	5~7만원/10a
⑤시설하우스에 방충망 설치하기			선택	5~7만원/10a
2.농업생태계 보호		①둠병(물응덩이) 조성 및 관리('22 신규)	선택	40~60만원/개소 (1년차)*
		②왕우렁이 유출방지 관리('22 신규)	선택	5~7만원/10a
		③밀원식물 식재하기(시범)	선택	8~9만원/10a
대기	1.온실가스 감축	①경운 최소화	선택	3~5만원/10a
		②바이오차 투입('22 신규, 10a당 100~200kg 투입)	선택	5~10만원/100kg
	2.축산악취 저감	①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미생물 제제 사용하기	선택	50만원/농가

\* 왕우렁이 유출 방지를 위한 차단망·포집망 등 자재 구매 비용은 실비 별도 지원

\*\* 둠병(2~5년차) 지급단가 : 손실보상(2만원/개소)+관리비(1만원/시간/인)

## ② 공동활동(14개)

분야	단위과제	세부활동	구분	지급단가
용수	1.농업용수 수질개선	①오염된 하천·저수지 청소 및 수생식물 식재	필수	1만원/시간·인
생활	1.생활환경 개선 *농촌비점발생최소화	①영농폐기물 공동수거 및 분리배출	의무	1만원/시간·인
		②생활폐기물 공동수거 및 분리배출	선택	1만원/시간·인
생태	1.농업생태계 보호	①생태계에 유해한 생물 제거	필수	1만원/시간·인
		②덤벙(물웅덩이) 조성 및 관리	필수	1만원/시간·인
		③농경지 이용 멸종위기종 조류 먹이공급	필수	별도협의
		④왕우렁이 공동수거·관리('22 신규)	선택	1만원/시간·인
경관	1.농촌경관 개선	①공동공간 관리 및 청소	선택	1만원/시간·인
		②공동공간에 꽃과 나무 심기	선택	1만원/시간·인
		③빈집 및 불량시설 경관 정비	선택	1만원/시간·인
유산	1.농업유산 보전	①농경의례 및 공동체문화 전승	선택	1만원/시간·인
		②전통적 농업기술의 유지 및 계승	선택	1만원/시간·인
		③전통적 토지이용 경관의 보전	선택	1만원/시간·인
		④전통적 수리관개시설의 활용 및 보전	선택	1만원/시간·인

\* 공동활동에 필요한 각종자재 구입비는 실비 지원(장비임차료는 회당 100만원 상한 적용)

### 개인/공동활동 구성 원칙

◇ 활동구성: 개인/공동활동별로 필수활동 중 각 2개 이상씩 포함하도록 구성하고, 의무활동은 반드시 포함(선택활동은 마을 여건에 따라 자율 구성)

○ 제시된 표준활동 외에도 현장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추가활동을 제안하면 환경보전효과, 지급단가 등을 검토해 이행비용 지원 가능

[절차] ①주민의견 수렴(주민협의회) → ②현장제안(시·군 → 시·도 → 농식품부·전문지원조직) → ③전문가협의회 구성·심의(농식품부·전문지원조직) → ④심의결과 알림(농식품부→시·도)

◇ 개인활동 단가는 지침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사업지별 여건에 따라 결정, 공동활동 시 필요한 자재는 실비 지원 가능(장비임차료: 100만원/회 제한)

## 5. 사업지별 지원 규모 및 예산 조정

### ○ 사업지별 지원 규모

- (22.4까지 기선정 지구) 1년차 5천만원, 2~5년차 1.5억원/年(총 6.5억원)
- (신규 지구) 본 지침의 적정 예산 기준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업지 공모 시 희망 예산 규모도 함께 신청 → 농식품부 검토·조정을 거쳐 사업지별 예산 배정

### 〈 참여 농지/농업인 규모에 따른 적정 예산 규모 기준 〉

◇ 아래 표를 참고해 2~5년차 지원 규모를 선택하여 신청(1~4구간, 1년차는 5천만원)

- 농지 면적을 핵심기준으로 하여 구간을 선택하되 최소 인원은 충족해야 함
- 마을별 특수 여건이 있거나 현재 참여면적·인원보다 확대할 계획이 있을 경우 아래의 권장 지원 규모와 다르게 신청 가능(관련 내용 설명 필요)

지원 규모 (2~5년차)	참여 농지 면적	참여 농업인(개인활동 참여자)	
		최소 인원	권장 인원
1억원/年(1구간)	20ha 이상	13명 이상	25명 이상
1.5억원/年(2구간)	40ha 이상	19명 이상	48명 이상
2억원/年(3구간)	60ha 이상	25명 이상	70명 이상
2.5억원/年(4구간)	75ha 이상	32명 이상	87명 이상

### ○ 사업지별 예산 조정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 수요, 집행률 등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증액/감액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농식품부에 예산 조정 신청 가능(증액 시 지방비 확보 필요)
  - 농식품부는 전체 증감액 수요 및 타당성을 검토해 배정액 조정 가능
- 예산집행률, 주민참여율이 떨어지거나 연차별 개인활동 편성 기준에 미달하는 등 이슈가 있을 경우 농식품부에서 검토하여 감액 결정 가능

\* 감액기준: 예산 실적집행률 70% 미만, 주민 참여자 20명 미달(개인/공동활동 수령자 기준), 연차별 개인활동 편성 기준 대비 5%p 이상 미달(배정액 대비 실적집행 기준)



### III

##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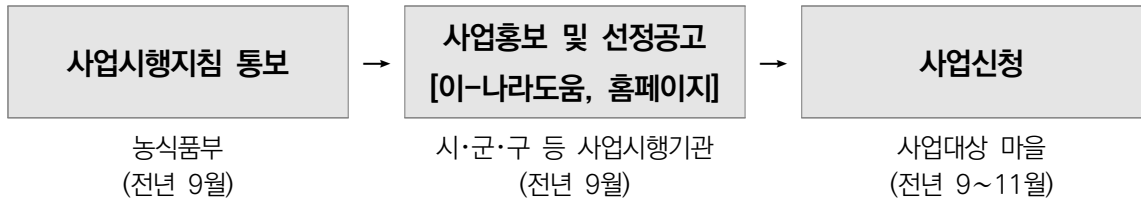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시행시기	
신규 지구 신청 및 선정	사업신청	사업시행지침 통보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사업시행기관] e-나라도움, 홈페이지	
		사업신청	[사업대상지]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시·군)서류검토 → (시·도) 농업환경위원회 평가	
	↓		전년9월	
	사업지선정	접수 및 평가위원회 구성	[농식품부]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전년11월
		사업대상 마을 선정 평가	[전문지원조직] 농업환경사업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전년11~12월
사업대상마을 통보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사업대상지]	전년12월	
↓				
1년차	사업비집행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시·도 상·하반기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	
	사업기반구축	행정협의회 구성	[사업시행기관] 시·군 유관부서 협력체계 구축	
		현장지원조직 구성	[사업시행기관] 환경관리·컨설팅 전문가 구성	
		현장지원사무소 구성	[사업시행기관] 현장지원조직 사무공간 설치	
	↓	교육	전문지원조직 → 지자체·현장지원조직 → 농민·주민	
	현황조사	주민수요·농업환경조사	[현장지원조직] 주민의견수렴 및 농업환경조사 실시	4~8월
		인식도조사	[전문지원조직] 주민환경개선인식도 조사	3~4월, 11월
	↓	이행점검	[시·도] 시·군 사업시행계획 수립 이행상황 점검	7월, 12월
	사업시행 계획(안) 수립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현장지원조직] 계획(안) → [시·군] 주민의견수렴	10월
		사전협의	[시·군] 계획(안) ⇄ [농식품부] 사전검토·협의 * 시·군은 사전협의의견 반영하여 시·도 제출	10월
↓				
사업시행계획 확정 및 협약체결	사업시행계획 확정	[시·군] → [시·도] 농업환경위원회 상정·심의	11월	
	협약체결	[시·군] ⇄ [사업대상지] 협약체결	12월	
	최종결과 제출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12월	
↓				
2~5년차	사업비집행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주민협의회] * 시·도 상·하반기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 * 시·군은 분기별 활동이행자에게 자금 지급	
	사업기반구축	현장지원조직 구성	[사업시행기관] 환경관리·컨설팅 전문가 구성	
	↓	교육	전문지원조직 → 지자체·현장지원조직 → 농민·주민	
	사업이행		[사업대상지] 개인·공동활동 이행후 증빙 기록	
	현황조사		[현장지원] 농업환경조사 / [전문지원] 인식도조사	
	이행점검		[시·도] 시·군 사업 이행상황 점검	
	↓			
추진실적평가 및 차년도 시행계획수립	평가회 개최	[시·군] 매년 말 사업이행 추진실적 평가회 개최	12월	
	사업이행 실적 평가서 및 연간 사업시행계획서 제출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익년1월15일	
	성과지표 평가	[전문지원조직] 전문가협의회 구성 성과관리·환류	익년2월	

농촌,  
공동체

2-3

한 농촌 마을 공동  
경제

## 1. 사업신청단계



### 《 사업시행지침 통보 및 선정공고 》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통보(농식품부 → 시·도), 사업 안내 및 선정공고

※ 필요 시 선정공고에 앞서 사전 수요조사를 할 수 있으며 선정평가 시 사전 수요조사 참여 지자체에 대한 가점 부여

#### 사업시행기관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을 시·군에 지체 없이 통보(시·도 → 시·군)하고 시·군은 사업신청자 공개 모집(시·군 → 마을)

- 시·군은 사업에 관심이 있는 마을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개요, 지원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시·군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

\* 필요시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목적, 내용 등 설명·홍보

### 《 사업신청 》

#### 사업대상지·시행기관

- [사업대상지] 사업추진 희망 마을은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친환경농업집적지구는 의무적으로 사업 신청

- [시·군] 마을별 농업환경 및 사업 규모 등을 검토·보완하여 시·도에 사업 신청

- 시·군은 사업신청 마을별 농업환경 관련 데이터 확보 및 여건 조사

- 참여 농지 면적 및 농업인 규모를 감안해 적정 예산 규모를 선택해 신청

\* 사업 신청 요건이 안 되거나 참여 배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청 제외

- [시·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사업신청

- 시·도는 '시·도 농업환경위원회\*' 구성하여 사업지 평가

\* 농업환경진단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기술센터, 지역 한국농어촌공사 토양·수질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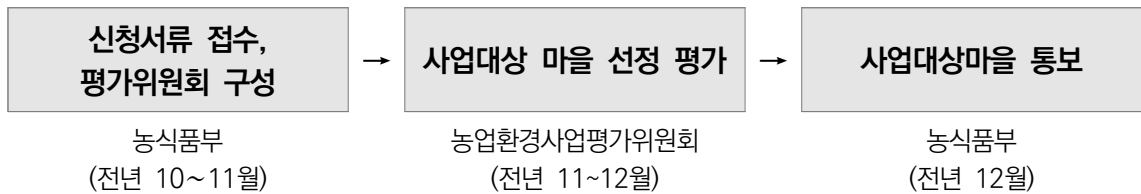
담당자, 농업·환경분야 학계·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5인 내외)

\* 마을별 사업신청서와 기 조사된 농업환경 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별지 제3호)

- 시·도는 ‘시·도 농업환경위원회’에서 결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7개 이내 마을을 선정해(친환경농업집적지구 대상지는 별도) 관련 서류와 함께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에 제출하는 서류 : 1)마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2)시·군에서 조사한 농업환경 현황 조사서, 3)시·도 평가결과 및 순위, 4)그 외 증빙 및 참고자료

## 2. 사업자 선정단계



### 《 신청서류 접수, 평가위원회 구성 》

#### 농림축산식품부(전문지원조직)

- 농식품부(전문지원조직)는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 관련 서류 접수
  - 농식품부는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일부 서류가 미비한 사업지에 대해서는 평가시행 전 서류보완 조치 및 평가 보류
- 농식품부는 ‘농업환경사업평가위원회’ 구성(전문지원조직 지원)
  - ‘농업환경사업평가위원회’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시·도 내 연구원 관계자 및 학계·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 사업대상 마을 선정 평가 》

#### 농업환경사업평가위원회

- ‘농업환경사업평가위원회’는 「서류·발표평가 → 현장평가 → 최종선정 및 사업비 배정」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 마을 선정
  - (서류·발표평가) 환경진단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자체와 주민의 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 기대효과 등을 중점 평가
  - (현장평가) 현장 실사 결과 농업환경 관리의 필요성, 환경 관리 방안의 현장 적용성, 주민 참여 여건 등을 중점 평가

- (최종선정) 서류·발표평가,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전체 예산 내에서 검토·조정을 거쳐 사업지별 사업비 배정

《 사업대상마을 통보 》

- 농식품부는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대상지 및 배정 예산을 해당 시·도에 통보, 각 지자체는 사업신청 마을에 대상자 선정여부 통보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농촌, 공동체

---

## 2-4. 지역먹거리



## I 사업 개요

☞ (세부) 농식품 소비기반 조성 - (내역)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 (내내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 □ 목 적

- 지역생산 먹거리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물류·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제로 공공형 조직 운영

## □ 사업내용

-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지자체 대상으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위생·안전·물류·배송·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 □ 근거법령

- 「농업식품기본법」 제23조의3, 「농산물직거래법」 제9조·제14조·제15조·제17조,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의2

##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수립중 포함\*)하여 추진 중인 시·군·구(제주·세종 포함)  
\* 사업기간 1년차('24년)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완료 예정인 지자체로서, 계획수립 연구용역 완료 최종본 또는 내부방침문서 제출(~'23년말) ☞ **미제출 시 차순위 지자체 선정**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규모 : 개소당 6,000백만원(국비 2,400백만원)/지자체 자본보조(2개년 사업)
- 지원내용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건축·설계·감리·시설·장비(저온 저장고·냉동고, 전처리·소분시설 등), 부대시설 등 지원(운영비 제외)  
\* 1년차 : 설계비, 컨설팅 비용 등 / 2년차 : 건축, 시설, 장비, 부대시설 비용 등

○ '24년 예산 : 6,000백만원(국비 2,400\*, 지방비 3,600)

\* 1년차 : 신규 공모('23.9~) 1개소 3억 / 2년차 : 경기 안성(기 선정) 21억

## □ 사업신청

○ 지원자격을 갖춘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자체 사전진단리스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 사업시행지침 및 신청·공모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통지('23.9월)

○ 신청기간 : '23년 9월~

## □ 대상자 선정

○ 공모·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서면·현장·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예비대상자 선정 후 사업비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 선정('23.12월)

○ 선정기준 항목 : 사업추진 여건, 경영능력 및 운영전략, 부지 및 건축·시설 여건, 설치 및 운영자금 활용, 의무이행계획, 가치실현 등 6개 항목 8개 기준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사무관 신부선	044-201-2296
		주무관 박정호	044-201-229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푸드플랜부	부 장 정유진	061-931-1020
		차 장 김유리	061-931-1023



## 1. 사업대상자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운영을 희망하는 시·군·구(제주·세종 포함) 및 해당 시·군·구가 출자(출연)한 재단법인 등

## 2. 지원자격

- 지역먹거리계획 세부추진 계획이 수립(수립 중\* 포함)된 지자체

\* 사업기간 1년차('24년)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완료 예정인 지자체로서, 계획수립 연구용역 완료 최종본 또는 내부방침문서 제출(~'23년말), **미제출 시 차순위 지자체 선정**

## 3. 지원요건

### (1) 기본요건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부지확보 필수(미확보 시 사업신청 불가)

### (2) 의무요건

-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공공성 확보 및 조례 제정,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강화를 위한 연차별 목표 등 부여(준공 후 3년 이내)
  - (공공성 확보) 직영 또는 시·군·구에서 출자·출연한 재단법인 등 운영
  - (지속 가능성) ①공공급식 지원조례 또는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준공전), ②센터 원활 운영 위한 품목 지속 발굴 및 최소 300명 이상 참여농가 조직화, ③연중 가동
  - (사회적가치 실현) ①중소·고령·여성농 등 판로취약농가 위주 농가조직화(70% 이상) ②운송취약농가 순회수집(100%) ③지역내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농식품 취급율(70% 이상), ④공공급식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⑤취약계층 채용 등

\*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농장 등

## 4. 지원규모

- 사업규모 및 지원조건 : 1개소, 60억원(국비 40%: 24억원) / 지자체 자본보조
- 사업기간 : 2개년 사업으로 추진

- 지원한도 : 1년차 7.5억원(총사업비의 12.5%, 국비 40%: 3억원)  
2년차 52.5억원(총사업비의 87.5%, 국비 40%: 21억원)
- 지원용도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건축·설계·감리·시설·장비(저온 저장고·냉동고, 전처리·소분시설 등), 부대시설 등 지원(운영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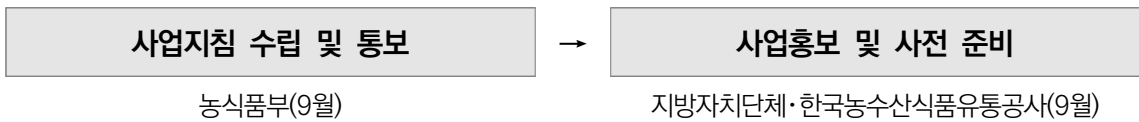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보조사업자는 사업자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사업자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집행, 집행내역 검토, 정산보고, 반납 등을 시행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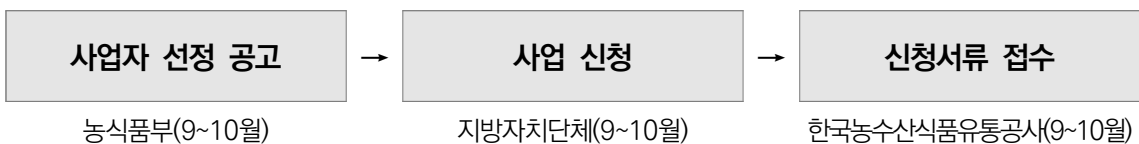
\*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참고

### 1. 사업지침 수립 및 준비단계



-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세부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통지(9월)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사전 준비(9월)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인력배치 계획수립 또는 위탁 운영기관 선정, 출하농가 조직화교육,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 등 사전 준비
  - \* 기획(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필히 작성

### 2. 사업자 공고 및 접수단계



- 농식품부에서 행정망을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9~10월)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신청서 등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공문 제출(9~10월)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사업자(시·군·구)

- 지원자격을 갖춘 사업대상자(시·군·구)는 사업신청서(붙임2)와 사업계획서(붙임3) 및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신청

- 사업신청시 부지확보 등 자체 사업진단 실시 후 사전진단리스트(붙임4) 제출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자체 사전진단리스트 ④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⑤지자체 방침 문서  
⑥토지등기부등본·지적도·토지대장\* ⑦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⑧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이용) ⑨기본설계도 및 조감도 ⑩위탁법인 등기부등본 ⑪위탁법인  
최근 3년간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농산물 취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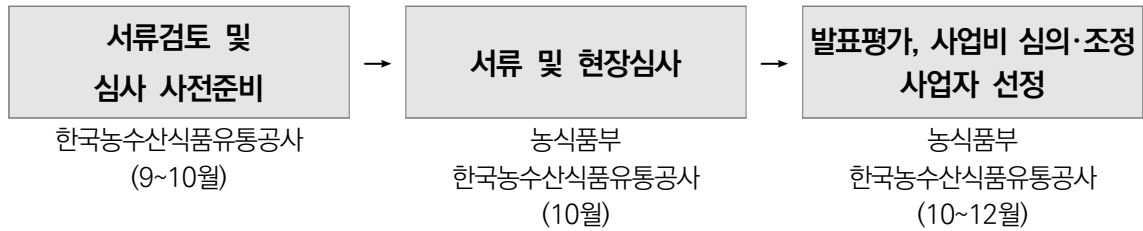
\* 토지가 법인명의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추가 제출

\*\* 사업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임. 전년도 농산물 취급액 등 증빙자료 제출

### 시·도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사업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사업자가 제출한 자체 사업진단 검토·점검 후 사전 진단리스트(붙임4) 제출

### 3. 사업자 선정단계



#### 가. 단계별 평가절차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접수된 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검토
-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들로 하여금 발표평가 전에 서류 및 현장심사 실시
  - \*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고 외부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지역먹거리계획 및 시설전문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분야 종사자 등 10인 이내로 구성
  - ※ 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법령 준용
-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발표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는 발표평가(서류·현장심사 결과 반영) 결과를 기반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선정

※ 단계별 평가절차 진행 중 한 단계라도 미참여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며, 해당 지자체는 사업포기 공문을 농식품부와 aT에 필수 제출

### 〈 서류 및 현장심사 〉

- (목적)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는 발표평가 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 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심사자 : 선정위원회(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서류심사) 제출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평가항목에 따라 서류검토 및 사전심사
  - 심사내용 : 사업추진 여건, 경영능력 및 운영전략, 부지·시설 여건 등 적정성
- (현장심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가능 토지 여부, 출하 농업인의 접근성, 민원 발생 여지 등 심사 후 의견서 작성
  - 심사내용 : 부지 확보 및 규모, 부지 여건 및 입지 조건, 지역 내 출하 농업인 접근성, 연접 지자체 생산 농산물 공급 접근성, 민원 발생 여지 등 적정성

### 〈 발표 평가 〉

- 지자체(시·군·구)별 사업계획서 발표 청취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평가하되,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종합평가 실시
  - 주 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평가자 : 선정위원회(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참석대상 : (필수) 개별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구), (필요시) 광역 지자체
  - 평가내용 : 사업추진 여건, 경영능력 및 운영전략, 부지 및 건축·시설 여건, 설치 및 운영자금 활용, 의무이행계획, 가치실현 등 6개 항목 8개 기준 평가
  - 평가자료 : 제출된 신청서, 사업계획서, PPT 등 발표자료 활용

### 〈 순위 결정 〉

- 선정위원회 위원별 부여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산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상위 득점 지자체 순으로 예비사업자를 선정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평가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식품부로 즉시 보고

※ 유의사항

○ 접수 미달\* 및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포기 또는 선정 결과 취소\*\* 시 차순위 사업대상자로 대체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별 합산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 ①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②불가피한 사유 없이 선정된 이후 6개월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 평가항목(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평가내용
서류심사 + 현장심사 + 발표평가 (100점)	추진 여건	지자체장 의지, 먹거리계획 수립, 인허가 문제 등(15점)	- 먹거리 관련 내용의 공약(방침) 포함 여부,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정상 추진 여부 - 인허가 문제 및 민원발생 가능성 여부
	경영 능력/ 운영 전략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운영전략 등의 적절성(15점)	- 직영 또는 위탁운영의 인력확보 및 경영능력 - 기획생산·기획소비체계의 구체성 여부 - 연도별 목표설정 및 달성 가능성
		취급물량 확보 계획의 적절성(15점)	- 취급물량 확보 계획과 확보 여건 정도 - 자체생산기반 및 농가 참여 확대수단 적정성 - 연접 지자체와 협업 추진여부(협약체결 등) - 연도별 로컬푸드 취급비중 확대계획 적정성
	부지/ 건축·시설 여건	부지 확보 및 규모(10점)	- 사업부지로서 입지여건 적절성 - 부지 확보의 적절성 여부 -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검토 여부 등
		건축·시설의 적절성(15점)	- 취급물량 대비 설치 규모의 적정성 - 연간 가동체계의 구체성 - 인근 유사시설 활용 및 실현 가능성 등
	설치 및 운영 자금 활용	자금운영 및 조달계획(10점)	- 지방비 확보 등 설치자금 조달계획 -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의 적절성 - 도 및 시·군·구의 운영비 지원 및 조달 계획 등
	의무 이행 계획	지속 가능성(10점)	- 공공급식 및 먹거리 조례제정 또는 계획 여부 - 품목지속 발굴 및 참여농가 조직화 계획의 구체성 등
가치 실현	사회적 가치실현(10점)	- 취약농가 배려(순회수집 지원), 취약계층 채용 및 나눔활동 계획반영 여부 - 사회적경제조직 농식품 취급률 실행계획	

※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내용은 사업 제반여건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음

나. 사업비 심의·조정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 주 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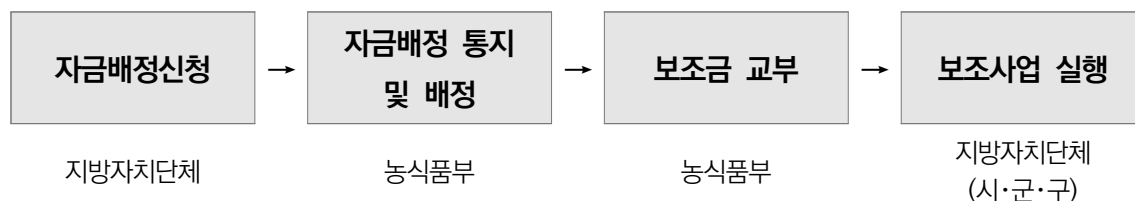
- 평가자 : 선정위원회(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참석대상 : 예비사업자에 선정된 지자체(시·군·구) 등
- 평가내용 : 기본(기획)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 제출서류 : ①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붙임8, 엑셀), ②산출내역 설명자료(부지 전경사진, 건물배치도, 평면배치도, 작업자 및 원물 동선, 선별라인 도면, 견적서 및 산출내역 증빙 등)
- 평가진행 : 기본(기획)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선정위원회 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등 심의·조정
  - ※ 사업시행 前단계(사업비 심의·조정 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업비의 합계가 총사업비의 30% 이상인 경우는 선정위원회의 타당성 검토 후, 농식품부 승인 필수

### 다. 사업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식품부는 선정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사업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사업자 선정을 위해 예비후보자 제도 운영
- 농식품부로부터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위원회의 종합검토 및 보완의견 등을 반영한 세부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 4.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단계



-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부로부터 세부사업추진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 승인을 득한 이후, 농식품부에 사업비 배정 신청
- 농식품부는 신청사항을 검토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자금배정 통지
-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요예산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농식품부의 사업 변경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되, 총사업비 20% 미만의 변경1)은 시·도지사가 검토·승인하고, 사업비내에서 20% 이상 변경되는 주요 사업내용 변경은 시·도에서 사전 검토 후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농식품부는 검토·승인 결정
  - 1) 시·도지사가 자체 승인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2) 20% 미만의 사업변경이라도 부지변경, 면적 변경, 필수시설 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은 농식품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자부담만 증가한 경우에는 제외

3) 부지 변경 사항은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 불가

내 용		승인 주체
소요예산, 사업부지 등 중요사항		농식품부 승인
경미한 사항		시·도 승인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총 사업비 20% 미만	시·도 승인 (승인 후 10일 이내 농식품부 보고)
	총 사업비 20% 이상	시·도 검토 및 농식품부 보고 → 농식품부 승인

-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 세부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도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단, 기존시설 유지 및 단순 리모델링, 1톤 화물차량 구입 등 제외)
- \* 세부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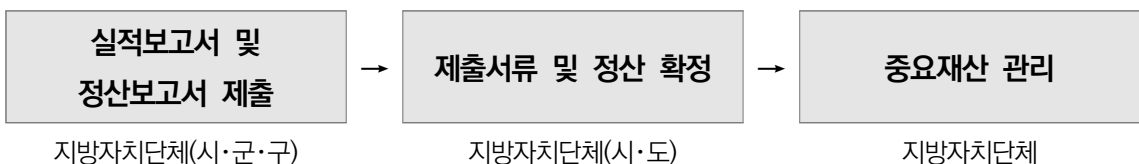
-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인 시설공사의 계약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지자체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반드시 동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외 자체 입찰은 불허용

## 5. 이행점검

- 지방자치단체(시·도)는 보조사업자(시·군·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사업추진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실사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6.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혹은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개월 이내 실적(정산) 보고



- 지자체는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농식품부에 사전 이월 신청하고, 제출받은 서류가 미흡할 경우 시정 명령할 수 있음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은 반드시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자체 이월 불가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1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 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 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7.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 지방자치단체(시·도)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연2회 이상 운영상황 등 사후관리 실태점검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시·군·구)

-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전까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2(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 조치 등을 하여야 함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자는 운영현황(시설 및 취급액 등)을 매년 2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및 지원을 받지 않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포함되며, 시·도 책임하에 사업자(시·군·구)가 보고(이후 사업자 선정평가 시 감점 반영)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안 됨
-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장부를 갖추고 현재액과 증감액을 기록·보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참고)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토지, 건물 등) 및 부동산의 종물	10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5년

## 시·도

- 지방자치단체(시·도)는 사업대상자(시·군·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한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와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시장·도지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거당 설정 등 확인 및 현지 지도·점검,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치, 농식품부에 보고해야 함
-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78조 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 5에 따라 환수조치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 농식품부에 통보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함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농촌, 공동체

---

## 2-5. 귀농귀촌, 인력육성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 사업내용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영농정착지원금을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 기준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24년 예산 : 83,37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 사업 신청

- 장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신청서 내용을 입력하여 신청
- 신청기간 : '23.12.18~'24.1.31

## □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영농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사무관 김태영 주무관 최윤종	044-201-1595 044-201-1597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청년농육성실	처 장 김성아 실 장 이택선	044-861-4540 044-861-8771

## 1. 지원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4년 사업 기준 : 1984.1.1 ~ 2006.12.31. 출생자)

(예외)

- 한국농수산대학교,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장기교육 과정 수료자(당해연도 수료예정자 포함)
  - 해당 교육 선발 이전에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으나 교육 수료 후 만 40세 이상이 된 경우, 교육 수료 기준 차년도까지 사업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가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사업 신청 가능(지원금 수령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 \* 단, 사망한 사업대상자의 선발 연도에 배우자가 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다면 사업 신청 가능
  -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배우자는 영농승계를 증빙할 수 있도록 경영체 확인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용어)

- 임차 : 돈을 주고 타인 것을 빌려 쓰는 행위이며, ①배우자, ②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③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④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 불가
- 주품목 : 전체 영농규모(영농계획서 상)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

- 세대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가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경우 신청 불가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4년 사업 신청이 가능한 자 : ’21.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3.1.1. 이후 등록자 ~ 2024년 등록 예정자), 2년차(2022.1.1. ~ 2022.12.31. 등록자), 3년차(2021.1.1. ~ 2021.12.31.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는 2023.1.1. ~ 2024.3.31.이며, 독립경영 등록 예정자는 2024.4.1. ~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간을 의미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임신(10개월) 및 출산(최대 6개월 이내) 등으로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 (예시1) 2020.1.1. 경영주 등록 → 2020.3.10.~2021.12.9(21개월) 군복무 → 2021.12.10. ~ 2022.12.27. 영농(독립경영) : 실제 영농기간은 14개월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 (예시2) 2021.1.1. 경영주 등록 → 2022.1.10. 출산 → 2022.12.27. 사업 신청 : 총 영농기간은 24개월이나, 임신기간(10개월) 및 출산(6개월)에 해당하는 총 16개월을 차감하여 실제 영농기간은 8개월이므로 독립경영 1년차 적용
- 이에 따라, 2020.12.31. 이전 경영주 등록자도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라면 사업 신청 가능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예외)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은 의무영농 기간 산정 시 제외
  - 복무자의 군사 훈련 기간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 정지하고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 사업 접수 기간에 군 복무 중이라도 면접 심사일자가 전역일자 이후라면 사업 신청 가능
  - 단, 대상자는 사업 신청 시 전역일이 당해연도 사업 면접심사 이전임을 증빙하고, 전역 후 병역필 증명서를 지체없이 지자체에 제출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별지 3호 서식) 전 날짜까지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완료(영농기반 마련 이전 사업대상자도 포함)

\*\* 이 경우, 이전하려는 시·군·광역시의 국비·지방비 확보 등 예산 여건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2) 1)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예외)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더라도 신청 가능**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기한: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는 신청 가능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 체험사업은 반드시 본인의 영농기반 및 생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한함
- 농가 부업 소득활동\*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 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 반드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농가부업 활동인 경우에만 가능
-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 공동대표가 각각 신청 가능
  - \* 이 경우 공동대표의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 \* 다만,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을 위한 평가위원회 평가 시, 영농계획 이행을 위해 5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20% 미만도 허용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예외)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경우(기한: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신청 가능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신청 가능
    - \* (단,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급여 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 가능
    - \* 4대 보험 중 총 4개를 모두 가입한 경우는 불가능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 '23년 12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가구원 4인 기준) 〉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30,142원	196,236원	233,952원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예외)

-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사업 신청 가능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 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사업 신청 가능

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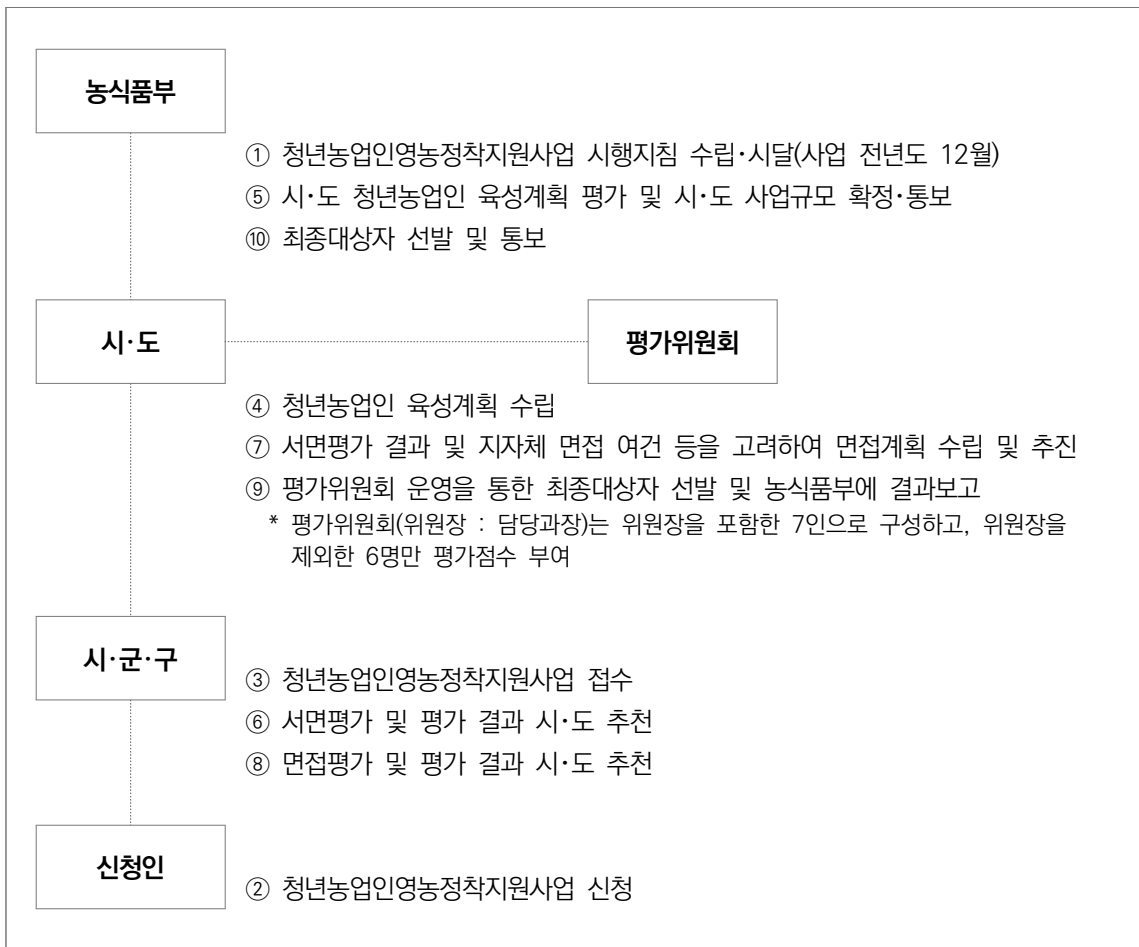
바.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1. 사업 추진체계 및 일정

1) 사업추진체계

- ① 농식품부 : 계획 및 지침 시달('23.12월), 권역별 설명회 등 홍보 추진(~'24.1월 말) → ② 시·군·구 : 공고 및 신청 접수('23.12.18~'24.1.31) → ③ 시·도 :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수립·제출(시·도, '24.1.5) → ④ 농식품부 :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평가 및 시·도 사업규모 확정·통보('24.2.16) → ⑤ 시·군·구 : 서면평가 및 결과 시·도 추천(~'24.2.23) → ⑥ 시·도(시·군·구) : 대상자 면접평가 및 시·도 추천(~'24.3.15) → ⑦ 시·도 : 대상자 선발 및 결과보고(~'24.3.20) → ⑧ 농식품부 : 최종대상자 선발 및 통보('24.4월)

〈 사업대상자 선발 절차〉



## 2. 사업자 선정

### 시·군·구

- 사업신청자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영농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시·도에 추천
- 사업대상자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4인)과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위원장 : 담당과장)를 구성·운영

#### 〈 시·군·구 평가위원회 구성(안) 〉

- 외부전문가(2인)은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 풀에서 선정(지역연고자 배제), 필요시 농정원에서 추천
- 시·군·구에서 자체 선정하는 평가위원(2인)도 동 평가위원 풀 구성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1인은 지역 내 전문가 선정 가능
- 평가위원 평가 수당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운영비 등으로 지급

- 평가위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장은 평가점수 미부여)
  - 평가위원(총 4인)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만 환산점수 명부를 작성
  - 명부 작성 시, 추천인원의 50%를 순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먼저 작성하고, 나머지 50%는 경력이 짧은 순으로 작성

#### 〈 시·군·구 평가위원회 구성(안) 〉

##### 〈 예시 : 영농정착지원사업 시·군·구 배정 인원이 5명인 경우 〉

- 추천인원은 8명이고, 점수가 높은 순으로 4명, 영농경력이 짧은 순으로 4명 추천
- 단, 영농경력이 짧은 순으로 추천 시 영농경력이 같은 경우 순위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추천 (예정자와 1년차는 경력이 같은 것으로 간주)

추천순위		성명	평균 점수	순위 점수	영농경력
1	순위 점수 적용	A	92	100	3년
2		B	91	94.3	1년
3		C	88	88.6	2년
4		D	86	82.9	1년
5	영농 경력 적용	E	80	71.5	예정
6		F	75	65.8	1년
7		G	60	60.1	예정
8		H	83	77.2	2년

\* 순위를 점수로 환산하는 산식 : 1위는 100점, 다음 순위부터  $[40 \div (60\text{점 이상 청년농(명)}-1)]$ 점씩 차감, 소수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 시·군·구 배정인원의 1.5배수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에 추천

**시·도(특광역시 포함)**

- 사업대상자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 6인과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위원장 : 담당과장)를 구성

**< 시·도 평가위원회 구성(안) >**

- 외부전문가(3인)은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 풀에서 선정(지역연고자 배제), 필요시 농정원에서 추천
- 시·도에서 자체 선정하는 평가위원(3인)도 동 평가위원 풀 구성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구성 하되 1인은 지역 내 전문가 선정 가능
- 평가위원 평가 수당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운영비 등으로 지급

- 시·군·구의 사업대상자 추천이 완료되는 대로 면접평가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 면접평가 예정일 최소 1주 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에 면접 일정 통보 필요

- 평가위원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장은 평가점수 미부여)
  - 평가위원회는 시·군·구 서류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시·군·구 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분리하여 면접 평가
  - 평가위원(총 6인)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60점 이상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순위를 점수로 환산

\* 순위를 점수로 환산하는 산식은 시·군·구 서류평가 사례에 따름

- 시·군·구 추천명부의 서류평가 점수(순위 점수)와 면접평가 점수(순위 점수)를 합산하여 시·군·구별 최종대상자 명부 작성
    - 명부 작성 시, 배정인원의 50%를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먼저 작성하고, 나머지 50%와 기타 대상자는 영농이 짧은 순으로 작성
- \* 동점자 발생 시 ①승계 기반이 없는 자, ②독립경영(영농) 경력이 짧은 자(독립경영예정자는 1년차와 같은 그룹으로 편성), ③소득 기준 낮은 자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예시 : OO도 AA시의 배정 인원이 5명인 경우 최종 사업대상자 명부 〉

성명	영농경력	서류평가 순위점수	면접평가 순위점수	합계	최종 사업대상자 명부			
A	3년	100.0	80.2	180.2	⇒	B	점수	영농정책 지원금
B	1년	94.3	86.8	181.1		A		
C	2년	88.6	73.6	162.2		D	경력	
D	1년	82.9	93.4	176.3				
E	예정	71.5	60.4	131.9				
F	1년	65.8	100	165.8		F		
G	예정	60.1	67.0	127.1		E		
H	2년	77.2	58	0				

\* 서류평가 순위 점수 77.2점인 H가 면접평가 평균점수가 58점으로 면접평가 순위점수를 받지 못한 경우(1위는 100점, 다음 순위부터는  $(40 \div (\text{면접평가 } 60\text{점 이상 청년농 인원} - 1))$ 점씩 차감 - 이 경우는 최종 순위명부 인원이 8명이 아니라 7명임을 유의

- 선정대상자가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재산 및 과세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순위명부상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정착지원금 지급

\* 차순위 선정자도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금 최장 3년간 동일 지급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예비후보자도 함께 심사하여 향후 포기자 발생 시 별도 심의 없이 추가 선발

- 해당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서류평가 위원회와 면접평가 위원회를 통합·운영 가능

\* 특광역시 중 시에서 업무를 담당하거나, 구 또는 군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사업시행지침 및 계획 등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시·도별 평가위원 추천명단까지 작성

\* 평가위원은 경영컨설턴트,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농진청 강소농 민간전문가, 농업계교사, 농대교수 등으로 구성

〈 서류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구성 〉

- ①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사람
- ②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③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④ 농업 분야의 기술사급 이상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⑤ 농업경영컨설팅 경영분야 컨설턴트 자격이 C등급 이상인 사람
- ⑥ 상기 ①~⑤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농정원,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인정하는 사람

## 1. 영농정착지원금

### 1) 지원규모

- 지급규모 : 5,000명
- 총사업비 : 122,470백만원(국비 85,740백만원, 지방비 36,7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

세부 내역	사업비			시행주체
	국비	지방비	합계	
영농정착지원금	83,370(70)	35,730(30)	119,100	지자체
선발운영비	1,000(50)	1,000(50)	2,000	지자체
사후관리홍보	1,370(100)	-	1,370	농정원
합계	85,740	36,730	122,470	

### 2) 지원기준

- 지원조건 :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 시·군·구인 경우 지원금 지급
  - '24년도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독립 경영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부터 지급하되, 독립경영 1년차에 준하여 지급
    - \* (1개월~12개월) 110만원, (13개월~24개월) 100만원, (25개월~36개월) 90만원
  - '24년도 등록 예정자는 '24년 12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만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
  - 선발 시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상기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지원인원 :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예외)

-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한 사람만 지급 가능
  - \* 다만, 결혼 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로 선발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자간 결혼을 할 경우,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경영주)를 유지한다면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 사업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Team 창업)한 경우는 각각 해당 금액 지급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를 등록한 법인이어야 하며, 정착지원금은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법인카드 발급 불가)

○ 지원기간 : 독립경영(영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24년도 사업 대상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

구분	지원 1년차 (2024.4 ~ 2025.3)	지원 2년차 (2025.4 ~ 2026.3)	지원 3년차 (2026.4 ~ 2027.3)	합계
독립경영 1년차	110만원(12개월)	100(12)	90(12)	3,600(36)
독립경영 2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	2,280(24)
독립경영 3년차	90만원(12개월)	-	-	1,080(12)

\* 단,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예외)

- 사망한 사업대상자 영농기반을 배우자가 승계하여 사업에 선발되었다면, 사망한 사업대상자 기준으로 기지급 금액을 제외한 영농정착지원금 잔여금액을 선발된 배우자에게 지급
  - \* (예시) 사업대상자가 총 30개월 수령이 가능하였으나 8개월 수령 후 사망하였다면, 배우자가 사업대상자로 선발되어 22개월 지원금 지급 가능

3)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

○ 사용 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시 유의할 점

-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불가
-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 불가(별표5에 명시된 사용 가능 업종에서만 카드 승인)

○ 지급 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을 방문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 발급받은 후 발급받은 신용·체크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 등은 불가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 신청 시기 : 독립경영 1~3년차 선정자는 선정 즉시 카드발급 및 지원금 신청하고, 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이후 익월 카드 발급 및 지원금 신청(미신청 시 시군구 담당자에게 사유 제출)
- 지원금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이용하여 '24년 각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을 신청(연4회)
  - \* 분기별로 별지 3호 서식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신청서와 별지 4호 서식의 영농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자에게 제출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고(성실신고)
- 사용기간 : 당해연도 12월 20일까지 사용 가능(연장불가)
  - \* 사업대상자 관할 지자체(농협카드 포함)는 당해연도 4분기부터 연말 카드사용 마감일자 및 미사용 한도(잔액 이월 불가), 불용 방지 등을 위한 안내

#### 4) 영농정착지원금 예산 집행 체계

##### ○ 세부 집행 체계

구분	주요 내용
1) 자금 흐름	- [농식품부→지자체(시·도)→지자체(시·군·구) 정착지원금 배정(주기 : 반기) - [지자체(시·군·구)→농정원] 지자체 예산을 포함한 정착지원금을 교부(반기) - [농정원→농협카드] 전국 영농정착지원금(바우처 이용액) 지급
2) 카드 발급	- [농협카드] '청년농업희망카드' 상품 발행 - [대상자] 본인 명의 카드신청(영업점 방문/인터넷) *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가 없는 경우는 계좌도 개설 필요
3) 바우처 등록	- [대상자→Agrix] 분기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 <b>[지자체(시·군)→Agrix] 대상자별 익월 지급 금액 등록(매월 25일까지)</b> * 지자체에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해당 시군구 대상자의 분기별 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월별 한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미지급 - [농정원→농협카드] 바우처 한도 전송(전송주기 : 매일 1일)
4) 카드 사용	- [대상자] 카드 사용 시 바우처 한도 내 자동승인 - [농협카드] 대상자별 바우처 한도관리(매월 한도 전송시 SMS 발송, 카드사용 시 사용내역 및 잔여한도 SMS 발송), 일부 가맹점업종 승인제한 - <b>[농협카드] 연말 카드사용 종료기한(12.20.) 및 미사용 한도 안내</b> * 관할 지자체에서는 미사용 한도 및 불용 방지 등을 위한 안내
5) 정산	- [농협카드→농정원] 개인별 바우처 사용금액을 월별 집계 후 제출 - [농정원→농협카드] 지자체에서 농정원으로 예산교부 완료 이후 바우처 이용액 정산 지급 (지자체는 지방비 예산확보시 즉시 농정원 예산 교부) - [농협카드→농정원→지자체(시·도)] 개인별, 지자체별 사용액 통보, 보조금 반납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농·축협에서만 취급) 등과의 연계를 위해 농협카드를 활용

## I 사업 개요

## □ 목 적

- 졸업 후 농식품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식품분야 우수 후계인력 육성

## □ 사업내용

-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대학 3학년 이상, 만 40세 미만,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부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 '24년 예산 : 9,917백만원(국비 100%)

## □ 사업 신청

-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을 통해 신청

## □ 대상자 선정

- 자격요건 검증(대학교, 희망재단), 서류 및 정성심사(심사팀)를 거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사무관 김화태 주무관 김시은	044-201-1572 044-201-1573
농어촌희망재단	장학팀	과 장 이희승	02-509-2244

### 1. 사업대상자

- 졸업 후 농식품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공 무관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중 졸업후 농식품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지원대상별 세부 요건은 학기별 선발요강 참조(농어촌희망재단 공고 예정)

### 3. 대상자 선정

- 신청·접수(학생→재단) → 자격요건확인 및 추천(대학) → 심사·선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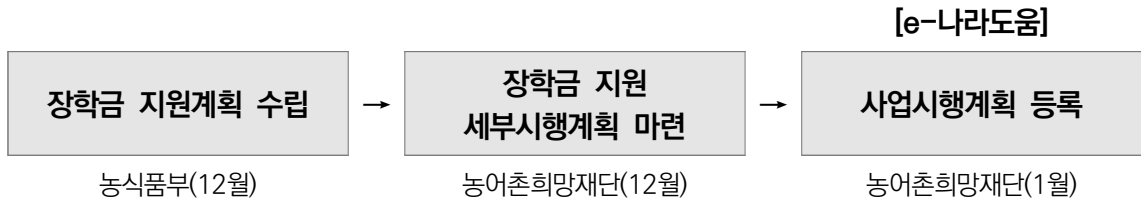
### 4. 지원대상 금액

-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2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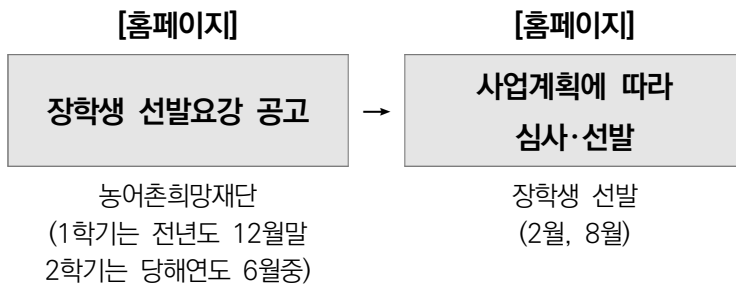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계획수립 단계



### 2. 지원대상자 선정단계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교육생 유형(수준·품목 등)에 맞춘 실습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스마트팜 분야 전문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활용 확산

## □ 사업내용

-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스마트팜 교육과정 설계·운영으로 스마트팜 도입농가의 ICT 역량기술 향상
  - 교육생 유형에 따라 기본교육·심화교육·선진지 연수·학습조직 운영
- 교육과정에 대한 품목별 교육성과 측정 및 성과공유, 교육생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스마트팜 확산 촉진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스마트팜 농가 및 스마트팜 교육을 희망하는 자
  - 다만, 교육생 유형(수준·품목 등)에 맞춰 편성되는 교육과정별 지원 자격 및 요건에 따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스마트팜 영농 경력 증빙 필요(별도 안내)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비 일부
- 지원기준
  - (직접교육비) 국고 70%, 교육생 자부담 30%
- '24년 예산 : 180백만원(국비 100%)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 사업 신청

-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온라인 신청 또는 교육 운영기관 담당자 이메일(추후 공지)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필수) 교육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해당자) 스마트팜 영농 관련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 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누락 및 자격요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순으로 대상자 선정
  - \* 1개 이상의 교육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자의 경우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신청 미달이 발생한 경우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 가능
  - 필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서류 누락 여부 검토
  - 교육과정별 스마트팜 영농 경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를 검토하여 신청한 교육생 유형 적합여부 확인
  - 최종 선정 결과는 교육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교육비 납부 등 관련 내용 안내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사무관 권병철 주무관 이지원	044-201-2425 044-201-2422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혁신밸리실증팀	팀 장 임류갑 연구원 변재영	063-536-9730 063-548-3552

### 1. 사업대상자

- 스마트팜 농가 및 스마트팜 교육을 희망하는 자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스마트팜 농가 및 스마트팜 교육을 희망하는 자
  - 다만, 교육생 유형(수준·품목 등)에 맞춰 편성되는 교육과정별 지원 자격 및 요건에 따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스마트팜 영농 경력 증빙 필요(별도 안내)
  - \* 1개 이상의 교육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자의 경우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신청 미달이 발생한 경우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 가능

### 3. 지원대상 및 자금 사용용도

- 농업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스마트팜 교육과정 설계·운영 지원
  - 교육생 유형에 따라 기본교육, 심화 교육, 선진지 연수, 학습조직 운영 등 지원
- 교육성과 측정 및 성과공유, 교육생 간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스마트팜 확산 촉진 지원

###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민간경상보조 100%)
- 사업예산 : 180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교육비) 국고 70%, 자부담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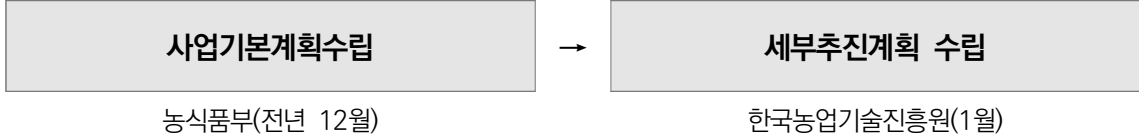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사업자가 수립한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 집행
  - 교육생 유형(수준·품목 등)에 따른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액은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소요액 확정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계획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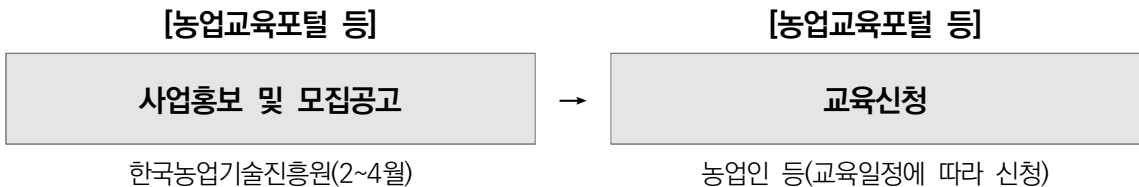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에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기본계획을 시달하고,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공고 요청

#### 한국농업기술진흥원(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공고에 앞서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본계획에 기반한 세부 추진계획, 발주계획 등을 수립 및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보조사업자는 농진원 홈페이지에 사업공고 안내
  - 보조사업자는 신청서, 세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준비 등을 포함하는 공고문을 사업대상자에 자세히 안내하고, 사업설명회 및 유관 기관 등을 통해 홍보
- 농진원은 온·오프라인 사업홍보 및 대상자 모집 추진
  - 농진원은 스마트팜 관련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등록하고 신청자는 농업교육 포털(<https://agriedu.net/>) 온라인 신청 또는 교육 운영기관 담당자 이메일 (운영기관 선발 후 모집공고에 기재) 접수

\* 홈페이지 : 농업교육포털, 스마트팜코리아, 귀농귀촌종합센터 등

### 2. 지원 대상자 선정





## 한국농업기술진흥원(보조사업자)

- 농진원은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모집공고를 하며, 신청자의 지원 자격 검토 등 심사를 거쳐 신청 접수 순으로 선정
- 농진원은 선정 결과를 교육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교육비 납부 등 관련 내용 안내
- 농진원은 사업신청서 검토 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 1)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 2)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3)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 4)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규정」 제35조제7항)
    - 5) 기타 사업시행지침에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 경우
- 농진원은 사업수행업체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제안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 등을 위한 농진원 내부 위원회) 상정
  - 신청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 안정성, 중복편중 지원여부, 지원 제외 대상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농진원은 제안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수행업체를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평가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농진원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는 농진원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수립 후 사업을 추진

## I 사업 개요

## □ 목 적

- 현장실습교육을 통한 농고·농대생, 후계농 등 청년농업인과 농업인의 선진 영농 기술 습득 및 영농 취·창업 역량강화와 소득증대

## □ 사업내용

- 선도농업인의 품목 전문 기술과 핵심 노하우를 전달하는 현장실습교육 운영
  - 영농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품목·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실습 중심의 맞춤형 현장실습교육 운영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
  - 현장실습교육장 총 120개소(학교·기관 10, 농업인 110)
- 자격요건 : 농업인 실습교육장, 학교·기관 실습교육장
  - \* (농업인 실습교육장) 품목재배기술의 노하우 전수를 위한 강의역량과 교육장을 갖춘 농가 단위의 실습장
  - \* (학교·기관 실습장교육장) 농업계 대학교, 농업 분야 교육기관 등 교육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상시 교육운영이 가능한 실습장

## □ 지원 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현장실습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직접교육비) 강사비, 강사여비, 숙박비, 실습재료비, 식비, 다과비 등
  - (간접교육비) 교육기관운영경비(일반관리비), 실습보조강사비, 임차비, 교재비, 원고료, 보험료
- '24년 예산 : 2,626백만원

## □ 사업 신청

- 현장실습교육장별 '교육과정 인증심사'(4년 주기, '21.11.)를 통해 인증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연간 교육 사업 수요 조사 및 교육 배정

## □ 대상자 선정 기준

- (현장실습교육장) 추가지정 공고를 통해 신규 실습장 지정
  - '24년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자(농업인)
  - 현장실습교육(WPL) 사업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고, 이론·실습교육 인프라를 구비 또는 활용가능한 자(농업인, 학교·기관)
  - 농업인, 농고·농대생 등 후발농업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기술·경영 노하우의 전수 의지와 실습교육 역량을 갖춘 자(농업인, 학교·기관)
- (교육대상) 실습장별 교육생 모집
  - 농업인, 청년농업인, 농고·농대생, 농고교사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사무관 김성호 주무관 유아름	044-201-1535 044-201-1536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전문인재실	실 장 송민영 대 리 이명호	044-861-8820 044-861-8826

### 1. 사업대상자

- (교육운영) 현장실습교육장 총 120개소(학교·기관 10, 농업인 110)
  - \*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학교·기관실습장」, 「농업인실습장」에 한함
- (교육대상) ① 농업인(청년농업인 포함), ② 예비농업인(농고·농대 등), ③ 농고교사
  - \* 청년농업인: 만18세 이상~40세 미만의 농산업 창업희망자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내인 자
  - \* 농업인: 신규 지정 실습장 및 초기 실습장의 현장교수·실무자 대상 농업인 과정 운영 가능
  - \* 비(非) 농업계 학교의 학생의 경우 개별적으로 교육신청·참여 가능
  - \* 농고교사의 경우 직무연수과정 및 농고 과정 인솔교사 수료기준 충족 시 수료 가능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

### 3. 지원내용 및 사용용도

- 현장실습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직접교육비) 강사비, 강사여비, 숙박비, 실습재료비, 식비, 다과비
  - (간접교육비) 교육기관운영경비, 실습보조강사비, 임차비, 교재비, 원고료, 보험료

### 4. 지원조건 : 국고 70~100%

- (예비농업인, 취약계층, 농고교사) 국고 100% / (청년농업인) 국고 80%, 자부담 20% / (농업인) 국고 70%, 자부담 30%

취약계층	제출 증빙	비 고
①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립준비청년 포함)	해당 증명서	교육생 개인별 국고 중복지원 불가(택1)
② 장애인(등급 무관)	해당 증명서	
③ 독립유공자(자손)	국가보훈처 또는	
④ 국가유공자(자녀)	주민센터 발급 증빙	
* 취약계층 : ①~④ 해당 시 교육생 자기부담금 경감 * 자립준비청년: 부모가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만18세 이후 연령 도래로 보호 종료되는 청년(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38조) * 청년농업인 : 만18세 이상~40세 미만 청년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내인 자 (청년농업인은 해당 증명서 또는 신분증 필수 제출 / 취약계층 지원을 받을 경우, 실습장은 [서식9]내 과정별 자부담 경감 대상자 명단 필수 제출)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서 승인한 실행계획서의 국고 지원액 범위 내에서 실습교육비 지원

\* 예산 변경 시 농정원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교육 운영(변경사항 미승인 시 국고 불인정)

## 6. 추진절차

### 〈 사업추진체계 〉

담당기관	담당기능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운영계획 수립, 실습교육 예산 관리</li> <li>• 사업 점검 및 사업비 결산 총괄</li> <li>• 현장실습교육장(WPL) 지정</li> </ul>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운영계획 및 지침 수립, 실습장별 실행계획 검토 및 승인</li> <li>• (농업교육포털) 실습장별 교육과정 운영·관리</li> <li>• (e나라도움) 보조금 교부 및 실습장별 교육과정 정산</li> <li>• 현장점검, 교육 운영·성과평가, 교육운영 컨설팅 지원</li> <li>• 현장실습교육장(WPL) 지정 심사</li> </ul>
현장실습교육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사업비 집행, 결과·정산 보고</li> <li>• (농업교육포털) 교육생 모집, 선발, 관리(교육 운영, 출결관리 등)</li> <li>• (e나라도움)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육비 집행, 증빙서류 등록</li> </ul>

### 〈 사업추진절차 〉

- '24년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현장실습교육) 추진 계획 수립(농식품부, '24.1월)
- '24년 현장실습교육 단계별 운영(농정원·실습장, '22. 11~'24. 11월)

4년 주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교육 프로그램 인증심사 (4년 주기)	연간 교육사업량 수요조사 및 배정	실행계획 제출 및 검토·승인	보조금 신청 및 교부	교육운영	결과보고 및 정산	교육운영 평가, 성과평가
전년 10월	11~12월	12월~	당해 1~10월	1~10월	1~10월	11월

\* 교육변경 및 재배정은 연간 1회 7~8월에 진행

- '24년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현장실습교육) 사업비 정산 및 운영 결과보고 (농정원, '24. 12월)

## 7. 현장실습교육장 운영 관리

- (추가지정) 분야·품목별 실습장 지정 현황 및 정책·교육·현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신규 현장실습교육장 추가 지정 계획 수립·추진(2년에 1회)
  - 추가지정 지정심사 신청 시 범죄사실 확인서 제출 필수
- (지정취소) 현장실습교육장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정비 추진(매년)
  - 현장실습교육장 정비기준

정비대상(지정취소)	주요내용	비고
자발적인 지정취소 실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교수의 WPL 교육운영이 어려워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 하는 경우</li> <li>• 현장교수의 고령화로 인한 교육포기 및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li> </ul>	지정 취소
지정요건 상실 실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교수 사망 등 자격상실·부대시설 소실 등 지정요건이 상실된 경우</li> <li>• 교육과정 인증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받지 않은 실습장(4년주기)</li> <li>• 종합평가(4년주기) 시 교육평가(D등급 이하 실습장)</li> <li>• 안전·보건관리 불량 실습장</li> </ul>	
보조금 부정수급, 부정행위, 사고 등 민·형사상 및 도덕적 문제발생 실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법 위반, 교육 중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 발생</li> <li>• 폭행, 성범죄, 음주운전 등 민·형사상 및 도덕적 문제발생으로 인해 교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 불시 현장점검시 2회 이상 부정행위 적발시 지정취소 및 보조금 환수</li> </ul>	
2년간 교육 미운영 실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PL 지정 후 해당사업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li> <li>• WPL 지정연도 다음해부터 2년간의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li> </ul>	소명기회 부여
2년간 연간등급 D등급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운영 성과평가 2년간 연속 D등급일 경우</li> </ul>	
교육만족도 3.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생의 교육만족도 종합점수가 3.0 미만의 경우</li> <li>• 당해연도 교육만족도 3.0 미만인 경우</li> </ul>	
불만신고 3회 이상 실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연도 WPL 교육을 수강한 교육생의 불만신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li> </ul>	

\* 지정 취소된 실습장은 취소된 다음해부터 **5년간 재지정 신청 불가**

\* 정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농정원에 통보해야 하며 농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 지정취소 기간 내 지정 취소함

\* 최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 취소 현장실습교육장에 대한 심의 후 지정 취소 확정

- (현장점검) 승인 받은 실행계획서에 기재된 교육기간 중 불시방문

\* 점검 전 사전 예고(방문일자 및 시간 조율 등)를 하지 않고 불시점검

1. 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현장실습교육장별 교육과정 인증심사(4년 주기, '21. 9~10월)
  - 교육과정별 신청서에 대하여 교육·품목 전문가 심사 추진 및 교육과정 인증
    - \* 교육대상 및 시간에 따른 교육기획·설계·실행 등 심사
    - \* '21년 현장실습교육 개편에 따른 교육과정 인증심사('21.9.~11.) 후 승인받지 않은 교육과정은 운영 불가

현장실습교육장

- 현장실습교육장별 교육과정 인증심사 신청서 제출

〈교육과정 인증심사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향후 4년간 운영할 교육과정에 대하여 작성
- 교육 대상자 특징 및 교육요구 등이 반영된 교육과정 설계
  - \* (교육대상) 농고생, 농대생, 농업인(일반), 농업인(심화), 창농인큐베이팅대상자
  - \* 신규(초기) 실습장의 실습교수 및 실무담당자 대상 교육 과정 개설·운영 가능
- 과정별 교육시간은 15시간, 30시간, 45시간, 100시간, 200시간(창농인큐베이팅)으로 구성
  - \* 실습교육 비중 60% 이상 필수, 내부강사 운영 비율 80% 이상 필수
  - \* 교육시기는 품목별 작기(파종, 정식 등)를 고려하여 세부적인 교육시기 기재
- 신규농업인 대상 창농인큐베이팅\* 교육 과정 운영(200시간, 3명 이상)
  - \* 실습장 일부를 독립 경영공간으로 제공, 현장실습교수와 생산(파종→수확), 판매(유통·마케팅) 등 작기 전체, 농업경영 전반에 대한 도제식 실습 실시
  - \* 교육과정 인증심사 신청서 제출 시 제공하는 독립경영공간의 형태·면적 등 세부사항 제시
  - \* 실습장, 교육생 간 협약서 및 교육일지 작성, 수시점검(농정원) 실시

## 2. 사업 공고 및 사업 신청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안내
  - '24년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사업 추진계획(현장실습교육)을 수립하여 농정원에 안내('24. 1월)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24년 연간교육사업량 수요조사 및 배정('22. 11~12월), '24년 농업·농촌교육훈련 지원 사업 세부계획(현장실습교육)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24. 1월)
  - 창농인큐베이팅 교육 과정은 별도 선정기준을 통해 심사 후 실습장 선정
  - 선정기준

항목	내용	유형
창농 실행여부의 정도	• 창농인큐베이팅 교육생의 창농 여부	정량
독립경영공간 지원의 우수성	• 교육생 1인당 제공되는 독립경영 및 생산공간 (면적)의 제공정도	정성
교육내용의 효과성	• 교육내용의 차별성 및 효과성 평가	정성
교육 후 정착 지원의 적절성	• 인큐베이팅 교육 후 정착 지원 방법	정성

\* 전년도 교육운영 실습장은 선정 제외

### 현장실습교육장

- '24년 연간교육사업량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농정원에 제출('23. 12월)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식 량

---

## 3-1. 공동경영체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품질 국산 밀 생산·유통체계 구축

## □ 사업내용

-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농가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교육·컨설팅 비용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기간 1년, 경영체당 7천만원 이내 지원
- '24년 예산 : 2,5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하거나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서기관 곽기형 주무관 류나라	044-201-1835 044-201-1836

##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업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1항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지원자격 및 요건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이하 “생산단지”라 함) 인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생산단지 인정기준 》

- 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하여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영체
  - 다만,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50ha 이상이거나, 2품종 이상 납품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품종 이상 재배 인정(이 경우에도 민간 계약이 완료된 이후 단일품종 재배 시 대상인정)
  - \* 농지 기준 : 직전연도 및 사업 신청연도 내 식량작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논과 밭. 다만, 과수원, 목장 등은 제외
  - ※ 경영체의 집단화된 농지가 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광역지자체장의 결정(사업관리)에 따라 광역지자체 범위까지 생산단지로 인정(단, 경영체 농지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분산되어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 주소가 있는 1개의 광역자치단체 면적만 인정)
  - \* 단일품종 : 금강, 새금강, 백강, 황금알
  - ※ 단, 밀 생산실적이 없는 신규 경영체는 기존 재배 품목을 대체하기 위한 밀 종자 확보하거나 향후 재배이행 계획(24년 가을파종)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배품종 인정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별표6)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조합원 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금을 확보한 통장사본 제출)

\* 설립 후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 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나. 지원제한 기준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시·군) 및 사업자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할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법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제한(다만,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도 인정)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 품종순도 검사(정부비축 검사) 결과 2년 이상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신청 및 지원 제한

##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 ①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매뉴얼(「붙임2」)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설정·운영 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이 개발한 교육·컨설팅 표준 매뉴얼을 전수(傳受) 교육 및 인증받은 컨설팅업체(컨설팅트)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② 교육비와 컨설팅비는 개별 사용이 불가하며, 생산단지 단위로 통합·운용되어야 함(전문 컨설팅 인증업체를 통해 일괄 추진)
- ③ 본 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타 보조금 또는 지방비 부담금이 재원인 교육·컨설팅 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교육비) 고품질 밀 생산을 위한 인식전환(품종순도 관리, 토양 맞춤형 시비 실시, 등숙기 준수 후 수확, 수확 후 저장 품질관리,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 계약재배, 작부체계 전환, 발작물 연계 등 생산 및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및 친환경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연차별 맞춤형 교육 등
- (컨설팅비) 순도·토양·단백질 분석, 생산단지 표시판(대표농가, 대표필지) 설치, 보급종 종자 파종 입회 및 생육단계 포장검사 등 관리 비용, 생산단지 조직진단,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 경영개선(운영 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농가소득 증대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생산비 절감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수집, 생산단지 데이터 관리 인건비 등

####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한도 : 개소당 70백만원 이내
  - 생산단지 참여 농가 수 및 재배 규모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기간 : 12개월 이내
  - '23/'24년 사업대상자('23. 6월 선정) : ~ '24년 6월까지
  - '24/'25년 사업대상자('24. 5월 선정) : '24. 7월 ~ '25. 6월
  - \* '23/'24년 사업대상자부터 2년 사업으로 개편(1년차 ; '23.7~12월, 2년차 ; '24.1~6월)하고, '23년 6월에 선정하는 사업대상자(경영체)부터 적용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 사업의무량

#### 《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사업 의무량 》

- ※ 재배관리, 순도분석,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모든 경영체 공통으로 추진하되, 연차별로 교육·컨설팅의 횟수, 내용 등 사업의무량 차등 추진
-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매뉴얼(「붙임2」)' 참조
  - ▶ (재배관리) 보급종 종자 파종 입회, 생육단계 포장검사 등 관리
  - ▶ (데이터베이스관리) 밀 재배 농가별 또는 필지별로 생산단지 전체적인 데이터를 축적·분석하여 생산성 제고 및 품질 균일화를 위한 일관된 재배관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 관리

- \* 생산단지 일반현황, 종자(품종, 순도 등), 파종(시기, 파종량, 파종방법 등), 수확(시기, 수확량 등), 품질분석(단백질함량, 잔류농약, 중금속, 순도 등)
- \* 엑셀을 이용한 데이터 축적·관리(컨설팅기관을 통해 aT에 제출)

▶ **(순도관리)** 순도분석 1회\*(생육기 5월)

- \* 순도분석은 유전자분석법(PCR)을 활용하며, 정부 보급종 외 종자를 사용하는 생산단지는 파종전 (9~10월) 순도분석 1회 추가 실시(자부담)

▶ **(교육·컨설팅)**

- 참여 농가 대상 교육 : 3회 이상, 총 9시간 이상(강사 1명 이상)
- 컨설팅 : 5회 이상, 컨설턴트 2명 이상 참여, 9개월 이상
  - \* 연차별 구분 교육·컨설팅(1년차: 밀 산업 여건, 조직·영농기술 진단, 단지 비전 수립, 경영체 조직화 필요성·이해, 생산·재배관리 등 공동 영농기술 교육 등, 2년차: 경영체 효율적 운영전략, 조직체계 수립, 수확 후 관리 등 품질개선, 안전성 제고 및 판로개척 등, 3년차 이상: 경영회계관리, 재무재표, 선진농가견학·실습교육을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 실습교육(선진지 견학 등) : 1회(참여농가 농가 대상 교육과 통합 실시 가능)
  - \* 교육비 내에서 실습교육을 진행하되, 국산 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편성, 국산밀 품질제고 및 민간 유통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계기 마련

※ 혁신경영체는 생산단지에 필요한 교육·컨설팅이 있을 경우 자율적 추진 가능

- 교육·컨설팅업체는 수행하는 생산단지별 운영 수준 및 품질 관리를 위해 【별지 제3호 서식】 양식에 따라 해당 지역 지자체(시·군·구)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제출(~'25.7월)

## 5.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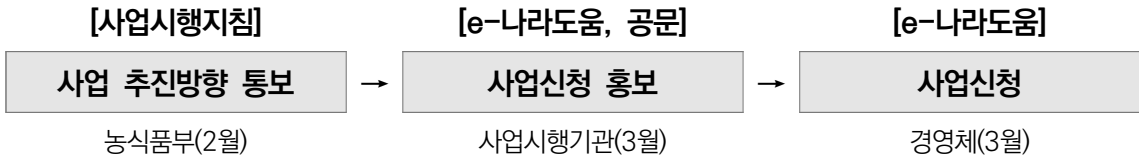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 변경 시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최소 30% 이상 편성 미 이행시 사업 선정 배제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별 지원 내용 및 사업 신청 요령, 평가 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 수립 시달

####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방법,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공고 및 경영체에 안내
  - \* 시·군은 e나라도움 상에 공모내역을 등록(세부추진계획·예산집행계획 필수입력 여부 설정을 “N” 처리, 별도 신청서 등 제출)하고, 신청인은 e나라도움으로 사업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과 별도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제출서류의 준비를 자세히 안내

#### 사업자(신청업체)

##### 가. 사업 신청

- '24/'25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육성사업 신청업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3월초)

##### 나.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3」), 평가 증빙자료
- (혁신경영체) KPI평가표(「붙임4」) 및 증빙자료

## 지자체(시·군)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제출(~3월중)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 지자체(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자의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3월말)
    -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 \* 평가기준을 고려, 지자체 자체 여건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 결정 후 제출

## 2. 사업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 선정하고, 최종사업 대상자 통보(~5월)
  -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문평가단'(주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을 통해 평가 및 심의 운영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가. 선정절차(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전문평가단 구성·운영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평가 실시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평가단에 의한 평가 실시
  - 사업 신청(경영체→시·군→시·도) → 접수 및 지자체평가(시·도) → 기본요건 검토, 서면평가 및 보고(전문평가단·aT)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농식품부)
- 선정원칙 : 전문평가단 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전문평가단 구성방법
  - 산·학·연 관련 전문가 POOL에서 3~6인으로 구성

-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식품부 보고 →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평가위원 확정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4월)
  - 평가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평가조치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 누락, 지원 제외대상·거짓 및 허위 신청,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 〈2단계 : 서면평가〉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4월)
  - 주 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평 가 자 : 외부 전문평가단
  - 평가내용 : 생산단지 기본요건 충족 여부 및 경영체 운영현황, 지자체 자체평가 결과 등
  - 평가조치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3.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통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대상자 선정(안) 결정·보고(5월)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 시·도에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총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6월)
  - \* 재정집행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별도의 사업준비 상황(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을 점검하여 미비한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 지자체(시·도)

- 사업신청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총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6월)

## 지자체(시·군)

- 사업신청 경영체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총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6월)
  - e-나라도움에 선정 결과를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국산 밀 생산단지 중심으로 주산지에서 생산된 밀을 수집·건조·저장이 가능한 전용시설 지원

## □ 사업내용

- 밀 전용 건조·저장시설(건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 □ 지원 자격 및 요건

-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사업에 선정·추진 중인 경영체
  - 저장시설(신축)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산 밀 생산면적이 200ha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민간 유통·자체 소비 물량이 300톤 이상인 경영체에 한함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건조·저장시설 건립에 필요한 건축·토목 및 시설 등
- 지원 기준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건조·저장시설 : 사업기간 2년, 개소당 18억 이내
  - 건조시설 : 사업기간 2년, 개소당 12억 이내
- '24년 예산 : 3,650백만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 □ 대상자 선정

- 세부 사업추진 계획 및 전략, 부지선정, 자금확보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산·학·연 전문심의회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서기관 곽기형 주무관 류나라	044-201-1835 044-201-1836

##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업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1항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사업에 선정·추진 중인 경영체
  - \* '24/'25년도 교육·컨설팅지원(국산 밀 생산단지)사업에 선정된 경영체
- 지원요건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 조합원 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 출자액(법인등기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이익 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금을 확보한 통장사본 제출)
  - \* 설립 후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 사업 신청 시부터 총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지원제한 기준
  - 총 지원 횟수는 2회까지 지원(최근 10년간), 단, 사업 추진 중에는 추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최종 사업종료(정산일 기준) 다음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한
  - 사업 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사업비를 이월한 지역(시·군) 또는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귀책사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제한(다만,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은 인정)
- 사업 부지가 미확보된 경우
  - \* 부지는 반드시 당해 법인 명의이어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에 가등기하여 구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 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 \*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됨
  - \* 향후 부지에 문제(변경, 등기 오류 등)가 발생할 경우,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해당 지역(시·군)은 사업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 3. 지원기준

#### ○ 신축

- 인근에 밀 전용 건조·저장시설 용량 부족 또는 시설이 없는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거점시설로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 저장시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산 밀 생산면적이 200ha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민간 유통·자체 소비 물량이 300톤 이상인 경영체에 한함

#### ○ 시설 개보수

- 기존 시설(건조시설, 저장시설 등) 노후화 및 시설능력 증가가 필요한 경우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건축물) 건조·저장시설을 위한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건축·토목, 건축물 부속 기계·설비, 감리 등
  - 건축공사 : 입·출고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 정선시설, 자동제어시설, 집진시설,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 건조·저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관련 시설로 사무실, 화장실 등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하되, 산출근거 제시 필수
  - 토목공사 : 부지내 기초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
    - \*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 부지 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설계·감리비 :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 기계·장비별 설치 기준(신축)
  - 입·출고시설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원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설치(30톤/hr)
    - \* 설치 시설 : 원료투입구, 풍력선별기, 조선키, 호퍼스케일, 제철기, 이송기기 등
  - 건조시설 :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
    - \* 설치 규모는 20~30톤 수준, 설치 대수는 입고 물량 및 건조 기간에 따라 선정
  - 저장시설 : 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우레탄 단열재 벽체 7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 효과 이상)와 곡물냉각기(장치)가 설치되어 국산 밀을 연중 13℃ 이하로 저장할 수 있고, 저장 중 품질 유지·관리가 가능한 사일로, 저장빈 및 저온평창고 구조
  - 정선시설 : 등급별 출하가 가능하도록 비중선별기, 색채선별기 등의 선별기 설치
  - 자동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곡온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 및 알람 기능이 포함된 시설
  - 품질검사장비 :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원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로 설치

- 집진시설 : 입·출고, 건조, 저장 등 일련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싸이클론, 백필터방식으로 포집하거나 통합집진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
-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기준
  - 시설 노후화, 생산현황, 시설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설 수요와 중복투자를 억제하여 지원
  - 시설 노후화로 파손, 누수 및 불능 등으로 인하여 처리능력 및 품질 저하, 사고의 위험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시설 능력증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기계·장비별 설치 기준(신축)에 준하여 지원)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기간 : 2년
  - \* 사업 기간 및 연차별 지원 비율은 사업 계획 및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사업규모 및 지원기준 : 2~4개소 내외
  - (건조·저장시설) 개소당 총사업비 18억원 이내
  - (건조시설 또는 기존 시설 개보수) 개소당 총사업비 12억원 이내
  - \* 사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 결정
- 지원조건 : 보조(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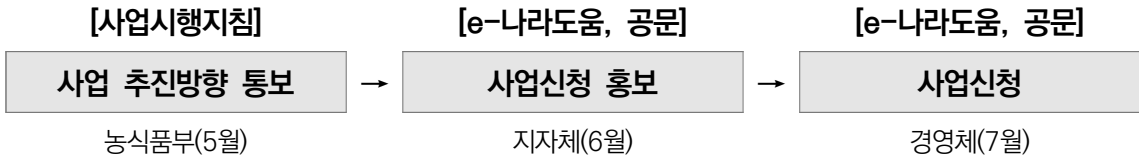
## 6. 주의사항

- 국산 밀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그 인근에서 생산·수집된 밀에 대해 건조 또는 건조·저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지원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년도부터 밀 전용시설로 전환·운영
- 사업 계획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확정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 변경 시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지방비 부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최소 30% 이상 편성해야 함. 미 이행시 사업 선정 배제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및 사업 신청 요령,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

####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공문·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 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공고 및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에 안내
  - \* 시·군은 e나라도움 상에 공모내역등록(세부추진계획·예산집행계획 필수입력 여부 설정을 “N” 처리, 별도 신청서 등 제출)하고, 신청인은 e나라도움으로 사업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과 별도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제출서류의 준비를 자세히 안내
- (시·군)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평가표 등 검토를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지방비 확보계획서 포함) 등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 1개의 시·군당 2개 이상의 사업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한함
- (시·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자의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시·군 우선순위, 평가표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첨부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 \* 1개의 시·도당 2개 이상의 사업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한함
  - ※ 지역 형평성을 감안하여 도별 2개소 이내, 광역시(제주, 세종 포함) 1개소 이내로 신청 제한

## 사업자(신청업체)

-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 신청업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세부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 사업 신청 시 제출 필수 서류

구분	제출서류	
① 사업공통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1)	(4) 법인등기부등본
	(5) 결산재무제표(최근2년)	(6) 납세증명서
	(7) 지방세 납세증명서	(8)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해당사업 참여 의제)
	(9)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기본규정 별지 제4호 서식)	(10) 경영체 내부 규약·지침서
	(11) 생산단지, 건조·저장시설 향후 확대 계획서(현황, 생산량 등)	(12) 건조·저장시설 인근 밀 생산단지 농가의 밀 수집·운용 계획서
	(13) 경영체 소유 부동산 및 농기계 등 목록과 사진	(14) 시설 운영현황 및 시설 증량 필요 증빙서류(신축 필요 입증 서류)
	(15)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진단서 등 증빙서류(개보수 필요 입증 서류)	(16) 신축, 개보수 설비에 대한 예산 상세내역서 등
	(17)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및 비교 견적서(최소 3개소 이상)	(18)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부착, 운영일지 등)
	(19) 자부담금 확보 계획서(세부 계획서 내 작성, 증빙서류 포함)	(20) 자부담금 확보증빙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농협제외)
	(21) 인허가 사전검토서	(22) 참여농가 명부, 공동영농 농지 현황
	(23) 조합원(농업인 주주)명부 (농협 제외)	(24)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관련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가설건축물 신고서 등, 농협제외)
	(25) 건축물 관련 -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 심사청구제도 활용), 기존건축물대장(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간이 설계도(최소 3종), 조감도 * 건물형태나 배치구조가 다른 3종으로, 각각의 정면, 평면, 측면 및 설비배치도 제출)	
② 지자체 준비서류	(1) 지자체 지방비 확보 계획서(세부 계획서 내 작성, 증빙서류 포함)	(2) 전문가 심의 결과서 * 자체평가 기준, 우선순위 결과표(순위·점수 등) 포함
	(3)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 서식)	(4)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서

## 2. 사업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평가단\* 구성·운영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 확정된 이후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를 최종 확정
  -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문평가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평가 및 심의 운영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가. 선정절차(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전문평가단 구성·운영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평가 실시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현장·발표평가 실시
  - 사업신청(경영체→시·군) → 접수 및 지자체 평가(시·군→시·도→농식품부, ) → 기본요건 검토, 서면·현장평가(농식품부·aT·전문평가단) → 사업비 조정 및 최종사업자 통보(농식품부)
- 선정원칙 : 국산 밀 생산단지과 그 인근에서 생산·수집된 밀의 품질 상태에 따라 구분 건조·저장하여 품질 균일성 확보 등이 우수한 경영체 우선 선정 지원
  - 기본요건 검토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면평가(30%) 결과와 현장·발표평가(70%)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평가위원(전문평가단) 구성방법
  - 외부위원 : 밀 건조·저장시설 관련 전문가 POOL에서 4~6인으로 구성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평가위원을 확정·섭외
  - 내부위원 및 간사 :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담당자 등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평가자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평가대상 :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 신청 경영체

- 평가내용 : 지원 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 여부, 구비서류 누락 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 여부, 중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평가조치 : 지원 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 누락, 지원 제외대상·거짓 및 허위 신청,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 〈2단계 : 서면평가〉

###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평 가 자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위촉한 전문평가단(4~6인)
  - 평가대상 :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 신청 경영체 중 1단계(기본요건 검토)를 통과한 경영체
  - 평가내용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운영현황(공동영농 현황 및 계획, 주요 시설 운영현황 및 계획 등), 품질향상 및 경영안정 노력, 지원여건, 지자체 자체평가 등(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검증·평가, 시·군 평가의견 재확인)
  - 평가조치 :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각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수치로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 평가위원이 4명 이하일 경우에는 단순 산술평균으로 우선순위 선정

## 〈3단계 : 현장·발표평가〉

### ○ 서면 평가 결과 평가위원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발표 평가 진행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평가자 : 전문평가단
- 평가대상 : 서면평가 결과, 평가위원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자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참여 농가,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
- 평가내용 : 건조·저장시설의 적정성(타품목 혼입 방지 방안 및 보관방법 등),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사업계획의 정책부합도 및 충실도,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신청 서류와 실제 운영현황 등의 부합성, 자부담 및 지방비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등

- 평가진행 : 밀 전용 건조·저장시설 부지 현장 방문 후 사업계획 발표(경영체), 질의 및 응답, 사업대상 부지 실사 등
- 평가조치 :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각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수치로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 평가위원이 4명 이하일 경우에는 단순 산술평균으로 우선순위 선정

## 나.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조정

### 1.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서면(30%) 및 현장·발표평가(70%)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 사업비 심의·조정

- 심의대상 :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 예비대상자
- 사업 규모와 시설 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사업비 심의 및 조정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
  - 평가내용 : 간이 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조치내용 : 심의위원 간 협의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 \* 사업비 조정 규모가 큰 경우, 경영체 대표 및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 참석하여 간이 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추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 사업비 심의 완료 후 전문심의단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간이설계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지자체를 통해 농식품부로 제출

### 3. 최종 사업대상자 및 보조금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

-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대상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총사업비 및 보조금 통보
- \* 재정집행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별도의 사업 준비상황 점검 실시
- \* 사전준비상황(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 감사,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 지자체(시·도)

- 사업 신청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총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

### 지자체(시·군)

- 사업 신청 경영체에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총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
  - e나라도움에 선정 결과를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하여 고품질 국산 밀 생산·유통체계 구축

## □ 사업내용

-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작업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파종기, 수확기, 건조기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추진 중인 경영체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세조파 파종기, 콤바인(범용, 확산기·제초기 부착형 포함), 건조기 등 시설·장비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기간 1년, 경영체당 5억원 이내 지원, 총 3회까지 지원(10년 내)
- '24년 예산 : 3,0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용자, 자부담 10)

##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 □ 대상자 선정

- 경영체 역량, 지원의 적정성, 사업추진 계획 및 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산·학·연 전문심의회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서기관 광기형 주무관 류나라	044-201-1835 044-201-1836

##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업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사업에 선정·추진 중인 경영체
  - \* '24/'25년도 교육·컨설팅지원(국산 밀 생산단지)사업에 선정된 경영체
- 지원요건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 조합원 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금을 확보한 통장사본 제출)
  - \* 설립 후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나. 지원제한 기준

- 총 지원횟수는 3회까지 지원(최근 10년간)단, 사업 추진 중에는 추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최종 사업종료(정산일 기준) 다음연도부터 1년간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사업비를 이월한 지역(시·군) 또는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귀책사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제한(다만,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은 인정)
- 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품질 밀 생산·수확·방제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설치
  - 콤바인(범용, 확산기·제초기 부착형 포함), (세조파)파종기, 건조기 및 방제 관련 장비

###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한도 : 개소당 5억원 이내(다만, 사업자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기간 : 1년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 사업규모 : 매년 10개소 내외
  -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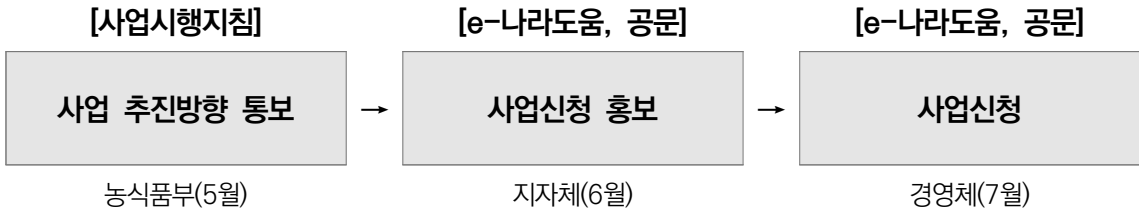
## 5. 주의사항

- 사업계획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확정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 변경 시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지방비 부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최소 30% 이상 편성해야 함. 미 이행시 사업 선정 배제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별 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 수립하여 시달

#### 지자체

-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공문·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 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에 안내
  - \* 시·군은 e나라도움 상에 공모내역등록(세부추진계획·예산집행계획 필수입력 여부 설정을 “N” 처리, 별도 신청서 등 제출)하고, 신청인은 e나라도움으로 사업 신청
- (시·군)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평가표 등 검토를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지방비 확보계획서 포함) 등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 1개의 시·군당 1개 이상의 사업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한함
- (시·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자의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시·군 우선순위, 평가표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첨부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 \* 1개의 시·도당 3개 이상의 사업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한함
  - ※ 지역 형평성을 감안하여 전남·전북은 7개소 이내, 나머지 시·도는 3개소 이내로 신청 제한

## 사업자(신청업체)

### 가. 사업 신청

-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장비지원사업 신청업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 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 나.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 신청한 시설·장비 비교 견적서(3부)
- 평가증빙자료(붙임1)

### 다. 신청 제한 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 중 지원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 2. 사업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평가단\* 구성·운영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 확정된 이후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를 최종 확정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문평가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평가 및 심의 운영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가. 선정절차(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평가단 구성·운영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평가 실시
  - 사업신청(경영체→시·군) → 접수 및 지자체 평가(시·군→시·도→농식품부) → 기본요건 검토, 서면·현장평가(농식품부·aT·전문평가단) → 사업비 조정 및 최종사업자 통보(농식품부)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 평가기관과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발표(현장)평가 실시

- 선정원칙 : 기본요건 검토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면평가(30%) 결과와 발표평가(70%)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평가위원 구성방법
  - 산·학·연 관련 전문가 POOL에서 4~6인으로 구성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식품부 보고 →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평가위원 확정·섭외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평가대상 : 국산 밀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경영체
  - 평가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여부 등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에 의한 요건 검토
  - 평가 조치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 누락, 지원 제외대상·거짓 및 허위 신청,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 〈2단계 : 서면평가〉

- 기본요건 검토 통과한 사업자 대상으로 서면평가 실시
    - 주 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
    - 평가내용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운영현황(생산단지 규모화, 공동영농 현황 및 계획, 주요 시설 운영현황 및 계획 등), 품질향상 및 경영안정 노력, 지원여건, 지자체 자체평가 등(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검증·평가, 시·군 평가의견 재확인)
    - 평가조치 :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각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수치로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평균 60점 이상 발표평가 대상)
- \* 평가위원이 4명 이하일 경우에는 단순 산술평균으로 우선순위 선정

### 〈3단계 : 발표평가〉

- 서면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평가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참여 농가),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역량평가, 지원의 적정성(실제 경지면적 및 농가수 대비 부족한 시설·장비 등),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사업계획의 정책부합도 및 충실도 등
- 평가진행 : 국산 밀 생산단지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등
- 조치내용
  - ▶ 서면평가(30%)와 발표평가(70%)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3.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통보

#### 가.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 서면(30%) 및 발표평가(70%)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나. 사업비 심의·조정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
  - 평가내용 :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조치내용 : 심의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후 통보
    - \* 사업비 조정 규모가 큰 경우, 경영체 대표 및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 참석하여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추진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 사업비 심의 완료 후 전문심사단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지자체를 통해 농식품부로 제출

#### 다.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신청 시·도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총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
  - \* 재정집행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별도의 사업준비 상황(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을 점검하여 미비한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 지자체(시·도)

- 사업신청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총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

### 지자체(시·군)

- 사업신청 경영체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
  -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를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원예작물, 유통

---

### 4-1. 시설·기반(시설, 장비)



## I 사업 개요

## □ 목 적

- 노후·영세한 재배시설을 이전·집적화하거나 신규로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시설원에 핵심거점으로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기여

## □ 사업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노후온실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또는 신규로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부지정지,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시설 조성 또는 개보수
- 지원 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
- '24년 예산(안) : 8,479백만원(국비 5,935, 지방비 2,544)

## □ 사업 신청

- 신청기관 : 사업예정지 관할 시·도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6월까지

##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평가를 통하여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에경영과	서기관 김승동 주무관 송병각	044-201-2256 044-201-2259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팜사업부	부 장 박미란 차 장 최 영	061-338-5721 061-338-5724

## 1. 사업대상자

- 노후온실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또는 신규로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
    - 지자체는 대상 부지를 확보하고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구성
- \*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참여 경영체(사업예정지 내에서 온실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예정인 생산 주체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한정) 등으로 구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노후온실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또는 신규로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

### 지원요건

#### 〈 기본 방향 〉

- 단지의 기반 조성·개보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생산 및 배후·기타시설은 자체 조성 또는 지원사업과 연계
  - (기반시설) 규모화·집적화된 스마트원예단지 운영에 필요한 도로, 용배수·전기·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또는 개보수
  - (생산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원예시설을 단지 내에 집적 조성하여 규모화 추진
    - 기 운영 중인 온실은 신·개축, 노후시설 교체, ICT 융복합 기술 연계를 통해 자동화·스마트화
    - 농업경쟁력 제고를 선도하는 핵심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ICT 융복합 스마트시설 도입
  - \* 시설 내·외부 온습도, CO<sub>2</sub>, 양액 EC·pH 등의 센서장비, 생육 측정을 위한 영상장비, 환풍기, 촉창 등 제어장비 설치
  - (배후시설) 시설작물의 유통·출하 등에 필요한 시설 전반을 확보하여 경영효율화 촉진
    - 단지 입주 경영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선별·포장·출하 및 저장까지 가능한 유통시스템 구축
    - 재배품목에 따라 판로 다각화, 수출 확대 등을 위해 가공시설도 함께 입주
    - \* 단지 인근에 활용 가능한 APC 등 부대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미설치 가능
  - (기타시설) 편의시설, 판매, 체험·홍보시설, 연구·교육시설 등 생산·유통 및 단지 운영과의 연계시설도 필요 시 확보

## 가. 공통요건

- (총괄계획) 단지 구성(시설형태, 구성원 등) 및 운영(재배품목, 유통·수출계획 등)에 대한 총괄계획을 수립·제출
  - 시·군·구는 생산·유통·수급·수출 정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단지 조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단지의 비전 등을 제시
  - 참여 경영체는 시설운영 및 작물 생산·유통·수출계획을 제시
- (시설설치 계획) 기반조성 이후 생산·배후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 투자계획 및 자금 확보방안 등 제출
  - 자부담, 민간투자 유치, 모태펀드 활용 등 자체 자금조달 계획 및 중앙·지방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 계획 수립
- (추진단 구성) 지자체는 참여경영체 등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모 참여
- (재생에너지 이용계획) 발전소 온배수, 산업폐열 등 미활용 에너지, 지열 등 재생에너지 이용계획 제출
  - 농식품 팜맵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역 내 미활용에너지 이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단지 입지선정 시 이용가능 지역을 최우선 고려

\* 농식품 팜맵서비스(<https://agis.epis.or.kr>) - “전국온실 에너지실태” 메뉴 이용

## 나. 신규 단지조성

- (시설규모) 총부지 5ha, 생산시설은 총 부지의 70% 이상(최소 4ha 이상), 그 외의 부지에 APC 등 부대시설 설치
  - 집적화 규모를 최대화하기 위해 생산시설 면적 하한을 적용하고 물류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시설을 동시 조성

\* 단지 인근에 활용 가능한 APC 등 부대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미설치 가능

\*\* 대상지 여건, 설치 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생산시설 면적 하한 조정 가능
- (참여 경영체) 스마트원예단지에 입주하여 온실을 경영하거나 예정인 생산 주체(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한정)를 확보하여 공모 참여
  - 입주 농업인·농업법인은 가급적 생산 농산물의 국내공급 및 수출시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실시
  - 대규모 단지 운영이 필요한 점을 감안, 참여 입주 농업인·농업법인에 일정수준 이상의 영농경험, 영농교육 수준 등 요구



### 다. 기존 온실단지 개보수

- (사업면적) 5ha이상, 참여경영체의 70% 이상(면적기준)이 연접하여 단지화
- (부지 확보) 사업예정지 내 공용 시설물(예: 도로, 용수시설, 배수로 등) 부지는 지자체에서 확보(소유 또는 장기임대\*) 완료 또는 예정
  - \*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예: 한국농어촌공사)으로부터 임대한 토지이거나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기간 해당 필지를 계속해서 임대 가능한 경우 의미
- (생산시설 개보수) 기 운영 중인 노후 온실의 개보수 계획 수립
  - 기반시설 조성계획과 함께 단지 내 운영 중인 온실의 현대화·자동화 또는 스마트화 계획을 수립
- (참여경영체) 사업예정지 내에서 온실을 경영하는 생산 주체(농업인·농업법인 등)를 확보하여 공모 참여
  - 온실 개보수 후의 재배품목과 품목별 생산·유통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 사업예정지 내 참여경영체는 가급적 단일경영체로 하거나,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실시

###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용수, 전기, 통신주, 도로 및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 또는 개보수
  - 기존단지 개보수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절·성토 등 부지조성 지원
    - \* 다수 경영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예: 용배수로) 공사 시 소요되는 부지조성비(절·성토)는 총사업비에 반영 가능하나, 참여경영체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예: 온실) 공사 시 소요되는 부지조성비는 총사업비에 반영 불가능
    - \* 통신주는 스마트원예단지로부터 1km까지 지원

###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사업기간 : 3년(1년차 : 10%, 2년차 : 30%, 3년차 :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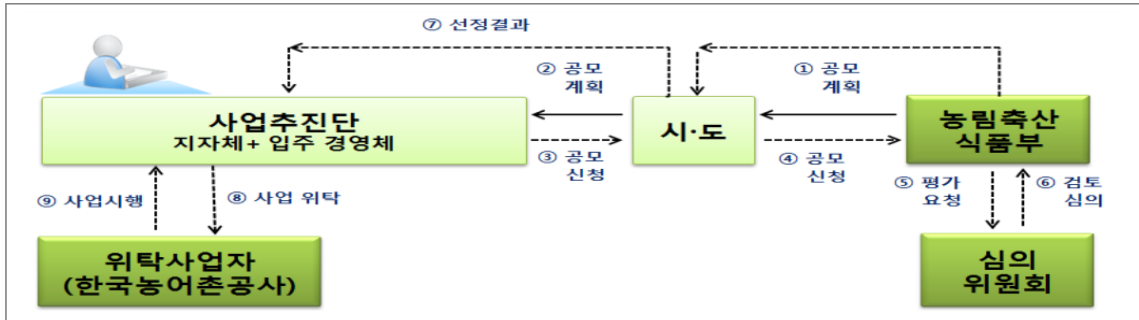
- 2025년 신규 지원대상자부터 적용

○ 기준단가 : 500백만원/ha

(단위 : 백만원, 10ha 기준)

구 분		사업비	내 용
부지 조성	부지정지	2,600	• 논을 시설건축이 가능한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성토 등
	도로	188	• 생산물 유통을 위한 간선·지선 도로
생산 필요 시설	용수	100	• 시설원에 재배 시 필요한 일정급수 이상의 용수 공급 시스템 • 경영에 필요한 생활용수
	전기	1,454	• ICT융복합 장비, 에너지공급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전기시설
	오폐수처리	200	• 시설원에 재배시 발생하는 폐양액 및 생활폐수 등 처리시설
기타부대비	설계·감리비 등	458	
<b>합 계</b>		<b>5,000</b>	

\* 본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물량,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신청금액은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전문기관 등 통해 산출하여 제시)



### 1. 사업 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3월)
  - 신청자격, 지원내용, 사업규모, 신청·접수기간, 평가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사후 관리계획 등 안내
-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 접수(전년도 7월)

#### 시·도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3월)
- 시·군, 참여 경영체 등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구성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계획서 등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함)에 제출(전년도 7월)

#### 시·군

- 시설원에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공모)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전년도 3월)
- 시·도, 참여 경영체 등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구성
- 참여 경영체 등과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공모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 후 시·도 제출(전년도 6월)
  - 종합적인 단지조성·운영·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단 참여 주체별 역할 확립
  - 한국농어촌공사(지역본부) 등의 협조를 얻어 사업비 적정성 검토 병행

원예작물  
유통  
4-1  
(시설·장기반)

## 참여 경영체

- 시·도, 시·군 등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구성
- 시·군 등과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를 작성(전년도 6월)
  - 단지 내 생산·배후시설 구축·운영 및 농산물 생산·유통·수출계획 수립
  - 생산물 판매 시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계획 수립
  - 시설물 활용 및 사후관리, 지역 활성화 등 계획 수립

##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토(전년도 7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수립·안내(전년도 8월)
  - 평가계획 수립 후 시·도에 안내
  -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전조사 실시 및 조사보고서 작성 의뢰
-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및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9월)
  -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선정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취소·포기 시 대체사업자로 지정될 사업자

### 시·도

-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안내(전년도 8월)
-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발표자 및 참석자 보고(전년도 8월)
-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안내(전년도 9월)

### 시·군

- 입주 경영체 등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안내(전년도 8월)
-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과정에 참여(전년도 8월)
-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시·군·자치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른 1차 심사에 필요한 조치 이행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대상지 사전조사 실시 후 조사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본사·지역본부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 편성

## I 사업 개요

## □ 목 적

- ICT 융복합 기술 적용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을 지원하여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

## □ 사업내용

-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 경질판) 및 자동화 비닐온실 신·개축 비용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수출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스마트팜 온실신축 및 개축(내부 시설·장비 포함)
- 지원 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24년 예산 : 15,390백만원(국비 3,078, 지방비 4,617, 용자(이차보전) 4,617, 자부담 3,078)

## □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7월까지

##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평가를 통하여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서기관 김승동 주무관 송병각	044-201-2256 044-201-2259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팜사업부	부 장 박미란 대 리 김승태	061-338-5721 044-338-5728

## 1.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류(육묘장 제외) 재배·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총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결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요건

#### 가. 시설규모

- 규모화를 통한 물류효율성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목별 지원규모 설정
- 지원시설 규모 : 0.3ha~2.0ha
  -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자는 5ha까지 지원

#### 나. 사업부지 및 사업비

- 부지는 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등을 온실신축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동시에 사업기간 내 추진이 가능함을 입증한 경우

#### 다. 사업유형

- 위탁설계형 : 온실신축사업을 통해 설계와 시공을 모두 진행(설계·시공 모두 농어촌공사에 위탁)
- 자가설계형 : 온실신축사업을 통해 시공만을 진행(설계는 자부담으로 직접 실시, 시공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이차보전) 지원
  - \* (ICT 융복합 시설)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연계시설) 관수관비장비(양액재활용시설,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장비(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 양액재배시설은 반드시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
  -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 센서·구동기 노드 및 온실 통합 제어기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KS X 3267),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의 최신 개정판을 따라야 함
- 위탁설계형은 설계비를 총사업비에 포함, 자가설계형은 설계비 자부담으로 추진
- ICT 융복합 시설 설치·운영·관리 요령 등 컨설팅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절·성토, 부지정지, 파일공사, 지반개량 등),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 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보일러 설비는 자부담 설치, 냉난방 배관설비는 사업비 지원 가능),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선별기 등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장비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냉난방시설
- 숙소, 식당 등 온실 환경제어 및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

※ 지원제외 대상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필요 시 자부담을 추가하여 동일사업으로 추진 가능)

####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보조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용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기간 : 2년(1년차 설계, 2년차 시공)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용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 용자금(이차보전)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용자(이차보전)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 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타 시·군 주소지 거주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주의
  - \*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 5. 지원 기준 및 범위

- 기준 단가: 철골유리온실 3,000백만원/ha, 파이프비닐온실 750백만원/ha
  - \* 본 단가는 사업계획 수립 시 예시 기준으로 설계조건, 예정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 전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 시·군에 지방비 지원 가능 여부를 협의한 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
  - 온실 설계유형에 따라 위탁설계형과 자가설계형으로 구분하여 신청
- 사업 신청 전 온실 신·개축 관련 인허가 등 사업시행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참여 농업인 및 지역민 의견수렴 등을 시·군과 협의 완료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수립(전년도 8월)
  - 평가방법·기준, 평가위원회 구성 등 서면검토 및 현장·대면평가 계획 수립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 제반서류 검토를 통해 사업 참여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대면평가 대상자를 선정(전년도 8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안내(전년도 8월)
  - 평가방법·기준, 평가대상자별 현장·대면평가 일정 등 통지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개최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9월)

### 시·도,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통지(전년도 8월)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참석·대응(전년도 8월)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9월)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사전 현장점검 실시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참석·대응(전년도 8월)

## 한국농어촌공사

- 서면검토 및 현장·대면평가 시 기술자문, 평가보고서 작성 등 실시
  - 본사·지역본부 담당자 등으로 현장평가반을 편성하고, 현장평가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I 사업 개요

### □ 목적

-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 □ 사업내용

-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ICT 융복합 시설보급 및 컨설팅 지원
-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자재·설비 등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설치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자동화,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재·설비, 에너지 절감시설
- 지원 기준 : 국비 25%, 지방비 30%, 용자(이차보전) 25%, 자부담 20%(컨설팅 : 국비 100)

- '24년 예산 : 64,958백만원(국비 16,453, 지방비 19,231, 용자(이차보전) 16,453, 자부담 12,821)

□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8월까지

□ 대상자 선정

-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서기관 김승동 주무관 송병각	044-201-2256 044-201-2259
지방자치단체 (시·군)	농업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등)	-	-

## 1. 사업대상자

-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시설원예현대화)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에너지절감시설) 채소·화훼·버섯류(육묘장 포함)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관련 내용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총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 컨설팅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점검 컨설팅, 설치점검 컨설팅을 반드시 실시
- (시설원예현대화) 원예시설(채소류·화훼류)은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지원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농협·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사도매시장 등)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에너지절감시설)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서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결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가지, 오이, 고추, 난, 딸기 등
-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우선 지원

<b>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li> <li>•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li> <li>•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li> </ul>
<b>시설원예 현대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li> <li>•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li> <li>•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li> <li>•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li> </ul>
<b>에너지절감시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li> <li>•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li> </ul>

\* (공통사항) 정부지원대상 ‘생산·유통조직’에 참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원예작물  
유통  
4-1  
(시설·장기  
비반)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b>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li> <li>•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li> <li>•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li> <li>•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li> <li>•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li> <li>• 스마트팜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li> <li>•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li> </ul>
<b>시설원예 현대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li> <li>•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li> <li>•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li> <li>•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li> <li>•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li> <li>•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li> <li>* 다만, 시장군수는 비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군 전체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30% 이하로 지원</li> </ul>
<b>에너지절감시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li> <li>•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li> <li>•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li> <li>•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li> <li>*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li> <li>•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li> <li>•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li> <li>•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li> </ul>

###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sub>2</sub>,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sub>2</sub>, 강우 및 양액 재배시설 등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 장비, 에너지절감 자재 지원 대상)와 제어장비 동시 설치 지원 가능(동시 설치 시에 한해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신청 가능)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 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 센서·구동기 노드 및 온실 통합 제어기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KS X 3267),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의 최신 개정판을 따라야 함
  -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보조 지원
    -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물품납품 또는 공사시공 업체는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시설원예현대화) 채소·화훼류 온실·공정육묘장 시설현대화, 지자체 공동구매,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고품질 주년생산 및 난류 온실 개선 시설·설비

<b>채소류·화훼류 온실·공정육묘장 시설현대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고인상 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li> </ul> </li> <li>•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li> <li>•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차열시설, 보광시설, 온습도 조절기</li> <li>• 기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빗물저장시설, 방충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농산물 재배용 온실에 한해 지원(단,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 시에만 가능)</li> </ul> </li> </ul>
<b>지자체 공동구매 품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조(KS 규격제품), 장기성 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조)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장기성필름)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또는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시설에 한해 지원</li> <li>*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자재구입 및 시공시 유의사항에 따른 공동구매절차 준수)</li> <li>* 단, 사업신청 시 공동구매 추진계획을, 설치 후에는 추진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해야하며, 장기성 필름 지원 농가는 폐비닐처리 증빙자료도 제출</li> </ul> </li> </ul>
<b>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li> <li>• 난류(호접란·심비디움) 미국수출 검역절차에 따른 온실개선 시설·설비 : 이중출입문(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닫히는 출입문), 재배벤치(바닥으로부터 46cm 이상 높이, 벤치다리 동판 설치 등)</li> </ul>

원예작물  
유통

4-1  
(시설·장기  
장기  
비반)

### 시설원에 현대화 지원제외 대상시설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단동형·이동형 비규격 온실 현대화 지원을 원칙적 제외하나, 단동형·이동형 온실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예냉·저장·선별시설 등(용자지원 전환)

-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 총사업비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되는 다겹보온커튼 또는 보온덮개는 중요재산에서는 제외되나, 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에만 지원 가능

## 4. 지원형태 및 방법

- 국고재원

- 보조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용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형태: 국비(자치단체자본보조) 25%, 지방비 30, 용자(이차보전) 25, 자부담 2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용자(이차보전)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용자(이차보전) 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컨설팅 : 국비(민간경상보조) 100%

- 용자(이차보전)의 경우 자금 사정에 따라 지원 비율(총사업비의 25%) 대비 적게 편성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자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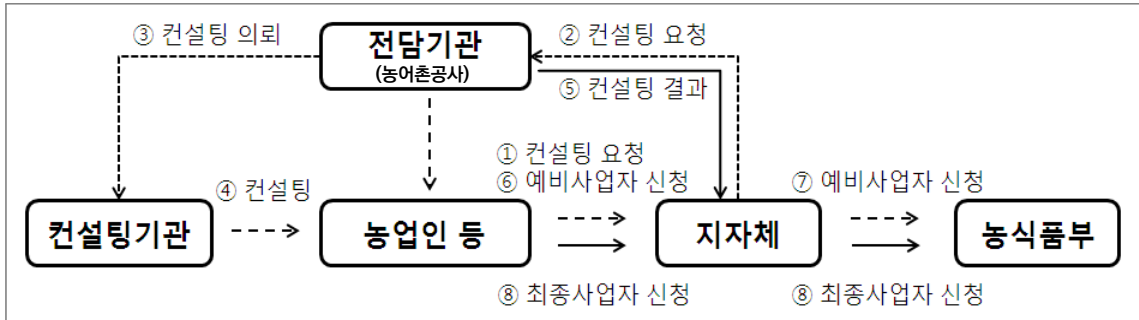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자치구를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자치구에 신청하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타 시·군·자치구 주소지 거주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주의
- 컨설팅 비용(2시간 1회, 50만원)

## 5.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및 기준단가

-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200백만원 한도(총 사업비 1백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
  - \* ICT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 지원대상, 에너지절감자재 지원대상)와 제어장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하되, 원가계산서는 필요시 활용
-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집행 시 실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하고 원가계산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
- (에너지절감시설) 본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하고, 원가계산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

설비형식	기준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li> <li>*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보온율 기준 미적용)</li> <li>•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li> </ul>
	예안식·외부권취식 11천원/㎡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	•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보온덮개	2.5천원/㎡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 \* 다겹보온커튼과 자동보온덮개의 기준단가 단위(㎡)는 설치되는 커튼 또는 보온덮개의 면적을 의미, 나머지 시설의 기준단가 단위(㎡)는 설치되는 온실의 면적을 의미
- \*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 스마트팜 장비지원 대상자는 컨설팅 의무 대상이고, 시설원예현대화 장비 및 에너지절감 장비 지원 대상자는 컨설팅 의무 대상에서 제외(필요시 진행 가능)

###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9월)

#### 시·군·자치구

- 사업대상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검토시 사업 신청자의 사업요건 충족 여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 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해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등), 이전 지원 실적 등을 통해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원가계산서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확인
  -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원가계산서를 통한 사업비 적정여부 확인 절차 생략 가능
  - \* 원가계산서는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 받아 사용하고,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총사업비에 반영이 가능하며,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 스마트팜 시설보급은 컨설팅 전담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고, 컨설팅기관에서 컨설팅 후 제출한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사전점검)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 사업대상자

### [공통사항]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3~8월)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등) 첨부
  - \*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융자(이차보전) 희망농가는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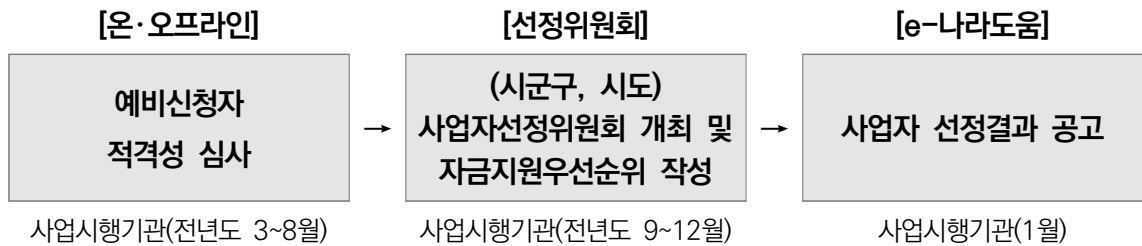
### [스마트팜 시설보급]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시·군·자치구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3~8월)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등)를 첨부
- 컨설팅 전담기관(한국농어촌공사)은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기관 선정(전년도 상반기)
  - ICT 융복합 시설의 규격·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 등 안내
  - ICT 시설 활용도 제고 및 효과 확산을 위해 농가, 지자체 담당자 등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실시(연중)
- 컨설팅기관은 농업인 등 대상으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시·군 및 전담기관에 제출(전년도 8월)
  - 컨설팅 시 농업인 등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

### [시설원예현대화]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사업 신청시 출하약정서를 시·군에 제출

##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군·구 평가 결과\*(매년 1월 평가계획 별도 통지, 농식품부 → 시·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시·군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와 농식품부 예산확정 결과를 검토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사전 현장점검 실시

## I

## 사업 개요

## □ 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자치구
-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지열·지중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원 기준 : 국고 30~60%, 지방비 20~30, 용자(이차보전) 10~20, 자부담 10~20
- '24년 예산 : 26,005백만원(국비 13,401, 지방비 6,280, 용자(이차보전) 3,675, 자부담 2,649)

## □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8월까지

## □ 대상자 선정

-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서기관 김승동 주무관 송병각	044-201-2256 044-201-2259
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사업부	부 장 이윤철 차 장 김형원	061-338-5371 061-338-5380

## 1. 사업대상자

- ①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총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②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③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④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①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또는 재배 예정\*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 신규 온실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 ②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 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돼지·닭·오리 사육 또는 사육예정\*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완료
    - \* 신규 축사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③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농업인의 교육·연구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농업인과 경합되는 채소·화훼류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④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

- 고정식 재배시설에 과거 농진청, 농식품부, 산자부 등의 지원 사업으로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이 해당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가지, 오이, 고추, 난, 딸기 등
-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우선지원요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자격과 일반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산·유통 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시장·군수는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원예작물  
유통

4-1  
(시설·장비)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의 ‘친환경농업 집적 지구’ 참여농가

## 일반지원요건

### 공통사항

- 냉난방시설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 또는 보조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정전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보조난방시설은 지원 불가)
-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낙뢰 등 피해에 대비(권장)
- 확보 부지(규모·위치 등),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단열기준 등이 사업추진에 적정한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시 확인(지열·공기열·폐열시설 설치 시)

## 가. 사업부지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 단, 부득이한 사유(예: 부부, 직계가족, 동일 경영체 소속 등)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사업신청자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는 부지에 한해 신청 가능(주민 등의 시설 설치 동의서 등 증빙자료 제출)
    - \* 토지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시 수평밀폐형은 온실 재배면적의 160% 이상, 수직밀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업신청자가 사전에 확보 완료
  - 별도의 매설 공간이 없는 온실은 온실 내부에 굴착장비가 투입되어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작업이 가능해야 함 \* 작물 재배·수확기간 조정 가능여부 확인
-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시 사업신청자는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 이송관로 부지 등을 사전에 확보 완료

## 지원 제외대상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 내 토지(“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반드시 확인)

### 나. 사업비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사업비(자부담·국고용자)를 이미 확보했거나, 사업자 선정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신용조사서 등 증빙자료 제출)

### 다.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 면적 1,000㎡ 이상
    - \* 단, 단동형 파이프식 온실은 면적이 0.3ha 이상이며,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고,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변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만 가능
  - 버섯, 인삼 등을 재배하는 원예특작시설 : 연면적 600㎡ 이상
  - 무창계사 : 30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오리사 : 5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 1천 마리 이상 사육 사업장
- 공기열 냉난방시설
  - 농업인·농업법인별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 1,000㎡ 이상

### 라. 고정식 재배시설 단열기준(지열·공기열·폐열 시설만 해당)

- 농작물 재배온실 (아래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
  -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 2중 보온커튼과 수막시설 설치
- 패널구조형 원예특작시설
  - 무창계사·돈사·오리사, 버섯재배사 등 원예특작시설의 패널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측벽 및 천장 포함) 또는 동등한 단열성능(열관류율) 이상

원예작물  
유통

4-1  
(시설·장비)  
장비

## 마. 재배품목

### ○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을 선택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작물로의 변경은 불가)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 2) 고려,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 바.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

### ○ 용량증설 : 최대부하용량의 90% 미만으로 지원된 시설

\* 적용대상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 ○ 성능개선 : 하자관리기간(준공 이후 3년) 종료된 시설 또는 유류대비 에너지비용 절감률\*이 50% 미만인 시설

\* 현재 냉난방비용(연간 전력요금) / 유류난방 가정 시 난방비용

\*\* 적용대상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 냉난방시설

##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공기열 냉난방시설

\*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전기·유류 난방기 지원 제외

시설 구분	지원 범위
지열·폐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폐열 이송관로,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시설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li> <li>*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li> <li>• 동축산사시설은 내부 공급관(덕트) 설비공사 추가(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li> </ul>
지열·폐열 (성능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자관리기간 종료 이후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보수(교체)를 통해 회복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li> <li>* 사후관리기간(5년) 이내 주요장비는 회복 불가능한 파손·고장을 제외하고 보수만 가능(교체 불가)</li> </ul>
목재펠릿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외부 : (공통)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설치 인건비, (온수) 축열 탱크(필요시)</li> <li>• 온실내부 : 급수분배기,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등</li> </ul>
공기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배관시설, 팬코일유닛, 제어시설, 축열조 탱크 등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li> <li>*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li> </ul>



####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보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용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기간(지열·폐열 신규설치) : 2년(1년차 50%, 2년차 50%)
- 지원비율

구 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보조	용자		
공기열냉난방시설		40%	20%	30%	10%
신재생 에너지시설	목재펠릿난방기	30%	20%	30%	20%
	지열·폐열냉난방시설	60%	10%	20%	1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용자(이차보전)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폐열 예외)
- 용자(이차보전) 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자치구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타 시·군·자치구 주소지 거주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주의

#### 5. 지원 기준단가

##### 공통사항

-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 가.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규설치

-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공기열(공기 대 공기) 히트펌프 지원기준
    - \* 한파 시 난방능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히트펌프의 한랭지조건 난방능력을 히트펌프 설치용량으로 반영 할 수 있으며 표준조건 난방용량 규격 기준 최대 160%까지 적용가능
  - 사업비: 시설 부하용량(kW) × 적용단가
    - \* 공기열(공기 대 공기) 히트펌프의 '시설 부하용량'은 표준조건 총 난방용량을 기준으로 적용
- 기준단가

설비형식		기준단가	히트펌프 적용기준
지 열	수직밀폐형	1,638천원/kW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 설비(KS) 인증 제품 사용
	수평밀폐형	1,260천원/kW	
	개방형(SCW형)	1,508천원/kW	
폐 열		1,280천원/kW~ 1,520천원/kW	
공기열	공기 대 공기(공급)	617천원/kW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 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농업용 냉난방기 검정방법'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 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공기 대 물(공급)	865천원/kW	

- \* 폐열 재이용시설은 열원이송거리에 따라 적용단가를 조정 가능
-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를 위한 계측시스템(전력량계, 부하량 및 열량측정장치) 구축을 위한 설비 반영 시 기준단가의 5%까지 가산 가능
- \* COP(성적계수) : 에너지효율의 지표(투입전력 대비 생성 열에너지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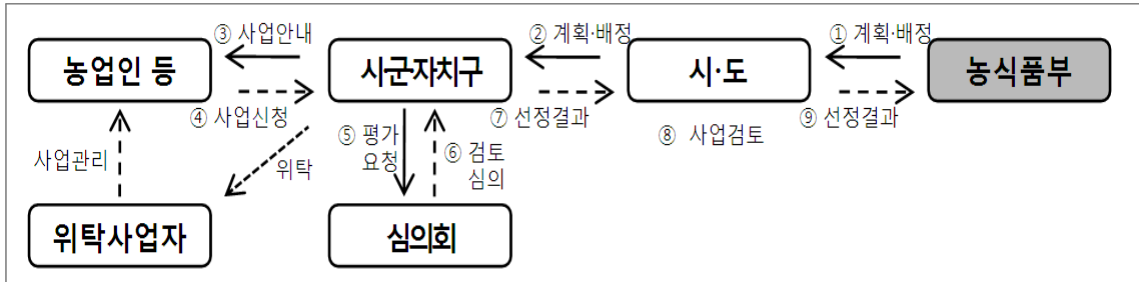
## 나.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지열·공기열·폐열)
  - 지역별 시설 부하용량(kW)\* 기준 대비 부족한 용량을 지원
    - \* 온실 부하계산결과를 기준하여 부족한 용량(히트펌프 정격 난방용량 기준) 또는 지열교환기 전산해석 결과 부족한 용량(지열고갈 등으로 인한 용량 증설)
  - 사업비 : [시설 부하용량(kW) - 기보급 시설용량(kW)] × 적용단가
- 성능개선(지열·폐열)
  - 과거 지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 보급 이후 시설물의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회복하기 위한 보수 및 교체 지원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



### Ⅲ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 1.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현장조사 확인서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 첨부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10~12월)

#### 시·군

- 사업대상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1 또는 2-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청(개보수 포함) 시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조사 시행 후 현장조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단,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요건은 미충족 시 조건부 예비사업자로 신청 가능\*)
- \* 추후 최종사업자 선정단계에서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9월)
-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1, 1-2)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 전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적정성 검토(지열·폐열·공기열에 한함)를 받은 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1 또는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난방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 (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 원가계산서는 시·군 등에서 제출 요구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첨부하고,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용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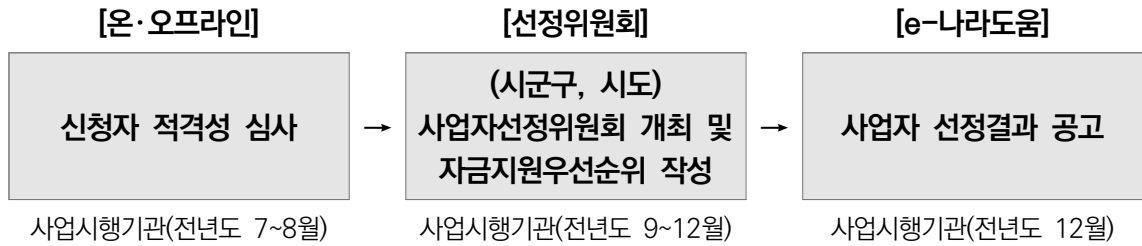
###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 요청 시 현장조사를 지원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전년도 7월~8월)

원예작물  
유통

4-1  
(시설·장비반)

##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군·구 평가 결과(매년 1월 평가계획 별도 통지, 농식품부 → 시·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조건부 예비사업자의 경우 보고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 제출
    - \* 특히, 사업비 확보 요건 충족여부를 증빙자료 등 통해 반드시 확인
- 시·군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조건부 예비사업자의 경우 보고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 제출
    - \* 특히, 사업비 확보 요건 충족여부를 증빙자료 등 통해 반드시 확인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사전 현장 점검

## I 사업 개요

## □ 목 적

- 집단화된 온실단지 중심으로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체계 구축
- 시설원예분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 촉진

## □ 사업내용

- 집단화된 온실단지에 지열·폐열·수열, 축분고체연료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

\* 지열 천공, 열교환기, 폐열·수열 이송배관, 축분고체연료난방시설, 열원 저장시설 등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집단화된 원예단지에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

##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지열 천공, 열교환기, 폐열·수열 이송배관, 축분고체연료난방시설, 열원 저장시설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 ○ 지원 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

## ○ '24년 예산 : 1,680백만원(국비 1,176, 지방비 504) \* 신규 설치 기준

## □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도에 신청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7월까지



##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평가를 통하여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서기관 김승동 주무관 송병각	044-201-2256 044-201-2259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팜사업부	부 장 장이욱 차 장 김형원	061-338-5371 061-338-5372

## 1. 사업대상자

- 집단화된 원예단지에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
    - 지자체는 대상 부지를 확보하고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추진단\*을 구성
- \*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참여 경영체(사업예정지 내에서 온실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예정인 생산 주체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한정) 등으로 구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집단화된 원예단지에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

### 지원요건

- (기본방향) 신규로 조성되는 규모화·집적화된 스마트원예단지,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원예시설 단지 등과 연계하여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절감, 온실가스 감축
  - (총괄계획) 시·군·자치구는 단지 구성(시설형태, 구성원 등), 운영(재배품목, 유통·수출계획 등)에 대한 총괄계획을 수립·제출
    - 생산·유통·수급·수출 정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단지 조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단지의 비전 등을 제시
  - (시설설치 계획) 시·군·자치구는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설치 이후 생산·냉난방 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 투자계획 및 자금 확보방안 등 제출
    - 자부담, 민간투자 유치, 모태펀드 활용 등 자체 자금조달 계획 및 중앙·지방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 계획 수립
  - (추진단 구성) 지자체는 참여경영체 등과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모 참여
    - 신규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사업\* 선정결과(공모 중인 경우에는 공모신청서) 또는 자체 원예단지 조성계획(자치단체장 결재) 제출
- \*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원예단지 조성 사업

-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에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단 구성 생략 가능
- (단지규모) 온실면적 4ha 이상
  - 기존 원예단지에서 지열냉난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천공부지(냉난방면적의 30% 내외)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 폐열, 수열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폐열, 수열 이송관로 매설부지를 확보하거나 토지소유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 경영체) 원예단지에 입주하여 온실을 경영하는 생산 주체(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한정) 중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냉난방을 하려는 농업경영체를 확보하여 공모 참여
  - 입주 농업인·농업법인은 가급적 생산 농산물의 국내공급 및 수출시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실시
  - 대규모 단지 운영이 필요한 점을 감안, 참여 입주 농업인·농업법인에 일정수준 이상의 영농경험, 영농교육 수준 등 요구
    - \*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는 참여 경영체 제출 생략 가능
- (에너지사용) 원예단지 내 생산시설 등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
  - 농식품팜맵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역 내 미활용에너지 이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단지 입지선정 시 이용가능 지역을 최우선 고려
    - \* 농식품팜맵 서비스(<https://agis.epis.or.kr>) - '전국온실 에너지실태' 메뉴 이용
  - 폐열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폐열 공급기관과 열 공급 협약 체결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발전폐열 등을 이용하는 경우 우선 선정

### 3. 자금사용 용도

- 집단화된 온실단지에 지열·폐열·수열·축분고체연료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
  - \* 지열 천공, 열교환기, 폐열·수열 이송배관, 축분고체연료난방시설, 열원 저장시설 등
  - 단지내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별농가 히트펌프는 미지원

####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사업기간 : 2년(1년차 : 30%, 2년차 : 70%)
- 기준단가

(단위 : 백만원/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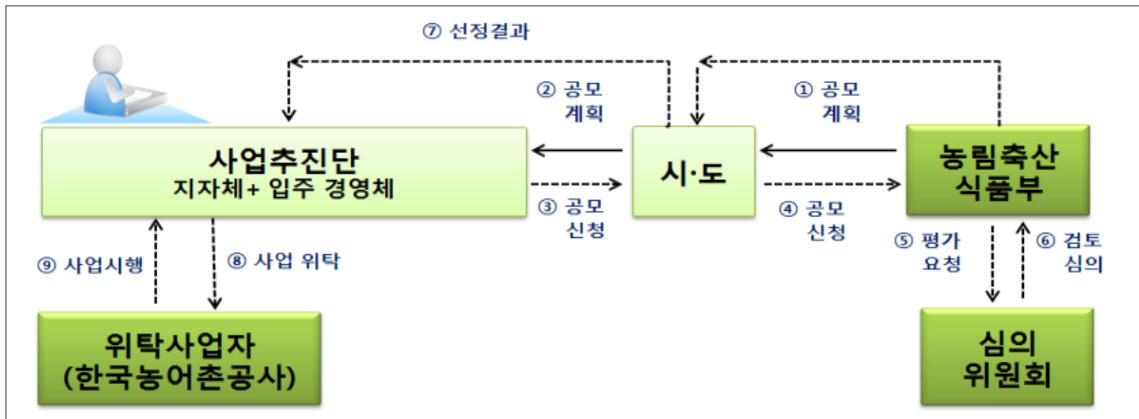
설비형식	기준단가
지열	700
폐열	357
수열	357
축분고체연료난방	225

\* 폐열·수열은 열원 이송관로 1km 기준이며, 열원 이송거리에 따라 적용단가 조정 가능

\* 본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에너지 종류·물량, 현장여건 등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신청금액은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전문기관 등 통해 산출하여 제시)

### Ⅲ

## 사업추진체계



### 1. 사업 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3월)
  - 신청자격, 지원내용, 사업규모, 신청·접수기간, 평가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사후 관리계획 등 안내
-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 접수(전년도 7월)

#### 시·도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3월)
- 시·군, 참여 경영체 등과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추진단 구성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 등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함)에 제출(전년도 7월)

#### 시·군

- 시설원에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공모)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전년도 3월)
- 시·도, 참여 경영체 등과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추진단 구성
- 참여 경영체 등과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공모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 작성 후 시·도 제출(전년도 7월)

원예작물  
유통

4-1  
(시설·장기반)

- 종합적인 단지조성·운영·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단 참여 주체별 역할 확립
- 한국농어촌공사(지역본부) 등의 협조를 얻어 사업비 적정성 검토 병행

### 참여 경영체

- 시·도, 시·군 등과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추진단을 구성
- 시·군 등과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를 작성(전년도 6월)
  - 단지 내 재생에너지 시설 구축·운영 및 농산물 생산·유통·수출계획 수립
  - 생산물 판매 시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계획 수립
  - 시설물 활용 및 사후관리, 지역 활성화 등 계획 수립

##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토(전년도 7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수립·안내(전년도 8월)
  - 평가계획 수립 후 시·도에 안내
  -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전조사 실시 및 조사보고서 작성 의뢰
-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및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9월)
  -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선정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취소·포기 시 대체사업자로 지정될 사업자

### 시·도

-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안내(전년도 8월)
-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발표자 및 참석자 보고(전년도 8월)
-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안내(전년도 9월)

### 시·군

- 입주 경영체 등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안내(전년도 8월)

-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과정에 참여(전년도 8월)
-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시·군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른 1차 심사에 필요한 조치 이행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대상지 사전조사 실시 후 조사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본사·지역본부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 편성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원예작물, 유통

---

### 4-2. 채소(노지, 시설)



## I 사업 개요

## □ 목 적

- 자급률 지속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 □ 사업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고추 재배 전용 비닐하우스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기준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기준단가: 25천원/㎡
  - \* '23년부터 융자를 이차보전(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전환하며 각 시·도(시·군)에 실배정된 융자(이차보전) 한도내에서 지원
- '24년 예산 : 10,395백만원(국비 2,079, 융자(이차보전) 810, 지방비 3,119, 자부담 4,387)

##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 신청시기·방법 : '24.3.( '25년 예비사업대상자), '24.9.( '25년 사업대상자), 지자체(시·군) 방문신청 또는 우편·팩스

## □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시·군)
- 시·도로부터 배정 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서기관 이남윤 주무관 방혜정	044-201-2236 044-201-2237

## 1. 사업대상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 단,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외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422호)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상반기(사업연도 6월 이전) 내 준공 가능 사업대상자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 발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 3. 지원대상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 \*\* 온실 자동화를 위한 환경제어시스템 등은 ‘스마트팜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지원 가능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 가능
    - \* 타 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회(2년)로 제한
  - 자경용\* 양파 육묘를 위해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조기 종료(8월)할 수 있으며, 이는 건고추용 고추 재배기간에 포함하여 관리
    - \* 타인에게 제공(무상제공 포함)할 목적의 양파 육묘 시 건고추용 고추 재배기간에서 제외 및 목적외 사용으로 처리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용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 용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용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 사업비 예시단가: 25천원/㎡

-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사업비 집행시 실 단가 적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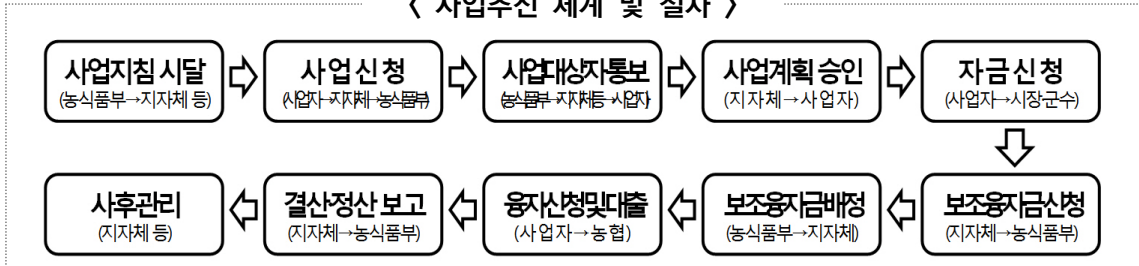
## 7. 제재사항

- 사업대상자 확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추진상황이 미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없이 다시 선정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해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병행 관리

## 1. 사업 공고 및 신청('25년 사업대상자)

- '24년 사업대상자는 '23.9월 예비사업자로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23.12월)

### 시·도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23.12월)

###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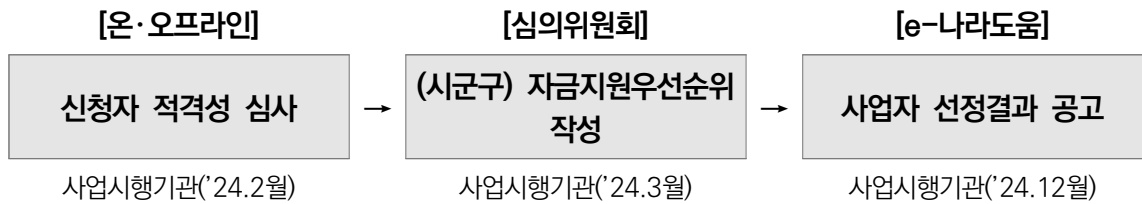
- 고추 재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신청방법, 제재사항(중도포기 및 목적 외 사용 등) 등 안내, 교육 및 홍보 병행('24.1월)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접수·검토('24.1월)

###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 제출('24.1월)
- 융자 희망자는 거래 농협은행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 금액을 확인



## 2. 사업자 선정('25년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4.12월)

###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의 지원 자격 및 요건 준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보고('24.3월)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4.12월)

### 시·군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24.3월)
-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 사업장(농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 시·도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24.12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 I 사업 개요

## □ 목적

- 발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생산유통통합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 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 □ 사업내용

- 발작물공동경영체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조직에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농기계류,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 □ 지원 자격 및 품목

- (사업주관기관 요건) 원예산업발전계획이 수립 및 승인된 지자체이며, 해당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
- (사업대상자 요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
  - \* 신청 품목 총 취급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조직화 취급액이 3억원 이상인 경영체
- (지원품목)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품목 또는 원예 농산 자조금(의무·임의) 품목 중 해당 사업에서 지원하는 품목, 기타 지자체 특화(육성) 원예농산물 품목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공동경영체별 10억원(1년차 1.5억, 2년차 8.5억원)
  - 재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세부내역
  - 역량강화 : 생산농가의 교육·컨설팅 비용(총 사업비의 5% 이상)

- 생산비절감 :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류 및 장비
  - 품질관리 : 저온저장고, 건조, 선별 및 포장, 가공 등 시설 및 장비
  - 주산지협의체 운영
  - '24년 총사업비 : 19,180백만원(국비 9,680, 지방비 7,600, 자부담 1,900)
    - 공동경영체 지원 : 19,000백만원(국비 9,500, 지방비 7,600, 자부담 1,900)
    - 행정경비 : 180백만원(국비 100%)
- \* 예산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시·군·구는 사업계획서 검토·심의 후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는 사업신청 서류 취합 및 적합 여부 등을 최종 검토 후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 제출

## □ 대상자 선정

- 서면 및 발표평가, 세부사업계획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총괄)	사무관 정수연 주무관 이유리	044-201-2219 044-201-2220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관련 부서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기획부	차 장 육심환 주 임 이슬기	061-931-1012 061-931-1022

## 1. 사업대상자

### 가. 사업 주관기관 : 지자체(시·군·구, 시·도)

- 발작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 단위 계획수립 및 해당 품목 생산자단체(개별 경영체)를 시·군단위 공동경영체 방식으로 구성

\* 공동경영체 : 발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생산단계(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및 공동상품화(공동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추고, 생산농가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해 출자출하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 등으로 계열화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체

### 나. 지원대상 조직 : 경영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3

## 2. 지원자격 및 지원품목 요건

### 가. 사업 주관기관 요건 : 지자체(시·군·구, 시·도)

- 지자체 또는 품목단위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
  - 원예산업발전계획 내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 필요
- \* 사업신청 품목이 원예산업발전계획 내 전략(육성) 품목으로 미지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 결과 무효 처리
- \*\* 단, 먹거리 계획(푸드플랜 패키지)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지원대상 품목, 지원대상 조직 공통요건 등 충족 필요하며, 평가·선정은 별도로 가능

### 나. 지원대상 품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원예농산물(채소류 주산지 지정 품목) 또는 농산자조금(의무·임의 자조금) 품목 중에서 해당 사업으로 지원하는 품목

○ 지자체에서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는 기타 원예농산물 품목

\* 단,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에 따라 주산지로 지정된 지자체(시군)는 해당 고시문, 주산지로 미지정된 지자체(시군)는 '21년 기준 면적 및 출하량(생산량)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지원 품목은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고시 포함)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도 자조금 지원 품목으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수급안정 등 발작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 별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선정평가 추진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고시 제2022-102호, 시행 '22.9.30.)〉

품목	주산지 지정 기준		
	지역	면적	출하량(생산량)
봄배추	시·군·구	150ha 이상	7,300t 이상
여름배추	시·군·구	450ha 이상	20,741t 이상
가을배추	시·군·구	120ha 이상	11,802t 이상
겨울배추	시·군·구	450ha 이상	32,899t 이상
양배추	시·군·구	210ha 이상	9,962t 이상
봄무	시·군·구	70ha 이상	2,732t 이상
여름무	시·군·구	250ha 이상	8,537t 이상
가을무	시·군·구	150ha 이상	11,431t 이상
겨울무	시·군·구	1,000ha 이상	56,180t 이상
고추	시·군·구	500ha 이상	1,155t 이상
마늘	시·군·구	300ha 이상	3,948t 이상
양파	시·군·구	190ha 이상	12,481t 이상
대파	시·군·구	250ha 이상	7,197t 이상
생강	시·군·구	100ha 이상	1,200t 이상
당근	시·군·구	100ha 이상	3,342t 이상
참깨	시·군·구	250ha 이상	125t 이상
땅콩	시·군·구	100ha 이상	266t 이상
버섯류	시·군·구	(연면적) 30ha 이상	-
특작류	시·군·구	50ha 이상	-

〈농산자조금 지원 품목(2022년 12월 기준)〉

구 분	지원 품목
의무자조금	인삼,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참외, 절화, 포도, 마늘, 양파, 복숭아, 차
임의자조금	가지,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단감, 무·배추, 고추, 딸기

## 다. 지원대상 조직 요건 : 경영체

### (1) 공통요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 \*\* 지원대상 조직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등 준용
  - \*\*\* 단, 먹거리 계획(푸드플랜 패키지)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도 공통요건 충족 필요
- 사업량은 전년도 기준 경영체의 신청 품목 총 취급액 10억원 이상이면서 조직화 취급액 3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조직
- 사업신청일 기준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 법인 운영실적 2년 이상인 조직

### (2) 개별요건

- 신청 품목이 의무자조금 품목으로 포함되어있는 경우, 경영체 참여농가 중 자조금 납부 대상 농가는 자조금 100% 납부 필수
  - \* 납부 면제 농가 및 출하농가 실적이 없는 농가를 제외한 모든 농가는 납부 증명서 제출 필수
  - \*\* 의무자조금 납부대상자는 의무자조금단체의 납부확인서 확인 및 첨부 제출(선정 서면평가 시 추가 가점 부여)

## 라. 지원제한(경영체, 지자체)

- 본 사업에 기 지원받은 경영체가 사업 신청하는 경우 본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동일 품목은 4년('20년~'23년 사업자), 타 품목은 2년('22년~'23년 사업자) 이내 지원 불가
  - \* 단,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종합평가 결과 '미흡' 경영체는 동일품목 5년, 타 품목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영농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상품화 등을 지원하지 않고, 마케팅 활동만 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자체 및 경영체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한 경영체, 지방비 및 사업부지 미확보 경영체는 해당 보조사업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마. 가·감점 사항

- '23년도('22년도 실적) 정부로부터 출자출하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육성형 포함)으로 승인(등록)된 경우 가점 차등 부여
  - \* 단, 기존 산지유통혁신조직(~'22년)에서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별도 요건 없이 전환된 경우는 제외
  - \*\* 본 사업 지원 품목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점 반영하며, 중복으로 가점 인정 불가
- 기 지원받은 경영체가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동일 품목으로 4년이 경과하거나 타 품목으로 2년이 경과하여 사업 신청하는 경우 감점 부여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유통시설현대화 사업 등 타 정부지원시설 보조사업자가 공모 해당연도에 수행중인 경우 감점 부여
- 사업자 선정평가 시 시·도 기준으로 지원받은 발작물 경영체의 최근 2년 평균 실적행 등을 반영하여 가감점 부여(단, 최근 2년 이내 시·도 지원실적 없는 경우 해당없음)
- 사업자 선정 평가 시 '22년도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한 조직에 가점 부여
- 사업자 선정 평가 시 '23년(22년 실적)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 결과 수출전문단지로 최우수, 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조직에 가점 부여
- 의무자조금 납부 등 발작물 정책방향 고려 등 가감점 운영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반영

##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역량강화** : 생산농가의 조직화, 생산성 향상 및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주산지협의회 운영 비용(단, 총 사업비(10억)의 5%이상 배정 필수이며 사업계획 변경 시에도 반드시 준수)

- **교육** : 농가조직화, 재배·생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국내 선진지 견학비용 등

\* GAP 인증 취득에 필요한 농가교육만 지원(인증에 필요한 분석비는 '주산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

- **컨설팅(자문포함)**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 시설설치(인허가, 설계방향, 시설도입·배치 등), 경영(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등) 등

\* 단순 경영컨설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경영체 업무지원, 성과평가자료 관리·작성 등)

- \* 초기·정착·심화 단계에 맞는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1년차에 반드시 포함
- \* 신제품 교육 관련하여 종자(소모성 지원) 농가 지원 제외(자체자금으로 사용)

### ○ 주산지협의회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필수 구성)

-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육성형 포함), 자조금단체, 교수,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 나.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 단계에 필요한 기계류(일부 자재 포함)

- 공동농기계 : 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이식기, 수확기, 굴취기, 탈피기, 박피기, 제초기, 절단기, 복토기, 트랙터, 방제기 등
- 공동기자재 : 톤백, 대형 수확상자, 인테이너 등 대규모 관련 필요 기자재는 총 사업비(10억) 10%이하로 제한하며 관련 기자재는 선정평가 및 세부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최종 허용 여부 검토
  - \* 원칙적으로 플라스틱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 소규모 소모성 기자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 여부는 사업자 선정평가, 현장점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심의 시 과잉 보유 장비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는 사적 소유가 되지 않도록 경영체가 생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직접 관리 필요(향후 사후관리 점검대상)
  - \* 참여농가의 여성농업인이 다수인 경우, 품목과 농가 특성에 따라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권장
  - \* 농기계류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다. 품질관리

- 생산 시설·장비 : 공동육묘장 등
- 공동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 : GAP인증 시설, 선별장(저온 선별장 포함), 공동선별기, 포장장, 출하장, 전처리장(큐어링 시설, 가공공장 포함), 자동포장기, 투입·선별·포장기, 랩핑기 결속기, 봉합기, 제합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디파렛 타이저, 세척기, 건조기, 소포장기 등
- 가공시설·장비 : 신선편이시설(세척, 급식 식자재 등), 가공시설(잼, 주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 등), 급속냉동기 등
- 기타 저장 및 유통시설·장비 등 : 저온저장고, 집하장, 비가림 시설, 지게차, 농산물 수송차량(냉장·냉동차량 등 심의를 통한 제한적 승인), 위생시설(소독실, 에어 샤워기 등) 등
- 공사 : 토목, 건축, 전기·통신·소방공사



- 감리비 및 토목(포장) 공사비로는 사용 가능하나, 설계비(인허가비포함), 부지 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절성토·성토·옹벽 등) 비용 사용 불가
  - \* 농가조직화 및 규모화에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은 총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며, 선정평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심의 시 최종 허용 여부 검토
- 기타시설 : 6차 산업 관련한 시설·장비는 총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며 선정평가 및 세부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최종 허용 여부 검토
  -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나, 단가 산출근거 및 목적·사유를 명확하게 제시가 필요하며 선정평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심의를 통해 최종 허용 여부 검토
  -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평가, 현장점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심의 시 과잉 보유 장비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
  - \* 사업 예정부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단, 정책자금 담보제공은 예외)
  - \* 등기가 불가능한 가설 건축물은 지원 불가

####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예산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신규 19개소 내외(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
    - \* 최종 예비선정 사업대상자가 예산 범위 내 사업량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대상자로 자동 선정 불가(익년도 사업신청, 선정평가 등 절차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
  - 지원형태 및 채용비율 : 자치단체자본보조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 지방비 부담 비율은 시·도 30%, 시·군 70%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별도 규정(조례, 규칙)에 있는 경우 조정 가능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공동경영체별 10억원(1년차 1.5억, 2년차 8.5억)
- 지원기간 : 2년(선정 후 사업 개시 연도부터 적용)
  - \* 1년차 사업 종료 전 경영체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지원 여부 결정, 추진실적 부진경영체로 선정된 경우 추후 재연차평가 실시하여 2년차 사업비 계속 지원 및 지원 유예(1회) 또는 중단(중단되는 경우 1년차 사업비 회수) 조치 확정

## 6. 사업추진체계

### 가. 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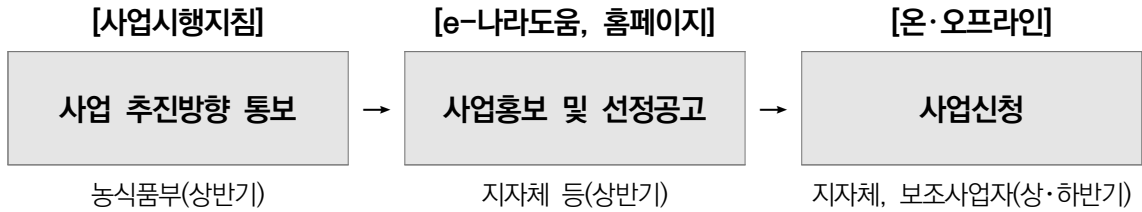
### 나. 사업 추진주체

구 분	역 할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 수립 및 점검 등 사업 총괄</li> <li>예산 배정 및 교부 등 운영, 사후관리</li> </ul>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자 선정 및 평가 운영</li> <li>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사전 검토</li> <li>사업대상자 예비 및 전문가 컨설팅</li> <li>사업추진 이행점검 등 관리·감독</li> <li>사업완료 대상자 사후관리 지원</li> </ul>
지자체(시도 및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 검토 등 사업 신청 및 추진</li> <li>사업계획 변경 승인(단, 지자체 기준) 및 검토</li> <li>사업 정산 및 사업자 관리·감독 등</li> <li>사업완료 대상자 사후관리 주관</li> </ul>
경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li> <li>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li> </ul>

## 다. 사업운영 주요 현황

- **사업자 선정** :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서면평가, 현장점검(필요시), 품목부서 사전검토(필요시), 발표평가,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세부사업계획 심의 및 확정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운영 평가** :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1년차 사업대상자 연차평가(또는 연차점검)를 통해 사업 계속 지원 여부 판단하며, 2년차 사업대상자 종합평가를 통해 사업운영 성과 측정, 우수경영체 선정, 인센티브 등
- **경영체 컨설팅 운영** :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예비사업자 컨설팅: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 신청 후 평가선정 전에 예비 지원조직을 대상으로 사업 주요 내용 안내 및 사업계획 수립 관련 자문\* 지원
    - \* 사업 신청 전에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기계, 장비, 시설 등 과다 신청 사전 방지하여 사업 세부운영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등 사업효과 제고 도모
  - 부진경영체 컨설팅: 1년차 사업자 연차평가 결과 부진경영체로 선정된 경우 경영체의 문제점을 재진단하고 시설개선·경영관리·농가조직화 등 분야별 컨설팅 지원
  - 전문가 컨설팅: 2년차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체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설개선·경영관리·농가조직화 등 분야별 컨설팅 지원
- **사업 점검 및 사후관리** :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현장점검 : 사업을 추진 중인 경영체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상·하반기 1회 농식품부·aT 합동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운영 현황 관리 등 점검
    - \* 정기점검 미실시 하는 경우 시도 자체 점검계획 수립·실시 후 농식품부에 상·하반기 제출
  - 사후관리 점검 : 사업 완료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정기점검(상·하반기 1회 농식품부·aT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중요재산 현황, 경영성과 파악, 부정 운영 행위, 안전 사고 관리 등 점검
    - \* 상·하반기 농식품부·aT 합동 정기점검 미실시 하는 경우 시도 자체 점검계획 수립·실시 후 농식품부에 상·하반기 제출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상반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및 제출(상반기)
- 사업공모를 위한 지자체, 농협 등 관련 유관기관 및 경영체 대상 사전 홍보 등 운영(연중)

사업자

- 예비사업자 컨설팅 신청(상·하반기)
  - 차년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해당 시·군에 예비사업자 컨설팅 신청서 제출
- 사업 신청(상·하반기)
  - 지원자격 및 지원 품목 등 요건을 갖춘 경영체는 사업계획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방향 〉

**(1)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반드시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

**(2) 주산지협의체 구성**

- 구성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되 신청 품목의 생산, 기반조성, 상품화, 유통, 마케팅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체로 구성
- 협의체의 역할
  - ① 지자체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 수립 방향 설정
  - ② 사업계획 검토, 자문,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
  -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여
  - ④ 사업 추진단계 및 종료 후 평가 참여
  - ⑤ 기타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활동

**(3) 계획수립 방향**

- 신청품목의 시·군(또는 시·도) 특화도가 높고 발전 가능한 품목 선정
- 지역 단위, 발작물 공동경영체 단위로 발전 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농가)-상품화(공동경영체)-유통(생산유통통합조직)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모델 제시
- 개별조직 단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지역 전략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가-공동경영체-생산유통통합조직이 계열화된 주체를 중심으로 지원계획 수립
- 발작물 농가조직화 및 생산역량 혁신(생산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세부사업계획 수립

**(4)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초현황 분석
  - 시·군 내 발작물 생산·유통 현황, 신청품목의 생산(생산구조, 경지정리 등) 및 유통(생산유통통합조직 주체, 유통경로별 비중 등) 여건 분석
  - 신청품목에 대한 사업주체 현황 및 여건분석(출자출하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 기타 생산자조직 등)
  - 신청품목 관련 생산·유통 시설 현황 및 활용도 분석(보유현황, 가동현황, 생산량 대비 과부족 등)
  - 관련 상위계획(원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분석 (상위계획 중 해당 품목 관련 내용, 향후 연계 방향)
- 세부 사업 추진 계획
  - 신청 품목에 대한 생산·유통 중장기 육성목표 및 핵심 추진계획
  - 농가조직화, 신상품 개발,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 등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예산집행 계획)
  - 계획에 따른 부문별 성과 목표
- 농정 거버넌스 구축 계획
  - 신청 품목에 대한 주산지 협의체 운영계획

원예작물, 유통  
4-2  
(재  
노지  
·  
시  
설  
소)

## 시·군

- 예비사업자 컨설팅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상반기)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주산지협의체 구성(사업신청 전)
  - 시·군은 지자체 중심으로 시·군, 생산유통통합조직, 생산자 조직, 농업기술센터, 대학, 자조금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시·도에 제출(상반기)
  - 시·군은 주산지협의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신청서를 검토·심의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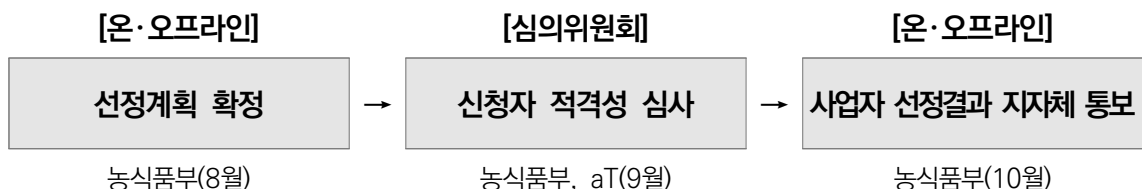
## 시·도

- 예비 사업자 컨설팅 신청서를 취합하여 aT에 제출(상·하반기)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aT에 사업신청서 제출(상·하반기)
  - 시·도는 시·군의 품목·조직단위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선정기준 등에 적합한 공동경영체의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aT에 제출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현황 및 사업자 선정평가 세부추진계획 농식품부에 보고 및 제출(상·하반기)

## 2. 사업자 선정 단계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상·하반기)

\* 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법령 준용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 시 선정

###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 2단계 : 서면평가 >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5인 내외)

○ 평가방식 :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대상 : 사업신청 기본요건 등 충족한 개별 경영체 및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역량 및 농정거버넌스 기반 등

○ 평가결과 : 선정위원회 위원이 부여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시,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현장점검 : 서면평가 단계에서 선정위원회가 평가대상자의 생산자 조직화 현황 및 보유시설·장비, 부지 등 사업 여건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점검 실시

\* 품목·기계 등 관련 부서 사전검토 : 평가대상자의 사업추진 방향, 역량강화, 생산비절감,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검토 실시

### < 3단계 : 발표평가 >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5인 내외)

○ 평가방식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등 발표평가

○ 평가대상 : 서면평가를 통과한 개별 경영체 및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역량 및 농정거버넌스 기반 등

○ 평가결과 : 서면평가(40%)와 발표평가(60%) 배점을 합산하여 70점 이상 경영체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로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해당 사업신청 품목별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등 내부 검토 후 선정평가에 반영하여 예비사업자로 최종 확정(상·하반기)

- aT로부터 제출된 선정 심사 평가결과를 기초로 최종 확인 후 예비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지
  -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계획서는 농식품부 선정 심사에서 제외
  - \* 품목·기계 등 관련 부서 사전검토 : 평가대상자의 사업추진 방향, 역량강화, 생산비절감,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검토 실시

### 사업자·지자체

- 예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지자체(경영체)는 세부사업계획 심의 자료를 보완하여 최종 aT로 제출(상·하반기)
  - \* 세부사업계획 심의 시 사업계획 보완 미이행, 서류 미비 등 부적정한 경우가 확인된 경우 최종 사업대상자로 미선정 가능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주요 채소류(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대파, 감자 등)의 주산지 중심 사전·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도모

## □ 사업내용

-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등)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평년 가격의 80%)하는 제도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협) 당해연도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지역농협·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 (산지유통법인) 사업참여 희망 품목(여름배추, 여름무, 겨울배추)의 최근 3년간 연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품목 : 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겨울대파, 고랭지감자
- '24년 예산 : 55,190백만원
- 지원 기준
  - (농업인 대상) 국고 30%, 지자체 30%, 농협 20%, 자부담 20%
  - (산지유통인 대상) 국고 50%, 자부담 50%\*

\* 지자체의 사업참여 희망 시 자부담 중 일부에 대해 지방비 부담 가능(최대 30%)

## □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서(증빙서류 첨부) 제출: 지역농협, 산지유통법인
- 선정 방법: 사업시행지침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 기간: 해당 품목 파종·정식기 도래 전(1~2개월 이전)

\* 신청결과를 토대로 주산지협의회(유통협의회)에서 재배의향을 고려하여 사업물량 협의 후 약정체결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서기관 배민식 주무관 김형래	044-201-2232 044-201-2233
농협경제지주	채소사업국	과 장 윤현욱	02-2080-635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채소사업부	과 장 최해든나라	061-931-1074

## 1. 사업대상자

- (농협) 농협경제지주의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이하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 지역·품목농협(이하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법인')
  - \* 관련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9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 (산지유통법인)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여름배추, 여름무, 겨울배추)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이하 '사업자')
  - \* 산지유통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
  - \* 산지유통법인 : 산지유통인을 소속 조합원으로 하는 법인
  - \* 산지유통법인의 대표도 산지유통인으로서 직접 사업참여 가능
- 식품가공업체 중 직접 농가와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고 수확기에 해당 물량을 수매하여 식품으로 가공하는 업체
  - \*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aT와 사업 타당성 검토 후 후 사업 추진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농협

- (지원자격) 당해연도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 \*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매취사업)이 사업대상자일 경우에는 농가로부터 보전기준가격(도매시장 5개년 평년가격의 80%) 수준으로 수매(매입)를 하여야 함
  - \*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필지는 본 사업 지원 불가(일부 필지만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가입 필지는 본 사업 지원 가능)
  - \* 참여 농업인·법인은 직접 경작 및 생산을 해야 하고, 그 증빙을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계약시 농협에 제출하여야함. 다만, 경영체등록 정보가 경영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경작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으로 증빙할 수 있음
  - \* 의무자조금 대상 품목의 경우 당해연도 자조금을 납입하고, 차년도 경작신고를 한 농업인·법인만 참여 가능(경작신고 웹프로그램으로 확인,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다만 해당품목 신규 재배 농업인은 자조금단체에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참여 가능

- \*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와 미참여를 반복하는 농업인·법인은 사업물량 제한 가능  
(예: '22년 참여 → '23년 미참여 → '24년 참여 신청)
  - \* '25년부터 노지채소 수급안정지원(용자) 대상 품목 중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품목은 채소가격안정제 참여 물량에 대해서만 용자 지원 가능
  - \* 주산지협의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계획 수립, 주산지 수급조절 계획 심의·추진 등을 위해 주산지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업인, 유통인 등이 참여한 광역(도단위) 협의체
- (지원요건) 품목별 가격이 보전기준가격보다 하락하거나, 사전면적조절·출하정지, 출하장려 등 수급대책 추진 시 주산지협의체에서 의결하여 약정된 내용 지원
  - (선정우선순위)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자, 자조금 사업자는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통합마케팅조직 및 계열화된 조직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 나. 산지유통법인

- (지원자격)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여름배추, 여름무, 겨울배추)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 \* 산지유통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
  - \*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필지와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의 적용을 받는 필지는 본 사업 지원 불가(일부 필지만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가입 필지는 본 사업 지원 가능)
  - \* 유통협의체 : 채소가격안정제 사업계획 수립, 주산지 수급조절 계획 심의·추진 등을 위해 사업자, 사업관리자, 연구기관 등 전문가 단체가 참여한 협의체
  - \* 1개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가 사무국 운영 및 복수의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간 사무국 설치·운영 가능
  - \* (사업대상품목 확대 시) 의무자조금 대상 품목의 경우 자조금을 납입한 산지유통법인만 참여 가능, 다만 해당품목 신규 재배 산지유통인·법인은 자조금단체에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참여 가능
- 식품가공업체의 지원자격은 사업 검토·추진 시 세부추진계획에서 규정
- (지원요건) 품목별 가격이 보전기준가격보다 하락하거나, 사전면적조절·출하정지, 출하장려 등 수급대책 추진 시 유통협의체에서 의결하여 약정된 내용 지원

## 3. 지원대상

- (대상 품목) 농협: 배추·무(쫄작형), 고추, 마늘, 양파, 겨울대파, 고랭지감자산지유통법인: 여름(고랭지)배추, 여름(고랭지)무, 겨울배추
  - \* 식품가공업체 : 배추, 무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급과잉) 가격하락 시 보전기준가격(도매시장 5개년 평년가격의 80%)과의 차액 보전 또는 사전면적조절·출하정지 등의 약정 비용으로 사용
- (공급부족) 주산지협의회(또는 유통협의회) 의결을 통해 출하장려금(운송비, 작업비 등) 등 수급안정 지원 비용으로 사용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의 재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민간경상보조)
- 지원기준
  - (농협) 국고 30%, 지자체 30%, 농협 20%(농협경제지주 10%, 사업농협 10%), 자부담 20%
    - \* 단, 농협경제지주, 지자체 및 농업인은 여건에 따라 사업농협 부담분 일부 지원 가능
    - \*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사업 대상자일 경우에는 농업인 부담비율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사업 우수·부진농협은 사업비 부담분의 30%(전체사업비의 3%) 이내에서 사업비 부담 완화 및 추가 부담 가능
    - \* 병충해·기상재해 등으로 출하율이 낮은 농가는 주산지협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비 감면 가능
  - (산지유통법인) 국고 50%, 자부담 50%\*
    - \* 지자체의 사업참여 희망 시 자부담 중 일부에 대해 지방비 부담 가능(최대 30%)
    - \* 식품가공업체 사업참여시, 산지유통법인과 동일한 보조율 적용
- (사업 범위) 공급과잉 시 가격하락분, 산지폐기(사전면적조절·출하정지) 손실 보전, 공급부족 시 출하장려금 지원, 등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으로 한정

#### 가. 농협

- (사업 의무) 농업인, 농협, 법인은 약정물량(또는 매월 출하계획량) 중 잔여물량의 50% 이내에서 수급상황 발생 시 정부 또는 농협경제지주의 사전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 수급대책 의무 이행 준수
  - 사업대상자는 해당 품목 출하전에 농협경제지주에 월별 출하계획을 수립·보고하여야 함
  - 사전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의 수급대책 지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계약재배 자금(용자)도 회수),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나. 산지유통법인

- (사업 의무) 사업자는 약정물량(또는 매월 출하계획량) 중 잔여물량의 50% 이내에서 수급상황 발생 시 유통협의체 등의 결정에 따라 출하정지, 출하지시, 면적조절 등 수급대책 의무 이행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리자에 품목별 월별 출하계획을 수립·보고하여야 함
    - \*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품목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물량확보 계획 수립
  - 출하정지, 출하지시 등의 수급대책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자의 예산 및 사업 불이행에 따른 제재사항, 사업계획 수립, 집행·정산 등 사업 전반의 절차를 관리·감독(사업관리자)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가. 지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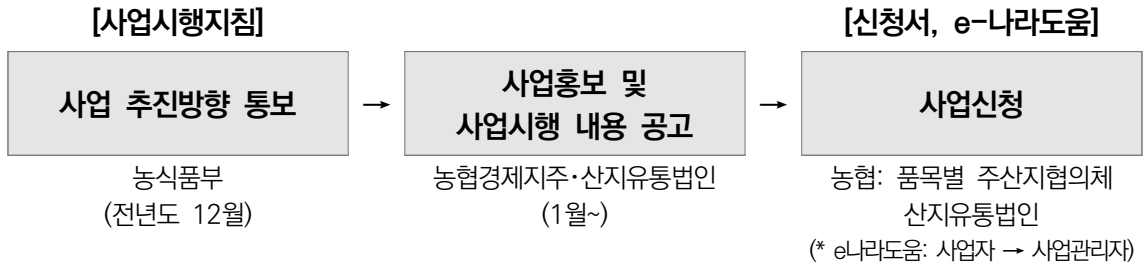
- (농업인 대상) 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에서 지급 요건 발생 확인 후 지원기준 비율(국고 30%, 지방비 30%, 농협 20%, 농업인 20%)에 따라 지급
- (산지유통인 대상) 사업자(산지유통법인)가 지급요건 발생 확인 후 사업관리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정산 후 지원기준 비율(국고 50%, 자부담 50%\*)에 따라 지급
  - \* 지자체의 사업참여 희망 시 자부담분 중 일부에 대해 지방비 부담 가능(최대 30%)

### 나. 지원 유형별 지급기준

- (가격차보전) 품목별 주산지협의체 및 유통협의체는 도매시장 5개년 등급별 가중평균가격의 평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하고, 기준가격의 80% 이내에서 가격하락 보전기준가격을 설정
  - 사업기간 내 도매가격이 보전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차액 보전
    - \* 단, 도매가격이 최저기준가격(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 시에는 최저기준가격까지 보전
    - \*\* 수확기 거래가격과 도매가격 간 시차 발생으로 당해년산 가격 미형성시 산지 공판장, 농협수매 등 가격으로 대체 가능(예: 남도종 마늘은 5월말 거래되나, 도매가격은 전년산 저장마늘 가격)
  - 단, 보전기준가격이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상 해당 품목(작형)의 ‘하락 심각 단계’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주산지협의체 및 유통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하락 심각 단계 가격 이내로 조정 가능
    - \* 지침개정 이후에 해당 품목의 사업기간(수확·출하기)이 진행되는 품목은 동일하게 적용

- (사전면적조절·출하정지) 품목별 주산지협의회 및 유통협의회는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상 해당 품목(작형)의 위기단계별 가격이 ‘하락 심각 단계’ 진입 시 사전면적조절과 출하정지 추진 가능
  - \* 단, 차기 작형의 생산전망 등을 고려하여 하락 심각 단계 진입이 명확하게 인정될 경우에는 주산지협의회 및 유통협의회 의결을 거쳐 산지폐기 추진 가능
  - 세부 지급기준은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농촌진흥청)」의 품목별 경영비 이내에서 설정
- (출하장려금) 운송비, 작업비 등 지원 단가는 민간 실경비 수준으로 설정
  -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상 상승위기 단계에 따라 출하처 다변화 가능
    - \* (예) 상승주의: 농가 자율출하, 상승 경계: 50% 이상 도매시장 출하, 상승 심각: 전량 도매시장 출하
  -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상 상승 경계단계 진입 시 하품(비상품)에 대해 하락 심각 단계 가격까지 출하장려금 지급 가능(차액 보전)
    - \* (예) 병해·결구 미흡으로 인한 맛김치용 배추, 동해로 인한 절단 무 등

## 1. 사업신청단계



## 가. 농협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사업홍보 및 사업 시행내용 등을 신속히 공고
- 품목별 주산지협의회에서는 당해연도 품목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경제지주에 사업 신청('24. 1월 ~)
  - 품목별 주산지협의회는 당해연도 사업비 조성 및 집행 계획, 수급상황에 따른 수급대책 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신청
    - \* 사업비 조성 단가는 평년가격(기준가격)의 20%로 하되, 주산지협의회체의 의결에 따라 사전 사업비 조성 비율은 조정 가능(12~20% 범위에서 결정)
    - \* 국비는 수급대책 발동 시에만 사후적으로 매칭하며, 농협·농업인 부담분은 주산지협의회 의결(농업인 동의 포함)을 거쳐 차기 사업을 위해 자체 적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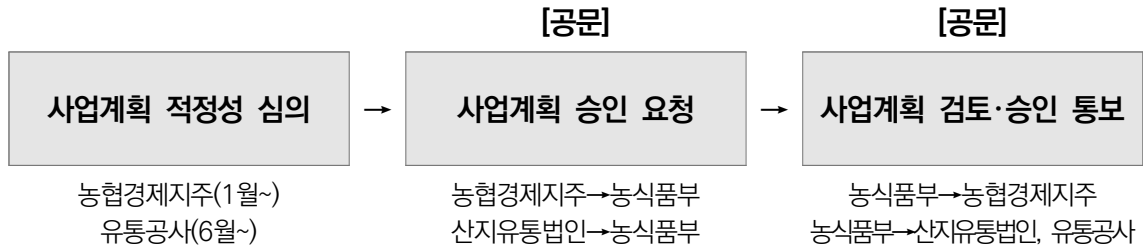
## 나. 산지유통법인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사업관리자에 시달
- 사업자는 산지유통인의 신청 및 배정물량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유통협의회 의결 후 사업관리자에게 e나라도움으로 사업 신청
  - 사업자는 당해연도 사업비 조성 및 집행 계획, 수급상황에 따른 수급대책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유통협의회체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신청
    - \* 사업비 조성 단가는 평년가격(기준가격)의 20%로 하되, 유통협의회체의 의결에 따라 사전 사업비 조성 비율은 조정 가능(12~20% 범위에서 결정)



- 사업자의 지원자격 요건 및 사업추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사업관리자 간 협의(지자체 참여 시 지자체 포함)를 거쳐 사업계획에 규정 가능

## 2. 사업계획 및 승인 단계



### 가. 농협

- 농협경제지주는 신청된 품목별 주산지협의회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농식품부, 해당 주산지협의회 시·도에 사업계획 승인 요청(24. 1월~)
- 농식품부, 시·도는 농협경제지주의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 통보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별 주산지협의회에 사업계획을 확정 통보하고, 사업물량 등 계획 변경 시 즉시 농식품부, 시·도에 변경 계획을 신청
  - 농협경제지주는 각 품목별 주산지협의회 지급요건 발생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불용이 예상되면 품목별 사업비·사업량 등을 변경하여 농식품부,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후 사업 추진
    -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별 주산지협의회의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농식품부, 해당 시·도에 보고
  - 작황 등으로 농업인, 농협 등의 출하 계획물량이 변경될 경우, 사업농협에서는 주산지협의회와 농협경제지주에 변경된 사항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주산지협의회와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량 및 출하계획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요청하여야 함

※ 주산지협의회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 검토(의결) 사항

- 생산단수, 수급조절(출하정지, 면적조절 등) 물량 배분 기준 및 가격차 보전에 대한 사업비 세부집행 방안 등은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에 명시
  - 가급적 동일 품목은 동일 생산단수를 적용하고, 사업비는 주산지협의회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함

## 나. 산지유통법인

-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시달 후 사업관리자는 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지원
- 사업자는 유통협의체의 의결을 거친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보고
  - \* 자체 심의 : 노지채소자금지원 중복 및 제재업체 여부, 포전관리 및 출하계획 등 제반사항, 농협 계약재배 및 수급안정 관련 사업 등에 참여 여부 등 검토
- 채소가격안정제 사업계획
  - 농식품부는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 통보
  - 사업자는 사업물량 등 계획 변경 시 유통협의체 의결을 거쳐 즉시 농식품부에 변경 계획을 신청
  - 사업자는 소속 조합원(회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시기별 약정물량을 이행해야 하며, 위약 등이 발생할 경우 약정 및 유통협의체의 결정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기상이변, 자연재해 등 포전 유실 등 면책 물량 사유 발생 시 사업자는 변경된 사항을 즉시 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통협의체는 면책 여부를 판정하는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결정함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원예작물, 유통

---

### 4-3. 과수, 화훼, 특작



## I 사업 개요

## □ 목 적

-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재해예방 등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 □ 사업내용

- 관수관비시설, 우량품종갱신 등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다만, 미참여 농가는 지원년도 기준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 지원)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실적이 있는 경영체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고품질 생산시설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
- 지원 기준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이차보전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24년 예산 : 94,938백만원(국비 27,125, 지방비 40,688, 용자(이차보전) 90,000, 자부담 27,125)

## □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주체에 제출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
- 신청기간 : '23.10~12월

## □ 대상자 선정

- 사업시행주체는 심사기준표에 의해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하고, 지자체는 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선정 완료 및 신청농가에 통보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장 미 주무관 성원우	044-201-2254 044-201-225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FTA기금관리팀	차장 서승완	061-931-1127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과장 신승곤	02-2080-7586

## II 주요 내용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보조금통합 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 1. 사업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또는 미참여)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사업시행주체·생산유통통합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 [ 지원제외 대상자 ]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시·군 과수발전심의회 등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 다만, 다음 연도에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18년부터는 미등록 필지 포함),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다만,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제79조제7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가 결성된 품목에 한해 다음 해부터 적용)
  - \* 사업대상 품목이 의무자조금 거출 시작된 품목인 경우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면제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가온시설\* 재배 경영체(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 \* 냉해 등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
-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다만, 지원사업의 종류가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21~'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가능) \* '재해예방시설'은 3. 지원대상 참고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다만, 미참여 농가는 지원년도 기준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 지원)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영체
  - 단, 전량 수출 경영체는 참여조직 등 출하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자격 부여
    - \* 경영체가 속한 시군의 사업시행주체를 통해 신청하며, 생산 전량 수출 증빙을 위해 최근 3년간 재배면적(경영체 DB 기준), 생산(비상품 제외) 및 수출실적을 제시해야 함(내수 판매 적발 시 보조금 환수대상)
-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관외 경작자도 지원 가능하며, 사업신청 및 선정시 차별하여서는 안됨

### < 우선지원 >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경영체
- 무병묘 관찰포 선정농가(출하실적 등에 관계없이 품종갱신, 기타사업 등 지원 가능)
-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 (동일과원 또는 대체과원(동일면적)에 원예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타 품목의 과수 식재 가능)
- 산지유통통합조직 참여 대상자
- 배 성장조절제(지베렐린·에세폰 등) 미처리 경영체
  - \* 성장조절제 미처리 경영체는 신청 시 미처리 약서를 작성하며, 사업시행주체는 미처리 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시군 담당자에게 제출
- 농진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고점포함)하는 경영체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대상자 가점 부여



-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황금, 화산, 추황배, 조이스킨 등)을 20% 이상 고집했거나 식재한 경영체
-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영체(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경영체 우선지원
  - \* 심사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한 경영체에게는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의견제출 기회 부여

### [ 선정기준 미달 경영체에 대한 재심사 ]

- ◆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영체에 대하여는 시·군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재심 요청이 가능하도록 체계 구축
  - 사업성취 가능성, 신용도, 기술,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 후 대출기관에 통보
    - \* 심사위원회 : 과수발전협의회, 농정심의회 활용 또는 행정지도기관관련단체 등으로 구성

## 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레이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 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개보수 포함),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 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수분수 식재, 수분수 품종 고집 포함),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팬,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기존 수목의 이식 가능), 방풍수 정비),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 \*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다겹보온커튼, 공동이용설비, 환풍기,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 필요
    - \* 재해예방시설: 관수관비시설, 방풍망시설, 서리우박피해방지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지주시설, 다겹보온커튼,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팬 등 재해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시설에 한정
  - 다만, 전년도 연차평가 우수(2등급) 이상 사업시행주체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아래 지역별·품목별 맞춤형사업 추진 가능
    - 공동이용장비(SS기, 고소작업차, 승용제초기 등), 추가 사업(1개)

### [ 경영체 지원제외 대상 ]

- 1)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타이백 등 다공질필름 등)
- 2)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기, 온풍기, 예초기, 자주형 농산물운반기 등)
- 3)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 4)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 5)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 시 신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 6)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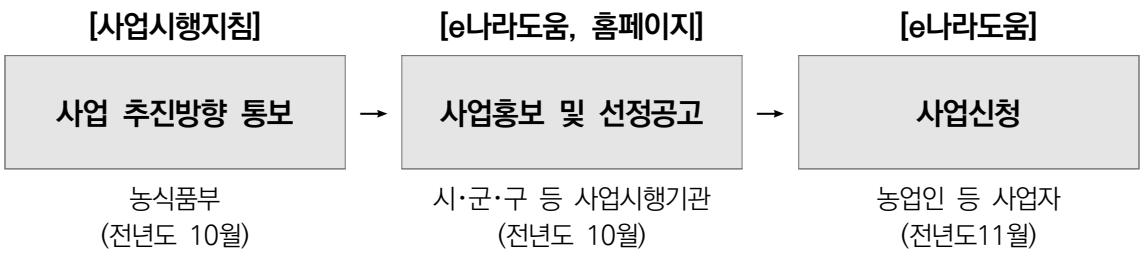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이차보전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포함)
  -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6. 지원한도액 기준

- 사업별 지원 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 Ⅲ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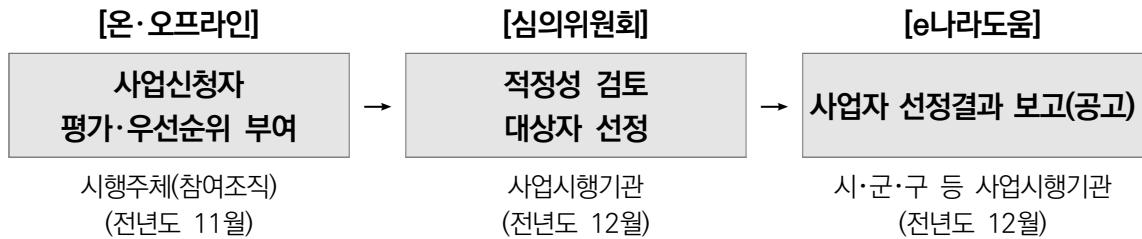
####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 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계약방법\* 명시
    - \* 보조사업 규모가 물품 및 용역구매 2천만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억원 초과(전문공사 제외)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시행주체와 합동으로 원활한 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의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능가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다만,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사업신청 대리 등록, 집행계획·정보입력·집행내역 등록 등 e나라도움 업무대행자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 대리 신청, 피대리인 정보입력, 위임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 정보취약계층 :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표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제출(전년도 11월)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용자 신청자는 거래농협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액 확인하고, 용자금 3천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대출신청자료[별표 1-2호 서식]를 제출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인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

## 2. 사업자 선정단계



### 가. 사업시행주체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참여조직 또는 생산유통통합조직)은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영체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사업량, 중도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추천)(전년도 11월말)
  - \* 시·군단위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시행주체가 우선순위 선정, 도단위 사업시행주체는 시·군통합(참여) 조직에서 우선순위 선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용자금이 3천만원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신청자료 등을 제출토록 안내
- 사업자 선정 안내 시 보조사업 규모가 2억원 초과(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 초과)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사업자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계약방법을 명시
-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신청자가 대출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

### 나. 시·군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사업시행주체에서 추천한 경영체 및 사업시행기관에 신청한 경영체 우선순위 적정성(선정순위 준수 등), 신용조사서 등을 검토한 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며, 보고 시 사업계획 공고 및 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에 분기별로 등록·관리(e나라도움 연계시까지 병행 등록), 시·도 담당자는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영농철 이전에 공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1월말까지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개시 통보를 완료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1) 심사기준표는 표준(안)을 활용하여 지역별, 사업별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
- 2)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 미 이행시 사업계획 지원 제외 등 페널티  
 예) A,B 경영체가 각각 소유한 500㎡의 포도과원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각각 500㎡을 신청 → A,B 경영체에 각각 250㎡씩 나눠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선순위가 빠른 경영체에게 필요사업량 500㎡을 모두 지원(나머지 경영체는 차기 지원)
- 3)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경영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미개시, 포기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최대한 사업대상자 선정 후보자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되 사업대상자 기준 30% 전후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 4)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영체와 사업을 주어진 기간 내에(시군별로 사업완료 기간을 정함) 완료하지 않는 경영체는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됨. 단, 천재지변 등 과수발전협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5)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다만, 자부담금 우선집행(시공업체 계약금, 자재 구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개시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를 생략할 수 있음
- 6) 선정 취소(미개시자 및 미 완료자)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 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함. 또한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지 못한 예비대상자는 가급적 다음연도에 엄선하여 지원됨을 예고하여 행정 및 경영체의 투자 예측성 강화
- 7) 시·군은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으로의 출하실적 등을 감안하여 참여조직 또는 생산유통통합조직단위로 사업비 배분
  - 참여조직 또는 생산유통통합조직은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 선정, 출하 이행관리 등 담당

- 시행주체는 참여조직 관리 및 통합마케팅 추진

**<요건 확인>**

- 관련기관 또는 경영체 등으로부터 계약체결, 이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G4C, 토지대장 등의 검색을 통해 확인

## I 사업 개요

## □ 목 적

- 과수분야 ICT 시설장비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과수를 생산함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

## □ 사업내용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등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 □ 지원내용 및 예산

- 사업별 지원단가는 실단가를 적용, 사업비 상한액 기준은 200백만원
- '23년 예산 : 840백만원(국비 240, 지방비 360, 이차보전 74, 자부담 240)

## □ 사업 신청

- 장소 : 해당 시·군·구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 등록
- 신청기간 : '23.3~4월

## □ 대상자 선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장 미	044-201-2254
		주무관 성원우	044-201-2255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기획부	대 리 김준수	044-931-1013

### 1. 사업대상자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조직단위로 신청한 농가, 수출 농가, 친환경·GAP·재해보험·계약재배 농가, 지역단위 푸드플랜에 참여(또는 참여약정)하고 있는 농가, 산지유통혁신조직 시범사업(또는 참여약정),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등 가점부여
  -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량 범위내에서 사업성 및 요건 등 필수 사항만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지원
-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 \*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 3. 지원대상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 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 지역의 동류 시설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사항임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
  - 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는 지원 제외
    -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원예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되는 시설·장비에 한정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체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기존 소요액을 지원
  -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 한국농기계조합의 품질보증을 득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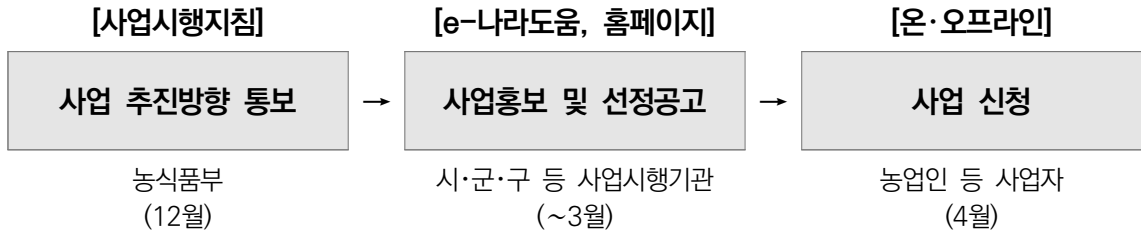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이차보전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 이차보전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표준사업비 : 노지(20백만원/ha), 시설(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0.33ha,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0.33ha)
  - \* 면적 및 시설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자 선정평가 시 의견 및 실소요액을 반영
- 사업비 상한액 기준 : 200백만원
  -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상기 표준사업비 및 사업비 상한액 기준에 제외되며,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기준 및 집행 등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원예시설현대화사업 지침 준용

##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까지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 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3월까지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의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농가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다만,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사업신청 대리 등록, 집행계획·정보입력·집행내역 등록 등 e나라도움 업무대행자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 대리 신청, 피대리인 정보입력, 위임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 정보취약계층 :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사업신청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시행주체에 사업신청서[첨부 1]를 제출(전년도 4월)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이차보전 신청자는 거래능협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액 확인하고, 이차보전금 3천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대출신청자료를 제출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인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

##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군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별첨자료를 확인하여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지원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이차보전금이 3천만원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신청자료 등을 제출토록 안내
  -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신청자가 대출기관에 대출 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
-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사업신청자에 대해 보완 요청 후 2주 이내 다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

-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를 재검토하고,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서 및 별첨자료를 농식품부와 aT(전담기관)에 제출(5월)

### 농식품부, aT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서면 및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6월)

### 세부 심사·평가절차

#### 가. 평가위원단 구성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 신청서류를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 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 나. 서면평가

### □ 제출된 사업 신청서에 대하여 서면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6명 내외로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 필요성,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 □ 평가결과 조치

-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총 26점)를 매기고, 최종 의견을 적합/보완/보류/부적합 중 하나로 표시
  - '적합' : 적합한 사업대상
  - '보완' : 일부 계획 보완 시 적합한 사업대상
    - \* '보완' 대상자는 평가 결과 통보 후 2주 이내에 보완 신청서를 시·군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시·군은 이를 전담기관에 송부
  - '보류' : 서류심사로는 적합성 평가가 어려워 2차 현장평가가 필요한 대상
  - '부적합' : 사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불가

## 다. 현장평가

### □ 서면평가 결과 '보류' 의견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6명 내외(이전 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 시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을 정밀하게 확인

### □ 평가결과 조치

- 보류되었던 평가지표의 점수를 최종 산정하고, 최종 의견(적합/보완/부적합)에 따라 선정 여부 결정

## 라. 최종선정

### □ 최종 의견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상 선정

- 최종 평가결과 적합한 대상자를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
  - \* 최종 평가결과 적합한 대상자 : '적합' 평가를 받은 신청자, '보완' 평가 이후 의견을 반영해 신청서를 보완 완료한 신청자, '보류' 평가 이후 '적합' 평가를 받거나 '보완' 평가를 받은 후 신청서를 보완 완료한 신청자
  - \* '보완' 대상자는 평가 결과 통보 후 2주 이내에 보완 신청서를 시·군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시·군은 이를 전담기관에 송부

- 평가결과 적합한 대상자이지만 선정이 되지 못한 경우 예비대상자로 운영하며, 선정 취소 또는 사업포기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 지자체는 사업자 선정 후 6월 이내 미착수 시 선정 취소 및 대체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8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 \* 최종 선정된 이후 중도 포기한 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마. 선정 농가 교육

- 전담기관은 사업대상자에 대해 ICT 장비 활용 관련 교육 실시(9~11월)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과수생산 및 출하기반 구축

## □ 사업내용

-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수원 개발(관정, 양수장 등),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 등

## □ 지원 자격 및 요건

- FTA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지역 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이내 한정
-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한 지구

## □ 지원내용 및 예산

- 조사설계비 : 274천원/ha(국고 100%)  
기반조성사업비 : 22,613천원/ha(국고 80%, 지방비 20)
- '24년 예산 : 28,540백만원(국비 22,887, 지방비 5,653)

## □ 사업 신청

- 장소 : 신청조직의 장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
- 신청기간 : '24.3월

□ 대상자 선정

- 현지조사 결과 및 시·도별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서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장 미 주무관 성원우	044-201-2254 044-201-2255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기반사업처 기술기준부	차장 최성덕	061-338-5316

## 1. 사업대상자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 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 [ 우선순위 ]

- 1단계 :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 2단계 : 30ha이상 과수 주산지이며, 사업수혜농가들의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 실적이 높은 지구
- 3단계 : 30ha이상 과수주산지이며, 사업완료 후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하는 지구

### [ 지원제외 ]

- 수혜농가 중 농업경영체 미 등록자가 있는 사업 지구
- 토지소유주들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등 이용 동의가 없는 지구
- 마을도로 위주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단지, 공단 등 타 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선정요건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전속출하물량 80% 이상 또는 사업완료 후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생산량의 80%이상 전속출하 약정 등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 최우선 지원



-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 우선지원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 시 가점 부여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가점부여

### 3. 지원대상

- 용수원 개발 : 과수단지 관개용수(암반관정, 양수장 등) 개발
  - 용수이용 시설 : 저수조 및 송·급수관 설치
  - \* 개별 농가별 용수원 개발은 제외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등
- 과원경지정리 : 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시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기본조사비
- 과수기반정비에 필요한 공사비,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부대비 등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기본조사비 : 보조 100%(국고 100)
  - 기반조성 사업비 : 보조 100%(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 2년(연도별 지원비율 : 1년차 30%, 2년차 7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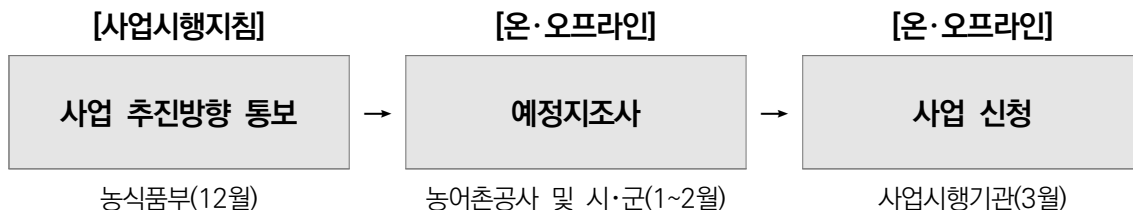
- 지원단가
  - 기본조사비 : 547천원/ha
  - 기반조성 사업비 : 46,991천원/ha
    - I 유형 : 42,292천원/ha, II 유형 : 46,991, III 유형 : 51,690

### <개발유형>

- I 유형(단일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 중 단일공종 사업
- II 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 III 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과원경지정리 사업

### Ⅲ 사업추진체계

#### 1. 사업신청단계



#####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 나. 사업자(신청조직)

- 품목조직의 장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

##### 다. 시·군

- 시장·군수는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및 30ha(10ha)이상 과수재배 주산단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전년도 2월말)
  - 수혜농가들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수출단지 및 GAP 집단 인증 단지 여부, 기부채납 등 토지 이용 동의 및 출하약정, 재해보험 가입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서에 대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 시에는 아래사항을 해당 시·군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함
  - 수혜농가들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GAP 집단 인증 단지 여부, 기부채납 등 토지 이용 동의 여부, 집단화 정도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 과실전문(수출)단지 포함여부와 품목별 생산자 조직 구성 또는 계획 여부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
- 특히 재배품목 여건상 용수량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의 경우에는 용수개발을 지양하고, 농로정비 등 필요한 공종만으로 계획
-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마을회의 등을 통하여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 주민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에 한하여 사업예정지구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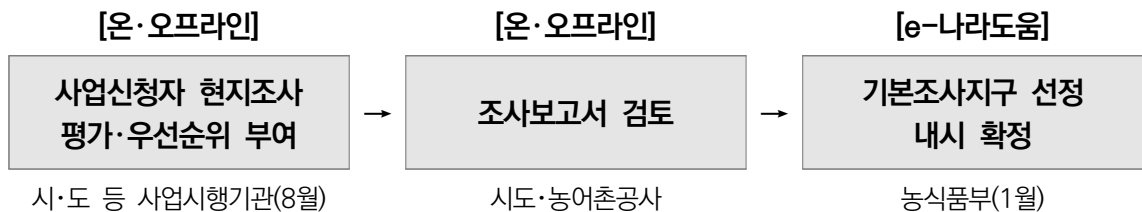
## 라.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예정지 답사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년도 3월말)

## 마.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관할 시·군과 공동으로 예정지 답사를 실시

## 2. 사업자 선정단계



## 가. 농림축산식품부

- 현지 조사대상 지구 선정
  - 현지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
  - 당년도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비를 감안하여 선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지조사결과 및 시·도별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지구 선정

## 나. 한국농어촌공사

- 현지 조사를 통한 실무검토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주요 검토내용 : 지구집단화 정도, 기존 시설물 현황, 사업여건, 기부채납 등 주민호응도, 사업시행주체와 출하약정 체결여부,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사업추진 상 문제점 등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과원 규모를 확대하고 집단화함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 □ 사업내용

- 과원 매매 및 임대차를 위한 용자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과원매도·임대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
- 과원매입·임차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 □ 지원내용 및 예산

- 과원매매 : 제곱미터(m<sup>2</sup>)당 20,000원(과수목 포함)
- 과원임대차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 과수농가 : 5ha, 농업법인 : 10ha
- '24년 예산 : 29,662백만원(국고(용자) 26,960, 국고(관리) 2,702)

## □ 사업 신청

- 장소 : 과원매도신청서, 매입신청서 등 해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연중 수시 신청 가능)

## □ 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접수된 매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장 미 주무관 성원우	044-201-2254 044-201-2255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부	대 리 윤준연	061-338-5905

## 1. 사업대상자

- 과원매도·임대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
- 과원매입·임차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 대상농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실제 이용현황기준)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과원매매사업

#### (1)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2023년도의 경우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자로 하되, 소규모 농가를 우선하여 지원
    - \* 경영규모는 동일세대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과원기준(이하 같음)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농지법」 제2조제3호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농업법인
  - 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이상
  - 과수재배경력 3년 이상인 법인
  - 2030세대



## (2) 지원 제외자

- 과원규모화사업(농지규모화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결과 부적합한 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본인)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허위·담합으로 지원받은 자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 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시설로 전용한 경우와 종전면적으로 자력 확대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지원대상자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과원규모확대를 위하여 주 경작지를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소지 이전 후 지원 가능(주소지 이전은 1회에 한함)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동안 지원중단. 다만, 환매권의 실행 등 경영회생을 이룬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기타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과원규모화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한 자(단, 공사가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를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나. 과원임대차사업

### (1)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원매매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과 같음

### (2) 지원 제외자

- 과원매매사업 지원 제외자와 같음. 다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에도 농지임대차 지원 가능

### 3. 지원 대상농지

#### 가. 과원매매사업

##### (1) 매입대상과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 실제이용현황(사실상 과원)을 기준으로 매입하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후 매입

##### (2) 매입 우선순위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상기 매입대상 과원을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하며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규모가 큰 과원을 우선 매입
  - 과원 폐업지원 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처분 의무기간 내에 있는 농지(과원) 중 과원매입 희망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과원
  - 국·공유의 과원, 담보권실행 등에 의한 경매과원

##### (3) 매입 제외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비용은 매도자가 부담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 가능
  -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과원(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전매제한기간(8년)이 경과되고 채권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원자가 고령 은퇴 또는 전업·이농하고자 하는 자의 과원
  - 매도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
  - 채권확보를 위해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2인 이상의 공유과원으로서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매도하고자 하는 과원. 다만,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잔여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 농지)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토양으로 판명된 후 복구되지 않은 과원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과수경작에 부적합한 과원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매입예정자가 인정(인정서 징구)하고 공사의 채권확보에 지장 없는 경우에는 매입 가능

## 나. 과원임대차사업

### (1) 임차 대상과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 실제이용현황(사실상 과원)을 기준으로 임차

### (2) 임차 우선순위

- 과원소유자가 공사에 임대한 과원으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

### (3) 임차 제외과원

-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비용은 임대자(과원소유자)가 부담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 가능

-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과원(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상환이 완료되고, 「농지법」 제23조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는 과원
- 공사에서 임차한 과원중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만료전 임대차계약이 종료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원. 다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차 가능
- 이하 과원매매사업 매입 제외 과원과 같음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과원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임대차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임대

#### 5. 지원형태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기준

구 분	융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 과원매매	연리 2.0%	연령에 따라 11~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
• 과원임대차	무이자	5~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과원매매 및 임대차 지원한도(매매: 기존 소유규모, 임차: 기존 임차규모 포함)
  - 과수농가 : 5ha
  - 과수를 주 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 10ha
  - \* 공사는 지원대상자의 농업노동력, 전문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과원매매, 임대차 지원대상자별 적정 지원수준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한도 결정
  - \* 과원매매의 상환기간은 과수농가의 연령을 고려하여 약정하고, 농가단위 또는 필지단위 거래 시는 기존소유(임차)규모를 포함하여 다소 초과할 수 있음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방법

### 가. 지원한도

- 과원매매 : 제곱미터(m<sup>2</sup>)당 20,000원(과수목 포함)
- 과원임대차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나. 지원방법

#### (1) 과원매매사업

##### (가)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1인 신청시는 생략)를 정하여 선정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친환경·GAP인증 및 계약재배 농가, 무병묘 관찰포 농가
  -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참여조직 등)와 공동선별·공동계산 등의 방법으로 출하실적이 있고, 출하약정을 체결한 과수농가
  - 지역단위 푸드플랜에 참여(또는 참여약정)하고 있는 경영체
  - 2030세대
  - 전업(轉業)·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코자하는 농가의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매입신청 규모가 작은 자
  - 배(신고품종 한정)농가 지원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황금, 화산, 추황배, 조이스킨 등)을 20%이상 고접했거나 식재한 자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자
  - 자력확대규모가 큰 자, 연령이 낮은 자, 통작거리가 가까운 자, 농업계학교 졸업자 등의 순위로 한다.

##### (나) 공사 매입 대상과원 가격결정,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 ○ 매입가격의 결정

- 과원(과수목 포함)의 매입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공사의 현지조사 가격 등을 감안하여 과원 매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과수목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 이의가 있거나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는 과원(과수목 포함)에 대하여 감정평가 실시(감정평가비용은 과원매도자가 부담)

- 과원가격 현지조사 시에는 이장, 인근주민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

○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매매협의를 완료된 때에는 매매계약을 체결
- 공사가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 및 잔금지급

(다) 공사 매도 대상과원 가격결정,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 매도가격의 결정

-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준. 다만, 경매 또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회수에 의하여 매입한 과원은 시가 기준

○ 매매가격의 체결 및 채권확보

- 공사는 매입신청자와 매매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계약 체결
- 매매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의 부실화 방지
  - 공사로부터 매입한 과원은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매매 계약일로 부터 8년간 전매임대위탁경영 등이 제한되며,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 공사는 타인에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음
- 공사는 매도대금을 분할 수납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과원 외에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가능

○ 매매대금의 납부

- 일시불 : 과원매입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불로 납부
- 분할납부
  -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1년까지 분할 납부
    - ㉠ 농업인 납부기간 = 75 - 지원당시 연령(1월 1일 기준)
    - ㉡ 농업법인 납부기간 : 20년
  - ※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납부방법 : 원금 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후 상환 잔여기간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가능

## ○ 자연재해 등에 따른 납부연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충해로 인하여 과원매매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1년 납부 연기. 다만, 지원받은 필지의 피해가 있을 때 신청가능

## • 원금 및 그 이자 상환기한 순연

- ①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②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 자연재해로 인한 납부연기

- ①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제 정보를 첨부하여 공사에 납부 연기신청
- ②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 • 병충해로 인한 납부연기

- ① 병충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신고
- ② 피해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해인정 승인 요청
-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에 납부 연기신청
- ④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란 피해농가가 피해 당시에 경작하고 있는 과수 재배면적(임차농지 포함)에 대한 피해면적 중 수확할 수 없는 환산면적비(피해면적×피해율)을 말함

\* 과수 유목은 피해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나 유실·매물피해시 피해면적에 포함

## (2) 과원임대차사업

(가) 지원대상자 선정 : 과원매매사업 지원대상자 선정방식 준용

(나) 공사가 과원 임차시 임차료결정, 임차계약체결 및 임차료지급 방법 등

○ 임차기간 : 5~10년

- 임차료의 결정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지역관행 임차료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
- 임차계약의 체결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과수목의 과실수확 가능 연수 등을 고려한 임차 기간 및 임차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차 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과원소유자)이 부담
    - ①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 ②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다만, 임차료 선금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서 징구 불가
- \* 당해 농지의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는 연대 보증을 할 수 없음
- 공사에 과원을 임대한 자(과원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
  -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부과되는 부과금(농업 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제외)과 용자금의 상환금
  -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으로 과원(과수목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다) 공사가 임대하는 과원의 임대료결정, 임대계약체결 및 임차료납부 방법 등
  - 임대료의 결정 : 공사가 선지급한 임차료 총액으로 결정
  - 임대계약 체결 및 채권확보
    - 공사는 임차신청자와 임대차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임대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인의 소유농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보증서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보증서 징구는 임차계약 시와 같음
  - 임차료의 납부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한 과수농가 등은 공사에서 과원소유자에게 선지급한 임차료를 임차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매년 공사에 납부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과원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임차료의 감면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충해로 인하여 임차료의 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임차료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 신청절차 및 피해율 적용기준은 과원매매자금 납부연기 시와 같음
  - 임차료 감면기준

피해율	임차료 감면율	피해율	임차료 감면율
30%~40% 미만	45%	60%~70% 미만	80%
40%~50% 미만	55%	70%~80% 미만	95%
50%~60% 미만	70%	80%이상	100%

## 7.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등록

### 가.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자격

-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1세 이하(2024년도의 경우 196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 과원 경영규모 0.3ha(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 \* 경영규모는 동일세대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과원 기준, 임차농지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다만, 만 62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과원규모화사업을 기 지원받은 농가는 영농승계자 없이 64세까지 신청 가능)
    - \* 과수재배 경력확인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제 또는 이장 등의 확인

#### 〈농업후계인력의 요건〉

- ㉓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 포함)
- ㉔ 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업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업계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이 경우 영농 경력의 제한은 없음)

## 나. 신청자격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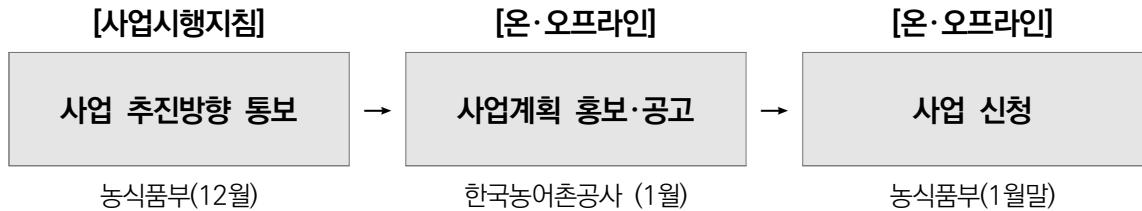
- 1) 정책자금(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 시설자금 및 농기계자금 등)을 지원 받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의 사원, 주주, 조합원
- 2) 허위·담합 부당지원을 받아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
- 3) 사후관리위반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가 위반사유 발생 이전으로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자
- 4)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본인)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5) 경영체 단위로 쌀과 밭작물과 중복되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를 신청하는 자

## 다. 대상자 등록

- 추진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등록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등록방법 : 신청자격 만족 시 등록
  -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

## ① 과원규모화사업

## 1. 사업신청단계



##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목표, 재정투입 계획 및 지급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 지침을 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까지)

## 나.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사장(각 지사 포함) 명의로 전문지, 공사 홈페이지 및 공사 관할지사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1월말)

## 다.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과원매도신청서, 과원매입신청서 등 해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사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및 농지은행포탈([www.fbo.or.kr](http://www.fbo.or.kr)) 자료실에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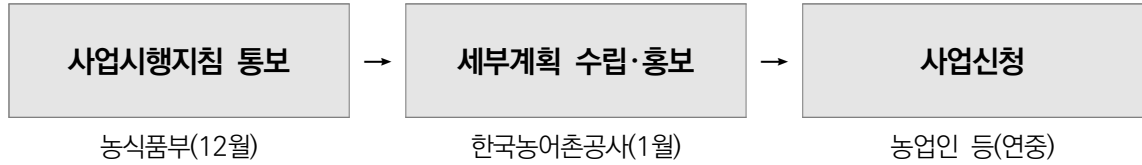
## 2. 사업자 선정단계

## 가.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접수된 매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② 전업농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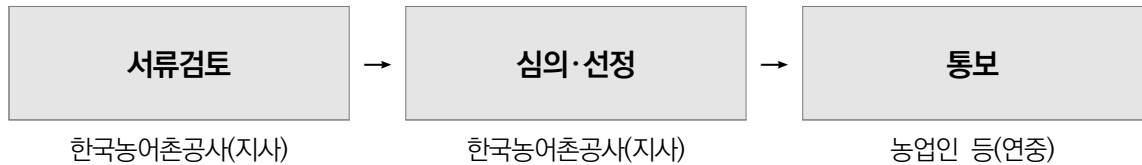
### 1. 사업신청단계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농지은행포탈([www.fbo.or.kr](http://www.fbo.or.kr)) 자료실 및 공사 홈페이지 (<http://www.ekr.or.kr>) 주요사업에 게재

### 2. 사업자 선정단계



○ 선정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기술센터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일 까지 통보

## I 사업 개요

## □ 목 적

- 고품질 절화류 생산유도 및 유통과정의 신선도 유지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 사업내용

- 절화류 습식유통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 습식물통, 습식대차, 수명연장제, 화훼포장망, 습식용기 전용 절화 결속기, 절화 포장용 필름

## □ 지원 자격 및 요건

- 화훼류 습식유통 실적이 있거나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화훼생산자단체 및 화훼농가에서 공판장으로 출하물량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자: 의무거출금 미납자(의무거출금 납부확인서 제출)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절화류 습식유통 기자재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 자부담 50%(부가세 사업자부담)
  - 습식물통 30천원/통, 습식대차 900천원/대, 수명연장제 300천원/개(10리터)  
화훼포장망 13천원/망, 자동결속기 4,000천원/대, 반자동결속기 1,000천원/대,  
포장용필름 130원/장
  - \* 기준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 거쳐 진행
- '24년 예산 : 70백만원

## □ 사업 신청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사업센터에 「습식유통사업 지원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증빙서류 : 습식유통사업 지원신청서(출하계획서 및 습식지원품목 기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 정관, 통장사본, 절화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
- 신청기간 : '24. 2. ~ 3.(선정공고 기간내), 연중(국고보조 예산잔액 발생시)

## □ 대상자 선정

- 화훼사업센터는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저온습식유통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중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농가에 통보
- 사업자 모집결과 국고보조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습식유통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 및 지원기준 심의 의결
  - 직전년도 습식출하실적, 소비자 선호도 등 기준으로 심의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서기관 허창각 주무관 이승원	044-201-2261 044-201-2262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사업센터	차 장 주 임	02-570-1842 02-570-1841

## II 주요 내용

### 1. 사업대상자

- 공판장에 습식출하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화훼류 습식출하 단체 및 농가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제19조의 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 2. 지원자격 및 요건

- 화훼류습식유통 : 화훼류 습식유통 실적이 있거나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화훼생산자단체 및 화훼농가
  - \* 단, 공판장으로 습식출하를 하는 물량에 한함
  - \* 지원제외 대상자: 의무거출금 미납자(의무거출금 납부확인서 제출)

### 3. 지원대상

- 절화류 신선도 유지를 위한 화훼 습식유통 기자재
  - 습식물통, 습식대차, 수명연장제, 화훼포장망, 습식용기 전용 절화 결속기, 절화 포장용 필름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절화류 유통시 신선도 유지를 위한 습식유통 자재 임차 및 구입비 지원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화훼류습식유통: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출하의무물량: 사업대상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또는 농협 화훼공판장으로 습식출하하는 물량을 직전년도 습식출하물량 대비 10% 이상 확대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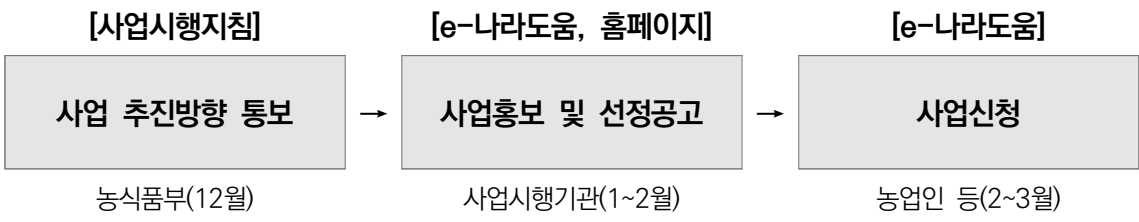
-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 거쳐 진행

\* 습식물통 30천원/통, 습식대차 900천원/대, 수명연장제 300천원/개(10리터) 화훼포장망 13천원/망, 자동결속기 4,000천원/대, 반자동결속기 1,000천원/대, 포장용필름 130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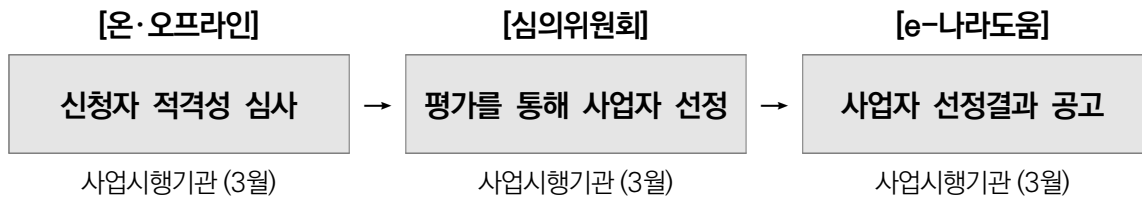
###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보취약계층으로 지정 및 업무대행 지정 불가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농식품사업이 용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할 수 있다.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해야 함.

## 2. 사업자 선정(※공모사업인 경우)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확인**해야 함
  - \* e나라도움을 통한 자격검증,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 e나라도움을 통한 수혜이력,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이력을 확인하여 중복·편중 지원 방지
  - \*\*\* 유사자금의 경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등
- 유사자금\* 지원제한(「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
  - \*\* 「기본규정」 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서 검토 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 1)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 2)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3)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 4)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규정」 제35조제7항)
  - 5) 기타 사업시행지침에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 경우
-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기본규정」 별표 6)에 적합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안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 사업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 I 사업 개요

## □ 목 적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 □ 사업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 관수시설,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등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2023년도에 직파했거나 2024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6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비료살포기, 향타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 지원 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 '23년부터 FTA기금 내 용자만 농특회계 이차보전으로 전환
- 2024년 예산 : 1,260백만원(국비 1,260, 지방비 1,890, 용자(이차보전) 675, 자부담 1,260)

###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
  - \*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 □ 대상자 선정

- 시·도에서 사업계획을 심의 후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인삼은 품목 특성상 이동경작, 원거리 경작이 많으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대상자 인삼재배지의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김동훈 주무관 송미선	044-201-2238 044-201-2239
시·도	인삼산업 담당과	인삼산업 담당자	-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류상현 차 장 박정윤	02-2080-7561 02-2080-7568

##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 [지원제의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인삼산업법」에 따른 경작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

##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23년도에 직파했거나 2024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GAP(친환경 포함) 인증(GAP 인증 신청농가 포함),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또는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만 선정
    - \*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는 인삼농협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에 확인
    - \*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는 사업완료시까지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 제출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 비료살포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 상기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식재년도에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만 지원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의 90% 지원

###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지원대상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 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 열거된 항목 이외는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재배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설치(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제2022-104호, 2022.9.30)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을 변경 적용 가능(기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미보증 제품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시 철재지주 구입 및 현물 확인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함. 다만, 지원받은 경영체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시·군에서 사업비 환수 조치
- 사용용도 :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구입 자금

###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금융기관 자금(이차보전)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용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용자(이차보전)\* 조건 :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23년부터 FTA기금 내 용자만 농특회계 이차보전으로 전환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6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관정 관련 사업비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지원
- 방풍망시설 : 개소당 2ha이내(6백만원/ha)
- 야생동물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5백만원/ha)
- 도난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이식기·파종기·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5백만원 초과 기계 구입시라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 다만,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구비
  - \* GAP(친환경 포함)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만 지원

## 6.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 사업장(농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 가내시 통보(2023년10월)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2023년12월)
- 시·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배정 통보(2024년3월)

##### 농업경영체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2024년2월22일까지)
- 용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
- 농업경영체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서, 인증기관 사후검사결과 등 추진상황 제출
  -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
  - \*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 2. 사업자 선정 및 배정 단계



##### 지자체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한 후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및 그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월말)
- 인삼은 품목 특성상 이동경작, 원거리 경작이 많으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대상자 인삼재배지의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 사업대상자의 자격 요건 확인 등은 지자체간 협조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자에 안내 및 대출취급은행(농협은행)에 용자 실행 요청(3월)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신청내용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지원금액 배정 및 사업비 교부 결정(3월)

### 대출취급은행(농협은행)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 배정(안)에 따라 대출안내 및 실행 준비(3월)

## I 사업 개요

## □ 목 적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 □ 사업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법인체 지원요건(전년도 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화재·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지원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노후재배사 개·보수, 노후기자재 교체·구입
- 지원 기준 : 국비 20%, 지방비 30%, 용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 용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 기준으로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 \* 버섯종균배양시설은 법인, 개인 1,200백만원, 팡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수출업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 '24년 예산 : 7,300백만원(국비 1,460, 지방비 2,190, 용자규모 1,032, 자부담 등 2,618)

## □ 사업 신청

- 장소 : 각 시·도(시·군)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담당부서
- 신청기간 : 사업시행 전년도 7월 말까지

##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항목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비 확보 가능성, 사업착수 가능성
- 선정 제외
  - 동일사업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에 따라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유사자금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사업포기 :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이월 : 사업완료 이후 향후 2년간 지원 제한
- 선정기준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전년도 8월말)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최수빈	044-201-2240
		주무관 이해빈	044-201-2242
지방자치단체	특용작물 담당과	특용작물 담당자	지자체 문의

## II 주요 내용

###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법인체 지원요건(전년도 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화재·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지원

###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 구입(유통·가공 포함) 및 교체 (※신규시설 지원은 제외하나,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 지원 가능)
  - \* 비닐재배사 개·보수 또는 비닐재배사 기기구입 및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재배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버섯 등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기기 구입 및 교체
  -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 증축은 재배사에 한해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 \* 종균의 보급·판매를 위해 설립된 종균배양센터는 지원 불가
- 버섯 종균배양시설 노후시설 교체 또는 신축
  - \* 종균배양시설물이 기존에 있거나 신축할 경우 사업비 전부를 시설비로 지원 가능
- 냉·풍해방지, 관수 시설, 차광막 시설 등
  - \* 차광막 교체 등 소모성 자재는 지원 불가(단, 차광막 시설 신규 설치 시 차광막 지원 가능)
- (버섯)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건조장치 포함), 탈병기, 자동입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위생과 관련된 기기 등
- (녹차) 채엽기, 건조기, 덩음기, 유념기, 분쇄기, 포장기 등
- (약용작물) 세척기, 건조기, 절단기, 선별기, 석발기, 포장기, 탈피기 등
  - \* 녹차·약용작물의 경우,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 토지매입비, 임차료,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 농자재, 자주식 농기계 등 지원 제외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하우스형 재배사(양송이 제외) 등
  - 자주식 및 그에 장착하는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 자재,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유통·가공시설 제외
  -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 농·임산물은 구분하지 않으나 중복 지원은 배제(※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해 산림청 별도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안내하고, 동 사업으로 신청시 후순위 선정)
- 약용작물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약용작물로 등재된 것으로 한함
  - ※인삼 등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제외

#### 4.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금융기관 자금(이차보전)
- 지원형태 : 국비 20%, 용자(이차보전)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 \* 용자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용자조건 : 고정 연이율 2.0%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변동금리 : 최초 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

- \* 대출은행 : 농협(용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총사업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은 3.3㎡당 100만원 기준  
(단, 버섯종균배양시설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1,200백만원, 팡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팡이버섯을 수출하는 팡이버섯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 \* 사업 신청년도에 수출실적 확인 필수 / 사후관리 기간동안 품목 전환 제한
- 장비 및 기기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60% 이내 지원(법인에 한해 적용)
  - (예시) 총사업비 1,000백만원인 경우, 재배사 개·보수비 등 400백만원, 장비·기기 구입비 600백만원 이내 사업추진
  -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기기)만 구입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법인 600백만원, 농가는 200백만원(아래 <예시> 참조)
  - \* 자부담은 추가 부담 가능, 지원 상한액은 총사업비 기준의 지원 비율 적용

**<예시>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 및 기기 구입시 지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최대규모	국비 (20%)	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법 인	600	120	180	180	120
농 가	200	40	60	60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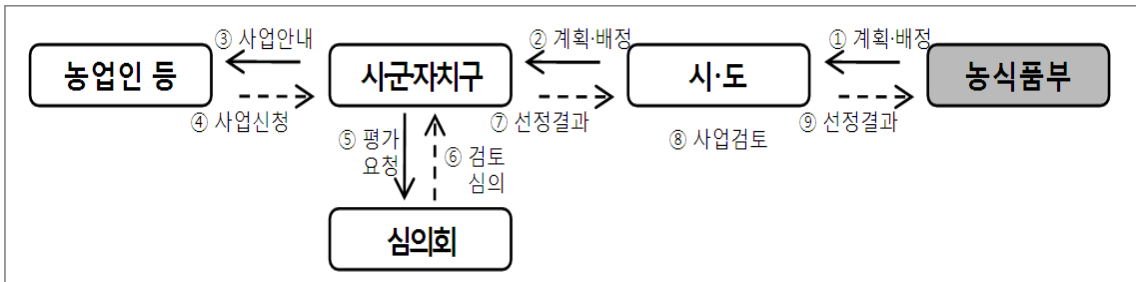
## 6.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 Ⅲ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 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

#### 1. 사업수요 파악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사업수요 파악 요청(전년도 3월)

##### 시·도

- 시·군에 사업수요 파악 요청(전년도 3월)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수요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5월)

##### 시·군

- 시·군은 사업수요를 파악하여 그 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시·도에 제출(전년도 4~5월)

#### 2.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 시달(전년도 12월)
  - 특용작물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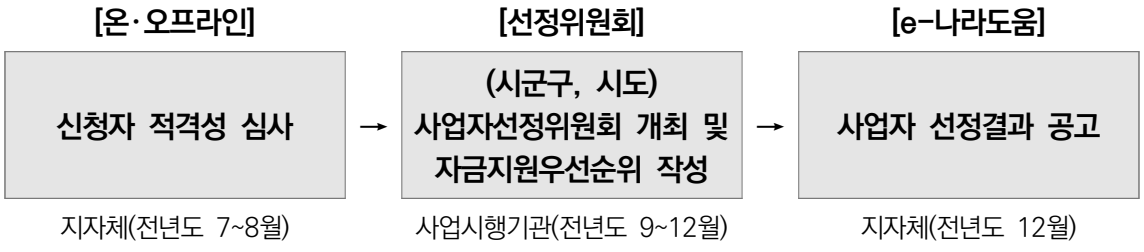
## 시·군

- 특용작물(버섯, 약용, 녹차 등)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지침(규정) 위반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등 관련 사실을 검토한 후 사업신청 서류, 선정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 사업 점검표(붙임 제1호 서식)에 따라 적정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기준표(붙임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 산림버섯 등 임산물(산림청 소관 임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인 경우 임산물 담당부서에 중복 사업 신청 여부를 확인 후 사업 진행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7월)
- 신청서 제출기관 : 각 시·도(시·군)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용자 및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 및 시·도 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 \* 사업신청 시 신용조사서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3.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가내시 결과를 토대로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0월)
- 시·도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1월)
- 시·군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와 농식품부 예산확정 결과를 검토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1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11월)
    -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의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전년도 12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착수 시도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원예작물, 유통

---

### 4-4. 유통, 가공 효율화



## I 사업 개요

## □ 목 적

- 선별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 □ 사업내용

- 기존 APC 선별시설 등 증설 보완, 전처리·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기존 운영 중인 APC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2천톤 이상의 과일전문 APC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한도 : 700백만원 내외/개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24년 예산 : 1,700백만원(국비 510, 지방비 510, 자부담680)

## □ 사업 신청

- 장소 : 신청조직은 사업계획서 작성 후 시·군에 제출
- 신청기간 : '24.1월

## □ 대상자 선정

- 시·도지사가 자체 평가하여 우선순위 결정 후, 농식품부 주관으로 세부 심사·평가 실시 통해 최종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장 미 주무관 성원우	044-201-2254 044-201-225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기획부	대 리 김준수	061-931-1013

### 1. 사업대상자

-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우선선정 〉

- \* 과실전문APC 운영협의회에 참여하는 조직 우선선정
- \* 수출전문조직(원예전문단지 지정) 우선선정
-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선정 심사 시 가점부여

###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전처리·선별·후처리·가공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포장·가공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합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 \* 각 항목별 사업비 책정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단가)를 활용 하여 산출



#### 4. 지원기준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기간 :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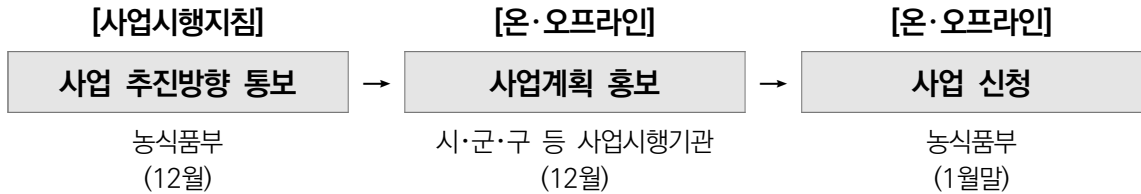
#### 5. 지원한도액 기준

- 지원단가 : 700백만원 이내/개소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Ⅲ

## 사업추진체계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1월말)

###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군

- 사업자(신청조직)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농정 관련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시·도에 제출(2월말)
  - 신청시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시 첨부물로 제출

#### 시·도

- 시·도 원예산업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평가기준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3월말)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별지 1~3 서식>

\*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등 포함 제출

### 심사항목 외 시·도지사가 고려할 우선순위

- ①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 생산유통통합조직, 전국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참여조직, 수출 전문조직
  - \*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방지, 운영능력이 검증된 사업자를 선정
- ②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경영일지)의 기록 실적이 양호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는 법인

원예작물,  
유통

4-4

가  
유  
공

효  
율  
화  
통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별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현장실사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5월말)

## 세부 심사·평가절차

###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은 현장실사 평가 자료로 제공

###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현장실사 평가 실시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 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단 구성 : 5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 시 반영
    - \* 심사평가기준 : [별지 3호 서식] 참조

####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평가결과 및 사업비 조정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 선정

#####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 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I

## 사업 개요

원예작물,  
유통

4-4

가유  
공효율  
확  
통

## □ 목 적

-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 지원

## □ 사업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 원예산업 발전계획 및 거점 스마트 APC 구축 및 광역화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한 지자체 또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대상 지자체는 원예산업 발전계획에 APC 구축 계획을 포함
- 사업부지 미확보 및 APC 지원시스템 미사용 조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규모
  - 신규시설의 경우 최소 25~80억원 내외(푸드플랜 APC 5~40억원 내외), 보완 시설의 경우 최소 5~80억원 내외
- 지원내용
  - 감리비, 토목·건축 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ICT 활용 시스템 등 APC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24년 예산 : 70,000백만원(국고 21,000, 지방비 21,000, 자부담 28,000)

## □ 사업신청

- 장소 : APC 위치한 시·군·구에 예비신청서, 기본요건 점검표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기간 : 예비신청(전년도 2월), 본 신청(전년도 7월)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정성수	044-201-2223
		주무관 김대영	044-201-222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산지유통부	차 장 서용희	061-931-1034
		과 장 김준성	061-931-1054

##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자체, 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하여야 함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지원자격

- 지자체 원예산업 발전계획 및 거점 스마트 APC 구축 및 광역화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한 지자체 또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지역별 1회 지원에 한함

### 나. 지원요건

#### (1) 기본요건

- 일반 APC : 지자체(공공유형) 또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APC 소재지의 지자체 원예산업 발전계획 및 거점 스마트 APC 구축 계획 수립 필요

- 푸드플랜 APC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에 선정된 지자체

\* APC 소재지의 지자체 원예산업 발전계획 및 거점 스마트 APC 구축 계획 수립 필요

#### (2) 시설규모

- **보완시설** : 보완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고 최근연도 연간 가동일수가 150일 이상인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농산물산지유통센터(330㎡이상)의 개보수(상품화설비 교체 가능) 및 증축(부지를 달리하는 시설확충 포함)

\* 기존시설에 대한 단순 리모델링(사무실, 식당, 회의실 등 비상품화시설의 개보수 및 인테리어공사) 등은 지원 제외

\* 가동일수 산출기준 : 집하·선별·포장장 등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

\* 공공유형은 보완시설 개보수만 지원 가능(신규시설 지원 불가)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5억원 이상이고 연간 최소 200일이상 가동 가능한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330㎡ 이상)가 없는 사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
    -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는 보완시설로 본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최종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다. 별도요건

- ※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이상
  -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 라. 지원제한 기준

-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은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 중단(보완시설은 지원 가능)
  - 단, 대형 APC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 가능
    - ① 전년도 처리물량이 당초 계획물량 이상 처리, ② 가동일 수가 250일 이상, ③ 원예농산물 기준 취급액 100억원 이상
  - \* 대형 APC : 과수거점APC, 원예브랜드APC, 총 사업비(부지구입비 제외, 보완사업비 포함) 8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개별 건물 포함) 10,000㎡ 이상인 APC
- 신규 일반APC 설립 시·군은 향후 3년간 동일품목에 대하여 대형APC 지원 중단
- 보완사업자는 최종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이월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역(시·군)도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APC 지원사업의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15년도 사업부터 1회로 적용)
- APC 관리카드 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는 시설 보완지원 제한
- APC 지원시스템 미사용 조직은 사업 신청 및 지원 제한

### 3. 지원대상

-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를 취급하는 경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5호, 제6호)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감리비 등 : 감리비 및 사업추진 컨설팅 등
  - \* 사업추진 컨설팅은 30백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함
  - \* 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인허가접수도서, 선별장비 배치도 등)는 사업비 외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 내 기반공사(파일공사, 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 토목공사 등
  -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 증축·개보수 사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는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예냉고, 차압송풍시설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큐어링 시설, 가공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 수확 기계화에 대비하여 대용량 처리를 위한 공간 및 작업장 확보할 것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상품화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투입·선별·포장기, 결속기, 봉합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디파렛타이저, 세척기, 건조기, 소포장기 등
- 가공시설·장비류 : 신선편이시설(세척, 급식 식자재 등), 가공시설(잼, 주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등
  - \* 발농업기계화우수모델 참여지역의 경우 수확 기계화 면적을 고려하여 벌크단위 수집·저장을 위한 철재팔레트 등 매입 비용 지원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기 등
  - \* 산지유통센터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별표5,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정을 받아야 하며, 에너지 저감(고효율) 시설·장비를 도입해야함.
  -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시스템
  - 선별·세척 등 설비별 IoT센서, IQF(급속동결) 설비
  - QR, 바코드 및 RFID(생산·유통 이력관리), 클라우드서비스 APC표준시스템, ERP(통합관리·지원시스템) 등
  - 디지털 정보 생산기기(계근대, 선별기 등)의 구매·보완 및 APC 지원시스템 연계
    - \* 디지털 정보 생산기기 구매·보완 시 반드시 APC 지원시스템과 연계하되, 연계 불가사유(예: 국외 기기, 제조업체 파산 등)가 발생한 경우 세부사업비 심의 전에는 aT와 협의하여 농식품부에서 승인하고, 세부사업비 심의 이후에는 aT와 협의하여 시·군에서 승인
    - \* API 통한 디지털 생산기기-APC 지원시스템 간 정보연계 방법은 aT가 배포한 Open-Api 서비스 가이드 참조 < APC 지원시스템 포털(smartapc.or.kr)에 해당내용 공지 >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국고 50%, 지방비 10%, 자부담 40% 지원조건은 예산, 사업추진 및 지자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 \* 공공유형은 국고 50%, 지방비 50%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에 따른 시설은 신규설치 가능(연간 2개소 내외,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보조율은 국고 40~50%, 지방비 50~60%로 지원가능)

\* (지방비 내 부담비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시도 50%, 시군 50%)을 준수하는 지자체 우선 선정

○ 사업기간 : 1~2년

○ 연차별 국고지원 : 사업계획 평가결과, 예산 확보·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정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사업비(총사업비)

- 신규시설 : 최소 25억원 ~ 80억원 내외(푸드플랜 APC 5억원~40억원 내외)

- 보완시설 : 최소 5억원 ~ 80억원 내외

\* 단,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규모, 원물조달 능력, 취급품목 등에 따라 사업비 증액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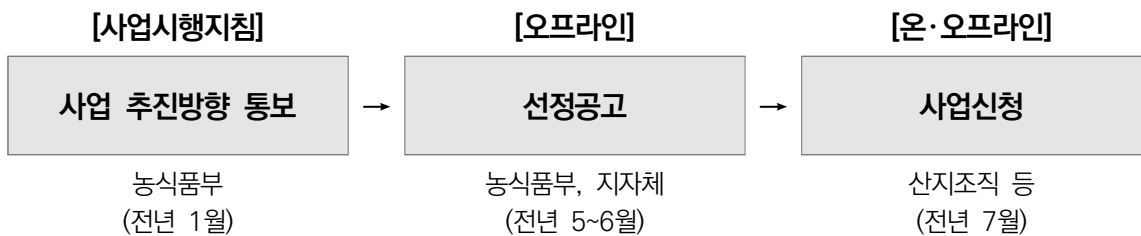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보조사업자는 사업자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사업자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집행, 집행내역 검토, 정산보고, 반납 등을 시행하여야 함

\*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참고

###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자

#### ○ 예비사업 신청('24.2월)

- 차년도(2025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해당 시·군에 예비 사업신청서 제출

\* 예비사업을 신청하는 보완사업자 중 개보수 추진사업자는 aT의 사전진단을 신청하고, 신청자의 사전진단 결과를 확인하여 우선 선정(예비사업 미신청 사업자에 대해 선정 평가 시 감점 조치)

#### ○ 본사업 신청('24.7월)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 농협조직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농협경제지주 산지유통부 검토의견 첨부 필요

- 거점 스마트 APC 구축 계획은 본사업 신청기한 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제출

###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 >

①사업계획서 ②기본설계도 및 조감도 ③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APC 의제) ⑥토지등기부등본·지적도·토지대장\* ⑦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⑧토지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이용) ⑨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전년도 전문품목 취급액, 전속취급률 등) ⑩농정심의 결과(원예산업발전 거버넌스 회의결과로 대체 가능) ⑪ 지방재정 투융자심의 결과\*\*

\* 토지가 법인명의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추가제출

- \*\* 지방재정 투융자심의 결과를 제출하여야하고 해당연도 총 사업비 20억원 미만 사업은 생략 가능
- ※ 농협사업자의 경우 농협 경제정보시스템 상 전산출력 자료 인정
- ※ 보완사업 중 개보수 사업자는 토지관련서류(⑥, ⑦, ⑧)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대체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를 첨부자료로 제본 제출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어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의 가계약체결 증명서 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단, 정책자금 담보제공은 예외)
-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 \* 본 지침 內 Ⅱ 주요내용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다. 별도요건 참조

### 시·군

-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시·도에 제출
  - 승인된 원예산업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량 범위 내에서 APC시설 설치 희망조직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신청서를 검토 후 제반 증빙자료(농정심의회 결과 필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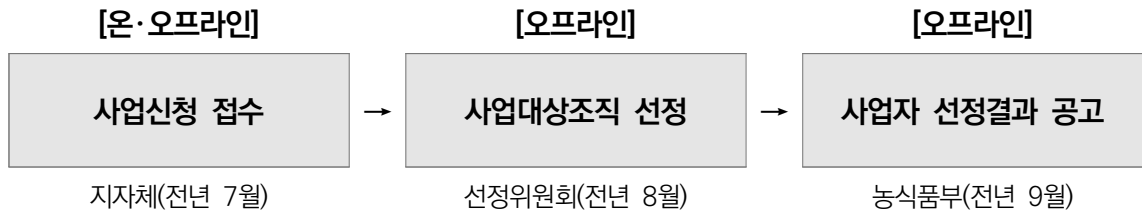
-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aT에 제출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aT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시·도는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신청서를 aT에 제출

#### < 기본요건 검토내용 > ☞ 기본요건 미 충족시 신청 제외

- 원예산업발전계획 및 거점 스마트 APC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한 지자체,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동일권역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 제외(보완시설 지원 가능)
- 사업포기 또는 허위서류 제출 사업자는 향후 5년간 지원 제외
- 농정심의회 결과 제출 여부(원예산업 거버넌스 회의결과로 대체 가능)
- 재산제한 처분 위반 및 지방비 본예산 미확보 여부

## 2. 사업자 선정단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한 예비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을 사전 점검(협조 : 농협경제지주)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로 통보(4월)
  - 필요시 사전진단 컨설팅 실시(aT)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8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진행
    - \*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고 외부전문가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10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
    - \* 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법령 준용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 시 선정
    - \* 서면평가(70점) → 발표평가(80점) → 최종순위 결정(서면 30% + 발표 70%)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 2단계 : 서면평가 〉

- 선정위원회에 의한 서면평가(8월)
  - 주 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선정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 3단계 : 발표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8월)
  - 주 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선정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 부여 시, 최종순위 결정 대상으로 선정

### 〈 최종순위 결정 〉

- 최종순위는 서면평가 30%, 발표평가 70%를 반영하여 결정
  -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관련 APC 사업자는 서면평가 30%, 발표평가 70% 반영 후 60점 이상 시 최종순위 결정 대상으로 선정

### 나. 예비대상자 선정

- aT는 평가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농식품부→지자체, 9월)

### 다. 사업비 심의·조정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9월)
  - 주 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기본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기본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 사업시행 前단계(사업비 심의조정 후~보조금 교부결정 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업비의 합계가 총사업비의 30% 이상인 경우는 aT의 타당성 검토 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 사업내용

- 수급변동이 큰 주요 채소류(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상시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설치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대상 품목 : 노지채소류 중 주요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해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 출하조절시설 지원·관리 또는 출하조절시설 운영계획을 지자체 원예산업발전계획에 포함하거나 연도 내 포함할 계획이 있는 지자체
- 의무자조금 가입대상 품목의 경우 거출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대상 : 저온저장시설, 예냉·예건시설, 가공시설 및 장비, 위생설비 및 장비, 선별시설, 포장장비 등
- '24년 예산 : 5,200백만원  
\* 2년차 1개소 2,000백만원, 1년차 2개소 3,200백만원(개소당 1,600백만원)
- 지원 기준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총 2년, 연차별 50% 지원)

## □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서(증빙서류 첨부) 제출: 지자체(시·군·구)
- 선정 방법 : 지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추천한 사업대상자 중 공개발표 평가
- 신청 기간 : '24년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 시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서기관 배민식 주무관 김형래	044-201-2232 044-201-2233

##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권소사업 가능)
  - ※ 다만,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 관리기간(저온시설 : 10년)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 품목: 노지채소류 중 주요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해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 \* 저장시설 유효기간에 사업신청 품목 이외의 품목을 저장할 경우에는 농식품부 사전 승인 필요
  - 배추, 무: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5천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10천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건고추: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3백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6백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마늘, 양파: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마늘 1천톤, 양파 3천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마늘 2천톤, 양파 5천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비를 권장함
- 출하조절시설 지원·관리 또는 출하조절시설 운영계획을 지자체 원예산업발전계획에 포함하거나 연도 내 포함할 계획이 있는 지자체
- 의무자조금 가입대상 품목의 경우 거출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3. 지원대상

- 저온저장시설, 예냉·예건시설, 가공시설 및 장비, 위생설비 및 장비, 선별시설, 포장장비 등
  -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포함 가능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저온저장시설 및 예냉·예건시설, 가공시설, 위생설비 및 장비 등 출하조절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부지매입비 제외)
  - 저온저장고 운영에 필요한 운반장비(지게차, 운반차량, 운반구, 파레트 등), 컨설팅(3천만원 이하), 설계, 감리, 성능검사 및 감사 비용 등 포함

### 5. 지원형태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연차별 50% 지원)
  - 지원사업자는 공급 불안에 따른 정부의 출하조절 명령 시 비축물량을 가락시장 등에 우선적으로 상장하는 등 출하조절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 출하조절시설: 주요 채소류(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연간 월별 비축의무량을 상시 비축하여 정부의 출하명령을 이행하는 시설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총사업비 100억원 기준)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 고
			신규	개보수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저온저장시설	3,300㎡	4,000	신규의 5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온저장시설: 120만원/㎡</li> <li>■ 예냉시설: 12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필요</li> <li>■ 시설 및 장비 규모는 품목 특성, 지역 여건 및 사업비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li> </ul>
	예냉·예건시설	330㎡	400			
	가공시설	3,300㎡	4,000			
	위생설비 및 장비 등	-	1,600			

※ 위 사업비는 국고, 지방비, 자부담을 합한 총사업비이며, 사업 수요에 따라 개소당 100억 이내에서 총사업비 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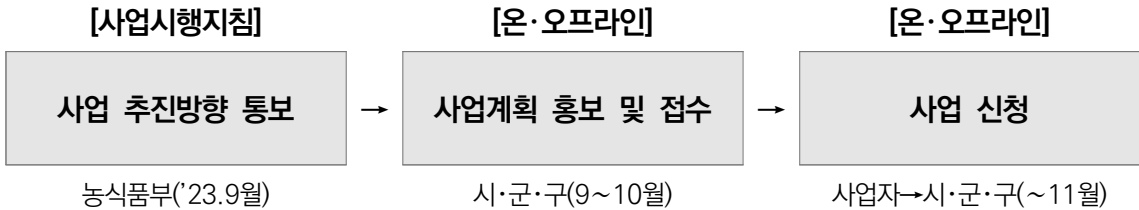
### 【참고사항】

- 상시 출하조절 등 출하조절시설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가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 산출근거 제시
- 저온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등의 건축, 기계설비 기술 검토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경제지주와 협의
  -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에 관하여 위탁운영주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

### Ⅲ

## 사업추진체계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시달(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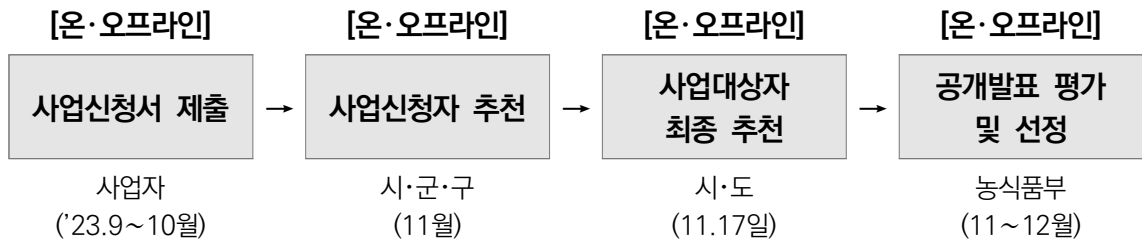
#### 사업자(신청조직)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체**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지자체(시·군·구)에 제출(10월)
  - \* 운영주체가 농협인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농협경제지주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 ※ 부지확보 증빙 : 사업자 소유 토지등기부 등본, 부지 매매계약체결 또는 가등기 완료에 한해 인정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품목별 취급물량 증빙서류, 관할 시·군 생산량 또는 출하량, 계약재배실적 증빙서류 등
  - \* 사업계획서(2개년): 사업목표, 자금 투자계획, 시설부지 확보계획, 사업추진 산지여건, 자체 계약재배 등 물량확보 계획, 취급물량 확대 계획, 추진사업 연계 시설활용 계획, 조직화 현황, 주산지 협의체 구성 및 수급관리 계획, 자체 수급관리 프로그램(고정 수요처 확보 및 교육 포함) 등
  - \* 기존 법인 이외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 완료

#### 농협경제지주

- 회원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원물확보 및 비축 가능성 등 사업타당성)을 회원농협에 통보

## 2. 사업자 선정단계



###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 지자체(시·군→시·도) 심의위원회에서 <붙임1>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 농식품부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품목별 산지 여건, 수급관리 능력, 주산지 중심 협의체 운영 및 수급관리 프로그램 등을 종합 평가

### 시·군·구

###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서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를 시·도에 추천(지방비 확보 계획 포함)

※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를 받은 경우(관련 증명서 첨부)에만 위 점수 배점.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시·도

###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에서 추천된 사업대상자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식품부에 최종 추천(지방비 확보 계획 포함)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순위를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별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11~12월)

※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사업대상자는 적정 배점 부여

## 세부 심사·평가절차

###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 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평가기준에 따라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구)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 평가내용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평가항목별로 하나의 항목이라도 0점을 받은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 심사평가 기준 : 붙임 1(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표) 참조



##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공개발표평가의 점수에 따라 사업대상 순위 결정하되 동점 발생시 평가항목 5번 원물 확보 여건 및 방안을 기준으로 순위 결정

###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와 해당 사업자를 추천한 시·군에 대하여는 포기 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소규모 유통시설의 중심축으로 육성

## □ 사업내용

- 집하, 선별, 포장, 예냉·저온저장, 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의시설, 가공시설 등 일괄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시·군단위 이상의 규모화된 마케팅 사업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 지원내용 및 예산

- (공공) 국고 50%, 지방비 50, (일반)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24년 예산 : 7,212백만원(국비 3,606, 지방비 3,606)

## □ 사업 신청

- 장소 : 신청조직은 사업계획서 작성 후 시·군에 제출하고, 운영주체가 농협인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농협경제지주의 검토의견서 첨부
- 신청기간 : '24.1월

## □ 대상자 선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실시 이후 시·도지사 심사
- 농식품부 주관으로 세부 심사·평가 실시 통해 최종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장 미 주무관 성원우	044-201-2254 044-201-225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기획부	대 리 김준수	061-931-1013

원예작물,  
유통

4-4

가 유  
공

효 율  
화 통

## 1. 사업대상자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 \*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 \* 지자체 및 품목단위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이면서 생산유통통합조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우선 지원
  -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선정 심사 시 가점부여

### <지원기준>

- \*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
- ① 선(先) 조직화, 후(後) 시설지원 원칙 준수
  - 운영주체가 정부지원 유통회사이거나,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 생산유통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일 경우
- ② 해당 시군에 경합되는 규모화된 조직이 없고 다음 조건 중 하나이상에 해당 될 경우
  - 농축산물 연간 생산액이 3천억원 이상인 시군
  - 과실류의 연간 생산량이 3만톤 이상인 시군
  - 운영주체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조직화취급액\*이 50억원 이상이며, 3년 이내 흑자가 가능한 경우
- \* 조직화 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급액

### <지원제한기준>+

- 신규 일반APC, 신활력사업 등으로 과실류 전용 APC가 설립된 지역은 향후 5년간 신규시설 지원 제외. 다만 과실 품목 중 전국 생산량이 일부 시·군에 집중된 경우에는 신규시설 지원 가능

## 3.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사업규모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이 5천톤~2만톤 내외인 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보완

### (2)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하고 원료조달 및 마케팅계획이 타당한 시설의 설치 및 추가·보완
- 과실브랜드육성지원 사업계획에 포함된 권역별 규모화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보완

### (3) 지원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예냉·냉장수송과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은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단, 신선편이시설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음
  - APC의 취급품목 및 유통특성을 고려하여 시설활용도가 낮고 불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설치 제외
    - \* ICT융복합 활성화를 위해 USN을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 선별기 등 자동화 기기, RFID를 활용한 생산이력 관리 등 지원 가능(ICT 융복합 사업 추진 시 농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 사전 협의 필요)
- 가동률 제고를 위해 과채류 등 부품목 취급은 가능하나 과일류 이외 품목의 설비와 장비는 자체 조달
- 다만,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신규시설 설치 및 시설 보완사업의 사업비 한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일괄지원의 예외〉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사업계획상 냉장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저온수송을 하고자 할 경우는 냉장탑차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소규모 분산투자 방지를 위한 지원규모 제한〉

- 신규시설 중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660㎡(기준시설 포함)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예냉·저온저장고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저온저장이 불가능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집하·선별·포장장으로 변경 가능

###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 신규시설 150억기준(연간 1~2만톤 처리능력 기준)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b>1. 설계 및 감리</b>			예산편성 지침기준	<b>6. 유통시설장비</b>			
- 기본조사설계비	식		공사비의 1.28%	- 수송차량	대		자체 운송
- 실시설계비	식		공사비의 2.04%	- 팔레트	개		0.5톤/1개
- 감리비	식		공사비의 1.87%	- 지게차	대		3단마스트 (최대양고5.5m)
- 시설부대비	식		공사비의 0.18%	- 컨베어	대		입고 및 출고
- 건축디자인비	3.3㎡		3.3㎡당 1만원	- 운반상자	개		보관량의 % (농가보유감안)
<b>2. 토 목</b>				- 파렛타이저	식		전자동,스트랩핑 포함
- 기반 공사	식			- 에틸렌가스제거기	대		66㎡당 1개
- 상하수도설비	식			<b>7. 위생시설</b>			
<b>3. 전기공사</b>	식			- 오수처리시설	조		선별 및 세척수 처리
<b>4. 건 물</b>	㎡			- 작업자 소독실	조		입출입자 위생소독
- 선별장	㎡		향온 클린룸설치	- 에어샤워기	조		입출입자 위생소독
- 집하장	㎡		하차, 검수 등	- 해충방제시설	조		전기식 살충
- 출고장	㎡		상차, 배송	- 출입구격리시설	조		에어백 및 스피드도어, 적재함 높이 조절장치
- 예냉고	㎡			- 공중세균측정장비	조		작업장내 세균 측정
- 저온저장고	㎡		처리물량의 % 저장(톤)	- 물류기계척장비	조		박스, 팔레트 세척
- CA저장고	㎡		처리물량의 % 저장(톤)	- 집진기	대		오염 공기의 집진, 배출
- 사무실	㎡		소회의실, 상황실포함				
- 품질검사실	㎡		품질 및 잔류농약검사	- 바닥 청소기	대		바닥 왁스 청소
- 일반창고	㎡		포장자재, 소모품 등 창고	- 세탁 건조기	대		위생복 세탁 건조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 교육실	m <sup>2</sup>		장비, 비품은 비인정	<b>8. 품질 검사장비</b>			
- 부속시설	m <sup>2</sup>		식당, 샤워실, 화장실 등	- 농약속성검사기	대		자체 품질검사 장비
<b>5. 선별포장장비</b>				- 이동식 비파괴측정기	대		자체 품질검사 장비
- 비파괴선별기	조		1조당 1일 ( )톤처리	<b>9. 경영지원시스템</b>	식		ERP, SCM, CRM 등
- 부착물선별기	조		부착물이 있을 경우	<b>10. 차량계근대</b>	조		원물 중량 계근
- 세척건조기	조		세척건조, 날개포장	<b>11. 조경공사</b>	식		
- 박스제함기	대		제함실 건축비포함				
- 봉합기	대		자동 박스 봉합기	총계			
- 자동 소포장기	식		자동계량, 분넷포장				
- 세척수 제조기	조		1일 ( )톤 생산				

주) 비고란에는 산출근거, 장비사양 등을 자세히 기재

### 【참고사항】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가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 검토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경제지주와 협의
  -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에 관하여 위탁운영주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
- 사업비중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은 개발업체와 협의하여 시스템 호환문제 등을 해결(관련된 사항은 별지 3-1 참고)
- 경영지원시스템(ERP)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개발한 「경영정보시스템 기술지침」을 참고하여 시설 및 품목 특성에 맞게 구축
  -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자문을 받아 추진(관련된 사항은 별지 3-1 참고)
- 선별방식 선정 : 농진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농협중앙회, 산지유통전문가, 품목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별방식 선정 협의체를 통하여 선정
  - 전처리(세척 등) → 선별(중량, 당도, 산도, 선택 등) → 포장 → 팻릿 적재 및 랩핑까지 자동일괄처리가 가능한 선별방식을 선정하되 별지 3-2호의 조건 충족

- 신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 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하고, GAP농산물 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연간 과일 선별물량 5천~2만톤 내외의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부지매입비 제외)
  - \*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참조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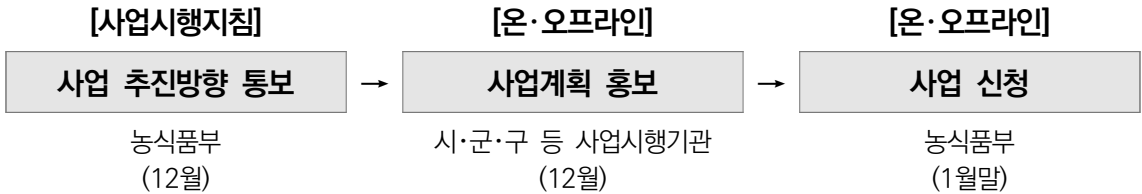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일반유형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보완사업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 공공유형은 특별한 사유로 일반유형 지원이 곤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원
- 사업기간
  - 신규사업 : 2년(연도별 지원비율 : 1년차 40%, 2년차 6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추가·보완사업 : 1년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 15,000백만원 이하의 중규모 시설도 지원 가능
  -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인정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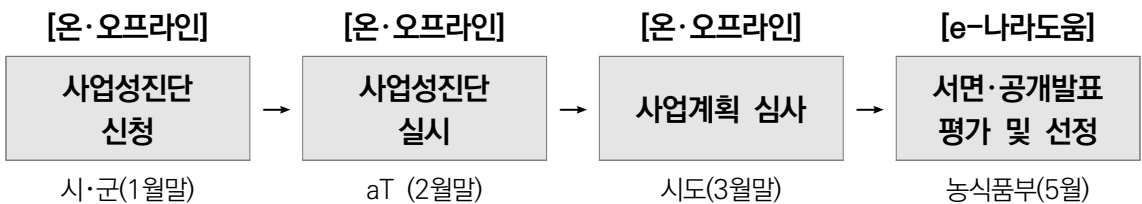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1월말)  
\* 운영주체가 농협인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농협경제지주

- 회원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고정투자한도, APC필요성, 과투자, 원물확보 등)을 회원농협에 통보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신규 및 추가·보완사업으로 신청할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 진단을 실시 받고 다음년도 사업으로 신청

- 사업성 진단 기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필요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도 등에서 진단에 참여할 수 있음
  -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인 경우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 사전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사업성 진단 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식품부와 유통공사에 신청(1월말 기한,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에그릭스)을 통한 사업신청 병행)
  -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설계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전경사진, 유통사업 입증서류, 농가조직화 입증서류 등
  - \* 사업계획서의 과수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자료인용 또는 검토의견을 첨부
- 사업성 진단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진단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현지 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 진단에 차질 없도록 함
- 사업성 진단 결과는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시 첨부물로 제출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신청현황 보고 및 통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신청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5일 기한)
- 진단결과 보고 및 통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진단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말일 기한)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2. 지원자격 및 요건」, 「3. 지원대상」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성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현황과 사유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한 후 사업성 진단에서 제외
- 사업성 진단서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에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기재(단, 수지전망은 향후 3개년 분석)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유통공사, 농협 등)는 진단서 하단에 직위·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 시·도

- 시·도지사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 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사업성 진단을 받지 않은 신청자 또는 지원불가 진단된 사업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은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
- 총사업비(10% 이상), 운영주체, 취급물량(20% 이상), 사업부지 등은 사업성 진단 이후 변경 불가
  - 사업성 진단 이후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심사·평가에서 제외

#### 심사항목 외 시·도지사가 고려할 우선순위

- ①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 생산유통통합조직, 자조금 조성단체 추천조직 등
  - \*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방지, 운영능력이 검증된 사업자를 선정
- ② 농지가 아닌 곳에 사업장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경우(확보된 농지의 전용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포함)
- ③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경영일지)의 기록 실적이 양호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는 법인
- ④ 농지 중 지목이 “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 \*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 농업진흥지역밖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하고 있음(농지법시행령에 규정)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별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5월말)

#### 세부 심사·평가절차

#####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비공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 심사평가기준 : [별지 3-13호 서식] 참조

##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동점 발생시 13번 대분류 평가항목(유통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I 사업 개요

## □ 목적

- 인삼을 제조·가공·유통단계까지 지원하여, 주요 생산 권역별 조직화·규모화·브랜드 (Brand)화를 통해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

## □ 사업내용

- 유통시설현대화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등 유통·가공시설 및 SW 부문 지원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1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000㎡ 이상
- 보완시설 : 최근년도 가동률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시설
  - \* 별도요건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농업인 주주) 10명 이상인 법인

## □ 지원한도 및 예산

- 지원한도
  - 신규시설 : (유통시설현대화) 20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지원) 1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보완시설 : 3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2024년 예산 : 420백만원(국비 126, 지방비 172, 자부담 122)

## □ 사업 신청

- 시장·군수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전년도)

##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김동훈 주무관 송미선	044-201-2238 044-201-2239
시·도	인삼산업 담당과	인삼산업 담당자	-

## 1. 사업대상자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단체·농업법인

\* 단, 연간 60톤 미만 규모인 경우, 시·군에서 대상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일정 기한내에 생산규모를 사업지침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사업 신청 가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지원대상 사업자

#### (1) 시설규모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1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000㎡ 이상
- 보완시설(신규) : 최근년도 가동률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시설
  - 물량처리 확대, 생산공정 개선 등 노후화된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개선 등
    - \* 단순 리모델링 등은 지원 제외
    - \* 가동률 산출기준 : 제조, 집하, 선별, 포장 등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하여 연간 150일 이상 가동한 시설

#### 나. 별도요건(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인 경우)

-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농업인 주주) 10명 이상인 법인
  - 단,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경우는 가능
    - \* 출자금 및 조합원,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사업신청년도 신청일 기준
    -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지분이 51% 이상을 점유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생산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생산자 지분으로 간주)



## 다. 지원제한 기준

- 보완시설 사업자는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3. 지원 대상

- 인삼 관련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통시설현대화
  - 지원내용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 저장고 등 유통·가공시설 및 SW부문 지원

### ◆ SW부문

- USN을 활용한 온·습도, 이산화탄소 등 저온저장고·예냉실·가공장 환경모니터링
- RFID를 활용한 수매/약정관리, 입출고 관리, 재고관리, 가공관리, 선별관리, 운송관리, 자재관리, 판매관리, 경영관리 등 유통·물류관리
- CCTV를 활용한 저장창고, 시설외부 모니터링

\* 인삼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와 관련된 사업 우선적 지원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1) 자금의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 기준사업비

○ 신규시설

- 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보완시설 : 3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예산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 사업기간은 1년으로 조정 가능

○ 지원비율

- 유통시설현대화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 단, 보완시설은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 1. 사업신청단계

## 기본계획수립(농림축산식품부)

-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현대화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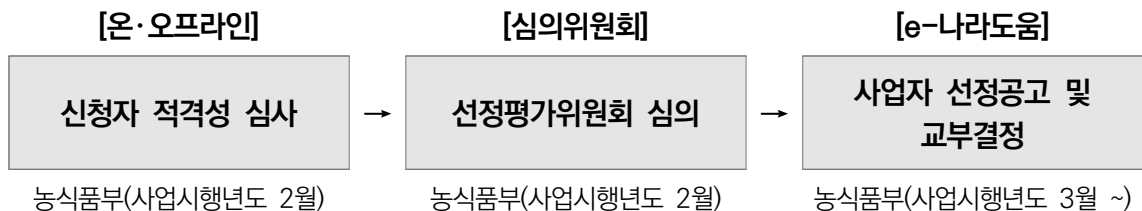
## 사업신청(시장·군수 또는 시장·도지사 및 사업법인)

- 사업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2024년 1월 31일까지)
  - 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사업을 직접 수행
    - \* 사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e-나라도움에 붙임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전자문서 형태)
-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또는 시·도)의 중장기 인삼·특용작물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2024년 2월 16일까지)
  -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청회 등 농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참여도 제고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 자부담이 미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 확보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명서 등) 의무 제출
    - \* 자부담 의무 확보율 : 사업신청단계(2024년 1월 31일까지) 10%, 사업대상자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전 50%

##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시·도지사)

- 시·군 또는 사업법인의 사업계획에 대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2024년 2월 23일까지)
  - 자체 심사·평가지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평가 실시
    - \* 각 도의 평가심의위원회는 각 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운영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및 세부 사업계획 타당성 등 검토
    - < 지자체의 인삼·특용작물산업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해당 지역의 인삼·특용작물산업 여건 및 전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기존의 지역 인삼·특용작물산업 여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과 차별화 방안, 소비 활성화 및 홍보전략
  - 농업인의 참여율 제고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 등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법인 설립·운영 및 육성방안
  - 컨설팅업체, 농업인(품목조직 포함)·농협·지자체·민간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법인
  - 농가조직화 및 조직원에 대한 교육, 인삼·특용작물산업을 선도할 법인체 육성방안
-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추진되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산·유통·가공단계의 생산성 향상 및 마케팅 계획
  - 인삼·특용작물 제품류별 생산·수출·판매에 대한 연차별 목표량 및 비율
-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사업 성과·평가계획 수립

##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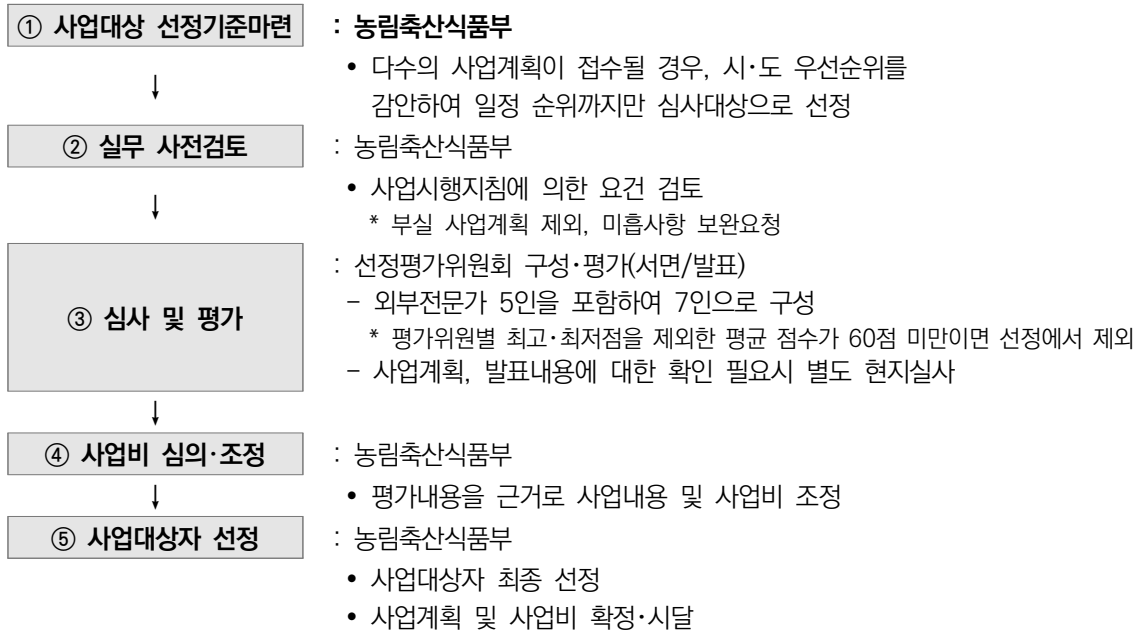


## 사업대상자 선정(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서 접수 후 사업요건 적합성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자체검토 후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서면/발표)
  -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발표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시 별도 현지실사 진행
  - ‘인삼계열화사업’, ‘농기계임대사업’, ‘지리적표시제도’ 등의 사업과 연계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 2~3개 이상 시·군의 인삼 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사업계획은 가점 부여
  - 발작물공동경영체 조직은 가점 부여
- 항목별 선정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 지역 인삼·특용작물산업발전 계획 연계성
	• 자금투자 계획의 적정성
	• 연간 처리물량, 목표, 시설 가동계획 등에 대한 구체성 및 적절성
	• 사업비 지원종료 후 운영계획
2. 사업참여 법인의 적합성	• 사업추진 의지
	•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 사업의 성공 가능성
	• 사업대상자의 설치자금 조달계획, 재무구조 등 운영자금 조달능력, 확보계획, 경영능력
3. 생산 혁신	• 고품질(GAP 등) 원료 확보를 위한 생산계획, 기술지원, 교육 등에 대한 방안
	•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 우량 종자(묘)의 안정적 공급 방안
4. 유통 혁신	• 인삼·품목별 의무자조금 참여 실적 및 계획
	• 농기계임대사업 등 유통구조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
	• 수출실적 및 수출확대 방안의 적정성
5. 마케팅전략	•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 컨설팅업체의 적정성
6. 기타	• 부지 확보에 대한 적정성 및 입지조건 등
	• 타 농림축산식품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 연계실적 및 계획
	• 2~3개 이상 시·군의 인삼·특용작물 자원을 연계 활용한 사업계획
	• 발작물공동경영체 조직

## ○ 심사절차



## ○ 심사·평가기준

- 심사위원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구체적인 심사평가 방법은 별도 수립·시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사업명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과 장 김정락 사무관 육은이	- 044-201-2294

## I 사업 개요

### 1. 목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저온저장 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3.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p)
○ 합계(A+B)	11,000	11,000	12,757	12,757	12,047
- 국 고 (30%)	3,300	3,300	3,827	3,827	3,614
- 지방비 (30%)	3,300	3,300	3,827	3,827	3,614
- 자부담 (40%)	4,400	4,400	5,103	5,103	4,819
○ 산지저온시설(A)	10,000	10,000	11,600	11,600	11,200
- 국 고 (30%)	3,000	3,000	3,480	3,480	3,360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p)
- 지방비 (30%)	3,000	3,000	3,480	3,480	3,360
- 자부담 (40%)	4,000	4,000	4,640	4,640	4,480
○ 저온수송차량(B)	1,000	1,000	1,157	1,157	847
- 국 고 (30%)	300	300	347	347	254
- 지방비 (30%)	300	300	347	347	254
- 자부담 (40%)	400	400	463	463	339



##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자체(푸드플랜 한정)
  - ※ 다만, 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제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년, 저온차량 : 5년)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 고추)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종합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자는 중점 평가 요건 충족시 사업비 10% 범위내 우선하여 선정
    -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치를 권장함
-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자조금 납부대상자는 사업 신청년도 자조금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 (참고 : 의무자조금 대상품목) 인삼, 천하경,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마늘, 양파, 뽕은감, 복숭아, 차, 자생란
- 사업의 중복·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19~'23년) 동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지원실적이 있는 업체는 동일분야 사업 대상에서 제외

## 3. 지원대상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 ※ 지원품목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품목(배추, 무) 그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및 버섯류
  - \* 화훼, 식량작물, 임산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장비 포함 가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 5. 지원형태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지자체(푸드플랜)의 경우 : 국고 30%, 지방비 7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 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 고
			신규	개보수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예냉설비	차압식	66㎡ 까지	70	1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보수 : 낙후된 저온 시설에서 저온시설로 내부를 개조하는 것 (예냉시설, 바닥, 내벽 등)</li> <li>* 상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은 신규로 적용</li> <li>* 기준단가는 건축, 전기·통신, 소방 등 시설공사비 일체</li> </ul>
		강제통풍식	66㎡ 까지	60	15.0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대	200	-	
	저온저장고	99㎡~ 660㎡	130~ 860	60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 규 : 130만원/㎡</li> <li>•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li> </ul>	
	저온선별장	99㎡~ 660㎡	90~ 600	30~ 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 규 : 90만원/㎡</li> <li>•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li> </ul>	
	저온냉장수송차량 (PCM 저온수송차량)	1톤이상 ~ 5.5톤 이하	1대	110	30	

- ※ 위 사업비는 국고, 지방비, 자부담을 합한 총사업비를 말한다.
- ※ 지원 받기 전 필요시 구조안전진단, 토질조사보고서 등은 자부담으로 충당
- ※ 산지저온시설 외 용도(승강기 등)로는 지원 불가능

## 1. 사업신청단계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고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 연도 사업완료 가능한 대상자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 ※ 부지확보 증빙 : 사업자 소유 토지등기부 등본, 부지 매매계약체결 또는 가등기 완료에 한해 인정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신청 대상자는 시·군·구에 제출하며, 시·군·구에서는 신청된 사업별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 시·도는 심의위원회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시·군에서 신청된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사업계획서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사전 자체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지원 우선 순위와 지방비 매칭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 사업시행주체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구(시·도)를 달리할 경우 시·군·구(시·도)협의를 통해 신청 가능(중복신청 금지)

##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 지자체(시·군→시·도) 심의위원회에서 <붙임1>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 농식품부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계획 연계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시·도 추천 순위 등을 종합 평가

### (1) 지자체

- (시·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서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를 시·도에 추천(~8월 중)
  - ※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관련 증명서 첨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에서 추천된 사업대상자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식품부에 최종 추천(~9월 초순)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①저온시설 및 ②저온차량 각각의 사업대상자 순위를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

## (2)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지(9월중)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산지 조직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물류 효율성 제고 및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확보

## □ 사업내용

-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단, 원예산업발전계획 미수립 지자체 및 APC 지원시스템 미사용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년도 기준 생산유통 통합조직(승인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민간경상보조)에서 사업시행하여 별도 지원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 □ 지원내용 및 예산

-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생산유통통합조직의 출자출하조직은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
  -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경우에 지원
- '24년 예산 : 20,068백만원(국비 3,512, 지방비 3,512, 자부담 13,044)

## □ 사업신청

- 장소 : 공동선별시설이 소재하는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 신청기간 : (전년도 8~9월) 수요조사 시행, (전년도 12월~1월) 사업대상조직 선정 및 사업계획 조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정성수 주무관 김대영	044-201-2223 044-201-222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산지유통부	차 장 김주식 주 임 정 준	061-931-1035 061-931-1095

##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협동조합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및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부당사용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업참여 생산자 조직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 생산유통통합조직의 출자출하조직은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
  - 자금 배정 권한 : 산지조직간 마케팅 통합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조직화·규모화를 위하여 생산유통통합조직에게 출자출하조직에 대한 자금 배정 권한 부여
-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sup>1)</sup>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sup>2)</sup>하는 경우에 지원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하는 물량, 기타 출하처(온라인판매 포함)로서 출하실적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사업량으로 인정
-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참여하여 출하한 공동선별 물량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 ※ 원예산업발전계획 미수립 지자체 및 APC 지원시스템 미사용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1) 지자체와 산지유통조직이 함께 개발하여 활용하는 브랜드, 다수의 생산자조직이 참여한 시·군 단위 이상의 브랜드, 산지유통조직의 1개 고유 대표브랜드 또는 농협계통 브랜드
- 2) 참여 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등급별 평균단가로 공동 정산하는 제도(친환경인증농산물 등은 별도 공동계산 가능)

### 3. 지원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생산유통 통합조직(육성형) 및 출자출하조직은 지자체보조사업으로 지원
  - 생산유통 통합조직(승인형)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민간경상보조)에서 사업 시행하여 별도 지원
  - 지원 품목 :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숙주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 \*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 관련 '15년 8월 1일부터 사과 15kg 상자에 대해서는 공동선별비 지원 제외
  - 지원대상 물량 :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9월까지 공동선별 및 정산완료 물량
    - \* 지원대상 물량 산정기간은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비율 : 시·군 단위 사업대상자(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형 및 출자출하조직)
  - 수탁 :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 매취 :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 \* 지방비의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함(예시, 시·도 : 시·군·구 = 3 : 7)
  - \* 자부담은 농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부담 근거는 농가별 정산서에 선별비 공제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고, 조직과 농가간 별도의 협의에 따라 선별비를 공제한 것도 인정
  - \* (공통) 매취사업은 계약재배한 물량에 한해서 지원
- 지원기준 및 단가
  - [별표 1]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를 적용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신청 전년도 공동선별 실적에 비례하여 예산 배정
  - \* '25년부터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참여하여 출하 실적에 대해서는 공동선별 실적의 120%로 인정



### 〈조직별 공동선별비 배정 기준〉

공동선별비 예산 ×	$\frac{\Sigma(\text{신청 조직 품목별 공동선별실적} \times \text{품목별 공동선별 단가})(\text{A})}{\Sigma(\text{전체 조직 품목별 공동선별실적} \times \text{품목별 공동선별 단가})(\text{B})}$
* 온라인도매시장 출하 물량의 경우 20% 실적 가산하여 계산	

### 〈공동선별비 배정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 조직 사과 공선물량(온라인도매) : (A 조직) 10,000톤(2,000톤) / (B 조직) : 10,000(0)</li> <li>⇒ A = [8,000톤 + (2,000 × 1.2)] × 219,000원/톤(사과 공선단가) = 2,277,600천원</li> <li>⇒ B = [10,000톤] × 219,000원/톤(사과 공선단가) = 2,190,000천원</li> <li>■ 전체 조직 : 조직화 물량 200,000톤(온라인도매 10,000톤), 평균 단가 300원/kg</li> <li>⇒ C = [190,000톤 + (10,000 × 1.2)] × 300,000원/톤 = 60,600,000천원 61500</li> <li>■ 공동선별비 예산 100억원 가정</li> <li>⇒ A 조직 수취 공동선별비 = 100 × A/C = 375,841,580원      ⇒ A 조직이 4% ↑</li> <li>⇒ B 조직 수취 공동선별비 = 100 × B/C = 361,386,140원</li> </ul>
---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상한 : 500백만원 이내

###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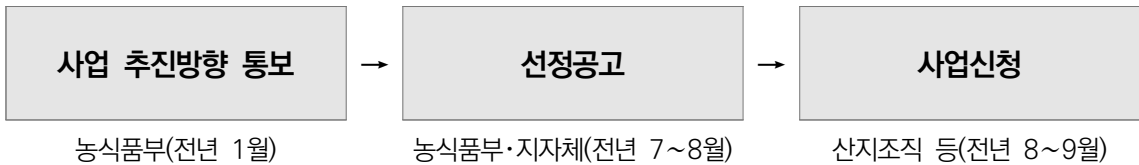
## 사업 신청 및 선정

☞ 전체 보조사업자(지자체, 농협, 법인 등)는 사업자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사업자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집행, 집행내역 검토, 정산보고, 반납 등을 시행하여야함

\*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참고

\* 불용·이자액 반납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정산액에 대해서만 가능

###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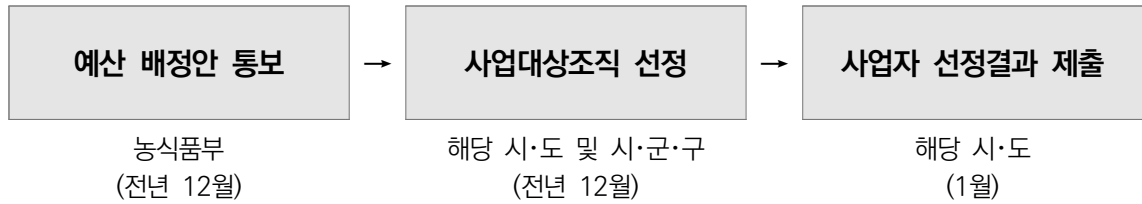
#### 사업대상조직

- 사업희망 조직은 공동선별시설이 소재하는 시·군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전년도 8월)
- 사업 신청은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출자출하조직의 신청을 취합·조정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정산은 실집행 조직이 신청
- 사업 신청 시 허위실적,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부터 5년간 사업 신청 및 지원 제한

#### 시·도(시·군)

- 시·도 및 시·군은 사업대상조직대상으로 사업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전년도 7~8월)
-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사업자별 신청내역을 시·도로 제출(전년도 10월)
- 시·도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사업자별 신청내역을 작성하여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포함)에 제출(전년도 10월)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별 전년도 공동선별 실적을 감안하여 시·도별 가내시 결과를 시·도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통지(전년도 10월)
- 사업자별 예산배정안을 확정하여 해당 시·도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통지(전년도 10월)

### 시·도(시·군)

- 시·도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예산 배역내역을 확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월)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산지의 농산물 출하시 팻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 제고하여 시장 교섭력 확보 기여

## □ 사업내용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팻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
  - 대상품목 :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
    -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 □ 지원 내용 및 예산

- 지원 기준 : 본예산과 인센티브 배정으로 구분하여 지원
  - (본예산) 신청 사업자별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실적, 도매시장, 온라인 거래, 정부의 신규 정책 장려 등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총 예산의 95%)
    - \* 조직별 배정한도 : 100백만원
  - (인센티브) 생산유통통합조직 평가 결과 우수조직 등에 추가 인센티브 배정(총 예산의 5%)
    - \* 단, 인센티브 배정한도 상한 적용 제외

- 본예산 및 인센티브 세부 배정계획은 사업신청 상황에 따라 별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할당된 배정 예산의 불용(잔여예산) 발생 시 타 출하처 지원액으로 전용 가능
  - 지원 형태 : 물류기기 종류별 출하처별 단가를 적용하여 임차비용의 국고 일부 지원(국고 40%, 자부담 60%)
    - 공영도매시장 팻릿 등 출하 시 국고 20% 상향 지원
  - '24년 총사업비 : 30,270백만원(국비 12,204 자부담 18,066)
    - 물류기기공동이용 : 30,110백만원(국비 12,044, 자부담 18,066)
    - 물류기기행정경비 : 160백만원(국비 100%)
- \* 예산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정수연 주무관 이유리	044-201-2219 044-201-222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시장지원부	차 장 이승현 주 임 박지혜	061-931-1041 061-931-1047
대행기관	농협경제지주(주)	계 장 조성준	02-2080-6323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부 장 이현주	02-6300-8378
	(사)한국농업유통법인 중앙연합회	차 장 김택수	02-3401-2870

## 1. 사업대상자

-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해당 조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별표6)에 적합한 조직
    -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
  -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제1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 제110조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지원자격

- 사업대상자 중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사업대상자 중 이 지침에서 선정한 대행기관에 사업자부담금 입금 등 사업절차를 준용하기로 한 자

### 나. 지원요건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팻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옥타곤상자 등 물류기기를 공급업체(풀회사)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 물류기기 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공급업체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 3. 지원 대상품목

-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
  -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팻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옥타곤상자 등 물류기기를 공급업체(풀회사)로부터 임차하는 비용
  - \* 단, 별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수송용 팻릿에 한해 내륙에서 도서지역으로 해상운송을 통해 입고되는 경우 해상운송 소요액 대비 국고 일부 지원

### 5. 지원 형태 및 범위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40%, 자부담 60%
  - 공영도매시장(온라인도매시장 포함) 팻릿 등 출하 시 국고 보조 20% 상향
    - \* 팻릿에 한해 해상운송(내륙→도서지역) 소요액 대비 국고 최대 50% 추가 지원
    - \*\* 공영도매시장 팻릿단위 하차거래 정착 유도 품목에 대해 국고보조 30% 상향 지원  
(단, 해당 품목, 물류기기 종류 및 지원 기간은 별도 세부운영계획 수립 후 추진)
  - 플라스틱상자에 한하여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 국고 보조 비율을 조정(20~40%)
- 지원단가 : 물류기기 종류별, 출하처별 단가를 적용[별표]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본예산) 신청 사업자별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 실적, 도매시장, 온라인 거래 등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총 예산의 95%)
  - 기본배정은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계속사업자 배정한도 상한 100백만원, 단,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배정한도 상한 25백만원)
  - 도매시장(온라인 도매시장 포함),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추가 부담 사업대상자 등 정부의 정책방향 고려, 별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비 우선배정
- (인센티브) 생산유통 통합조직 평가 결과 우수조직 등에 인센티브 배정(총 예산의 5%)

- 최근 생산유통통합조직 등록 결과 상위 30%의 우수조직(생산유통통합조직-승인형)
- 사용실적 우수 경영체 및 도서지역 등 물류 취약지역 내 사업참여 경영체
  - \* 단, 인센티브는 배정한도 상한 적용 제외
- 본예산 및 인센티브 세부 배정계획은 별도 수립하여 운영하며, 할당된 배정예산의 불용(잔여예산) 발생 시 타 출하처 지원액으로 전용 가능

## 7. 운영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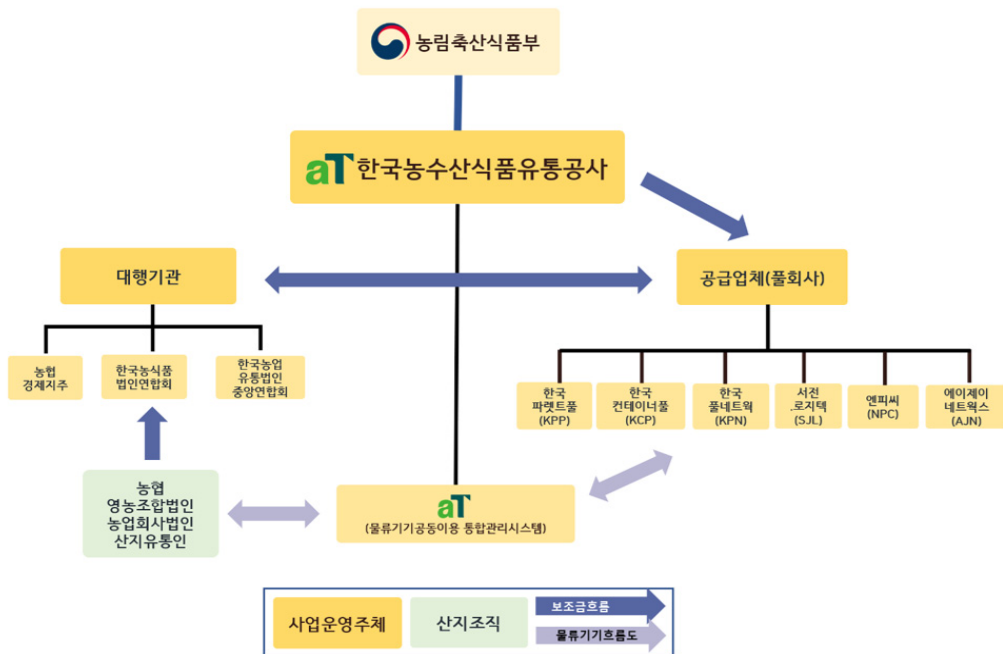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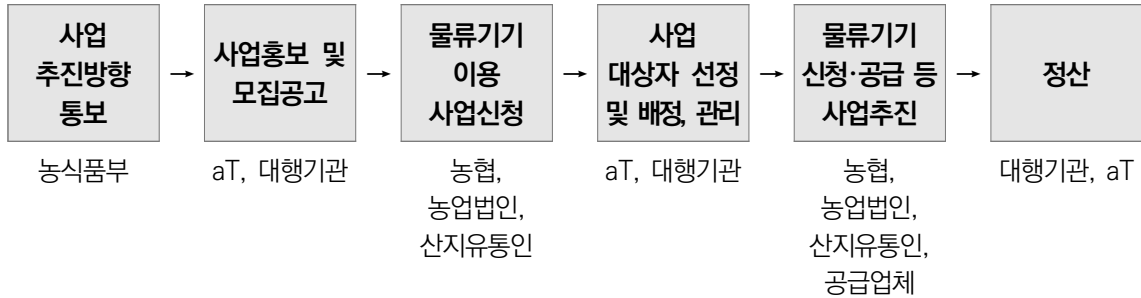
- 대행기관의 운용수수료(업무대행 수수료) 산정은 공급업체(플회사)와 대행기관의 자율협약으로 산정하며, aT는 적정한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중재 가능
  - 단, aT는 자율협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마련한 업무대행 수수료(안)를 농식품부에 보고 후 적용 가능
- 공급업체(플회사)는 당해연도 사업시행지침, 물류기기공동이용 업무추진 협약서에 따라 보조사업 단가 준수 및 물류기기 공급의무 이행 필요
- 대행기관, 공급업체(플회사)는 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농식품부(aT)에서 물류기기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 협조
- 농식품부(aT)는 품목별 성출하기 대비, 운영개선 등 사전협의를 필요한 경우 대행기관, 공급업체(플회사), 출하처(농협유통, 도매시장 등) 등이 참여하는 '물류기기공동이용 운영 협의회'를 정기 또는 수시 운영 가능
- aT(대행기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자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점검(연 2회 이상)을 실시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며,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운영 점검 및 개선·관리하여 운영
- 농식품부(aT)는 대행기관, 공급업체에 대해 사업 운영 및 제도개선 등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실시
- aT는 대행기관, 공급업체(플회사) 운영실적 평가, 선정평가 등 필요한 경우 별도 세부계획 수립하여 농식품부 보고 후 실시
-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aT에서 수립하는 세부추진계획 및 운영요령에 반영하여 추진



## 8.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구 분	역 할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 수립 및 점검, 평가 등 사업 총괄</li> <li>예산 배정 및 교부 등 운영</li> </ul>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대상자 모집 및 선정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li> <li>예산 배정, 집행 및 정산</li> <li>사업대상자 점검 및 사후관리</li> <li>대행기관, 공급업체 운영 관리 및 평가, 선정 등</li> </ul>
대행기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대상자 모집 및 물류기기 이용료(자부담) 정산</li> <li>사업대상자 민원 응대 및 교육, 점검 및 관리</li> <li>사업 홍보 및 운영 지원</li> </ul>
사업대상자 (농협, 농업법인, 산지유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신청 및 물류기기 임대 이용</li> <li>사업 운영 및 정산 등</li> </ul>
공급업체(풀회사) (KPP, KCP, KPN, SJL, NPC, AJ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류기기 공급, 회수, 관리 등 운영</li> <li>물류기기 임대 이용 정산 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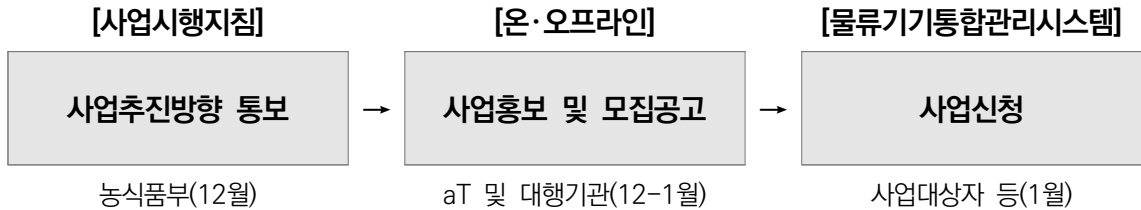
원예작물,  
유통  
4-4  
가유  
공  
효  
율  
화  
통



###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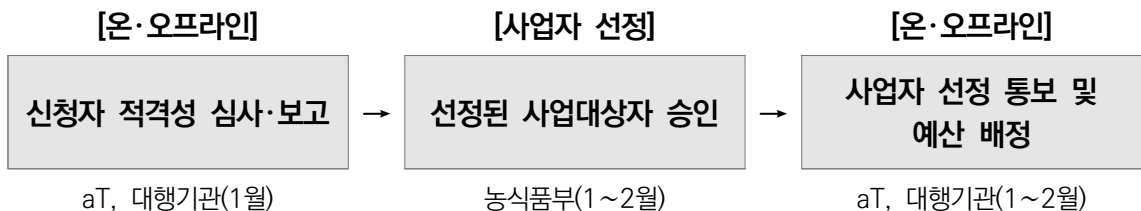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24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사업 추진방향을 aT로 통보
- aT는 전년도 12월부터 사업 당해연도 1월 중에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 ([www.atpool.or.kr](http://www.atpool.or.kr)) 등을 통해 사업신청 공고
- 사업대상자는 조직 특성,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협경제지주, (사)한국농식품 법인연합회,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중 적합한 대행업체를 선정 (aTpool 내 대행기관 선택 및 사업신청 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같음)
- 사업대상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물류기기 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 이내
- aT는 각 대행기관의 사업신청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
  - 대행기관(농협경제지주, (사)농식품법인연합회,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은 사업안내, 사업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접수·취합하여 aT로 제출

###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 aT는 사업공고 후 사업계획서를 기한 내에 입력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등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 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aT는 확정된 사업자 및 사업비 지원계획과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배정계획을 대행기관에 통보
- 대행기관은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운영 관련 교육 실시(연 1회 이상)하여 aT에 결과 보고
  - 사업내용, 시행절차, 물류기기 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등 상세히 안내 및 민원 상담 등 지원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대상자는 물류기기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사용 3일전까지 물류기기 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물류기기 임차를 공급업체(풀회사)에 요청
- 공급업체(풀회사)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물류기기의 종류, 수량, 요청일 등을 확인하여 지정한 장소로 입고
- 농산물을 유통사업장에 출하한 경우 반드시 물류기기 품명, 수량, 유통사업장, 농산물명 등을 전산상에 등록하고 유통사업장은 해당 내용과 전산상의 출하등록 사항과의 일치여부를 확인
- 공급업체(풀회사)는 산지 사용자 및 유통사업장의 확인사항을 집계하고 물류기기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에 물류기기를 회수
  - 산지 사용자가 유통사업장으로부터 물류기기를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유통사업장이 전산시스템에 해당 출고내역을 입력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유도 및 유통종사자 운영자금 지원으로 공판장 출하 및 농가소득안정 유도

## □ 사업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 및 소매유통업체 운영자금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선도금
  -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 \* 지원제외 대상자 : 의무거출금 미납자
- 결제자금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 (소매유통업체)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으로부터 화훼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유통업체 중 자체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화훼농가 출하선도·유치자금, 중도매인의 화훼공판장 경매물량 구매자금, 소매유통업체의 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으로부터 화훼류 구매자금
- 지원 기준
  - 지원한도 : 총한도 400백만원 중 신용대출은 50백만원이내, 담보대출은 400백만원이내

대 상	화훼농가(출하선도금)	화훼농가(출하유치)	중도매인, 소매유통
용자한도	50백만원	400백만원 이내	
금리, 대출기간	연 1.5% 이내, 1년 이내		연 3.0% 이내, 1년 이내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24년 예산 : 9,000백만원(국비 100%)

### □ 사업 신청

- 장소 : aT 화훼공판장 및 농협에 「화훼유통개선 지원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기간 : 자금지원계획 공고일 참고

### □ 대상자 선정

-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검토\* 후 해당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
- \* 해당자금별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 기재사항의 누락 및 증빙서류의 구비 유무 확인 등 검토
- 전년도 자금 지원업체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서기관 허창각 주무관 이승원	044-201-2261 044-201-2262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사업센터	차 장 양인석 과 장 이승범	02-570-1871 02-570-1863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	과 장 이창재	02-2079-8384

## II

## 주요 내용

### 1. 사업대상자

- 선도금 : 양재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 결제자금 :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3조(재정지원)
  - \*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제19조의 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 2.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선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li><li>◦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li><li>* 지원제외 대상: 의무거출금 미납자</li></ul>
결제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도매인, 매매참가인</li><li>◦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li><li>◦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li><li>◦ 소매유통업체</li><li>◦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으로부터 화훼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유통업체 중 자체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li></ul>

###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세부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선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화훼·농협공판장으로의 출하증대를 위해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출하선도금</li></ul>
결제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li><li>◦ 해당 화훼공판장에서 낙찰받은 화훼 경매물량을 구입할 때 소요되는 구매자금</li><li>◦ 소매유통업체</li><li>◦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으로부터 화훼류를 구입할 때 소요되는 구매자금</li></ul>

####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세부사업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액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 형태〉			
	○ 선도금			
	· 용자조건 연리 1.5% 이내, 1년 이내			
	※ 출하실적이 우수한 농가(1억원 이상/년)에는 우대금리 적용 : 0~1%			
	2억원이상	1.5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억원 미만
	0%	0.5%	1.0%	1.5%
	○ 결제자금			
	· 용자조건 연리 3.0%(대출) 이내, 1년 이내			
	※ 경매실적 우수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에는 우대금리 적용 : 0~1%			
	상위 10% 미만	상위 10% 이상 20% 미만	상위 20% 이상 30% 미만	상위 30% 이상
0%	0.5%	1.0%	3.0%	
〈사업 의무액〉				
○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 대출금액의 125% 이상 공판장에 출하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 대출금액의 125% 이상 공판장에서 경락				
○ 소매유통 : 대출금액의 125% 이상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으로부터 화훼류 또는 화훼 관련 소재 구매				

####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선도금(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 전년도 출하실적의 90% 이내
  - 총한도 400백만원 중 신용대출은 50백만원 이내, 담보대출은 400백만원 이내
- 결제자금

<b>중도매인, 매매참가인</b>	전년도 경매실적의 50% 이내, 400백만원 이내
<b>소매유통업체</b>	전년도 화훼류 매출액(과세표준, 자재포함)의 50% 이내, 400백만원 이내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통지(1월말)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기금대출취급농협 포함)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중도매인협회 등 관계기관에 시달(2월말)

\* 유통공사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실시

- 농협경제지주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판장 운영 화훼농협에 안내하고, 기금대출취급을 하고자 하는 화훼농협은 안내내용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협경제지주 및 농림축산식품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사업대상자에 시달(3월말)

#### 자금신청자

- aT 화훼공판장 관련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 자금신청서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 농협공판장 관련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 자금신청서 → 해당농협 화훼공판장 → 농협경제지주

### 2. 사업자 선정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기금대출취급농협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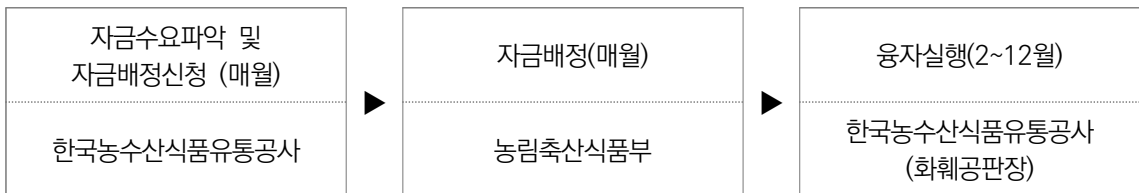
-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등 사업자 선정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사업자 선정 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3. 자금배정단계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화훼유통개선지원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등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 선도금 및 결제자금



#### 농협경제지주(기금대출취급농협 포함)

- 기금대출취급농협은 화훼유통개선지원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등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협경제지주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 선도금 및 결제자금



##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

#### 사업관리주체[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기금대출취급농협)]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기금대출취급농협)는 자금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자금관리주체[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기금대출취급농협)]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및 각 지사에서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화훼공판장)의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화훼공판장)에 보고
- 농협경제지주(기금대출취급농협)는 사후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등의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점검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기금대출취급농협)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사업의무액 준수여부 등

### <제재>

#### 사업관리주체[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기금대출취급농협)]

- 대출취급기관은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지

## 자금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기금대출취급농협)]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선도금 및 결제자금>

- 위약금 산출식 : 위약원금(미달차액) × 위약금리 × 위약일수/365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 - 사업실적
  - 위약금리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농협은행)
  - 위약일수 : 대출일로부터 회수일의 전일까지

원예작물,  
유통

4-4

가유  
공

효  
율  
화  
통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도서지역 농산물의 해상운송 등 추가 부담에 따른 시장 출하 여건 개선을 위해 온라인·산지경매 등을 통해 내륙 권역별 거점물류센터를 활용한 소비지 직배송 체계 구축으로 물류 효율화 제고

## □ 사업내용

-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예농산물을 온라인, 산지경매 등을 통합물류로 출하는 경우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와 소비지간 지선 물류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도서지역 내 통합물류 참여하는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 등)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예농산물(과수, 채소류 등)을 온라인, 산지경매 등을 통해 통합물류로 출하하는 경우 내륙 지선 물류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
- 지원 기준 : 지역별 펠릿당 계약단가(운영비 등 부대비용 포함)의 국고 50% 지원
  - 공모 및 지정을 통한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 선정 후 물류센터 위치에 따라 권역별 계약단가 산출 적용(준용)
- '24년 총사업비 : 3,750백만원(국비 1,900, 지방비 1,480, 자부담 370)
  - 통합물류운영(물류센터-소비지) : 3,700백만원(국비 1,850, 지방비 1,480, 자부담 370)
  - 통합물류운영(행정경비) : 50백만원(국비 100%)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정수연 주무관 이유리	044-201-2219 044-201-2220
농협경제지주	산지유통부 조공법인지원팀	국 장 서을수 계 장 이영일	02-2080-6331 02-2080-6334
지자체(시도)	감귤유통과 등	-	-

### 1. 사업대상자

- 산지유통혁신조직 및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온라인, 산지경매 등)하는 도서지역 내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 지자체 내 생산자조직으로 물류 취약지역(단, 서울특별시 제외)에 출하하는 경우로 한정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이하 '생산자단체')
  - 제1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제5호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중 제1호\*, 제2호\*\*, 제3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간한 조합공동사업 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 연합회사업대상자의 지원자격, 요건, 제한사항 등을 기재
- 단,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6」 준용

### 3. 지원내용·품목

-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예농산물(과수, 채소류 등)을 온라인, 산지경매 등을 통해 내륙거점 통합물류로 출하하는 경우 내륙지선 물류비, 운영비 등 일부 지원
  - 산지 수집 및 도서지역에서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간 간선 물류비용은 지원 제외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자체) 도서지역에서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로 출하하는 경우 내륙지선 물류비, 운영비 등 일부 지원
  -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 ~ 소비처(물류 취약지역)간 내륙지선 물류비
  - 운영비 등 부대비용 : 상하차, 저온저장 보관료 등 시설장비 사용료, 물류서비스(수·발주, 재분류, 재포장, 입출고, 재고관리 등)
    - \* 단, 운영 기본경비(출장, 식대, 물품·시설·장비 대여·구입, 회의비, 홍보비 등) 사용 불가
- (민간) 사업 운영관리, 평가, 개선 등에 소요되는 행정경비 지원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예산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도서지역 원예농산물 약 30천톤(단,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 통합물류 추진실적에 따라 변동
  - 지원형태 및 재원비율 : 자치단체경상보조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 단, 행정경비(민간경상보조)는 국고 10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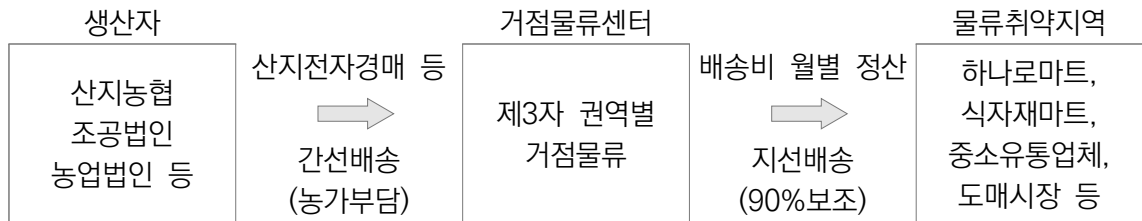
- 내륙지선 지역별 팔릿당 계약단가(운영비 등 부대비용 포함)의 국고 50% 지원
  - \* 산지수집 및 도서지역-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간 간선 물류비용은 지원 제외하며, 내륙지선 물류비 계약단가는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농식품부 사전승인 필요

〈내륙지선 지역별 팔릿당 물류단가표-용인 기준(예시안)〉

구 분	물량별	계약단가 (원/팔릿)	지원단가(원/팔릿)			비고
			국고(50%)	지방비(40%)	계	
경기권	1p	107,250	53,630	42,900	96,530	내륙지선 물류비 소요액의 90%(국고50%+지방비40%) 지원 ※ 부가세 포함
	2p이상	71,500	35,750	28,600	64,350	
충청권	1p	132,000	66,000	52,800	118,800	
	2p이상	88,000	44,000	35,200	79,200	
강원권	1p	148,500	74,250	59,400	133,650	
	2p이상	99,000	49,500	39,600	89,100	
경상권	1p	198,000	99,000	79,200	178,200	
	2p이상	132,000	66,000	52,800	118,800	
전라권	1p	198,000	99,000	79,200	178,200	
	2p이상	132,000	66,000	52,800	118,800	

## 7.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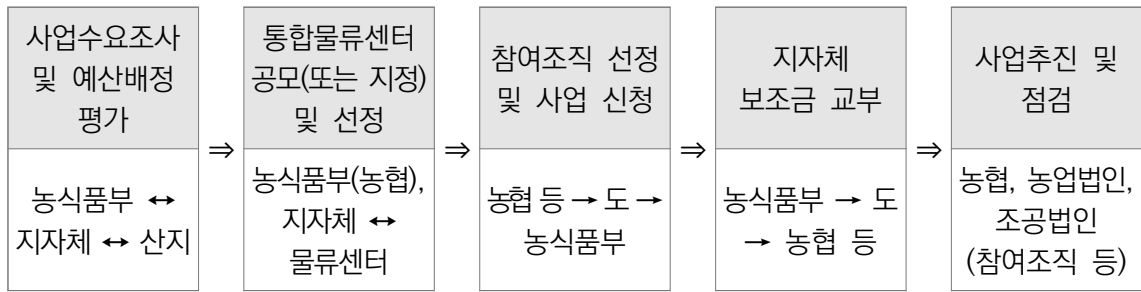
- 통합물류에 대한 지자체의 수요에 따라 전국적인 운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모 또는 지정할 수 있으며,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 선정 등 별도 농협경제지주의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운영 및 관리
  - 선정된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의 지역별 위치에 따라 내륙지선 권역별 계약단가를 산출하여 적용(계약단가 상이)
  -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에 대한 선정, 운영 등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에서 자체 선정된 통합물류센터를 포함하여 수시 또는 정기 점검 및 관리
- 단, 시도별 물류취약지역 등 운영 특성을 고려한 통합물류센터 별도 선정이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공모 등 자체 계획수립을 통해 선정 및 운영 가능
  - 시도에서 별도 선정하는 경우 통합물류센터 선정 및 운영계획, 선정결과, 운영실적을 농식품부(농협경제지주 포함)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 선정 및 운영 등에 대한 농식품부(농협경제지주)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하여 추진



## 8. 추진 체계 및 절차

구 분	역 할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수립 및 점검, 평가 등 사업 총괄</li> <li>• 예산 배정 및 교부 등 운영, 사후관리</li> </ul>
농협경제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물류 운영지원 계획수립, 점검 및 평가</li> <li>•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 선정 및 관리 지원</li> <li>• 지자체 사업 운영계획 검토 및 평가, 관리 등</li> </ul>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자 사업계획 검토·신청 및 선정</li> <li>• 자체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 운영 및 관리</li> <li>• 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 등</li> </ul>
생산자단체 (농협, 농업법인, 조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물류 사업참여 신청 및 운영</li> <li>• 통합물류 사업 운영 및 정산 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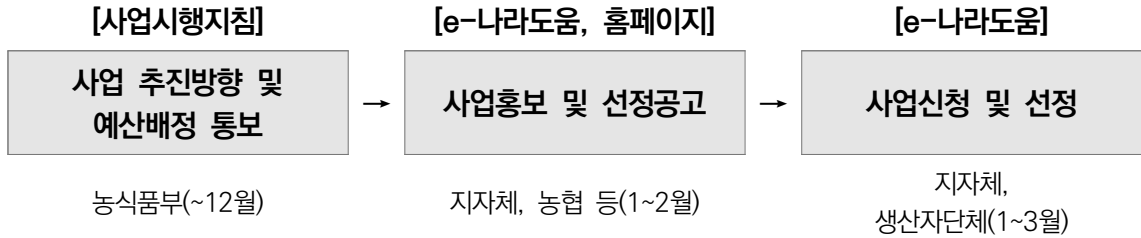




원예작물,  
유동  
4-4  
가유  
공  
효  
율  
화  
통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지자체의 사업수요를 파악 등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지침 등 추진방향을 시행한다.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수요가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 익년도 운영계획, 전년도 성과 등 운영평가를 별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농식품부는 운영평가 결과,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예산 배정을 확정한다.
- 각 사업시행기관(지자체, 농협경제지주)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보고(승인) 후 추진한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는 사업시행기관(지자체, 농협경제지주)은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농협경제지주는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 공모(또는 지정) 선정, 평가, 기간 등 별도 세부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보고(승인) 후 추진한다.
  - 단, 시도별 물류취약지역 등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에서 공모 등 자체 세부계획 수립을 통해 선정 및 운영은 가능하나 농식품부(농협경제지주 포함)에 별도 보고(승인) 후 추진한다.
- 지자체는 사업추진을 위해 수행기관(하위보조사업자)을 지역의 통합물류 운영 특성에 맞게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체평가 등을 거쳐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에 보고(승인) 후 추진한다.
- 지자체는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 후 추진한다.
  - 지자체는 사업신청서 검토 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 1)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 2)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3)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 4)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규정」 제35조제7항)
- 5) 기타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I 사업 개요

## 1. 목적

-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존 원물 유통방식과 단순 분산 기능을 넘어서 공공급식, 로컬푸드매장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소비지 상품화(소분·재포장·반출 작업장) 지원

\*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23.1월) '도매시장 기능 혁신'

##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 제57조(기금의 용도)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 제67조(유통시설의 개선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판매·수송·보관·저장 시설의 개선 및 정비를 명할 수 있다.
  - 제73조(재정지원)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물도매시장 증장기 발전계획 수립('23년 추진) 지역
  - 소분·재포장 시설 도입 및 활용계획 수립 포함
  - \* 기존 시설현대화 사업 완료 및 추진 도매시장도 신청 가능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신축·개보수)

- 설계비, 감리비 등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감리비 및 사업추진 컨설팅 등
  - \* 사업추진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은 30백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함
- 토목공사 : 부지 내 기반공사(파일공사, 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 토목공사 등
  - \*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사용 가능
  -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 기존 건축물 철거비는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
  - \* 저온저장고 설비는 총사업비 10% 이내 제한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 시설·상품화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선별·포장기, 결속기, 봉합기, 제합기, 컨베이어 등
    - \* 상품화기능 시설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 근거 등 필요성을 제시해야 함
    -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II

## 지원계획

### 1. 사업시행자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

- 「농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및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이하 '공영도매시장')

### 2. 사업대상자(사업수혜자)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출하농업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비자)

### 3. 전체사업비 : 3,600백만원('28년까지 국비 총액 30,000백만원)

### 4.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국비, 지방비
-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70%

###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차별 투자 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계
합 계	12,000	28,000	20,000	20,000	20,000	100,000
국고	3,600	8,400	6,000	6,000	6,000	30,000
지방비	8,400	19,600	14,000	14,000	14,000	70,000
사업량	3개소	7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25개소

### 6. 투·융자 세부산출 내역

○ 도매시장 상품화 지원('24) : 3,600백만원

\* 건축비 20억원(2,000m<sup>2</sup>) × 3개소 × 30% = 1,800

\* 시설장비 20억원(개소) × 3개소 × 30% = 1,800

※ 도매시장 여건에 따라 건축비와 시설장비 사업비 간 조정 가능

## 1. 사업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자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자체)에게 통보(2023.9월)

\* 평가 추진체계 및 기준(서면·현장실사·공개발표), 제출용 서류 양식 등 포함

## 사업신청자(공영도매시장 개설자)

-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023.10월)
  - \* 제출경로 : 특별시·광역시 → 농식품부, 시(市)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신청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도매시장 관리운영 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동 계획서 심의 및 확정
  -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 부지의 관계 법령상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 2. 사업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사무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에 전달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요청
- 시설정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 구성 : 농산물 유통 및 건축·시설전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 15여명 내외 (필요시 시설정비위원회 확대 운영 가능)
- 기능 : 중장기적인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방향 마련,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추진상황 점검 등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 공정률, 예산집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회에서 현장심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등을 정확히 진단·안내

- 사무국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시장지원부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은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 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안건을 상정
- 시설정비위원회는 「서면평가(질의·응답) → 현장실사」 후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2023. 10월) 및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
  - \* 사업계획의 명확성, 상품화 품목의 경쟁력, 상품화시설 설치 및 운영의 적정성과 도매시장 개설자의 정부정책에 따른 시장관리 능력(도매시장 평가 결과), 지방비 확보 등 종합평가



## I 사업 개요

## □ 목 적

- 산지조직에게 원물확보 자금 용자 지원을 통해 농산물 판로를 확충하고 산지조직을 조직화·규모화·전문화된 핵심주체로 육성하여 거래교섭력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 도모

## □ 사업내용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용자 지원
- 농업자금(정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차차액을 보전

##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자격요건 :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생산유통 통합조직 기본(세부)요건은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통합지침 참조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원물확보자금(계약금, 중도금, 선지급금, 잔금) 지원
- 지원기준 : 국고용자 80%, 자부담 20%
  - 단, 지원 대상품목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명시된 자금사용실적으로 산지유통활성화지원 자금(용자액 평잔)의 125% 이상 사용이 의무사항
  - 지원조건 : 연리 0~3%(농업법인 등 2.5%) / 3년 일시상환
  - 지원한도액 : 연간 700억원 이내
- '24년 예산 : 320,000백만원(국비 100%, 이차보전)

## □ 사업신청

-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사업 신청 및 사업실적 등록

\* 매년 1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에 공지

- 신청기간 : 사업신청서 입력(1월), 사업실적 입력(2월)

## □ 사업자 선정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생산유통 통합조직 실적에 대한 연차평가 및 등록내용 점검을 실시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결과 제출(3월중순)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연차평가 및 등록내용 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3월 하순까지)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정성수 사무관 김대영 주무관	044-201-2223 044-201-222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	산지유통부	우승완 차장 장은정 주임	061-931-1031 061-931-1032
농협경제지주	산지유통부	박진환 팀장 이영일 계장	02-2080-6326 02-2080-6328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권영선 과장	02-2080-7585

##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생산유통 통합조직 기본(세부)요건은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통합지침 참조

## 3. 지원 대상품목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양곡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맥류(밀, 보리, 귀리 등), 두류(콩, 팥, 녹두 등), 잡곡류(수수, 옥수수, 기장, 메밀, 조, 울무 등), 특용작물(참깨, 땅콩 등)</li> <li>* 단, 미곡류(멥쌀, 찰쌀, 유색미 등)는 제외</li> </ul>
청과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실류, 채소류, 과채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유지작물류·두류·잡곡 중 신선한 것(가공상품은 대상에서 제외)</li> </ul>
화훼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li> </ul>
약용작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등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등</li> </ul>
임산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버섯(표고, 송이, 목이, 팽이)</li> </ul>

\* 임산물류, 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원물확보자금 : 계약금, 중도금, 선지급금, 잔금

- 공동선별수탁 : 지원대상 품목의 공동선별수탁을 위한 자금
- 공동선별매취 : 지원대상 품목의 공동선별매취를 위한 자금
- 공동출하수탁 : 지원대상 품목의 공동출하수탁을 위한 자금

\* 선지급금 : 수탁 시 최종 정산 전에 판매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는 자금

\* 각 취급유형별 세부규정은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통합지침 참조

- 농자재 공급자금(용자 평잔의 10% 이내 제한)

- 공동선별수탁, 공동선별매취 및 공동출하수탁 시 참여농가에 대해 농자재(종자, 육묘, 농약, 비료, 버섯배지에 한함)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할 경우 그 농자재 구입자금

- 지원대상조직의 자경농지(임차농지 제외)에서 자가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종자, 육묘, 농약, 비료, 버섯배지에 한함) 구입 자금

## 5. 지원형태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금융기관 자금(이차보전)
- 지원형태 : 국고용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 및 기간 : 0~3.0%(농업법인 등 0~2.5%) / 3년 일시상환
  - 생산유통 통합조직 연차평가 또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육성형) 등록내용 점검 결과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적용금리는 3년간 유지)
  - \* (II-9) 제재 기준에 따른 최고금리(농협조직 3%, 농업법인 등 2.5%) 적용 (5.1일부터 대출기간 만료시 까지)
  - 출자출하조직은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금리 적용
  - 온라인 도매시장에 참여하여 거래실적이 있는 산지조직에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사업 참여농가에게 자금지원(계약금, 중도금 등) 시 금리 및 수수료 부과금지

### 〈 적용금리 차등 기준 〉

- 적용금리 차등 세부기준(붙임)에 따라 순위별 및 적용금리별 배정비중에 따라 최저금리(0%)부터 최고금리(3%) 적용
- 생산유통 통합조직(육성형)은 생산유통 통합조직(승인) 배정 후 잔여 배정비중의 최저금리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 \* 농업법인 등은 최고금리 2.5% 적용

적용금리	0%	1.0%	1.5%	2.0%	2.5%	3.0%
배정비중	40%	20%	20%	10%	7%	3%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연간 700억원 이내(최소한도 5억원)
  - 기존 사용금액 합산(추가용액)하여 700억원 이내로 자금배정
  - 자금 배정단위 : 1억원
  - \*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출자출하조직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 1억원 단위로 배정
- 지원 신청범위
  - 최대한도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대비 70% 이내 신청

- 최소한도 : 생산유통 통합조직 5억원 이상, 출자출하조직 1억원 이상
- \* (예고) (최대한도) '25년부터 원예농산물 전문품목 취급액 대비 70% 이내 신청

## 7. 자금배정

-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신청액(출자출하조직 포함)과 전문품목 전속(약정) 취급률, 대출잔액, 상환예정금액, 예산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
- 자금 배정권한 : 산지조직 간 마케팅 통합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조직화·규모화를 위하여 생산유통 통합조직에게 출자출하조직에 대한 자금 배정권한 부여
  -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출자출하조직에 대한 자금배정은 조직원농가의 전속출하(생산량 80%이상) 또는 약정(계약)출하(수탁·매취) 금액,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대한 출하금액(및 출하비율), 사업 활성화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실시
  - 출자출하조직은 생산유통 통합조직에게 자금(해당 전문품목)을 신청·배정 받아야 하며, 대출은 대출취급은행(농협은행)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함
  - \*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출자출하조직이 당해조직의 미취급 품목을 다른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출하하는 경우 복수의 출자출하조직의 지위를 갖는 것을 인정(단, 해당 품목의 출자출하조직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유통 통합조직은 생산자조직 및 출자출하조직의 사업대상 요건 확인, 사업의무이행 독려 및 자금집행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생산자조직 및 출자출하조직이 자료요구 등에 불응 시 직접 제명할 수 있음)

## 8. 사업의무액

- 사업의무액 : (II-3) 지원 대상품목 및 (II-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명시된 자금사용 집행실적이 산지유통활성화자금(융자액 평잔)의 125% 이상
  - 임산물류, 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실적이 50%(사업의무 125% 기준 62.5%) 이상이어야 함
  - \* (예고) 공동선별매취, 공동출하수탁은 생산자조직이 아닌 개별농가 단위 계약을 통한 원물확보 실적은 '25년부터 불인정
- 사업의무액 이행 대상조직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대출취급은행(농협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출자출하조직)

- 사업의무액 산출기준
  - 기간 : 매년 1. 1.~12. 31.
  - 금액 : 연도 중 대출 및 상환금액의 평균잔액 기준으로 함
- 사용실적 인정 : (Ⅱ-3) 지원 대상품목 및 (Ⅱ-4) 자금 사용용도에 명시된 집행실적
  - \* 전년도에 융자 잔액이 없는 조직은 자금사용 첫해에 한해 취급농산물의 출하시기 등 여건을 감안하여 1. 1.~12. 31.까지의 원물확보 실적 인정 가능
  -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출하하는 생산형농업법인(100% 농업인 주주, 취급액의 90% 이상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출하)이 법인의 자체담보로 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해당 생산유통 통합조직 의무액 평가 시 합산하여 평가
- 사용실적 불인정 : 자금 사용용도 이외의 집행실적, 정부지원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자금 집행실적(중복불인정)
  - \* 자체 공판장 또는 자체 경매식 집하장에서 생산농가에게 집행한 자금은 운용실적으로 불인정
  - \* 자금을 대출받은 생산유통 통합조직과 출자출하조직이 동일 농가의 원물 또는 상품을 중복으로 계상한 실적은 불인정

## 9. 제재 기준

- 사업의무 미 이행 등에 따른 제재
  - 사업의무 미달, 목적 외 사용 및 법령위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위약금 등 부과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제30조(대출제한), 제31조(위약금의 징수) 및 제32조(제재의 예외) 등 적용
-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농협은행)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 지원된 대출금(당해년도 상환예정 자금 포함)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2년간 대출 중단
- 생산유통 통합조직, 출자출하조직이 기본요건(사업대상자 요건) 미충족, 승인 취소, 미등록 시 기 지원된 대출금(당해년도 상환예정 자금 포함)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신규자금 지원불가
  - 생산유통 통합조직, 출자출하조직이 기본요건(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조직
    - \* 승인 취소된 생산유통 통합조직은 승인 취소 당해 연도 생산유통 통합조직(육성형)으로 등록할 수 있음(단, 등록 첫해 배정 자금은 최고금리 적용 - 3년 유지)
- 지원대상 조직이 부도·폐업하는 경우 즉시 기 지원된 자금 전액 회수

- 생산유통 통합조직, 출자출하조직이 세부요건(지원 자격 및 요건) 등 미충족,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전환과정 탈락, 사업운용규정 위반 등의 경우 신규자금 지원이 불가하며, 기 지원된 대출금 전액 최고금리 적용
  - 생산유통 통합조직, 출자출하조직이 세부요건(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락한 조직
  - 기존 통합마케팅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육성형))이 생산유통 통합조직(승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출자출하조직
    - \* 다만, 생산유통 통합조직(승인) 사업계획서의 육성계획 내용 중에 출자출하조직으로 포함된 조직은 신규자금 지원 중단 및 기 지원된 대출금 전액 최고금리 적용 1년간 유예
  - 출자출하조직은 사업대상자 요건,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사업대상자 요건 또는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였을 경우 출자출하조직의 기 지원된 대출금 전액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신규자금 지원 제외
  - 생산유통 통합조직 실적에 단순기표 및 내부 간 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단순기표 : (i)출자출하조직이 실제 거래교섭 및 판매를 실시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은 대금 결제만 실시 하는 경우, (ii) 공동출하사업에서 농가가 출하처를 정하고 조직은 송장, 운송, 대금결제 등의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 등
- '22년까지 지원된 대출금(농안기금 융자)의 회수되는 자금의 반납기한은 기존 대출 취급기관(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반납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임
  - \* 5월 1일부터 반납 전일까지 최고금리(농협조직 3%, 농업법인 등 2.5%) 적용
  - \* 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충분한 사전 검토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2개월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사업대상조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관련 기관, 기존 산지조직, APC 지원시스템에 공지(매년 1월초)
- 사업대상조직의 사업신청서(1월) 및 사업실적(2월)을 APC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 농협경제지주

- 농협조직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공지하고, 농협조직의 사업신청서 및 실적을 각각의 해당기한까지 APC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

## 사업대상조직

- 사업대상조직은 APC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적 입력
  - 사업신청서 입력(1월)
  -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주요 실적자료 입력(2월)

\* 생산유통 통합조직 및 출자출하조직의 기본(세부)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생산유통 통합조직 실적에 대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연차평가 및 등록내용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조직 최종 선정(3월 말)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생산유통 통합조직 실적에 대한 연차평가 및 등록내용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요건, 지원자격 등을 갖춘 조직에 대하여 예비대상조직으로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3월 하순까지)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원예작물, 유통

---

4-5. 수급안정, 소비촉진



## I 사업 개요

## □ 목 적

-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스스로 농산물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 □ 사업내용

- 농산물 가격안정 및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품목 자조금단체에 자율적 수급안정, 품질향상, 소비촉진, 수출활성화, 연구개발 등 사업비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 설치를 추진하는 단체(비영리법인),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운영 기관
  - 의무자조금단체 : 의무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 임의자조금단체 : 임의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 \* 기존 임의자조금단체('15년도 이전부터 지원한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규 임의자조금 단체는 결성 이후 3년간 한시 지원
- 의무자조금 추진 단체 : 3년내 의무자조금 설치를 전제로 비영리법인격을 갖추고 관련 계획을 품목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임의자조금단체
- 농협경제지주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품목 : 자조금단체 운영 등 사업비,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비, 행정경비 지원
- 지원기준 : 자조금단체 거출금 조성액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1:1(자부담 50% : 국고 50%)까지 매칭 지원(단,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사업비 및 행정경비는 국고 100%)

- 자조금단체는 운영실적 평가결과,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 '24년 총사업비 : 25,200백만원(국비 13,110, 자부담 12,090)
  - 자조금단체 : 24,180백만원(국비 12,090, 자부담 12,090)
  - 농협경제지주 : 1,020백만원(국비 100%)
    - \*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 1,000백만원, 행정경비 20백만원
    - \*\* 예산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총괄)	사무관 정수연 주무관 이유리	044-201-2219 044-201-2220
	원예산업과	서기관 이남윤 주무관 방혜정 사무관 김동훈 주무관 송미선 주무관 김종곤 사무관 최수빈 주무관 이혜빈	044-201-2236 044-201-2237 044-201-2238 044-201-2239 044-201-2241 044-201-2240 044-201-2242
	원예경영과	사무관 홍근훈 사무관 박찬원 사무관 허창각 주무관 이승원	044-201-2260 044-201-2258 044-201-2261 044-201-2262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서은희 주무관 김정인	044-201-2443 044-201-2440
	산림청	사유림경영과	사무관 김판중 주무관 오성완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한송록 과 장 정명호	02-2126-3057 02-2126-3058

## 1. 사업대상자

-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자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의무, 임의)
- 의무자조금 설치를 추진하는 임의자조금단체
- 농협경제지주(자조금통합지원센터)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의무자조금단체 : 의무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 \* 신규 의무자조금단체로 설치·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임의자조금단체에서만 가능
- 임의자조금단체 : 임의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 기존 임의자조금단체(15년도 이전부터 지원한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규 임의자조금단체는 결성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 의무자조금 추진단체(임의자조금단체)\*
  - \* (임의자조금 졸업제) 임의자조금단체 중 의무자조금을 추진하는 단체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의무자조금을 전환을 전제로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3년간 한시적 지원
  - 임의자조금단체가 3년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고자 관련 사업계획을 품목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임의자조금단체
- 농협경제지주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단, 2년 주기로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 실태 및 성과 등의 농식품부 검증을 받고 개선사항 도출 및 지속 운영여부 등 평가)

## 3. 지원범위 및 조건

### 가. 지원범위

- (의무자조금단체) 거출금 조성액 중 해당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1:1 매칭(자부담 50% : 국비 50%) 지원(단, 운영실적 평가결과,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품목별 차등지원에 따른 국비와 자부담 재원비율 준수하여 편성하되, 품목별 운영 역량에 따라 추가 자부담을 반영하여 재원비율 변경 가능

- (임의자조금단체) 거출금 조성액 중 해당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1:1 매칭(자부담 50% : 국비 50%) 지원(단, 운영실적 평가결과,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의무자조금 추진단체-임의자조금단체) 3년간 한시적으로 70%~100% 매칭비율 적용하되 1억원 한도내에서 국고 지원
-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비, 행정경비) 농협경제지주 자조금통합지원센터의 사업 계획을 농식품부 총괄부서 검토 및 승인 후 예산 지원

## 나. 지원조건

- 차등지원 : 자조금단체의 당해연도 자조금 사업계획(자부담),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자조금단체 운영실적 평가\* 결과, 자조금 정책 추진방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배정
  - 자조금단체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평가등급 및 매칭비율 등을 포함한 세부 평가계획에 따라 추진(단, 예산현황 등에 따라 변경가능)
  - 자조금단체 운영실적평가 세부 평가계획은 운영 실적(조성, 집행 실적 등) 중심의 평가에서 계획수립·운용효과·역량강화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상대평가 실시
    - \* 의무자조금 전환 이후 익년도 첫 배정 및 임의자조금 승인 후 익년도 첫 배정은 운영실적 평가결과 상위그룹 수준의 매칭율(최대 1:1) 적용
    - \*\* 당해연도 의무자조금 전환 또는 임의자조금 승인된 경우 당해연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 가능
    - \*\*\* 신규 의무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단체 운영실적을 승계하여 평가 가능
- 지원제외 : 의무자조금단체는 직전 3개년 평균 자조금 자체 조성액(국고 제외)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제외
  - \* 신규 자조금단체에 대해서는 자체 조성계획으로 대체 가능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기준

- 「농산물분야 농수산물자조금의 관리 및 운용요령(이하 '농산물자조금 운영 고시)」 별표(계정과목의 종류 및 배열) 항목에서 정하는 용도로 한정하여 지원
- 품목의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한 증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 및 운영하되 품목부서와 사전협의, 사업계획 승인 필요
  - 소비홍보(01항), 수급안정(02항), 유통구조개선(03항), 경쟁력제고(04항), 수출활성화(05항), 교육 및 정보제공(06항), 조사연구(07항) 중에서 품목 증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2~3개 선택하여 중점 운영 가능
  - \* 단, 교육 및 정보제공(06항)은 필수사항으로 사업계획에 반드시 편성 및 운영

- 단, 자조금 운영실적 평가 시 항별 운영 특성을 고려한 가중치 차등 설정 등 정성평가를 통해 차등점수 부여하며, 소비홍보(01항) 위주의 사업 운영은 지양
  - 예비비(11항)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집행 시 소요가 필요한 항목에 반영 (사업계획 변경 등 절차 이행) 후 집행 필요하며, 집행소요가 없다면 불용(국비는 반납) 처리(단, 수급안정예비비는 변경 절차없이 수급안정 항목으로 집행 가능)
  - 예비비(11항)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는 가능하나, 품목부서에 사업계획서 제출 시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예비비 현황 등 작성 포함하여 제출 필요(단, 국고를 포함하는 예비비는 별도 관리 불가하며 반드시 사업계획 내 예비비, 수급안정예비비로 편성하여 관리)
  - 단, 의무자조금 추진단체(임의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 설치 추진을 위해 소비홍보(01항), 교육 및 정보제공(06항), 성과평가(0730목), 선거(08항), 운영관리(10항) 용도로만 지원 가능
  - 의무자조금단체 운영관리비는 해당연도 총사업비(사용액)가 5억원 초과 품목은 30%, 5억원 이하~3억원 초과 품목은 35%, 3억원 이하 품목은 40%, 까지 적용  
\* 농식품부 고시 제2023-101호 제11조
  - 임의자조금단체 운영관리비는 해당연도 총사업비(집행액)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0%, 10억원 미만인 경우 30%(2억원 초과불가)(단, 의무자조금 추진단체 운영관리비는 총사업비의 30%까지 반영) \* 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 제27조
- 지원대상 자조금 단체의 확정, 매칭비율 및 금액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산물 자조금 및 품목정책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 (위원장) 유통정책과장, (위원) 지원대상 자조금 품목 담당 사무관, 외부위원 등 10인 내외

〈 농산물분야 농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고시 계정과목 〉

관	항	목	세목
○○○ 자조금 사업비	01 소비홍보	0110 광고	세부사업명
		0120 소비촉진	세부사업명
	02 수급안정	0210 수급조절	세부사업명
		0220 가격안정	세부사업명
		0230 수급안정 예비비	
	03 유통구조개선	0310 물류개선	세부사업명
		0320 포장재개선	세부사업명
		0330 유통개선	세부사업명
		0340 유통협력	세부사업명
		0350 소비자협력	세부사업명
	04 경쟁력제고	0410 품질향상	세부사업명
		0420 생산성 향상	세부사업명
		0430 안전성 제고	세부사업명
	05 수출활성화	0510 수출마케팅지원	세부사업명
		0520 전문가·바이어초청	세부사업명
		0530 해외시장개척	세부사업명
		0540 수출물류지원	세부사업명
	06 교육 및 정보제공	0610 거출홍보	세부사업명
		0620 교육	세부사업명
		0630 정보제공	세부사업명
		0640 선진지견학·해외연수	세부사업명
07 조사연구	0710 조사·연구용역	세부사업명	
	0720 연구회	세부사업명	
	0730 성과평가	세부사업명	
08 선거	0810 총회 의장·부의장· 감사 등의 선출	세부사업명	
	0820 대의원의 선출	세부사업명	
09 수납위탁 수수료	0910 수납기관 수수료	세부사업명	
10 운영관리	1010 인건비	세부사업명	
	1020 경비	세부사업명	
	1030 자산취득비	세부사업명	
11 예비비	1110 예비비		

\* 단, 농산자조금 고시 개정으로 계정과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기준 적용 가능



## 5. 사업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농식품부 (총괄부서)	○ 사업계획(지침) 수립 및 점검 등 사업 총괄 ○ 품목별 자조금 예산 배정 및 운영 점검 ○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 총괄
농협경제지주	○ 자조금 운영 및 관리, 점검 지원 ○ 자조금 평가 및 환류 지원 ○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농식품부 (품목부서)	○ 품목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품목별 자조금 운영 및 관리, 점검 ○ 품목별 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
품목 자조금단체	○ 자조금 세부사업계획 등 사업 신청 및 추진 ○ 자조금 운영 및 관리, 정산 등

## 6. 운영 및 관리

- 세부적인 자조금 운영은 「자조금 운영 통합 매뉴얼」을 기준으로 품목별 특성에 맞게 운영 및 관리하되, 제반 법령,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세부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품목부서의 사전협의·승인을 통해 추진 가능
- 자조금 단체는 단체별로 수립한 「○○○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24~'28)」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품목부서의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추진
  - 성장 단계별로 부여된 정책목표 및 단체별 자율적 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 목표를 마련하고, 매년 사업계획 시 정량목표 설정
- 자조금단체는 농수산자조금법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보고서를 품목부서 및 총괄부서(자조금통합지원센터 포함)에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자조금 운용 평가보고서는 품목의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 가능
- 보조금 관련 제반 법령에 따라 국고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단체는 외부회계 감사 대상으로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국고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단체는 외부회계검증 대상으로 감사인이 검증한 정산보고서를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 자조금단체는 대의원 및 거출농가 등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무국 직원은 자조금통합지원센터, aT유통교육원에서 개설·운영하는 자조금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참여

- 품목부서는 자조금단체의 적법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e나라도움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및 관리하여야 하며, 연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 의무(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총괄부서는 품목 담당부서 등과 합동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자조금단체는 관련 운영 및 집행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7. 집행결과보고(정산)

-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하게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을 이월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품목부서의 사전협의(총괄부서 보고 포함)를 거쳐 이월사업으로 추진 가능(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집행결과 보고)

## 8. 보조사업자 제재 및 처벌

-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제반 규정에 의거 지원 제한을 받음
- 농식품부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 ○ 부정수급 유형

#### 가. 주요 빈발 유형

구 분		내 용
허위 신청	허위 인력	근로자, 원생, 가족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나 등원하지 않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허위 신청
	허위 소득·재산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보조금 허위 신청 (소득·재산 미신고, 축소신고)
	기타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증빙서류 작성 등으로 보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보조금 허위 신청
허위 출결		보육시간, 근로시간, 훈련시간 등 출석일수 허위신고, 대리출석 등 보조금 지급요건에 출결이 포함되는 경우의 허위 출결
가격 부풀리기		공사비, 장비 구입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 과다 수령
정산서류 조작		고정 지출 증빙자료를 중복 사용, 폐업 사업처 세금계산서 사용 등
부적정 계약거래		보조사업자 가족간 거래 및 직원 명의의 거래업체 등 특정관계 거래처와 계약을 통해 보조금 부정 집행
자부담 회피·대납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업체가 대납한 뒤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보조금을 (정당한보조금+자부담금)보다 과다하게 수령
바우처카드 허위 결제		바우처카드를 부당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결제, 서비스 제공 시간 보다 과다 청구, 해외출국자 결제 등
목적외 사용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중요재산 임의처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을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무단으로 처분 (대여, 양도, 담보 등)
기타 (협의를 부정수급)		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광의의 부정수급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행정 담당자의 실수 등 행정상 착오로 인한 보조금 오지급
	행정시차	보조금 수급 자격요건 등의 변동 정보가 행정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시적인 보조금 오지급
	사정변경	보조금 신청 당시에는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기타	그 외 보조사업자 등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는 부적정 지급

#### 나. 단계별 유형

구 분	사 례
선정	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등의 선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ex) 허위 신청, 중복 선정, 선정업무 담당자와 선정 대상자의 결탁 등
집행	보조금 교부 뒤 해당 보조사업의 수행 및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ex) 가격 부풀리기, 자부담 대납, 바우처카드 허위결제, 허위 출결, 목적외 사용 등
사후관리	보조사업 종료 및 보조금 집행이 완료된 후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ex) 중요재산 임의처분 등

원예작물, 유통

4-5  
소수  
비급  
축안  
진정

##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 다. 보조금법상 유형

구 분	내 용
<b>허위수급</b>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지급 받은 경우
<b>다른 용도 사용</b>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
<b>법령등 위반 및 요건 미충족</b>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및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b>중요재산 임의처분</b>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되거나 효용이 증가한 재산을 무단으로 사후 처분한 경우 * 다만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명령만 가능하고, 제재부가금·수행배제 등의 제재처분은 불가
<b>광의의 부정수급</b>	보조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후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한 환수, 정산 결과 발견된 초과액 환수 등이 필요한 경우 * 다만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명령만 가능하고, 제재부가금·수행배제 등의 제재처분은 불가

### 라. 행위주체별 유형

구 분	사 례
<b>공무원</b>	부패, 태만, 부적정한 재량행위, 담당자 착오, 행정시스템 오류/미비 등
<b>보조 사업자</b>	허위신청 및 수급, 중복신청 및 수급, 사업비 부풀리기 및 자부담회피, 목적 외 사용, 인력 허위 등재, 지출내역 중복증빙, 사업 쪼개기, 무단담보, 무단임대 등
<b>보조금 수령자</b>	허위신청 및 수급, 중복신청 및 수급, 수급자격자 명의도용·대여 등
<b>제3자</b>	자부담 대납, 계약업체와 부정수급 공모 등

##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절차 안내

### ○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절차

- 검·경의 수사결과, 감사기관 감사결과, 사업시행기관의 현장점검 등으로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 보조금 교부 취소 및 반환, 제재부가금 등 징수, 사업수행 배제, 명단공표, 벌금 등 부과 (보조금법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조치 사항	업무 내용	업무 주체	보조금법
<b>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b>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중앙관서의 장 (소속 관서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 가능)	법 30조
↓			
<b>보조금 반환</b> (보조사업자)	○ 교부결정 취소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 반환 명령	중앙관서의 장 (소속 관서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 가능)	법 31조
·			
<b>보조금 환수</b> (보조금수령자)	○ 보조금수령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법 33조
↓			
<b>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b>	○ 반환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체납시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 징수(최대 5%)	중앙관서의 장	법 33조의2
↓			
<b>보조사업 수행 배제</b>	○ 교부 결정 취소 횟수에 따라 보조사업 5년 범위에서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중앙관서의 장	법 31조의2
↓			
<b>명단 공표</b>	○ 부정수급자 명단 등을 해당 중앙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	중앙관서의 장	법 36조의2
↓			
<b>강제 징수</b> (반환금 등 미납시)	○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 미납시 강제징수 ○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	중앙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법 33조의3
↓			
<b>신고포상금</b> (신고 등이 있을시)	○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중앙관서의 장	법 39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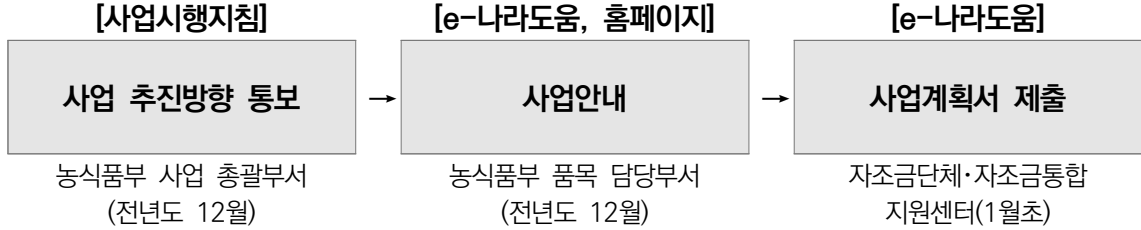
원예작물, 유통

4-5  
소수  
비급  
축안  
진정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신청



- 농식품부 사업 총괄부서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농식품부 품목 담당부서는 자조금단체 등에 신속히 사업 홍보·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농식품부 품목 담당부서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필요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농협경제지주 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농식품부 사업 총괄부서에 사업계획 제출

### 2. 사업 승인

- 농식품부 품목 담당부서는 자조금단체가 제출한 추진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승인하고 그 결과(검토의견 등 포함)를 농식품부 사업 총괄부서 및 e나라도움에 제출·등록(1월 말까지)
  - 농식품부 사업 총괄부서의 평가 및 자금배정이 완료되면 자금배정 결과가 반영된 최종 계획서를 농식품부 품목 담당부서가 승인
    - \* 사업계획의 승인은 자조금지원 사업자로 선정됨을 의미하므로 자격요건, 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 농식품부 사업 총괄부서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후, 조정 및 보완을 거쳐 최종 승인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온라인직거래지원센터 조성 지원을 통해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온라인 농식품 직거래 생태계 조성

## □ 사업내용

-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육성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APC 보유 생산자단체(농협·농업법인 및 협동조합 등), 지자체\*  
\* 지자체는 민간업체(농협·농업법인·협동조합)와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온라인 직거래에 필요한 장비, 컨설팅, 홍보, 고객관리, 운송비
- 지원 기준 : <1년차> 국고 70%, 자부담 30%, <2~3년차> 국고 50%, 자부담 50%
- '24년 예산 : 870백만원

## □ 사업 신청

- 공고 방법 : aT 홈페이지 등
- 신청 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 기간 : 공고문에 별도 표시

##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사무관 이효열 주무관 최영준	044-201-2285 044-201-228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부	차 장 김주식 주 임 정 준	061-931-1035 061-931-1095



## 1. 사업대상자

-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APC 보유 생산자단체(농협·농업법인 및 협동조합 등), 지자체\*
  - \*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 기간내 그 기간이 유효해야함.
  - \* 지자체는 민간업체(농협·농업법인·협동조합)와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가점사항) 민·관 협력하여 사업 신청하는 지자체(컨소시엄) 우대

## 3. 지원대상

- 온라인 직거래에 필요한 장비, 컨설팅, 홍보, 고객관리, 운송비 등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사업자의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장비, 컨설팅, 홍보, CS, 운송비 등
  - (영상 장비) 상품 상세페이지 및 영상 직접 제작이 가능하도록 조직 내 촬영 장비 신규 구매 및 유지보수 지원
  - (교육·컨설팅) 산지조직의 온라인 거래 역량 향상 지원
    - 산지 조직 구성원 대상 온라인 거래 필수지식 습득 등을 위한 강의 지원
    - 소비자 지향 마케팅 등 민간 전문기업 통한 컨설팅 비용 지원
  - (홍보·마케팅) '라이브커머스'방송 및 11번가·쿠팡 등 주요 온라인몰 입점 수수료 등 지원, 온라인 특화 홍보 콘텐츠 개발 등
  - (고객관리) 온라인 직거래 운영에 필요한 CS 인력 인건비 지원
  - (운송지원) 온라인 직거래에 필요한 택배 운송비 지원
    - \* 저렴한 농협택배 활용 권장
  - (기타) 영상 장비 외 자본적 지출, 세금 등을 제외한 온라인 직거래 추진 관련 비용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조직별 연간 신규210백만원(2·3년차150백만원)(국비 기준) 이내, 3년간 지원
  - <1년차> 국고 70%, 자부담 30%, <2~3년차> 국고 50%, 자부담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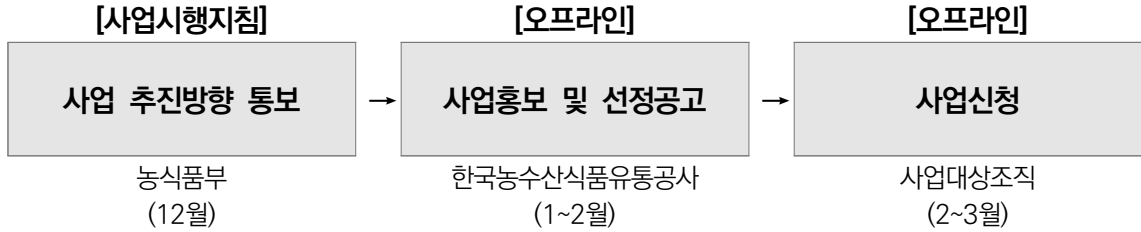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규 1개소당 210백만원 한도(계속 사업자 150백만원)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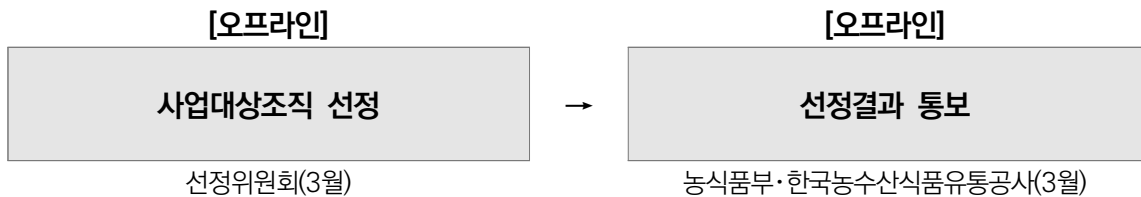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대상조직을 대상으로 사업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1~2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농식품부)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은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 (2~3월, 사업대상조직→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사업대상조직은 사업신청 시, 중장기(3년)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이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 필요

원예작물,  
유통

4-5  
소수  
비급  
축안  
진정

### 2. 사업자 선정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진행
  - \*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고 외부전문가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10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
  - \* 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법령 준용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 시 선정하고, 최종순위 결정
  - \* 서면평가(70점 이상) → 발표평가(80점 이상) → 최종순위 결정(서면 30% + 발표 70%)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서면평가 : 기본요건(생산자단체 요건 및 APC보유여부), 원예농산물 총취급액, 온라인 직거래 취급액 및 취급 비율 등 평가
- 발표평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역량 등 평가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평가 완료 후 결과를 농식품로 보고
  - 선정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조직 선정 및 통보(농식품부 → 사업대상 조직)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다국적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대표 과실브랜드 육성

## □ 사업내용

-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홍보지원 등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전국공동브랜드)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홍보지원 등
- 지원 기준 : (전국) 국고 70%, 자부담 30%  
(지역)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24년 예산 : 962백만원(국비 540, 지방비 100, 자부담 322)

## □ 사업 신청

- 장소 : 브랜드 경영체는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신청기간 : '24.1월

원예작물,  
유통4-5  
소수  
비급  
축안  
진정

## □ 대상자 선정

-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시·군 예비심사, 시·도 자체평가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농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실시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장 미 주무관 성원우	044-201-2254 044-201-2255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과장 송태명	054-534-8003

## 1. 사업대상자

-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 시·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연계 추진 시행주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우선 지원
    -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 3. 지원대상

- 과실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 지원
  -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 \* 브랜드 경영체가 회원농가 기술지도 → 고품질 과실생산 → 상품화(선별, 가공 등) → 브랜드관리를 일원화하는데 필요한 사업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브랜드 품질관리 : 기술지원단·홈페이지 운영, 유통정보화, 농가유통 교육, 산지·소비자 품질조사, 컨설팅, 브랜드 평가회 등
  - \* 수발주관리, 거래처관리, 회원관리 등 브랜드 관리 및 품질관리 시스템 지원가능(ICT 융복합 사업 추진 시 농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 사전 협의 필요)

- 마케팅 운영 : 인건비·마케팅 활동비, 바이어 사업설명회, 상품개발비,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사무실 운영비 등
- 브랜드 홍보 : 광고·홍보비, 소비촉진 시식회, 과실브랜드 축제, 브랜드개발 등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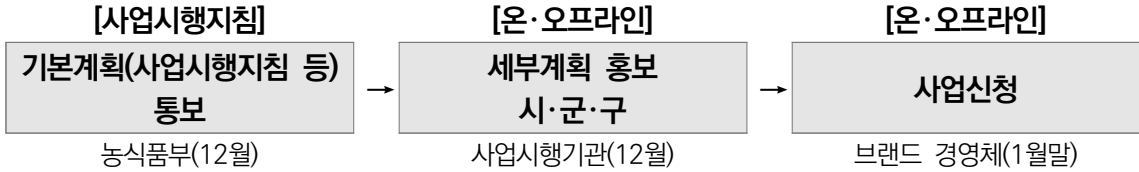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전국공동브랜드 : 국고 70%, 자부담 30%
  - 지역공동브랜드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자부담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전국공동브랜드 : 연차별 사업수요 반영
- 지역공동브랜드 : 개소당 총사업비 900~3,000백만원 기준(3년간 균분지원)
  - 개소당 연간 지원액 : 3~10억원(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붙임 1, 2” 참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 신청서 양식 : 별지 4-1호 서식

브랜드경영체

□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제출(1월말까지 시·군·구)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회원조합, 지자체,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포함
- 과실 생산, 유통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
  - 유통, 경영, 품목생산 등 분야별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관련 행정기관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10명 내외)
  - 사업계획서의 과수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자료인용 또는 검토의견을 첨부

\* 2개 시·군 이상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관 시·군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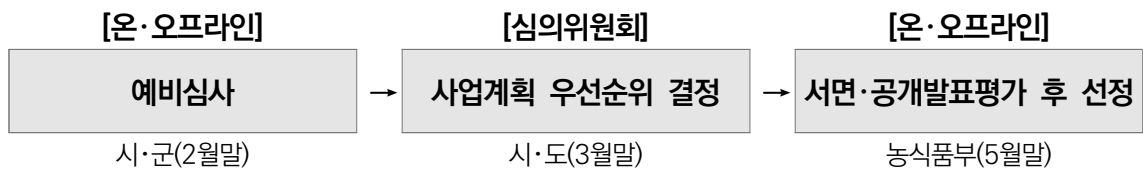
□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해당 지역의 산업여건 및 전망분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사업완료시와 완료 후 5년, 10년 후 등의 장기비전 제시
  - 참여농가 수, 브랜드 출하비율 등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원예작물, 유통  
4-5  
소수  
비급  
축안  
진정

-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목표달성에 필요한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거점 APC 등 기존시설 또는 계획 중인 유통시설을 이용한 마케팅 계획
- 세부사업별 예산 및 산출근거 등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회원관리, 과실 생산·유통 및 소비지 관리 등 각 단계에 필요한 마케팅 운영 및 브랜드 홍보 지원 계획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군

- 브랜드 경영체에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농정관련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시·도에 제출(2월말)

### 시·도

- 시·도 원예산업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평가기준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3월말)
  -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상이한 사업계획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 시·도가 직접 추진하는 광역사업계획은 시·군과 같은 절차로 작성하되 우선순위 없이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및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5월말)

## 세부 심사·평가절차

###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비공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5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공개발표평가의 평가 자료로 활용

####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 심사평가기준 :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기간, 사업 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 동점 발생시 4번 대분류 평가항목(유통혁신 및 계획)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원을 통해 영세농가의 판로 지원

## □ 사업내용

-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부스 설치비, 홍보비, 인건비 등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운영주체 필요)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직거래장터 운영비
- 지원 기준 : (대표장터) 국비 70%, 자부담 30%
  - (정례장터) <1년차> 국비 70%, 자부담 30%, <2년차> 국비 50%, 자부담 50%
- '24년 예산 : 1,350백만원

## □ 사업 신청

- 바로정보(www.baroinfo.com)에서 사업 신청

## □ 대상자 선정

- 부지 적정성, 농가 조직화 정도, 품질관리 방안 등 평가
- 선정기준에 따라 내·외부 심사를 거쳐 선정('24.1~2월)

원예작물,  
유통4-5  
소수  
비급  
축안  
진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사무관 이효열 주무관 최영준	044-201-2285 044-201-228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처	부 장 정유진 차 장 김광석	061-931-1020 061-931-1021

## 1. 사업대상자

- (대표장터) 대표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 장터 운영·관리를 위한 대표법인 필요하며,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별도 제약 없음
- (정례장터) 정례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운영주체 필요
- 공고일 현재 농업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또는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농협(산림)조합,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 ※ 지원가능 법인 -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허가, 인증, 신고) 한 단체에 한함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비영리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 농협(농업협동조합법)
- 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표장터) 장터 개설지 점용권 확보, 대표법인과 지자체 간 운영계약
  - 평가위원 평균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 선정하며, 동점 발생 시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 한 사업자 우선 선정
    - \* 계량과 비계량 합산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 (정례장터)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
  - 지자체 주관 직거래장터는 사업비목 특성(민간경상보조)상 사업비 교부 및 장터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기관' 필요

## ※ 지원요건(사업의무사항): 아래의 ①~⑥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가 주관하는 직거래 장터
- 장터 운영기간 동안 장터개설지 점용권 확보
- 일정 규모(대표 50농가, 정례 15)·운영횟수(대표 연 50회, 정례 15) 준수 필요

- 판매공간이 일정규모(대표 텐트 50동, 정례 15동 또는 이에 준하는 크기) 이상
- 지정일(추후 공고)까지 미개장 시 선정 취소

### 3. 지원대상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텐트, 매대, 비가림막 등) 설치·구입·임대, 홍보비, 시식 및 판촉비, 소비자교류(체험), 참여자 교육, 인건비 등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장터 시설·장치, 홍보, 판촉, 교류·체험, 교육, 인건비 및 기타 대표장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대표장터) 국비 70%, 자부담 30%
  - 연 50회 이상 운영, 50농가 이상·50동 이상 운영 의무
- (정례장터) <1년차> 국비 70%, 자부담 30%, <2년차> 국비 50%, 자부담 50%
  - 연 15회 이상 운영, 15농가 이상·15동 이상 운영 의무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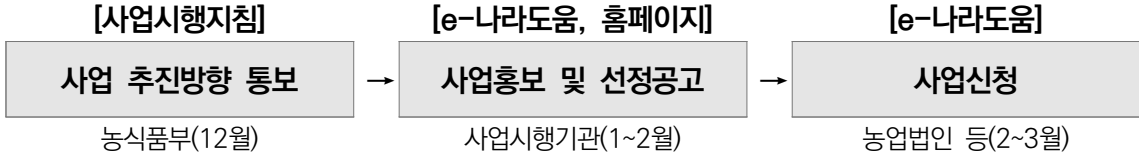
- (대표장터) 5년간 1,100백만원(1년차 300백만원, 2~5년차 200) 지원
- (정례장터) 2년간 연 최대 50백만원



###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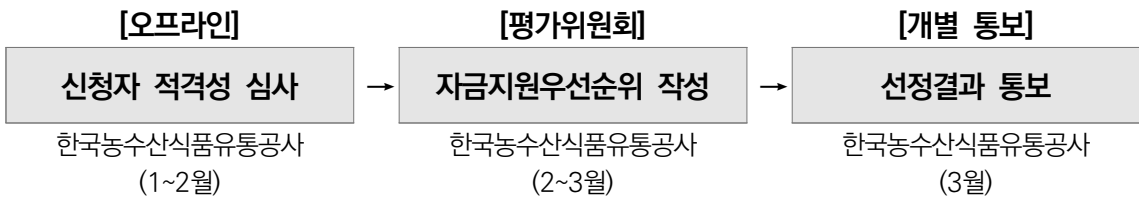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필요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 필요

### 2. 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확인**해야 함
  - \* e나라도움을 통한 자격검증,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 e나라도움을 통한 수혜이력,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이력을 확인하여 중복·편중 지원 방지

원예작물,  
유통

4-5  
소수  
비급  
축안  
진정

- 유사자금\* 지원제한(「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
  - \*\* 「기본규정」 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서 검토 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 1)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 2)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3)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 4)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규정」 제35조제7항)
  - 5) 기타 사업시행지침에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 경우
-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기본규정」 별표 6)에 적합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함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안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 사업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원예작물, 유통

---

### 4-6. 산지조직화(통합안내)



## I 사업 개요

## □ 목적

- 원예농산물 생산자조직에 기반한 전문 판매조직 육성

## □ 사업내용

- 품목별 생산과 유통을 결합한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등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
-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관련 사업(20개)의 종합지원을 위한 절차 규정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생산유통 통합조직(육성대상자 포함)으로 등록된 농협조직, 농업법인 또는 협동조합
- (등록 요건) 생산자조직과 전속출하·판매권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중기(3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조직
  - 품목별 조직화 수준, 취급액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생산자조직과 약정출하·판매권 위임 계약을 포함하여 '생산유통 통합조직' 전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관련 20개 사업
- (지원 기준) 각 사업별 예산에 따름

## □ 사업신청

-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신청, 등록 및 평가 등 절차는 APC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실시

-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그 구성원(출자출하조직, 생산자)의 사업을 통합하여 신청
- 신청 기간 : 조직 등록(2월), 사업 예비신청(3월), 본사업 신청(9월)
- \* 본사업 신청은 사업마다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 대상자 선정

- 각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며 ①생산유통 통합조직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사업, ②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우선·우대 지원하는 사업, ③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참여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

###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대상 사업〉

구분	사업명
통합조직에 한정 (7개)	산지유통활성화자금(융자), 공동선별비지원(광역, 지역), APC(일반, 과수거점, 과수유통시설), 산지조직지원
통합조직 우선·우대 (12개)	시설원예현대화, 스마트팜(시설보급, 온실신축), 에너지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과수ICT융복합, 과실생산기반조성, 수급안정계약재배(채소), 농산물 생산유통조절지원, 채소류출하조절시설지원,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조건부 지원(1개)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

##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정성수	044-201-2223
		주무관 김대영	044-201-222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부	부 장 김효진	061-931-1030
		차 장 우승완	061-931-1031
		과 장 박혜난	061-931-1096
농협경제제주	산지유통부	팀 장 박진환	02-2080-6326
		차 장 공희진	02-2080-6327

## 1 생산유통 통합조직 정의 및 구성

## □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정의

- 생산자(조직)과 유통조직의 통합(높은 수준의 계열화)을 통한 생산유통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구축한 생산유통 통합조직
  - 생산부문 : 생산농가들이 상호협력에 기반하여 공동영농(재배기술, 품질관리 등 통합) 및 통합출하(공동선별 수탁·매취, 공동출하수탁 등)하는 생산자조직을 결성·운영하고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또는 출자출하조직)이 정한 품질규격, 출하방식, 판매처 등을 준수하여 마케팅 의사결정에 참여
  - 유통부문 : 생산자조직과 협력하여 상품화(선별, 포장 등), 판매마케팅, 조직원농가 영농·경영지도 등을 수행

## □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구성

- 생산자조직 :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는 복수의 농가가 상호연대(농자재 구입, 공동영농, 재배기술통합, 협력출하 등)하여 결성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또는 출자출하조직)과 출하계약(3년 이상 권고)을 체결하고 이행한 생산농가조직 또는 농업법인(생산형법인)
  -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①계약물량 전량(80% 이상)출하(조직원 농가 간 연대·협력을 위한 기초제도), ②출하한 농산물의 판매권한을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또는 출자출하조직)에 위임, ③조직의 재배기술 준수, ④생산정보 제공 등의 활동 수행
    - \* 동일한 품목 생산농가는 하나의 생산자조직에 가입(다만, 품목이 다른 경우, 동일 품목 재배지역이 원거리에 분리된 경우 예외)
  -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사업계획 수립·추진 및 환경보전·수급관리 등 활동에 참여
- 출자출하조직 : 생산자조직원 농가 영농지도, 수탁·매취사업 관리, 상품화 등을 수행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출자출하(또는 출하)하는 농협 또는 농업법인
  - 공통사항 : 생산자조직이 출하한 농산물의 전량(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판매권한을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위임, 생산자조직 관리, 생산유통 통합조직 의사결정 참여 등

- 출자출하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출자한 주주로서 조직 운영 및 판매마케팅 사업 활성화를 위한 책임역할 수행
- 출하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출자 없이 판매권을 위임하여 출하하는 조직으로 생산유통 통합조직과 법적구속력을 갖춘 판매권위임협약서(3년 이상 권고) 작성
- 생산유통 통합조직 : 생산자조직 및 출자출하조직으로부터 판매권을 위임받아 공동마케팅을 수행하는 전문 판매조직
- 사업계획(중기) 수립 및 실행, 생산자조직 및 출자출하조직 관리 총괄
- 사업기획·조정, 판매·마케팅 사업운영, 조직의 기능·역할, 책임·권한, 재무계획 등에 관한 관련 규칙의 제정·운영

## 2 생산유통 통합조직 요건

### 1. 기본요건

#### □ 생산유통 통합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은 법인이어야 하며, 법인별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
  - 품목농협 또는 지역농협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광역원예농협 : 사업지역(정관)이 3개 시·군 이상
- 시·군 합병농협 : 1시·군에 농협이 1개소인 농협
- 지역(품목)농협연합 : 3개 시·군(또는 2개 도) 이상의 출하조직(농협)으로 구성
- 지역(품목)농협 : 3개 시·군(또는 2개 도) 이상의 생산자조직으로 구성 또는 동일 시·군 내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없고 시·군 내 다른 지역(품목)농협의 동의를 있는 경우
  - \* 지역(품목)농협연합, 지역(품목)농협은 품목특성, 생산·판매여건, 취급규모, 사업목적 및 계획 등 고려하여 요건을 별도 심사
  - \* 대도시 근교농업지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는 지역 범위를 별도 심사할 수 있음
-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 유통전문 자회사 또는 ‘도’ 지역본부 연합사업단
  - \*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정을 받은 조직
  - \* 농협 시·군연합사업단은 '24년에 한해서 신청가능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인정을 받아야 함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사업신청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별표6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출자자본금 3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 3년 이상, 농업인조합원(주주) 20명 이상
  - \* 생산자단체가 출자한 경우 출자금 비중과 생산자단체의 농업인 주주 수를 계산하여 인정
  - \* 시설하우스(1ha 이상), 대형과원(5h 이상) 등 대형생산시설을 경영하는 조합원(주주)의 수는 5배수로 인정할 수 있음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주주의 지분이 50% 초과
  - \* 생산자단체가 출자한 경우 농업인주주의 지분율을 산정하여 인정, 지자체 출자지분은 인정하지 않음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하여야 함(그 외 요건은 농업법인과 동일)

## □ 출자출하조직

- 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
  - 농협 : 지역농협, 품목농협
    - \* 농협 등이 출하한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출자출하조직 또는 출하조직으로 불인정
  - 농업법인 :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사업운영 1년 이상, 농업인조합원(주주) 5명이상, 농업인주주 지분 50%이상(농업회사법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함
  - 협동조합 : 조합원의 50%이상 농업인, 그 외 요건은 농업법인과 동일

## □ 공통사항

- 임산물류·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조직의 경우 원예농산물 대상품목(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만 한하여 사업대상에 포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 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2. 세부요건

\* 취급액은 판매액을 기준으로 함(수수료는 제외)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취급액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 가능

### □ 생산유통 통합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은 전문품목을 선정하여 생산·유통을 계열화하고 중기(3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조직(기존 산지유통 혁신조직)

○ 승인요건 : 품목별 총취급액 및 전속취급률 요건을 갖춘 조직

\* 전문 취급품목의 수는 제한이 없으나 취급품목들의 동질성·연계성 등 필요

\* (총취급액) 전문 품목(부류)의 총 취급액이며, 판매액으로 산정

\* (전속출하액) 생산자조직이 통합조직에 출하한 물량의 최종 판매액으로 산정

\* (전속취급률)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전문 품목 총취급액 대비 전속출하액 비율

#### 〈 품목별 총취급액 및 전속취급률 요건 〉

구분	과실류		시설원예		노지채소	
전문 품목별 총취급액	80억원 이상		6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전속취급률 (총취급액 기준)	80~150억원 미만	50%	60~100억원 미만	50%	40~70억원 미만	50%
	150억원 이상	40%	100억원 이상	40%	70억원 이상	40%

\* (총취급액) 과실류 중 참다래, 자두, 베리류는 60억원이상, 시설원예 중 오이, 호박, 가지는 40억원 이상

\* 품목 특성상 고구마는 과실류 기준을 적용하고, 마늘, 양파 등 수급관리 중점품목은 별도 심사 가능

\* 품목 또는 품목부류 기준은 <붙임 1> 참조

- 전문품목 이외에 전문품목 총취급액 및 전속취급률 요건의 50%이상이면서 승인기간 이내 전문품목의 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육성하는 육성품목을 선정할 수 있음

\* 생산유통 통합조직(육성형)은 육성품목 선정 없음

#### 〈 생산유통 통합조직(육성형) 〉

○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품목 취급액 요건을 완화하고 약정취급 요건을 갖춘 조직('26년에 등록하는 조직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약정취급 : 생산자조직원 생산의 일부를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과 약정(계약)하여 출하하는 방식(공동선별(수탁,매취), 공동출하)

\* 다만, 공동출하는 전속출하(계약물량의 80% 이상)를 약정해야함

○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선정한 전품목에 대한 약정취급 요건

- 품목별 약정취급액 : 과수 40억원, 시설원예 30억원, 노지채소 20억원 이상

- 품목별 약정취급률 : 품목별 약정취급액이 총취급액의 30%이상

○ 적용시기 : '24년부터

## □ 출자출하조직

- 생산자조직이 출하한 전문품목의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판매위임 금액 5억원 이상, 출자출하조직 취급액의 40% 이상 생산유통 통합조직 출하, 생산자조직 출하금액의 50% 이상 생산유통 통합조직 출하

### 〈 생산유통 통합조직(육성형)의 출자출하조직 〉

- 전문품목의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판매위임한 약정출하 금액(품목별) 3억원 이상 및 약정취급 물량 전량 출하
- 전문품목 출하율 :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 통합조직 출하액이 출자출하조직 취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20% 이상
- 적용시기 : '24년부터

-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출자출하조직이 당해조직의 미취급 품목을 다른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출하하는 경우 복수의 출자출하조직의 지위를 갖는 것을 인정(단, 해당 품목의 출자출하조직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동일 품목을 복수의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판매위임할 수 없음

- 출자하지 않고 출하만하는 조직은 생산유통 통합조직과 판매위임협약서(법적 구속력 확보 내용, 계약기간 최소 3년)를 작성해야 함

\* 생산유통 통합조직 승인(또는 등록)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해야함

## □ 생산자조직

- 생산자조직은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출하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물량의 전량(80% 이상) 출하

\* 1 농가는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1개 생산자조직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복수의 품목을 재배하거나 동일한 품목의 복수 재배지역이 원거리인 경우 복수의 생산자조직에 가입할 수 있음

### 〈 생산유통 통합조직(육성형) 〉

- 공동선별(수탁) 생산자조직은 농가 5인 이상, 출하금액 5천만원 이상
- 공동선별(매취) 생산자조직은 농가 5인 이상 권장, 출하금액 5천만원 이상
- 공동출하(수탁) 생산자조직은 농가 5인 이상, 출하금액 5천만원 이상, 계약물량의 전량 (80% 이상) 출하
- 적용시기 : '24년부터

- 공동선별(수탁, 매취), 공동출하(수탁) 농가 모두가 생산자조직을 결성·운영해야 함
  - \* 생산유통 통합조직 또는 출자출하조직은 필요에 따라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복수의 생산자 조직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생산자조직은 생산유통 통합조직(및 출자출하조직) 거버넌스(운영위원회 등)에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대표 등), 관련 회칙, 규칙 등을 수립·운영해야 하며, 생산자 조직원의 생산현황 및 출하현황을 연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함
  - \* 생산자조직의 회칙, 생산자조직원의 생산현황, 출하현황, 약정현황, 출하결과 관리장부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사업결과 점검, 평가, 현장실사 등에서 증빙자료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함

## □ 연결실적 인정

-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인수·합병 등 정당하게 변경되었을 경우 이전조직의 실적을 연결하여 인정
-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유형 변경) 시군 연합사업단을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도(道) 연합사업단으로 변경, 생산유통 통합조직(舊 산지통합마케팅조직) 간 통합 또는 인정할 수 있는 변경의 경우 기존 조직의 실적을 인정
- (출자출하조직의 소속 변경) 출자출하조직(舊 참여조직)이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출하 실적을 연결하여 일정

## 3 생산유통 통합조직 승인, 등록 및 사업계획서

### □ 생산유통 통합조직 승인, 등록

- 생산유통 통합조직은 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3년 기간)를 제출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승인 신청서 양식(붙임 3),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자료 목록
- 승인기간 : 3년(사업계획서 기간)
  - \* 승인 3년차 하반기에 차기 3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차기 계획 승인 심사
- 승인절차 : 승인신청서 제출, 사업계획서(3년) 제출, 사업계획서 자문컨설팅 및 수정보완, 농림축산식품부 검토, 승인심사 등의 단계를 거쳐 승인함(10~12월)
  - 농림축산식품부 검토 : 전문품목 및 지원사업별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검토
  - 승인심사 : 산·학·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서면심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대표) 면접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 \* 자격요건 검토, 승인심사에서 탈락한 조직은 차기년도에 생산유통 통합조직(육성형)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생산유통 통합조직은 매년 2월 전년 사업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생산유통 통합조직 연차평가 연계)

### 〈생산유통 통합조직 : 육성형 등록〉

- 생산유통 통합조직(육성형)은 한시적('26년 등록신청 까지)으로 등록제 실시
- 등록기간은 1년이며,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1년, 등록신청 차기년도 계획) 제출
  - \* 등록신청서를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신청(2월) 및 사업계획서 제출(3월)
  - \* 등록 신청서 양식(붙임4),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자료 목록
- 등록절차 :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1년) 제출, 등록요건 심사 단계를 거쳐 정책지원사업 자격 부여(3월)
  - 등록심사 : 최초 등록시 현장실사단(농식품부, aT, 농협경제지주 등) 구성·운영
    - \* 재등록 시에는 등록요건 적합여부를 서면검토하고, 재등록 조직 중 일부조직(20% 내외)에 대해서 상반기 중 현장실사단(농식품부, aT, 농협경제지주 등)을 구성·운영하여 현장 관리 및 감독 실시
    - \* 사업계획서 검토 단계에서 수정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등록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보완을 실시해야 함

## □ 사업계획서

- 생산유통 통합조직은 중기(3년) 동안 사업목표, 추진전략, 세부사업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생산유통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 \* 생산유통 통합조직(육성형)은 1년 단위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 주요 내용 : 사업현황 및 여건 진단·분석, 사업목표 및 사업전략, 부문별 사업추진계획, 투자계획 등
  - \* (붙임)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 사업목표 및 사업전략 : 사업여건 및 추진목표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수립
    - \* 사업목표는 연차별 사업결과평가를 위한 지표로 활용
  - 부문별 사업계획 : 전문취급품목의 조직구성 및 출하체계, 생산(물량·품질), 상품화(선별, 포장 등), 판매마케팅·물류, 사업조직육성, 수급관리, 환경친화, 디지털혁신 등
  - 투자계획 : 사업목표 달성, 사업전략 및 부문별 사업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투자계획

### 〈부문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항목	주요내용
조직구성 및 출하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조직, 출자출하조직, 출하조직 등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구성</li> <li>○ 생산자조직, 출자출하조직별 전문취급품목별 출하방식·취급방식</li> <li>○ 생산자조직, 출자출하조직, 통합조직의 운영규칙, 거버넌스 등</li> </ul>
생산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조직원 재배기술, 품목 및 품종별 재배면적(재배시설) 등</li> <li>○ 품목 및 품종별 생산계획(생산량, 품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 : 상품성, 품위, 크기 등 시장선호에 적합한 품질의 특성</li> </ul> </li> </ul>
상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유통시설(출자출하조직 포함) 운영, 시설 보완 등</li> <li>○ 공동선별, 상품개발, 포장재 관리 등</li> </ul>
사업조직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조직, 출자출하조직, 통합조직의 사업역량 강화</li> <li>○ 전문인력 육성</li> </ul>
판매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마케팅 계획(물량, 품질별 판매처), 상품개발 등</li> <li>○ 산지유통시설 내부 물류효율화, 원물 및 상품 물류 효율화 등</li> </ul>
환경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 상품화, 물류 부문의 에너지 절감, 탄소배출 절감 등</li> <li>○ 생산 및 상품화 단계에서의 식품위생안전 강화</li> </ul>
디지털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조직 및 조직원 농가 재배(생산), 출하, 선별결과, 정산관리 정보화</li> <li>○ 산지유통시설 스마트화 추진</li> <li>○ 판매마케팅, 물류 부문의 디지털 혁신 등</li> </ul>
투자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각 부분별 투가계획</li> <li>○ 투자재원의 조달 : 자부담 사업, 지방비 보조사업, 정부 지원사업 등</li> </ul>

- 지자체 협의 및 원예산업발전계획 : 생산유통 통합조직은 사업계획에서 수립한 정부지원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 생산유통 통합조직 사업계획 표지에 지자체 협의 공무원의 서명 필수
  - \* 생산유통 통합조직은 생산자조직, 출자출하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해야 함
  - \* 지자체의 지원대상 기준 : 생산자는 농지 및 재배시설의 위치, 유통조직은 주사무소의 위치
- 지자체는 원예산업발전계획(2023~27년) 내용과 생산유통 통합조직 사업계획이 조화될 수 있도록 협의 및 조정
  - \* 지자체는 협의과정에서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1~12월, 원예산업발전계획 연차별 이행결과보고서 제출(2월))
-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사업계획서에 지자체 지원사업을 수립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함
  - \*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관련 내용은 승인 과정에서 제외됨

## □ 정부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절차

- 생산유통 통합조직(육성형 포함)은 출자출하조직, 생산자조직원 농가의 사업 신청계획을 통합하여 신청(각 사업별 일정에 따라 신청)

### 〈원예산업 생산·유통 부문별 정부지원사업〉

구분	지원대상	지원사업
유통부문	생산유통 통합조직 출자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유통활성화사업(용자) 지원사업</li> <li>○ 농산물 공동선별비지원사업(지자체)</li> <li>○ 농산물 공동선별비지원사업(직접지원)</li> <li>○ 산지조직지원사업</li> <li>○ APC 건립·보완사업</li> <li>○ 과수거점APC 건립·보완사업</li> <li>○ (과수)유통시설현대화사업(보완사업)</li> </ul>
생산 및 수급관리 부분	생산유통 통합조직 출자출하조직 생산자조직원 농가 (우선선정 또는 우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예시설현대화</li> <li>○ 스마트팜 ICT 융복합</li> <li>○ 에너지절감시설 지원</li> <li>○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지원</li> <li>○ 과수ICT 융복합 지원</li> <li>○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li> <li>○ 수급안정계약재배(용자)</li> <li>○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li> <li>○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li> <li>○ 과수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후 1년 이내 의무)</li> <li>○ 저온유통체계(저온시설, 저온차량) (계획 포함시 가점)</li> </ul>
육성분야	사업 후 생산유통 통합조직 (조직)출자출하 (농가)출하 (전속, 약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2년차에 의무)</li> </ul>

## 4 생산유통 통합조직 사후관리

### □ 생산유통 통합조직 연차평가

- 목적 : 생산유통 통합조직 사업자의 사업성과에 대한 연차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정부승인) 상 목표 달성 여부 점검 등 전체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평가시기 : 매년 2월 (전년 사업실적 집계시기 고려)
  - 연차보고서 제출(농식품부·aT, 2월초) → 연차평가 실시(농식품부·aT, 2월 중순)
  - 연차평가 결과보고(aT → 농식품부, 2월말)

- 평가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
- 평가내용 : 생산유통 통합조직 및 출자출하조직 승인요건 적합여부 등
  - 승인요건 : 전문품목 취급액, 전속출하율, 전속취급률 등
- 평가방법 : 산·학·연 전문가 3~5인 이상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서면평가 실시
  -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실적에 대하여 평가
  -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대표) 면접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연차평가보고서 기준 승인요건 적합여부, 사업계획의 추진성과 평가
    - \* 승인 3년차 도래시 차기 3년 사업계획서 승인심사 평가위원회 현장실사 추진
- 평가결과 : 승인요건 미달, 사업추진 부진, 추진성과 미흡 등의 경우 주의 및 개선요구 조치하고, 2년 연속 승인요건 미달 시 생산유통 통합조직 승인 취소
  - \*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제출한 사업결과보고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사전에 생산유통 통합조직 동의)

### 〈생산유통 통합조직(육성형) 사업결과 점검〉

- 생산유통 통합조직(육성형)은 재등록시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2월초)
- 생산유통 통합조직(육성형)에 대해서는 재등록시 등록요건 적합여부를 서면검토하고, 재등록 신청조직 중 일부(20% 내외) 조직에 대해서 상반기 중 현장실사단(농식품부, aT, 농업경제지주)을 구성·운영하여 관리·감독
  - \* 현장실사 대상 : 실적 급상승, 등록요건 적합도가 불안정한 조직,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불성실 조직 등

- 현장실사 점검결과 조치사항
  - \* 현장실사 점검자 : 농식품부, aT, 농업경제지주 등
  - 주의 대상 : 점검결과 제출자료의 오류, 관련 요구자료 제출 비협조, 자료제출 지연 등의 조직은 차기년도 산지유통활성화사업 평가 감점(최대 △10점)
  - 승인(등록) 취소 : 점검결과 고의성이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 조직은 즉시 승인(등록) 취소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축 산

---

### 5-1. 시설·장비지원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이연섭	
	축산경영과	사무관 박일수, 주무관 주재호(총괄)	044-201-2335·2334
	축산경영과	사무관 이재승, 주무관 김해일(양돈)	044-201-2336·2337
	축산경영과	사무관 김정수, 주무관 정광호(한우)	044-201-2332·2333
	축산경영과	사무관 민동명, 주무관 김주영(가금)	044-201-2338·2339
	축산경영과	사무관 정훈기(산란계)	044-201-2344
	축산경영과	사무관 홍석구, 주무관 이민구(낙농·육우)	044-201-2340·2341
	축산정책과	사무관 백재관, 주무관 임수현(말)	044-201-2324·2325
	축산경영과	사무관 신소연(전문 종축장)	044-201-2342
	축산환경자원과 그린바이오산업팀	사무관 이민정, 주무관 황정훈(가축분뇨·악취) 사무관 이상범(곤충시설 현대화)	044-201-2362·2358 044-201-2142

※ 곤충은 별도의 지침 마련

## I 사업 개요

## 1. 목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 계	223,350	273,910	264,748	218,318	115,750	131,875
용 자	113,680	96,628	89,298	52,154	38,400	51,200
이차보전	65,000	122,500	122,500	122,500	54,200	54,300
자부담	44,670	54,872	52,950	43,664	23,150	26,375

### 1. 사업대상(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 '14.12.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관련 조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 ②-③)
  -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 및 고등·대학교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 설치 주체
  - ※ 농업법인의 경우 담보설정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더라도, 대출기관에서 해당 법인이 자금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시 지원 가능  
(관련 조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 ①-②-5)

### 2. 지원자격 및 요건

#### < 선정 우선순위 >

<b>1순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사업 추진 시 부지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농가</li> <li>○ 모돈이력제에 참여하는 양돈농가</li> <li>○ 산란계 케이지 사육기준 강화('25.9.1.)에 대비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축산시설 및 케이지 등을 수선·교체하고자 하는 산란계 농가</li> <li>○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등</li> </ul>
<b>2순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li> <li>②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할 경우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 ('사' 항목) 우선 지원</li> <li>③ 그래도 순위가 동일할 경우 3순위에서 결정</li> </ul>
<p>가)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득한 경우            나)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경우            * 관련조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12조 및 「건축법」 제11조</p>	

- 라) 동물복지형 축사(육계·산란계·육용오리 축사, 임신돈 군사시설)를 설치하는 경우
  - \*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 완료('18.7.10일)
- 마)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이 아닌 오리사·육계사를 설치하는 경우
- 바) 당해년도(2년차 사업 포함)에 방역·방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악취저감시설로 50백만원 이상을 지원 받거나 총 지원액의 50% 이상을 지원받는 경우
  - \* 가축분뇨처리지원, CCTV등 방역인프라(CCTV, 방역시설, 말벌퇴치장비)를 포함
- 사) 단순 기자재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없어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
  - \* 시·군·구에서 소송, 민원 등으로 인해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 또는 2년차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검토
- 아) 스마트 축사로 신축·개보수 하면서 동시에 ICT 융복합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전문형에 한함)
  - 다만, 단일 장비만 도입하여 단순히 활용하는 경우는 3순위로 분류(일반형)하고, 축사 내·외부의 환경을 센싱·모니터링, 사료 자동 급이·음수기, 악취측정·저감장비 등을 동시에 도입(전문형)하여 생산성 향상과 악취저감 및 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군에서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자)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 차)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중계·종오리 농가간 거리는 10km이내), 철새도래지\* 3km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또는 주요 축산시설 3km 이내에 있는 가금농가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 카)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된 농가
- 타) 남은 음식물사료를 급여중인 양돈농가에서('19.9.17이후) 일반사료로 전환하였거나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
  - \* 지자체가 농가별 지정 날짜('23.12월 이내) 이후 남은음식물사료 급여 중단
- 파) 생산성 향상에 의지가 있는 농가
  - 3년 이상 경영일지·방역기록부 작성
  - 3년 이상 축종별 생산지표(MSY, 1등급출현율, 산란율, 일당증체량, 착유량 등) 기록·관리 일지 작성
  - 검정사업 참여 낙농가
- 하)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
- 거) 계란유통센터로 계란을 유통·납품하는 산란계 농가

<b>3순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순위 선정 후 예산(지원액)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li> <li>○ 3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li> <li>○ 3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하면 지자체에서 조기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우선 선정</li> </ul>
------------	---

- 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 관련조항 : 「건축법」 제23조,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나) ICT 융복합축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ICT 융복합축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2순위가 아닌 일반형을 말함)
- 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거나 환경친화축산농장인 경우
- 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 마)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받은 경우
- 바)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
- 사) 석면슬레이트 축사, 창고 등을 철거하고 현대화하는 경우
- 아) 공동자원화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농가
- 자) 과거 1년간('23.1.1일 이후) 돈사내 슬러리 제거사업에 참여한(선정된) 농가
- 차) 한센인 정착촌
- 카) 과거 2년간('22.1월~'23.12월) 사육제한 명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 또는 가축사육제한(휴업보상)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
- 타) 폭염, 혹한 등 이상기온 대비 시설·장비·자재를 설치할 경우

<b>후순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순위라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농가는 후순위로 선정</li> <li>○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적은 경우 우선 선정</li> <li>○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할 경우, 지자체에서 자금집행 완료 시기를 판단하여 우선 선정</li> </ul>
<p>가) 신규, 이전, 증축 등의 사유로 인해 부지는 확보했으나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p> <p>나) 최근 3년('21~'23년)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징역,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이 확정된 농가</p> <p>* 해당 농가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가 아닌 지원 제외 농가로 적용</p> <p>다)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는 농가(닭·계란·오리·육우·양봉·사슴에 한함)</p> <p>* '23.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계란은 '21~'23년)</p>	

<b>일괄 예산 배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순위와 별도로 광역 약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가 지역단위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일괄 예산배정</li> <li>* 다만, 예산 배정시 해당 지자체의 개별 농가에 대한 예산은 일정 부분 축소하고, 사업이 취소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li> </ul>
-----------------	--

- 사업지침에 따른 우선순위 등으로 사업 선정이 어려운 경우 ①사업추진 가능성 및 ②정부정책 참여도 등을 시·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가능

### < 지원 제외 >

-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 및 철새도래지 3km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주요 축산시설 3km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가금 축사를 건축<sup>1)</sup>하는 경우
- 종계·종오리 농가간 거리 10km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종계·종오리 축사를 건축<sup>2)</sup>하는 경우
  - \* 1), 2) : 「축산법」에 따라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는 경우를 말함(증축 등 축산법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 남은음식물사료를 돼지에 급여하여 사육하는 양돈농가
- '21.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약취방지법」, 「약사법」
  - \*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 다만, 가축질병 예방 등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 가능(단, 지자체 담당자는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시 지원이 필요한 사정과 지원제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대상자가 지원제외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지원제외 사유 및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지원 제한 기간
  -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4)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 '21.1.1일 이후 축산관련 인증·지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년간 지원 제외
  - \* 다만, 사업대상자가 인증·지정을 자진 취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대상 인증·지정 : 친환경 축산물 인증, HACCP 인증,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4항, 「동물보호법」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4항
- 과거 3년간('21.1.1일 이후) 다음 년도로 지원액의 3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 마감일 연장한 경우
  - \* 다만, 추가 선정(사업대상자 변경)으로 인해 이월 및 대출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했던 농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CCTV 등 방역인프라” 사업에 따른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가금농가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 사업 완료 시까지 적법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부여받은 이행 기간까지 자금 회수를 유예할 수 있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 또는 축산업을 승계한 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미신고 승마장·승마시설
- 과거 3년간('21~'23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 「산란계 환경개선 축사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최종 70% 이상 불용한 경우
  - 다만, 국책·공공 사업, 토지수용 등이 원인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용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농어업법」 제5조)
- 신규, 이전, 증축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부지를 확보 또는 변경해야 하는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 과거 2년간('22.1월 이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 (단, '22.1월 이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렘피스킨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은 제외한다.)

◆ **농가 및 지자체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지자체는 후순위 및 지원제외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비닐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의 개축, 개보수, 시설 교체는 농장전체가 「축산법」의 허가·등록 기준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소독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 (양돈)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스톨, 슬러리 시스템, 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 (가금)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축사생난방기,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 (소) 로봇착유시설,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송아지 우리, 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사료 자동 급여기, 소 체중저울, 자동목걸이,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만 지원 불가)
    - (말) 육성·조련 마사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 (가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 세척기·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왕겨자동살포기, 왕겨창고
  - (양돈) 자돈 인큐베이터, (양봉) 양봉산물 저장고·창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 자동보행기, 말 수송 트레일러 등
- 폭염·혹한 대비 시설·장비·자재 :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스프링클러 및 부속장비, 차광막(지붕·벽 단열재, 차열페인트), 열풍기 등
- 방역·방제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해충구제램프, 말별 퇴치장비(트랩 등), 새그물망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 축사 전실을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창고), 물품저장고(창고), 사무실 등
  -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관련된 지원내용과 자금용도(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퇴비사 등 포함)
  - 악취저감시설 : 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ICT악취측정기 등 포함)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냉동고 포함), 사료배합기, 축사청소 등을 위한 빗물 저장고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 가축분뇨 저장조 등에서 농가 및 근무자의 질식사고 예방 장비 : 환기장치, 가스농도 측정기, 공기 호흡기, 송기 마스크 등
    - \*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판단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 태양광·열(건축물에 설치), 지열, 지중열 등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음
    - \* 다만, 생산된 에너지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신보 보증이 거절될 수 있음
  - 다만, 농업법인은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 지원 형태 >

- 중·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용자 80%, 자부담 20%
  -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이차보전이 남는 경우 중·소규모 농가에게 지원 가능
  - \* 중·소규모는 회계와 관계없이 해당 규모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용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농가 분류 기준)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기타 가축은 통계자료, 현장확인 등으로 판단

○ (사업기간) 1~2년

- 부지 확보(변경)가 필요한 축사 신축·이전·증축 또는 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2년 사업으로 추진 가능
- \* (1년차) 인허가 등 공사 전 필요한 조치 완료 → (2년차) 사업착공
- \* 다만, 시·군에서는 부지확보 및 인허가를 이미 완료하는 등 당해년도에 사업완료 및 자금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하는 경우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 지원받는 해당 축사의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을 준수하여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을 설치
  - (사육밀도) 0.05㎡/마리 → 0.075, (단수)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폭 1.2m 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
  - 그 외 축산업(축종)은 향후 「축산법」 개정 내용,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할 계획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시설을 설치·구비
  - (방역시설) 사람·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 농장출입구에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설치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축사의 신축·재축·증축으로 지원받거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기간까지 매일 가동하며, 악취 기준 초과시 악취를 저감해야 함(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에 한함)
  - 다만, 사업 대상자 선정 전에 악취민원 없었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축산환경관리원의 악취저감 컨설팅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수해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사료 급여 금지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지자체 확인 사항** : 「축산법」의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소독시설 설치 여부

- ① 지원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
- ②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③ 사업 완료 후, 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종별 수급동향, 사육특성, 축사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등 조정 가능
-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음 사업의 경우 면적상한 미적용

- ① 기존 원종축장의 확대 또는 종축장 간 계약 등을 통하여 '전문 종축장 체계화'(원종축장+종축장)를 하려는 경우
-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되어 초지 및 산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경우
-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축산 시범단지사업」에 선정된 사업자가 조성한 부지 내에 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려는 경우
- ④ 광역 약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만, 지자체 단위 사업이라도 개별농가별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면적 상한을 적용)

### < 지원액 산정 기준 >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다음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 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의 경우, 지원대상 면적 및 상한액에 참여농가 수를 곱한 값을 최대 지원 면적 및 상한액으로 봄
  -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사육밀도 등의 기준을 준수) 및 유기축산물 인증 축사시설을 설치시 지원단가 및 상한액의 10%까지 상향 지원 가능
  - \* 지원단가 상향(예시) : 산란계 720천원/㎡ → 792, 육계 360천원/㎡ → 396
  - \* 상한액 상향(예시) : 산란계 3,600백만원 → 3,960, 육계 1,800백만원 → 1,980

- 지원형태별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면적기준) FTA기금 사업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사업규모 면적 이내에서 지원
    - 이차보전 사업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과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 가능하나, 최대상한액 이내에서 지원
- \* FTA기금 사업대상자가 이차보전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이차보전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FTA기금(중·소규모)		이차보전(대규모)		
		지원 대상 면적 (㎡, 이상~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 초과~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우	380천원/㎡	110~1,728	657백만원	1,728~4,320	1,642백만원	
양돈 (종돈, 인공수정 포함)	967천원/㎡	265~2,880	2,785백만원	2,880~7,200	6,962백만원	
양 계	육계 (토종닭 포함)	662천원/㎡	460~4,500	2,979백만원	4,500~11,250	7,448백만원
	종계 (토종종계 포함)	680천원/㎡	915~7,425	5,049백만원	7,425~16,500	11,220백만원
	부화장 (토종계 포함)	1,684천원/㎡	100~810 (16~135)	1,364백만원 (227백만원)	810~1,800 (135~300)	3,031백만원 (505백만원)
	산란계 (산란중추 포함)	1,182천원/㎡	420~4,500	5,139백만원	4,500~11,250	13,298백만원
오 리	육용오리	662천원/㎡	820~6,300	4,171백만원	6,300~14,000	9,628백만원
	종오리	680천원/㎡	555~4,496	3,057백만원	4,496~9,990	6,793백만원
	오리 부화장	1,684천원/㎡	33~270	455백만원	270~675	1,137백만원
낙농	380천원/㎡	213~1,800	684백만원	1,800~4,500	1,710백만원	
양봉	883천원/군	30~270군	238백만원	270~600군	530백만원	
사슴 (엘크)	380천원/㎡	150~1,215 (200~1,656)	462백만원 (629백만원)	1,215~2,700 (1,656~3,680)	1,026백만원 (1,398백만원)	
양과 흑염소	456천원/㎡	165~1,337	610백만원	1,337~2,970	1,354백만원	
말	648천원/㎡	50~234	152백만원	234~650	421백만원	
메추리	1,182천원/㎡	100~2,700	3,191백만원	2,700~6,750	7,979백만원	
토끼	732천원/㎡	70~945	692백만원	945~2,632	1,927백만원	

〈 공통 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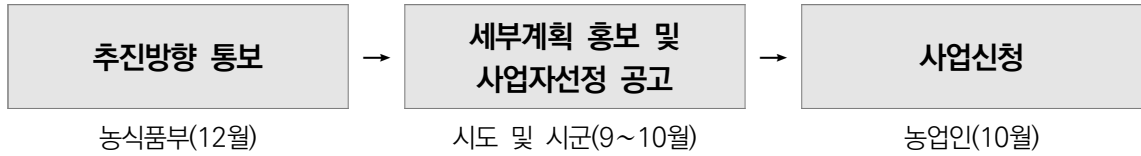
- ① 총 사업액의 80% 지원액 기준임
- ② 가금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형태를 말함)에 대한 최대 상한액은 시·군·구 판단에 따라 상한 산정시 지원단가의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 가능
- ③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은 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

축산  
5-1  
시설·장비지원

### < 축종별 특이 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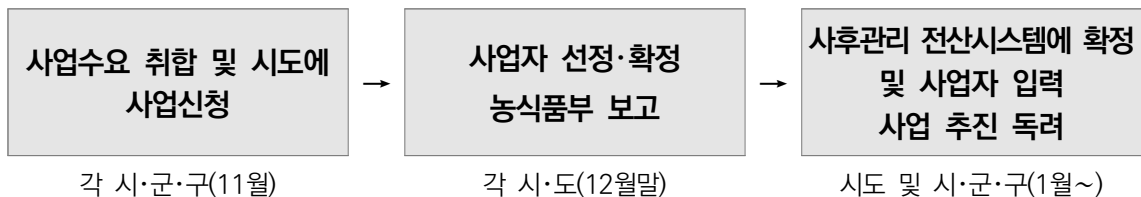
- (한우·낙농)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규모와 관계없이 6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 (가금) 축사의 차단방역 시설·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가금 사육농가에는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방역 시설·장비 지원 가능
- (양봉) 이동형 카라반은 규모와 관계없이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담)
  - \* 이동형 카라반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양봉협회 등 양봉관련 단체로부터 양봉 기자재 현대화 농가로서 추천을 받은 중·소규모 농가여야 하며, 해당 관련 서류를 사업 신청 시 첨부
  - \* 시·군·구는 1년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 점검
  - \* 토종벌 농가에게는 개량형 벌통을 지원
- (말) 말 수송 트레일러(별도의 차량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형태)는 규모와 관계없이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 \* 시·군·구는 1년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 점검

###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9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는 지침 시달 후 각 행정일정에 따라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9월)
  - 사업신청 기간 이후에 농가가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업포기자 발생 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 농가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에 <서식 1>에 따라 사업 신청(10월)
  - 전문 종축장은 <서식 1-2>에 따라 사업신청
  - 시·군·구는 <별표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별표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
    - \* 가금 계열농가는 계열주체를 통한 사업신청 가능
- 시·군·구는 신청농가에 사업 의무사항(방역시설 구비 등)을 안내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 \*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독·방역 시설 설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군·구는 사업검토 및 심의 후 사업 대상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시·도에 사업 선정 내역 보고(11월)
  -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과거 악취민원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반영
- 시·도는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시·군·구가 보고한 내역 중에서 사업자 확정(12월)
  -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범위의 120%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 먼저 사업을 완료한 농가가 대출을 우선 실행하도록 하며, 당해연도 예산 부족 시 2년차 사업으로 전환하여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
  - 선정되지 않은 사업신청자들은 예비사업대상자로 우선순위를 지속 관리하고 사업포기자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및 내역 보고
- 각 시·도는 사업자 확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식 4>에 따라 보고(12월말까지)
- 시·군·구는 사업자가 확정되는 대로 사후관리전산관리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 사후관리조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 및 시·군·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인허가 등)를 추진토록 적극 조치
  - 교부 결정 확정(1월) 후 신속히 착공이 가능하도록 농가에 안내하고,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설치 대상농가가 있는 경우 축산환경관리원 악취관리지원센터 (042-822-9875)에 컨설팅을 의뢰
-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우수한 축산 기자재가 공급되도록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검증 기자재, 또는 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 등록 품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 I 사업 개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	과 장 정경석 사무관 박광덕, 주무관 유호선(총괄)	044-201-2329·2321
소속기관/단체	축산물 품질평가원	유송원 유통지원본부장 권기문 빅데이터분석처장	044-410-7100 044-410-7101

\* 본 사업은 FTA기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내역사업임

## 1. 목 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약취·방역의 과학적 관리 등 생산성 제고 및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에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 (개체관리) 칩 기반의 유전체 분석기, 개체 인식 또는 식별장치, 가축생체정보 수집장치 등 가축 건강·생체정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장비·장치 등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 (약취·방역) 약취감지 센서, 약취저감기, 환풍기, CCTV, NVR 등 활용
  - (솔루션) 축산데이터에 기반해 사양관리 최적화, 약취·탄소 저감, 가축의 과학적 방역에 필요한 다종의 스마트장비의 연계 운영에 관한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96,000	67,200	78,400	69,000	56,952
국 고	36,000	25,200	29,400	25,875	21,357
용 자	60,000	42,000	49,000	43,125	35,595

## 1. 축산농가 대상 스마트축산장비 등의 보급

### 가.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 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 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 지원 가능 가축의 종류 : 소, 말,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꿀벌,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 총괄하는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20~)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사업시행기관장으로부터 관련 사업성과 평가를 받아야 함

-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대상자가 도입한 스마트장비 운영실태 및 성과, ICT 융복합 장비에서 생성되는 축산데이터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지원횟수는 '14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로 판단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본 사업지침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도과한 사업분은 지원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사업의 보조금이 사용된 지방특화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유사자금에 해당되므로 유사자금 중복지원 규정을 준수

- 각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 〈우선 지원〉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을 설치한 자('24년 사업으로 설치 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센서 등 스마트축산장비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단,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은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장비·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경우나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등을 도입하려는 농가
- 축산부문 후계농, 청년·창업 축산농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하고 5년 이내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3.29. 시행 예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축산지구 내에 축사를 경영 중인 농가
  - ⇒ 지원 대상농가는 우선지원 조건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선정

###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3)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20.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곤충산업법」
  - \*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지원 제한 기간
  -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4)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 축산업 허가 및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 다만, 적법화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사업완료 시까지 적법화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닭고기·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 축종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조금납부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함(참고 서식4)
  - \* '23.1~12월 동안 납입 실적, 단 신규 농가는 제외
- '20.1.1 이후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용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라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는 최소 5년이상의 사후관리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축사 신·증축 또는 시설현대화사업과 동시 추진 시, 축사신·증축 또는 시설현대화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장비도입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농업경영체
-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지자체 담당자는 지원 제외 대상자 선정시 가축방역 등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제외사유를 명시하여 사업신청 농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농가 및 지자체 준수 사항**

- **농가 등 사업신청자** : 지원 제외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을 신청하여서는 안됨
- **지자체** :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상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하여야 함

**<평가 시 가점부여>**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
-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 저탄소 인증축산물 시범사업 지정을 받은 경우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축산물 품질평가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단, PC, CCTV 등 범용장비는 제외

※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은 전담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정하고 스마트축산장비 검토 위원회 협의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개보수 포함)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 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단, 악취 저감장비는 지원 가능)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 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나 조달청장 또는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물품과 공사의 구분은 계약담당자가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구분 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음
- 센서 설치시에는 '20년 11월에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스마트축사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KS X 3279:2020)'를 준수한 센서를 활용

### <지원대상>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제어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기, 안개분무시스템, 농업용난방기, 통합 S/W 등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
    -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 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공통) 축사 방문차량 관리 및 차단 방역 장비(축산방역기)
    - ※ 상기 장비는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차량의 출입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차량의 출입기록 등이 저장되는 제품에 한함
  - (양돈) 사료자동(액상)급이기, 자동급수기,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생체정보 수집기, 축산용체중기, 유전체분석기 등
  - (양계·오리) 사료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난선별기, 사료빈관리기, 축산용체중기 등

- (낙농·한우) 자동착유기, 사료자동급이기, 사료빈관리기, 자동급수기, 발정탐지기 등 생체정보 수집기, TMR자동급이기, 송아지포유기, 축산용체증기, 원유냉각기, BCS측정기, 유전체 분석기 등
- (사슴·염소·말) 사료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사료빈관리기 등
  -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측정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 (곤충) 선별기, 배합기, 급이기, 세척기, 건조기, 컨베이어
- (꿀벌) 벌통 온도조절 시스템, 자동사양관리기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 라.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용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하나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
  -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말(10두), 흑염소·유산양(50두),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 양봉(200군)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
  -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 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 1,500백만원



## 2. 솔루션 중심, 축산스마트장비 패키지 보급

### 가. 사업대상자

- 축산데이터 등을 활용해 축산경영에 관한 솔루션(종합운영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현장 문제 해결형 솔루션\*과 그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를 패키지형태로 보급이 가능한 업체

\* 축사환경, 사양·번식·생산 효율화, 분뇨·악취저감, 가족건강·전염병 예방 관리 등 스마트축산장비 검토 위원회의 승인을 통과한 솔루션에 한정

\*\* 솔루션 업체가 개발한 장비 외에 타 업체가 개발한 스마트축산 장비를 포함할 수 있음

###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주관하는 ‘스마트축산 장비 검토 위원회’ 승인을 받아 스마트팜 코리아([www.smartfarmkorea.net](http://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을 마친 솔루션 서비스 제공 업체

※ 솔루션도 장비검토위원회의 검증과 스마트팜 코리아([www.smartfarmkorea.net](http://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23년 및 '24년 시범사업에 한해,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솔루션'은 스마트축산장비 검토 위원회 승인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

- 제공업체는 솔루션을 중심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장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관련 계획에는 해당 솔루션 및 축산장비 도입을 희망하는 5호 이상의 축산농가를 확보하고 관련 장비 및 솔루션 세부 설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스마트축산장비 및 솔루션을 지원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1.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보급사업'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에서 수행배제된 대표자(기업 포함) 등 다음의 자는 지원에서 제외 됨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대표자(기업 포함)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대표자(기업 포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대표자(기업 포함)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대표자(기업 포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대표자(기업 포함)

- 사업 공모일로부터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정기관에서 수사중이거나 기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대상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현장 문제 해결형 솔루션 도입·운영과 이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도입 경비
  - 솔루션 및 스마트장비는 품질평가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여야 함
- 사양 등 생산성 향상 외에 악취저감, 에너지 효율 제고, 방역 강화, 가축복지 제고 등을 위한 솔루션 제공 및 이에 필요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도 포함
  - \* 솔루션 도입·운영에 불가피한 환기시스템 등 축사설비를 확충·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 다만,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 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단, 악취저감장비는 지원 가능)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지원자금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센서 설치시에는 '20년 11월에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스마트축사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KS X 3279:2020)'를 준수한 센서를 활용

### <지원대상>

- 솔루션 도입·운영경비, 이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 설치 경비 등
  - 축산데이터를 활용해 온·습도/풍향·풍속 등 축사환경 제어, 사양·번식·생산(낙농, 산란) 효율화, 분뇨·악취·탄소저감, 가축건강·전염병 예방관리 등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와 그 운영에 관한 솔루션 도입 경비 등
  - \* 대상장비는 '1.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보급사업'에 따라 보급이 가능한 장비여야 함

## 라.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용자 50%, 자부담 20%
  - 용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용자금 일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다만, 지원대상 솔루션업체 및 해당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축해 지원한 축산농가 선정과 지원 금액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주관하되, 컨소시엄 축산농가의 스마트축산장비 지원자격 및 대상자 변경, 사업비 세부 집행 등은 <1.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보급사업>에 따라 시·군·구에서 최종 검토·심사하여 추진
    -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사업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심사기준을 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 : 솔루션 및 관련 스마트축산장비 도입 경비, 해당 솔루션 서비스 용역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 등
  - \* 솔루션 서비스 이용 경비는 서비스 종류 등을 감안하여 설치한 날을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만 지원
- 기준 사업비 : 7,500백만원 내외(솔루션 설치 및 패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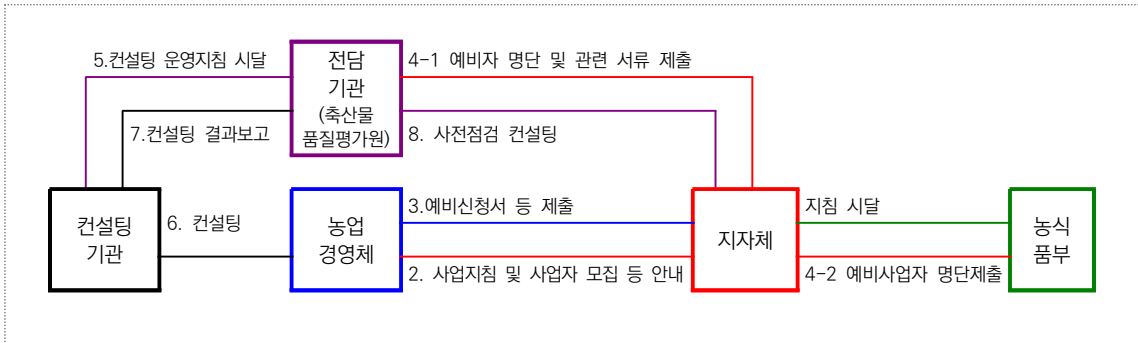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축산농가 대상 스마트장비 보급

##### 가.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23.12월)

####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구가 접수하여 제출한 사업대상자를 일괄 취합하여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 제출('24.3월)

#### 시·군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공모 및 1차 선발('23.12~'24.2월)
  - 시·군·구는 예비사업자 신청 및 사전컨설팅을 전년도 10월부터 진행하여 본사업 대상자 선발 준비를 추진 할 수 있음
  - 시·군·구는 예비사업자 명단과 관련 서류를 전담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하고, 스마트팜코리아(웹페이지)에 해당 서류 및 정보를 등록한 뒤, 사전컨설팅 추진을 웹으로 요청
  - 전담기관은 컨설팅 운영기관 통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는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경영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전담기관에 제출('24.2월)

## 경 영 체

- 경영체(축산농가)는 도입하려는 스마트축산장비 및 솔루션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스마트장비 검토위원회를 통과한 지원대상 장비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 농장 현황, 사육현황, 사업계획, 정보활용 동의서 등이 담긴 사업계획 신청서와 사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필수 서류) 시·군으로 제출('24.2월)
  - \* 단, 컨설팅 기관이 협력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 및 컨설팅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는 제외
- 용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23.10~'24.2월)

## 전담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

- 2024년 컨설팅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운영기관을 선정('24.1월 중순)하여 지자체 및 사업신청 대상자에게 컨설팅 신청 절차 안내('24.1월 중순)
- 사업전담기관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컨설팅 선정기관, 규격 및 서비스 기준과 국비지원 가능 장비(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된 장비와 솔루션) 목록을 경영체와 지자체에 안내
- 컨설팅기관에서 실시한 컨설팅 결과를 검토하여, 시·도, 시·군에 통보
- 컨설팅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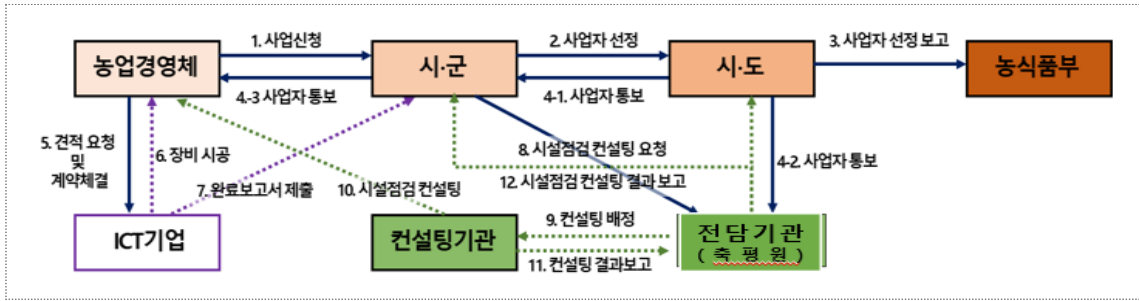
## 컨설팅 운영기관

- 컨설팅 운영기관은 농업경영체의 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
  -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장비업체

- 품목명, 모델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부가세 관련사항(환급, 영세율, 부가세 과세대상) 등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를 견적 요청한 경영체에 제출

## 나.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4.1월)

\* 컨설팅결과 및 사업비 신청내용에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사업내역 및 비용 조정 등

### 시·도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일괄취합하여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사업자를 최종 선정하여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 제출('24.3월)
- 사업자 선정위원회는 본 시행지침상의 우선지원 요건과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토대로 적격 여부, 사업대상자 및 지원 규모를 선정해 해당 시·도에 보고('24.3)

※ 「사업자 선정위원회」는 시·도에 두는 것으로 하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대상 농가 선정, 지원 장비 및 총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

- 선정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축산, ICT 스마트장비 전문가 포함 3인~5인 이하로 구성
  - 전담기관은 시·도내 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경비(위원수당)를 지원\*할 수 있음
- \* 1인당 × 20만원(관계 공무원은 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1년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정책방향과 사업목표 등이 상이한 대상자는 시·도 검토 시 신청에서 제외
- 시·도지사는 예산 집행 상황에 맞게 사업자 선정 농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시·군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전담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및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 농업경영체별 사업추진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농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함

### 컨설팅 운영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도입한 ICT 융복합 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시설 설치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

### 장비업체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본 사업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입찰을 구분하여 농업경영체와 계약을 진행
- 계약 사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나라장터 계약서), 세금계산서, 세부견적서, 하자 보수이행증권, 장비 설치 전·후 사진, 통장사본 등을 포함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시·군 제출(수시). 평가 및 환류단계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보급 사업' 규정을 준용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축 산

---

### 5-2. 가축사육, 말산업



## I 사업 개요

## □ 목 적

- 한우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 유도

## □ 사업내용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법인 포함)
  - 「축산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내려가면 보전금 지원
- 지원 기준
  - (보전금) 6~7개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직전 연도 말 가임 암소 수에 따라 마리 당 10~40만 원 차등 지원

## 〈 단계별 가임 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보전액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185만 원 이하			
	90만 마리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전년 말 가임 암소 마릿수	40	30	10	0
최대보전액(만원/마리)	40	30	10	0

- (사업관리비) 관리수수료, 전산비용 등은 100% 국비 지원
- '24년 예산 : 250백만원(국비 250백만원)

## □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 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
- 기간 : 농협경제지주에서 별도 공지
- 방법 :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 단,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
- 준비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 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 □ 대상자 선정

-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에서 농가와 귀표번호를 확인 후 정상 등록된 때에만 계약 체결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 기관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김정수 주무관 정광호	044-201-2332 044-201-2333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팀 장 차의수 과 장 김일영	02-2080-6553 02-2080-6563

## 1. 사업대상자

- (농가) 한우 암소 사육 농가(법인 포함)
- (시행기관) 지역 농축협, 한우조합, 한우협회

\* 시행기관은 농가와 사업계약, 가입된 개체 관리, 보전금 지급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농가)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
  - (신청) 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 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 (부담) 농가는 계약을 체결할 때 농가 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 원)을 납부
    - \* 암소 마리당 지자체도 1만 원 부담금 납부
  - (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와 칠탄우 포함)
  - (허가) 「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 관련 법령 : 축산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 (시행기관) 지역 농축협, 한우조합, 한우협회
  - 단, 한우조합과 한우협회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 필요

## 〈지원요건(보전금)〉

-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 원)보다 낮을 때, 직전 연도 말 가임 암소 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 원 차등 지원

## 〈 단계별 가임 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보전액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185만 원 이하			
	90만 마리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전년 말 가임 암소 마릿수				
최대보전액(만원/마리)	40	30	10	0

### 3. 지원 대상

- (농가) 지원 사유가 발생하면 보전금 지원
- (시행기관) 사업관리 수수료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보전금) 별도의 사용 용도 제한 없음
- (사업관리비)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의 관리 및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 5. 지원 형태 및 사업 범위

- (보전금)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자금으로 지원
- (사업관리비) 국고보조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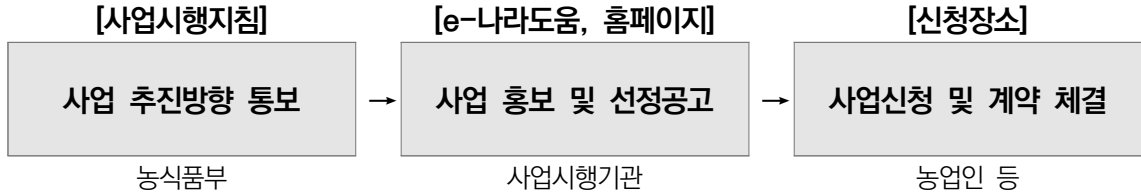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보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전금 한도 내에서 지원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협경제지주,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에 통보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 실시요령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농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은 신속히 사업 공고 및 홍보 시행
-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시행기관에 신청
  - 신청기간 : 농협경제지주에서 별도 공지
  - 신청장소 : 사업시행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 계약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준비물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 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 ※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해당연도에 재계약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봄
- 사업시행기관은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 후 조건에 맞는 경우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자 부담금(마리당 1만 원)과 같은 금액(마리당 1만 원)을 사업시행기관에 해당 연도 내에 납부
  - \* 지자체가 해당 사업 연도 내에 지자체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보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도 해당 지자체 소속 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한우협동조합 및 전국한우협회 지부가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시·군)에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지역 농·축협 제외)

축산

5-2  
말가  
축산  
사  
업  
육

## I 사업 개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주요 업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박일수 사무관 주재호 주무관	044-201-2335 044-201-2334	지침 마련, 예산 배정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	최용수 연구관	063-238-2889	농가 사양관리 등 교육
		김동원 연구사	063-238-2887	말별퇴치 교육

## □ 목 적

- 말별 퇴치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 □ 사업내용

- 양봉농가에 말별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등록 추진중인 농가 포함)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말별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 지원 기준 : 국고 30%, 용자30%, 지방비30%, 자부담10%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당 총 사업비 한도액 : 300만원/호
  - 장비는 대당 100만원 초과 시 자부담으로 추진
- '24년 예산 : 100백만원



□ 사업 신청

- 해당 시·군·구에 문의

□ 대상자 선정

- 해당 시·군·구에 문의

### 1. 사업대상자

-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양봉농가 및 법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별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 지원 형태 >

- 사업 기간 : 1년(‘24.1~12월)
- 재원 : FTA기금(축사시설현대화-CCTV등 방역인프라 내 예산)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30%, 용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10%
  - \* 용자 이자율 :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용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말별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 지도·홍보 책자,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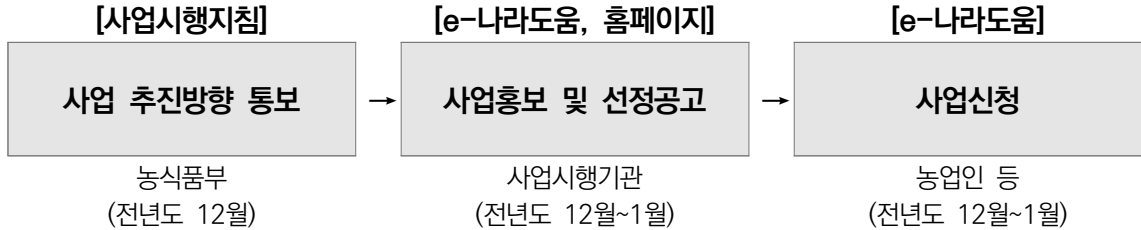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당 총 사업비 한도액 : 300만원/호
  - 총 사업비 : 국고보조 90만원, 용자 90, 지방비 90, 자담 30
    - \* 장비는 1대당(부수장비 포함) 10만원 초과 시 자부담으로 추진
    - ※ 예시) ① 100만원 장비 구입시, 30만원 국고보조, 30만원 용자, 30만원 지방비, 10만원 자부담.
    - ② 120만원 장비 구입시, 30만원 국고보조, 30만원 용자, 30만원 지방비, 30만원 자부담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신청 물량·금액 이내에서 각 농가당 지원액을 결정
  - 말별 퇴치장비의 효능, 꿀벌 사육군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물량을 검토

###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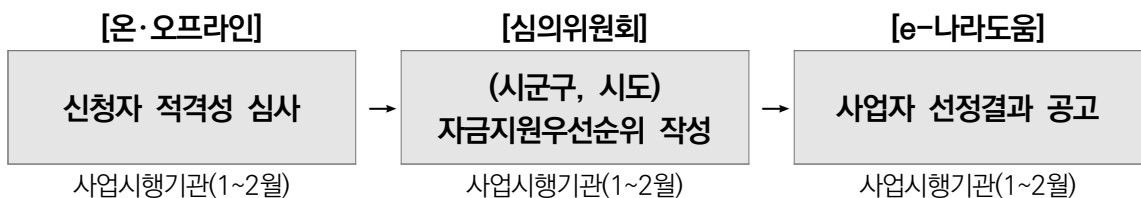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가능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
- 사업신청자는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 농가 변동사항이 있을 시 등록변경 신청을 해야함

### 2. 사업자 선정단계



축산

5-2  
말가  
축산  
사  
업육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사업대상자가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 지도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양봉농가의 응애, 꿀벌질병 등 피해 발생 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질병 저항성 및 수밀력이 우수한 여왕벌 보급

## □ 사업내용

- 우수 여왕벌이 포함된 봉군 구입비용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일정 규모 이상 사육중인 양봉농가
  -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100봉군 이상 등록하여 사육중인 농가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우수 여왕벌이 포함된 봉군 구입비용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200천원 × 10봉군 × 1,000호 × 국비 30% = 600백만원
- '24년 예산 : 2,000백만원(국비 600, 지방비 600, 자부담 800)

## □ 사업 신청

- 장소 : 양봉농가 등록 사업장 소재지 기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청
- 신청기간 : '24.1.~'24.2.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박일수	044-201-2335
		주무관 주재호	044-201-233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술보급과	지도관 강신곤	063-238-0986
		지도사 이승진	063-238-0987
	양봉생태과	연구관 최용수	063-238-2889
		연구사 김동원	063-238-2887

○ 종봉 증식장 현황(전남1, 경북1, 충남1)

### 1. 사업대상자

-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양봉농가 및 법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꿀벌 100봉군 이상 등록하여 사육중인 양봉농가
- 선정 우선순위
  - 꿀벌 관리 요령(방역·방제, 월동방안 등)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시·도별 여건에 따라 자체 선정계획 수립 및 선정 가능

###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우수여왕벌\*이 포함된 봉군(소비 3매 이상 착봉 봉군) 입식비
  - \* 장원벌, 로열1호, 젤리킹, 봉교1호

###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기간 : 1년('24.1.~12월.)
- 재원 : 축산발전기금(가축개량지원-우수여왕벌 보급사업)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주관기관 :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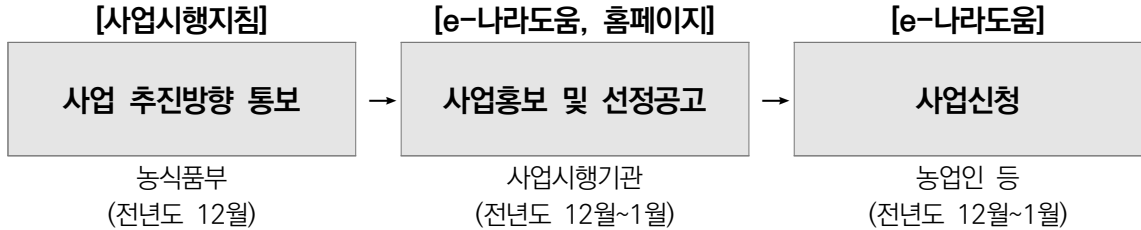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당 총 사업비 한도액 : 50봉군×20만원
  - 총 사업비 : 1,000만원(국고보조 300만원, 지방비 300, 자부담 400)
- 농가 사육규모 등록기준 대비 100군당 10봉군 이내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신청 물량·금액 이내에서 각 농가당 지원액을 결정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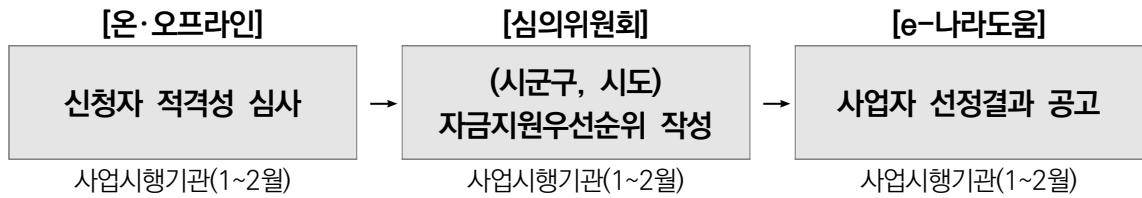
###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가능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
- 사업신청자가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양봉농가인 경우 등록 농가 변동사항이 있을 시 등록변경 신청을 해야함
- 농촌진흥청은 우수여왕벌을 분양하려는 농가에 종봉 증식장 안내
  - 종봉 증식장 현장 관리 및 기술지원
  - 사업대상자가 우수여왕벌을 구입하기 전에 관련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자료 제작 및 농가 대상으로 교육 실시



##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축 산

---

### 5-3. 축산환경개선



## I 사업 개요

## □ 목 적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고 축산악취를 저감함으로써, 환경 오염 및 국민 불편 예방

##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내용
  -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단년도)
-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의 기준에 적합한 자

## □ 지원유형

-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 \* 지원비율(%) : 국고 20%, 지방비 20, 용자 50, 자부담 10
  - 가축분뇨처리시설: 퇴·액비화, 정화처리, 에너지화 시설·장비 등
  - 악취저감시설·장비: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바이오필터 등
  - 부대기계·장비: 로더, 고액분리기, 퇴·액비 운반차량 등

##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시·도, 시·군·구는 사업계획 및 행정처분 사례 등 신청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대상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이민정 주무관 황정훈	044-201-2362 044-201-2358

## 1. 사업대상자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축산농가
- 「가축분뇨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 처리업체
  - \* 지원가능 범위: 악취저감시설·장비, 액비저장조, 축분 펠릿·고형화 장비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내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에 따라 퇴비·액비 유통 전문조직으로 지정된 자
  - \* 지원가능 범위: 부대기계·장비, 액비저장조(액비 유통 전문조직에 한함)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 다만,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부속유기질비료제조업체 등 가축분뇨처리업체의 경우 선정 가능
- 「가축분뇨법」 제17조제4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 제외(법률 의무사항)
  -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 시·군에서는 축산악취개선 효과 제고를 위하여 “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 \* 시·군(환경·인허가부서 포함), 농·축협, 축산·환경단체, 주민대표, 사업대상 농가·시설, 축산환경 관리원 등을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지역 여건에 알맞도록 구성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법」 제22조에 따른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 악취저감시설을 지원받은 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에 참여하고, 운영·관리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

- 「축산법」 제41조의14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

###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 가축분뇨처리시설(개보수 포함):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 시설(액비순환시스템 포함), 퇴비·액비저장시설, 건조장, 정화시설(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포함) 등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
    - \* 퇴비화시설은 통풍식 또는 교반식 지원 권장('25년 사업부터 건조식 지원 제외)
    -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받은 자는 반드시 처리시설 밀폐 또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 자원화시설(퇴비사, 액비화시설 등)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환경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시·군·자치단체 자율운전 액비순환시스템 실증사업 추진

- '24년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 중 자율운전 액비순환시스템 실증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추진계획을 포함한 '축산악취개선 보완사업계획서'를 제출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 보완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등 실증사업 세부 추진계획은 '24.1분기 중 별도 시행

- 악취저감 장비·시설 : 「축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의 설치·구비 기준”에 적합한 장비·시설(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음용수 및 농장 이용수 성분 변화장비, 그 밖에 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등)
  - \* '음용수 및 농장 이용수 성분 변화장비'의 경우 전자동으로 음용수 및 농장 이용수의 성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비에 한해 지원
- 부대기계·장비 : 분뇨운반탱크(암물박스),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축분·액비운반차량(개별 축산농가는 지원 제외), 로더, 악취저감용 미생물 생산 기계·장비,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고액분리기, 축분 펠릿·고형화 장비, 휴대용 부숙도 측정 장비,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악취저감 장비·시설의 자율운전을 위한 센서 및 관리장비 등\*
  - \* '24년 자율운전 액비순환시스템 실증사업 추진 대상에 한하여 지원

※ 로더 구입기준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장비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4. 지원형태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 국비 보조 20%, 지방비 20%, 국비용자 50%, 자부담 10%
  - 용자조건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 \* 국비 용자는 지방비와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하며 대체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단, 자부담 대체의 경우 신용불량 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총 사업비 5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한하여 대체 가능함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역(시·군·구)별 총사업비 한도액 : 30억원
-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한도액(사후관리 기간 내 시설·장비 지원액의 총합을 말함)
  - \* 사업비가 개소 당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오 리
개별농가	600	360		240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720	420		280	
농업법인	1,000	600		400	
재활용 신고 업체, 퇴·액비 전문유통조직 등		200			

- 기타 가축분뇨 처리 관련 기계·장비 한도액(1회 한도 금액을 말함)
  - 로더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수거·운반·살포용 차량 : 200백만원 이내
  - \* 지원되는 시설·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발간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평가” 또는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공한 기술·업체별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 6. 사업 시·군 선정방법

- 「축산법」 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악취민원현황, 과거 사업집행 실적(시·도 및 시·군), 과거 악취저감 노력(지역협의체 운영 등), 주요 정책 사업\* 참여 비율, 시·도별 예산분배 등을 고려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선정
  - \* 신청농가 중 모돈이력제 등 주요 정책사업 참여농가 비율(해당 정책 관련 축종에 한함)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전문가 평가 위원회 구성

### Ⅲ

## 사업추진체계

### 1. 사업신청단계(직전년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방향,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2월)

####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시도별 사업설명회(사업 세부설명, 선정 및 평가 방법,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 실시(2월)

#### 시·도(시·군)

- 시·군에서는 지역 현황분석과 농가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축산환경 개선 실행 계획'과 연계한 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계획 제출(4월)
  - 지역 내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지역 및 경계지역의 악취민원 발생현황\*, 과거 사업 실적행, 악취원인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지역협의체 운영방안 등 기획
- \* 경계지역 악취민원: 지자체 간 경계지역에 위치한 축사시설로 인하여 타 지자체 주민의 환경피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지원농가의 과거 지원내역(사후관리기간 명시), 과태료 부과 내역, 지원시설에 대한 인허가 가능 여부, 주요 정책 사업 참여 여부 등 확인
- 시·도에서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을 평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과년도 실적행률, 시·도 축산환경 개선계획과의 연계성, 지역 및 경계지역의 악취민원 발생현황, 지역협의체 구성 충실도 등을 평가

### 2. 사업자 선정단계(직전년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축산환경관리원의 심사·평가 업무 관리
- 축산환경관리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을 고려하여 우선 사업자 선정(6월)
  - 예산 국회 확정 이후 최종 사업자 선정 및 통보(12월)

## 축산환경관리원

-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평가(서류·현장평가)를 통해 시·군의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결과 및 검토의견(보완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I 사업 개요

## □ 목적

- 축산악취개선 필요지역을 중심으로 ICT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환경·악취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악취저감 활동 지원

##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내용
  - 악취 발생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악취감지센서 및 축산환경의 센싱을 위한 기계·장비를 설치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악취개선 및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참여하거나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취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 □ 지원유형

-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설치 및 관리 비용 지원(표준사업비 20백만원/개소)
  - \* 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시도별 악취측정 ICT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시·도에 시달
- (시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적격여부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시군) 설치대상 농가·시설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 제출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이민정 주무관 황정훈	044-201-2362 044-201-2358

###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공동자원화시설 신규·개보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취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 축산악취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농가·시설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우선 설치

###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공동자원화시설 신규·개보수 사업에 참여한 농가·시설 등에 설치되는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계·장비
  - 축산환경 정보(악취, 온도, 습도 등) 감지센서 및 측정정보의 모니터링·분석을 위한 통신장비 등을 갖춘 기계·장비
    -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기계·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안)”에서 제시하는 장비 및 통신규격을 따라야 하며, 측정되는 축산환경 정보를 “축산악취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함

### 4. 지원형태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 국비 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 주관 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한도액
  - 개소(축산농가·위탁처리시설)당 20백만원(2개 지점 이상 측정, 설치일자부터 5년간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비용 포함)
    - \* 유지보수 : 악취측정 센서 및 기타소모성 부품(펌프, 호스 등) 교체, 수리 비용 등
    - \* 사후관리 : 장비 이전 시 발생비용(5회/5년), 출장비, 통신비 등 장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

### Ⅲ

## 사업추진체계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악취개선사업 사업자 선정 시 해당연도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계획을 평가(직전년도 4월~9월)
-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시도별 악취측정 ICT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시·도에 시달(직전년도 12월 이내)
  - 시도별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규모는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 시군의 사업계획 중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자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

#### 시·군

- 시·군에서는 관련 예산, 지역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계획, 지역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치대상 농가·시설별 세부 사업 계획을 [붙임 1]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시·도 제출(~2월)
  - 광역축산악취개선 및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동자원화시설 신규·개보수의 사후관리 및 악취저감 효과 확인을 위해 사업 참여 농가·시설에 우선 설치

####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시도별 사업설명회\* 추진(직전년도 상반기)
  - \* 사업 세부설명,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축산악취관리시스템([www.lemi.or.kr/oms/](http://www.lemi.or.kr/oms/)) 접속·이용방법 등

### 2. 설치대상 선정

####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설치대상 농가·시설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설치 대상 농가 현황이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2월)
  - ※ 시·도는 시·군별 설치대상 농가·시설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비 물량 배정

## I 사업 개요

## □ 목적

- 농가단위 가축분뇨처리 어려움 해소,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등 자원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내용
  -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 사업대상자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에 한함)

## □ 사업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 사업주관기관: 시·도 / 사업시행기관: 시·군·구

- \* 시·도는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을 겸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을 시·군·구에게 위임할 수 있음(공문 조치 등 위임근거 必)

## □ 지원유형 \* 사업기간: 4년

- (민간형) 바이오연계, 에너지화(농가형 포함), 퇴액비화 / (공공형) 에너지화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이승환 주무관 김현철	044-201-2357 044-201-2363

## 1. 사업대상자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지자체(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사업에 한함)

## 2.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 대상자 기본조건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라 [별표 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공공기관, 민간기업, 생산자단체도 동일 적용)
  - \* 농업법인은 총출자금 1억원 이상(사업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운영 실적(공동 추진인 경우 각 업체별 동일적용), 사업비의 자부담(지방비 대체비용 포함) 이상 자본금 확보 등
  - ※ 운영실적 범위: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 가축분뇨관련 영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운영·설계·시공(수질, 바이오가스 및 가축분뇨 관련), 「비료관리법」에 따른 가축분퇴비·퇴비·가축분뇨발효액 생산·판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관련 생산·공급·설계·시공,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내역사업 중 가축분뇨공동자원화·액비유통전문조직·액비저장조 참여 및 살포지 제공 경종농가
  - ※ 에너지화(바이오연계 포함)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단독참여 또는 상기 운영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규 설립법인 명의로도 참여 가능(컨소시엄 구성 업체 중 1개 업체 이상 운영실적을 보유하고 있어도 사업 참여 가능)
  -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은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함(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함)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함.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름
    - \*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함)
    -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공공기관,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등은 제외
  - ※ 세부적인 사업대상자 기본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을 따름



### 〈 공통 적용사항 〉

- 반입비율: 가축분뇨 70% 이상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은 바이오가스화 시설(혐기성 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만 반입·사용
  - \*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소화물을 「비료관리법」에 따른 가축분퇴비 및 가축분뇨발효액 외의 방법(가축분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된 정화,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 반입비율은 가축분뇨 50% 이상 가능
- 가축분뇨법 제17조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참여 시·군 간에 협의를 거쳐 설치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서 시·도에 신청
- 에너지화의 경우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또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의무 참여(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부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의무 반영)
- 「축산법」 제41조의14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축산환경 교육 과정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신청마감일 기준 1년 이내)

### ○ 민간형

- 바이오연계: 기존 자원화시설(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에 바이오에너지화 시설(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 처리계획 및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 생산 부산물 등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에너지화: 가축분뇨 처리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가축분뇨 등 반입원료를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퇴액비화: 가축분뇨 처리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가축분뇨 등 반입원료를 활용하여 퇴액비화 또는 퇴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 공공형

- 가축분뇨 처리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가축분뇨 및 유기성 폐자원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원료 조달 계획,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 처리 계획,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 2개 이상 기관의 공동 추진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주 사업주체를 정해야 함(구성원, 출자비율, 의무·책임, 손액배분 및 비용분담 등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 민간형

- 지원대상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지원내용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① 바이오 연계: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70% 이상) 등 1일 70톤 이상의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에너지(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기존 자원화시설에 혐기소화조, 가스포집, 발전기 등 바이오가스시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을 생산·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정화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방역소독시설, 안전시설, 노후 시설·기계·장비 개보수,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모니터링·유량계 설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

② 에너지화: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70% 이상) 등 1일 70톤 이상의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에너지(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고체연료·바이오차 등을 생산·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정화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방역소독시설, 안전시설, 운반·살포 장비,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모니터링·유량계 설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교육 학습장·홍보실, 조경 등

\*\* 농장형의 경우 양돈 농가는 1일 50톤 이상의 가축분뇨 등 원료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장비 지원, 기타 축종 농가의 경우 1일 50톤 미만이라도 가축분뇨 등 원료를 활용하여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장비 지원

③ 퇴액비화: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70% 이상) 등 1일 70톤 이상의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퇴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화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방역소독시설, 안전시설, 운반·살포 장비, 조경 등 퇴·액비를 생산·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등

#### ○ 공공형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2개 이상 기관의 공동 추진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주 사업주체를 정해야 함(구성원, 출자비율, 의무·책임, 손액배분 및 비용분담 등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원활한 원료공급 및 에너지 수요 확보를 위해 지역 에너지화기업 및 농·축협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사업주체는 1일 처리용량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원료 조달 계획, 소화액 처리 계획,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원내용: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70% 이상) 등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 및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고체연료·바이오차 등을 생산·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악취방지시설, 방역소독시설, 안전시설, 운반·살포 장비,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모니터링·유량계 설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교육 학습장·홍보실, 조경, 정화시설, 질소·인 회수 시설·장비, 주민상생시설(폐열공급, 주민편익시설 등) 등

\* 세부 항목은 사업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확정

####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축산발전기금
- 사업기간: 4년(연차별 지원비율: 1년차 10%, 2년차 20%, 3년차 35%, 4년차 35%)
  - \* 연차별 지원비율은 사업 추진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비율(%)

구분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용자	자부담	용자조건
퇴액비화	40	30	3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바이오연계	40	30	30	-	
에너지화(공공형)	50	20	20	10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편성

\*\* 민간형은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 지방비의 50% 이내에서 대체 가능하며, 지방비 일부를 대체할 경우 사업주체가 지자체장과 명확한 투자계약 등 협의결과 증빙자료 제시(공공형은 지방비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민간형
  - 사업비에 환경영향평가비, 내진설계, 조경, 공사감리비, 시운전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단, 환경영향평가비, 설계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
  - \*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단, 에너지화시설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기술 진흥법)와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시

- 1일 처리 가능물량 반입 원료 70톤/일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관제시설, 주민상생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악취방지 및 소독시설 의무설치)
- 퇴비·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5% 이내에서 구입 가능
  - \* 공동자원화시설이 액비유통전문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액비유통전문조직 장비지원 제외
- 지원한도액

(단위 : 백만원/톤)

처리유형 \ 용량(톤/일)	70	100	150	200	250	300
퇴비화	87	79	69	63	58	53
퇴·액비화	102	90	74	67	59	57
바이오 연계	79	77	73	69	66	62
에너지화	148	147	124	122	107	104

※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백만원 이하 단위 절사(총사업비 기준)

$$y = y^1 - \frac{(x - x^1)(y^1 - y^2)}{(x^2 - x^1)}$$

x: 해당 시설용량,      x1: 작은 시설용량,      x2: 큰 시설용량  
 y: 해당 사업비(단가/톤),    y1: 작은 시설용량 단가,    y2: 큰 시설용량 단가

\* 농장형 에너지화시설의 경우 70톤/일 용량 기준단가 적용

### ○ 공공형

- 지원한도: 시설용량 300톤/일 이내, 사업비 400억원 이내이며, 타당성 검토, 예산심의를 거쳐 한도액 내 사업비 확정
- 1일 처리 가능물량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실험분석실, 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관제시설, 주민상생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악취방지 및 소독시설 의무설치)
- 사업비 산정 시 환경영향평가비, 내진설계, 조경, 설계·감리비, 시운전비 포함
  - \* 사업비에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 운반차량은 총사업비 내에서 구입 가능

## 6. 설치기준 및 운영관리 기준

### ○ 공통 적용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계(설치)요령에 준하여 설치
- 시설 용량 및 규모 산정 시 내벽 기준 유효용량 85% 이하(여유용량 15% 이상) 적용

-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건축법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에 따라 주변 수목 식재, 화단 등 경관조성 시 환경친화시설로 조성하여야 함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저장(생산시설 포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 단,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처리용량에 따라 액비저장조 보유 용량을 조정할 수 있음
- 반입원료의 처리를 위해 정화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최종 방류구에 방류 유량계(전자식) 필수 설치
- 악취방지시설\*(탈취탑 등)은 적산전력계 필수 설치
  - \*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포집하여 최종 처리·배출하는 시설
- 총사업비 내에서 ICT활용 악취측정기 종류 및 설치위치 등을 축산환경관리원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관련 정보를 축산악취관제시스템(축산환경관리원)에 송신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함
- 해당 시·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등 반입 가능한 원료를 우선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대상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료, 농경지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 공공형

- 주처리 시설(공정)은 지하화, 지상은 주민친화시설(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처리시설 준공 이후 운영관리는 직영(직접운영)하거나, 농·축협 또는 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가능
-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관리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대행기간: 5년 이내로 하되, 운영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5년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
  - \*\* 대행업자 선정: 선정기준 및 절차는 사업주체가 정하여 시행
- 운영관리비는 반입 수수료, 전기 판매비 등 수입으로 지출하되, 일부 시설 증축·개보수 비용은 국고 지원 가능
- 사업주체는 매 반기 1회 운영관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해 실적보고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컨설팅 등 기술 지원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자 선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 선정계획이 통지되면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안내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 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에 대한 사업주관기관은 시·도(설치지역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시·도가 지정)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기관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자체 검토 후 사업총괄기관에 신청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최근 3년 내 행정처분 사례 확인 등 신청자격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부서와 반드시 협의하고 관내 기존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처리 규모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첨부
    - \*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참여 시·군의 의견, 2개 이상 시·군 협의결과, 시·군간 분뇨 반입, 반출 협약 체결, 사업 추진 일정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자 및 사업 예정부지의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 동의 절차 이행 협조

##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 수립 후 신청서류 기본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추가 설명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신청
  - 사업신청자는 법인명의 소유 사업부지를 확보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3년) 이상 사업부지를 임차하여 주민동의 절차 이행 후 사업 신청
    - \*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가 미확보되었더라도 예정부지를 제시하여 사업신청 가능(단, 사업 예정부지의 시·군, 인근 지역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동의 절차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동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지자체의 평균 건설단가, 기계·장비 실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시설 규모 및 사업비 산정
- 반입원료 비율: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비율을 미리 설정
  - \*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차 고액분리 된 가축분뇨를 수거
- 참여대상농가: 기존 개별처리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하고자 하는 농가 위주로 우선 참여토록 하고,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반입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로 참여
- 사업대상부지의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설을 배치하여야 하며, 준공 후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시설 운영, 최종제품의 저장 시 발생하는 악취 및 화재발생에 대한 방지대책을 고려
-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및 양식의 유의사항, 감점사항을 숙지하여 평가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작성

## 2. 사업자 선정 및 보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자를 선정하고, 평가(검토) 단계에서 제시된 보완사항 (재원 조달·사용에 관한 사항 포함)을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고 보완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따라 사업비 잠정 확정
  - \* 사업대상자 심사, 평가, 검토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사업주관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총괄기관에서 요청한 평가결과 보완사항을 반영한 보완사업 계획서 작성·제출
  - 통보받은 보완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보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사업총괄기관에 제출

###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은 전문가들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고 사업대상자 종합평가(검토)를 통해 평가(검토) 결과 및 검토의견(보완사항)을 사업총괄기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자료 검토(보완사항 반영여부 및 사업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위원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총괄기관에 보고
- ※ 사업자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절차, 평가 및 선정 방법·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선정계획을 따름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자원화시설 개보수를 통한 시설 처리효율 개선 및 악취저감

##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내용
  - 자원화시설 증축 및 개보수 자금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증축: 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 가동 시설
  - 개보수: 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 가동 시설

## □ 사업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 사업주관기관: 시·도 / 사업시행기관: 시·군·구

- \* 시·도는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을 겸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을 시·군·구에게 위임할 수 있음(공문 조치 등 위임근거 必)

##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증축(30억원 이내/개소), 개보수(15억원 이내/개소) \* 총사업비 기준
- 지원조건: 국비 40%, 지방비 30%, 국비융자 30%
- 사업기간: 단년도

## □ 사업신청

- 시·도, 시·군·구는 사업주체 신청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지원대상, 선정시기 및 절차 등 별도 선정계획 통보



## □ 대상자 선정

- 유형별 지원한도 적용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 최종 사업자 선정
- 심사·평가 위탁: 축산환경관리원(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이승환 주무관 김현철	044-201-2357 044-201-2363

## 1. 사업대상자

###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 증축: 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 가동 시설

\* 사업신청 전년도 가동률이 100%를 초과하는 시설에 최대 69톤/일 우선지원

\*\* 처리유형: 퇴비·액비화, 정화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에 한함

- 개보수: 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 가동 시설

\* 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결과 최근 5년간 2년 연속 C등급 또는 점검거부 대상 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증축, 개보수 모두 해당)

### ○ 농·축협 운영 친환경 퇴비 자원화시설(가축분뇨 100% 활용)

- 개보수: 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 가동 시설

\* 단, 가축분뇨(우분, 돈분, 계분 등) 100%를 퇴비·액비화하는 자원화시설에 한함

## 2. 지원자격 및 요건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별표 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준수(공공기관, 민간기업, 생산자단체도 동일 적용)

- 1억원 이상 출자금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함(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함)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함.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름

\*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함(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함)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함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공공기관,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등은 제외

※ 기타 사업대상자 기본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을 따름

###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 적용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적용
  - \* 시설용량 및 규모산정 시 내벽기준 유효용량 85% 이하(여유용량 15% 이상) 적용
- 총사업비 내에서 ICT활용 악취측정기 종류 및 설치위치 등을 축산환경관리원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관련 정보를 축산악취관리시스템(축산환경관리원)에 송신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함(기존 시설에 ICT활용 악취측정기가 없는 시설에 한함)
- 반입 원료의 처리를 위해 정화처리시설 설치 가능
  - \* 최종 방류구에 적산유량계(전자식) 필수 설치
- 악취방지시설\*(탈취탑 등)은 적산전력계 필수 설치
  - \*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포집하여 최종 처리·배출하는 시설
- 사업비 산정 시 내진설계, 설계·감리비를 포함하여야 함
  - \* 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단, 에너지화시설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기술진흥법」)와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시
- 사업비 지원 제외 항목
  - \* 가축분뇨 적정처리, 악취저감, 처리효율 개선 등을 위한 항목 외 지원 제외
- 「축산법」 제41조의14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신청마감일 기준 1년 이내)

#### ○ 증축

-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50% 이상) 등 1일 70톤 미만의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퇴비·액비 및 바이오에너지(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퇴비·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구입 가능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저장(생산시설 포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 단,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처리용량에 따라 액비저장조 보유 용량을 조정할 수 있음
- 해당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중·소규모 농가 우선 수거)를 우선 수거하여 자원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개보수

- 퇴비·액비화 시설·기계·장비(바큘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등 차량 제외), 펠릿퇴비시설, 정화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혐기소화조 및 바이오가스 이용설비(가스포집장치, 정제설비 등), 고체연료·바이오차 등을 생산·공급·활용하는 시설, 발전폐열, 연소열 재이용 시설(온수배관, 축열탱크, 급수펌프, 분배기, 연소기 등) 등

\* 발전폐열 재이용 시설의 경우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전기 유류 난방기 등 지원 제외

\* 고체연료·바이오차 등을 활용하는 시설, 연소열 재이용 시설(연소기 등)은 시설 내 자가소비에 한함

## 4.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 지원한도: 총사업비 기준

- 증축: 30억원 이내/개소

\* 증축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시설 개보수 포함 가능

- 개보수: 15억원 이내/개소

\* 에너지화시설의 경우 발전폐열 재이용 시설 추진 시 증축(30억원) 및 개보수(15억원) 한도액 외 별도 추진 가능(5억원 이내/개소)

※ 사업비는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추가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 가능

### ○ 지원조건: 국비 40%, 지방비 30%, 국비용자 30%

\* 용자조건은 10년[연 2%(민간기업 등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름

\*\*\*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지방비의 50%이내에서 대체 가능(사업주체가 자부담 일부를 부담할 경우 지자체장과 사업주체간 명확한 투자계약 등 증빙자료 제시)

## 5. 기타사항

- 사업주관·시행기관은 당해연도 교부된 금액(국비+용자)의 80%이상 실집행하도록 사업관리(이·불용 최소를 위해 즉시 반납조치 등 제고방안 강구)
- 전년도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결과 우수시설(A등급) 가점 부여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등 구체적 사항은 당해연도 선정계획에 따름
-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1. 사업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총괄기관은 공동자원화시설 증축 및 개보수 사업추진 방향,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총괄기관은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이 확정되면 공동자원화시설 증축 및 개보수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실시 \* 사업공고: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 방법을 사업시행기관에 안내
  - \* 안내 내용: 사업목적, 신청자격, 사업신청 기간, 지원내용 등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기관에서 조사된 사업신청 결과를 사업총괄기관에 제출
  - 우선순위 등 검토의견서, 추천서,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내역 등 첨부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개보수 사업 신청 접수 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시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추천서,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내역 등 첨부
  - ※ 추천서 및 행정처분내역 등 기본서류 미제출 시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을 신청할 경우 최근 5년간 지원받은 내역을 확인하여 사업신청자별 총사업비 누계 15억원을 초과한 경우 신청 제외(최대 3회)
  - \* 발전폐열 재이용 시설은 상기사항 미적용

〈사전 검토 및 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

1. e나라도움을 통한 자격검증,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2. e나라도움을 통한 수혜이력,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 받은 농림축산식품 사업의 이력을 확인하여 중복·편중 지원 방지
3. 유사자금의 경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등

##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자는 현장 운영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시설 증축, 개보수 필요여부 판단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 사업대상자: 기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농·축협 운영 자원화시설

## 2. 사업자 선정 및 보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총괄기관은 접수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및 평가
  - 사업대상자 심사·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축산환경관리원의 검토의견 및 해당 연도도 예산을 감안하여 사업자 선정 및 예산배정 계획을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총괄기관에서 요청한 평가결과 보완사항을 반영한 보완사업 계획서 작성·제출
  - 통보받은 보완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보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사업총괄기관(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

###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은 전문가들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고 종합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평가 결과 및 검토의견(보완사항)을 사업총괄기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자료 검토(보완사항 반영여부 및 사업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위원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총괄기관에 보고
- ※ 사업자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절차, 평가 및 선정 방법·기준 등은 선정계획을 따름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보완사업계획서(조치결과서 포함)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 I 사업 개요

## □ 목 적

- 마을단위 저장·관리·생산으로 소규모 축산농가의 퇴비사 부족 문제 해소와 양질의 가축분 퇴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 생산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

##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내용
  - 가축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지원
    - \* 바이오차: 바이오매스를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물질
- 지원자격 및 요건
  - 신규: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내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축협,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연계: 기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설치·운영 중인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 □ 지원내용

- 퇴비저장시설,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등
  - 총사업비: (신규) 10억원 이내/개소, (연계) 7억원 이내/개소
    - \* 총사업비는 설치유형(고체연료, 바이오차)에 따라 상이
  - 지원조건: 국비 40%, 지방비 30, 국비융자 30
  - 사업기간: 2년(1년차 50%, 2년차 50)

## □ 사업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주관기관: 시·도 / 사업시행기관: 시·군·구

\* 시·도는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을 겸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을 시·군·구에 위임할 수 있음  
(공문조치 등 위임근거 필수)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이승환 주무관 김현철	044-201-2357 044-201-2363



## 1. 사업대상자

- 신규: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축협, 농업법인 등
- 연계: 기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설치·운영 중인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 2.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 대상자 기본조건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도 동일 적용)
  - \* 농업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사업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운영 실적(공동 추진인 경우 각 업체별 동일적용),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지방비 대체비용 포함) 이상으로 확보 등)
    - 1억원 이상 출자금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은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함(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를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함)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함.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름
      - \*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함)
      -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등은 제외
  - ※ 기타 사업대상자 기본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을 따름

- 신규: 마을단위(읍·면, 또는 동·리 단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퇴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 생산·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연계: 기존 마을형 퇴비저장시설에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 생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퇴비 활용계획 및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 적용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적용
  - \* 시설용량 및 규모산정 시 내벽기준 유효용량 85% 이하(여유용량 15% 이상) 적용
- 사업자는 악취저감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초과하여 악취저감 시설에 대해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축산악취개선사업에서 지원 가능(사업자가 시·군·구에 별도로 사업신청)
- 악취방지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탈취탑 등)은 적산전력계 필수 설치
  - \*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포집하여 최종 처리·배출하는 시설
- 사업 대상자는 ICT활용 악취측정기 종류 및 설치위치 등을 축산환경관리원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관련 정보를 축산악취관제시스템(축산환경관리원)에 송신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함
  - \* 연계사업의 경우 기존 시설에 ICT활용 악취측정기가 없는 시설에 한함
  -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를 기 설치한 시설은 축산환경관리원 시스템과 연계로 대체 가능
-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내 퇴비는 상업적 판매 제한  
(단,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의 경우 예외)
- 「축산법」 제41조의14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신청마감일 기준 1년 이내)

#### ○ 신규(퇴비저장시설 및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 생산시설)

- 지원대상: 마을단위(읍·면, 또는 동·리 단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내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축협,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 등
  - 지원내역: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를 생산·공급(건조, 열분해, 성형 등)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저장시설, 악취저감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 \* 저장시설: 퇴비 및 고체연료·바이오차 저장시설(퇴비와 고체연료·바이오차 저장시설은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을 구분하여 설계)
    - \*\* 송풍·교반: 저장시설 내 송풍시설은 동 사업비 내에서 지원 가능하나, 교반시설은 지원하지 않음(부패 방지를 위해 간헐적 공기 공급 등 관리 필수)
    - \*\*\*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 바이오커튼 등)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집진기, 스크러버 등)은 저장시설과 생산시설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가능
- ※ 퇴비저장시설 단독 지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연계

- 지원대상: 마을단위(읍·면, 또는 동·리 단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한 기존 설치·운영중인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 기존 마을형 퇴비저장시설에 반입원료의 30% 이상을 건조, 열분해, 성형 등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를 생산·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 \* 대기오염방지시설: 집진기, 스크러버 등 사업비 내에서 지원

####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축산발전기금

○ 지원형태: 2년(1년 50%, 2년 50)

○ 지원비율: 국비 40%, 지방비 30, 국비융자 30

\* 용자조건: 10년[연 2%(민간기업 등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방비(시·도비, 시·군·구비)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편성하고,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 지방비의 50% 이내에서 대체 가능

#### 5. 지원한도액

○ 지원한도액: 총사업비 1,000백만원/개소 이내

(단위 : 백만원/개소)

구분	금액		
	퇴비저장시설	생산시설	
		고체연료	바이오차
신규	300	400	700
연계	-	400	700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자 선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시·도(시·군·구)

- 사업주관기관[시·도(시·군·구에 위임 가능)]은 사업자 선정계획이 통보되면 각 지자체(시·군)에 사업신청 안내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자의 신청자격 요건,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지방비 지원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 후 검토 의견서를 첨부(우선순위 등)하여 사업총괄기관에 제출
  - \* 환경부서와 반드시 협의(약취민원, 인허가)하고, 참여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시설용량, 장비 진입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처리 규모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의견 첨부

## 사업신청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사업시행기관의 사업자 선정평가에 적극 협조
  - \* 사업신청자(법인명)의 소유의 사업부지 확보(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 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야만 사업신청 가능
  -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1일 처리 가능물량을 제시하되, 퇴비저장시설 용량 이내의 시설규모 및 구체적인 생산·이용 계획 제시

## 2. 사업자 선정 및 보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자를 선정하고, 평가단계에서 제시된 보완사항\*을 사업주관 기관에 통보하고 보완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비 확정
  - ※ 사업대상자 심사, 평가, 검토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총괄기관에서 요청한 평가결과 보완사항을 반영한 보완사업 계획서 작성·제출
  - 통보받은 보완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보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사업총괄기관(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

##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은 전문가들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고 사업대상자 종합평가를 통해 평가결과 및 검토의견(보완사항)을 사업총괄기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자료 검토(보완사항 반영여부 및 사업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위원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총괄기관에 보고
- ※ 사업자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절차, 평가 및 선정 방법·기준 등은 선정계획을 따름

## I 사업 개요

## □ 목 적

-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및 고체연료·바이오차, 해외수출 등 처리방식 다각화로 이용 촉진 도모

##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 사업내용

- 1) (살포) 전문유통주체가 시·군에서 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퇴액비를 지정된 살포지에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살포비 지원

\* (퇴비살포) 부속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확보된 살포지에 살포한 후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퇴비살포비 지원

\* (액비살포)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고 지정된 재활용신고 필지에 액비를 살포한 후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액비살포비 지원

- 2) (살포 외) 가축분뇨 활용, 퇴비·액비 농경지 살포 외 처리(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해외수출)에 대한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퇴비살포) 축산농가 20호 이상 확보한 퇴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살포) 액비살포지 200ha 이상 확보한 액비유통전문조직
- (살포 외) 가축분뇨(해외수출의 경우 퇴비 합량 중 50% 이상 활용) 활용 관련 생산시설, 인허가 등을 갖추고 수요처와 계약행위를 통한 유통·판매 실적(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는 자

## □ 지원내용

- (살포)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후 점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A”등급 300천원/ha, “B”등급 200, “C”등급 100

○ (살포 외) 유통·판매 등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50천원/톤 지급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이승환 주무관 김현철	044-201-2357 044-201-2363

## 1. 목적 및 사업내용

### 가. 목적

-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작농업과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업 구축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 축사깔짚 및 처리시설 내 가축분뇨의 주기적인 교반을 통한 부숙 퇴비 생산·환원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
-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보통비료 대체 등 친환경 농업과 연계하기 위해 퇴액비 이용 편의성 및 품질 제고 필요
- 토양 양분과잉 지역의 경우 가축분 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 등 처리방식 다각화를 통해 이용 촉진 필요
- 퇴액비의 비농업계 이용 및 해외수출을 촉진함으로써 토양 양분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여

### 나. 사업내용

#### ○ 퇴액비살포비

- (퇴비살포)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확보된 살포지에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퇴비유통전문조직\*에 퇴비살포비 일부 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 퇴비 교반·운반·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적정량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시·군·구가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경작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등)

- (액비살포) 액비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받고 지정된 초지·농경지, 골프장(이하 “액비살포지”라 함)에 액비를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액비유통전문조직\*에 액비살포비 일부 지원

\* 액비유통전문조직: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액비살포지를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다고 시·군·구가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작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액비살포지 관련)



○ **살포 외**

- 가축분뇨(해외수출의 경우 퇴비 함량 중 50% 이상 활용)를 활용 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 등 생산·저장시설을 갖추고 이용계획(수출 포함) 수립 및 수요처를 확보한 자로 생산·유통·수출 등 실적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에 이용촉진비 일부 지원

\* 살포 외 처리시설: 생산·저장시설을 갖추고 이용계획(수출 포함) 수립 및 수요처를 확보한 자로서 생산·유통·판매 능력이 있다고 시·군·구가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작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2. 2024년도 사업시행 요령

### 가. 사업내용

#### (1) 사업물량 및 사업비

사업명		물 량	단 가	사업비(백만원)		
				합 계	국고보조	지방비
'24년 예산(안)	살포	22,000ha	20만원/ha	4,400	2,200	2,200
	살포 외	40,000톤	5만원/ton	2,000	1,000	1,000

\* 시·군별 살포 가능면적 및 유통주체의 처리능력에 따라 시·도가 시·군별 살포물량(면적), 생산·유통물량(톤) 배정

#### (2) 지원단가

##### □ 퇴비·액비살포비

- 시·군·구가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과 재배작물 비료요구량 등을 감안하여 ha당 살포량(비료사용 처방)을 정하여 운영

\* 시·군·구는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 작물별 비료요구량 차이가 큰 경우와 일반적

-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살포비 차등 지급

\* “A”등급 300천원/ha, “B”등급 200천원/ha, “C”등급 100천원/ha

\* “C”등급 연속 3회 이상 및 합계 5회 이상을 받은 경우 차년도 1년간 지원 제외

※ 자원화조직체 평가결과 우수 유통전문조직은 개보수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 □ 살포 외

- 가축분 퇴비·액비 살포 외 생산·유통 실적에 따라 지급(50천원/톤)

\* 최종 생산된 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 및 해외수출의 유통·판매실적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국내 생산·유통 실적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해외수출에 따른 지원은 제외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의 경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대상(단, 점검결과에 따른 차등지급 대상 제외)

### (3) 지원대상

####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공 통

- 시·군·구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퇴비유통전문조직 또는 액비유통전문조직 중 퇴비 또는 액비 살포 능력, 살포면적 확보, 농가관리 계획 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동 사업 참여 대상 유통전문조직을 사업 교부결정 전 지정
  - \* 계약농가의 퇴비사(발효·저장시설) 규모 및 관리 능력, 비료처방서 발급실적 등을 고려한 연간 축산 농가 관리 및 부속 퇴비 생산 능력과 부속 퇴비 살포 면적을 확인하여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지정
  - \* 액비 발효·저장시설 규모 및 관리 능력, 비료처방서 발급실적, 재활용신고필증 등을 고려하여 연간 가축분뇨처리 물량 및 살포면적을 확정하여 액비유통전문조직을 지정
  - \* 퇴비유통전문조직 또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개 이상 시·군에 퇴비 또는 액비를 살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살포비는 유통협의체 소속 지자체가 지원
  - \*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살포비 지원 가능(「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의 규정 준수)

#### ○ 퇴비유통전문조직

- 시·군·구가 구성·운영하는 퇴비유통협의체(붙임5)에 참여, 분기별 1회 이상 축산농가의 악취저감, 퇴비 생산·저장·품질 관리 관련 회의 참석, 경작농가 등 살포지에 부속 퇴비 살포

#### ○ 액비유통전문조직

- 시·군·구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붙임13)에 참여,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 재활용신고를 득한 액비살포지에 액비 살포

####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 시·군·구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중 생산 능력, 수요처 확보, 농가 및 시설 관리계획 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동 사업 참여 대상 생산시설을 사업 교부결정 전 지정
  - \* 처리시설은 소재지 외의 시·군에 위치한 업체에 고체연료, 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을 유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촉진비는 생산시설이 소재한 지자체가 지원
  - \*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이용촉진비 지원 가능(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규정 준수)
-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 생산 및 유통

#### (4) 지원요건

##### 공 통

- 경작 및 축산농가간 액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해야함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및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은 전년도 자원화조직체 점검을 받아야 함(점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또는 살포 외 처리시설 지정 후 자원화 조직체 운영실태 점검실시
  -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의 경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점검결과에 따른 차등지급 대상 제외
- 농가관리, 살포농경지 및 살포량에 대하여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의해 관리
- 퇴비, 액비, 고체연료, 바이오차 또는 바이오플라스틱 수거·살포·유통 차량, 살포 인력 및 장비를 보유(임대, 위탁 가능)해야 함
- 「축산법」 제41조의14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축산환경 교육시스템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교육 등 연간 5시간이상 이수해야 함(사업 전년 기준)
  - \* 단, 해당연도 지정 유통전문조직 및 살포 외 경우 사업 신청연도 기준

#### ○ 퇴비유통전문조직

- 축산농가 20호(가축분뇨법상 신고규모 이상, 계약서 첨부) 이상 확보, 부속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만 적정량 살포(관리대장 작성, 붙임8)
  - \* 시·군 등이 판단하여 지리적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산농가 20호 미만일지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내부 방침 문서 必)
  - \* 부속도 검사 등 소요비용은 축산농가에 부담 가능
-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확보된 살포지에 뿌릴 수 있는 퇴비양 만큼 축사\* 깔짚 및 퇴비의 교반 등 부속도 관리(계약서 첨부, 관리대장 작성, 붙임6, 7)
  - \* 교반관리 대상 농가: 한옥우 1,920㎡, 낙농 2,000㎡, 양돈 3,200㎡, 육계(토종닭 포함)·산란계 5,000㎡, 오리 7,000㎡ 이하 농가 중 퇴비사가 없는 농가는 제외

#### ○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부속된 가축분뇨 액비를 유통해야 함
- 미부속 퇴비·액비 살포로 인한 민원 방지를 위해 후속 발효 후 살포할 수 있는 액비유통전문조직(또는 법인 대표) 명의의 액비저장조를 최소 1천톤 이상 보유해야 하며, 농가 소유의 액비저장조 1천톤 이상을 위탁 사용 계약한 경우도 인정(증빙자료 첨부)
- 액비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를 200ha이상 확보(재활용신고필증 기준)하고, 100ha이상 살포 실적(AgriX 기준)이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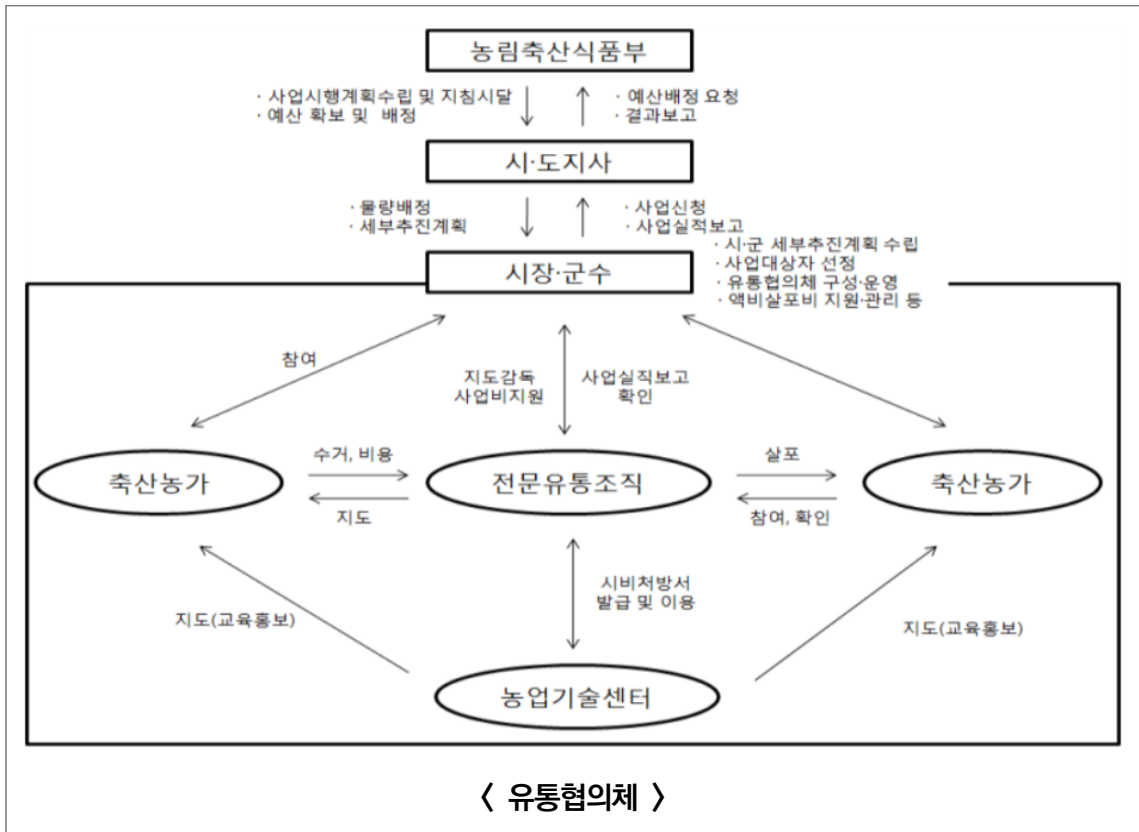
- \* 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이상 권장, 지자체장(시·군·구청장)은 상기 조건을 원칙으로 하고, 지리적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지원 가능(지자체장 내부 방침 문서 必)
-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유통전문조직명, 전화번호, 소유주,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분표시 등)를 부착해야 함
- \*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신규·공사 중인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 후 사업비 정산, 운영 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 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참여 제한(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위탁 계약 농가 전체가 비료생산업 등록)
- 액비는 액비의 살포기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재활용신고 필지에 살포

###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 가축분뇨 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자료\*\*
  - \* 살포 외 처리시설 중 해외수출의 경우 가축분뇨 50% 이상 활용
  - \*\* 해외수출의 경우 가축분뇨 반입량(퇴비 함량 중 50% 이상 활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원료장부, 수출생산일지, 판매대장, 가축분뇨·유기물 함량 등이 표기된 수출제품 비료포장지 등) 제출
- 관련 생산시설, 인허가 등을 갖추고 수요처와 계약행위를 통한 유통·판매 실적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을 것
  - \* 단, 해외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수출실적증명서 등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AgriX에 입력하여 상기 조건을 원칙으로 하고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시·군 등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지원 가능(지자체장 내부 방침 문서 필요)

1. 사업 신청단계 및 사업물량 배정

- 사업 주관기관: 시·군·구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대상자는 지원요건을 갖추고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붙임 1>,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붙임 9>,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지정신청서<붙임 13>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청
-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퇴액비살포비)
  - 1순위: (퇴비) 농·축협, (액비) 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업 등록 유통주체, (살포 외) 농·축협, 비료생산업 등록 법인
  - 2순위: (퇴액비) 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유통주체, (살포 외) 비료생산업 등록 농가
  - 3순위: (퇴액비) 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유통주체
- 사업체계도(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시·군·구는 대상자로 선정된 유통주체 또는 처리시설의 살포·유통 능력, 살포면적(수요처 확보), 참여 축산·경작농가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후 시·도에 사업물량 배정 요청

###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지역 내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가축분뇨 퇴비·액비 이용계획
- 조사료생산기반조성 등 정책사업 대상지에 퇴비·액비 살포계획
- 사업시행 퇴비 또는 액비유통전문조직 선정 결과 및 살포 능력 등
- 지역 내 퇴비 또는 액비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 가축분 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이용 및 퇴비·액비 등 해외수출 계획
- 퇴비·액비 살포 외 농업계 또는 비농업계 이용계획
- 사업시행 처리시설 지정 결과 및 유통·판매 능력 등

- 시·도는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구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별 사업물량을 배정

## 2. 사업시행

### 가.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공 통

- 시·군·구는 유통주체가 퇴비 또는 액비 살포계획 등록 시 반기별 1회 이상 살포 현장 점검
- 시·군·구는 지방농촌진흥기관(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을 통하여 경작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또는 액비 등 비료사용, 농작물 재배관리 등 교육 및 홍보 실시
- 시·군·구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의 부속 퇴비 생산 관리 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시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등을 사용토록 권장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이 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허위보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참여 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시 확정된 쿼터(처리물량 및 살포면적)를 초과한 경우 전문유통주체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자 선정 후 지원사업에 대한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퇴비유통전문조직

- 퇴비살포비는 부속도 기준을 준용하여 퇴비 살포 후 AgriX에 입력한 경우에만 한하여 지원

\* 시·군·구는 유사지원사업(유기질비료지원사업, 조사료생산사업)과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것으로 중복 지원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 후 살포비 지급

### ○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살포비는 액비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받고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기지정 업체 중 가축분뇨 할당량(처리물량 및 살포면적)을 미확정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액비살포비 사업 대상자 선정전 연간 할당량을 확정하고, 확정량 변경 시 신청을 받아 확정량 변경 조치
- 전자인계관리시스템(환경부)과 AgriX(농림축산식품부)이 연계된 실적으로 액비 살포비 지원
  - ※ AgriX 입력된 살포지의 주소와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상 주소(GPS 정보 등)과 일치해야 함
  - \* 다만, 살포 필지가 액비 살포 차량이 진입이 어려워 원거리에서 살포하는 경우 등은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가능

### < 퇴비 살포 전 단계 >

#### ○ 퇴비 생산 및 살포 계획 수립

-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연간 부속 퇴비 생산 및 살포 계획을 수립하여 1월 말까지 시·군에 제출
  - \* 퇴비 살포가 가능한 살포지 확보 현황 및 살포 계획, 이에 따른 퇴비 운반 및 살포 장비 및 인력 현황
  - \* 살포지에 뿌릴 수 있는 퇴비량에 대한 축산농가 계약 현황, 깔짚 및 퇴비 교반, 미생물제제 사용 등 관리 계획과 장비·인력 현황

#### ○ 퇴비 생산 관리

- 계약된 축산농가에 대한 깔짚 및 퇴비를 주기적으로 교반, 미생물제제 살포 등 퇴비 부속도 관리
  - \* 축사의 깔짚 및 퇴비사 퇴비 교반은 부속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지침 및 운영 매뉴얼 등에 따라 축산농가의 교반관리(월 1회 이상 권장 및 관리대장 작성 필수)하되, 미생물제제 사용, 분뇨처리 비용은 농가부담 원칙이나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자율 결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따라 축산농장 출입 시 출입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 실시

### <퇴비 살포 후 단계>

- 경작농가와 계약된 필지(재활용신고 무관)에 한하여 부속된 퇴비를 살포하고, 살포확인서 징구 및 퇴비 살포 후 7일 이내 살포 실적 입력

- 퇴비유통전문조직은 퇴비를 살포하고 시·군·구에 퇴비살포비 신청(붙임 4)시 축산농가 퇴비 생산관리 내역, 살포 계약 및 확인 관련서류 등 제출
  - \* 퇴비를 살포하려는 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살포 동의를 받아야 함(토지소유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 살포동의 및 마을이장의 확인으로 가능)
- 시·군·구는 퇴비 생산관리 내역, 살포확인서, 계약면적을 확인하고 AgriX에 등록된 실적\*을 근거로 퇴비살포비 지원
  - \* 퇴비살포 실적은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인정함

### 〈액비 살포 전 단계〉

- **살포계획 수립**
  - 유통전문조직은 연간 액비유통 및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시·군·구에 제출
    - \* 동 계획에는 액비유통량, 성분분석결과, 살포지 확보현황, 계절별 재배작물,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인력 등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 가축분뇨 액비를 유통·살포하고자 하는 유통전문조직 또는 개별 축산농가는 살포하고자 하는 액비에 대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 \* 액비유통전문조직이 개별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하는 경우, 축산농가 단위로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받아야 함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필요 시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사용을 권장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살포를 원하는 액비살포지 대하여 재활용 신고를 득한 후 재활용 신고된 필지에 한하여 액비 살포

### 〈액비 살포 단계〉

- 유통전문조직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 비료사용 처방서에 산정된 양을 살포
  - 액비를 살포하려는 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살포 동의를 받아야 함(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살포지에 살포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대상자에 포함)
- 텃밭 부속된 가축분뇨 퇴비·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및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5] 액비의 살포기준 위반 시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살포비는 환수하여야 함



## 〈액비 살포 후 단계〉

### ○ 액비 살포 후 7일 이내 살포 실적 입력

- 유통전문조직은 액비를 살포하고 시·군·구에 살포비 지원을 신청(붙임 12)할 경우 액비 살포확인서를 함께 제출(비료사용 처방서는 흙토람시스템과 연계된 정보를 담당공무원이 확인)
- 시·군·구는 비료사용 처방서, 액비 살포확인서, 재활용신고 면적, 유사지원사업 중보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확인하고 전자인계시스템과 연계된 AgriX 등록 실적을 근거로 하여 액비살포비 지원

\* 액비살포 실적은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인정함

\* 재활용 신고를 득한 필지가 아니거나, 비료사용 처방서 등 증빙 확인이 안되는 경우 살포비 지원 불가

## 나.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 시·군·구는 처리시설이 살포 외 유통계획 등록 시 반기별 1회 이상 현장 점검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이 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허위보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참여 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이용축진비는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등 유통·판매 후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통한 실적을 확인 및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유통·판매 전 단계 〉

### ○ 생산 및 유통·판매 계획 수립

-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유통·판매(수출포함)와 퇴비·액비는 해외 퇴비·액비 해외수출 계획을 수립하여 1월 말까지 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

\* 수요처 확보 현황 및 유통·판매 계획, 이에 따른 장비 및 인력 현황 등

### ○ 생산 관리

-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생산·관리

\* 바이오차의 경우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하에 열분해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

\* 분뇨처리 비용은 농가부담이 원칙이나 생산시설에서 자율 결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따라 축산농장 출입 시 출입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 실시

- 수출을 하고자하는 살포 외 처리시설은 수출 계약에 따른 품질기준에 충족하는 품질검사를 통해 관리

### 〈 유통·판매 후 단계 〉

- 확보된 수요처에 우선적으로 유통·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유통·판매 관련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은 시·군·구에 이용촉진비 신청 시 생산관리 내역, 유통·판매 계약 및 확인 관련 서류 등 제출
  - \* 해외수출의 경우 가축분뇨 반입량(퇴비 함량 중 50% 이상 활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원료장부, 수출생산일지, 판매대장, 가축분뇨·유기물 함량 등이 표기된 수출제품 비료포장지 등) 제출
- 시·군·구는 생산관리 내역, 유통·판매확인서, 계약물량을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증명서 등의 유통·판매 실적 등을 근거로 하여 이용촉진비 지원
  - \* 유통·판매 실적은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인정함
  - \* 상기 조건을 원칙으로하고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시·군 등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지원 가능(지자체장 내부 방침 문서 필요)

## I 사업 개요

## □ 목 적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자연순환 농산물 및 조사료를 생산·공급하여 경종과 축산이 상호 상생하는 자연순환농업 구현

##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내용
  - 자연순환농업 추진 전문경영체 대상 퇴액비 이용 활성화 자금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경종·축산 조직 간 자연순환농업 협약식을 체결한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 가축분뇨 퇴액비, 바이오차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 □ 지원내용

- 퇴액비, 바이오차 이용 활성화 자금을 용자로 지원(단, 총사업비 30% 자부담 원칙)
- 사업의무 이행기간 : 1년(지원년도 1~12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 가능

##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대상자 선정: 농협중앙회 추천\*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

\* 농협중앙회에서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서류 검토, 현장실사 등을 거쳐 농식품부에 추천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이승환 주무관 김현철	044-201-2357 044-201-2363

### 1. 사업대상자

-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경영체(농·축협, 농업법인 등)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를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환원을 촉진하고자 경종·축산 조직간에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할 것
-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출하에 따른 출하선급금 및 이용 활성화 자금
-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매취자금
-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조사료·퇴비판매에 따른 외상 미수금 및 가축분뇨 수거 미수금
-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 생산·유통 관련 제비용(툽밥 등 원재료 구입비, 농지 임차료) 및 교육·홍보비

###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조건: 국비용자(연리 2%, 3년 거치 일시상환), 총사업비의 30%를 자부담
- 사업의무 이행기간: 1년(지원년도 1~12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 가능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①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출하에 따른 출하선급금 및 이용활성화 자금
  -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 이용농가의 농산물, 조사료 출하시 지원하는 선급금으로 금액,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 \* 약정물량(또는 금액): 약정물량(금액)은 선급금 지원금액의 120% 이상으로 함
- \* 선급금 운용금리: 사업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자율 운영
- \* 선급금 지원 비중은 사업금액의 60% 이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선급금은 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적정 시기에 지원하되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약정기한 내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선급금 잔액 대비 경종농가의 출하가능 물량이 충분하여 회수에 무리가 없을 때에는 그 이후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

-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한 경종농협(법인, 작목반 등) 이용활성화자금 지원
- \* 이용활성화자금 지원 비중은 사업금액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②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매취자금

- 가축분뇨 퇴비·액비, 바이오차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를 매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및 매취한 농산물을 일정기간 보관하는 데 필요한 보관료
- \* 매취자금 지원 비중은 사업금액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③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및 조사료 판매와 퇴비 판매에 따른 외상 미수금, 가축분뇨 수거 미수금

- 퇴비·액비, 바이오차, 농산물, 조사료 등을 외상으로 판매한 물량(금액)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발생한 미수금의 대체 자금으로 활용
- 가축분뇨 수거에 따른 물량(금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수거 미수금의 대체 자금으로 활용(액비 활성화를 위하여 돈분에 한함)
- \* 외상 미수금 대체자금 활용은 외상 판매 후 사업기간 이내로 하며, 가축분뇨 수거 미수금의 대체자금 활용은 수거 미수금 발생 후 사업기간 이내로 함
- \* 미수금 지원 비중은 사업금액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④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 생산·유통 관련 제비용(톱밥 등 원재료 구입비, 농지 임대료) 및 교육·홍보비

-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퇴비·액비, 바이오차 제조에 필요한 수분조절제, 액비 발효제 등의 매입자금 및 자연순환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임차한 농지임대료(경종과 축산간의 퇴비·액비 이용을 위한 농지확보 자금 포함) 지원
- \* 제비용 및 농지임대료 지원 비중은 사업금액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퇴비·액비, 바이오차 생산·유통과 관련한 제비용, 수요확대 등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교육·홍보 등 지원 비중은 사업금액의 30% 이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 지원항목별 인정 한도 및 자금 활용기간 〉

- 선급금 60%, 이용활성화자금 50%, 매취자금 50%, 제비용 및 농지임차료 50%, 외상미수금 대체 자금 활용 50%, 교육·홍보비 30% 이상 사업금액 초과 지원 제한
- 자금 활용기간: 사업기간 이내
- ※ 자금용도 변경 신청시 기 신청한 지원항목별 인정 한도 기준 내에서만 변경 가능

## 6. 사업의무 이행기간 연장신청 및 용도변경 신청

- 사업의무 이행 기간 연장 신청
  - 사업 당해연도 사업 의무량에 대하여 연도말까지 달성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영체는 연장신청서(붙임5, 10월말 기준)를 작성하여 11월 15일 까지 해당 시·군에 연장 신청
  - 시·군에서는 자료 검토후 시·도를 통하여 농식품부에 연장 신청
  - 농식품부에서 서류 등 검토하여 연장 승인(1회, 1년간)
    - \* 농식품부 → 승인통보(지자체,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 ※ 사업 의무이행기간(연장기간 제외)내에 사업 의무량 미달성시 익년도 자금지원 불가하며, 사업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량 미달성시 위약금 징수
- 자금용도 변경 신청
  - 당초 자금 확정시 제출한 자금용도별 사용 계획에 대하여 연도말까지 달성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영체는 붙임6(10월말 기준) 작성하여 11월 15일까지 해당 시·군에 자금용도 변경 신청
  - 시·군에서는 자료 검토 후 시·도를 통하여 농식품부에 연장 신청
  - 농식품부에서 서류 등 검토하여 용도 변경 승인
    - \* 농식품부 → 승인통보(지자체,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 ※ 기 신청한 지원항목별 인정 한도(%) 내에서만 변경 가능(항목변경은 가능하나 한도 초과는 불가)
  - ※ 용도변경 절차 미 이행 시 차년도 신규자금 지원배제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시달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및 일선 농·축협 등에 사업신청 안내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는 시·도와 협의하여 사업대상 희망자의 신용조사서\*,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시·도에 작성·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대여, 담보제공 금지 등 관련하여 공동자원화시설의 담보설정 제한시 감정가액 한도내에서 사용승인 계획(사업주체 신청 → 시·군 → 도 → 농식품부)

##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붙임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

## 지자체

- 시·도 및 시·군은 사업신청 안내
- 시·군은 사업대상 희망자의 여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붙임2)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군은 사업 희망자의 전년도 사업 의무 이행 기간 연장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 후 제출
- 시·도는 농협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시·군에서 제출한 신용조사서와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사업대상 희망자에 대한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추천

\*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소기의 성과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심사시 불리하거나 탈락할 수 있음을 유의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농협중앙회 본부에 검토 요청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의 추천서를 검토하고 지원안을 마련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시·도에 통보

### 농협중앙회

-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뢰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시·도와 함께 현지실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 참여
- 농협중앙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붙임3)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
  - \* 거래 관련 증빙자료 미확보시 신규자금 지원 평가에서 감점(20점)
  - '23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 결과 우수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하여 우선 선정(평가 결과 별도 통보)
  - \* 우수공동자원화시설 및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평가 시 가점 10점 부여
  - \*\* 단, 우수공동자원화시설과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가점은 중복 불가(택 1)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축 산

---

### 5-5. 가축방역, 위생지원



## I 사업 개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세부사업명	축산물 수급관리				세목	330-01		
내역사업명	가축 사육제한 보상금				예산 (백만원)	4,628		
사업목적	○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기간 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고병원성 AI 발생 고위험지역에 소재하는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육을 제한(보상 병행)하여 국내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 시 확산을 늦추기 위함							
사업 주요내용	○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11.1.~2.28.)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							
근거법령	○ 사업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지원대상	○ 오리 사육농가, 오리 초생추 공급자(계열화사업자,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							
지원한도	○ 해당 없음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	-	9,256	9,256			
	국 고	-	-	4,628	4,628			
지방비	-	-	4,628	4,628				
* 2024년 축산물수급관리 신규 내역사업으로 사업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사무관 김웅태 주무관 이경주		044-201-2558 044-201-2559		
지원기간	'24.1~2월, '24.11.1.~'25.2.28. * 매년 동절기 4개월 간(11.1~2.28.) 사업 추진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시·도/시·군·구)		

## 1. 사업대상자

- ① 오리 사육농가\*, ② 오리 초생추 공급자(계열화사업자\*\*,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

\*\* 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금 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자 위탁계약 농가가 아닌 사육제한 농가에 오리초생추를 공급하는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

-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이하 ‘고위험지역’) 내 농가

\* 1)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 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리)

2)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 km 내 지역(리) 중 최근 5년간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리)

3)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 m 이내 10호 이상 또는 반경 1 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리)

##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오리사육제한 : 고위험지역 내 지자체장이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확정된 육용오리 농가(단, 종오리 농가에서 희망할 경우 육용오리 농가 기준으로 적용 가능)
- 종란폐기 : 사육제한 오리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계열화사업자, 계열화사업자 소속이 아닌 사육제한 오리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되거나 직영하는 종오리 농가의 종란 폐기 시 보상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되지 않은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육제한 하는 경우 해당 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에 대하여 종란 폐기 시 보상[사육제한 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충분한 증거 서류가 있어야 함, 예) 계약증빙서류 등]

###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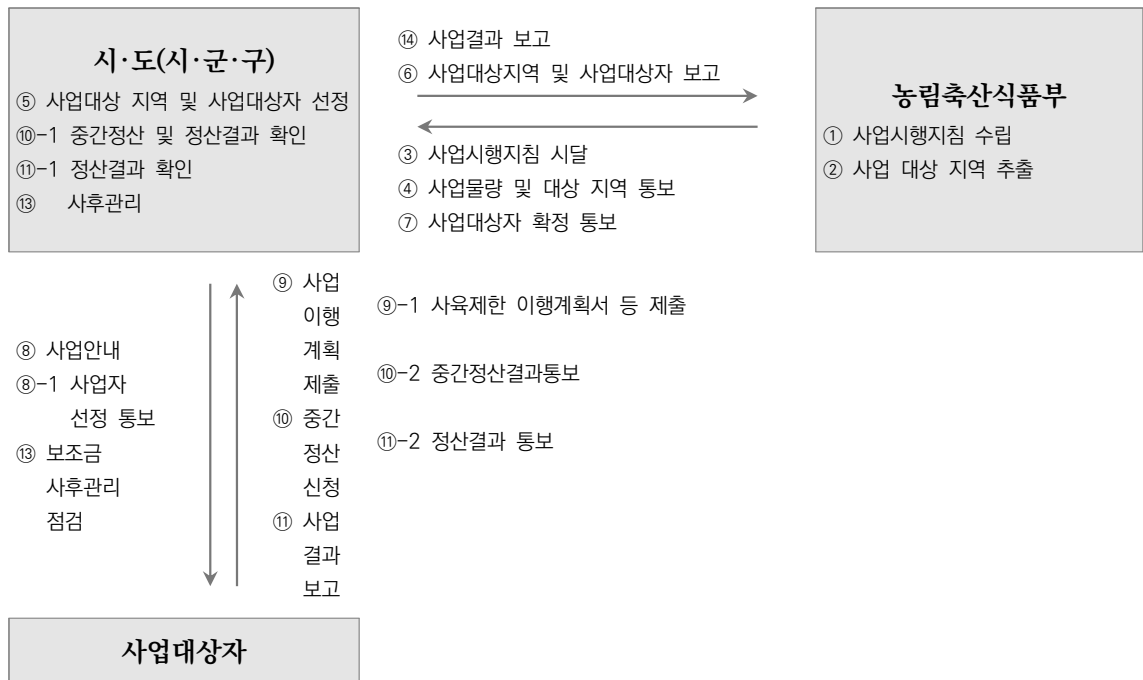
- 자금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시·도 및 시·군·구 각각 50%)
- 사업기간 : '24년~(계속)

### 4. 지원 물량 및 적용 단가 기준

- (오리농가 보상) 사육제한 마리당 단가는 농가 순수익(오리농가 마리당 2년 평균 위탁수수료에서 평균 농가 소요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 적용(2회)
- (종란 폐기 보상) 육용오리 사육제한 대상 마리수의 100% 물량에 대하여 2년 평균 병아리 시세의 50%를 적용한 금액(2회)

### 5. 사업추진체계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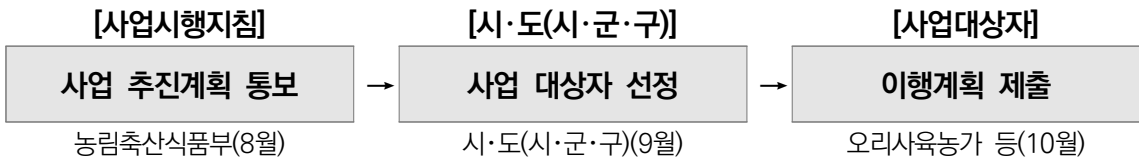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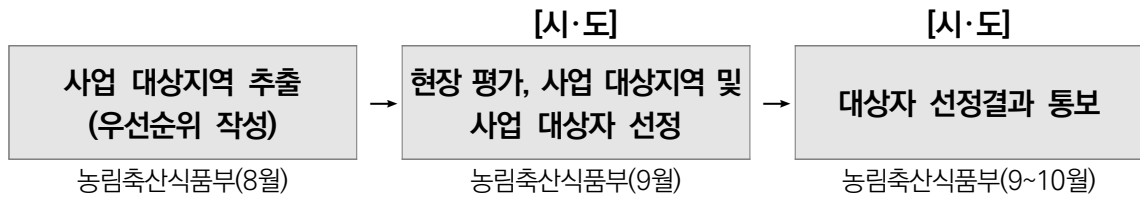
사업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기관	시·도(시·군·구)
기금 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 1.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고위험지역 내 사육제한 명령 대상농가 선정 및 선정 기준 등을 반영한 보상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 시·도
    -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및 사업지침서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지역 내 사육제한 명령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에 제출
    - 관할 가금 계열사 및 협회 등에 농식품부 사업지침서 등 설명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후 운영계획서를 농식품부 제출
  - 시·군·구
    - 오리사육농가의 사업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 지침서를 농가에 안내
    - 시장·군수는 가금 사육농가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 및 사업대상자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확인 안내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대상자(오리농가 및 계열화사업자)
    - 사업 대상 오리농가는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육제한 오리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사업자\*는 사육제한 오리 농가가 소재한 관할 시·군에 사업계획서(종란 폐기)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
- \* 계열화사업자는 농가의 준수사항 안내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

## 2. 사업자 선정단계



### ○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4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사육제한 명령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 관할 시·도의 제반 여건, 국비 지원 가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대상 지역·농가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

### ○ 시·도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사육제한 명령 대상 지역(고위험지역) 내의 해당 농가에 대하여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에 사육제한 명령서를 발부하도록 하며, 그 명단을 농식품부에 보고

### ○ 시·군·구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3. 세부계획수립 및 변경

###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및 변경사항을 시·도에 통보

### ○ 시·도

- 관할 가금 계열사 및 협회 등에 농식품부 사업지침서 및 변경 사항 등 설명

### ○ 시·군·구

- 사업대상농가에 농식품부 사업지침서 및 변경 사항 등을 농가에 안내

### ○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축 산

---

### 5-6. 조사료지원(통합안내)



## I

## 사업 개요

축산

5-6  
(조사료지원  
(통합안내)  
(지원

## □ 목 적

- 유희 산지·농지·기타토지를 활용한 초지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동물복지축산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지원

## □ 사업내용

-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초지조성, 울타리설치, 경영지원 등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 자 또는 등록하거나 등록하려는 자,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하려는 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으로서, 농업법인의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

## □ 지원내용 및 예산

- '24년 예산: 888백만원
- (초지조성, 212백만원) 국고 50%, 용자 50%
- (울타리설치, 476백만원) 국고 50%, 용자 50%
- (경영지원, 100백만원) 용자 80%, 자부담 20%
- (교육 등, 100백만원) 국고 100%, (사)친환경축산협회

##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신청
- 신청기간 : 전년도 4월, 수시(예산신청 없이 지정농장 신청 가능)

## □ 대상자 선정

- 심사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김 성 이주희	044-201-2352 044-201-2354
시·도/시·군	축산관련 부서	-	-

##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서 산지나 농지, 기타토지 등에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려)는 자
  - 초지 또는 임간 방목지의 기준면적은 1ha 이상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일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 자 또는 등록하거나 등록하려는 자,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하려는 자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으로서, 농업법인의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협 등
  -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
- 우선순위
  - 1) 신규 신청농장 중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
  - 2) 신규 신청농장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 3) 기존 지정농장 중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
  - 4) 기존 지정농장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 지원 제한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초지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에서 제외

형벌 및 처분 내용	지원제한 기간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3년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2년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처분 결정시 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우선지원 가능 사업

◇ 직접지원 가능 사업 외의 기타 사업(사일리지제조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시·도 가축방역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은 개별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반영

### 3. 지원대상

- 사업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 대상축종: 한·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면양, 사슴, 토끼, 돼지 등 축종 제한 없음
  - 다만, 축종별 목초 활용 및 방목 계획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초지조성: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비, 초지 기반시설 등
  - \* 농장별 동일 면적에 대하여 동일 항목으로 5년 이내에 중복지원 불가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 경운초지: 토지등급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 미경운초지: 토지등급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 임간초지: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0°이하	100cm	5%이하	사양토, 양토
2급지	21 - 30	99 - 50	6 - 20	식양토, 식토
3급지	31 - 35	49 - 30	21 - 30	사토, 중점토
4급지	36 이상	29 이하	31 이상	입사질토

## -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

-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조성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 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초지 기반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비가림 시설

- ◆ 용수개발: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한 지역의 관정, 관수시설 및 방목축 공급용 저수탱크 등
- ◆ 전기시설: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초지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 내 전기시설에 한함)
- ◆ 비가림 시설 등: 초지 내 방목 가축 대피시설, 급수시설 등

\* 초지 기반시설의 지원 한도 초과 시, 경영지원(용자 80%, 자부담 20%)에서 지원 가능

- 1ha당 초지조성단가로 지원 금액 한도를 산정하되, 지출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제출하여 초지조성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 한도 내에서 지원

\* 초지조성에 실제 소요된 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항목별로 세부 지출내역 제출(향후 초지조성단가 산출 근거 등으로 활용 계획)

○ 울타리설치: 초지 조성 후 유회 방목을 위한 울타리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대, 설치 인건비 등

- 울타리는 면적이 아닌 설치 길이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초지 면적별 내·외책 필요 길이는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산정

- 지출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제출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만 한도 내 지원

\* 목구 구분·유회 방목 계획을 제출하여 목초 생산성 회복 및 사료 자급 가능성 등 평가

- ◆ 초지 내·외곽 경계 울타리,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경영지원: 초지조성부담금, 기계·장비, 경영 기반시설 지원 등
  - \* 초지를 조성할 토지 확보 후 현장심사를 거쳐 '관리농장'으로 평가 받은 경우 지원 가능
  - 초지조성부담금: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및 재해영향성검토협의 관련 전문기관 용역비용,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법정 비용 및 부담금(국유지·공유지, 사유지 모두 지원)
  - 기계·장비: 가축사육 및 방목에 필요한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용 기계·장비
    -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③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항목 및 그 밖에 산지에 초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추가 지원(예: 미니굴삭기, 돌파쇄기 등 급경사 지역의 산지 초지 이동식 시비시설)
    - \* 농장별 동일 기계·장비에 한하여 5년 이내에 중복지원 불가
  - 경영 기반시설: 진입도로 개설, 목장 내 도로 개설, 체험·관광 시설 등

- ◆ 진입로 개설 등: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 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 \* 편입 부지는 자체부담
- ◆ 체험·관광시설 : 치즈가공, 착유시설, 축산물판매시설 등
  - \*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명시된 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시설 등

## 5. 지원형태

- 초지조성: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용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울타리설치: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용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 초지조성, 울타리설치 지원 시 사업비는 지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용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용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는 없음. 다만,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
- 경영지원: 축산발전기금 용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자부담 20%
  - \* 용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지원 포함)
  - \* 용자금은 대출 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초지조성은 1ha(10천㎡)당 10,263천원\*으로, 최대 15ha 한도 내에서 지원
  - \* '22년 경운초지 조성단가(농식품부 고시)에 물가 상승률 반영
- 울타리설치는 1km당 최대 37,341천원\*으로, 지원 금액은 평가 후 결정
  - \* '23년 내책300m, 외책700m 기준 단가



- 경영지원은 농가당 50백만원 및 총 소요액의 80% 한도 내에서 용자 지원
- 사업계획서상의 연차별 계획과는 별도로, 지원 금액은 매년 평가 후 결정

## 7.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 및 관리 등

- 방목생태축산농장은 다음과 같이 관리
  - 관리농장: 신규로 축산업 허가·등록 또는 초지조성허가를 받는 농장 중 관련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농장\*은 사업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 등을 평가하여 관리농장으로 분류, 예산지원 등을 통해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 \* 사업대상자 신청 시,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및 지자체 초지적지조사 및 토지전용 가능성 협의 후 회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 \* 관리농장은 지정서를 발급하지 않고,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을 완료하면 현장심사를 통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지정서를 발급함
  - 지정농장: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로, 사업비 지원과 별개로 교육 등 사업을 통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지정서(이하 “지정서”라고 한다.) 발급, 현판 제작 보급,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방목생태축산농장 로고 사용 허용, Biz-컨설팅, 자문위원 컨설팅(초지조성, 사양관리, 체험·관광산업 부문), 온라인 홍보 등 각종 혜택 부여
    - \* 지정서 발급 농장에 한하여 현판 제작 보급, 로고 사용 허용
  - 지정서 발급된 지정농장을 대상으로 3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평가하여 갱신
  - 교육 등 계획은 매년 초에 수립하는 교육 등 계획에 따름

### Ⅲ

## 사업추진체계

- ◇ '22년도 부터는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차년도 예산편성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므로 사업추진 시기는 아래와 다를 수 있고 추진 내용은 이 지침을 따름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및 다음 연도 사업 공고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전년도 4월)

#### 시·도(시·군)

- 시·도는 사업 공고계획을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은 사업신청 결과를 취합하여 시·도로 제출, 시·도는 최종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전년도 4월)

####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붙임)”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방목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전년도 4월)
  - 해당토지의 초지조성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대상자는 시·군에 제출한 초지조성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함

### 2. 사업자 선정

####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방목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에 대해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에 추천(전년도 4월)
  - 초지조성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초지적지조사 및 토지전용 가능성 협의 후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자료와 시·도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전년도 4월)

### 농림축산식품부

-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대상자의 제출자료 및 시·도(시·군)이 제출한 체크리스트,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따라 서류심사 추진(전년도 5월)
  - 심사위원 평가결과 전체 ‘부’ 개수가 25% 미만일 경우 “통과”
    - \* 자문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
- 서류심사에서 통과된 사업대상자는 심사위원회 현장평가단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현장평가를 통해 심사
  - 현장평가 시 일관된 평가를 위해 동일한 현장평가단\* 구성
    - \* 자문위원 3명, 최대한 동일한 평가단을 구성하되 긴급한 평가 추진 시 다른 위원 가능
  - 현장평가 후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
- 농식품부에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순위를 바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전년도 6월)
  - \* 예산 규모에 따라, 신청 수요가 추가로 생길 경우 수시 선정 절차 可
-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은 예산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계획서와 시·군의 체크리스트, 현장평가 등을 통해서 지정할 수 있음
  - 다만,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 현장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가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지정서 발급)
    - \* [별지 제5호서식]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서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식 품

---

6-1. 기반구축



## I 사업 개요

## □ 목 적

-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산 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지원

## □ 사업내용

- 지역 농특산물 및 농산물 유래 식품 소재의 기능성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前 시험(세포·동물시험/안전성평가) 및 인체적용시험 지원 등

## □ 지원 자격 및 요건

- 국산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에 대한 기능성, 안전성 등 근거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인체적용前시험, 인체적용시험, 준비·등록단계 비용
- 지원 기준 : 국고 40~50%, 자부담 50~6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60%)  
- 품목당 지원규모 40~120백만원(국고 20~60백만원)
- '24년 예산 : 1,846백만원(국비 100%)

## □ 사업 신청

- 연구개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식품연구원에 우편·이메일·방문신청
- 신청기간 : 사업 공고 후 4주('24.1분기)

## □ 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 발표평가 등을 통해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24.1분기)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사무관 김은지	044-201-2138
한국식품연구원	헬스케어연구단	책임연구원 양혜정	063-219-9341



##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농업법인, 농업인 등
  -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단,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농기평(IPET) 등 관계기관 연구와 중복되는 과제 및 우리농산물로서의 토착성이 인정되지 않은 소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 3. 지원대상

- 지역 농특산물 및 농산물 유래 식품 소재의 기능성 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前시험(기능성평가(세포·동물시험)/안전성평가), 인체적용시험 및 기능성원료 등록 연구비 등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인체적용前시험
  - 인건비(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간접비(간접경비)
- 인체적용시험
  - 인건비(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검사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여비, 피보험자보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통계처리비, 시료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간접비(간접경비), 기타비(임상시험 수탁기관 비용, IRB심사비 등)
- 기능성원료 등록 및 신규소재 발굴(표준화) 지원
  - 인건비(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자료조사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여비, 개별인정신청비용 등), 간접비(간접경비)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4~50%, 자부담 5~60%
- 기업 규모별 국고 차등지원

구분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준	평균 매출액 등 1,000억원 초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제외)	평균 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지원비율	4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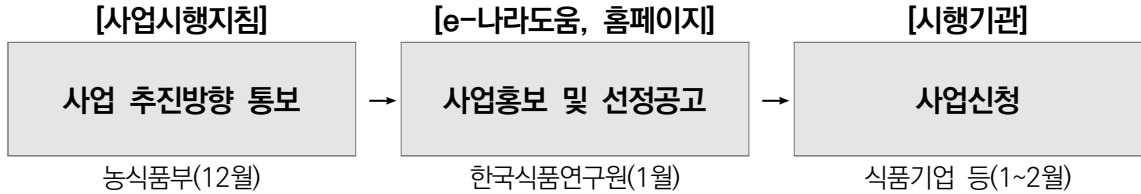
\* 근거법률 : 「공정거래법」 제14조제1항, 「중소기업기본법」 제8조제1항

- 사업범위 : 인체적용前시험 10개 품목, 인체적용시험 1년차 10개, 2년차 7개, 기능성원료등록 지원 등 10개 내외 품목
- \* 자부담의 현물/현금 비율 등은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운영 지침 참조
- \* 최종 선정 품목수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식품기능성평가지원 : 품목당 지원규모 120백만원 내외(국고보조는 6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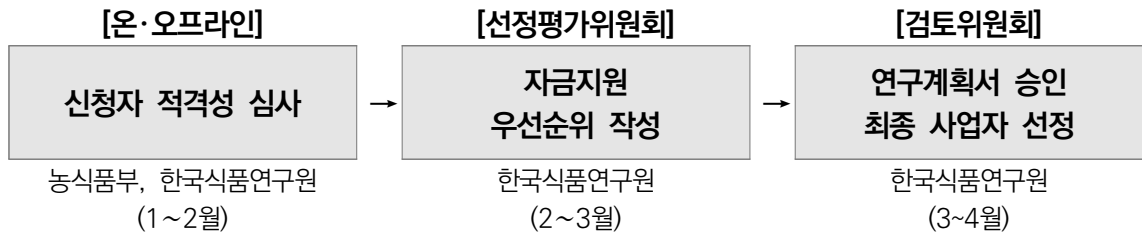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보취약계층으로 지정 및 업무대행 지정 불가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농식품사업이 용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할 수 있다.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해야 함.

식품  
6-1  
기  
반  
구  
축

## 2. 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확인**해야 함
  - \* e나라도움을 통한 자격검증,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 e나라도움을 통한 수혜이력,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이력을 확인하여 중복·편중 지원 방지
- 유사자금\* 지원제한(「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
  - \*\* 「기본규정」 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서 검토 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 1)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 2)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3)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 4)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규정」 제35조제7항)
  - 5) 기타 사업시행지침에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 경우
-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기본규정」 별표 6)에 적합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안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 사업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관외경작자 불이익 금지 관련 (관외경작자 지원제한 완화 대상사업만 해당)
  - 지자체가 관외경작자 지원을 임의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농식품사업 지원 기준을 정하여 사업지침에 명시
  - 관외경작자는 농지 등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의 임의적인 지원 제한 금지 내용을 명시하여 개정
  - 부득이한 경우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의·조정하고 그 내용을 명시
  - 사업시행 지자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24.10), 사업 평가 시 우수한 지자체에 가점 부여, 표창, 예산배정시 고려 등 인센티브 방안 강구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식 품

---

### 6-2. 식품안전, 환경, 인증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GAP 신규인증 농가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 □ 사업내용

- 농경지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 받은 경우 제외)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토양, 용수, 잔류농약 등 분석비 지원
- 지원 기준: 국고 50%, 지방비 50%
- '24년 예산: 5,086백만원(국비 2,543백만원, 지방비 2,543백만원)

## □ 사업 신청

- 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신청기간
  - 토양용수 분석: 지자체별 공모 기간까지
  - 안전성 검사비 지원: '24. 12월말

## □ 대상자 선정

- 토양용수 분석: 지자체별 공고에 의해 대상자(업체)를 선정
- 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업인이 GAP인증을 위해 실시한 안전성 검사비에 대해 지자체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사무관 안정은 주무관 유재인	044-201-2278 044-201-221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서기관 안규정	054-429-4171

##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

구분	지원대상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들녘별경영체, 발작물공동경영체, 시·군별 전략품목 생산조직 등 지역별로 규모화된 경작지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및 개별 농가 ※ 수행기관: GAP 인증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법인(단체)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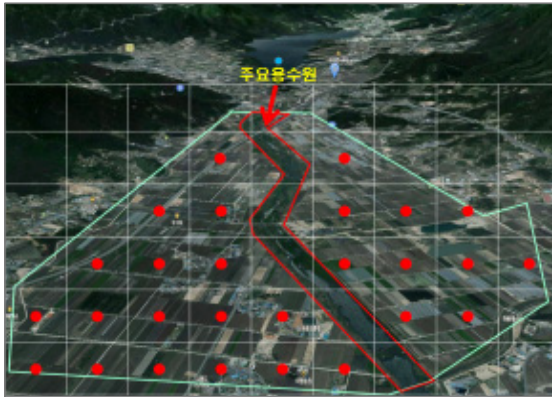
○ 지자체는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을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세분하여 각 시·군의 수요에 따라 배분하여 운영

- \* 시·도에서는 사전에 제출한 수요조사에 따라 각 시·군에서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시·군에서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 \* 토양·용수 분석의 경우 대상지 발굴의 어려움은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군에서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 중 하나만 추진할 경우 시·도의 사전 승인 필요
- \* 집행을 제고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은 상반기 집중적으로 우선 실시하고, 각 시·도별 집행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정기적인 집행을 점검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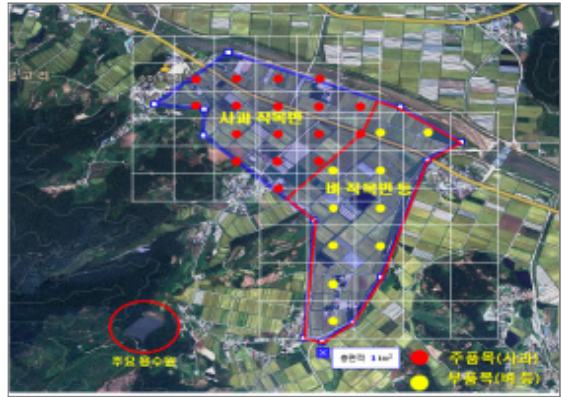
## 2. 지원자격 및 요건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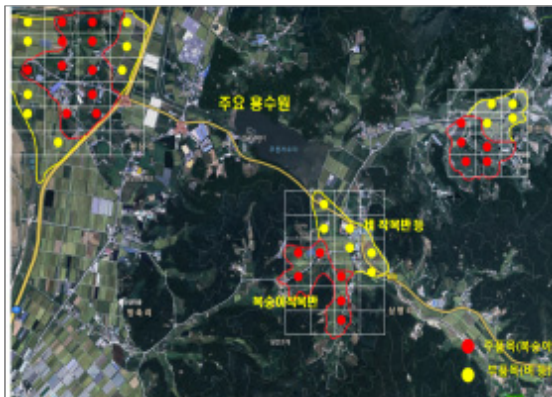
- 다음 유형분류 중 1~3 유형에 해당하는 품목 주산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단, 지자체장이 주요품목 대상으로 생산자단체가 잘 조직되어 사업수행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 시 4유형으로 수행가능
- \* 다만, 4유형의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 보다는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우선 지원



1유형[단일품목 주산지, 벼]



2유형[혼합품목 밀집형 주산지, 사과+혼합]



3유형[혼합품목 분산형 주산지, 복숭아+혼합]



4유형[개별농가 단위]

- 1유형) 단일품목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주산지
  - 2유형) 주품목(사과)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밀집형 주산지
  - 3유형) 주품목(복숭아)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분산형 주산지
  - 4유형) 주품목(사과) 생산자가 조직화 되어 있으나 개별농가 단위로 분산된 주산지
- ※ 1-4유형 중에서 GAP인증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를 적극 발굴하고 우선 지원
- 지자체에서는 주산지 외에 일반농지에 대해서도 분석 가능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이후 5년을 초과하는 연도에 검사를 다시 시행할 수 있음
    - \* '19년에 주산지 토양·용수 분석한 지역에 대해 '24년에 재시행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사업으로 5년 이내('20~'23년) 지원 받은 필지는 제외
      - \* 지자체별로 수행기관에 5년 이내('20~'23년) 자료를 송부하여 중복 필지에 대한 시료채취 제외
      - \* 농관원은 매년 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중복 수령 확인(정기적)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지원사업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
    - \*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한 자(GAP 인증기관 등 입회하여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 단, 2022~2023년 GAP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에 소요된 안전성 검사비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예산부족, 12월에 안전성분석을 받거나 GAP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24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대상자와 중복지원 불가

### [지원제한]

- ①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예: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 \* 다만, GAP인증기관에서 해당 GAP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음
- ② GAP시설\*에서 사용하는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을 말하며 GAP정보시스템(www.gap.go.kr)에서 확인 가능
  - \*\*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 ③ GAP인증 목적 외 기타항목(인증수수료, 출장비, 납품업체 요구에 따른 안전성분석비, 타 인증 신청용 등)의 지원 제외

## 3. 지원대상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GAP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비용 등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가급적 2항의 '지원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
  - 쌀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식약처)에 따라 농산물의 유해중금속 검정항목에 무기비소 추가
-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시료채취비: 44천원/점(토양 22, 용수 22)
- 토양·용수 분석비: 200천원/점(토양 95, 용수 105)

##### < 1점당 분석대상 면적기준(토양) >

구분	면적(ha)	해당 농산물
식량작물	5	미곡, 맥류, 잡곡 (단, 집단화가 되지 않은 지역의 두류, 서류는 2ha 적용)
원예작물	2	과일(사과, 배, 감귤 등), 채소(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등)
특약용 및 기타	1	유지(참깨, 땅콩 등), 약용(더덕, 마, 하수오 등), 기호(차, 박하, 치커리 등)

- ※ 재배형태(노지, 시설), 위험요인(위험 상중하) 등 사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기준 범위 내에서 조정 필요 시 수행기관은 지자체 사전 승인 요청
- ※ 여러 품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2, 3유형) 주품목의 면적기준에 따름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실제 분석비용을 지급(단, 참고 6, 항목별 검사수수료를 참고하여 분석비용이 과다 요구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 < 사업관리비: 안전성분석지원사업 전체사업비의 6% 이내에서 활용 >

-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GAP 관련 교육·컨설팅·사후관리 추진
- GAP 내부심사자 제도 홍보, GAP 영농일지 제작·배부 등
- GAP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의체 운영, 워크숍, 벤치마킹, 현장 모니터링 등
  - 1) GAP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직접비용으로만 사용
  - 2) 자산취득비, 피복비, 사무용품, 특근매식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용 불가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지원한도액: 244천원/점(토양 117, 용수 127)
  -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신청일자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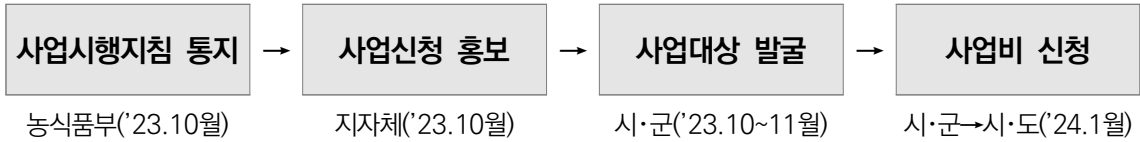
6-2  
환식품  
· 안전  
인증 ·

### Ⅲ

## 사업추진체계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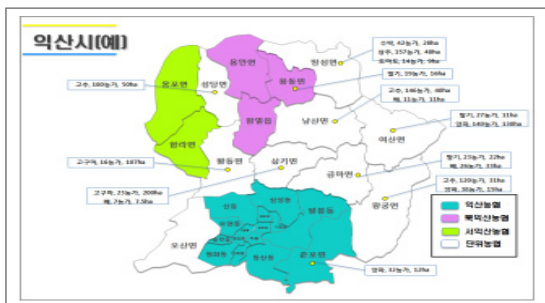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시·도별 사업비 배정(수요량, 공동경영체(들녘, 밭작물) 재배면적, GAP 인증농가 비율, GAP 시설 수, 예산집행 실적 등 반영)

#### 시·도

- 사업시행 지침을 시·군에 통보, 사업 신청 홍보

#### 시·군

- 시·군에서는 품목별, 지역별 모델을 수립한 후 읍면동(생산자 단체)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사업신청이 저조할 경우, 시·군 주도로 사업대상지 및 분석대상 농지 선정 후 사업 추진(이 경우, 시·군에서 정한 분석대상 농지 소유농가에 대해서만 동의(서명 등)을 받은 후 사업 추진)



시군 모델 수립

- 품목별 지역 분포도 수립
  - 관계자(농협, 작목반 등), 관련부서 참여
- GAP 인증확대 계획 수립(목표, 전략, 협의회 구성 운영, 대상농가 교육, 부적합 토양·용수 검출 시 대응방안)
- 읍면동(생산자단체)에 사업 홍보
  - 지도도, 사업내역(필지, 농가) 등 신청서류작성 교육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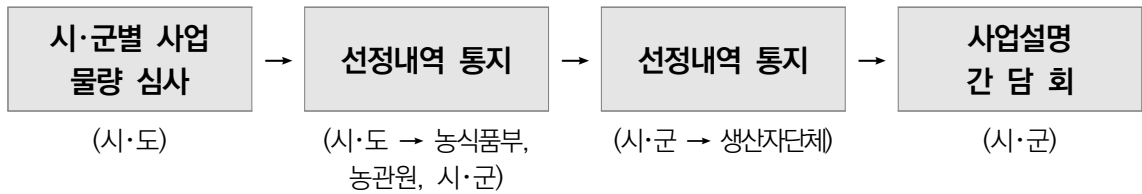


- 읍면동은 시·군 모델에 따라 사업대상 발굴 및 신청
-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별지 2호)

###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별지 3호)와 참여농가의 필지 내역을 지자체에 제출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 사업계획을 검토
  - 시·도의 사업대상 선정결과가 지원 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시·도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GAP 인증 확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사업대상 선정
  - 사업 신청량이 배정된 사업비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지자체 GAP 추진협의체」 등을 통해 사업대상 선정 협의 또는 신규 사업대상 발굴
    - \* 주산지 중심의 발작물(식량·원예) 공동경영체, 내부심사자 지정 단체 우선 지원
- 시·군별 사업비 배정내역을 농식품부 및 시·군에 통지

### 시·군

- 사업 대상 선정결과를 신청 단체에 통보 및 사업 추진방향 설명
  - 사업대상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방향 설명
  - 시료채취 시 농지 소유자 입회 등 처리절차 안내

식품  
6-2  
환경  
식품  
안전  
인증

- 시·군은 사업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변경승인 요청
  - 시·도는 사업목적,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 단순 사업대상자 변경일 경우에는 시군에서 자체 승인하고 시도에 보고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1. 사업신청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에 통보(전년 10월)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 시·도

- 사업시행 지침을 시·군에 통보, 사업 신청 홍보

#### 시·군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별지 2호)

#### GAP 인증기관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 당해 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

### 2. 자금교부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 시·도의 GAP인증 확대, 예산확보 계획 및 전년도 인증실적 등을 감안 결정

## 시·도

-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를 농식품부에 제출(1월)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예산을 시·군·구에 교부(1월)
  - 시·군·구의 GAP인증 확대, 예산확보 계획 및 전년 인증실적 등을 감안 결정

## 시·군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급: 교부일로부터 12.31.까지
  - \* 보조금 교부 시기, 횟수, 방법 등은 시·군·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추진

### 3. 사업자 선정 및 지원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 사업계획을 검토
  - 시·도의 사업계획서가 지원 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농관원

- GAP인증 현황을 시·도(지자체) 통보(GAP정보서비스시스템 실시간 제공)
  - 안전성검사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 분석 현황을 제출받아 지자체 통보(격월 10일, 별지 7호)

## 시·도

- 검사비 집행실적을 농식품부에 분기별로 제출(별지 8호)

#### 사업신청자

- 인증농가(지원 대상자)는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연중)
  - 붙임서류: GAP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또는 성적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수령

## 시·군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대상자 선정(3~12월)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
  -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농가별 지급 내역을 기록 유지(별지 6호)
    - \* 지원대상 자격 확인은 GAP정보서비스(www.gap.go.kr)에서 농가 및 인증기관명 확인 가능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사업 완료(12월 31일)
-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 보조금 집행 시 유의 사항 〉

- **미인증 농가 지급 불가:** 신청일 기준으로 인증취소, 유효기간 경과 등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농가, GAP인증 필지가 아닌 경우, 친환경인증 등 타 용도 목적으로 분석한 경우 지급 불가
- **목적 외 지원 불가:** 인증수수료 및 출장비에 대한 지급 불가
- **중복지급 주의:** 농업인의 중복신청에 대한 행정착오 주의
- **부적합 검사성적서 확인 철저:** 미등록 농약 사용, 토양·용수 검사 불합격 등 부적합한 검사성적서는 보조금 지원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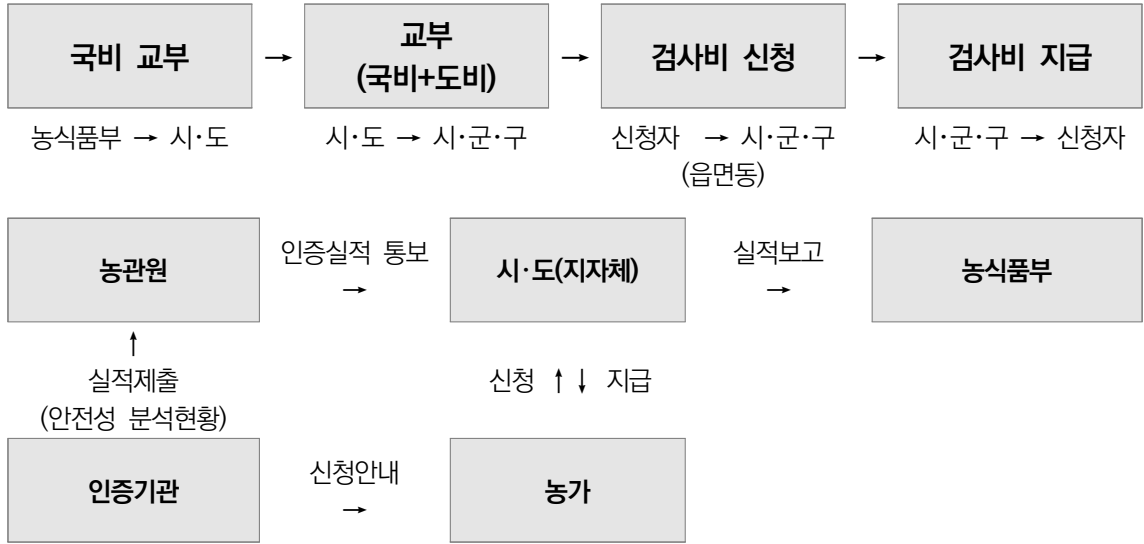
## 읍·면·동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시·군·구 제출(연중)
- 관할 지역 내 GAP인증 농가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연중)

## 인증기관

- GAP인증서 발급 시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농가에 안내
  - \* 안전성검사비는 인증서 발급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권고
- GAP인증에 따른 안전성 분석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농관원에 보고
  - \* 단, 전산시스템으로 정보 입력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인증기관은 GAP 인증 심사 시 GAP정보서비스(www.gap.go.kr)의 연도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토양, 용수) 결과를 활용하되, 오염우려 지역이 있거나 심사원이 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분석

〈 절차도 〉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 사업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다만,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시설 또는 농산물우수 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에 대해 위생시설 보완 지원
- 지원 기준 : 300백만원 이내(국비+지방비)/개소
  - (생산자단체 등)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장·군수) 국비 50%, 지방비 50%
- '24년 예산 : 3,900백만원(국비 1,170, 지방비 780, 자부담 1,950)

## □ 사업 신청

- 장소 : 거주지 시·군·구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기간 : 지자체별 공모 기간까지

##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항목은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의지, 준비상황, GAP확대 기여도, 사후관리 계획 등
- 선정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사무관 안정은 주무관 유재인	044-201-2278 044-201-221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서기관 안규정	054-429-4171

## 1. 사업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 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 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수확 후 관리 시설을 보유한 농가 또는 생산자조직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 우선 지원 ]

- '23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대상자,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 GAP 기준에 따른 내부심사자를 지정한 GAP 인증 단체, GAP정보서비스 내 출하정보를 등록하는 GAP 인증 단체
- '24년 상반기 보조금 조기 집행이 가능한 자
- GAP 농산물의 취급물량 확대를 통해 GAP 면적을 확대하려는 자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우선 선정
-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 가동일수, 손익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단체
  - \* 다만,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사업보조금 지급완료 연도부터 5년간) 또는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을 포기한 자(3년간)는 우선지원에서 제외



### 3. 지원대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수확 후 관리 및 위생관리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 APC, RPC 공장 신축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금지(기존 공장이 건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화장실·탈의실 등 별도 시설 확대에는 사용 가능)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시설별	구분	사용 용도
미곡종합처리장 및 곡류의 수확 후 관리시설	시설물	○ 축산폐수·화학물질 및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시설물 격리
	건조저장시설	○ 곡온(穀溫)관리, 쥐 등 침입방지, 잔곡(殘穀)관리 등을 위한 장비 또는 시설물 공사
	작업장	○ 공정별(원료부, 현미부, 백미부 등) 격리 또는 분리, 구획 공사 ○ 작업장 바닥, 내벽, 천장, 출입문, 창문, 집진시설, 채광 및 조명 등 공사
	가공설비	○ 이송설비, 이송관, 저장용기 등 가공설비 및 선별장치 공사
	집진설비 및 부산물실	○ 집진설비, 부산물실 공사
	수처리 설비	○ 밀폐가 가능한 용수저장 탱크 공사
	위생관리	○ 화장실, 탈의실, 청소 설비 전용공간 공사
기타	○ 폐기물처리설비 공사	
농수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시설	시설물	○ 축산폐수·화학물질 및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시설물 격리
	작업장	○ 공정별(선별, 세척 및 포장 등) 격리 또는 분리, 구획 공사 ○ 작업장 바닥, 배수, 내벽, 천장, 출입구, 창문, 채광 및 조명, 환기설비, 집진설비 등 공사
	수확 후 관리설비	○ 농산물 수확 후 관리·취급 설비, 냉각 및 가열처리 설비 공사
	수처리 설비	○ 밀폐가 가능한 용수저장 탱크 공사
	저장(예냉) 시설	○ 저온시설의 작업장과 분리 공사 ○ 벽체, 천장, 내벽, 창문, 출입문, 온도(냉장, 냉동, 냉각)관리 공사
	위생관리	○ 화장실, 탈의실, 청소 설비 전용공간 공사
	기타	○ 폐기물처리설비, 폐수처리시설 공사
지원제의 대상	○ 시설물과 관련 없는 운송차량, 팔렛(pallet), 수송·운반·보관용물류기기 등 구입, 판매장 공사, 원료 구입, 토지매입 경비 ○ 홍보, 연구개발 등 경상비 지원	

#### <참고사항>

- 시설별 사용용도에 따른 시설기준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우수관리 시설의 지정기준 참고
-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준설계도 및 관련 전문기관(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기관)의 자문을 받아 부적정한 공사 방지
- 사용용도 외 GAP 농산물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장치나 설비 보완 허용하나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 제시
- 전체사업비 5% 내 기술검토 비용 및 설계, 감리비 등 사용 가능

식품  
6-2  
환식품  
· 안전  
·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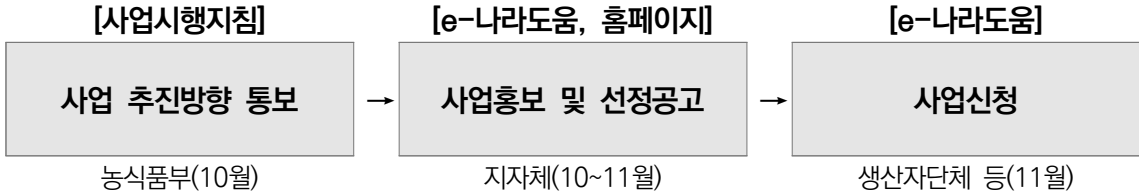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생산자단체 등)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시장·군수)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한도액: 300백만원 이내/개소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함) 및 시·도에 통지
  - 지자체 배정기준에 의거 사업비 통보

지자체(시·도,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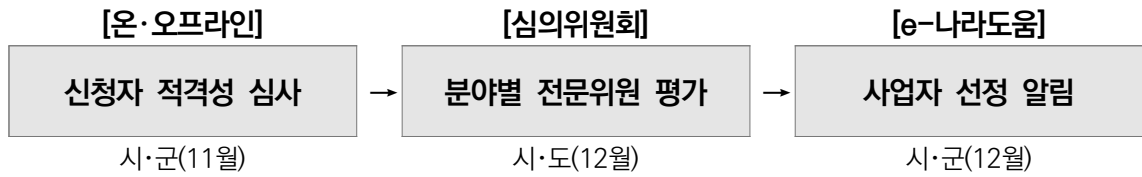
- 시장·군수는 사업 신청 대상을 사업성 1차 진단(별지 3호) 후 신청서, 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신청품목을 주 사업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생산유통시설(APC, RPC, 수확 후 자가 보유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조직 중 다음의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선정

사업 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GAP 위생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별지 1, 2호)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구비서류를 편철순서에 의해 작성·제출
  - \*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식품  
6-2  
환경·식품  
안전  
인증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을 검토
  - 시·도의 사업대상 선정결과가 지원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사업대상자가 확정된 후 지자체 담당자, 사업대상자 교육 실시

###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평가표 별지 4호)
  - 전문위원은 건축, 세무, 유통·홍보 등 그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하되, 농산물우수 관리(GAP) 시설 사후관리 기관인 농관원 지원 담당자는 필히 1명 포함할 것
- 사업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 및 시·군에 송부
  - \* 보조금 상반기 집행 가능자 우선 선발
- 사업 포기 등으로 집행 차질이 없도록 예비사업자(후순위 사업자) 반드시 선정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 주요 점검사항 ]

-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의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사업성 진단을 실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8조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사업성 진단서는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을 판단해 지원유무 판단

## 시·군

- 시·도의 사업성 평가 시 구비서류 준비 및 현지 평가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일정 및 계획 등을 사전 통보
- 시도에서 사업대상자 확정내역이 통보되면 사업대상자에게 선정결과 통지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식 품

---

### 6-3. 식품산업, 외식산업





## I

## 사업 개요

## □ 목적

- 지역 우수 양조장을 발굴하여 인근 농촌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체험형 관광 문화공간으로 육성

## □ 사업내용

- 양조장의 농촌관광 연계 컨설팅 및 환경개선, 프로그램 개발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국내 전통주 등 생산업체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양조장 환경개선, 프로그램 개발 소요 비용(최대 80%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국고 24백만원 + 지자체 24 + 자부담 12백만원(1, 2년차 지원), 신규지정 4개소
- '24년 예산 : 192백만원

## □ 사업 신청

- 방법 : 지자체 대상 공모(공문 시행 예정), 사업자 모집 공고 추진
- 신청기간 : 사업 기간에 따라 공고 일정은 유동적

## □ 대상자 선정

- 지자체에서 사업목적에 맞는 양조장을 추천하고, 추천 양조장 대상 서류·현장평가 실시하여 양조장 신규 선정, 선정기준 항목은 역사성, 사업의지, 계획성, 지역관광 연계성 등임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사무관 최영조	044-201-213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통식품지원부	부 장 고광삼	061-931-0730
		차 장 용상구	061-931-0732

### 1. 사업대상자

- 전통주 등 제조 업체(지역에서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찾아가는 양조장 세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격(관련 사업실적 등)을 갖춘 사업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 별도의 선정 우선순위 없음

### 3.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제조업체(지역에서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양조장 환경개선,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비 등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40%
- 사업 의무량 : 세부사업별 계획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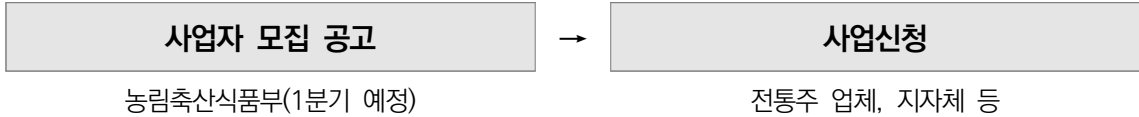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192백만원(예산한도), 각 업체별 국고 지원 24백만원 한도(1, 2년차)

###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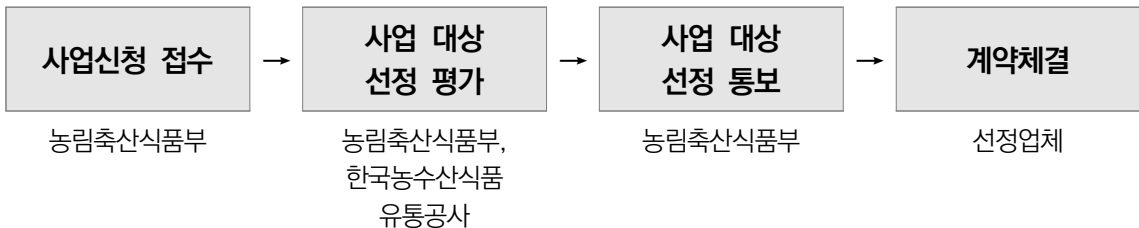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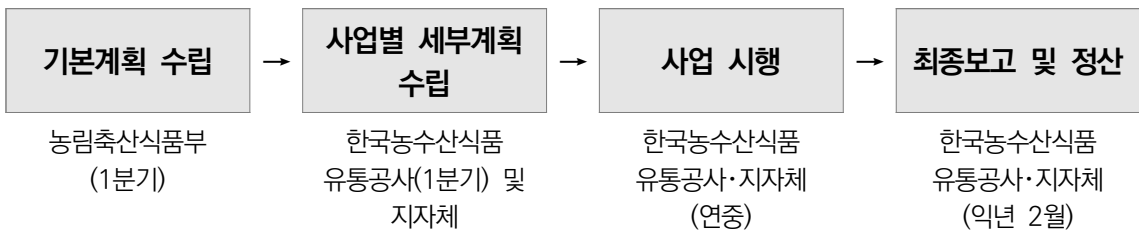
- 세부 사업별로 사업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대상 공모(공문 시행 예정) 사업자 모집 공고 추진(사업기간에 따라 공고 일정은 유동적)

### 2. 사업자 선정단계



-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사업주관기관)는 접수된 사업신청서(지자체, 전통주 제조업체)를 검토·평가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선정된 사업자(수행기관 포함)와 사업추진 계약을 체결
- 세부계획 수립 전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모집(공고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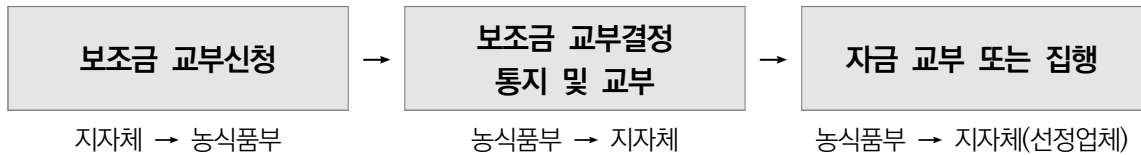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전달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 중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세부계획을 벗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 후 추진

#### 4. 자금배정단계



- 지자체(지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자는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 2월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함

#### 6. 사후관리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운영실태, 사업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보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사업자의 자금집행 실태, 사업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식 품

---

### 6-4. 식생활, 식품소비





## I 사업 개요

## □ 목적

- 농축산물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 □ 사업내용

- 온·오프라인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가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 지원
  - 유통업체 행사주기별 1인 1만원\*(전통시장 2만원) 한도로 20%(전통시장 30%) 할인 지원

\* 설·추석 등 명절과 김장철 등에는 1만원씩 한도 상향

## □ 지원 자격 및 요건

유통경로	지원대상
온라인	○ 민간업체·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
오프라인	○ 대형·중소형 마트, 친환경·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소비자의 국산 농축산물 구입 시 할인 비용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100%
  - 총 예산 108,000백만원 중 사업비로 1인 1만원 기준 지원

## □ 사업 신청

- 장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이메일 신청
- 신청기간 : 당해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보조사업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23.12월)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사무관 이효열 주무관 최영준	044-201-2285 044-201-228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신유통사업처	부 장 공영미 차 장 이규호	02-6300-1751 02-6300-1753

### 1. 사업대상자

-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 대기업·계열회사, 체인 본부·가맹점포 등은 1개 업체가 대표하여 참여 신청하고 대표업체가 계열 및 가맹점에 대해 사업 관리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차별 없이\* 국산 농축산물을 판매하며 행사주기별 1인당 할인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모든 유통업체
  - \* 특정 카드 사용 시 할인 지원 및 유·무료 회원 간 차별 등 소비자 차별 금지

### 3. 지원대상

- 소비자의 국산 농축산물 구입 시 할인 비용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소비자가 농식품부 지정의 할인대상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20~30%를 1인당 한도금액 내에서 할인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유통업체 할인행사 후 사후정산을 통해 해당 사업비 지급
  - 사업종료 후 사업자는 지원내용 등에 따라 집행된 비용에 대하여 적격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 적격증빙서류에 대하여 내·외부 기관 협조 등을 통한 검토 및 정산금액 확정
  - 보조금 교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요청 시 선금 지급 가능
    - \* 선금 지급 규모는 추후 협의 등을 통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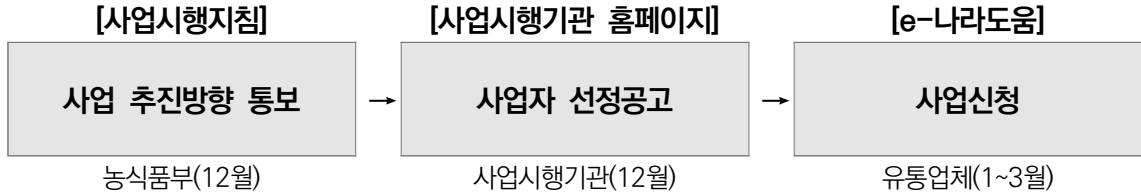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유통업체 할인행사별(1주일) 1인 1만원 한도 20% 할인 지원(명절·김장철 2만원, 전통시장 평시 2만원 한도 30% 할인, 명절·김장철 3만원 한도)

###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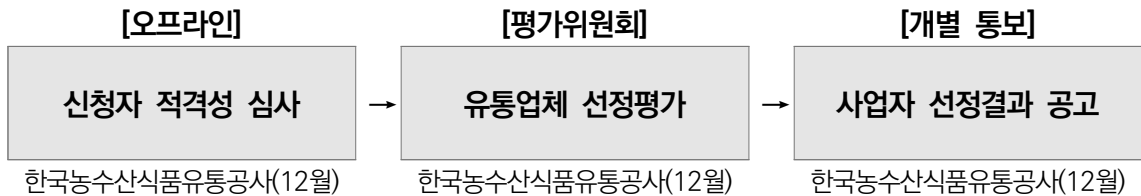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필요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2. 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확인**해야 함
  - \* e나라도움을 통한 자격검증,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 e나라도움을 통한 수혜이력,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이력을 확인하여 중복·편중 지원 방지

- 유사자금\* 지원제한(「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
  - \*\* 「기본규정」 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서 검토 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 1)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 2)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3)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 4) 기타 사업시행지침에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 경우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에 상정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안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유통업체를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식 품

---

## 6-5. 농식품 수출





## I 사업 개요

## □ 목적

- 안전한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수출집약형 전문단지를 육성하여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

## □ 사업내용

-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출단지 조직화 교육 및 안전성 관리,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수입국 검역관 초청 등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및 수출농가, 수출업체, 협정에 의한 지정기관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등)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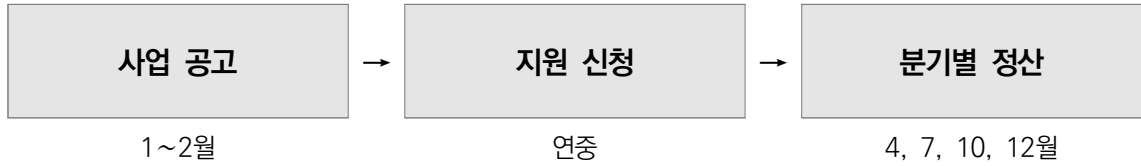
내역	내내역	지원내용
생산기반조성	조직화지원	○ 생산 및 조직화 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 지원
	생산관리지원	○ 안전성 관리, 생산관리, 유통개선 등 영농역량 제고 지원
	안전성관리	○ 잔류농약·식품위생 검사비 등 지원
	검역관 초청	○ 對美 배·사과 수출단지 대상 CSA 근거 美 검역관 초청비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90~100%, 자부담 0~10% ※ 지원비율, 한도 등 사업별 상이
- '24년 예산 : 9,760백만원

## □ 사업 신청

- 장소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안전성관리 사업은 월, 분기 등 기준으로 사업비 소진까지 연중 지원하며, 사업별 세부 진행절차는 홈페이지 확인요망

## □ 대상자 선정

○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지원 가능, 별도 선정절차 없음

\* (조직화 지원)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생산관리지원) 수출전문단지, (안전성 관리) 농식품 수출업체·농가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사무관 박건우	044-201-2176
		주무관 조성민	044-201-217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기반부	부 장 장정호	061-931-0830
		차 장 황규리	061-931-0831

### 1. 사업대상자

-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및 수출농가, 수출업체, 협정에 의한 지정기관
  - 사업별 지원 기준에 따라 요건 충족 시 사업대상자로 선정 및 지원
  - \* 사업 지원대상 및 제한기준 등은 각 사업별 상이

### 2.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명	지원자격 및 요건 등
조직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li> <li>○ 의무자조금 조성 품목의 경우 의무거출금 납부단지에 한해 지원</li> <li>○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평가 결과 최우수·우수등급 단지 및 정보화 우수단지 우선 배정</li> </ul>
생산관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중 운영실태평가 결과 최우수, 우수로 지정된 수출전문단지</li> </ul>
안전성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li> <l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li> <li>○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 (중복신청 불가)</li> </ul>
검역관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CSA 협정에 따른 사업자(농협경제지주)</li> </ul>

\*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참고 필요

### 3. 지원대상

사업명	지원내용
조직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 및 조직화 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우수사례 벤치마킹 워크숍, 농가 정보화, 전문기술 도입, 신제품 테스트 비용 등 지원</li> </ul>
생산관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성 강화, 연구개발, 생산관리, 유통개선을 위한 안전성 인증심사비, 재배기술 개발비, 품질 제고를 위한 자재 공동구입비 등 지원</li> </ul>
안전성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식품위생) 지원</li> </ul>
검역관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對미 배·사과 수출단지 미 검역관 초청비용 지원</li> </ul>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의 사업별 지원 내용에 맞게 자금 사용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사업명	국고(%)	자부담(%)	의무사항 및 사업범위 등
조직화교육	9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성 전담관리인력(코디네이터) 지정 및 농집 내 생산·수출계획 입력 필수</li> <li>○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실시 후 배정금액 이내 정산 (총 사업비의 90%한도)</li> </ul>
생산관리지원	10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의 농집 입력 비율 80% 이상</li> <li>○ 안전성 강화, 연구개발, 생산관리, 유통개선 등 허용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 정산</li> </ul>
안전성관리	9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성적서 및 원재료 국산에 한하여 지급</li> <li>○ 잔류농약, 식품위생 검사비의 90% 지원(VAT제외)</li> </ul>
검역관초청	10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연도 사업 기간 중 필요한 예치금을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APHIS(미농무부 동식물검역소) 측에 사전 지급</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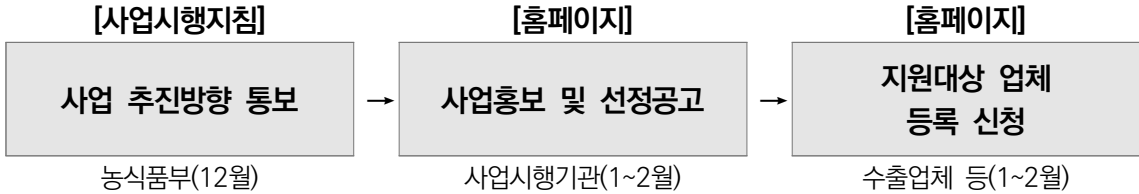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사업명	지원기준 및 한도 등
조직화교육	○ 농가인식개선, 농가정보화, 전문기술교육, 농가품질관리 등 해당 항목 소요예산의 90% 지원(참여농가수 비례 지원한도 설정)
생산관리지원	○ 안전성 강화, 연구개발, 생산관리, 유통개선 등 해당항목 소요예산 지원
안전성관리	○ 잔류농약검사비의 90% 지원(VAT제외), 식품위생검사비(미생물, 중금속 등)의 90% 지원(VAT제외)
검역관초청	○ 연간 사업예산 내 미검역관 초청 및 행정비용 일체(급여, 여비, 부대비용 등)

###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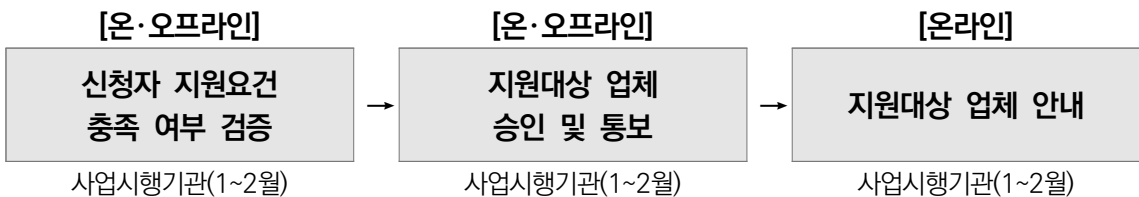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사업공고 안내
    - \* 안전성관리 사업은 월, 분기 등 기준으로 사업비 소진까지 연중 지원하며, 사업별 세부 진행일정 및 절차는 홈페이지 확인요망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한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공고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지원대상 업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 각 사업 항목별 지원요건 상이

### 2. 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증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적격업체에 한해 지원대상 승인 및 통보하고, 사업별 지원일정 등을 안내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전문수출조직인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품목별 마케팅협의회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수출 확대·효율화 도모 및 수출경쟁력 강화

## □ 사업내용

-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효율화를 위해 전문판매조직인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마케팅협의회 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교육 등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기업, 해외 바이어 등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등)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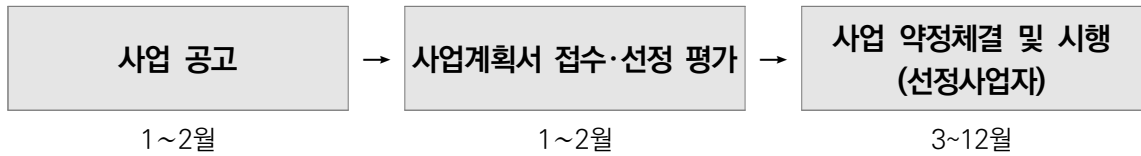
내역	내내역	지원내용
판매조직육성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 신선농산물 통합조직(통합단계·선도단계)의 품질관리, 연구 개발, 안전성 관리, 물류개선, 해외마케팅 등 지원
	마케팅협의회 운영	○ 농식품 마케팅협의회 대상 공동마케팅사업비 지원
	수출전문인력육성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무역실무 교육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60~100%, 자부담 0~40% ※ 지원비율, 한도 등 사업별 상이
- '24년 예산 : 26,880백만원

## □ 사업 신청

- 장소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고려함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 내내역사업 : 신선농산물통합조직, 마케팅협의회, 수출전문인력육성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사무관 박건우	044-201-2176
		주무관 조성민	044-201-217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	부 장 장서경	061-931-0820
		차 장 이광성	061-931-0821

## 1. 사업대상자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기업, 해외 바이어 등
  - 사업별 지원 기준에 따라 요건 충족 시 사업대상자로 선정 및 지원
  - \* 사업 지원대상 및 제한기준 등은 각 사업별 상이

## 2.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명	지원자격 및 요건 등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 (공동) 생산자, 농산물전문생산단지와 구속력 있는 출하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출 물량 및 가격·품질 등을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수출 연합조직 - (통합단계) ① 해당 품목의 국가 전체 수출액이 100만불 이상이며, 국가 전체 대비 조직의 수출 비중 70% 이상인 조직 ② 생산자(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수출 전문 통합마케팅 법인 - (선도단계) 국가 전체 대비 조직의 수출 비중 50% 이상인 조직
마케팅협의회운영	○ 농식품 마케팅협의회 소속 회원사(수출업체) ※ 신규 수출업체도 마케팅협의회에 상시 가입 가능
수출전문인력육성	○ 농식품 수출업체 임직원 및 수출 농가, 수출통합조직 사무국 임직원, 지자체 수출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참고 필요

## 3. 지원대상

사업명	지원내용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 신선농산물 통합조직(통합단계·선도단계)의 품질관리, 연구 개발, 안전성 관리, 물류개선, 해외마케팅 등 지원
마케팅협의회 운영	○ 농식품 마케팅협의회 대상 공동마케팅사업비 지원
수출전문인력육성	○ 수출업체 임직원 및 수출 농가, 수출통합조직 사무국 임직원,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 무역실무 교육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의 사업별 지원 내용에 맞게 자금 사용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사업명	국고(%)	자부담(%)	의무사항 및 사업범위 등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80~100	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수립 및 약정체결, 공동정산 수행, 생산·품질·물류·마케팅 사업수행, 공동브랜드 사용, 운영실태 점검, 운영실적 평가 등</li> <li>○ 공동사업비(80~100%), 중점사업비(100%), 출하의무계약 인센티브(100%) 등</li> </ul>
마케팅협의회 운영	10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회별 총회 개최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li> <li>○ 연중 공동마케팅계획 제출 및 수행, 정산 진행</li> </ul>
수출전문인력육성	60~100	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생 교육과정 신청</li> <li>* 통합조직 교육은 통합조직 관리자 및 임직원 의무수강 (연2회 진행)</li> <li>○ 수출마스터(60%), 통합조직 운영역량(100%), 수출지원역량 강화(100%)</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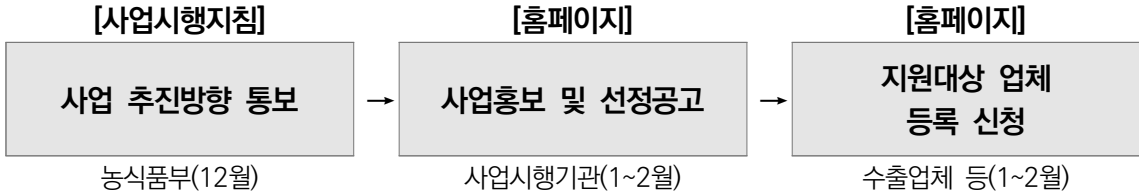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사업명	지원기준 및 한도 등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사업비) 운영실적 평가 결과 및 수출규모를 반영하여 차등배정</li> <li>○ (중점사업비) 운영실적 평가 결과, 수출규모, 관리하는 회원사 수를 반영하여 전체 예산 규모에 맞게 차등배정</li> <li>○ (출하의무계약 인센티브) 조직별 전년도 출하의무계약 목표 달성도에 따라 차등 배정</li> </ul>
마케팅협의회 운영	○ 전년도 사업 운영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배정된 사업비 한도 내 지원
수출전문인력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수출마스터교육) 무역실무, 마케팅전략, 토론회 등 정기교육 60%</li> <li>○ (수출통합조직 운영역량강화) 조직운영, 윤리경영, 회계 및 계약교육 등 100%</li> <li>○ (농식품수출지원역량강화) 지자체 수출담당 공무원 대상 단기교육 100%</li> </ul>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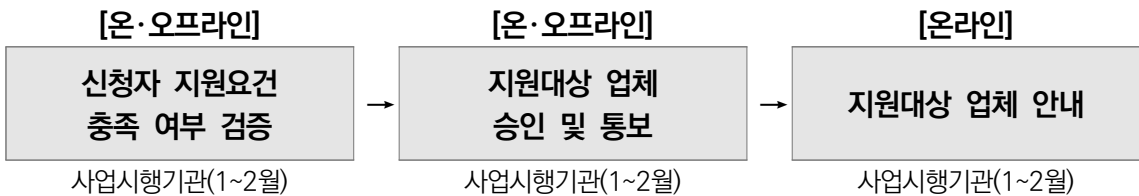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사업공고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한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공고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지원대상 업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각 사업 항목별 지원요건 상이

### 2. 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증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적격업체에 한해 지원대상 승인 및 통보하고, 사업별 지원일정 등을 안내

## I 사업 개요

## □ 목 적

- 농식품 수출 유통·수출 쏠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출업체에 맞춤형으로 지원

## □ 사업내용

- 맞춤형패키지 지원, 보험 가입비용 및 선도유지제 처리, 수출컨설팅 제공, 상품화, 현지화, 수입국 요구 해외인증 등

## □ 지원 자격 및 요건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기업, 해외 바이어 등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등)

## □ 지원내용 및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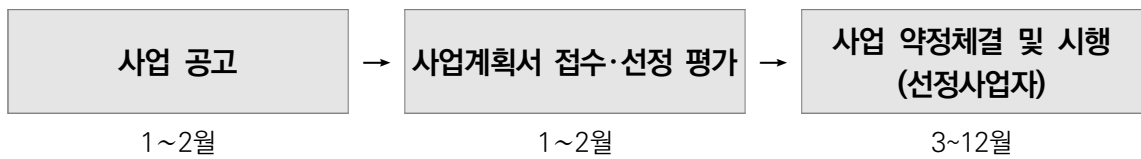
- 지원 내용·품목

내역	내내역	지원내용
농식품 우수기업육성	수출보험	○ 환변동·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
	선도유지제 구입지원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 지원
	해외인증등록지원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현지화지원	○ (수출업체)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자문, 라벨링 지원 및 상표권 출원 ○ (바 이 어) 컨설팅, 현지 식품 검사비, 신규 수입식품 등록비 등
	수출컨설팅	○ 해외진출, 현장코칭, FTA 특혜관세 활용 컨설팅 지원, 수출업체 역량진단
	미래클	○ 수출유망품목의 상품개선, 기능성 성분분석, 해외마케팅 등 지원
	수출상품화 지원	○ 수출업체 상품개발·개선비, 해외마케팅 등 지원
	글로벌브랜드 농식품글로벌성장 패키지	○ 목표국가 내 시장조사, 브랜드 컨설팅,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 농식품 수출업체가 원하는 지원 사업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패키지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70~100%, 자부담 0~30% ※ 지원비율, 한도 등 사업별 상이
- '24년 예산 : 94,639백만원

## □ 사업 신청

- 장소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 해외인증지원 경우 한국식품연구원의 해외식품인증 정보포털(www.foodcerti.or.kr)로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현지화지원, 선도유지제 구입비 지원 등 사업은 월, 분기 등 기준으로 사업비 소진까지 연중 지원하며, 사업별 세부 진행절차는 홈페이지 확인요망

## □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고려함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 내내역사업 : 보험선도유지, 해외인증등록지원, 현지화지원, 수출컨설팅, 상품개발, 농식품글로벌 성장패키지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사무관 박건우	044-201-2176
		주무관 조성민	044-201-217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	부 장 장서경	061-931-0820
		차 장 이광성	061-931-0821

## 1. 사업대상자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기업, 해외 바이어 등
  - 사업별 지원 기준에 따라 요건 충족 시 사업대상자로 선정 및 지원
  - \* 사업 지원대상 및 제한기준 등은 각 사업별 상이

## 2.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명	지원자격 및 요건 등
수출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축산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수출업체 지원제외)</li> <l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제외</li> <li>○ 무역협회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중복지원 불가</li> </ul>
선도유지제구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li> <l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제외</li> <li>○ 동일 사용분에 대해서는 수출업체와 수출농가(법인)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 (중복신청 불가)</li> </ul>
해외인증 등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수출(예정)업체</li> <li>○ 수산물 및 연초류, 비식품,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타기관 해외인증 수혜업체 지원제외</li> <li>○ 매출액, 수출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원업체 선정</li> </ul>
현지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li> <li>○ 수출업체의 경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집단) 지원제외</li> <li>○ 당해연도 사업 신청기한 내 온라인 사이트 통해 신청 * 별도 선정평가 없음</li> <li>※ 세부사항은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내 지원항목별 안내문 참고</li> </ul>
수출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농가 및 농식품 수출업체 등</li> <li>○ 수산물 및 대기업(공시대상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원 제외</li> <li>○ 매출액, 업력, 수출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원업체 선정</li> </ul>
미래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년도 미래클 품목 수출입 업체</li> <li>○ 미래클 품목 선정 : 수출적합성, 공급안정성, 농가소득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li> <li>※ 업체 지원 사업이 아닌 품목 육성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업체 선정 절차는 없음</li> </ul>
수출상품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농축산물 및 국산 원료를 활용한 가공농식품 제조·수출업체</li> <li>○ 대기업(공정위 최신 고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수산물, 수출통합조직(2년차 이후) 미가입업체</li> <li>○ 서류평가(수출실적, 기업규모, 제품역량, 사업계획, 가점 : 국내외인증 등, 감점 : 기지원업체) 및 비계량평가(해외지사 상품성 평가, PT발표)</li> </ul>

사업명	지원자격 및 요건 등
글로벌브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국가 상표권 출원·등록이 완료 되고 현지 유통매장 또는 온라인마켓에 입점된 농식품(신선농산물 및 가공농식품) 수출업체</li> <li>○ 수산물,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지원 제외</li> <li>○ 매출액, 수출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원업체 선정</li> </ul>
농식품글로벌성장 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농산물 및 가공농식품 수출업체</li> <li>○ 수산물, 대기업(공시대상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타기관 수출바우처 수혜업체 지원 제외</li> <li>○ 매출액, 수출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원업체 선정</li> </ul>

\*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참고 필요

### 3. 지원대상

사업명	지원내용
수출보험	○ 환변동·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
선도유지제구입지원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 지원
해외인증등록지원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현지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업체) 비관세장벽 현지자문, 수입등록·검사, 라벨링, 지적재산권 출원 지원</li> <li>○ (바이어) 비관세장벽 현지자문, 수입등록·검사, 라벨링, 포장패키지 등</li> </ul>
수출컨설팅	○ 해외진출(바이어발굴, 시장경쟁력 조사 등), 찾아가는 현장코칭, FTA특혜관세활용
미래클	○ 수출유망품목의 상품개선, 기능성 성분분석, 해외마케팅 등 지원
수출상품화지원	○ 수출업체 상품개발·개선비, 해외마케팅 등 지원
글로벌브랜드	○ 목표국가 내 시장조사, 브랜드 컨설팅,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농식품글로벌성장 패키지	○ 제품개발, 해외판촉 등 수출 소과정에서 필요한 지원항목을 수혜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패키지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의 사업별 지원 내용에 맞게 자금 사용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사업명	국고(%)	자부담(%)	의무사항 및 사업범위 등
수출보험	90~100	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변동보험(일반형, 옵션형), 단기수출보험(일반 선적 후, 농수산물 패키지,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가입비 지원</li> <li>○ 수출 이행 약속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등 제출</li> </ul>
선도유지제구입지원	9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에 따른 선도유지제품 및 적용품목에 한하여 지원</li> <li>○ 구입비용의 90% 지원(VAT제외), 업체당 80백만원 한도</li> </ul>
해외인증등록지원	70	30	○ 지원연도 내에 인증 취득·등록 및 연장 완료

사업명	국고(%)	자부담(%)	의무사항 및 사업범위 등
현지화지원	80	20	○ 지원항목별 사업신청서, 외교장전개도 등 사업추진 시 필요 서류 ○ 정산 시 지출증빙, 자문결과 증빙, 수출입실적 증빙 등 제출
수출컨설팅	80~100	0~20	○ (해외진출) 수출규모에 따라 수출목표액 1~2만불 (현장코칭/FTA특혜관세) 의무사항 없음 ○ (해외진출) 국고보조 80% 이내 / 자부담 20% 이내 (현장코칭) 자부담 최대 10만원(기본 5회 무료, 심화 2회 기준) (FTA특혜관세) 무료
미래클	80~100	0~20	○ 지출증빙(계약서, 영수증 등), 송금증빙(송금증 등), 결과보고 제출
수출상품화지원	80	20	○ (1단계) '상품개발·개선 항목'으로 약정금액(40백만원)의 10% 이상 예산집행 필수 ○ (2단계) 수출의무액(최소 3만불) 달성 시 정산인정 가능
글로벌브랜드	70~80	20~30	○ 약정금액(총사업비)의 50% 이상 집행 시 정산 가능 ○ 국고보조 중소기업(80%), 중견기업(70%) 지원
농식품글로벌성장 패키지	80~90	10~20	○ 국고보조 중소기업(90%), 중견기업(80%)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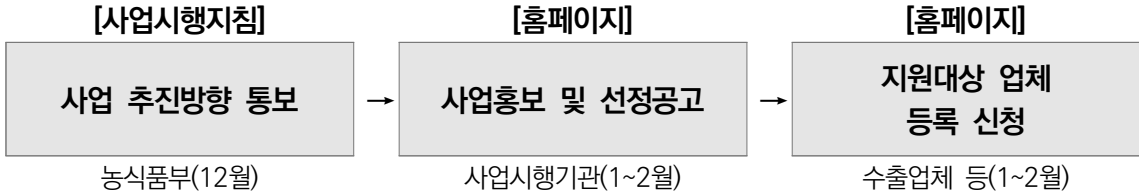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사업명	지원기준 및 한도 등
수출보험	○ 지원비율 : 95%(환변동보험), 90~100%(단기수출보험) ○ 지원한도 : 업체별 연간 100백만원 한도
선도유지제구입지원	○ 선도유지제 구입비의 90% 지원(업체당 80백만원 한도)
해외인증등록지원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70% 지원 ○ 업체별 연간 20백만원 한도, 복수인증 취득 시 연간 40백만원 한도
현지화지원	○ 지원비율 : 80%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수출업체 50백만원, 바이어 20백만원 한도
수출컨설팅	○ (해외진출) 바이어발굴, 시장경쟁력 조사 등 (장기/8개월) 비용의 80% 이내 지원 ○ (현장코칭)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디자인개발, 법률상담 등 (단기/7회) ○ (FTA특혜관세) 관세실익분석, 원산지 증명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전액 지원
미래클	○ 상품개선(세부 내역 별 80~100%), 해외마케팅(세부 내역 별 80~100%) ※ 해외지사 직접 추진 사업의 경우, 100% 지원
수출상품화지원	○ 상품개발·개선 비용, 해외마케팅 비용 지원(실제 집행 비용의 80%, 1단계 최대 40백만원 / 2단계 최대 60백만원)
글로벌브랜드	○ 목표국가 내 시장조사,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총사업비의 70~80%(최대 1.2 억원) 지원
농식품글로벌성장 패키지	○ 업체당 총 사업비의 80%(중견기업), 90%(중소기업)

###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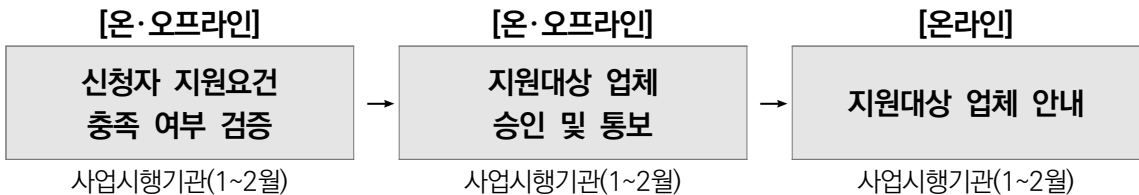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사업공고 안내
    - \* 안전성검사비, 현지화지원, 선도유지제 구입비 지원 등 사업은 월, 분기 등 기준으로 사업비 소진까지 연중 지원하며, 사업별 세부 진행일정 및 절차는 홈페이지 확인요망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한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공고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지원대상 업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 각 사업 항목별 지원요건 상이

### 2. 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증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적격업체에 한해 지원대상 승인 및 통보하고, 사업별 지원일정 등을 안내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수출유망품목을 발굴·육성하여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확대 여건을 조성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도모

## □ 사업내용

-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선도할 프런티어 인큐베이팅 업체의 현지시장에 부합하는 제품개발 및 현지마케팅 등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기업 등
  -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현지 시장에 부합하는 제품개발(제품개선, 포장·디자인 개발 등), 해외 마케팅, 바이어 초청상담회, 수출 품목 품평회 등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80%, 자부담 20%
- '24년 예산 : 919백만원

## □ 사업 신청

- 장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 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통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 확인요망

## □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고려
- 사업별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사무관 엄재희 주무관 강누리	044-201-2169 044-201-2179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신시장개척부	부 장 송미정 차 장 나찬호	061-931-0960 061-931-0965

### 1. 사업대상자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기업 등
  - \* 사업 지원대상 및 제한기준 등은 각 사업별 상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다변화 전략국 대상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등
  - \*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 3. 지원대상

- 현지 시장에 부합하는 제품개발(제품개선, 포장·디자인 개발 등), 해외 마케팅, 바이어 초청상담회, 수출 품목 품평회 등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의 사업별 지원 내용에 맞게 자금 사용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민간경상보조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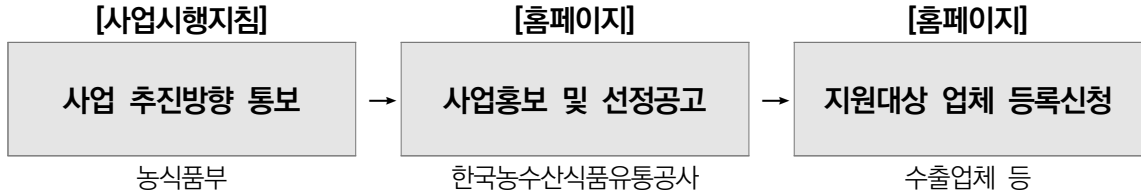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 배정예산 한도 내 실집행액 기준 80% 지원
  -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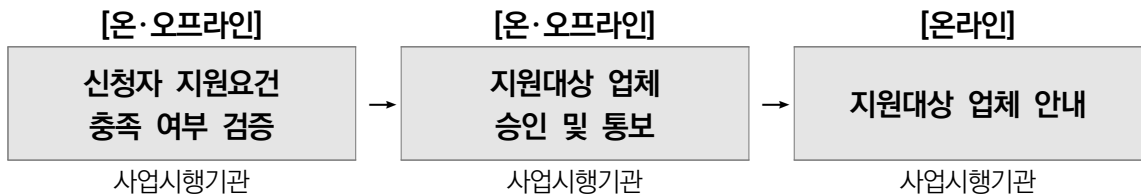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aT)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한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공고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지원대상 업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각 사업 항목별 지원요건 상이

### 2. 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적격업체에 한해 지원대상 승인 및 통보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등을 안내한다.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및 해외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우수 외식브랜드 홍보 및 글로벌 진출 확대

## □ 사업내용

- 박람회 참가, 바이어 알선 등 진출 직접 지원, 정보제공,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구축

## □ 지원 자격 및 요건

- 국내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등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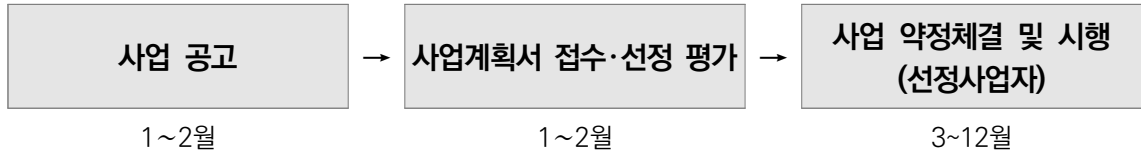
내역	지원내용
외식산업수출지원	외식기업 대상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및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등

- 지원 기준 : 국고 80~100%, 자부담 0~20%  
\* 지원비율, 한도 등 사업별 상이
- '23년 예산 : 779백만원(국비 100%)

## □ 사업 신청

- 장소 : aT 외식산업지원시스템(atfis.or.kr)  
\*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외식산업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 □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기업의 건실성, 성장성, 해외진출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함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사무관 박태준	044-201-215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외식지원부	부 장 이종근	061-931-0720
		과 장 한다솔	061-931-0722

## II

## 주요 내용

### 1. 사업대상자

- 국내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등
  - 사업별 지원 기준에 따라 요건 충족 시 사업대상자로 선정 및 지원
  - \* 사업 지원대상 및 제한기준 등은 각 사업별 상이

### 2.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명	지원자격 및 요건
외식산업수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외식기업</li> <li>○ 초보단계, 기수출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및 모집 진행</li> <li>○ 선정 시 기업의 건실성, 성장성, 해외진출 준비정도 등을 평가하며 사업별 가점 기준에 따라 요건 충족 시 가점부여</li> </ul>

\*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참고 필요

### 3. 지원대상

사업명	지원내용
외식산업수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지원</li> <li>○ 외식기업 바우처 지원 (맞춤형 지원)</li> <li>○ 해외진출 활성화 워크숍 운영</li> </ul>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의 사업별 지원 내용에 맞게 자금 사용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사업명	국고(%)	자부담(%)	의무사항 및 사업범위 등
외식산업수출지원	80~100	0~20	○ 사업 신청 및 사업 종료 시 요구 자료 제출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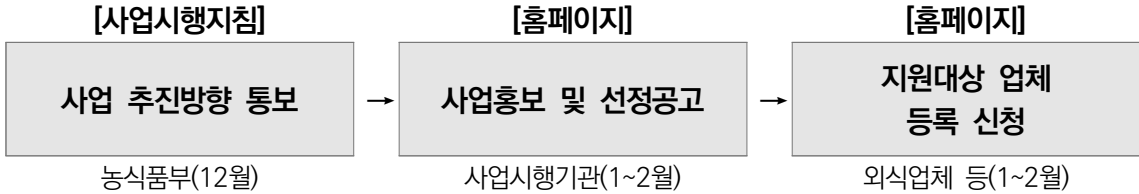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사업명	지원내용
외식산업수출지원	○ (해외진출 맞춤형지원) 외식기업별 집행액의 80% 지원(국고 24백만원 한도 지원)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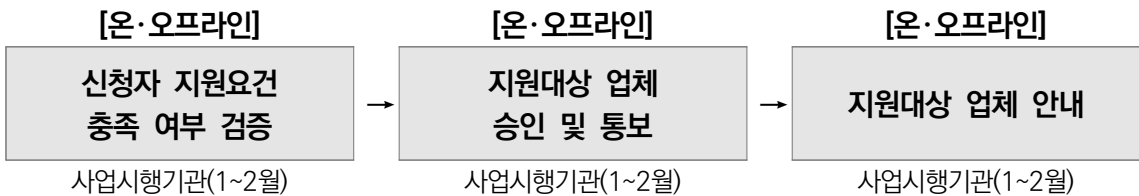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한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공고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지원대상 업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각 사업 항목별 지원요건 상이

### 2. 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증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적격업체에 한해 지원대상 승인 및 통보하고, 사업별 지원일정 및 계획 등을 안내



## I 사업 개요

## □ 목 적

- 중소 농식품 수출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지원 및 디지털 인력지원을 통한 한국 농식품의 온라인 시장진출 및 수출 확대

## □ 사업내용

- 온라인·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유통·소비환경에 대응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플랫폼과 연계한 B2B·B2C 등 지원
  - 국내 수출기업의 글로벌 온라인몰 진출을 위한 입점비용, 홍보·마케팅 및 교육, 전문인력,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기업 등
  -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글로벌 온라인 B2B·B2C 플랫폼 연회비 등 입점비용, 홍보·마케팅 비용, 온라인 전문인력 채용, 온라인몰 입점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80~90%, 자부담 10~20%
- '24년 예산 : 2,533백만원

## □ 사업 신청

- 장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 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통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 확인요망

## □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고려

○ 사업별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사무관 엄재희	044-201-2169
		주무관 강누리	044-201-2179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부 장 조광일	061-931-0970
		과 장 송두류	061-931-0972

### 1. 사업대상자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기업 등
- \* 사업 지원대상 및 제한기준 등은 각 사업별 상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 온라인 플랫폼(B2B·B2C)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 지원기업 선정 시 해외판매 준비도 및 수출실적, 참여적합성, 제품시장성, 제품차별성 등 수출희망 국가와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선정 추진
- \*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 3.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판매를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관련 전문인력 지원 비용 등 온라인몰 입점 관련 제반 비용 지원 (단, 배송·물류비 제외)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의 사업별 지원 내용에 맞게 자금 사용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민간경상보조 8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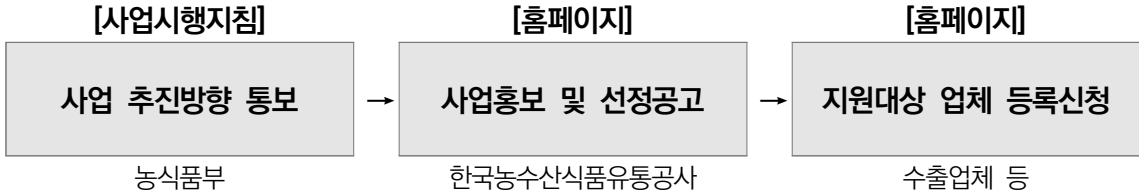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 배정예산 한도 내 실집행액 기준 80~90% 지원
-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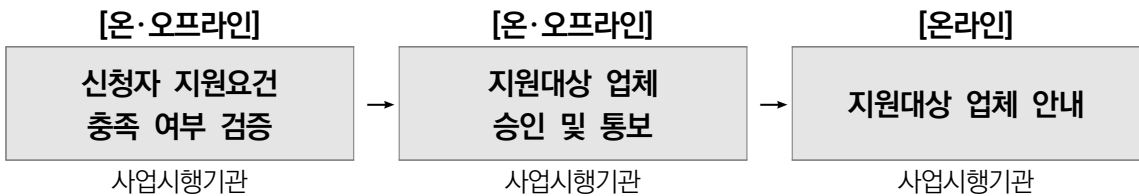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aT)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한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공고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지원대상 업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각 사업 항목별 지원요건 상이

### 2. 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적격업체에 한해 지원대상 승인 및 통보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등을 안내한다.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수확 후 저장·운송 등 수출선적 준비 동안 신선도 유지 및 유통비용 절감 위해 CA기술 활용 가능한 CA유통환경 구축지원

## □ 사업내용

- ①CA저장고 개보수, ②CA컨테이너 전용 상하차시설 설치, ③CA질소발생기(고정식 및 이동식) 지원

\* 지원업체는 ①~③ 중 자율선택 가능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수출통합·선도조직, APC, 물류업체 등 수출실적이 있고 지원항목의 설치 준비가 완료된 업체(대기업 제외)
  - 9월까지 구축완료 및 11월까지 최소 1대 이상 CA컨테이너 수출 의무 부여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CA유통 구축 위한 개보수 공사 및 설치비용 등
- 지원 기준 : 국고 70%, 자부담 30%
- '24년 예산 : 1,652백만원

## □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aT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신청기간 : 매년 1월 중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또는 aT 수출종합지원 시스템(global.at.or.kr) 등 통하여 별도 안내

##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항목은 사업계획 적정성, 조직화 및 수출확대 가능성,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원물 확보 여건, 사업규모 적정성, 상생협력 계획, 시설 보유여부 등을 고려하며, 신선품목을 우대함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사무관 박건우	044-201-2176
		주무관 조성민	044-201-217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기반부	부 장 장정호	061-931-0830
		과 장 심선용	061-931-0833

### 1. 사업대상자

- 직전년도 수출실적 보유한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및 농가(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물류업체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제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직전년도 수출실적 보유한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및 농가(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물류업체
  - 컨테이너 운송차량 진입로 및 컨테이너 적출입이 가능한 작업공간을 보유하면서 CA유통 시설 및 설비 구축 가능 부지가 확보된 업체
- 선정 시 신선품목에 가점 부여

### 3. 지원대상

- ①CA저장고 개보수, ②CA컨테이너 전용 상하차시설 설치, ③CA질소발생기(고정식 및 이동식) 지원
  - 시설 및 시설 부속물은 설치 완료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차량은 최장 5년간 사후관리 실시 필요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CA저장고·CA컨테이너 전용 상하차시설·CA질소발생기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 CA 이동식 질소발생기의 경우에는 차량 포함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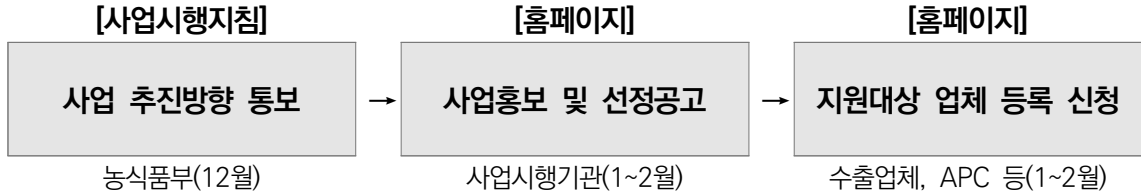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보고 70%, 자부담 30%

###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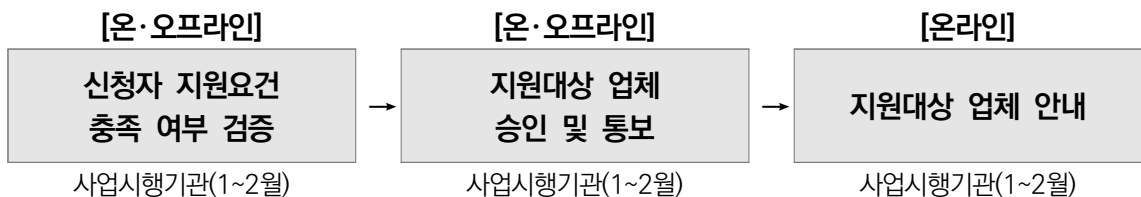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사업공고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한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공고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지원대상 업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2. 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증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적격업체에 한해 지원대상 승인 및 통보하고, 사업별 지원일정 등을 안내



## I 사업 개요

## □ 목 적

- 신선농산물 및 원재료 포함한 가공식품의 품질관리비용, 저온유통 비용 등을 지원하여, 원료단계부터 선적단계까지의 선도유지 관리체계 강화

## □ 사업내용

- 저온저장시설 임차 이용료 및 저온수송차량 임차 이용료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신선농산물 및 원재료 포함 가공식품 수출업체 등(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 국산 신선농산물 및 주원료가 국산인 수출용 가공식품의 원재료 저장 등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저온저장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임차 이용료
- 지원 기준 : 국고 80%, 자부담 20%

구 분		지원한도 (①~② 합산)	지원규모	기준단계(한도)	비 고
저온 저장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	① 저 온 저 장 시 설	고도화	20개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관면적 기준 (호실당) (특지) 25,000원/㎡,월 (갑지) 21,000원/㎡,월 (을지) 19,000원/㎡,월</li> <li>■ 파렛트 기준 30,000원/PLT,1일</li> <li>※ 부가세 포함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지) 특별시, 특별자치시 및 광역시, (갑지) 시지역, (을지) 상기 지역을 제외한 전(全)지역</li> <li>■ 정부 비축농산물 민간창고 위탁 보관관리 운영지침 중 마늘, 배추 등 양념채소류 준용(1평→3.3㎡ 환산, 최대 330㎡ 한도)</li> <li>■ 파렛트 기준은 항공·선박 공통적용 및 증가·종량 통합이며, 파렛트 정산이 많은 인천공항 인근 상용화주 저온창고 파렛트 당 보관료 적용</li> <li>■ 저온 미가동 시(동절기 등) 기준이며, 냉장·냉동 가동시(하절기 등) 30% 가산 적용</li> </ul>
	일반	20개 업체			
	초보	20개 업체			

구 분		지원한도 (①~② 합산)	지원규모	기준단가(한도)	비 고
② 저 온 수 송 차 량	고도화		20개 업체	■ 일반 화물차 2톤미만 489원/km 5톤이하 611원/km 12톤이하 709원/km 25톤이하 869원/km ■ 컨테이너(대당) 20FT 4,417원/km 40FT 5,040원/km ※ 부가세 제외 기준	■ (화물차) 최신 안전운송원가 적용 고시중 1km 단위 차주 원가에서 이윤 고려하여 10% 가산(냉방 가동시 운임 30% 할증) ■ (컨테이너) 2022년 최신 기준 국토부 고시 안전운임 중 안전운송 운임 부산신항 왕복 기점 거리별 운임 평균 준용(냉장·냉동 발전기 가동시 운임의 30% 할증 적용) ■ (공통) 부가세 제외 기준이며, 운임은 백원미만을 사사오입하여 적용(단, 부가세 제외)하며, 거리 (km)는 네이버지도 '거리우선' 으로 측정하여 소수점 첫째자리 에서 사사오입하여 적용
	일반		20개 업체		
	초보		20개 업체		

\* 관련 지침 개정 시 최신 기준단가 준용

○ '24년 예산 : 1,900백만원

## □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aT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신청기간 : 매년 1월 중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또는 aT 수출종합지원 시스템(global.at.or.kr) 등 통하여 별도 안내

##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항목은 사업계획 적정성, 조직화 및 수출확대 가능성,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등을 고려하며, 신선품목을 우대함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사무관 박건우	044-201-2176
		주무관 조성민	044-201-217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기반부	부 장 장정호	061-931-0830
		과 장 심선용	061-931-0833

### 1. 사업대상자

- 무역회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직전년도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수·임산물 지원 제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무역회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직전년도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수·임산물 지원 제외

\* 2023년 물류비 수혜이력이 없는 경우 수출화주 또는 수출대행자에 신청업체명 표시되고, 2023년에 수리된 수출신고필증 및 해당 건의 B/L 또는 AWB 사본 각 1부, 품목제조보고서(가공식품) 1부 제출 必

- 선정 시 수출경쟁력이 낮은 신선품목에 가점 부여

### 3. 지원대상

- 저온저장시설 임차 이용료 및 저온수송차량 임차 이용료 등
- 자가 시설 및 자가 차량 이용 미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출용 농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임차지원 용도에 맞게 자금 사용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비율) 국고 80%, 자부담 20%
- (지원한도) 수출규모에 따라 10백만원~50백만원까지 배정 한도 차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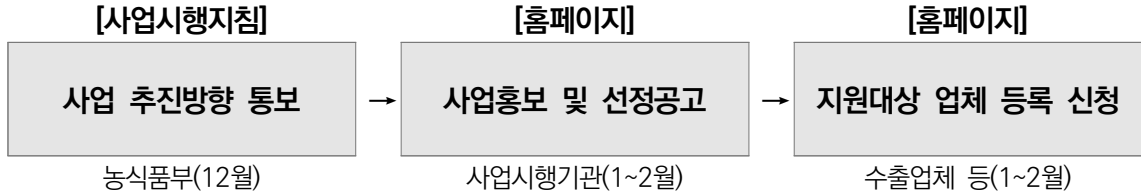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지원유형	지원대상(*한국관세무역개발원 Trass 통계자료 기준)	지원규모	배정한도(국고 기준)
초보	최근 2년간 평균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20개소 내외	10백만원/개소
일반	최근 2년간 평균 수출실적 10만~50불 미만	20개소 내외	30백만원/개소
고도화	최근 2년간 평균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20개소 내외	50백만원/개소

###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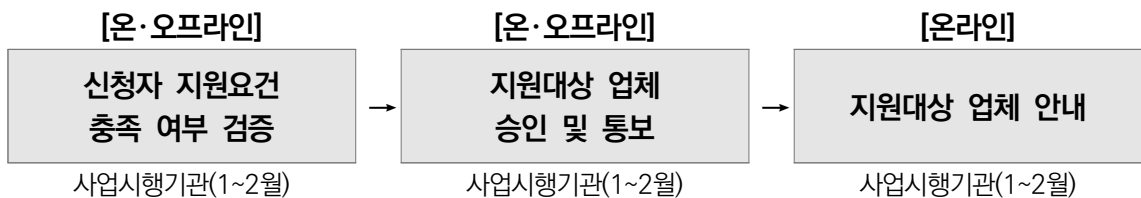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사업공고 안내
    - \* 분기별로 사업비 소진까지 연중 지원하며, 사업별 세부 진행일정 및 절차는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 확인필요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한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공고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지원대상 업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2. 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증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적격업체에 한해 지원대상 승인 및 통보하고, 사업별 지원일정 등을 안내

## I 사업 개요

## □ 목적

- 해외에 독자적으로 물류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공동물류 센터를 지정하여 물류 효율화를 도모하고, 냉동·저온 등 유통지원을 통해 수출 농식품의 신선도 향상, 품질 유지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 사업내용

- 수출 농식품의 해외 현지물류(보관, 운송 등)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원활한 현지 유통 도모

## □ 지원 자격 및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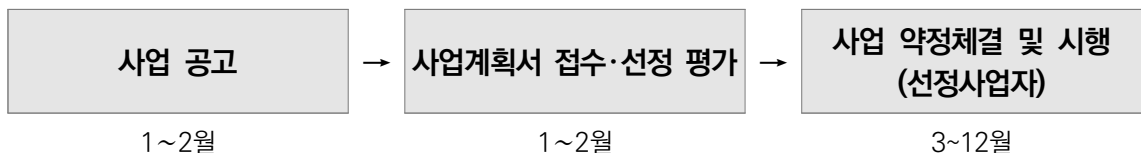
-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료, 냉장·냉동 운송비 등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90%, 자부담 10~50% ※ 지원비율, 한도 등 사업별 상이
- '24년 예산 : 4,660백만원

## □ 사업 신청

- 신청방법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 필요

## □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고려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사무관 김남주	044-201-217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신시장개척부	부 장 송미정	061-931-0960
		과 장 김지훈	061-931-0961

### 1. 사업대상자

-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
  - \* 사업 지원대상 및 제한기준 등은 각 사업별 상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
  - \*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 3. 지원대상

-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료, 냉장·냉동 운송비 등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의 사업별 지원 내용에 맞게 자금 사용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민간경상보조 50~9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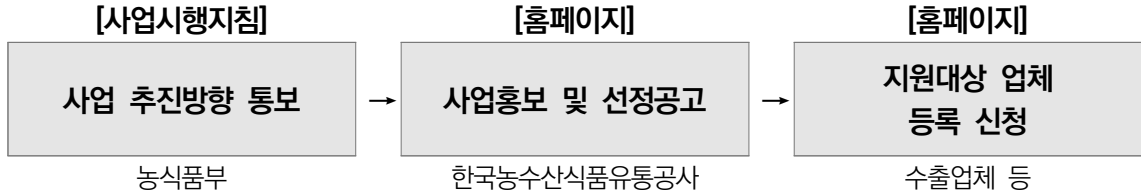
- 공동물류센터 이용료, 냉동·냉장 운송비의 50~90% 지원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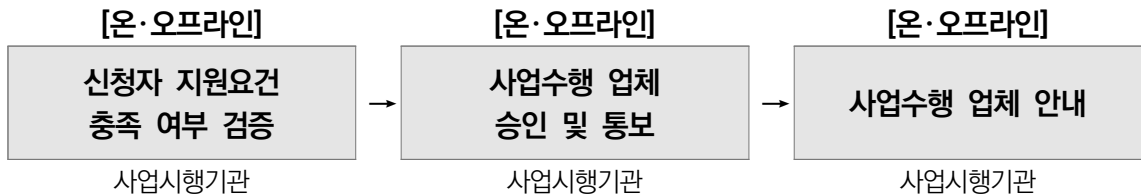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유통공사)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한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공고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지원대상 업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각 사업별 신청 및 선정절차 등 상이

\*\* 기관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2. 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적격업체에 한해 사업추진 승인 및 통보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등을 안내한다.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농식품 수출 소비저변 확대를 위한 국제박람회 참가, K-Food Fair 개최, 바이어 초청 상담회, 해외안테나숍 운영, 수출농식품 홍보관 운영 등 지원

## □ 사업내용

- 수출 경영체에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 및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

## □ 지원 자격 및 요건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업체 등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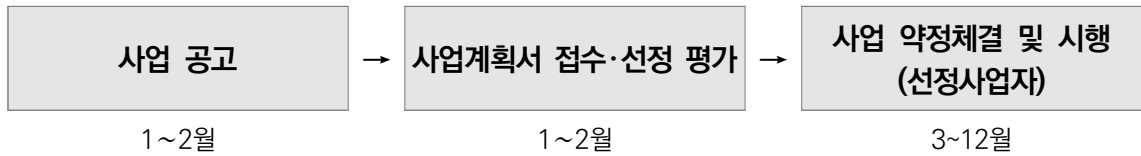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K-Food Fair, 바이어초청 상담회, 해외 판촉 비용 등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100%, 자부담 0~50% ※ 지원비율, 한도 등 사업별 상이
- '24년 예산 : 35,412백만원

## □ 사업 신청

- 신청방법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 필요

## □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고려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사무관 김남주	044-201-217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기획부	부 장 박군식	061-931-0810
		차 장 김지연	061-931-0812

### 1. 사업대상자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업체 등
  - \* 사업 지원대상 및 제한기준 등은 각 사업별 상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
  - \*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 3. 지원대상

-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K-Food Fair, 바이어초청 상담회, 해외 판촉 비용 등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의 사업별 지원 내용에 맞게 자금 사용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민간경상보조 5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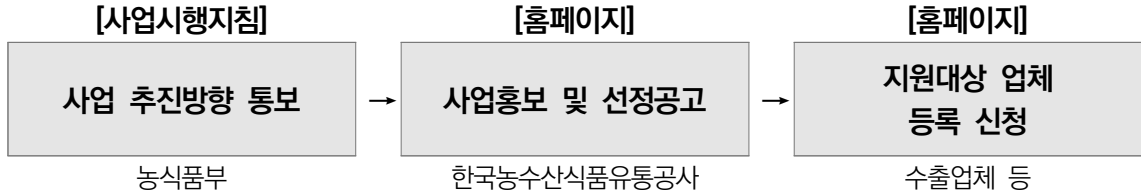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K-Food Fair, 바이어초청 상담회, 해외 판촉 비용 등의 50~100% 지원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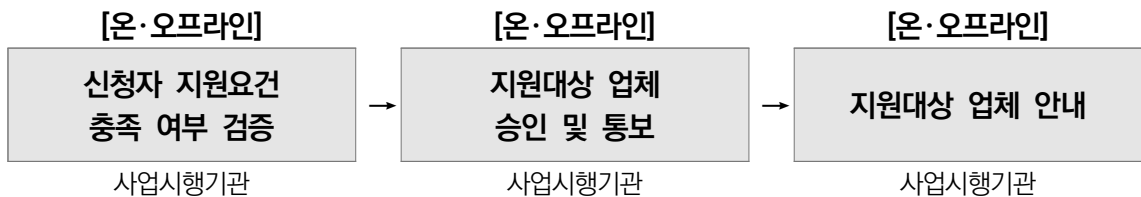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유통공사)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한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공고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지원대상 업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각 사업별 신청 및 선정절차 등 상이

\*\* 기관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2. 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적격업체에 한해 지원대상을 승인 및 통보하고, 사업별 지원일정 및 계획 등을 안내한다.

## I

## 사업 개요

## □ 목적

- 온라인·모바일 매체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한국 농식품 홍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안전성·우수성 등 긍정적 이미지 구축으로 수출확대 저변 마련

## □ 사업내용

-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뉴미디어 매체(동영상 플랫폼, SNS 등)를 활용한 한국 농식품 홍보콘텐츠 제작·송출

## □ 지원 자격 및 요건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기업 등
  -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SNS 채널, 모바일 어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한국 농식품 홍보콘텐츠 제작비, 광고 송출비, 마케팅 비용 등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80~100%, 자부담 0~20%
- '24년 예산 : 5,290백만원

## □ 사업 신청

- 장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 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통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 확인요망

## □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고려
- 사업별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사무관 엄재희 주무관 강누리	044-201-2169 044-201-2179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부 장 조광일 차 장 김인영	061-931-0970 061-931-0975

### 1. 사업대상자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기업 등

\* 사업 지원대상 및 제한기준 등은 각 사업별 상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글로벌 소비자 대상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한국농식품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수출기업, 협의회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 3.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홍보를 위한 온라인 홍보비 및 홍보 콘텐츠 제작·송출 비용 등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의 사업별 지원 내용에 맞게 자금 사용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민간경상보조 80~10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 배정예산 한도 내 실집행액 기준 80~100%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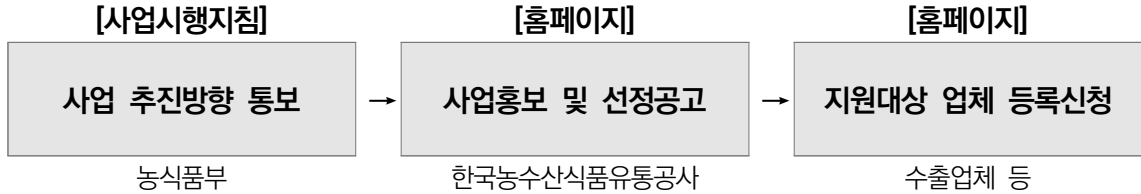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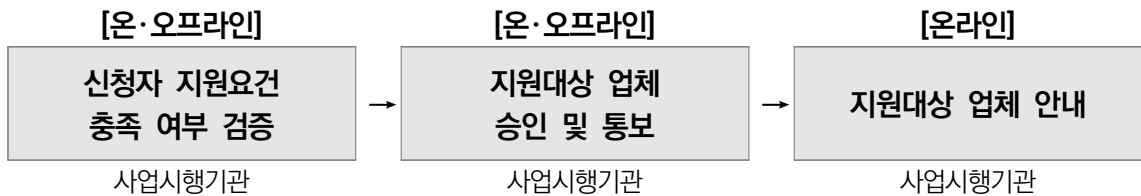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aT)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한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공고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지원대상 업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각 사업 항목별 지원요건 상이

### 2. 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적격업체에 한해 지원대상 승인 및 통보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등을 안내한다.

## I 사업 개요

## □ 목 적

- 해외 유력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관’을 구축하여 중소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온라인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수시 홍보·판촉,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도모

## □ 사업내용

-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수출 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식품관을 확대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식품관 연계 공동마케팅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기업 등
  -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해외 유력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관’ 구축을 통한 신규 입점 및 상시 홍보·판촉 등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80~100%, 자부담 0~20%
- '24년 예산 : 1,287백만원

## □ 사업 신청

- 장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 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통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 확인요망

## □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고려

○ 사업별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사무관 엄재희	044-201-2169
		주무관 강누리	044-201-2179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부 장 조광일	061-931-0970
		과 장 송두류	061-931-0972

### 1. 사업대상자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기업 등

\* 사업 지원대상 및 제한기준 등은 각 사업별 상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온라인 한국식품관에 입점을 희망하는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등
- 지원기업 선정 시 해외판매 준비도 및 수출실적, 참여적합성, 제품시장성, 제품 차별성 등 수출희망 국가와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선정 추진

\*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 3. 지원대상

- 온라인 한국식품관 입점 관련 비용 및 마케팅 비용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의 사업별 지원 내용에 맞게 자금 사용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민간경상보조 80~10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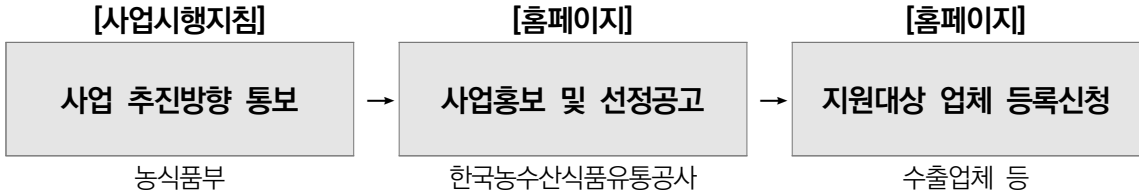
- 사업 배정예산 한도 내 실집행액 기준 80~100% 지원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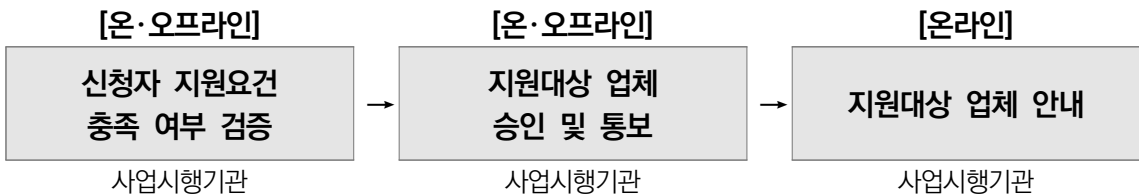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aT)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한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공고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지원대상 업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각 사업 항목별 지원요건 상이

### 2. 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적격업체에 한해 지원대상 승인 및 통보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등을 안내한다.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농생명산업

---

## 7-1. 스마트농업





## I 사업 개요

## □ 목 적

- 노동집약적인 관행농법 위주 노지재배를 주산지 중심 데이터 영농으로 전환하여 스마트 영농 확산기반 마련

## □ 사업내용

- 노지작물 주산지에 현장 적용성이 높은 장비와 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업주도 기술 실증을 통해 노지재배의 스마트화 추진동력 마련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

## □ 지원 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기반 조성, 자동화 장비·기계 구축, 사업단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 기준 : 자치단체보조 국비 50~70%, 지방비 30~50%, 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 3년간('23~'25년) 국비 16,725백만원/개소 × 시범단지 3개소
- '24년 예산 : 국비 17,980백만원

## □ 사업 신청 및 선정

- 시·도에서 신청서 및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 제출('22. 12월)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발표평가 등을 거쳐 선정('23. 1월)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사무관 이정기	044-201-2419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스마트농업실	실장 양종열 차장 김수웅	044-861-8760 044-861-8898

###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 : 광역자치단체장,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광역자치단체장은 스마트 영농 역량을 갖춘 농업인, 관련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
- 사업위탁 :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

###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시·도 대상 공모(시·도지사는 관내 시·군·구에서 최적합지 1곳 응모)
- 지원 요건
  - 지자체, 농업인, 기업,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청
  - 지역특화 품목을 선정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경영체를 모집하여 규모화 추진

###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용도

- 지원범위 :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기반 조성, 자동화 장비·기계 구축, 사업단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예산액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지방비(자부담 포함) 집행 원칙, 토지 구입, 부지 매입, 소모성 자재 구입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비용은 지원 제외

###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
- 지원비율
  - 스마트영농 확산기반 구축 :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단 운영 : 국비 50%, 지방비 50%
  - 데이터 수집·활용 : 국비 100%(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시행)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23~'25년 지원물량 : 시범단지 3개소(개소당 생산구역 70ha, 실증구역 2ha 이상)
- '23~'25년 사업비(국비 기준, 백만원)

구분	1년차('23)	2년차('24)	3년차('25)	합계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5,700	17,980	26,495	50,175
- 스마트영농 확산기반 구축	4,515	16,060	24,575	45,150
- 사업단 운영	975	1,500	1,500	3,975
- 데이터 수집·활용	210	420	420	1,050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 공모계획 안내
  - 신청 자격, 지원내용, 사업 규모, 신청·접수 기간, 평가 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등 안내

#### 시·도

- 시·군·구에 사업 공모계획 안내
- 시·군·구, 농업인, 기업, 학계 등과 노지 스마트농업 사업단 구성
- 시·군·구 및 전문가의 협의·자문을 거쳐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신청서 및 예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제출
  - 종합적인 조성·운영·관리 계획 수립 및 사업단 참여 주체별 역할 확립
- 지역특화 품목 및 대상지 선정, 사업 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조사, 농업인 의견수렴, 방향 설정 등을 시·군·구와 협의

#### 시·군·구

- 시·도, 농업인, 기업, 학계 등과 노지 스마트농업 사업단 구성
- 사업단을 중심으로 사업신청서 및 예비계획서 작성

### 2. 사업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예비계획서 등 서류 구비 여부 및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사업대상지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및 통지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항목, 현장조사 심의위원 구성 등 수립
    - \* 평가위원회는 기반조성, 관수, 농기계, 데이터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서류심사 및 평가 후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통지

## 지방자치단체

- 시·도는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1순위(단독 신청인 경우 70점 이상)의 사업 계획서, 검토의견서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 평가 기준 : 사업목표 적정성, 사업계획 합리성, 재무구조 건전성, 수행 능력 등을 종합평가하고, 현장실사 병행
  - 시·군·구의 사전 사업 준비 상태, 예산 확보방안, 노지 스마트화 역량, 발전 가능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여 적격한 사업자 선정

## 한국농어촌공사

- 필요시 사업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업무 지원
  - 현장 조사 일정에 따라 본사 및 지역본부 담당자 등으로 조사반 편성

## I 사업 개요

## □ 목 적

-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마친 청년농들이 적정 임대료만으로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하여 청년의 스마트팜 진입과 안정적 정착 지원

##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내용
  - 청년의 스마트농업 창업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적정대상지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적정 비용으로 임대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

## □ 지원내용 및 예산

- 개소당 부지 5ha 이상 및 온실 4ha 이상
- '24년 예산 : 28,000백만원
  - \* 국고 70%, 지방비 30% (예산규모 및 지원을 등은 예산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 시·도지사는 관내 최적지를 선정하여 신청서, 예비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스마트팜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계획서 서류심사, 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조성지역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사무관 이강권 주무관 정민웅	044-201-2423 044-201-2427

### 1. 사업대상자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광역자치단체장
  - 특별·광역·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전국 시·도 대상 공모
  - \* 각 시·도에서는 1개의 사업계획만을 수립하여 응모 가능
- 지원 요건
  - 입지 인허가,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는 부지를 사전에 확보 또는 준공 이전 확보 가능

### 3. 지원 범위 및 자금사용 용도

-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및 용배수, 전기, 도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
- 철골(유리, 경질판) 및 자동화 비닐온실 신축 비용에 대한 지원
-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시설 등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
  - 복합환경제어시설, 환경센서, 영상장비, 양액재배시설, 자동관수시설, 무인방제기, 환기시설, 이산화탄소발생기, 자동개폐장치 등
- 온실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감시설, 보조 에너지원 등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
  - 지열(개보수 포함) 등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등
  - 다접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공기열 냉난방시설 등
  - 주 에너지 시설에 대한 보조(비상) 발전기, 재해방지용 유류보일러 등



### 지원제외 대상

- 부지매입비
- 작업용 기자재, 선택설비,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농특회계)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30%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행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집행
- '24년 지원물량
  - '24년 신규사업자 : 3개소(개소당 부지 5ha 이상 및 온실 4ha 이상)  
/ 개소당 총 200억원(국비 140억원, 지방비 60억원)
  - \* 3년차 사업으로 '24년 20%, '25년 30%, '26년 50% 지원(예산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23년 선정 사업자는 50%, '24년 40%, '25년 10% 지원
- 개소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사업비를 지방비로 추가 부담
- 공모 시 제출한 지자체 예비계획서에 따라 기준 이상의 사업면적을 자체 결정하며, 제출한 예비계획의 면적을 준수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 향후 우리부 승인 기본계획의 부지·온실 기준면적을 미준수할 경우 사업 취소 가능

### 기준단가 공통사항

-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우리부 농가 보급사업 단가를 기준으로 한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단가를 적용하되, 개소당 사업비 내에서 실소요액을 지자체에서 자체 조정 가능
  - \*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예시 :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 가. 기반조성

- 기준단가 : 5억원/ha (우리부 보급사업 단가가 변경될 경우, 이를 준용)
- 사업대상지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절·성토, 진입로 개설, 부지내 도로 및 용·배수, 전기, 오폐수처리시설 등 스마트온실의 기반시설 조성비용 지원
  - (예산배정) 전기·용배수시설 조성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절·성토, 정지작업 등 부지조성비용 최소화
  - \* 기반조성비가 기준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사업비는 지방비로 추가 부담

- (사업부지) 청년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농지 임대 가능하도록 지자체 또는 농어촌공사 소유부지이면서 「농지법」상 농지\* 위주 추진
  - \* 청년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시설 실경작 100평 이상) 사업부지는 「농지법」상 농지로 추진
  - \* 지자체가 청년농에게 임대하므로 지자체 또는 농어촌공사 소유부지(지자체로 관리권·소유권 이양 조건) 중심으로 추진
- (집적화) 부지기준 약 5ha 이상 규모로 기반 및 온실 조성이 가능하도록 집적화
- (입지여건) 청년의 농업·농촌 정착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지 선정

## 나. 스마트팜 온실신축

- 기준단가 : 파이프비닐온실 750백만원/ha, 철골유리온실 3,000백만원/ha 등 (우리부 보급사업 단가 준용)
- 개소당 사업비 단가 내에서 부지·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성. 다만, 시설기준 상향 등으로 사업비가 초과될 경우 지방비 부담 원칙
  - 스마트팜 온실은 시설원예에 ICT(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및 원격·자동 제어가 가능함으로써 경영비 절감, 생산성·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이 가능하여야 함
- 온실 형태 및 재배설비 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건축비용 지원
  - (온실형태) 창업 초기의 청년 농업인임을 감안해 철골형 비닐(또는 유리)온실, 파이프비닐온실(연동) 형태, 작목이 불특정적이므로 범용온실(측고 6m 이상) 위주로 조성
  - (온실면적) 온실의 내부 통로를 모두 포함하여 약 4ha 이상 조성하고, 온실 운영에 필요한 관리동, 준비공간 등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
    - \* (지원제외) 온실 외 별도 건축물 지원 제외
  - (공간구획) 임대 팀당 개별 환경제어가 가능하도록 공간구획 설계 및 환경제어 시스템, 내부 설비 구비
  - (구획면적) 임대계획(2~4명 1팀)을 감안하여 팀당 0.4~0.5ha 이상 임대를 위해 구획 설계(1인당 300~500평 이상 임대가 가능하도록 설계)
    - \* 팀원 개인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농관원의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에 따라 팀원별 구획 경계에 대한 설계 포함
    - \* 기존 팀당 구성원 수(2~4명/팀)와 다르게 팀을 구성하려는 경우, 농식품부와 협의 후 추진

## 다. 에너지 시설(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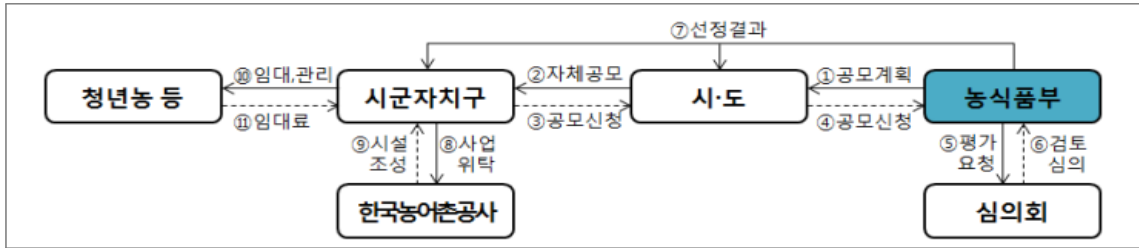
- 에너지 시설 지원사업의 단가를 참고하여 조성하되, 개소당 사업비 내에서 실소요액으로 적절하게 조정
  - \* 예)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예시) : 지열-14억원/ha 등
  - \* 별도 자원(지방비 추가), 민간 투자 등을 통해 에너지시설 설치 또는 연계 가능하며,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지원대상인 재생에너지시설로 설치 의무화

## 라. 내부 기자재

- 실시간 데이터 수집·연계 가능한 시스템·기자재 등 설치
  - (데이터 수집) 시설원에 데이터 수집 표준\*, ICT 기자재 설치가이드\*를 적용하여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도록 시스템 및 기자재 설치
    - \* 8개 주요 품목(딸기, 오이, 파프리카, 멜론 등)의 데이터 항목에 대한 데이터 타입, 단위, 수집 주기, 용어 등 표준('21년 제정)
    - \* 스마트팜 기자재(센서, 구동기 등)의 장비 설치 위치·간격·수량 등 설치 시방서('20년, 농정원)
  - (데이터 연계)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표준화된 데이터는 데이터 플랫폼(스마트팜 코리아)에 실시간으로 연계되도록 기자재·시스템 구매
- 스마트온실 ICT기자재 국가 표준\*을 준수하여 설치
  - \* KS3265, KS3266, KS3267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시 사전협의 및 승인 필요
- 작업용 기자재(예: 배지, 운반차, 고소작업차 등) 및 선택설비(예: 보광시설, 제습기, 제설기 등) 지원 제외

### Ⅲ

## 사업추진체계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기본계획 및 공모계획 수립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8~9월)
- 사업신청서 및 예비계획서 접수(전년도 10월)

#### 시·도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8~9월)
- 시·군 및 전문가의 협의·자문 등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최적지 1개소의 사업신청서(이하 “예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제출(전년도 10월)
-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 제공 및 협의매수, 사업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농업인 의견수렴, 방향설정 등을 시·군과 협의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예비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구비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토(전년도 10월)
- (가칭)사업대상지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전년도 10월)
  - 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항목, 현장조사 평가위원 구성 등
  - \* 위원회는 온실 설계·시공, 재배, 유통 등 관련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 시·도에서 제출한 신청서, 예비계획서\* 등 제반서류평가 및 대상지역의 입지조건, 민원 발생 여지 등 현장평가 실시
    - \* 시설원에 품목 쓸림, 에너지 비용 과다, 겨울 작기 중심의 작부체계 등을 보완하고 청년농 판로 지원, 내부 스마트팜 기자재 시설 수준 등을 검토하여 조성·운영계획 수립
  - 부지는 집적화하고 청년농의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여부, 농지임대 가능 여부, 입지인허가 등을 철저히 검토
  - 시설용수 사용 등 응모 전 지역농업인 단체, 마을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결과에 대해 증빙서류 첨부
- 예비계획서 서류심사, 현장평가 결과를 합산(총 100점)하여 조성지역 선정 및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11월)

## I 사업 개요

## □ 목 적

-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적용 확산을 통해 품질향상 및 호환성 증대와 농산업체 제품 경쟁력 제고, 기술인력 역량 강화

## □ 사업내용

- 스마트팜 농산업체 표준적용 제품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및 제품개선·실증 지원, 검정비용 바우처 지원, ICT기자재 표준화 요소 도출, 표준화 동향분석 및 표준 관리, 스마트팜 ICT기자재업체 재직자 전문교육 제공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스마트팜 ICT기자재 농산업체
  - ‘스마트팜코리아(smartfarmkorea.net)’에 등록된 업체 또는 본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할 업체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스마트팜 ICT기자재 농산업체가 국가표준을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제품 개선 및 시제품 제작·실증, 국가표준을 적용한 제품의 검정(바우처) 등 지원(이하 ‘표준적용 지원’)
  - 표준화지원센터(한국농업기술진흥원)가 국가표준 적용 지원대상 농산업체 모집·선발 및 표준적용 지원 사업관리, 협의체 운영 등을 하도록 지원
  - 스마트팜 ICT기자재 농산업체 재직자에게 전문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지원(이하 ‘재직자 전문교육’)

○ '24년 예산 및 지원기준 : 3,815백만원

- 컨설팅, 표준화지원센터, 홍보·성과관리 : 971백만원(국비 100%)
- 제품개선, 검정바우처 : 2,079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 재직자 전문교육 : 765백만원(국비 90%, 자부담 10%)

□ 사업 신청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oat.or.kr) 별도 공지(1분기 예정)

□ 대상자 선정

- 표준적용 지원내용에 따라 선정 시기 상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oat.or.kr) 및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공지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사무관 권병철	044-201-2425
		주무관 이지원	044-201-2422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스마트농업진흥팀	팀 장 구자현	063-919-1710
		연구원 최강웅	063-919-1715
		선임연구원 황혜원	063-919-1714

### 1. 사업대상자

- (사업운영, 보조사업자) 스마트팜 ICT 표준화 수행 전문기관(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이하 “농진원”)
  - 농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 \* 스마트팜 국가표준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바우처 등 관련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

### 2. 지원자격 및 요건

#### (1) (표준적용 지원) 간접보조사업자

- 스마트팜 국가표준 컨설팅, 제품개선 및 시제품 제작지원, 바우처 관리 전문기관
  - 스마트팜 기술 및 기자재, 국가표준에 대해 이해하고 농산업체에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는 농업법인, 컨설팅 업체, 기관 등
  - 바우처 발행 및 관리 능력이 있으며, 스마트팜 표준화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법인, 컨설팅 업체, 기관, 학교 등
  - 스마트팜 기자재의 규격과 표준에 대해 전문지식 보유기관

#### (2) 스마트팜 ICT기자재 농산업체

- ‘스마트팜코리아(smartfarmkorea.net)’에 등록된 업체 또는 본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할 업체

### 3. 지원대상

- (표준적용 지원) 스마트팜 ICT융합제품 및 S/W 국내 제조 기업(사업자)
  - 스마트팜 국가표준(시설·원예, 축산, 양액기, 사양관리기기 등)에 해당되는 ICT융합제품 및 S/W 국내 제조 기업
    - \* 제품 개선지원의 경우는, 사업수행에 적절한 경영안전성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대상이며, 사업개시일 3년 이상(모집 공고 마감일 기준) 우대
- (재직자 전문교육) 스마트팜 ICT기자재 관련(제조·유통 등) 기업(사업자) 재직자
  - ‘표준적용 지원’ 참여 업체 우대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1)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 (표준적용 지원) 컨설팅, 시제품 제작 및 기존제품 개선 및 운영 비용, 검정바우처 지원, 표준개발을 위한 운영 비용
- (재직자 전문교육) 스마트팜 ICT기업 재직자 전문교육 과정 운영비용

### (2) 지원대상 농산업체

- (표준적용 지원) 국가표준을 적용하도록 전문 컨설팅 제공, 국가표준을 적용하기 위해 제품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국가표준 적용하기 위해 개선·개발한 제품의 검정 비용 지원
- (재직자 전문교육) 재직자 대상 스마트팜 전문교육 제공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농특회계(민간경상보조)
- 지원비율 : 국고 70~100%
- 사업범위 :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을 위해 농산업체가 제품에 국가표준을 적용하도록 지원 및 농산업체 재직자에게 전문교육 제공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연간 세부 운영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집행
  - 지원한도
    - 컨설팅 :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간접지원(전문컨설팅 제공)
    - ICT기자재 개선지원 :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직접지원
    - ICT기자재 검정지원 : 기업당 5백만원 내외 직접지원(바우처발행)
- \* 표준 및 실증 적용 내용에 따라 지원 한도 상이 함

## 7.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및 제재 조치

### (1) 사업 수행 계획에 따른 성실한 이행

#### <의무사항>

-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지원기업(지원 대상 농산업체)은 사전 승인 받은 사업 수행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여건 변화로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 수행 계획 변경 가능
- 다만, 지원기업의 경우 동일 유형에 해당하는 품목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 신고로 대체
-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진도점검, 현장실사, 사업평가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

#### 〈제재 조치〉

- 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2) 성실 신고

#### 〈의무사항〉

- 사업 수행 계획 변경 사유 발생 시, 즉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변경 사유와 함께 변경 요청 신고
  - 지원기업은 제품 유형 및 방법, 품목, 실증지, 참여인력 등의 변경 시 신고

#### 〈제재 조치〉

-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의 승인 없이 사업 수행 계획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3) 사업비 성실 사용

#### 〈의무사항〉

- 간접보조사업자 및 지원기업은 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 지원기업은 직접개선비 및 간접개선비의 범위를 넘어선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됨
- 부정사용 의심 건에 대해 농식품부 또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하여야 함

### 〈제재 조치〉

- 사업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 내용이 적발된 경우, 적발된 시점부터 현장점검·소명 등의 절차 진행
  - 현장점검·소명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쳤으나 성실사용 의무이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용액을 환수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용자로부터 사업비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을 이자로 지급
- 농식품부 또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하지 않으면 사업비 지급을 일시정지하고, 3개월 내 소명하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
-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추진체계

담당기관	담당기능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국고)</li> <li>○ 실적점검 및 성과분석</li> </ul>
<보조사업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세부계획 수립</li> <li>○ 간접보조사업자 및 농산업체 모집</li> <li>○ 성과관리 및 개선 사항 도출</li> <li>○ 간접보조사업자 운영관리 및 점검</li> <li>○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li> </ul>
간접보조사업자 (컨설팅, 제품개선, 검정바우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보조사업계획 수립</li> <li>○ 농산업체 컨설팅, 관리 및 회계교육</li> </ul>

### 2. 사업추진절차

추진단계	주요내용	관련주체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계획 수립/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부 → 농진원</li> </ul>
↓		
운영계획 수립/승인 (당해연도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추진계획 수립/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진원(수립) → 농식품부(승인)</li> </ul>
↓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역사업별 사업자 선정/협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진원 → 간접보조사업자</li> </ul>
↓		
사업비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보조사업자 운영비 교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진원 → 간접보조사업자</li> </ul>
↓		
농산업체 모집/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역사업별(컨설팅, 개선지원, 검정바우처) 농산업체 모집/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진원 → 간접보조사업자 → 농산업체</li> </ul>
↓		
(표준적용지원) : 사업 승인 및 사업비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업체 사업계획 승인</li> <li>• 사업비 조정 및 교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진원 → 농산업체</li> </ul>
↓		
지원사업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업체 컨설팅 및 관리</li> <li>• 농산업체 회계교육</li> <li>• 검정바우처 지원</li> <li>• 표준화지원센터</li> <li>• ICT기업 재직자 전문교육</li> <li>• 간접보조사업자·교육운영사업자 관리</li> <li>• 현장모니터링</li> <li>• 사업비 사용현황 상시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li> <li>• 농진원·간접보조사업자</li> </ul>
↓		
사업비 정산 및 운영결과보고 (당해연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정산 및 운영결과보고 (1차: 10월, 2차: 12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보조사업자 → 농진원</li> <li>• 농진원 → 농식품부</li> </ul>

### 3. 사업신청단계

#### 보조사업자(농진원)

- (표준적용 지원) 농진원 홈페이지에 지원사업공고 안내
- (재직자 전문교육) 농진원 홈페이지와 스마트팜코리아에 지원사업공고 안내
- 사업설명회 및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 간접보조사업자

- (표준적용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 후 사업신청서를 농진원에 제출
  - 사업신청서 작성 시 스마트팜 시설원예, 축산분야 등 국가표준 참고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수행을 위한 국가표준 확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 컨설팅트 모집, 농산업체 의견수렴, 공청회, 농산업체 모집방안 등을 협의

#### 지원대상(농산업체)

- (표준적용 지원)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 후 사업신청서를 농진원에 제출
  - 사업신청서 작성 시 스마트팜 시설원예, 축산분야 등 국가표준 참고
  - 스마트팜 국가표준(시설원예, 축산 등)에 해당되는 ICT융합제품 및 S/W 국내 제조·유통·판매 기업으로 사업공고에 부합하는 기업 참여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재직자 전문교육) 교육생 모집 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를 농진원에게 제출
  - 우선 지원 대상('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확산' 사업 참여 기업) 증빙

### 4. 사업자 선정단계

#### 보조사업자 (농진원)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토
-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평가 개최계획 수립·통지
  - 평가방법, 평가계획 및 심의위원 구성 등 수립

-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평가 개최 및 선정결과 통지
  - \* (농진원) 평가는 국가표준, 시설원에 등 관련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
- 선정 후 협상 및 협약계획 수립·통지
  - \*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차순위 간접보조사업자와 재협상 실시
-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보고
  - \* 협상 및 협약 완료 후 농식품부로 선정결과 보고

### 간접보조사업자

- 간접보조사업자 선정평가 참석 및 발표자 보고
  - 서류평가, 대면평가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발표 및 보고
- 선정 후 협상 및 협약
  - 보조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사업내용 및 사업비 협의
  - 협상 완료 후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내용 수정 후 협약
  - 구비서류 : 사업협약서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

### 지원대상(농산업체)

#### 〈표준적용 지원〉

- 지원대상(농산업체) 선정평가 참석 및 발표자 보고
  - 서류평가, 대면평가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발표 및 보고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
- 선정 후 협약
  - 선정 후 평가위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내용 수정 후 협약
  - 구비서류 : 사업협약서

#### 〈재직자 전문교육〉

- 교육 신청자가 많은 경우는 지원 대상 농산업체 선정을 위한 현황 자료 제출 필요(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확산 참여 횟수, 재직자 수 등)

## I 사업 개요

## □ 목 적

- 청년들이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현장·경영 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영농 정착 도모

## □ 사업내용

-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기초이론부터 교육형실습, 경영형실습 등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위주의 장기(20개월) 교육과정 운영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 4개소(전북·전남·경북·경남)의 지자체 보육센터  
\*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선발하여 교육 운영

## □ 지원 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교육운영비(교육생 모집, 선발, 교육, 사후관리 등)
- '24년 예산 : 8,000백만원(국비 100%)

## □ 사업 신청

- 혁신밸리 보육센터 4개소(전북·전남·경북·경남) 기 선정 완료  
\* 교육생 모집 신청 안내는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http://www.smartfarmkorea.net)) 별도 공지(4월 예정)

## □ 대상자 선정

- 혁신밸리 보육센터 4개소(전북·전남·경북·경남) 기 선정 완료  
\* 교육생 선발은 적격심사, 서면평가, 면접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7월 예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사무관 권병철 주무관 이지원	044-201-2425 044-201-2422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업 시행기관)	혁신밸리실증팀	팀 장 임류갑 연구원 변재영	063-536-9730 063-548-3552
보육센터	전북	주무관 박길준	063-290-6434
	전남	주무관 이정훈	061-830-5044
	경북	팀 장 김기욱	054-537-8825
	경남	주무관 박지훈	055-254-4752



## II 주요 내용

### 1. 사업대상자 및 지원 요건

- (교육운영)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선정된 지자체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4개소)
  - (교육대상) 스마트팜 영농기술 습득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
    - \*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단, 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중도포기사유서를 제출·승인받은 경우는 제외)

###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스마트팜 영농기술 교육운영비(교육생 모집 홍보 및 선발, 교육, 사후관리 등)
  - 직접교육비 : 강사수당(여비), 원고료, 장비 및 시설 임차비(교육관련), 식비·다과비, 숙박비, 현장실습비 등
  - 간접교육비 : 사후관리비, 출장비, 회의비, 교육관련, 사무용품비, 일반관리비 등
    - \* 간접교육비로 자산 취득 성격의 물품 및 기자재 구입은 불가

###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농특회계(민간경상보조)
- 지원비율 : 국고 100%
  - \*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간접교육비의 합계는 총 교육비의 30% 이내 책정

###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연간 세부 운영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집행
- 지원한도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 1,600백만원 내외,  
(전북·전남·경북·경남 보육센터 4개소(이하 '보육센터')) 각 1,600백만원 내외
  - (농진원) 커리큘럼 개발, 교육생 모집·선발, 사업관리, 홍보, 사후관리 등
  - (보육센터) 교육운영 등

## 5.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및 제재 조치

### 농진원·보육센터

#### (1) 사업 수행 계획에 따른 성실한 이행

##### < 의무사항 >

- 사전 승인 받은 사업 수행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여건 변화로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수행 계획변경 가능
  - 다만, 경미한 사항은 농식품부(농진원)에 신고로 대체
- 사업운영 상 요구되는 사업추진 현황, 현장실사, 사업평가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

##### < 제재 조치 >

- 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관계 부처나 국회 등의 평가로 중단되거나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사업 지원을 중단하고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사업 지원을 중단하고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사업 지원을 중단하고,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2) 성실 신고

##### < 의무사항 >

- 사업수행 계획변경 사유발생 시, 농식품부(농진원)에 변경 사유와 함께 변경 요청 신고

##### < 제재 조치 >

- 농식품부 승인 없이 사업 수행 계획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 지원을 중단하고,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3) 사업비 성실 사용

##### < 의무사항 >

- 사업비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부정사용 의심 건에 대해 농식품부(농진원)의 사용내역 증명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 제재 조치 >

- 사업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어 적발된 경우, 적발된 시점부터 현장점검 및 소명 등의 절차 진행
  - 현장점검 및 소명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쳤으나 성실사용 의무이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집행액 불인정’에 해당되어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 보육센터 교육생

### (1) 의무교육 과정 이수

#### < 의무사항 >

- 보육센터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된 이후 정해진 교육기간(20개월) 동안 보육센터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을 이수해야 함
  - 입문 교육과정은 150시간 이상, 교육형실습은 480시간 이상, 경영형 실습 96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 정규교육과정 외 아래 ①~⑤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교육시간 인정
    - ① 직계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최대 3일)
    - ② 직계 형제·자매의 결혼(최대 1일)
    - ③ 예비군 소집 등 국방의 의무(소집기간)
    - ④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여 시(공문 상 참여 요청기간)
    - ⑤ 국가감염병 확진자로 분류되어 보건소 등으로부터 격리 조치 명령(문자 등)을 받은 경우(국가가 정한 격리기간)
  - 월 10일 이상(총 80시간 이상)의 교육형 및 경영형 실습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한해 실습비, 실습농가 강사료 등의 실습비를 지원

#### < 제재 조치 >

- 보육센터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된 이후 개인사유로 인해 교육 중도 포기 시 향후 보육센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함
  - 단, 최종 선발된 교육생 중 ‘개인·가족의 질병, 임신·출산’ 등 피치 못할 불가피한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소명(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必)하고 보육센터 담당자에게 ‘〈별지 제7호〉 중도포기확인서’를 제출·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향후 보육센터 사업에 신청 가능
  - \* '23년 이전 보육센터 교육생도 위의 사항에 해당함을 소명하면 향후 보육센터 사업에 신청 가능
- 입문 과정, 교육형실습, 경영형실습 미이수 시 교육생 자격 박탈

- 교육형 및 경영형 실습 과정 월 10일 미만 참여 시 해당 월에 대한 실습비 지급 중단

## (2) 활동일지 기록 및 실습계획의 성실한 이행

### < 의무사항 >

- 교육생은 교육형·경영형 실습 기간 동안 일일 실습활동일지 및 작물생육정보, 경영정보, 출근부(해당자), 지문인식 등 실습 증빙자료를 기록·등록하여야 함
- 교육생은 각 보육센터에서 사전 승인 받은 실습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여건 변화로 실습계획 대로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보육센터의 승인을 받아 실습계획 변경 가능
  - 다만, 동일 실습유형 간의 품목변경 등 사소한 사항은 보육센터에 신고로 대체
  - 실습 유형 변경(예시. 자가경영 및 선도농가 → 혁신밸리 보육센터)시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 ① 교육생이 실습 유형 변경을 신청할 경우 실습계획 변경신청서(세부추진계획 포함)와 변경사유서(증빙서류 포함)를 보육센터에 제출
    - ② 보육센터는 교육생이 제출한 실습계획 변경신청서와 사유를 바탕으로 자체 서면심사 실시
- 교육형·경영형 실습기간 중 보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심화교육(집합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 제재 조치 >

- 실습 증빙자료 미기록(미제출) 시 다음 달부터 실습비 지급 일시정지
  - 단, 지급 정지 후 실습 증빙자료 재작성 시 지급 재개(소급 적용 가능)는 가능하나, 일시정지 3회 이상이면 지급 중단 및 교육생 자격 박탈
- 보육센터의 승인 없이 실습계획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는 실습비 지급 중단 및 교육생 자격 박탈

## (3) 성실 신고

### < 의무사항 >

- 실습 변경 사유 발생 시, 즉시 소속 보육센터에 변경 사유와 함께 변경요청 신고
  - 실습 유형 및 방법, 품목, 농지 면적, 실습 소재지의 변경 시 신고

## 〈 제재 조치 〉

- 실습 기간 중에 제출하는 실습일지, 출근부 등 실습 이수실적 및 실습비 청구서, 실습재료비 청구서, 영수증 등 기타 비용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미비한 시점부터 실습비 지급 일시 정지
  - 단, 지급 정지 후 실습 증빙자료 재작성 시 지급 재개(소급 적용 가능)는 가능하나, 일시정지 3회 이상이면 지급 중단 및 교육생 자격 박탈
- 제출 기한까지 실습비 지급 기간 중에 제출해야 하는 ‘실습 이수실적 및 증빙자료’를 미제출시 실습비 지급 일시정지
- 보육센터의 승인 없이 실습계획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는 실습비 지급 중단 및 교육생 자격 박탈
  - 실습방법(실습유형, 품목) 등 주요사항 임의 변경시 실습비 지급 중단 및 교육생 자격박탈
  - 실습내용(실습유형, 품목 이외) 임의 변경시 실습비 지급 중단

## (4) 교육생 품위 유지

### 〈 의무사항 〉

-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은 선발된 이후 정해진 교육기간(20개월) 동안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 질서를 준수하고 지켜야 함

#### I 품위유지

- ① 욕설 등 저속한 언어, 성희롱 등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II 도박

- ① 교육생은 도박 등 사행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 III 음주

- ① 교육생은 허가받지 않은 음주를 해서는 아니 됨
- ② 외출·외박시에 음주로 인하여 교육생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 IV 흡연

- ① 교육생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여야 하고, 교육시설 및 기숙사 내에서의 흡연은 금지

## V 기숙사 생활 준수사항

- ① 교육생은 성실한 자세로 상호 신뢰와 협동정신을 배양하는 생활을 하는데 힘써야 함
- ② 교육생은 기숙사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함
  - 1) 다른 교육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한 행동을 해야 함
  - 2) 기숙사 내에서는 간편한 복장이나 실내화를 착용할 수 있으나, 기숙사외부로 나갈 시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함
  - 3) 생활지도관의 승인 없이 기숙사 내에 면회자나 방문자를 출입시킬 수 없음
  - 4) 기숙사 내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 주류, 전열기 등의 물품을 반입하거나 취식할 수 없음

### < 제재 조치 >

- 교육생으로서 품위유지 및 교육질서 의무 위반 시 소속 보육센터의 교육생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
  - 일반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주의, 경고, 감점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 벌점관리규정(예시) : 시설관리규칙위반(1회 주의, 2회 이상 감점) 등
  - 보육센터는 교육생 과실로 발생한 의무 위반사항이 형사처벌 또는 민간소송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사항일 경우 “교육생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생 자격 정지 또는 박탈 가능
  - 징계위원회의 구성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최소 4인 이상, 최대 5인 이내로 구성
    - ② 위원장은 보육센터의 보육 업무 총괄 담당자로 하고 위원은 농식품부(1인), 농진원(1인), 외부위원(2인 이내)을 포함
    - ③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 1) 검사, 변호사 또는 노무사 5년 이상
      - 2) 법학 또는 행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사·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급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 5) 기타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적정한 자

- 징계위원회의 운영 방법

- ① 교육생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5호]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 1) 경징계(1단계)는 ‘주의 및 경고’ 조치, 교육 이수 가능
  - 2) 경징계(2단계)는 ‘일부 자격 제한’으로 교육 이수는 가능하나, 스마트팜 혁신밸리 內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는 불가
  - 3) 중징계는 ‘자격 박탈’로 보육센터 교육생 신분 박탈 및 차후 사업 참여 불가 조치
- ② 위원장은 징계의결 최소 3일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④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위한 출석을 하지 않을 시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 ⑤ 징계혐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인 등의 변론을 신청할 수 있다.
- ⑦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교육생 자격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 처분한다.

(5) 실습비 성실 사용

〈 의무사항 〉

- 교육생은 실습 시 소요되는 실습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실습재료비 및 실습비(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안됨
- 부정사용 의심 건에 대해 농식품부 또는 농진원,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하여야 함

〈 제재 조치 〉

- 실습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어 적발된 경우, 적발된 시점부터 현장점검·소명 등의 절차 진행 기간 동안 실습비 지급을 일시정지

- 현장점검, 보육센터의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성실사용 의무이행이 확인된 경우, 실습비 지급을 재개
  - ※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방법은 징계위원회의 내용을 참고하여 운영
- 실습비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용액을 환수하고 지급  
중단
- 또한, 보육센터의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등에서 제재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교육생 자격을 박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과금 부과 및 명단공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추가 조치에 취할 수 있음
- 보육센터로부터 실습비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보육센터가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 농식품부 또는 농진원, 지자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내역을 증명하지 않으면  
실습비 지급을 일시정지하고, 3개월내 소명하지 않을 경우 보육센터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



###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추진체계

담당기관	담당기능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지침 수립 및 보육계획 승인</li> <li>○ 예산 확보 및 예산 배정(국고)</li> <li>○ 사업 점검(반기) 및 사업비 결산</li> </ul>
한국농업기술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센터별 교육운영계획 검토 및 승인</li> <li>○ 교육생 모집, 선발 및 홍보</li> <li>○ 교육과정 운영 평가 및 점검</li> <li>○ 교육 관리(분기별 현장점검·모니터링) 및 정산 실시</li> </ul>
지자체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사업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교육운영 세부계획 수립</li> <li>○ 교육생 관리 및 교육생 모집·선발 지원</li> <li>○ 교육과정 운영 및 사업비 집행</li> <li>○ 교육운영 결과 및 정산 보고(보육센터→농진원)</li> </ul>

#### 2. 사업추진절차

추진단계	주요내용	관련주체
기본계획 수립	○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 기본계획 수립	○ 농식품부(수립)
↓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검토, 승인	○ 스마트팜 청년창업 장기 보육 세부 운영계획 수립/검토/승인	○ 지자체(수립) → 농진원(검토) → 농식품부(승인)
↓		
사업 승인 및 사업비 교부	○ 장기보육 사업 승인 및 사업 운영비 교부	○ 농식품부 → 농진원 → 지자체
↓		
교육생 모집·홍보/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생 모집/선발, 홍보 주관</li> <li>○ 교육생 모집/선발 지원, 홍보 지원</li> </ul>	○ 농진원(홍보사업 관리) ○ 지자체
↓		
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운영(입문, 교육실습, 경영실습)</li> <li>○ 현장·경영실습 현장지도/컨설팅</li> <li>○ 해외 전문가 특강 주관</li> <li>○ 해외 전문가 특강 지원</li> <li>○ 운영실태 점검</li> <li>○ 교육에 필요한 정부사업 연계 관리</li> </ul>	○ 지자체  ○ 농진원
↓		
사업비 정산 및 운영결과보고	○ 사업비 정산 및 운영결과보고	○ 지자체(제출) → 농진원(검토) → 농식품부(승인)

### 3. 사업신청단계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공모·선정 기 완료

### 4. 사업자 선정단계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공모·선정 기 완료

## I 사업 개요

## □ 목 적

- 농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농가에 대한 교육, 컨설팅, 사후관리, A/S 등 지원을 통해 ICT 활용도 제고를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 □ 사업내용

-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가의 현장 기술지도, 사후관리, 홍보 등을 지원

\* 현장에서 가까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기업, 전문가들과 협력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스마트팜 농가의 기술적 지원 및 현장 교육 등이 가능한 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관련 연구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스마트팜 농가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가 및 관련 기업 등을 포함한 협력체계를 구성한 후 운영 가능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 농업기술지도 기관에서 스마트팜 농가의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경비 지원

- 국비 지원 기준 : 지자체당 7~62백만원

\* 권역별 사업특성, 사업규모, 지역별 형평성 등을 반영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24년 예산 : 총 사업비 600백만원(국비 300, 지방비 300)

## □ 사업 신청

- 시·도지사는 2024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10월까지)

## □ 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신청)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사무관 강태원 주무관 이정은	044-201-2421 044-201-2426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스마트농업진흥팀	팀 장 구자현 연구원 진병옥	063-919-1710 063-919-1726

## II 주요 내용

### 1. 사업대상자

- 농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농가의 지원 및 확산을 희망하는 지자체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스마트팜 농가의 기술적 지원 및 현장 교육 등이 가능한 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관련 연구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함
  - \* 스마트팜 농가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가 및 관련기업 등을 포함한 협력체계를 구성한 후 운영 가능

### 3.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스마트팜 농가 및 예비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유지보수(A/S) 등을 지원하여 스마트팜 현장 활용도 제고
  - 스마트팜 농가 유지보수(A/S) 및 사후관리 지원
  - 스마트팜 기자재·장비 사용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스마트팜 재배 및 ICT 활용 기술 상담 등을 위한 농업 현장 지원
  - 스마트팜 재배기술, ICT 시설 활용 등 교육 및 우수사례 소개 등 스마트팜 확산 지원

###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
- 총사업비 : 600백만원(국비 300백만원, 지방비 300백만원)
- 지원유형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규모 : 센터당 7~62백만원
  - \* 권역별 사업특성, 사업규모, 지역별 형평성 등을 반영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집행관리, 중요재산 관리 등을 시행

###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주관기관)

- 주관기관에서는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행기관과 전담기관으로 통보
  - 권역별 사업신청 소요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수행기관으로 가내시

#### 지자체(수행기관)

-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수행기관)에서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으로 제출
  - \* 시·도에서는 시·군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 전담기관에서는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지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 시정·보완 요구

### 2. 사업자 선정단계

#### 지자체(수행기관)

- 수행기관에서는 스마트팜 보급·확산 여건과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를 보완하여 주관기관으로 제출

#### 농식품부(주관기관)

- 주관기관에서는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시행지침상의 지원요건과 자금 사용용도 등에 따라 심의하여 사업비를 조정하고 수행기관으로 확정내시

## I 사업 개요

## □ 목 적

-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솔루션·서비스를 농가에 적용 및 고도화 지원

## □ 사업내용

- 스마트팜 관련 기업 등 민간에서 상용화(제품화)가 완료된 데이터 기반 서비스·솔루션을 농가에 적용 및 고도화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스마트팜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과 농업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데이터 활용 스마트농업 서비스가 제품화(상용화) 되어있는 기업 중 재무 건전성, 사회적 의무 이행, 기술력 등에 문제없는 기업, 연구기관 등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충족되는 농업인, 법인, 조합 등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솔루션·서비스를 농가에 적용 및 고도화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국고 70~100%, 참여기업 자부담 30%
  - 21개 컨소시엄(1개 이상 기업과 50호 내외 농가로 구성, 2년차 5개 포함)
  - 2개 우수 컨소시엄(1개 이상 기업과 180호 내외 농가로 구성) 지원
- '23년 예산 : 국비 6,235백만원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 사업 신청

- 장소 : 보조사업자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신청기간 : 보조사업자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항목은 과제 목표 타당성,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 활용성 및 시장성, 성과 노력 제고 등이며 대상자 선정 세부 계획은 보조사업자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평가 및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24년 1분기)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사무관 강태원	044-201-2421
		주무관 이정은	044-201-2426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스마트농업본부	본부장 김옥일	063-919-1700
		팀 장 구자현	063-919-1710



## II 주요 내용

☞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솔루션·서비스를 농가에 적용 및 고도화 지원

### 1. 사업대상자

- 스마트팜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과 농업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용화된 서비스·솔루션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스마트농업, ICT, 데이터·AI 관련 기업(1개 이상) 등이 50호(우수 컨소시엄의 경우 180호) 내외 농가와 사전에 구성한 컨소시엄
  - ※ 50호(우수 컨소시엄의 경우 180호) 농가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제공하는 서비스·솔루션 모델 비용, 컨소시엄 당 할당된 비용 등에 따라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농가 수는 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
- (기업 등) ①지원받고자 하는 서비스 판매 실적 10건 이상 또는 판매금액 1억 이상에 대한 증빙을 제출할 수 있으며, ②부적격 사항이 없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
  - \* 사업에 선정된 컨소시엄의 기업체는 참여 농가에 보급된 서비스(솔루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net)에 데이터를 연계할 의무를 가짐(서비스 보급 이후 5년 간)

#### < 주요 부적격 사항 >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연구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연구기관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또는 연구기관
-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솔루션과 농가의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경우
-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이 되는 경우

-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충족되며, 신규로 참여하는 농업인
  - \* 신규로 참여하는 농업인의 기준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기준연도의 2년 전까지 해당 데이터 기반 서비스·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 ※ 단, '22~'23년 본 사업에 참가한 농업인은 데이터 연속성 등을 목적으로 계속 관리대상이 될 수 있음
  -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농업인이 지원받는 형태로 참여하려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충족되어야 함

### 〈농업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기준〉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337호)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동일 사업에 대해 중복으로 다른 사업의 보조금을 수령 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컨소시엄별로 지원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한 개 기업당 한 개의 서비스·솔루션 모델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사업에 신청한 기업이 부족하고 확산하려는 서비스·솔루션 모델이 다른 경우, 보조사업자가 수립한 우선순위에 따라 한 개 기업이 2개 이상의 모델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 컨소시엄 〉

- 스마트팜 기업, 데이터·AI 관련 기업 등 민간에서 상용화(제품화)가 완료된 데이터 기반 서비스·솔루션\*을 농가에 적용 지원
  - \*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또는 솔루션
  - \*\* 서비스·솔루션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계획이 사업종료 기간 내 완료되어야 정산 가능
  - 데이터 기반 서비스·솔루션 적용·연동에 필요한 기자재·센서 등 지원 가능
    - \* 다만, 단순 자동화·기계화를 위한 장비·제어기·센서 등은 지원 불가
- 참여기업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솔루션의 기능 개선 및 추가 등 고도화 지원
- 일관되고 유용한 데이터 수집·공개를 위해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표준\* 적용에 필요한 시설·기자재·시스템 구축 지원
  - \* 시설원에 분야 데이터 수집 표준, ICT 기자재 설치가이드, 서비스(솔루션)별 데이터 정의서 등 보조사업자(농진원)가 요구하는 표준 및 정의 항목

### 〈 지원 불가한 사항 〉

- 토지구입, 부지조성, 기본 전기통신/상하수 인입, 서버 구축, 드론구입 등 기업체 자산성 장비구입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소모성 자재(시설, 장비, 기자재 등) 구입·구축 비용
- 전기세, 통신비, 수도세, 가스비 등 공과금

### < 보조사업자 >

-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컨소시엄 선정·평가 등 사업 전반의 효과성·전문성 등 제고 지원
-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데이터 수집·공개, 성과분석, 과제조정, 사업심의, 대국민 홍보 등 지원

## 4. 지원 형태 및 사업 범위

- 국고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
- 지원비율 : (컨소시엄) 국고 70%, 자부담 30%  
(보조사업자) 국고 100%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컨소시엄별로 총사업비 340백만원(2년차 46, 우수 컨소시엄의 경우 1,190) 내에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된 '24년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실소요액 집행 보조사업자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승인된 연간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실소요액 집행 - 다만, 확산하고자 하는 모델 유형·단가, 사업 운영 기간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수립한 기준에 따라 지원 한도 일부 조정 가능

## 6. 지급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 <의무사항>

- 컨소시엄은 사전 승인받은 사업 수행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진도 점검, 현장실사, 사업평가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계획 중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규모, 위치, 일정 등)이 필요한 경우, 상위기관에 변경 사유와 함께 변경요청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 사업 수행계획 중 중요 변경사항(예시) >

- (사업비) 사업 규모에 변경사항이 없으나 국비 총 지원 규모 변동하는 경우 등
- (컨소시엄) 컨소시엄 기업 변경, 컨소시엄 참여 농가 10% 이상 변경 시 등
- (서비스·솔루션) 농가에 지원하거나 고도화하는 서비스·솔루션 주요 사항 변경 등
- (기타) 승인된 수행계획 중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 지원기업은 소요되는 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계획 범위를 넘어선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함
- 부정 사용 의심 건에 대해 농식품부 또는 상위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하여야 함

#### 〈제재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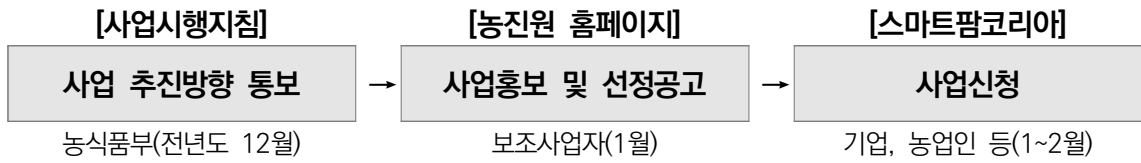
- 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상위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비를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상위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 수행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 내용이 적발된 경우, 적발된 시점부터 현장점검·소명 등의 절차 진행
  - 현장점검·소명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쳤으나 성실 사용 의무 이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용액을 환수
- 상위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상위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 지체일 수마다 지체상금을 이자로 지급
- 농식품부 또는 상위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하지 않으면 사업비 지급을 일시 정지하고, 3개월 내 소명하지 않을 경우, 상위기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

###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 〈 사업 추진체계 및 주요일정(안) 〉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 지원내용, 향후 일정,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 기본계획 수립(12.31까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기본계획을 시달하고, 보조사업자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공고를 하도록 요청(12.31까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공고에 앞서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본계획에 기반한 세부 추진계획, 공모계획 등을 수립 및 농식품부에 승인요청(1.15까지)
- 보조사업자는 농진원 홈페이지에 사업공고 안내(1.15까지)
  - 보조사업자는 신청서, 세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준비 등을 포함하는 공고문을 사업대상자에 자세히 안내하고, 사업설명회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 홍보
- 보조사업자는 농진원 홈페이지와 나라장터 게시판을 활용하여 공모 안내를 하고 신청자는 보조사업자에 서류를 우편(또는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사업 대상자(컨소시엄)

- 사업공고를 확인 후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농진원에 제출
-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 예비계획서, 농업인의 사업참여 협약서, 사업비 투자계획, 증빙자료 등과 기타 보조사업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기간 내에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 사업 신청 요건
  -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용화된 서비스·솔루션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스마트농업, ICT, 데이터·AI 관련 기업(1개 이상) 등이 50호(우수 컨소시엄의 경우 180호) 내외 농가와 사전에 구성된 컨소시엄

※ 50호(우수 컨소시엄의 경우 180호) 농가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제공하는 서비스·솔루션 모델 비용, 컨소시엄 당 할당된 비용 등에 따라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농가 수는 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

- (기업) ①지원받고자 하는 서비스 판매 실적 10건 이상 또는 판매금액 1억 이상에 대한 증빙을 제출할 수 있으며, ②부적격 사항이 없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

\* 사업에 선정된 컨소시엄의 기업체는 참여농가에 보급된 서비스(솔루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net)에 데이터를 연계할 의무를 가짐(서비스 보급이후 5년간)

### 〈 주요 부적격 사항〉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연구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연구기관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또는 연구기관
-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솔루션과 농가의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경우
-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이 되는 경우

②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충족되며, 신규로 참여하는 농업인

\* 신규로 참여하는 농업인의 기준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기준연도의 2년 전까지 해당 데이터 기반 서비스·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 단, '22~'23년 본 사업에 참가한 농업인은 데이터 연속성 등을 목적으로 계속 관리대상이 될 수 있음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농업인이 지원받는 형태로 참여하려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충족되어야 함

### 〈농업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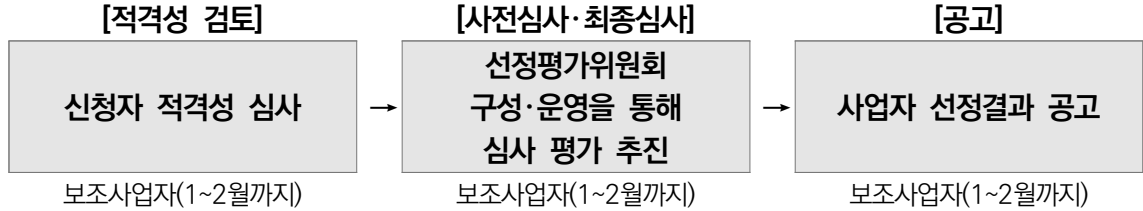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337호)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시행기관에 사업 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등)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일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해야 함.

## 2. 사업자 선정



### 한국농업기술진흥원(보조사업자)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기준·절차 등을 마련하여 컨소시엄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적격성 검토, 사전심사, 최종심사 등 추진

#### < 사업대상자 평가·선정 절차(안) >

적격성 검토	사전심사	최종심사	평가결과 공고
신청 요건 및 자격 검토	모델 적합성, 컨소시엄 적정성 등 서면 평가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 대면 평가	평가 결과발표 및 농정원과 컨소시엄 간 협약
농진원	농진원	농진원	농진원

\* 단, 지원자 현황, 추진여건 등에 따라 평가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성 검토) 수요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사업에 신청한 컨소시엄의 기본 요건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 (사전심사) 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계획 타당성, 컨소시엄 구성 적정성, 운영계획 적정성 등 평가
- (최종심사)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사업의 효과성 등 평가(발표평가로 진행되며, 필요 시 기업 현장평가 등이 추가될 수 있음)
- (공고) 평가 결과는 농진원 홈페이지에서 발표되며, 협약과 관련한 제출서류 준비 등을 위해 향후 별도 공지
- 유사 자금\* 지원 제한(「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동일한 내용의 재정 지원이 동일한 대상(기자재, 장비 등)에 투자되는 것

\*\* 「기본규정」 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 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서 검토 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 1)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 2)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3)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 4)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규정」 제35조제7항)
  - 5) 기타 사업시행지침에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 경우
- 보조사업자는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자격 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보조사업자는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안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 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 사업 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사업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 지원 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보조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교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 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컨소시엄)

- 사업지원 대상(컨소시엄) 선정평가 참석 및 발표자 보고
  - 서류평가, 대면평가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발표 및 보고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대상 컨소시엄은 결과발표 후 3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
- 선정 후 협약
  - 선정 후 평가위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내용 수정 후 협약
  - 구비서류 : 농정원과 컨소시엄 간 사업협약서 등 농정원이 요청하는 제반 서류
- 민간보조사업자는 승인된 사업 수행계획 대비 기능별·사업별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배분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원칙과 절차,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모두 준수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만 가능

### < 사업 수행계획 중 중요 변경사항(예시) >

- (사업비) 사업 규모에 변경사항이 없으나 국비 총 지원 규모 변동하는 경우 등
- (컨소시엄) 컨소시엄 기업 변경, 컨소시엄 참여 농가 10% 이상 변경 시 등
- (서비스·솔루션) 농가에 지원하거나 고도화하는 서비스·솔루션 주요 사항 변경 등
- (기타) 승인된 수행계획 중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 < 사업 수행계획 변경 원칙 >

- 변경 주체 : 사업 수행자(컨소시엄 등)
  - \* 승인 : 보조사업자 기관장(농진원장) 또는 농식품부 장관 / 사전검토 : 보조사업자 기관장(농진원장)
- 변경 원칙
  - ① 사업 수행계획 대비 총 국비지원액의 20% 이상 변경 시 : 보조사업자 사전검토, 농식품부 승인  
사업 수행계획 대비 총 국비지원액의 20% 이하 변경 시 : 보조사업자 사전검토·승인
    - \* 국비지원액의 변경은 국비 증감액의 합(절대값)의 변경을 의미
  - ② 사업비 확보·집행 현황 및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계획 제출
    - 사업비 명세서, 용역 등 발주·계약방법 및 일정 등 집행계획 증빙자료 포함
  - ③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컨소시엄 내 참여하는 기업, 농업인 등의견수렴 및 검토 결과 제출

## I 사업 개요

## □ 목 적

- 농업분야 ‘데이터-플랫폼-서비스’ 전주기·선순환 체계를 구축,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생태계 마련

## □ 사업내용

- 농업인·기업·연구기관 등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제공, 스마트팜 데이터 활용 촉진, 클라우드·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농업 기술·서비스 활용 촉진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스마트농업 서비스(솔루션) 보유 기업, 연구기관, 단체 등
  - 나라장터, 조달청,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된 기업 중 재무 건전성, 사회적 의무 이행, 기술력 등에 문제없는 기업, 연구기관 등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농업인·기업·연구기관 등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제공, 스마트팜 데이터 활용 촉진, 클라우드 플랫폼 운영 기반 스마트농업 AI 솔루션 개발을 위한 비용 지원
- '24년 예산 : 2,568백만원(국비 100%)
- 지원기준 : 사업별\*로 자부담 비율 상이(농정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 스마트팜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
- 사업시행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사업 신청

- 신청방법 : 나라장터(용역) 또는 농정원 홈페이지(공모)를 통해 신청
- 신청기간 : 보조사업자가 나라장터 또는 농정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 대상자 선정

- 사업시행자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지침’ 및 보조사업자가 마련한 선정 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정
  - 사업이해도, 능력, 추진계획의 구체성·적정성 등 지표에 대하여 심사
  - 재무 안정성, 사업능력, 중복·편중 지원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사무관 강태원	044-201-2421
		주무관 이정은	044-201-2426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스마트농업실	실 장 양종열	044-861-8760
		대 리 황은교	044-861-8790

## II 주요 내용

☞ **농업인, 기업 등에서 수집된 스마트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농업 솔루션 개발, 데이터 수집·실증 및 인프라 환경 지원**

### 1. 사업대상자

- 스마트농업 서비스(솔루션) 보유 기업, 연구기관, 단체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스마트팜 기술 및 현장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이해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서비스 모델 보유 기업, 연구기관, 단체 등
  - 재무 건전성, 사회적 의무 이행, 기술력 등에 자격요건을 갖추며, 사업추진에 있어 부적격 사항이 없는 기업, 연구기관, 단체 등

#### 주요 부적격 사항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연구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연구기관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또는 연구기관
-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이 되는 경우

###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빅데이터·AI·로봇 등 차세대 기술 활용 농업 서비스 모델의 알고리즘 개발 및 실증을 위한 비용
- 알고리즘 실증을 위한 장비 보급 및 서비스 농가·혁신밸리 적용을 위한 비용
- 농업 서비스 개발·실증·활용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제공을 위한 비용
-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농업 공동활용 서비스, 솔루션, 참조 모델, API 개발 및 활용 지원을 위한 비용
- 스마트농업 솔루션 및 서비스 운영, 인프라 지원 및 고도화를 위한 비용
- 스마트농업 서비스 기술 관련 전문가 협의회를 위한 비용
- 스마트농업 서비스 발전 및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비용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민간경상보조 100%)
- 지원비율 : 국고 10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사업자가 수립한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 집행

## 7. 지급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 <의무사항>

- 지원기업은 사전 승인받은 사업 수행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진도 점검, 현장실사, 사업평가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계획 중 중요 사항(규모, 위치, 일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위기관에 변경 사유와 함께 변경요청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지원기업은 소요되는 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계획 범위를 넘어선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함
- 부정 사용 의심 건에 대해 농식품부 또는 상위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하여야 함

### <제재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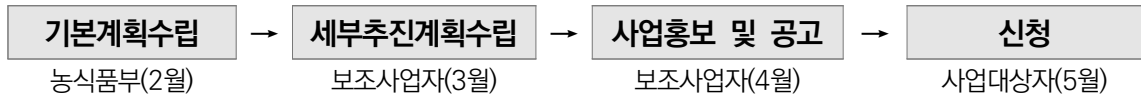
- 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상위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비를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상위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 수행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 내용이 적발된 경우, 적발된 시점부터 현장점검·소명 등의 절차 진행
  - 현장점검·소명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쳤으나 성실 사용 의무 이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용액을 환수
- 상위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상위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 지체일 수마다 지체상금을 이자로 지급
- 농식품부 또는 상위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하지 않으면 사업비 지급을 일시 정지하고, 3개월 내 소명하지 않을 경우, 상위기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 사업시행 지침 및 사업 기본계획을 시달하고,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공고를 요청(2.29까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공고에 앞서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본계획에 기반한 세부 추진계획, 공모계획 등을 수립 및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3.31까지)
- 보조사업자는 농정원 홈페이지에 사업공고 안내
  - 보조사업자는 신청서, 세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준비 등을 포함하는 공고문을 사업대상자에 자세히 안내하고, 사업설명회 및 유관 기관 등을 통해 홍보
- 농정원은 온·오프라인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 추진

#### 사업대상자(민간보조사업자)

- 사업공고를 확인 후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농정원에 제출
- 사업 신청 요건
  - 스마트팜 기술 및 현장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이해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서비스 모델 보유 기업, 연구기관, 단체 등

#### 주요 부적격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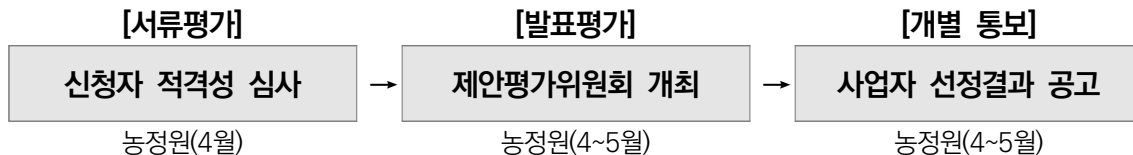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연구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연구기관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또는 연구기관
-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이 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시행기관에 사업 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2. 사업자 선정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보조사업자)

- 농정원은 사업신청서 검토 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 1)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 2)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3)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 4)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규정」 제35조제7항)
  - 5) 기타 사업시행지침에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 경우
- 농정원은 사업수행업체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제안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 등을 위한 농정원 내부 위원회) 상정
  - 신청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 안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 대상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농정원은 제안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수행업체를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평가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농정원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는 농정원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수립 후 사업을 추진
- 농정원은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농정원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교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 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농생명산업

---

### 7-2. 종자, 곤충, 미생물 도시농업



## I

## 사업 개요

## □ 목적

- 과수 무병묘 생산·공급체계 구축에 따라 품종 무병화 추진, 모수 및 보급묘 바이러스 검정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무병화 관리기관 지정·운영

## □ 사업내용

- 무병묘 생산·공급을 위하여 무병화 관리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무병화 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장비, 인력 구성 등의 기반을 갖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업법인 등 관계 전문기관(이하 '농업법인' 등이라함)

## □ 사업신청

- 무병화 관리기관 공모 시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모 참여

## □ 지원내용

- 무병화 관리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 □ 지원기준 및 예산

- 지원기준: 무병화 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단체) 개소당 200백만원 내외
  - 농업 법인 또는 공공기관: 국고 100%, 지자체: 국고 50%, 지방비 50%
- '24년 사업비: 8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400, 지자체경상보조 200, 지방비 200)
  - \* 사업 추진계획(사업규모, 무병묘목 생산공급 사업운영 포함여부 등) 등에 따라 개소당 5천만원 범위에서 지원금액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대상자 선정

- 사업희망업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 선정기준항목: 사업계획의 내용, 전문인력 확보 및 해당분야 전문성, 무병묘 생산하는 종자업체 관리 방안 등
- 평가기준(안)

심사기준	심사항목
사업계획 및 내용	• 사업계획 추진방법의 적절성
	•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 무병묘 생산업체 관리 및 무병재료 이력관리의 적절성
	• 과수 무병화 사업 및 무병묘 효과 홍보의 적절성
기술·지식·능력	• 전문인력 운용 및 장비 확보
	• 해당 분야 전문성 및 기술력
예산·사업 관리	• 추진항목별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 사업예산 및 증빙자료 관리 방법의 적절성
기타	• 사업계획에 따른 기대효과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	센터장 유병천 주무관 김정아	054-912-0220 054-912-0240

## 1. 사업대상자

- 과수 무병화 및 무병묘 검정이 가능한 공공기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농업법인 등

\* 관련법령: 「종자산업법」 제10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무병화 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 무병화 및 무병묘 검정, 인력 운영 등이 가능한 공공기관, 지자체 및 농업법인 등
  -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공공기관, 농업법인 등) 과수 무병화 및 무병묘 검정이 가능하거나 여건을 갖추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 3. 지원대상

- 2024년 과수 무병화 관리기관 선정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무병화 관리기관의 세부수행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장비 및 토지구입비 등 미지원)

## 5. 사업규모 및 지원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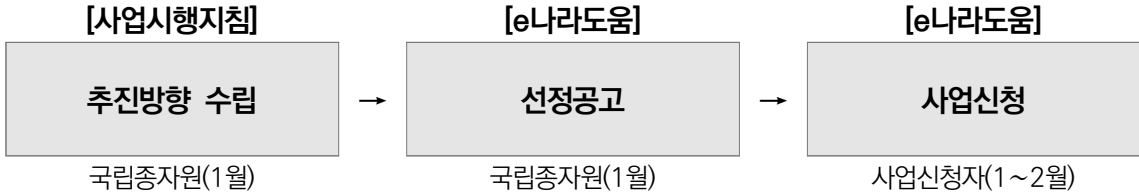
- 사업비: 800백만원\*(국고 600, 지방비 200)
- 사업개소: 4개소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
  - 무병화묘 생산을 위한 무병 접수, 대목 분양·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
  - 무병 모수관리, 과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 실적이 있는 경우
- 지원규모: 최대 20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공공기관, 농업법인) 국고 100%, (지자체) 국고 50%, 지방비 50%

\* 예산과목: (공공기관, 농업법인) 민간경상보조, (지자체) 지자체경상보조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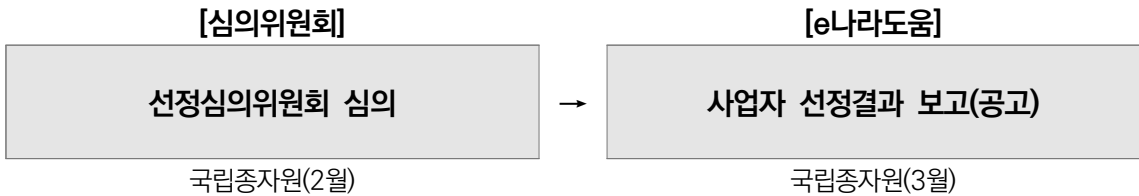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기본계획수립 및 무병화 관리기관 공모(국립종자원)

- 무병묘 생산·공급을 위한 무병화 관리기관 선정 공모계획 수립
- e-나라도움을 통해 무병화 관리기관 참여 공모 및 신청·접수

### 2. 사업자 선정



#### 무병화관리기관 선정(국립종자원)

- 평가대상: 공모기간 내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공공기관, 지자체 및 농업법인 등
- 평가기간: 공모 마감 후 30일 이내
- 종합평가: 서류평가(100%)
  - 과수, 유전자, 병리검정 분야 등의 전문가 5인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평가를 추진하되 필요시 발표평가 및 현지실사 진행
  - 심의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소수점 한자리)하여 획득점수 산출



- 평가 기준(안)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사업계획 및 내용	• 사업계획 추진방법의 적절성	20
	•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15
	• 무병묘 생산업체 관리 및 무병재료 이력관리의 적절성	15
	• 과수 무병화 사업 및 무병묘 효과 홍보의 적절성	15
기술·지식·능력	• 전문인력 운용 및 장비 확보	10
	• 해당 분야 전문성 및 기술력	10
예산·사업 관리	• 추진항목별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5
	• 사업예산 및 증빙자료 관리 방법의 적절성	5
기타	• 사업계획에 따른 기대효과	5
<b>총 계</b>		<b>100점</b>

- 무병화관리기관 선정: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다만, 공공기관·농업법인) 2개소, 지자체 2개소 선정

## I

## 사업 개요

## □ 목적

- 과수 재배농가의 무병묘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무병묘 공급 확대 유도

## □ 사업내용

- 과수 재배농가가 5대 과수\*의 무병묘 구입 시 일반묘와의 차액 일부 지원

\* 5대 과수: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 □ 지원자격 및 요건

- 5대 과수의 무병화 인증을 받은 무병묘를 구매한 농가

## □ 사업신청

- 무병묘를 생산한 종자업체에서 무병묘 구입 시 신청서 작성

## □ 지원내용

- 5대 과수 무병묘 구입비용의 차액 일부 지원

## □ 지원기준 및 예산

- '24년 사업비: 600백만원
- 5대 과수(사과, 포도, 배, 감귤, 복숭아) 무병묘 3,000원/주

\* 예산 한도 내에서 신청량에 대해 지원

## □ 대상자 선정

- 무병화관리기관에서 취합한 신청서를 토대로 국립종자원에서 적정여부(종자업체의 무병묘목 생산여부 등)을 확인하고 농가당 최대 5천주까지 지원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	센터장 유병천 주무관 김정아	054-912-0220 054-912-0240

### 1. 지원 대상자

- 5대 과수\* 무병묘를 구매한 과수 재배농가 \* 5대 과수: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 관련법령: 「종자산업법」 제10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 2. 지원자격 및 요건

- 5대 과수의 무병화 인증을 받은 무병묘를 구매한 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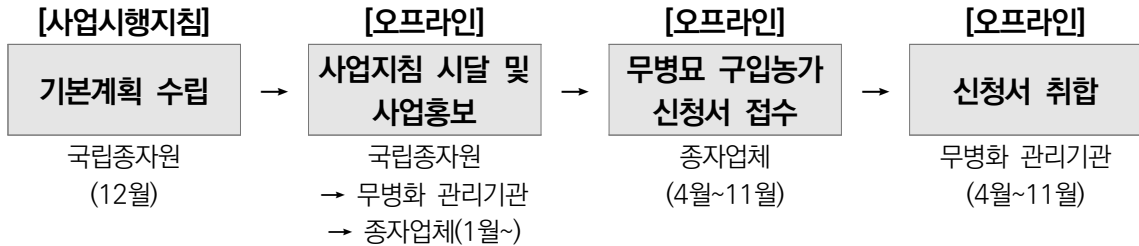
###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5대 과수 무병묘 구입 시 일반묘와의 차액 일부 지원

### 4. 지원규모 및 지원형태

- 지원예산: 총 600백만원(국고 100%)
- 지원단가: 5대 과수 무병묘 3,00원/주
- 지원한도: 무병묘를 구매한 농가당 최대 5천주까지 지원

1. 지원계획수립 및 신청·접수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국립종자원)

- 사업개요, 지원 규모 등의 사업추진계획을 위한 사업시행지침 작성
- 무병화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
  - 무병화 관리기관은 「무병화 및 무병묘 검정」 사업 추진을 통해 별도 선정
- 사업시행지침 수립 완료 시 현장방문,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하여 지원사업 신청 확대유도를 위한 홍보활동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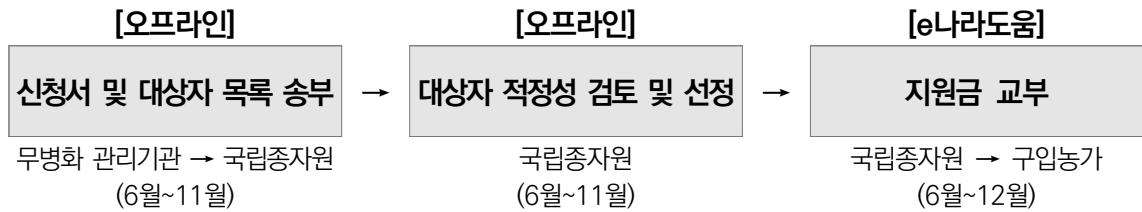
무병묘 구입농가 신청서 접수(무병묘 생산·판매업체)

- 무병묘 생산·판매업체는 무병묘를 구입한 농가에게 해당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실시
  - 구입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구비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구매농가에게 상세히 안내 실시
    - \* 구비서류: 신청서, 묘목거래내역서(납품확인서) 또는 계약서, 농업인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 무병화 관리기관에 송부

지원사업 신청서 취합(무병화 관리기관)

- 관할 무병묘 생산·판매업체로부터 신청서가 송부되면 무병화 관리기관에서 신청서 1차 검토 및 지원사업 대상자 목록 작성

## 2.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교부



### 지원금 대상 선정(국립종자원)

- 무병화 관리기관에서 취합한 신청서, 구비서류, 대상자 목록을 토대로 지원금 대상 적정여부를 사업담당자가 2차 검토(1차 검토는 무병화 관리기관에서 실시)
- 지원금 대상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최종 확정

### 지원금 교부(국립종자원)

- 국립종자원 사업담당자는 지원 대상자 확정이 완료되면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e나라도움) 양식에 맞춰 지출 및 지원금 교부
  - 지원금 교부 완료 후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 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I

## 사업 개요

## □ 목적

- 종자업체가 무병모수를 보유하여 무병재료(접수, 대목)의 자체 생산을 통한 무병묘 생산 확대 유도

## □ 사업내용

- 5대 과수\* 종자업체의 무병모수 관리를 위한 모수포(비가림 시설) 시설비 지원
- \* 5대 과수: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 □ 지원자격 및 요건

- 5대 과수의 무병모수를 보유하고 있거나 무병모수를 보유하고자 하는 종자업 등록자 또는 농업단체(농협 등)
- \* 지방비를 지원하는 해당 관할 지역 거주자가 아닌 사업소재지 기준으로 지원

## □ 사업신청

- 지원사업 대상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공모 참여

## □ 지원내용

- 5대 과수 무병화묘 생산의 재료가 되는 모수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가림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 지원기준 및 예산

- 지원기준(민간자본보조):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24년 사업비: 총 5개소 500백만원(국비 200, 지방비 200, 자부담 100)
  - 개소당 100백만원: 국비 40백만원, 지방비 40백만원, 자부담 20백만원

## □ 대상자 선정

- 지자체를 통해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 선정기준항목: 대상 작물, 모수 보유 여부, 업체 규모, 시설설치 규모, 사업계획 등
- 평가기준(안)

심사기준	심사항목
업체 역량	• 5대 과종 중 무병모수 보유여부
	• 현재 생산시설의 규모
	• 시설설치 면적의 규모
사업계획 우수성	• 무병모수 분양 및 보급종 생산계획의 구체성
	• 무병묘(보급종) 생산계획의 적절성
	• 무병묘(보급종) 생산계획 품종의 다양성
우선선정 대상	• 감귤·포도의 무병모수포 조성 여부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	센터장 유병천 주무관 김정아	054-912-0220 054-912-0240



## 1. 사업대상자

- 과수 무병묘 생산을 위한 무병 모수포 조성 지원을 희망하는 종자업자(단체)

\* 관련법령: 「종자산업법」 제10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 2. 지원자격 및 요건

- 5대 과수\* 무병모수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종자업 등록자 또는 농업단체

\* 5대 과수: 사과, 배, 감귤, 복숭아, 포도

## 3. 지원대상

- 2024년 무병 모수포 조성 선정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과수 무병묘 생산에 필요한 모수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가림 시설 설치

## 5. 사업규모 및 지원형태

- 사업비: 500백만원[국고 200(40%), 지방비 200(40%), 자부담 100(20%)]

- 사업개소: 5개소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

- 무병묘 생산을 위한 무병 모수포 조성 대상 작물이 감귤, 포도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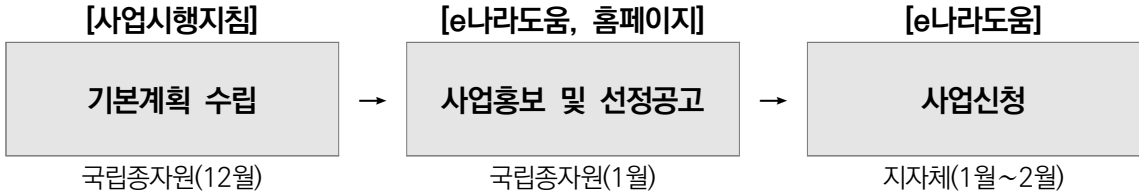
- 지원규모: 최대 100백만원/개소(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조성비용이 100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 비용 추가 가능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공고 및 신청



####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대상자 선정 공모(국립종자원)

- 무병묘 생산·공급을 위한 사업대상자 선정 공모계획 수립
-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공모 및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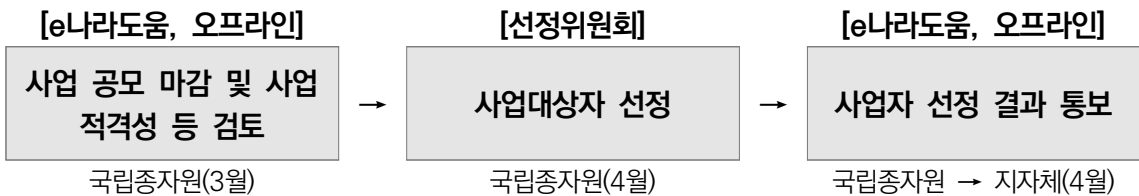
#### 사업 신청서 제출(종자업체 또는 농업단체)

- 공고문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첨부된 양식에 맞추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
- \* 지방비를 지원하는 해당 관할 지역 거주자가 아닌 사업소재지 기준으로 제출

#### 사업 공모 신청(시·군)

- 과수 종자업등록업체 또는 농업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 사업 신청 희망업체별 신청서 및 업체목록 취합하여 해당 시·군 담당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공모 신청실시

### 2. 사업자 선정



### 가. 사업 적격성 사전 검토

- 검토대상: 공모기간 내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종자업체 또는 농업단체
- 검토기간: 공모 마감 후 14일 이내
- 검토항목: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적정여부, 사업추진 계획의 적정성 등

### 나.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 적격성 사전 검토 결과 적격업체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
- 선정위원회는 공모 마감 후 30일 이내 개최
- 선정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여, 평가기준항목을 토대로 서면 평가로 실시하되 필요시 별도 현지실사 진행
- 평가기준 항목: 대상 작물, 모수 보유 여부, 업체 규모, 시설설치 규모, 사업계획 등
- 평가기준(안)

심사기준	심사항목
업체 역량	• 5대 과종 중 무병모수 보유여부
	• 현재 생산시설의 규모
	• 시설설치 면적의 규모
사업계획 우수성	• 무병모수 분양 및 보급종 생산계획의 구체성
	• 무병묘(보급종) 생산계획의 적절성
	• 무병묘(보급종) 생산계획 품종의 다양성
우선선정 대상	• 감귤·포도의 무병모수포 조성 여부

### 다. 사업자선정 결과 통보

-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최종사업자 선정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지
- 해당 시·군 담당자는 관할 업체에 결과 통지 및 신속한 사업 착수·진행 관리

## I

## 사업 개요

## □ 목적

- 무병묘의 생산을 위한 과수 우량묘목(원종) 생산·공급 기반 조성

## □ 사업내용

- 무병묘의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무병 원종·모수 확보와 무병재료(접수, 대목) 생산 및 유지관리 비용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특수법인)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무병 원종·모수, 무병재료 생산 및 기반조성 비용 지원
- 지원 기준
  - 생산지원(민간경상보조): 국고 60%, 자부담 40%
  - 기반조성(민간자본보조): 국고 100%
- '24년 사업비: 1,058백만원
  - 운영지원(민간경상보조): 758백만원(국비 455, 자부담 303)
  - 기반조성(민간자본보조): 300백만원(국비 300)

## □ 사업 신청

- 해당 없음

## □ 대상자 선정

- 해당 없음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	센터장 유병천 주무관 김정아	054-912-0220 054-912-0240

## 1. 사업대상자

- 묘목생산자단체: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 \* 관련법령: 「종자산업법」 제10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 2. 사업대상자 의무사항

- 품종의 무병화 처리를 위해 무병화처리 대상 품종 선정기준, 무병화처리 재료 선발 기준, 수수료 기준 등 내부규정 제정 및 운영
- 품질보증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의 운영, 피해보상 적립금 운용, 포장·종자검사의 검사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사방법 등에 대한 내부 규정 제정 및 시행
- 무병 재료 분양 업체의 자체보증과 이에 수반되는 포장·종자검사 수행
- 무병 접수 및 대목 공급 실적(묘목업체의 무병묘목 판매실적 포함) 관리

## 3. 사업대상과종: 사과, 포도, 감귤, 배, 복숭아

## 4. 지원자금 및 사용용도

- 지원자금 용도: 무병 원종·모수 확보와 무병재료(접수, 대목) 생산 및 기반조성 비용

## 5. 지원기준 및 예산

- 지원기준
    - 운영지원(민간경상보조): 국고 60%, 자부담 40%
    - 기반조성(민간자본보조): 국고 100%
  - '24년 사업비: 1,058백만원
    - 운영지원(민간경상보조): 758백만원(국비 455, 자부담 303)
    - 기반조성(민간자본보조): 300백만원(국비 300)
-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및 세부항목 및 사업비 조정 가능

### Ⅲ

## 사업 신청 및 시행관리

1. 사업 공고 및 신청: 비공모 사업
2. 사업 대상자 선정: 비공모 사업

## I 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							
내역사업명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용자금 (백만원)	1,000	
사업목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곤충 사육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곤충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사업 주요내용	○ 곤충 생산 관련 사육사, 저장고 등의 시설·설비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곤충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예정인 자							
지원한도	○ 개소당 3억원(지원액 기준)(용자, 자부담 포함)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용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용자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용 자	3,000	3,000	3,000	3,000	1,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그린바이오산업팀 시·군·구 곤충 담당부서			이상범 강훈구		044-201-2142 044-201-2134		
신청시기	'24. 1월 ~			사업시행기관		지자체(시·군·구)		



## 1. 사업대상자

- 곤충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예정인 농업인·농업법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업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신고된 곤충 종 이외의 곤충을 사육 예정인 경우, 사육 예정인 곤충 종에 대한 지원도 가능
    - \* 각 생산자는 「곤충의 사육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인·농업법인은 사업신청에서 제외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시설로 분류. 다만, 이 경우에는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신규로 곤충업에 진입하여 아직 곤충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자의 경우도 곤충 사육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사업신청 후 조건부 지원 가능(단, 사업 완료 후 의무 미이행 시 대출금 전액 환수)
  - \* 전문인력양성기관(별표2) 에서 실시하는 곤충 사육 관련 교육
  - ※ 토지 또는 곤충 사육시설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다만,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곤충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

### 3. 지원내용

- 곤충 생산 관련 사육사, 저장고 등의 시설·설비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곤충 생산 관련 사육사, 저장고 등의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곤충사육사 및 저온저장고 등 고정 건축물을 신축 및 개보수 시 관련 기자재 지원 가능하며, 기자재 단독지원은 불가
  - 건축물에 지원 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설계비, 감리비 등은 지원가능하나, 철거비는 지원 불가
- 곤충사육사: 곤충 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저장고: 곤충의 산물 및 부산물의 저장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사료 발효장: 곤충 먹이원 생산·발효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기자재: 곤충 사육을 위해 곤충사육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장비(항온기, 가습기, 사료분쇄기, 건조기, 세척기, 정선기, 사육부산물 처리장치 등)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융자 80%(이자보전, 이자율: 1%,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 (사업기간) 1년

### 6. 사업 완료 사업자의 필수 의무준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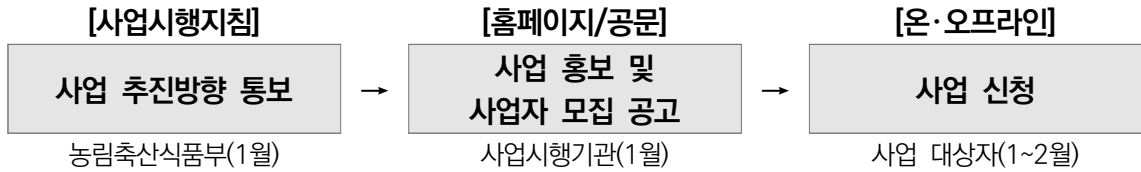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완료 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곤충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사육기준 및 규격)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간한 산업곤충 사육기준 및 규격(I, II), 식용곤충 안전사육 매뉴얼(식용곤충을 사육하는 경우)을 준수하여 곤충사육사, 기자재 설치
- (경영기록부) 수혜 사업자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
- 의무 미이행 사업자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사업을 조건부로 지원받은 사업자(곤충사육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신규 진입자)가 사업 완료 후 즉시 곤충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 전액 환수

##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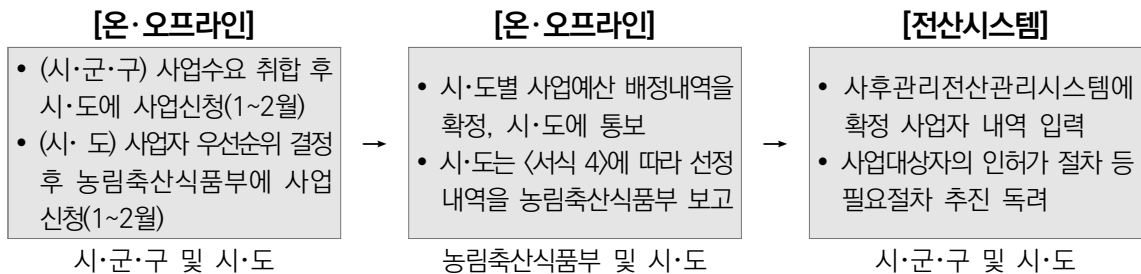
-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
- 지원 상한액: 3억원(사업비 기준)(용자·자부담 포함)
  - ※ 당해연도 자금 부족 시 차년도에 자금을 수령할 수 있음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는 지침 시달 후 각 행정일정에 따라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
- 사업대상자는 시·군·구(곤충산업 담당부서)에 <서식 1>에 따라 사업 신청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로부터 <서식 2>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와 <서식 3> 사업대상자 동의서를 작성·제출받아 보관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사업대상자가 사업 계획에 해당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별표1>를 기준으로 사업검토 및 심의 후 시·도에 사업 신청
- 시·도는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별표1>를 기준으로 사업을 신청한 사업대상자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서식 4>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 수요 및 예산, 2023년 추진실적 등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예산 배정내역을 확정하여 시·도에 통보

- 각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예산을 토대로 사업대상자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서식 4>에 따라 보고
  -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보조금이 투입된 자산에 담보설정이 예상되는 경우, <서식4>에 따라 담보설정 예상액에 대한 승인신청을 포함하여 제출할 것
    - \* 예: 곤충사육사를 신축 또는 개보수 하는 사업대상자가 해당 사육사에 담보설정하여 이 사업에 따른 용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시·군·구는 사업자가 확정되는 대로 사후관리전산관리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 사후관리조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 및 시·군·구는 확정된 사업자가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인허가 등)을 추진토록 적극 조치
  - 자금 배정 확정 후 신속히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에게 안내

## I 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곤충산업화지원				예산 (백만원)	600	
사업목적	○ 곤충의 생산·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산업화 기반 구축						
근거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사업 주요내용	○ 거점기관과 협력농가에 곤충(누에) 생산 및 가공설비 등 지원 * 개소당 총사업비 1,000백만원(국비 300), '24년 2개소 신규 지원, 사업기간:2년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 생산업 또는 가공업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지원내용	○ 거점기관은 협력농가에 곤충종자보급, 곤충 생산 장비 보급 및 관리, 먹이원 공급, 수매·가공 등을 통해 지원하고 협력농가는 균일한 품질의 곤충생산						
사업 신청	○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를 통해 신청 * 증빙서류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에서 확인 ○ 신청시기·방법 : '23.11, 시·군·구 방문신청						
지원대상 선정	○ 기초지자체에서는 신청받은 내용에 대해 사업 추진 가능여부 등을 확인(필수사항) 후 광역지자체로 제출, 광역지자체에서는 신청자에 대해서 단순후보로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하며, 선정평가 심의(서면 및 발표)를 통해 사업대상자 2개소 선정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40	융자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000	2,000	2,000	3,800		
	국 고	600	600	600	1,140		
	지방비	800	800	800	1,520		
자부담	600	600	600	1,1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사무관 이상범 주무관 강훈구		044-201-2142 044-201-2134	
지자체	시·군·구 곤충담당 부서			-		-	

## 1. 사업대상자

- (거점기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농·축협, 곤충을 사육 또는 가공하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 (지원자격 및 요건 필수충족)
  - \* (양잠) 산업 규모를 감안하여 양잠·상묘·잠종 농가 등을 총괄하는 단체 지원가능
  - \* (화분매개) 거점기관에서 생산, 증식 및 경종 농가 공급 가능
- (협력농가)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지원자격 및 요건 모두 필수충족)
  - \* (화분매개) 기초지자체 및 시·군 기술센터 포함 가능

## 2. 지원자격 및 요건: 참여농가(협력농가 포함)의 경우 아래 요건 모두 필수충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가공업 신고확인증을 받은자 또는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 고시)을 준수하는 자
  - 신고된 곤충 종 이외의 곤충을 사육 예정인 경우도 지원 가능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에서 제외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시설로 분류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제외

### 3. 지원내용

- 거점기관과 협력농가 대상 산업화에 필요한 건축비, 시설·장비비 등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곤충(누에포함)관련 생산시설, 가공시설 등 관련 시설 신축 및 기자재 지원
  - \* 건축물에 지원 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설계비, 감리비 등은 지원 가능하나, 철거비는 지원 불가
  - \* 곤충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 곤충사육사 : 곤충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저장고 : 곤충의 먹이, 생산물의 저장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곤충 및 종충 생산 시설 : 사육사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비(사육기, 선별기, 세척기, 건조기 등), 곤충의 종충생산(부화장, 부화기 등)
- 곤충 가공 시설 : 착유기, 분쇄기, 포장기 등
- 기타 식·사료용 곤충 생산·가공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국고보조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 거점기관이 지자체(광역 및 기초)인 경우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 \*\* 거점기관 및 협력농가가 누에를 사육하는 경우 지방비 일부를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사업범위)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곤충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사업기간) 총 2년
  - \* 신규 사업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 다만, 수요가 부족하고 지자체를 거점으로 하는 보조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때 사업집행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연장지원 가능

### 6. 사업완료 사업자의 필수 의무준수사항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완료 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곤충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사육기준 및 규격)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간한 산업곤충 사육기준 및 규격(I, II), 식용곤충 안전사육 매뉴얼(식용곤충을 사육하는 경우)을 준수하여 곤충사육사, 기자재 설치



- (경영기록부) 거점기관과 협력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
- 의무 미이행 사업자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사업비(개소당): 10억원
- 지원한도액: 국비 3억원, 지방비 4억원
  - \* 거점기관이 지자체(광역 및 기초)인 경우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 \*\* 거점기관 및 협력농가가 누에를 사육하는 경우 지방비 일부를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범위: 곤충 산업화 추진을 위한 건축비, 시설비, 기자재 등

## 8.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경영체 등록확인서 혹은 증명서(참여농가(농업법인) 모두)
- 곤충업 신고 확인증(참여농가(농업법인) 모두, 누에 포함)
  - \* 양잠농가의 경우, 소속된 양잠협동조합 혹은 (사)한국양잠연합회 등으로부터 양잠경영확인서(양잠업 경력 및 사실확인 증빙자료) 추가 제출
- '21~'23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 등 증빙자료(참여농가(농업법인) 모두)
  - \* 통장거래내역은 증빙자료로 취급 불가
- 사업 신청서(〈서식 1〉 활용)
- 사업계획서(반드시 첨부)
  - \*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아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능

### I. 사업개요

1. 성과 목표 2. 주요 추진계획 3. 사업특징, 장점 등

### II. 사업신청자 현황

1. 법인·농가 연혁, 인원 2. 과거 곤충(양잠포함)관련 사업 실적 등

### III. 세부 사업계획

1. 곤충 생산·가공 시설 내역
2. 생산 및 유통·판매 계획
3. 수익분석 4. 운영계획 5. 농가협력 방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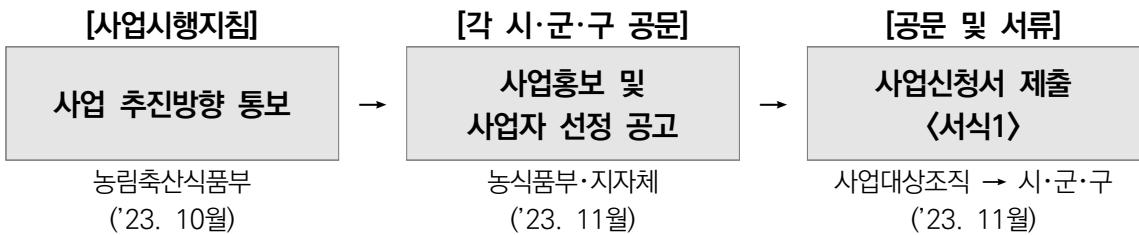
- 부지확보 증빙서류(미확보시 계획서)
- 사업참여 농가 동의서(참여농가(농업법인) 모두)
- 지자체 협의 증빙자료(공문 등) :  
참여하는 모든 농가(협력농가 포함)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사업추진  
가능여부 등을 검토받은 뒤 협의 증빙자료 제출(공문 등)
- 자부담 예산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참여농가 모두)
  - ※ 전년도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경우 사업연장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집행실적 및 성과와 관련된  
증빙자료(사진필수 포함) 및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서류제출

☞ 전체 보조사업자(지자체 포함)는 사업자 선정 이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사업자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집행, 집행내역 검토, 정산보고, 반납 등을 시행하여야함

\* e-나라도움시스템(업무포털→사용자 매뉴얼)에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참고

\* 불용·이자액 반납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정산액에 대해서만 가능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알림

#### 시·도 및 시·군·구

- 시·도지사는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알림(공문 접수 후 즉시 이첩)
- 시장·군수·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에 사업 공고를 통해 사업수요조사
- 시·군·구는 신청대상자에게 사업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신청 대상자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도록 안내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되지 않도록 건축법, 농지법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사항을 검토 및 안내필요(협력농가 포함 모든 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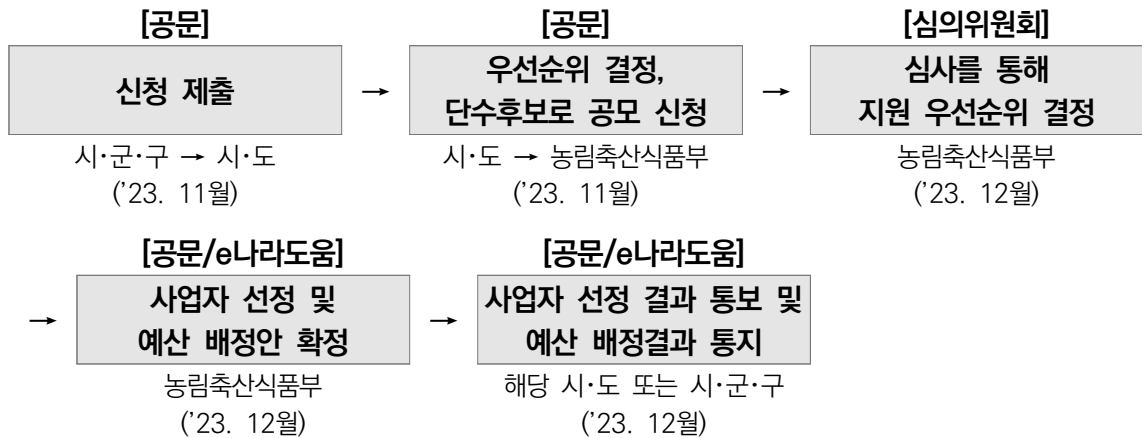
#### 사업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시·군·구(곤충산업 담당부서)에 사업 신청
  - 신청은 거점기관 1개로 통합하여 진행

- 협력농가와 거점기관의 소관 지자체가 다를 경우 관련 지자체 전부와 협의한 뒤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및 선정은 거점기관이 속한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지방비 부담 및 사업추진, 사후관리는 각 소속 지자체에서 시행

\* 사업 신청서 : <서식 1>

## 2. 사업자 선정



### 시·도 및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에 사업 공고를 통해 접수된 사업신청에 대해 사업 추진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한 후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서식 1>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단수후보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 신청
  - 사업신청자(협력농가 포함)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 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발표평가(PPT)를 통해 선정(필요시 현장평가 병행)
    - \* 사업대상자 평가기준 : <별표>
  -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최고 점수(각 1건)를 제외하고 평균하여 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자체를 선정
    - ※ 단수 후보일 경우 절대평가 실시, 70점 이상일 경우 사업자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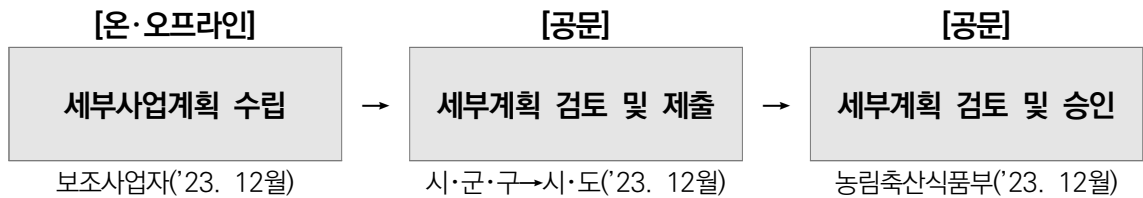
- 거점을 지자체 및 농·축협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최대 1개소 선정
  - \* 다만, 지자체 및 농·축협 거점을 제외한 민간 신청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 및 농·축협 거점 1개소 이상 선정가능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를 확인한 후 해당 지자체에 통지
  - \* 사업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시·도 및 시·군·구**

- 각 시·도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해당 시·군·구 및 사업대상 조직에 즉시 알림
- 해당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조직에 알림

**3. 세부계획수립, 교부결정 및 시행단계**

**가. 세부계획 수립·승인**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

- 사업자로 확정된 대상자(보조사업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 검토에 따른 부대의견이 있을 시에는 세부계획에 반영
- 보조사업자로 확정된 대상자는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시행
  -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조정 절차>에 따름

**시·도 및 시·군·구**

- 시·군·구는 선정된 사업자의 세부사업계획을 관할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세부사업계획 제출이 기한 내 이뤄지지 않을 시, 해당 시·도(광역시)에 대해 차년도 곤충산업화지원, 곤충사육시설현대화, 곤충유통사업지원 등 곤충산업 관련 사업 대상자 선정평가 시 감점(5점) 조치

### < 사업계획 조정 절차 >

- 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 10% 미만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시·군·구의 자체변경으로 가능하고, 10% 이상~30% 미만을 조정할 경우는 관할 시·도의 승인 필요
- 사업계획 변경 내역은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보조사업자의 세부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승인

## I 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곤충유통사업지원				예산 (백만원)	36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곤충유통사업단(가칭)을 통한 곤충 농가 조직화, 품질관리,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곤충산업의 영세성을 극복</li> <li>○ 곤충생산농가의 역량강화를 통한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 부여 및 곤충산업 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곤충산업 수요를 견인</li> </ul>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li> <li>○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li> </ul>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홍보·마케팅 경비 지원</li> <li>* 개소당 총사업비 240백만원(국비120), 3개소 지원</li> </ul>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단체·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하여, 규모화·조직화·전문화에 기반하여 단일화된 마케팅 창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가칭, 곤충유통사업단)</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홍보·마케팅 경비 지원</li> </ul>					
사업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를 통해 신청</li> <li>* 증빙서류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에서 확인</li> <li>○ 신청시기·방법 : '23.11, 시·군·구 방문신청</li> </ul>					
지원대상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지자체에서는 신청받은 내용에 대해 사업 추진 가능여부 등을 확인(필수사항) 후 광역지자체로 제출, 광역지자체에서는 신청자에 대해서 단수후보로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하며, 선정평가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자 3개소 선정</li> </ul>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520	720	720	720	
	국 고	260	360	360	360	
지방비	260	360	360	3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사무관 이상범 주무관 강훈구		044-201-2142 044-201-2134	
지자체	시·군·구 곤충담당 부서		-		-	

##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생산자단체(양잠협동조합 포함)·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된 곤충유통사업단(가칭)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단체·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하여, 규모화·조직화·전문화에 기반하여 단일화된 마케팅 창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생산자단체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운영되는 조직(가칭, 곤충유통사업단)
  - \* 참여 희망자는 곤충유통사업단 조직을 통해 신청이 가능, 개별조직 신청 제외
- (생산자단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 생산업 신고 농가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조직
  - \* 동일 곤충종별 최소 2~4농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단일 시군경계를 벗어나는 생산자 단체인 연합, 광역조직도 인정하되,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지자체간 사업신청 전 협의 후 조정 필요
  - \* 각 생산자는 「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가 혹은 농업법인 대상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가는 지원 제외
  -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사육시설로 분류
- (연구기관) 기존에 설치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또는 지역바이오특화센터, 농업기술원·기술센터, 민간연구소 등의 연구·가공시설 활용가능 조직
  - \* 단순히 생산농가 조직으로는 지원되지 않으며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나 연구기관, 유통조직과의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유통조직) 유통망이 확보된 제조·가공업체, 유통·판매업체 또는 판매중개업체 등 유통·판매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 \* 단순히 곤충 유통업 신고가 되어있는 농가 제외, 유통·판매 능력에 대한 증빙필요
- 구성된 사업단은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 및 성과목표 등)를 포함한 사업신청서 제출
  - \* 사업계획서는 조직 구성체계 및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 일정 등을 포함



### 3. 지원대상

-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홍보·마케팅 경비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 조직화) 산지 농가 조직화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농가 교육비, 산지 및 소비지 품질조사비, 농가조직화 컨설팅 등
  - \* 개별 경영체 등에 사용되는 상시적 인건비, 하드웨어 구입비(시설·기계장비 등) 등 사업목적과 배치되는 비용은 지원 제외
  - \*\* 연장해서 선정된 곤충유통사업단의 경우, 농가 조직화를 제외한 항목에 대해 지원가능
- (홍보·마케팅 등) 곤충 상품 개발비용, 국내외 시장개척비용, 바이어 사업설명회·마케팅 협의회, 광고 및 홍보비 등
- (지자체 주관 교육) 농가 및 산지조직 조직화 교육비, 홍보·마케팅 교육비 등
  - \* <별표> 곤충유통사업지원 세부항목 참조

###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기준

#### 가. 지원형태

- 보조(100%)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관리 주체 : 시·도, 시·군·구(지방비 매칭 조직)

#### 나. 지원한도액

- 1개소 × 24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다. 사업기간 : 1년

- 신규 사업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나, 사업수요가 없는 경우 사업집행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연장지원 가능

### 6.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경영체 등록확인서 혹은 증명서(참여농가(농업법인) 모두)
- 곤충업 신고 확인증(참여농가(농업법인) 모두, 누에 포함)
- 사업 신청서(<서식 1>양식 활용)

## ○ 사업추진계획서(반드시 첨부)

\*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아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능

### I. 사업개요

1. 성과 목표 2. 주요 추진계획 3. 사업특징, 장점 등

### II. 사업신청자 현황

1. 법인·농가 연혁, 인원 2. 과거 곤충(양잠포함)관련 사업 실적 등

### III. 세부 사업계획

1. 신청동기 및 추진의지

2. 구체적인 추진계획

3. 농가협력 방안 등

## ○ 사업참여 농가 동의서(참여농가(농업법인) 모두)

## ○ 기타 사업내용 증빙자료(유통·판매 가능역량 등)

※ 전년도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경우 사업연장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집행실적 및 성과와 관련된 증빙자료(사진필수 포함) 및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서류제출

###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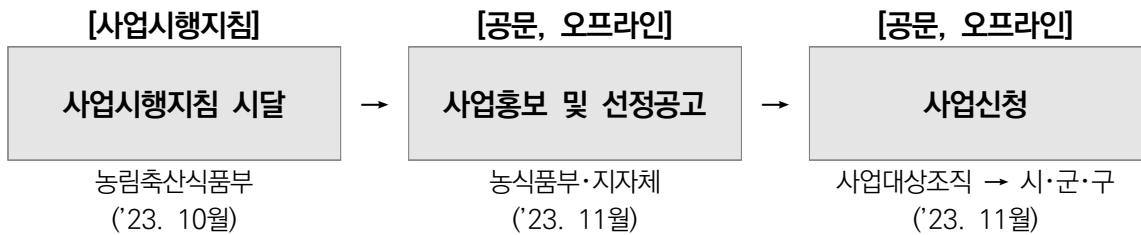
## 사업 신청 및 선정

☞ 전체 보조사업자(지자체 포함)는 사업자 선정 이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사업자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집행, 집행내역 검토, 정산보고, 반납 등을 시행하여야함

\* e-나라도움시스템(업무포털→사용자 매뉴얼)에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참고

\* 불용·이자액 반납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정산액에 대해서만 가능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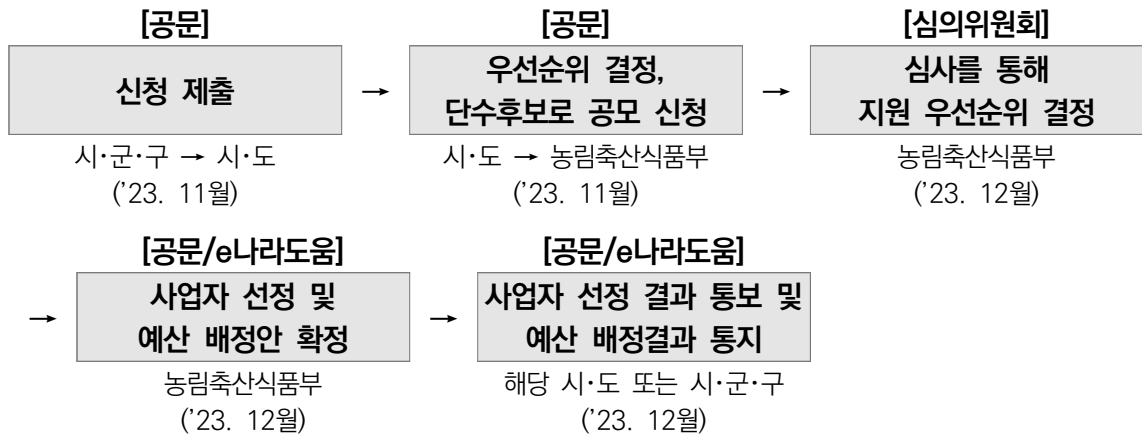
#### 시·도 및 시·군·구

- 시·도지사는 당해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알림(공문 접수 후 즉시 이첩)
- 시장·군수·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에 사업 공고를 통해 사업수요조사
- 시·군·구는 신청대상자에게 사업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신청 대상자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도록 안내

#### 사업대상자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은 시·군·구(곤충산업 담당부서)에 사업 신청
- \* 사업 신청서 : <서식 1>

## 2. 사업자 선정



### 시·도 및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에 사업 공고를 통해 접수된 사업신청을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서식 1〉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단수후보**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알림
  -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능력, 지방비 확보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또는 지역연구기관(농업기술원, 기술센터, 민간 연구소 등), 유통조직과의 연계성, 판매유통계획 등을 평가
    - \*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나 연구기관, 유통조직과의 연계가 없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 **사업대상자 평가기준 : <별표2>**
    - ※ **단수 후보일 경우 절대평가 실시, 70점 이상일 경우 사업자로 선정**
- 신규 사업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수요부족시 전년도 선정조직에 대해 사업내용 및 집행실적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 후 1년 연장지원가능, 다만 홍보 및 마케팅, 교육에 관한 내용에 한하여만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를 확정된 후 해당 지자체에 통지
  - \* 사업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 시·도 및 시·군·구

- 각 시·도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해당 시·군·구 및 사업대상 조직에 즉시 알림
- 해당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조직에게 알림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농생명산업

---

### 7-3. 동물복지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온라인 플랫폼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도모

## □ 사업내용

-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Chewy.com 등) 입점 및 해외 진출 공동 대응체계 마련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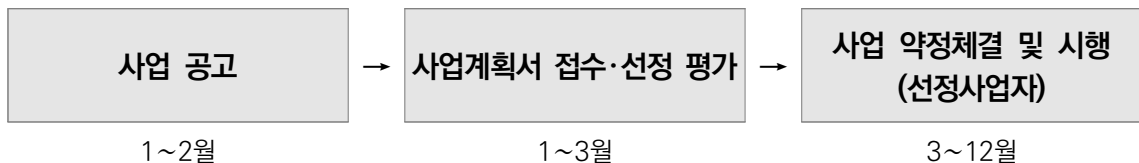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Chewy.com 등) 입점 및 해외 진출 공동 대응체계 마련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100%
- '24년 예산 : 50백만원

## □ 사업 신청

-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신청기간 :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신청시스템 확인 필요



## □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사무관 박찬우 주무관 노금성	044-201-2656 044-201-265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기업육성부	부 장 김의정 차 장 조창식	061-931-0860 061-931-0861

### 1. 사업대상자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출 유망시장 대상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및 연구기관 등

### 3. 지원대상

-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Chewy.com 등) 입점 및 해외 진출 공동 대응체계 마련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의 사업별 지원 내용에 맞게 자금 사용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민간경상보조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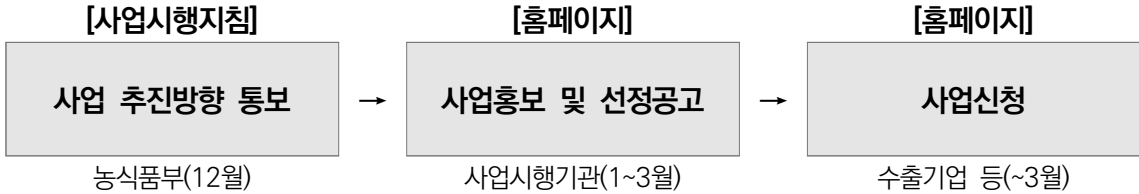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및 기준, 범위 등 사업별 상이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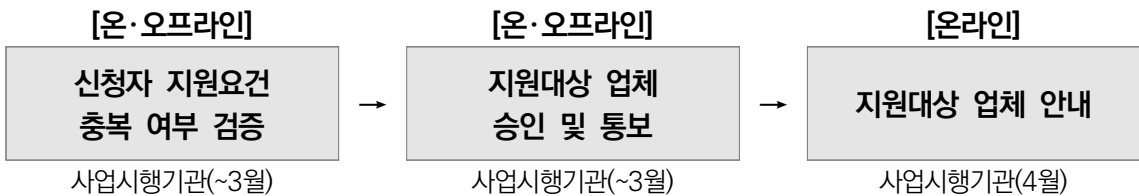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유통공사)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한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공고하고, 지원요건\*을 충족 하는 신청자는 지원대상 업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각 사업 항목별 지원요건 상이

### 2. 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적격업체에 한해 지원대상 승인 및 통보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등을 안내한다.

## I 사업 개요

## □ 목 적

- 박람회·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 법률 자문, 해외인증 지원 등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도모

## □ 사업내용

- 박람회·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 법률 자문, 홈페이지·카달로그 현지화, 해외인증 등 현지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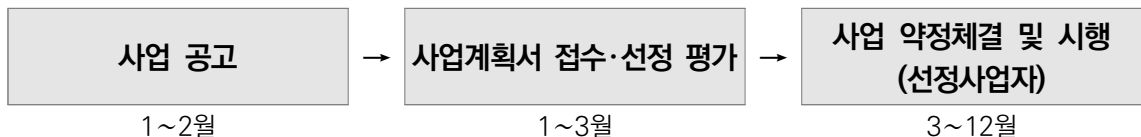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박람회·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 법률 자문·홈페이지·카달로그 현지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70%~100%, 자부담 0~30%  
※ 지원 단가, 지원 물량, 지원 한도 등 사업별 상이
- '24년 예산 : 440백만원

## □ 사업 신청

-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 필요

## □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사무관 박찬우 주무관 노금성	044-201-2656 044-201-265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기업육성부	부 장 김의정 차 장 조창식	061-931-0860 061-931-0861

### 1. 사업대상자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출 유망시장 대상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및 연구기관 등

### 3. 지원대상

- 지원 내용·품목 : 박람회·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 법률 자문·홈페이지·카달로그 현지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의 사업별 지원 내용에 맞게 자금 사용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민간경상보조 7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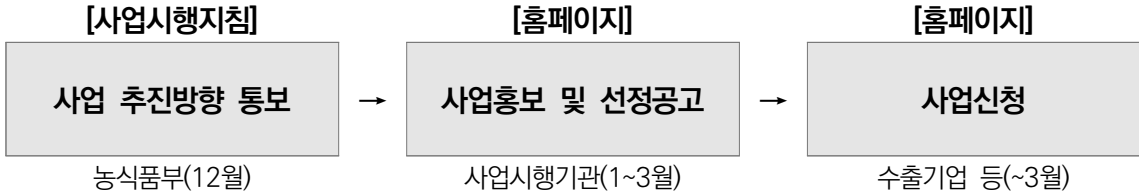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및 기준, 범위 등 사업별 상이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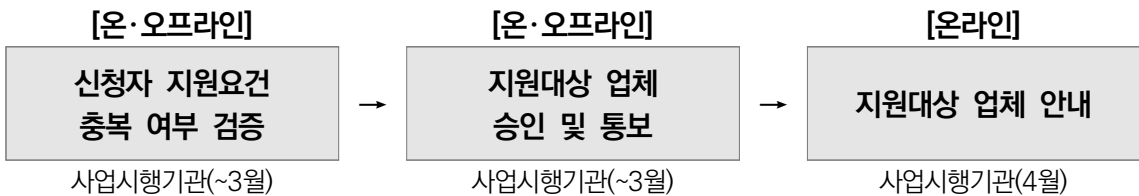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유통공사)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한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공고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지원대상 업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각 사업 항목별 지원요건 상이

### 2. 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적격업체에 한해 지원대상 승인 및 통보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등을 안내한다.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유망시장 발굴, 박람회 개최, 상품화 및 부가가치 증대를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해외 수출산업화 도모

## □ 사업내용

- 수출 유망국 시장조사 및 K-Pet 수출박람회 개최, 상품화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사업비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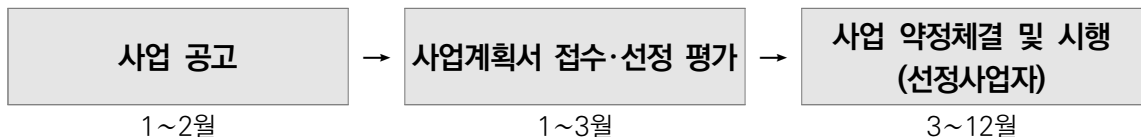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수출 유망국 시장조사, K-Pet 수출박람회 개최 및 상품 연구·개발 등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70%~100%, 자부담 0~30%  
※ 지원 단가, 지원 물량, 지원 한도 등 사업별 상이
- '24년 예산 : 1,100백만원

## □ 사업 신청

-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 필요

## □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사무관 박찬우 주무관 노금성	044-201-2656 044-201-265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기업육성부	부 장 김의정 차 장 조창식	061-931-0860 061-931-0861

### 1. 사업대상자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출 유망시장 대상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및 연구기관 등

### 3. 지원대상

- 수출 유망시장 시장조사, K-Pet 수출박람회 개최 및 상품 연구·개발 등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의 사업별 지원 내용에 맞게 자금 사용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민간경상보조 7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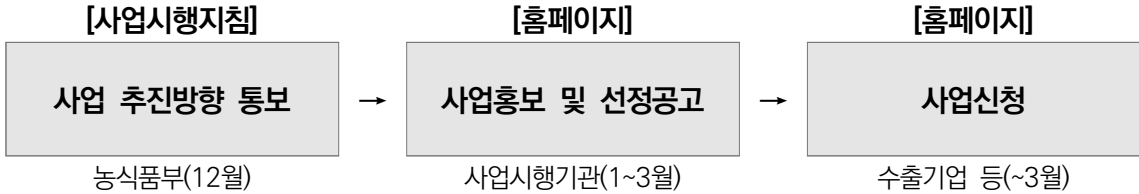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및 기준, 범위 등 사업별 상이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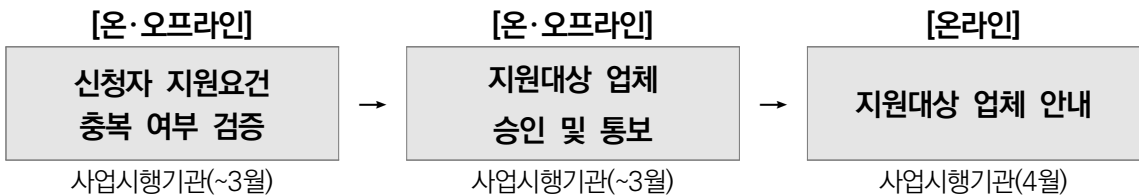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유통공사)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한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공고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지원대상 업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각 사업 항목별 지원요건 상이

### 2. 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적격업체에 한해 지원대상 승인 및 통보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등을 안내한다.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농생명산업

---

### 7-4. 창업, 농산업인력



## I 사업 개요

## □ 목 적

- 농산업·식품 분야 기술기반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통한 미래 농업·농촌의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첨단기술(그린바이오 및 스마트 농업)분야의 국내 산업생태계 육성 및 스타트업의 혁신성장 도모

## □ 사업 내용

- 농식품 분야(예비)창업자 및 첨단기술(그린바이오 및 스마트농업)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프로그램·사업모델 고도화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구분		지원 자격 및 요건	비고
농식품분야	예비창업자	농식품 분야 예비 벤처 창업자	
	창업기업	농식품 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첨단기술 (그린바이오 및 스마트 농업)		첨단기술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농식품 분야) 사업화 자금, 창업 상담 및 컨설팅, 제품 판로 제공 등
  - (첨단기술분야) 혁신기술·제품의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 및 특화 교육·투자 IR, 멘토링 프로그램 등

○ 지원 기준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예비창업자	50팀, 10백만원/社	국고 70%, 자부담 현금 30%
창업기업*	300社, 30~60백만원/社	국고 70%, 자부담 현금 30%
첨단기술 (그린바이오 및 스마트농업)	25社, 300백만원/社	국고 70%, 자부담 현금 20%, 현금 10%

\* 계속지원 기업 중 연말 창업진행도평가를 통해 우수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 상향 지급

○ '24년 예산 : 13,125백만원

□ 사업 신청

- 농식품 창업 정보망(www.a-startups.or.kr)을 통해 사업 소개 및 공고
- 신청기간 : 매년 초

□ 대상자 선정

- (농식품분야) 자격검토 → 서류 평가 → 발표 평가 → 심의조정위원회의 → 현장확인 (필요시)
  - 사업·기술경쟁력과 대표자 역량, 기대효과 등을 평가
- (첨단기술분야) 자격검토→서류 평가→발표 및 현장평가→심의조정위원회의
  - 사업·기술경쟁력과 대표자 역량, 기대효과 등을 평가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사무관 권병철 주무관 이지원	044-201-2425 044-201-2422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창업육성팀	팀 장 이경원 선임연구원 임동하 연구원 류훈희	063-919-1430 063-919-1435 063-919-1431



## 1. 사업대상자

- (농식품분야) 농식품 분야 예비 벤처 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등
- (첨단기술분야) 첨단기술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 2. 신청자격 및 요건

- (농식품분야)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 농식품 및 농산업 기술 분야로 1년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팀(모집마감일 기준 예비창업팀 신분-사업자등록사실이 없을 것)
  - 농식품 창업기업(농식품 벤처육성지원기업) : 농식품 및 농산업 기술 분야 창업 기업으로 공고 모집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창업기업(자)

- \* 제외 : ① 공고 모집마감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기업)  
 ② 동일 기술, 동일 사업계획서로 창업지원 정부사업(R&D지원사업 제외)의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  
 ③ '(구)농촌현장 창업보육 지원사업' 내지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의 졸업기업  
 ④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자,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자(기업)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기업  
 ⑥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첨단기술분야) 첨단기술(그린바이오 및 스마트농업) 분야기업

- \* 제외 : ① 본 사업공고 마감일 현재 동일기술, 사업계획서로 타 지원사업 받고 있는 기업  
 ②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  
 ③ 부도, 휴·폐업기업 등 채무불이행 확인 기업  
 ④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자,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자(기업)  
 ⑤ 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필요

### 3. 지원내용

#### ○ 농식품분야

- 국고지원금 : (창업기업) 기업당 평균 25백만원
  - \* 최대 42백만원, 최저 21백만원(예비창업자) 기업당 7백만원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창업 상담 및 컨설팅, 제품 판로 제공 등

#### ○ 첨단기술분야

- 국고지원금 : 기업당 210백만원(그린바이오분야, 스마트농업 각 10社 이상, 총 25社)
- 지원 내용 : 혁신 기술·제품의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 및 특화 교육·투자 IR·기업별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농식품분야) 선정된 사업 및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소요자금 제공

- 비목 : 재료비, 시제품 개발 용역비, 임차비(장치·사무실·공장),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시험인증비, 전시회 참가비 등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등
  - \* 제외 : ①영구적 활용이 가능한 자산의 취득, 인건비, 여비, ②사업 및 창업아이템과 관련이 없는 항목에 집행하는 경우, ③타 기관의 금전적 지원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 ④벤처육성기업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본인 소유의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등

#### ○ (첨단기술분야) 기술 및 아이템 개발을 위한 기술의 고도화, 제품사업화, 공정개선 등에 소요자금 제공

- 비목 : 인건비, 용역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유지비, 시험인증비·전시회 참가비, 기술이전 및 가치평가 등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공정개선비, 회계정산비
  - \* 인건비 : 사업 참여 1년미만의 인력 인건비
  - \* 지급수수료 : 전문가 컨설팅, 기자재 임차, 시험분석, 기술이전 및 가치평가, 교육훈련비 등
  -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아이템과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관련비용
  - \* 공정개선비 : 기 구축된 공정에 대한 개선비용으로 사업계획서상 주력아이템의 공정개선에 소요되는 공정개발비 또는 설계비 등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70%, 자부담 30%
- 사업범위 : 선정된 사업 및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소요자금, 기술 및 아이템 개발을 위한 기술의 고도화, 제품사업화, 공정개선 등에 소요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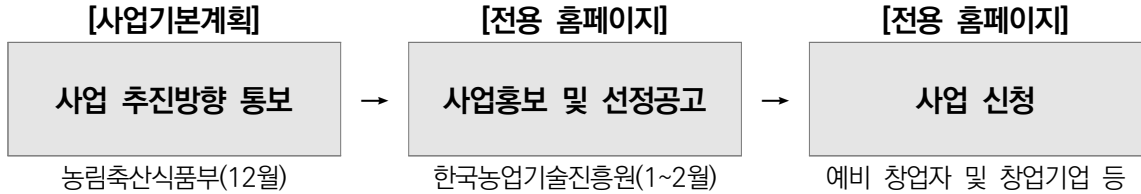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식품분야) 예비창업자별 10백만원 / 농식품 창업기업 당 60백만원 이내  
\* 국고 70%, 자부담 현금 30%
- (첨단기술분야) 기업당 최대 300백만원  
\* 국고 70%, 자부담 현물 20% 및 현금 10%

###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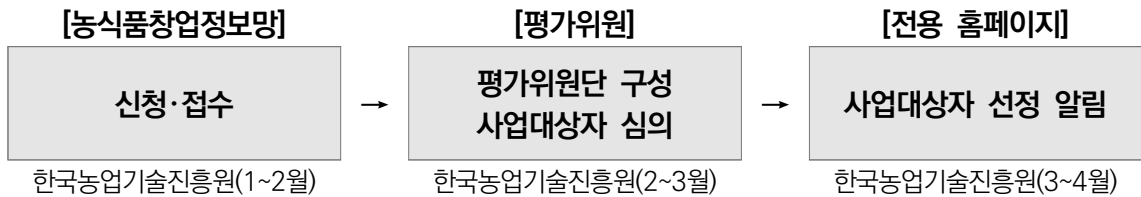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년도 12월까지 사업 기본계획을 시달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신속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사업 홍보 및 사업대상자 공고를 실시한다.

### 2. 사업자 선정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공고내용에 따라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에서의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창업자의 경영, 마케팅 등 현장 실무지식 습득을 지원

## □ 사업내용

-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에서의 현장실습 지원, 창업 실무·기업경영 관련 실무교육, 인턴·선배 창업자의 네트워크 구축, 멘토링 등 제공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인턴) 농식품 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 또는 발굴 의지를 지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 (기업) 상시근로자 3인이상 및 매출액 1억 이상의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현장실습 지원(2~3개월) 및 인턴지원금, 창업교육 및 멘토링 등
- 지원 규모 : 예비창업자(35명) 및 농식품 창업기업(35개사 이내)
- '24년 예산 : 302백만원(국고 100%)

## □ 사업 신청

- 신청방법 : 농식품 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http://www.a-startups.or.kr))을 통해 사업 소개 및 공고
- 제출서류
  - 인턴 : 참여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등
  - 기업 : 참여신청서, 재무제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 □ 대상자 선정

- (평가방법) 기업 개별탐색 또는 매칭을 통해 운영계획서 작성을 완료한 참여인턴과 기업의 인턴십 활동·운영 계획 등을 평가하여 최종 대상 선정
- (평가기준) 창업가적 자질, 인턴십 운영계획, 사업화아이템 및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0점 이상 득점자 중 선정규모 내 상위 35명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사무관 권병철	044-201-2425
		주무관 이지원	044-201-2422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창업육성팀	팀 장 이경원	063-919-1430
		연구원 정의진	063-919-1432

## 1. 사업대상자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기업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인턴
  - 농·식품 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 또는 발굴 의지를 지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 인턴 기간(2~3개월) 동안 현장실습 경험이 가능한 자
- 기업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신청일 기준) 및 매출액 1억원 이상(전년도 또는 공고일 기준 1년 전)의 농·식품 분야 기업
  - \*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증빙된 매출을 1년으로 환산((창업기간 매출/창업경과개월수)X12))
  - 유망 청년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현장 인턴 기회 제공이 가능한 농·식품 분야 기업
  - 정부 창업지원사업 시행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협약 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 하는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등 제외

## 3. 지원대상

- 인턴활동 및 기업 멘토링 지원금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인턴) 참여 기업에서의 인턴 실습에 대한 지원금 지급(2~3개월, 주 40시간)
- (기업) 참여 인턴에게 멘토링 제공에 대한 기업 지원금 지급(주 1회 4시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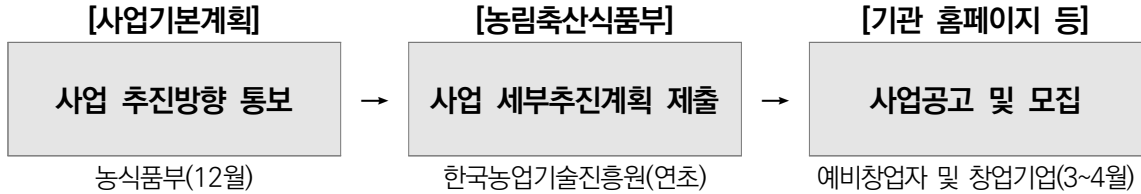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100%
- 사업범위 : 인턴활동지원, 기업멘토링, 후속 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

###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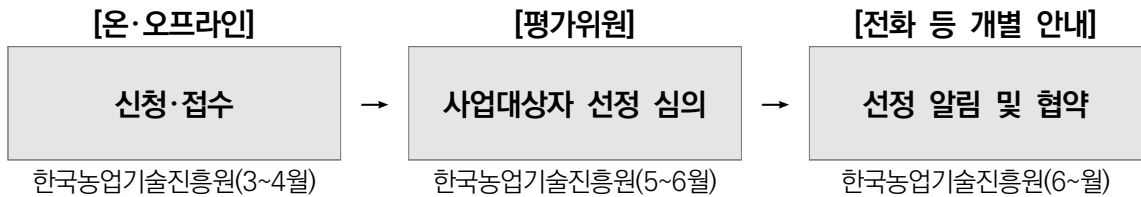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 기본계획을 시달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신속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사업 홍보 및 사업대상자 공고를 실시한다.

### 2. 사업자 선정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내용에 따라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다양한 유통사와 상생협력 체계 구축으로 우수창업제품의 홍보 및 프로모션을 통한 매출증대 지원

## □ 사업내용

- 창업 초기업체 제품의 원활한 판매 및 홍보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연계, 판로 네트워킹 등을 제공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식품 벤처육성기업 등 온오프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7년 이내 농식품창업기업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농식품 창업제품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
- '24년 예산 : 805백만원(국비 100%)

## □ 사업 신청

- 농식품 창업 정보망([www.a-startups.or.kr](http://www.a-startups.or.kr))를 통해 사업 소개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 대상자 선정

- 내역사업별 내용에 맞게 수립한 세부계획에 따라 대상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사무관 권병철 주무관 이지원	044-201-2425 044-201-2422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창업육성팀	팀 장 이경원 전임연구원 최진수	063-919-1430 063-919-1433

### 1. 사업대상자

- 농식품 분야 7년 이내 창업기업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온·오프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7년 이내 창업기업

### 3.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연계 및 프로모션 참가기회 제공
- 스마트 농기자재 판로지원을 위한 시연회·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
- 판로성과 확산 및 유관기관·소비자 연계를 위한 박람회·품평회 운영
- 판로지원 확대를 위한 마케팅·홍보사업 운영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운영 및 판촉비용
  - (기획전) 할인쿠폰, 유통채널 보유 광고비, 판매수수료 등
  - (전문가) 입점기업 선발에 필요한 유통분야 전문가 활용비
- 스마트 농기자재 판로지원 관련 시연회 및 컨설팅 비용
  - (시연회) 시연회장 조성 및 운영비용, 기업별 참가비용(운반비 등)
  - (전문가) 공공조달 진입 전문가 활용비
- 박람회·품평회 등 판로성과 확산행사 운영비
  - (행사운영) 행사장 조성 및 운영 관련 제반비용
- 마케팅·홍보사업 운영비
  - (광고) 온·오프라인 광고채널 활용비, 홍보물품 제작·배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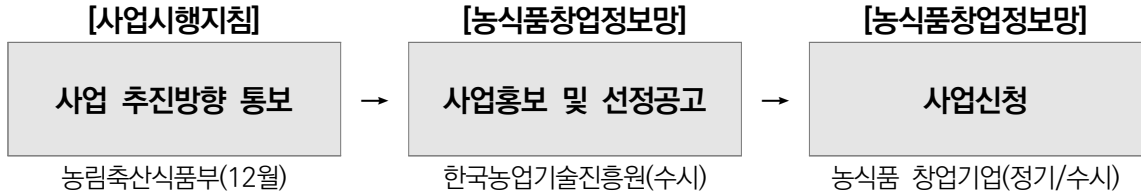
### 5. 지원형태

- 자금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 기준 : 국비 100%
- 사업범위 : 판로지원 유통채널 운영 및 판촉 등 비용

###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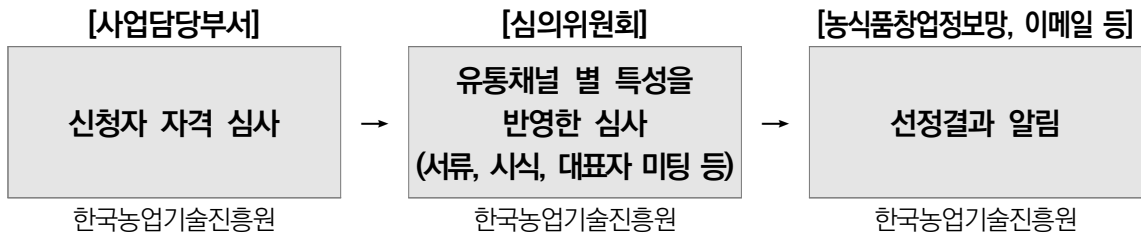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년도 12월까지 사업 기본계획을 시달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신속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사업 홍보 및 사업대상자 공고를 실시한다.

### 2. 사업자 선정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공고내용에 따라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유통채널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식품 분야 초기 투자 생태계 활성화 기여

## □ 사업내용

- 농식품 분야 크라우드펀딩 지원으로 벤처창업기업이 소액투자를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 기업 등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크라우드펀딩 관련 컨설팅 및 수수료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100%
- '24년 예산 : 600백만원(국비 100%)

## □ 사업 신청

- 접 수 처 : 농식품투자정보플랫폼(assist.apfs.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 □ 대상자 선정

- 농식품 분야 크라우드펀딩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사업자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사무관 권병철 주무관 이지원	044-201-2425 044-201-242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기획부	심사역 유다인	02-3771-6883

### 1.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식품 및 관련 분야 아이디어 혹은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농식품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 단, 수산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배제하며, 동일한 사업 콘텐츠 등으로 크라우드펀딩 관련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식품기업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농업, 농촌, 식품 및 관련 분야 아이디어 혹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기업
- 지원요건 : 농식품 분야 크라우드펀딩을 희망(혹은 진행한) 사업자

### 3. 지원대상

- 크라우드펀딩 관련 컨설팅 및 수수료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크라우드펀딩 컨설팅 지원
  - (현장코칭) 기업분석, 펀딩유형 및 전략 수립, 투자 전략 등 1:1 방문코칭
  - (컨설팅 비용지원)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법률 및 회계 자문,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콘텐츠(랜딩페이지에 게재되는 동영상, 사진, 상세페이지 디자인) 제작 등의 전문 컨설팅 비용지원
- 크라우드펀딩 수수료 지원
  - 크라우드펀딩 성공 시 모집 성공금액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금액으로 사업자가 중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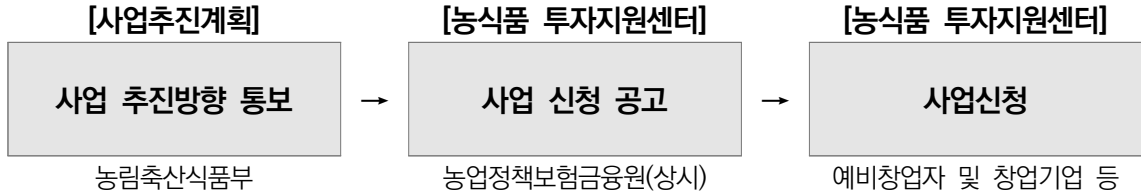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 기준 : 국비 100%
- 사업범위 : (현장코칭) 사업자당 1회 지원, (컨설팅 비용지원) 사업자당 펀딩 유형별 1회까지 지원, (수수료지원) 당해 연도의 유형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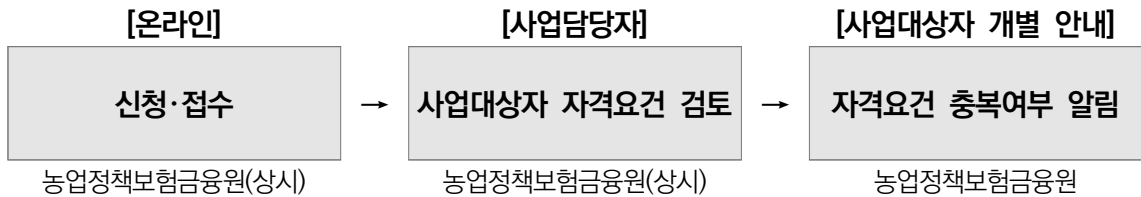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년도 12월까지 사업 기본계획을 시달하고,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은 신속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사업 홍보 및 사업대상자 공고를 실시한다.

### 2 사업자 선정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공고내용에 따라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민간투자를 유치한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매칭 지원으로 농식품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 촉진

## □ 사업내용

- 민간 투자사가 투자하고 추천한 농식품 유망 창업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자금 및 후속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

## □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식품 분야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지원요건) 민간투자사가 투자하고 추천한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대상 사업화자금\* 및 스케일업 지원  
\* 민간투자사의 투자금과 1:1 매칭하여 국고지원 최대 5억원
- '24년 예산 : 7,500백만원(국비 100%)

## □ 사업 신청

- 농식품 창업 정보망([www.a-startups.or.kr](http://www.a-startups.or.kr))을 통해 사업공고(매년초)

## □ 대상자 선정

- 사전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현장검증 → 심의조정위원회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사무관 권병철 주무관 이지원	044-201-2425 044-201-2422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벤처사업팀	팀 장 엄인용 연구원 황의웅	063-919-1410 063-919-1417

### 1. 사업대상자

- 농식품 분야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한해 7년 이상 지원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확인 기관)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2. 신청자격 및 요건

- 민간투자사가 투자하고 추천한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 상세요건

◇ 민간투자사가 투자하고 추천한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 ① (민간투자사)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중, 하나일 것
- ⑦ 소풍벤처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제피러스랩, 씨엔티테크, 엠와이소셜컴퍼니, 탭엔젤파트너스, 킹슬리벤처스
- ⑧ 롯데벤처스, CJ제일제당, 하이트진로, 농협중앙회
- ⑨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LLC 포함), 기업형 투자사, 신기술사업금융(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 ② (투자)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일 것
- ② (추천) 민간투자사의 추천서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3. 지원내용

- 국고지원금 : 기업당 최대 500백만원

\* 민간투자사의 투자금과 1:1 매칭 지원하고, 기업부담금(30%) 별도

#### 〈 사업비 구성 예시〉

(단위 : 백만 원)

민간투자금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현금	현물
500	715	500	72	143
	100%	70%	10%	20%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유기술 고도화, 사업 역량강화, 제품 공정개선 등 스케일업에 관련된 소요자금 제공
  - 비목 : 인건비, 재료비, 공정 개선비, 용역비, 임차비, 시험분석비, 전문가 컨설팅비, 지식재산권 확보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회계정산비 등
    - \* 인건비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사업종료일 이내 신규채용한 직원 및 기존직원의 인건비
    - \* 재료비 : 사업계획서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원료 구입비
    - \* 공정 개선비 : 기 구축된 공정에 대한 개선비용으로, 사업계획서상 주력제품의 본격 시장진출 및 생산성 개선을 위한 공정개선에 소요되는 개발 비용
    - \* 용역비 : 시제품 제작, 제품기획, 기술연구개발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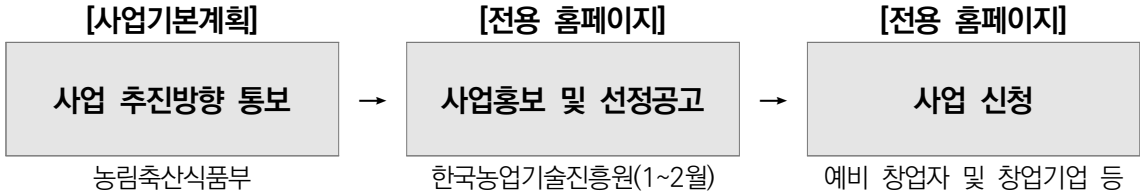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30%, 자부담 30%
- 사업범위 : 선정된 사업 및 창업기술에 대한 스케일업 소요자금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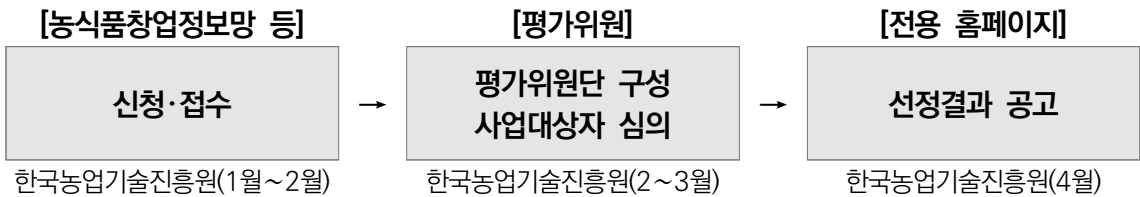
- 지원한도액 : 기업당 최대 500백만원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년도 12월까지 사업 기본계획을 시달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신속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사업 홍보 및 사업대상자 공고를 실시한다.

2. 사업자 선정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공고내용에 따라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탄소중립, 기후변화

---

## 8-1. 친환경농업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여 탄소 감축 등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기반으로 생산 집적화·규모화 및 생산비 절감 등을 도모
  -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 친환경농지 간 집적도를 높인 생산거점으로 사업주체가 안정적 판로를 바탕으로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관리하는 지역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법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 사업내용

-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업지구 : 생산자단체 /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 지원한도 및 예산

- 지원한도(사업규모) : 최대 20억원/개소
- '24년 예산 : 14,633백만원(국비 4,390, 지방비 7,317, 자부담 2,926)

## □ 사업 신청

- 시·도(시·군)에 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 대상자 선정

- 시·도(시·군)에서 사업평가지표에 따라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여 포괄보조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확정하고, 농식품부에 적정성 검토 신청

- (서면) 계획의 적정성, 농지의 집적정도, 생산관리 현황, 유통 확보 현황 등
- (발표) 사업자의 의지 및 역량, 계획의 실현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 (현장심사) 환경평가, 조직의 결속력,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김윤희 주무관 강은영	044-201-2439 044-201-2438

##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함. 단, 개별 작목반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법인 설립 1년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지원자격 및 요건

\* 개념 : 친환경농지 간 집적도를 높인 생산거점으로 사업주체가 안정적 판로를 바탕으로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관리하는 지역

### 1) 사업 규모

품목별	단계별	사업신청 요건		
		예비지구	기초지구	선도지구
쌀	사업면적	50ha	100ha	150ha
	인증면적	사업면적의 50% 이상(인증면적 중 20% 이상 연접)		
	취급액	10억원	15억원	20억원
원예 (쌀 외 식량작물 포함)	사업면적	20ha	40ha	60ha
	인증면적	사업면적의 50% 이상		
	취급액	15억원	30억원	45억원
가공	사업면적	20ha	40ha	60ha
	인증면적	사업면적의 50% 이상		
	취급액	30억원	60억원	90억원

※ 사업 면적과 인증면적 비중은 [참고]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예비, 기초, 선도 사업단계를 고려해서 예산 차등 지원 가능

### 2) 참여주체별 역할

- (농가) 사업주체와의 계약에 따라 전속출하(출하량의 80% 이상) 이행
- (사업주체) 농가와의 계약물량을 책임지고 판매, 지속적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하여 지구 내 일반농가의 친환경 전환 견인, 농가 생산관리를 위해 생산 매뉴얼 운영, 농가 기술교육, 농산물 품질 및 인증관리, 공동농작업 등 지원

- 3) 집적지구 소재 마을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고 서류평가시 가점 부여
- 4) 지구 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완료

### 3. 지원대상

-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W) 친환경농산물 생산·저장·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 농업 및 상품 관련 교육·체험·판매 시설</li> <li>• (S/W) 경영관리 및 조직화 역량 강화 교육·컨설팅, 마케팅, 디자인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설치에 따른 감리비</li> <li>• 기타 부대비용</li> </ul>

※ 시설·장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이용이 가능한 것만 지원 가능

#### ◆ 신규 및 보완 사업 공통 지원제외 대상

- (부지) 부지매입비, 부지 및 건물 임차비,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 (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자재) 개별농가단위 생산관련 자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제, 종자 등)
- (운영) 인건비, 개별농가 홍보·마케팅 관련 비용
- (기타) 설계비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식품부에서 확정 통보한 친환경농업지구(신규) 및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보완) 조성과 관련한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비용
  - (H/W)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매 비용 등

#### ◆ 지원가능 H/W 분야

- (생산)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 관련 시설·장비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 유기농업자재 생산 및 활용 관련 시설·장비
  -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허용물질 종류'에서 허용하고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장비
- (가공) 친환경농산물 가공 관련 시설·장비
  - 집하, 예냉, 선별, 가공, 제조, 포장에 필요한 시설·장비

- (유통)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유통 관련 시설·장비
  - 저온 저장고, 지게차, 저온 운반차량(3.5톤 이하) 등
- (교육·체험) 친환경 농업 및 상품 관련 교육·체험 시설·장비
  - 교육장, PC 등 기자재, 현장 체험학습장 등
- (소비)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등 판매시설
- (기타) 건축물 설치에 따른 감리비 등

- (S/W)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교육·컨설팅 비용 등

#### ◆ 지원가능 S/W 분야

- (역량강화) 재배·경영관리 및 생산자단체 조직화 역량 강화 관련 교육·컨설팅
  - (교육)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계약재배, 작부체계 전환, 농기계 조작·관리, 친환경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등
  - (컨설팅)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작목 및 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등)
- (상품개발)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기술 개발, 상품개발 기술 관련 교육·컨설팅
- (판로확대) 마케팅,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상품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록 등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시·도자율편성사업)
- 사업시행기관 : 시·도 및 시·군
- 지원비중 및 사업기간 :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사업기간은 3년 이내에서 지구별로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 예시 : 1 ~ 2년차 SW 사업, 3년차 HW 사업
- 사업의무량 : 사업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설·장비 설치·구입, 각종 교육·컨설팅 이수 등 마무리
- 지구 내 농지의 임대차 허용
  - 친환경농업 지구·단지 내 농지에 대해서는 선정시부터 사후관리 기간동안(선정 연도로부터 10년간) 농지법 제 2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 허용
  - \* '22년 기준, 2011 ~ 2021년 선정 지구·단지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 및 절차 적용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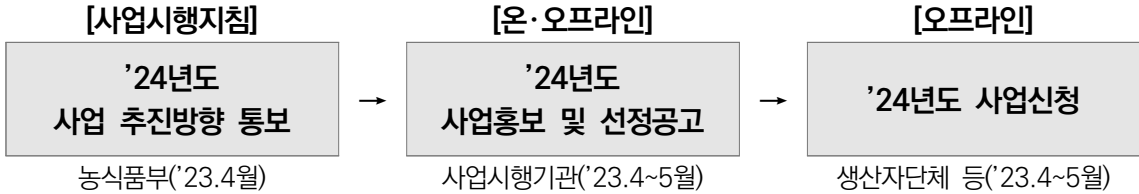
○ 지원한도(사업규모) : 20억원

- 사업대상자의 경영여건,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유통 규모 등에 따라 2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현재 집적화 정도와 향후 지구 내 친환경 인증 면적의 확대 계획의 우수성 등을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종합 평가를 거쳐 예산 배정

\* (예시) 지원액(국비 기준) : 1.5억, 2억, 2.5억, 3억

- 교육·컨설팅 등 S/W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집행 가능. 단, 판로개척 등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해 **5% 이상은 의무 사용**(23년도 사업대상자는 기 제출한 SW의 사업규모 축소 불가)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23.4월)하고, 사업시행기관(시·도, 시·군)과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홍보 실시('23.4~5월)

**시·도 및 시·군**

- (시·도)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시행지침을 통보받은 시·도는 이를 시·군에 지체 없이 통보('23.4월)
- (시·군) 시·도로부터 사업시행지침을 통보받은 시·군은 '24년도 신규 사업대상자 공개모집 실시('23.4~5월)
  - 시·군은 신규 사업대상자 공개모집 공고문을 시·군청 홈페이지 및 외부 게시판에 게시, 관할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 등에 안내
  - \* 공모내용 : 사업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사업자(신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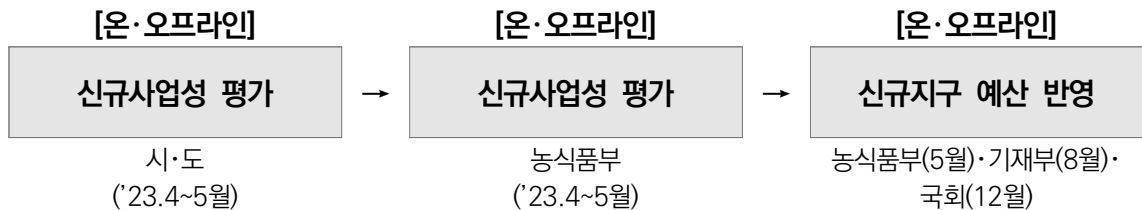
- (사업자) 사업신청자는 아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23.4~5월)
  - 1) 사업신청서 : 본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2) 세부사업계획서 외 관련 서류 : 본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제6호, 제9~11호 서식
  - 3) 그 외 첨부서류

### ◆ 그 외 첨부서류

- (법인현황)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출자내역 포함, 농협 제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경영현황) 결산재무제표(최근 5년간), 친환경농산물 및 일반농산물(최근 5년간)
- (영농현황) 친환경인증서, 참여농가 명부 및 농지현황, 해당 농지 전체를 조망하는 항공사진 (집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진)
- (판로현황) 최근 5년 이내 식품기업 등과의 계약재배 또는 납품실적, 기타 거래처와의 출하내역서, 기업 등과 향후 진행될 계약재배 약정서 등
- (사업신청) 자부담금 확보증명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견적서 함께 제출, 교육·컨설팅 제외), 사업부지 관련 토지등기부등본·지적도·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 \* 토지가 법인명의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추가제출
  - ※ 농협사업자의 경우 농협 경제정보시스템 상의 전산출력 자료 인정

- 사업대상자가 지구 내 농지에 대한 임대차를 계획하고 임대 필요 농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해당 필지들이 동 사업에 따른 임대차가 적법한지 여부를 시군에서 확인하여 표기

##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 및 시·군

- (시·군) 시·군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사업성 검토 및 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검토 후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시·도에 제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및 제9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 (시·도)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자별 관련 서류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



- 선정위원회는 선정심사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소비, 농업경영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5명 내외)
- 사업평가지표(붙임 1 :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사업대상자 평가표)에 따라 단계별 평가 실시
  - < 1단계 : 서면평가 >
    - 평가내용 : 계획의 적정성, 농지의 집적정도, 생산관리 현황, 유통 확보 현황 등
  - < 2단계 : 발표평가 >
    - 평가내용 : 사업자의 의지 및 역량, 계획의 실현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 평가방식 : 사업신청자 사업계획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답변
  - < 3단계 : 현장심사 >
    - 평가내용 : 환경평가, 조직의 결속력,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
    - 평가방식 : 심사위원들이 집적지구 대상지를 방문하여 환경적 여건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주체 등에 질의·평가
- 사업대상자별 서면 및 발표, 현장평가 점수의 평균값을 최종 점수로 부여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대상자 확정
  - \* 사업규모와 시설·장비 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예산규모 확정
- 시·도는 자금지원 우선순위 등에 따라 시·도별 포괄보조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균형위에 신청
  - \* 별지 서식 제1호(사업신청서) 및 제2호(사업계획서) 참조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39조제1항)
  - \* 사업의 포기,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예산요구내역을 검토하고 사업별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필요시 보완요청 가능) 기재부에 예산 요구

## 사업자(신청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출한 임대 필요 농지(별지 제5호)에 대해 다음의 사항과 농지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수한 임대차 계약 체결
  -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는 사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 가능 농지로 간주(단,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
  -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등으로 인해 사업선정 이후 취소, 변경되는 경우 식재된 농작물의 작기 등을 고려하여, 수확 시까지만 임대 가능 농지로 간주
- 사업대상자는 임대차 농지 소재지 시군에 농지의 임대차 계약 체결 결과를 보고(임대차 계약서, 농지대장 사본 등 제출)

## 시·도 및 시·군

- (시·군) 지구 내 농지의 임대차 계약 결과를 보고 받은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는 해당 농지의 필지 지번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임대차 계약 농지가 포함된 농지대장에 변동사항을 정리
  -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대한 기록을 시도에 보고(매년 11월)
- (시·도)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매년 12월)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컨설팅 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6조

##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녹비작물 종자(ha)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 지원 기준 :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토양검정·시비처방 등 컨설팅) 국고 100%
- '24년 예산 : 31,030백만원(국비 6,206, 지방비 9,309, 자부담 15,515)

##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 □ 대상자 선정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김윤희 주무관 강은영	044-201-2439 044-201-2438

## 1. 사업대상자

## 공통요건

-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농업법인은 제외. 다만, [별표6] 1. 공통지원조건 “②의3호(설립후 운영실적 1년 이상)” 규정은 미적용

##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2023년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2022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단, '24년 6월까지 제출)
    - \* 녹비작물 종자 중 수단그라스 지원대상인 인삼 재배농가의 경우, 재배농지 변경으로 신청기간 동안 토양검정결과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사후제출 가능(단, '24년 6월까지 제출)
    - \*\* 버섯 등 토양에서 재배하지 않는 작물은 토양검정 결과 제출 제외
    -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 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 ① 녹비작물 종자

### 예 외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능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중인 농지(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와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능한 임야(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인삼 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첨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 농지 > 무농약인증 농지 >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 당해 연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다음 연도에 ① 토양개량용·작물 생육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원대상 농지에서 제외
  - 2024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 농지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이 「농업·농촌공익 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 의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②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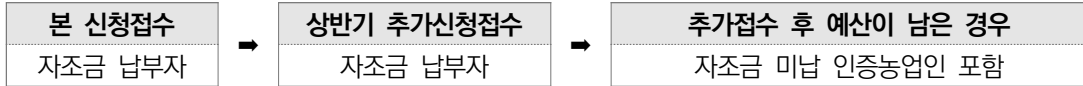
-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지) 유기인증 농지 > 무농약인증 농지
  - (그 외 농지) '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 '13~'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 지자체 자율 결정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2023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 자조금<sup>3)</sup>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

3)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관련 문의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044-863-6202)

\* 다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제외자 및 면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능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친환경 인증 중인 농지는 가능(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접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에 한함)

《 사업 신청접수 단계도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조성규정(2016.6.30. 제정)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의 납부대상 및 제외자 범위

- ▶ (납부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면적 1천㎡이상 농업인으로 한정
  - 다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류, 채소류 등을 재배하는 친환경인증농업인은 인증면적 330㎡이상을 대상에 포함
- ▶ (납부면제) 1천㎡(농업시설재배는 330㎡)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과 가축사료용 조사료만 생산품목으로 인증받은 농업인 제외

- 천적은 농업용재배시설(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에 한해 지원
- 자재원료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에 한해 지원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원품목 제한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결과 유기물 함량이 「농업·농촌공익 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 의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토양개량용 유기농업자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당해 연도 ① 토양개량용·작물생육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단, 녹비작물의 생육상태 등에 따라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탄력성 부여  
 - 일정 녹비 생체량(500kg 이상/10a)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확인서(시비처방서 포함)를 첨부하여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가능  
 \* 농가가 추가 신청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량은 시비처방서를 따르거나 일반 농지(해당 품목) 기준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토양 관리 효율성 제고

### ③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제외
- (시비처방 등 컨설팅) 토양검정 결과가 있는 농지에 대해 한해 지원

## 3. 지원내용

- ① 녹비종자(5종):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②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농어업법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7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시정 시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현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행정처분현황 조회에서 확인
- ③ 자재 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따른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
- ④ 천적(25종): 갈색반날개, 굴파리좀벌, 담배가루이좀벌, 담배장님노린재, 무당벌레, 뱅커플랜트, 복숭아혹진디벌, 숨이애꽃노린재, 싸리진디벌, 쌀좀알벌, 아큐레이퍼응애, 어비진디벌, 오이이리응애, 온실가루이좀벌, 유럽애꽃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앞굴파리고치벌, 지중해이리응애, 진디면충좀벌,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캘리포 니쿠스응애, 콜레마니진디벌, 호랑풀잠자리, 황온좀벌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생산업체 제품에 한하며, 화분매개곤충(뒤영벌, 호박벌 등)은 지원 제외



- ⑤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시·군농업기술센터(우선 활용) 또는 시도별로 지정된 토양검정기관을 활용한 토양검정 비용 지원
- (시비처방 등 컨설팅)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 자문, 유기농업자재 사용, 기타 친환경인증 기준 등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인삼조합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및 자재, 자재원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 농가의 토양검정 비용 및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지원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국고, 지방비, 농협 지원금 등
- 지원조건
  -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 지자체 또는 농협 등에서 추가 지원할 경우 자부담 20% 이상 유지(예시: 국고 20% + 지방비 30% + 추가 지방비 또는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 이상))
  - (토양검정·시비처방 등 컨설팅) 국비 100%
    - \* 컨설팅 내용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시도(시군)에서 토양검정기관으로 지정한 토양검정기관에서 받은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 자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사업 의무량
  - 녹비작물 종자는 농경지에 파종한 후 지력증진 위해 작물을 당해 농지에 반드시 작물체를 환원하여야 하며,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당해 연도에 사용될 분량만큼만 신청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녹비작물 종자(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신청 농업경영체 단위로 품목별 최소 신청량은 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20kg, 헤어리베치 5kg으로 제한

- 품질기준은 종자관리요강(보급종 기준)에 따르며 발아율 80% 이상 종자 공급
  - 최종 공급단가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종자공급 완료 후에 제반비용을 토대로 산정하여 알림(사업년도 11월 중)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관행농업 100만원
- 신청 농업경영체의 신청 농지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이 적용되며, 초과금액은 자부담하고, 품목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인 자료(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단가, 납품 계약서, 견적서 등)에 근거한 농가 신청금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결정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유기농업자재 공시정보에서 확인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 지자체별 신청 수요, 토양검정기관 유형(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등 민간기관 등), 컨설팅 지원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한도 매년 산정

## 1. 사업 신청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 시·군·구(읍·면·동)

- 읍·면·동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품목, 사업신청기한, 신청방법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하고, 시·도, 시·군·구에 소요예산 등 협조 (10~11월)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필요 시 현장확인)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Agrix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1월 초)
  - 사업대상자가 제출하는 사업신청서에는 신청품목을 상세히 기재하게 하되, Agrix 입력 시에는 녹비작물 종자는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수단그라스(만생종)’로, 천적은 ‘천적종류’로, 유기농업자재는 ‘상표명’, 자재원료는 ‘사용가능 물질명’으로 입력
- 시·도는 시·군·구의 선정결과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예산요구서 등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월 중)
  - 특히,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은 시도별 토양검정 및 컨설팅 사업 수행기관(시·군농업기술센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등 민간기관 활용)의 유형과 사업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가 등을 산정해 농식품부에 소요예산 제출

## 사업대상자

- 신청기간 : '23. 11. 1. ~ '23. 12. 31.(2개월)
  -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접수를 실시(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에 한함)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등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당해 연도에 소용될 자재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업신청서(서약서 첨부)를 제출 [별지 1호 서식]
  - 농지소재지의 관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시·군·구가 다른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녹비작물 종자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에 녹비작물 종자대 자부담 부분을 납부할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하며, 공급 희망조합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광역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여야 함
- \* 단, 수단그라스는 ‘인삼농협’ 중 한 곳을 공급 희망조합으로 지정 : 참고 1 참조

## 2. 사업자 선정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가 제출한 사업예산 신청내역 등 사업물량을 검토하여 확정된 후, Agrix 등록 및 각 시·도별 사업량 통보(녹비종자는 농협경제지주에 통보, 2월초)
  - 녹비작물 종자 품목별 사업량 등은 예산한도 내에서 녹비효과, 경제성, 국산화 정도, 농가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 시도별 확정 사업량은 원칙적으로 AgriX로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문서 시행

### 시·도(시·군·구)

- 시·도는 농식품부의 시·도별 확정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구(읍·면·동)별 사업량 배정 통보 및 사업대상자 확정(2월)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Agrix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녹비작물 종자는 각 농협경제지주 시군농정지원단에,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은 해당 사업 수행 기관에도 통보(필요 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지는 제외
- 시·군·구는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시·도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자, 지원 품목 등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
- 특히, 녹비종자는 사업대상자(사업량 포함)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확정된 사업량에 맞게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조정 등 철저

### 농협경제지주

- 각 시·군·구로부터 확정된 녹비작물 종자 지원 사업량을 통보받는 즉시 관할 조합에 통보하여 농협전산시스템과 대조(3월)
  - \* 시·군·구 사업량과 농협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사업량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의 자료를 근거로 수정 조치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탄소중립, 기후변화

---

## 8-2. 저탄소농축산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 □ 사업내용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 지원 자격 및 요건

- ①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②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③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④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하며, 생산자단체는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함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지원 기준 : 국비 100%
  - (중간 물떼기) 15만원/ha
  - (논물 얇게 걸러대기) 16만원/ha
  - (바이오차 투입) 36.4만원/ha
- '24년 예산 : 4,056백만원(국비 100%)

## □ 사업 신청

-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에 등록신청

- (신청기간) '24. 1. 22. ~ 2. 23.
- (신청장소)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

### □ 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시·도별 사업량을 확정하여 시·도에 배정('23.12~'24.1월)
- 시·도는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배분된 사업물량에 맞게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및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조정 및 선정('24.3월)
- \* 필요시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시·군 선정심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이 경우 시·도가 시·군별 물량을 배분, 시·군 단위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사무관 이명현 주무관 윤수진	044-201-2632 044-201-2633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사업부	부 장 김이부 차 장 이재황	061-338-5821 044-864-6925

## 1. 신청농지 자격요건

- ☑ ①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이며, 저탄소 영농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②벼재배 논

-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8조에 따라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  
\* 위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중 일부 농지만도 선택 가능함  
(예) A법인이 60ha 농지에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 중 50ha 농지만 신청도 가능
- ② 실제 지목\*이 논이며, 재배 품목이 벼\*\*인 농지  
\* AgriX 시스템 상 경영체 정보 및 기본형 직불 정보 연동으로 확인  
\*\* 저탄소 활동(중간물떼기, 논물 얇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이행 가능 여부를 농가 자체 확인 후 신청

- ☑ 다만, ①기본직불제 지급 제외 농지,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 ③유사 사업 참여 농지 등은 제외

- ①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기본직불 지급대상 제외 농지\*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 농지에서도 제외  
\*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모두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이어야 함
- ②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활동비 지급대상 확정일(11.30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지  
\* 직불금 산정 단계에서 농어촌공사 확인
- ③ 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보조금, 배출권 등)를 받고 있는 경우
- 중간 물떼기·논물 얇게 걸러대기 등 논물관리 지원하는 사업, 바이오차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불가
- \* (유사사업)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바이오차 구입 지원) 등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자의 경우 본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대상자로 최종 확정시 기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사업포기로 처리할 계획이므로 참여시 주의 요망  
※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활동비 지급 단계에서 유사사업 참여여부 농어촌공사 확인

\*\* (동일활동) 중간 물떼기, 논물 얇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 (예)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바이오차를 지원받는 경우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바이오차 투입 활동 신청 불가

- 기본직불, 친환경직불, 전략작물직불 등 보조금을 지급받는 농지의 경우, 본 사업의 동일활동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참여 가능

- 본 사업의 동일 활동을 포함하여 저탄소인증 취득을 위한 절차·교육·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가능

\* (예) 저탄소 인증 취득·교육·홍보를 지원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등은 중복 참여 가능

## 2. 신청인 자격요건

☑ ①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②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③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④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법인·단체')

①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9조에 따라 본 사업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인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등  
\* AgriX 시스템 상 경영체 정보 및 기본형 직불 정보 연동으로 확인

③ 법인·단체 신청면적은 폐경·휴경 면적을 제외하고 50ha 이상이어야 함.  
\* 일부 농지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동일 시·군 또는 경계·연접하는 2개 이상 시·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동물관리가 가능한 형태로써 공동영농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법인·단체 구성원(농업인 등)은 모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이어야 하며,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 400ha로 기본형 직불과 동일  
\*\*\* (예) A농업법인(또는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구성원 B농업인(10ha), C농업인(10ha), D농업인(20ha) 및 A농업법인 소유(15ha)를 포함하여 농업법인 대표가 55ha를 신청

④ 생산자단체는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하며, 농업 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함[참고1]

☑ 다만, ①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 및 ③유사 사업 참여 농업인 등은 제외

○ ①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본직불 지급대상 제외 농업인 등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 농업인 등에서도 제외

\*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모두 기본직불금 지급 농업인이어야 함

- ②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활동비 지급대상 확정일 (11.30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업인 등**
- \* 활동비 산정 단계에서 농어촌공사 확인
- ③ 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보조금, 배출권 등)를 받고 있는 경우
- 중간 물떼기·논물 얇게 걸러대기 등 논물관리 지원하는 사업, 바이오차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불가
  - \* **(유사사업)**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바이오차 구입 지원) 등
  -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자의 경우 본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대상자로 최종 확정시 기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사업포기로 처리할 계획이므로 참여시 주의 요망
  - ※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활동비 지급 단계에서 유사사업 참여여부 농어촌공사 확인
  - \*\* **(동일활동)** 중간 물떼기, 논물 얇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 \*\*\* (예)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바이오차를 지원받는 경우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바이오차 투입 활동 신청 불가
  - 기본직불, 친환경직불, 전략작물직불 등 보조금을 지급받는 농업인 등의 경우, 본 사업의 **동일활동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참여 가능**
  - 본 사업의 동일 활동을 포함하여 **저탄소인증 취득을 위한 절차·교육·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가능**
  - \* (예) 저탄소 인증 취득·교육·홍보를 지원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등은 **중복 참여 가능**

### 3.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등

- ☑ '중간 물떼기', '논물 얇게 걸러대기'의 경우 **단일활동 신청은 불가능하며, 2개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함**
- ☑ 선발된 농업인 등이 활동을 **이행하면 점검 후** 필지별 이행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농업경영체별로 산정하여 지급함

- ①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원대상 활동 및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음

#### 《 지원대상 활동 및 지급단가 》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
중간 물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내기 이후 한달부터 2주 이상 용수 공급 중단, 배수로를 열어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li> <li>* (증빙방법) 2주 이상 배수물꼬 개방 및 시작·종료일에 증빙사진 제출</li> <li>** 활동기간 중 배수물꼬를 개방했다면 비가 오더라도 중간 물떼기 활동 인정</li> </ul>	15만원/ha (15원/㎡)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
논물 얇게 걸러대기	▶ 중간물떼기 종료 후 2~5cm 깊이로 용수공급 후 자연소모로 논물을 말리고 다시 용수공급 과정을 4회 이상 반복 * (증빙방법) 배수물꼬 부근 2~5cm의 톱을 조성하거나 배수물꼬 높이를 조절하고, 마른 논바닥 4회 증빙사진 제출	16만원/ha (16원/㎡)
바이오차 투입	▶ 바이오차를 작물재배 전에 밀거름 투입과 투입하거나 추수 후 가을 같이 시 투입하여 경우 *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에 따른 바이오차 사용 ** (증빙방법)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제출	36.4만원/ha (36.4원/㎡)

### 바이오차 이행활동 주의사항

- 바이오차는 총 신청필지에 최소투입량(200kg/ha) 이상을 투입하여야 함
- 바이오차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사용 시 활동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이행점검 기관(농어촌공사, 044-864-6959)에 사전협의 요청
- 바이오차 구매시 참여 농업경영체별 바이오차 구매 세금계산서 필요

### 이행활동 신청 예시

구분	필지별 신청 내역	비고
1	중간 물떼기 + 논물 얇게 걸러대기 + 바이오차 투입	신청 가능
2	중간 물떼기 + 논물 얇게 걸러대기	
3	바이오차 투입	
4	중간 물떼기 + 바이오차 투입	신청 불가능
5	논물 얇게 걸러대기 + 바이오차 투입	
6	중간 물떼기	
7	논물 얇게 걸러대기	

#### ② 지급금액 산정

#### ○ 활동별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참여 농지면적(㎡)

- 농업경영체별로 신청 경지면적에 이행 활동 단가를 곱하여 합산하되 감액 기준을 반영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지급

\* 사업대상자는 **[참고4] 서면증빙 방법**에 따라 이행점검용 모바일 웹을 활용하여 필지별 활동사진 및 세금계산서(바이오차의 경우)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이행점검 결과 **[참고7] 감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 바이오차 활동의 경우 구입비에 대해 최대 구매비용(35원/㎡)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 확인을 통해 **실제 구매비용이 최대 구매비용보다 적게 소요된 경우 실제 구매한 비용에 대해 지급(실비정산)**

#### ③ 지원재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공익증진기금)

#### ④ 지원형태: 국고 100%

⑤ 지원기간: 선정 후 1년 지원

⑥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

\* 「농업경영영체육성법」 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 이 경우 공동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를 적용

### Ⅲ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집행 과정	시기	시행주체	주요 내용
① 신청·접수 전	'23.12~ '24.1월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지침 시달</li> <li>▶ 지자체 업무담당자 교육</li> <li>▶ 법인·단체 대상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li> <li>▶ 사업 교육·홍보 및 시·도별 선정계획 수립·실시</li> </ul>
② 신청·접수	1~2월	법인·단체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신청(법인·단체 대표) 및 접수(시·군)</li> <li>* 지자체(시·군)은 사업대상자 요건 검토 후 전산입력</li> </ul>
③ 선정 및 등록증 발급	3월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자 선정·통보</li> <li>▶ 선정통지서 발급(시·군)</li> <li>▶ 사업대상자 교육 실시 (농어촌공사 → 법인·단체 → 소속 농업인)</li> </ul>
④ 활동이행	3 ~ 10월	농업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활동 이행 및 활동별 증빙서류 제출 (농업인 등 → AgriX시스템 등록)</li> <li>* 서면점검용 모바일웹 내 활동 증빙자료 등록</li> </ul>
⑤ 이행점검	3 ~ 11월	농어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별 증빙서류 확인 및 현장 이행점검</li> <li>* 자격요건 검증, 유관기관 DB 및 AgriX 시스템 활용</li> <li>▶ 이의신청 및 재조사</li> </ul>
⑥ 지급액 산정	11월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점검 결과 및 활동비 산정 결과 보고 (농어촌공사 → 농식품부)</li> <li>▶ 이행점검 결과 및 활동비 산정결과 통보 및 확인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농업인 등)</li> <li>*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확정</li> </ul>
⑦ 지급액 지급	12월	농식품부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비 교부요청 (시·군 → 시·도 → 농식품부)</li> <li>▶ 활동비 교부결정 및 교부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농업인 등)</li> </ul>
⑧ 사후관리	연 중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시스템 운영 및 부정수급 조사·단속 등</li> <li>* 콜센터 운영 및 부정수급 신고센터</li> </ul>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농업경영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을 통한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제고

## □ 사업내용

- 온실가스 배출 규제대상이 아닌 사업자(농업인)가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여 톤당 1만원의 인센티브 지급
  - (유효기간) 사업등록 후 다음 해부터 3년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붙임1]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감축사업 등록 및 모니터링, 온실가스 감축량 검·인증 지원
  - 감축량 인증 결과에 따른 감축 인센티브 지급(1만원/1톤CO<sub>2</sub>)
- 지원 기준 : 국고 100%
- '24년 예산 : 819백만원(국비 100%)

## □ 사업 신청

- 장소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4~5월)

## □ 대상자 선정

- 신청인의 사업 적격여부(저탄소 농업기술 유무 등)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사무관 이명현 주무관 윤수진	044-201-2632 044-201-2633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	팀 장 이길재 연구원 김찬호	063-919-1580 063-919-1585

###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붙임1]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 지원 제외: 의무자조금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거출금 미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3.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의 사업타당성 평가·감축실적 검증, 컨설팅 및 감축실적 인센티브 지급 등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컨설팅 지원(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평가 보고서 작성 지원)
-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지원
  - \* 사업대상자로부터 의뢰받은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공
- 온실가스 감축량 톤당 1만원 인센티브 지급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방안 교육 지원 등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 사업범위 : 농업경영체의 사업타당성 평가·감축실적 검증, 컨설팅 및 감축실적 인센티브 지급
- 사업대상자의 의무
  - 농업·농촌 자발적 감축사업의 방법론에 등록된 기술별 에너지, 비료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이력관리

- 사업계획서·모니터링보고서·검증보고서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최종심의
- 사업 등록 후 사업이행시기(모니터링기간)에 맞추어 사업이행여부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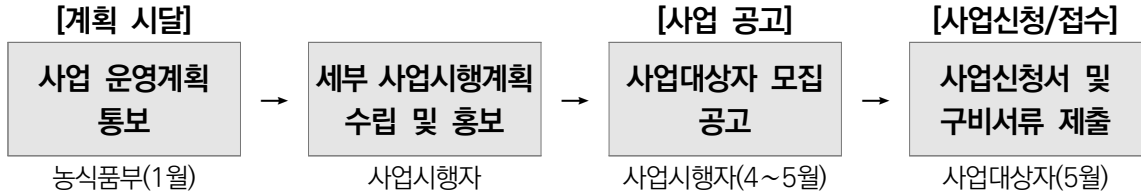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수립 시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수행

###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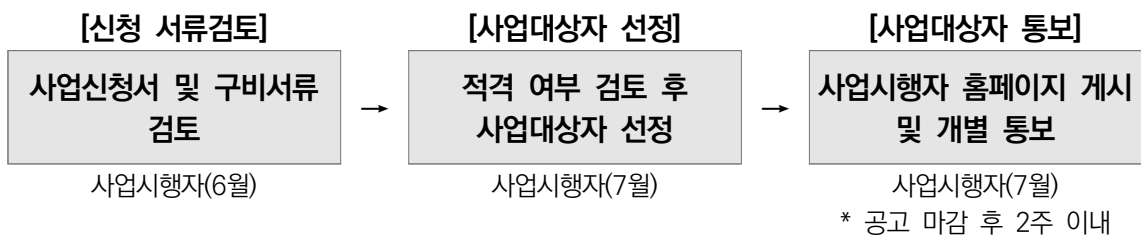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 사업 추진방향 등 사업 운영계획을 당해연도 1월 말까지 수립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사업시행자)에 시달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사업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자) 농식품부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세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대상자 지원계획 공고
  - \* 사업수요 및 해당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공고 가능
- (사업대상자)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는 사업신청서(붙임2)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 제출

### 2. 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자)
  - 적격 여부 검토 및 사업대상자 선정
    - \* 필요 시 사업대상자의 누락 데이터 추가수집 후 예상 감축량 산정 등 적격여부 검토
    - \* [붙임1] 신청 대상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유무 등 확인
  - 선정결과 공지 : 사업시행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탄소중립, 기후변화

---

### 8-3. 저탄소인증지원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저탄소 인증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인증제도 활성화 및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 □ 사업내용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품목의 인증배출량 기준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우리 농산물에 인증 부여
  - (인증대상) 식량, 채소, 과수, 특용, 임산물 등 65개 품목
  - (유효기간) 인증 취득일로부터 2년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을 사전에 취득하고, 인증대상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집단\*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 조직을 말함(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제7호)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저탄소 농산물 인증 컨설팅 및 인증심사 등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100%
- '24년 예산 : 1,747백만원(국비100%)

## □ 사업 신청

- 장소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3월), 하반기(7월)

## □ 대상자 선정

- 신청인의 신청품목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사무관 이명현 주무관 윤수진	044-201-2632 044-201-2633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	팀 장 이길재 선 임 최민혁	063-919-1580 063-919-1581

### 1. 사업대상자

-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집단
  - 부정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하거나 미인증 농산물 혼입 또는 인증표시하여 저탄소 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 인증신청이 제한됨
  -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제18조 인증의 취소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을 사전에 취득하고, 인증대상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붙임1)을 적용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집단
  - \* 지원 제외: 의무자조금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거출금 미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3. 지원대상

- 인증신청인의 인증컨설팅 및 인증심사 등 인증취득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저탄소 농산물 인증 컨설팅
  - 인증취득을 위한 농가 교육(수집데이터 목록, 증빙자료 확보방법 등)
  - 농가별 영농자재 사용량 데이터 및 증빙자료 수집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서 작성
-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심사 및 심의
  - (서류심사) 데이터 수집,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데이터 품질 타당성 심사
  - (현장심사) 신청품목 재배 및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운영 현황 심사
  - (인증심의)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결과에 대한 인증심의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 사업범위 : 저탄소 농산물 인증 컨설팅 및 인증심사 등 인증취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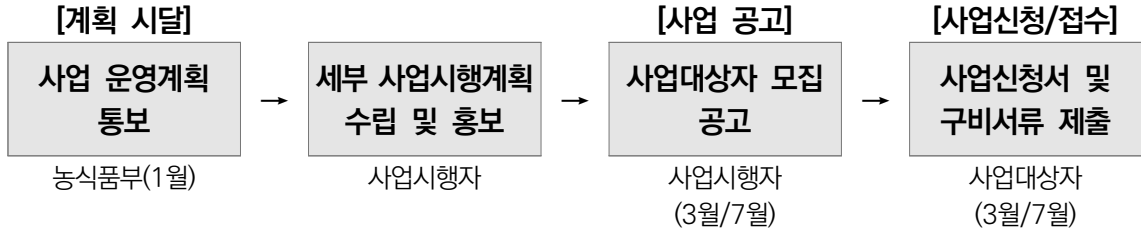
○ 사업대상자의 의무

- 비료, 전기 및 유류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제출
- 인증요건 유지 및 인증표시의 적절성에 대한 사후관리 대응
  - \* 인증심사 시 제시한 재배방법 및 주요 영농자재 등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
  - \* 인증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정확성 여부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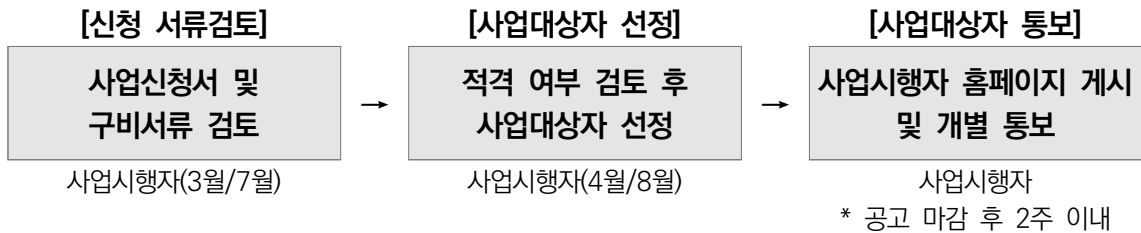
- 사업계획 수립 시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수행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 당해연도 1월 말까지 사업추진방향 등 사업운영계획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사업시행자)에 시달
- (사업시행자) 농식품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세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대상자 지원계획 공고
  - \* 사업수요 및 해당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공고 가능
-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붙임1)을 확인하고 사업신청서(붙임2)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 제출

2. 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자) 사업대상자의 적격여부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 선정결과는 사업시행자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사업대상자 개별 통보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탄소중립, 기후변화

---

## 8-4. 에너지전환





## I 사업 개요

## □ 목 적

- 재생에너지 시설설치 등을 통해 농업 분야 및 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농업·농촌의 탄소배출 저감
  - 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농업·농촌분야 RE100 실증

## □ 사업내용

- 총 4개 지자체(시·군)에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마을발전소, 가공·유통시설, 주택 등),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패키지 지원
  - (컨설팅)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최적 설치 방안·용량 등 도출 및 마을법인 관련 지원, 사업 만족도 등 설문조사 지원
    - \* (1개소당) 50백만원 × 국비 100% = 50백만원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 및 마을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 농업용, 주택용 전력 사용량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량 산출
    - (마을발전소) 농촌 마을에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국·공유지, 마을 유희부지 등 활용하여 농촌 주민들이 공동 운영·관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 (1개소당) 976백만원 × 국비 50% = 488백만원
    - (가공·유통시설 및 주택) 농업인 등이 운영하는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건물 지붕, 유희부지 및 주택 등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 (1개소당) 450백만원 × 국비 50% = 225백만원
  -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에 재생에너지 설치 및 단열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 건축물로 리모델링·개축 등
    - \* (1개소당) 310백만원 × 국비 50% = 155백만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촌 지역 4개 지방자치단체(시·군)

## □ 지원내용 및 예산

- (컨설팅) 에너지 진단, 구조검토, 정밀안전진단 등 200백만원
  - 4개소 x 50백만원 x 국비 100%=200백만원
- (마을발전소)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인허가, 부대경비 등 1,952백만원
  - 4개소 x 976백만원 x 국비 50%=1,952백만원
- (주택·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구조안전진단비 등 900백만원
  - 4개소 x 450백만원 x 국비 50%=900백만원
-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패시브 기술 인증비, 리모델링 등 620백만원
  - 4개소 x 310백만원 x 국비 50%=620백만원
- '24년 예산 : 2,766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50%, 자부담 10)

## □ 사업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및 사업 공모 추진
-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희망하는 시·군 지자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광역자치단체)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보조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사무관 김군태	044-201-2640
		주무관 이혜련	044-201-2641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그린처	부 장 이윤철	061-338-5371
		차 장 정영민	061-338-5376

## II 주요 내용

### 1.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시·군)
  - '24년 지원대상 : '23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 4개소 및 '24년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농촌 지역 지자체 4개소

### 2. 지원요건

- (지원자격) 농업·농촌 RE100 실증을 위해 마을 단위로 패키지 사업(4개) 추진이 가능한 농촌 지역 시·군 지방자치단체
  - (패키지사업) ①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지원② 마을발전소 건설, ③ 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등 재생에너지 설치, ④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 (지원내용) 법정리 내 1개 마을에 4개 사업 지원
  - \* 법정리내 1개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이 갖춰지지 않아 사업 신청이 불가할 경우, 인근에 위치한 2~3개의 마을을(법정리 무관) 대상으로 지원 가능
  - 마을발전소 부지,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 동의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 (선정방법) 서류심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3. 사업별 지원조건

선정 연도	사업명	지원 조건	선정 연도	사업명	지원 조건
기존	마을발전소	국비 50%, 지방비 50 (1년차 : 20%, 2년차 : 80)	2024 (신규)	마을발전소	국비 50%, 지방비 50 (1년차 : 20%, 2년차 : 80)
	가공유통 시설 등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1년차 : 100%)		가공유통 시설 등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1년차 : 20%, 2년차 80%)
	리모델링	국비 50%, 지방비 50 (1년차 : 50%, 2년차 : 50)		리모델링	국비 50%, 지방비 50 (1년차 : 20%, 2년차 : 80)
	컨설팅	국비 100% (1년차 : 100%)		컨설팅	국비 100% (1년차 : 100%)

\* 지방비의 분담 비율은 시·도가 20%, 시·군이 8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자체 간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가. 마을발전소

- (개요)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등)·마을 공동부지 등에 주민들이 공동 운영, 관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한 전력 판매로 발전수의 창출
- (사업부지)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주민 동의 및 계통연계가 가능한 사업대상지
  -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등), 국·공유지, 유희부지, 건물 지붕 등에 사업 시행 가능
    - \*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등) 활용 시 시설관리자와 사전 협의(사용허가) 필요
    - \*\* 사업신청 시 부지 사용과 관련된 내용(소유자, 토지취득 또는 임대방안, 관련 절차·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 전력 판매를 위해 계통연계가 가능한지 한국전력공사에 확인 필요
  - 마을법인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가 가능한지 담당 부서에 확인 필요
- (설치유형)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수상·육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 마을 환경, 주민 의사 등 해당 사업대상지의 사업 여건에 따라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가능하나 사업비 초과 시 국비 추가 지원 불가
- (설치용량) 에너지진단을 통해 법정리 단위의 주택용 및 농사용 연간 총소비 전력량 생산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량을 산정하여 결정
  - 설치용량은 주택용, 농사용 사용전력으로 산출된 용량을 기본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산정 전력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 근거 작성하여 제출
    - \* (참고) 발전용량 산출 기본 : 연평균 소비전력(kWh)÷3.6(h)÷365(day) = 발전용량(kW)
  - 설치용량은 최소 299kW 이상이어야 함
- (설치기준) 한국산업표준(KS)를 준수하고, 전기사업법 등 관련 규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태양광설비 시공 기준) 등을 따라야 함
  -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건축구조기준, 수도권(수상태양광), 한국산업표준(KS), 한국농어촌공사 규격입찰서 제출기준 및 기술규격서 등
- (지원내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인허가, 계통연계비용 부대경비 등
  - (시설설치) 태양광 모듈, 구조물, 인버터, 접속반, 계량기, 시공비 등
  - (부대경비) 설계, 감리, 소규모 환경평가, 인허가 비용 등
  - (계통연계비용) 기타 계통연계에 필요한 비용
    - \* 부지 매입비, 농지전용비 등은 지원 불가
    - \*\* 발전소 설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대토목 공사비는 지원 가능

- **(주민동의)** 설치지역, 설치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동의 확보
  - 지자체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필요**
  - 재생에너지 시설설치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인근 마을에도 사업설명회 개최 권장**
- **(발전시설 운영·관리자)** 발전시설 설치지역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마을법인
  - (운영주체) 해당 마을 구성원 대다수가 참여하는 마을법인
    - \* 구체적인 범위는 지자체에서 판단하되, 최소 **마을 가구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여야 함
    - \*\*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할 수 있어야 함
  - (마을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민법」상의 법인으로 설립 가능
    -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불가능하므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한 별도의 협동조합(또는 법인) 설립 필요
    - \*\* 정관에 발전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 및 수익금 분배에 관한 내용 명시 필요
- **(운영·관리) 수익금 관리 및 발전 효율 유지를 위한 수리 등 유지보수, 철거 등**
  -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설 운영관리자는 수익금 관리, 전기안전관리, 보험 가입 및 전기료·통신료 납부, 시설 수리 등 시설의 안정적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안전관리대행업체 위탁 대행 가능)
  - 마을발전소는 운영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 필요
  - 시설은 최소 10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마을법인의 관리 및 지자체가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인 10년간 사후관리 필요
    - \* 지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에 따라 중요재산으로 등록하고 10년간 소유권 보존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실질적으로 시설의 활용이 종료되었을 시(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인 10년과는 별개) 운영·관리자가 발전시설을 철거하여야 함**
  - (매매 등 제한) 시설 운영 기간 내 양도·양수 금지
- **(수익관리)** 발전 수익금은 발전시설 관리 및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 마을발전소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마을발전소의 유지관리 및 수리, 사후 철거 시 활용
  - 지자체 관내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마을 공동기금 조성 등 지자체 여건에 맞게 공익적 활용방안 자체적으로 구성\*
    - \* 특정한 및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활용방안 마련

◆ (참고) 마을발전소 건설 시 REC

-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비율만큼은 국가(지자체)에 공급인증서(REC) 발급
  - \* **국비 지원 비율만큼은 마을법인에 REC 발급 불가**  
(예: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받은 경우 REC의 50%는 국가, 50% 지자체 소유)
  - \* **단, 지자체가 마을법인에게 REC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지자체의 지원금 비율만큼 마을법인에 REC 발급 가능(상세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필요)**
- 전기 발전 금액(평균 기준) : [SMP+(REC×REC 가중치)] × 발전용량(kW) × 365(d) × 3.6(h)
  - \* REC는 입지 조건 등에 따라 가중치가 다름  
(참고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국비 지원한도액) 488백만원/개소(1년차 97.5 2년차 390.5)

- 지원조건 : 국비 50%(1년차 20%, 2년차 80%), 지방비 50%

나. 농업 가공·유통시설 및 주택 재생에너지 설치

- (개요)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및 주택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시설설치
- (사업부지) 주택 및 농업 분야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건물 지붕 또는 건물 소재지 지면 내 유희부지에 자가 소비전력 생산용 재생에너지 시설설치가 가능한 곳
  - (가공·유통시설 대상)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이 운영하는 농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
  - (주택 대상) 사업소재지 내(법정리 기준)에 위치한 주택
  - 주택 지원규모(개소 수)는 가공·유통시설 발전시설 용량 및 RE100 실증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설정
  - (시설기준) 10년 이상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시설 운영이 가능한 시설
    - \* 지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에 따라 중요재산으로 등록하고 10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설치유형)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 (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월별 사용량 편차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소비전력량의 최대 90% 규모의 발전용량 산출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컨설팅을 통해 결정
  - \* (참고) 발전용량 산출 기본 : 연평균 소비전력(kWh) ÷ 3.6(h) ÷ 365(day) = 발전용량(kW)  
가공·유통시설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경우 위 식으로 산출된 발전용량의 90% 지원
  - 발전용량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컨설팅 시 지난 3년간 전기 사용량 고지서 확인

- 건물의 준공연도,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 진단 통과 시에만 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 가공유통시설 운영자(소유자)가 사업 신청
- 가공유통시설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와의 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여부 및 사용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협약 등 계약서 첨부 필요
- (주택 재생에너지) 주택의 경우 설치 용량은 개소당 최대 3kW이며 개별 주택의 상황(설치 가능 면적, 사용량 등)에 따라 결정
  - 신청자는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여야 함
    - \* 소유자와 거주자가 일치하여야 하며, 산업부나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태양광 대여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신청 불가
  - 무허가 주택 또는 미등기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하며, 지번 내 유희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허가·미등기 주택 지원 불가
  - 태양광 등 설치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만 가능
- (한전 접속연계)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상계거래나 단순병렬로 상황에 적합하게 선택

계약유형	설비유형	관련법령	발전용량	적용사업자	거래방법
상계거래	일반용	산업부 고시	10kW이하 (태양광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전기요금에서 상계 또는 현금정산	한전과의 상계거래계약 체결을 통한 거래

- (발전시설 운영·관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의 발전 효율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 등 시행
  - (운영기간) 재생에너지 시설 최소 10년 이상 유지
    - \* 시설운영·관리자 명의 이전은 가공유통시설 및 재생에너지 시설을 유지하는 조건에 한함
- (자부담 확보) 신청자(소유자)가 서명한 자부담 협약서 필수 첨부
  - 사업자 선정 후 추진계획 승인 시 자부담 납부 여부 확인 후 승인
- (지원내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비용, 인허가 등 부대경비 등
- (국비 지원한도액) 225백만원/개소(1년차 45, 2년차 180)
  - 지원조건 : 국비 50%(1년차 20%, 2년차 80%)\*, 지방비 40%, 자부담 10%
  - \* '24년 신규 사업대상기관 기준

## 다.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 (개요) 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재생에너지 설치 및 단열 개선 등 패시브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건축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지원
- (사업범위) 시설을 예산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하거나 개축 등 (건축면적 70~100㎡ 기준)
  - \*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 사업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가 높은 시설
  -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후 30년 이내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시행
  - \* 붕괴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을 경우 개축만 가능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에 반영
  - 주민이나 지자체 등의 부담으로 추가 설계 및 시공 가능 (단, 국비 추가 지원 없음)
- (지원내용)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리모델링 실증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 (시설설치)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
  - (성능진단비) 에너지 성능진단비(한국패시브건축협회의 인증 필요) 등
  - \* 단, 토지 매입비 등 지원 불가
- (성능기준) 한국패시브건축협회인증 A2 등급 이상(에너지효율등급 기준 1+++ 수준)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 (시설 운영·관리자) 해당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마을 주민단체, 지자체 등)
  - \* 개인 소유의 공동이용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비 지원한도액) 155백만원/개소(1년차 31, 2년차 124)
  - 지원조건 : 국비 50%(1년차 20%, 2년차 80%), 지방비 50%
  -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총사업비 내에서 리모델링비 최대 600백만원(국비 300백만원)까지 편성 가능
  - \*\* '24년 신규 사업대상기관 기준

## 라.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 (개요) 마을 단위 전력 소비량 분석 및 적정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규모 진단 등 농촌 RE100 실증을 위한 컨설팅 추진
- (컨설팅) 마을의 전력사용량 산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적정 용량 도출 및 마을발전소 위치 선정, 유통가공시설 구조진단 및 컨설팅 보고서 등
  - 재생에너지 보급 필요성 등 주민인식개선 교육, 만족도 조사



○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 대상 부지 등 사전 현장 조사, 지자체 신청서 작성 지원, 외부 용역 관리 등

○ (국비 지원한도액) 50백만원/개소(1년차 50)/ 국비 100%,(1년차 100)

#### 4. 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 부지 확보 근거자료

- 마을발전소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장기임대 계약서, 시설 설치 협약서, 사용기간 협약서 등 **부지 확보 가능하다는 증빙자료**, (농업기반시설에 마을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농업기반시설 등록증
- 농업 생산·유통·가공시설 :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기본규정 제34조 7항 관련), 건축물대장, 소유주 동의서, 자부담 납입 협약서, (유통가공 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를 시) 시설설치 협약서 및 사용기간 협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한전 전기사용량 증빙자료(3년)
- 주택 : 주민(소유주) 동의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주택 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추가 제출) 토지대장
  - \*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필요
- 공동이용시설 : 건축물대장 등 소유주 확인 가능한 자료, 한전 전력사용량, 난방 고지서 등 에너지 소비량 증빙자료(3년)

#### 5. 예산 내역('24년 신규 마을 1개소)

○ 총사업비 : 1,786백만원(국비 918, 지방비 823, 자부담 45)

- 1년차 : 433백만원(국비 223.5, 지방비 164.5, 자부담 45)

☞ 지자체 교부금 223.5백만원, 농어촌공사 교부금 50백만원

- 2년차 : 1,353백만원(국비 694.5, 지방비 6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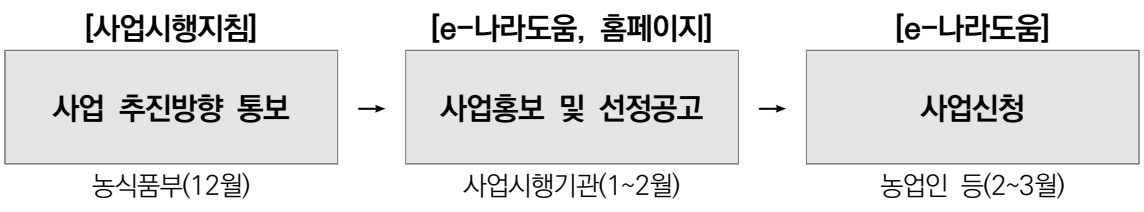
☞ 지자체 교부금 694.5백만원

구분		합계	지자체 교부액(백만원)			공사 교부액
			마을발전소	가공유통시설	리모델링	건설팅비
지자체 1개소 소요 예산 (백만원)	합계	1,786	976	450	310	50
	국비	918	488	225	155	50
	지방비	823	488	180	155	-
	자부담	45	-	45	-	-

구분			합계	지자체 교부액(백만원)			공사 교부액
				마을발전소	가공유통시설	리모델링	건설당비
연차별 투자액 (백만원)	1년차	소계	433	195	126	62	50
		국비	223.5	97.5	45	31	50
		지방비	164.5	97.5	36	31	-
		자부담	45	-	45	-	-
	2년차	소계	1,353	781	324	248	-
		국비	694.5	390.5	180	124	-
		지방비	658.5	390.5	144	124	-
		자부담	-	-	-	-	-
지원조건 (%)		합계	-	100%	100%	100%	100%
		국비	-	50%	50%	50%	100%
		지방비	-	50%	40%	50%	-
		자부담	-	-	10%	-	-
연차별 투자율(%)		1년차	-	20%	20%	20%	100%
		2년차	-	80%	80%	8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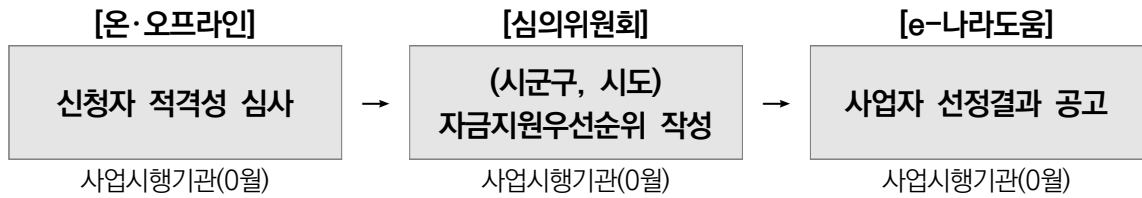
###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보취약계층으로 지정 및 업무대행 지정 불가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농식품사업이 용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할 수 있다.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해야 함.

## 2. 사업자 선정(※공모사업인 경우)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확인**해야 함
  - \* e나라도움을 통한 자격검증,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 e나라도움을 통한 수혜이력,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이력을 확인하여 중복·편중 지원 방지
- 유사자금\* 지원제한(「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
  - \*\* 「기본규정」 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서 검토 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 1)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 2)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3)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 4)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규정」 제35조제7항)
  - 5) 기타 사업시행지침에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 경우
-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기본규정」 별표 6)에 적합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안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 사업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관외경작자 불이익 금지 관련 (관외경작자 지원제한 완화 대상사업만 해당)
  - 지자체가 관외경작자 지원을 임의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농식품사업 지원 기준을 정하여 사업지침에 명시
  - 관외경작자는 농지 등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의 임의적인 지원 제한 금지 내용을 명시하여 개정
  - 부득이한 경우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의·조정하고 그 내용을 명시
  - 사업시행 지자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24.10), 사업 평가 시 우수한 지자체에 가점 부여, 표창, 예산배정시 고려 등 인센티브 방안 강구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 제출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산림

---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들의 소득안정

## □ 사업내용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임업인·소규모임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임업인·농업법인 (이하 “임업인등”이라 함)에게 직불금 지급
-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등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각각 10%를 감액하여 지급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하나 제외 대상\*\*인 경우 직불금 미지급

\* '19.4.1.~'22.9.30. 임업경영체 등록 산지(육림업은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이내 지급대상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가 실시한 조림·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

\*\* 국·공유림, 산지전용, 타 용도 일시사용, 부정수급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산지, 주거·상업·공업·산업단지 지정 등 산지, 휴경 산지 등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임업인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제외 대상\*\*인 경우 직불금을 미지급

\*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60일 이상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육림업 제외, 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

\*\* 지급대상 산지 합이 임산물생산업 1천㎡·육림업 3만㎡ 미만, 주업요건 미충족(해당자에 한함), 부정수급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 취득 등

- 지급대상 산지·임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하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

- ①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합이 5천㎡ 이하

- ② 임가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이 1만5천5백㎡ 미만
- ③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 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 계속 3년 이상
- ④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 계속 3년 이상
- ⑤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미만
- ⑥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백만원 미만
- ⑦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천8백만원 미만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기준 : (소규모임가) 130만원,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지급대상 산지 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 '24년 예산 : 54,375백만원(국비 100%)

**□ 사업신청(직불금 등록신청)**

- 장소 : 산지 소재 읍·면·동
- 신청기간 : 별도 공고 예정

**□ 대상자 선정**

-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이 공고하여 정하는 날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읍·면·동에 제출
- 실경영 여부, 부정한 산지분할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지방산림청·지자체 합동점검 추진하여 적격자를 지급대상자로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사무관 이민규	042-481-1241
		주무관 이연호	042-481-1242
콜센터			1588-3249

## 1. 사업대상자

- 임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 종사 임업인, 농업법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급대상 산지 요건

〈 임산물생산업 〉

-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19.4.1.~'22.9.30.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산지

\* '22.10.1. 기준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

- (지급제외 산지)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유림, 공유림

나.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

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는 제외

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마.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바.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이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서의 제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함

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다만,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구·지역·단지의 산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산지분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산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산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아. 휴경 중인 산지

자.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

#### 〈 지급대상 부적합 산지 〉

1.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버섯류 및 수목부산물류 제외)을 파종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2.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버섯류를 종균을 접종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버섯류 중 송이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는 제외
3.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수목부산물류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는 제외

#### 〈 육림업 〉

- (지급대상 산지)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19.4.1.~'22.9.30.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산지

\* 등록 신청연도 직전 10년 이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가 실시한 조림·숲가꾸기 등 육림실적이 있는 산지)

\*\* '22.10.1. 기준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

- (지급제외 산지)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유림, 공유림

나.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 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 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제외되는 경우를 포함).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임도,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에 한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는 제외
- 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 마.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 바.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이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서의 제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함
- 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산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산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 아. 휴경 중인 산지
- 자. 다른 법률에 따라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

○ 지급대상자 요건

〈 공통 〉

- 임업경영체 등록
- 농촌 거주(산지 소재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한정)

\* 별도 주업요건 충족 시 지급 가능

〈 임산물생산업 〉

- (지급대상자) ①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임업인등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임업인

나.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②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 사유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계속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그 등록자가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그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임업인. 이 경우 그 임업인은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

#### 〈 소규모임가직불금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 구성원 중 임산물생산업 지급대상자 1인에게 지급

- 가.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법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 나.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의 합이 1만5천500제곱미터 미만일 것
- 다.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일 것
- 라.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일 것
- 마.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2천만원 미만일 것
- 바.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천500만원 미만일 것
- 사.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800만원 미만일 것

- (지급제외자)

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나.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 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
- 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면적(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면적의 합이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한 자
- 마.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바.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자. 다만, 주업요건 해당 자는 제외

**〈 주업요건 〉**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인 경우
  - 가. 임업인의 주소지와 같은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그 산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한 다른 시·군의 산지를 포함)를 경영하는 임업인
  - 나.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천600만원 이상인 임업인
  - 다. 농자재·종자·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원 이상인 임업인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 가. 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그 산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한 다른 시·군의 산지를 포함)를 경영하는 농업법인
  - 나.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 다. 농자재·종자·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4천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사.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 포함)를 양수(讓受)·임차(賃借) 또는 사용차(使用借)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의 경우 제외

**〈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

1. 상속에 의한 경우
2.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에 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이하 이 목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1인[양수인등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한 자(이하 이 호에서 “양도인등”이라 한다)와 양수인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1인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 나. 양도인등은 지급대상 산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 가목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수령을 포기할 것
  -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을 것
4. 「임업직불제법」 제8조제3항제7호 본문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산지에서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경우[법 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육림업 >

- (지급대상자) ①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등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임업인

나.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농업법인

②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 사유로 육림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계속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그 등록자가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그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임업인. 이 경우 그 임업인은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

- (지급제외자)

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나. 육림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 제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자



다.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자. 다만, 주업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 주업요건 〉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인 경우
  - 가. 임업인의 주소지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그 주소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한 다른 시·군의 산지를 포함)를 경영하는 임업인
  - 나.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그 산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한 다른 시·군의 산지를 포함)를 경영하고, 해당 산지에서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
    - 1) 연간 목재 판매금액이 1천600만원 이상인 임업인
    - 2) 농자재·종자·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원 이상인 임업인
2. 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도에 소재하는 30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한 다른 시·군의 산지를 포함)를 경영하는 농업법인인 경우

라.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경우는 제외

### 〈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

1. 상속에 의한 경우
2.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에 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이하 이 목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1인(양수인등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한 자(이하 이 호에서 “양도인등”이라 한다)와 양수인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1인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 나. 양도인등은 지급대상 산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 가목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육림업 직접지불금(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포기할 것
  -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을 것
4. 「임업직불제법」 제14조제3항제4호 본문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산지에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육림업에 종사한 경우

○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불이행시 10% 감액)

〈 공통사항 〉

항목	준수사항	관리기관	
<p><b>①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b></p>	<p>△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 산불·산사태 및 병해충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과 산지 정화 활동                      △ 이웃한 토지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경계 표시·관리</p>	<p>지방 산림청</p>	
<p><b>②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b></p>	<p>△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매년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등의 역할</li> <li>2. 임업직불제 운영 및 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li> <li>3.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등의 준수사항</li> <li>4. 그 밖에 임업직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li> </ol> <p>〈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확인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교육기관 지정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li> <li>·지정된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기관 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해당 기관의 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li> </ul> <p>△ 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제출                      * 다만, 산림청장이 정하는 교육 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p>	<p>지자체 전문교육 기관</p>	
<p><b>③ 그 밖의 준수 사항</b></p>	<p><b>③-1. 비료의 보관 준수</b></p>	<p>△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를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p>	<p>지자체</p>
	<p><b>③-2. 농약 및 분뇨 등 배출에 관한 금지의무 준수</b></p>	<p>△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농약 및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유출·방치하지 않을 것</p>	<p>지자체</p>
	<p><b>③-3. 하천의 사용관리 준수</b></p>	<p>△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하천수 이용시 허가 등을 받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p>	<p>지자체</p>
	<p><b>③-4. 지하수 개발이용 준수</b></p>	<p>△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시 허가 등을 받고, 같은 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p>	<p>지자체</p>
	<p><b>③-5. 퇴비 액비에 관한 준수</b></p>	<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지 아니하고 액비 살포기준을 지킬 것</p>	<p>지자체</p>
	<p><b>③-6.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금지</b></p>	<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p>	<p>지자체</p>
	<p><b>③-7.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생 신고</b></p>	<p>△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된 산지등 및 그 주변에 규제병해충, 방제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신고할 것</p>	<p>지자체</p>

항목	준수사항	관리기관
③-8. 농업경영정보 변경사항의 변경등록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할 것 * 임업인 또는 법인의 성명(명칭), 주소, ▽ 산지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재배품목 등	지방 산림청
③-9. 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	△ 영농폐기물을 임의로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 등에 보관하여 산지등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할 것 △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을 산지에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않을 것 △ 시·군·구 : 마을에서 모아둔 폐기물을 마을순회 회수차 등을 운영하여 수거 *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소각, 투기 등을 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강화	지방 산림청
③-10.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영림기록 작성 보관	△ 영림활동과 관련된 (1) 종자(종묘)·농약·비료 구매내역, 사용내역 등(영수증 포함) (2) 굴삭기 등 기기 작업 일자 (3) 수확·판매 등 기타 영림활동 등을 재배기간 동안 기록 하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연도의 다음 연도 부터 2년간 보관할 것 △ 지방산림청 등 관계기관에서 임업직불금 준수사항 이행 점검, 부적합 발생시 농약·비료 구매·사용기록을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시 협조할 것	지방 산림청
③-11.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임업 관련 협회·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할 것	△ 농업직불금에서 인정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적용함. 또한, 임업 관련 협회 및 단체(산림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모임·행사에 참석함을 증명할 것 ·다음의 임업 관련 협회·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연 1회 이상 참여할 것 가. 지역 또는 마을공동체 주변 영농·생활폐기물의 공동 수거·처리 나. 마을공동 공간의 청소·정비 다. 지역 경관개선 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지방 산림청

〈 임산물생산업 〉

항목	준수사항	관리기관
①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기준 사용	△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 국내 미등록 농약(밀수농약),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난 농약(폐기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잔류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잔류 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지방 산림청 지자체
② 임산물 생산 시 유해물질 잔류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 임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량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지방 산림청

항목	준수사항	관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산물 생산단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의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li> </ul>	
③ 임산물 유통·판매 시 유해물질 잔류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량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li> <li>·임산물 유통·판매단계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li> </ul>	지자체
④ 출하 제한 및 임산물 폐기 등 처리 조치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하제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및 임산물 폐기, 용도전환, 출하 연기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처리조치 준수</li> </ul>	지방 산림청

### 〈 육림업 〉

항목	준수사항	관리기관
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 진입로, 작업로를 관리할 것</li> <li>△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실행할 것</li> </ul>	지자체
② 입목의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 그루수 유지</li> <li>△ 조림 후 2년 이내 활착률 80% 이상. 그 후 60% 이상 (8cm 미만). 경급별 그루수의 60% 이상 의무이행으로 인정</li> </ul>	지방 산림청

### 3. 지원대상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고 “2.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금으로 별도 용도를 정하고 있지 않음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국비 100%
- (사업기간) 1년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소규모임가 : 130만원
  - 면적직불금(송이 제외) 지급단가

구분	1구간 (2만제곱미터 이하)	2구간 (2만제곱미터 초과 6만제곱미터 이하)	3구간 (6만제곱미터 초과)
단가 (1만제곱미터당)	94만원	82만원	70만원

- 송이 지급단가

구분	1구간 (10만제곱미터 이하)	2구간 (10만제곱미터 초과 20만제곱미터 이하)	3구간 (20만제곱미터 초과)
단가 (1만제곱미터당)	62만원	47만원	32만원

- 육림업 직불금 지급단가

구분	1구간 (10만제곱미터 이하)	2구간 (10만제곱미터 초과 20만제곱미터 이하)	3구간 (20만제곱미터 초과)
단가 (1만제곱미터당)	62만원	47만원	32만원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업무 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지참 수립 및 사전검증 등 사전준비	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수요 등을 반영 <b>시행지침 수립·시행</b> * 준수사항 관련 사업시행지침(점검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li> <li>▶ 직전 연도 직불금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행정정보 연계 등 <b>사전 정보 구축 및 자격요건 사전검증</b></li> <li>▶ 임업인 대상 임업직불금 자격요건, <b>신청·접수 등 공고</b> * TV방송, 일간지·전문지,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li> </ul>
② 직불금 신청·등록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불금 <b>등록신청서를 임야소재지 기준 읍·면·동 제출</b> * 소규모임가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li> <li>* 임차 임업인은 임지의 신규 임차, 임대차계약 종료 등 적법한 권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 제출</li> <li>* 직불금 등록자 대상으로 등록신청서 인쇄·배포 등</li> <li>* 지자체 사업관리 예산 내시 통보(5월)(*예정)</li> </ul>
③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대상 산지·지급대상자 <b>자격요건 등 확인</b>(대량검증)</li> <li>▶ 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b>읍·면·동 조사위원회 심사</b></li> <li>▶ <b>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신청자 정보공개</b></li> <li>▶ 지자체 직접지불금 예산 내시 통보(7월)(*예정)</li> </ul>
④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지급대상자 확정	2~4월 (사전조사) 6~9월 (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정보 변경 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산지·임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대량검증) 지속</li> <li>▶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 대상 등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지자체 서류 및 현장점검</li> <li>▶ 준수사항 이행점검(지방산림청·관리소 계획에 따라 추진)</li> <li>▶ 임업직불금 <b>지급대상자 확정(9.30.)</b></li> <li>▶ 임업직불금 자격요건 최종 점검(농업외소득, 시스템 검증 등) *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 입력은 시·도 담당자</li> </ul>
⑤ 지급금액 산정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 대상 점검 및 확정 * 감액대상자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li> <li>▶ <b>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b> 및 통계 자료 작성(시스템)</li> <li>▶ 임업직불금 <b>교부결정 통보</b>(산림청 → 시도 → 시·군·구)</li> </ul>
⑥ 직불금 지급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임업직불금 지급</b>(시·군·구 → 임업인)</li> <li>▶ 임업직불금 <b>수령자 정보공개</b>(15일 이상)</li> </ul>
⑦ 사후관리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 및 시·군 신고센터</li> <li>▶ 지자체 교차점검 및 산림청·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li> </ul>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석재의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및 업계 종사자 생활 환경개선

## □ 사업내용

- 석재채취·가공 사업장에 분무시설, 세륜시설, 소음·진동 방지막, 부산물 재활용·정화시설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 설치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

## □ 지원내용 및 예산

- 석재채취업 : 미세먼지 제거용 대형백필터(여과포), 분무시설(스프링클러, 관정, 분무배관, 살수기), 세륜시설, 소음 및 진동방지막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 석재가공업 : 작업장 미세먼지 흡수·제거(흡후드)시설, 부산물 재활용·정화시설(침사지, 배수로), 소음 및 진동방지막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 지원 기준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지원 기준액(개소당) : (채취업) 총사업비 155백만원, (가공업) 총사업비 80백만원
- '24년 예산 : 3,125백만원(국비 1,250, 지방비 937.5, 자부담 937.5)

## □ 사업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시·군·구 녹지과 및 산림과로 신청
- 신청시기 : '23. 1~2월까지(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 사전 확인 필요)

## □ 대상자 선정

- 지자체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자를 모집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 선정기준에 따라 지자체별 보조사업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 ※ 내내역사업 :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산지정책과	사무관 김형준 주무관 조윤주	042-481-4193 042-481-1224



## 1. 지원자격 및 요건

○ 석재채취·가공업에 등록된 사업자

구 분		지 원 자 격
석 재 사업자	채취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것으로 본 자
	가공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인증된 우수사업자에 대해 우선 지원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 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석재채취·가공업 사업장 내 미세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

구분	세 부 내 용
석재채취업	미세먼지 제거용 대형백필터(여과포), 분무시설(스프링클러, 관정, 분무 배관, 살수기 등), 세륜시설, 와이어쓰, 소음 및 진동 방지막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석재가공업	작업장 미세먼지 흡수·제거(휴후드)시설·부산물 재활용 또는 정화시설(침사지, 배수로), 와이어쓰, 소음 및 진동 방지막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 살수 및 분진제거 이외의 용도로 개조 가능한 살수차, 청소차는 지원 불가

- 본 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사후관리기간 : 5±2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 사후관리기간 경과한 경우 시설보완으로 지원 가능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자체 자본보조(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으로 하되, 자부담은 용자로 대체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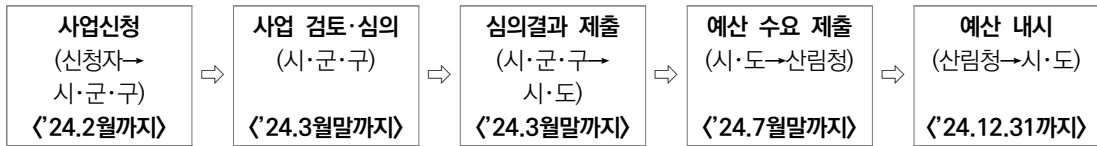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채취업) 총사업비 155백만원/개소, (가공업) 총사업비 80백만원/개소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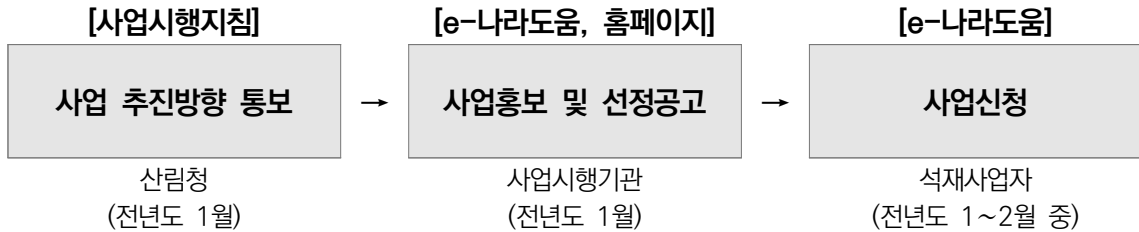
□ '25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신청·선정 절차

'24.2월까지 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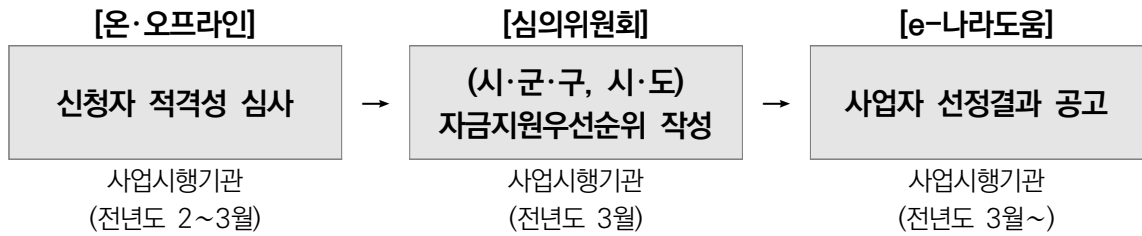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은 전년도 1월초에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홍보 및 사업자 선정공고를 실시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
  -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월 중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성 검토,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
- 석재산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 녹지과 또는 산림과)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등록증(석재채취업/가공업), 사업계획서, 자부담금 납부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 시·군·구는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 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 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자부담능력(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중복편중 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모범사업장 우선지원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 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사업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I

## 사업 개요

## □ 목적

- 노동력에 의존하는 묘목생산 구조를 시설 기계화·자동화 등을 통해 비용 절감 및 농촌 노동력 감소 등에 적극 대응

## □ 사업내용

- 온실·야외 생육시설, 파종 및 포장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 생육환경조절시스템, 자주식 관수기 등을 통한 생육환경 개선
- 묘목품질유지 및 적기수급을 위한 저온저장고, 기존시설의 개·보수, 양묘생산을 위한 장비 구입 등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민유양묘장이 위치하고 있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 \* 용자 20%는 자부담으로 전환 가능, 지방비가 부족한 경우 자부담률 증가 가능
  - \* 민유양묘장 소유토지이거나 그 토지를 7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 신청가능
- 개소당 총사업비 10억 이하의 예산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량의 제한은 없음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묘목생산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구입 등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용자 20%, 자부담 20%
- '24년 예산 : 2,000백만원(국비 600, 지방비 600, 용자 400, 자부담 400)

□ 사업 신청

- 장 소 : 신청서를 사업대상지 시·군·구 산림부서에 신청
- 신청기간 : 전년도 7~8월

□ 대상자 선정

- 공모사업 선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이용구 주무관 권현호	042-481-4185 042-481-4179

## 1. 사업대상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묘목생산 대행자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민유양묘장이 위치하고 있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 \* 용자 20%는 자부담으로 전환 가능, 지방비가 부족한 경우 자부담률 증가 가능
  - \* 민유양묘장 소유토지이거나 그 토지를 7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 신청가능
- 개소당 총사업비 10억 이하의 예산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량의 제한은 없음

## 3. 지원대상

- 묘목생산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구입 등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자별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비용(설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중 국비 지원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총 사업비의 60% 지원(국비 30%, 지방비 30%, 용자 20%, 자부담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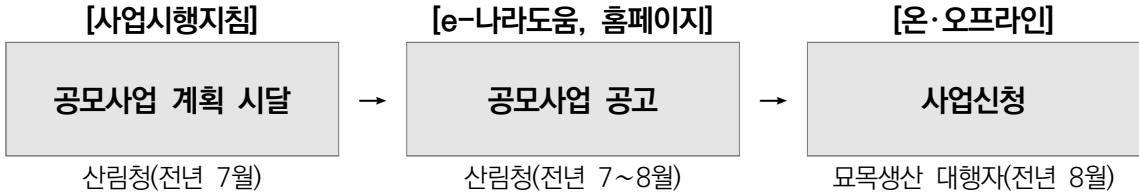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총사업비 10억 이하의 예산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량의 제한은 없음
  -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일 경우 2년 연차사업으로 공모 신청해야 하며, 연차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공모 및 선정 등의 절차 없이 2년차 사업 지원 가능(단, 공모심사 과정에서 국비예산 상황 등에 따라 단년사업만 반영될 수 있음)
  - \* 개소당 10억 이상이라도 자부담 또는 지방비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는 가능

###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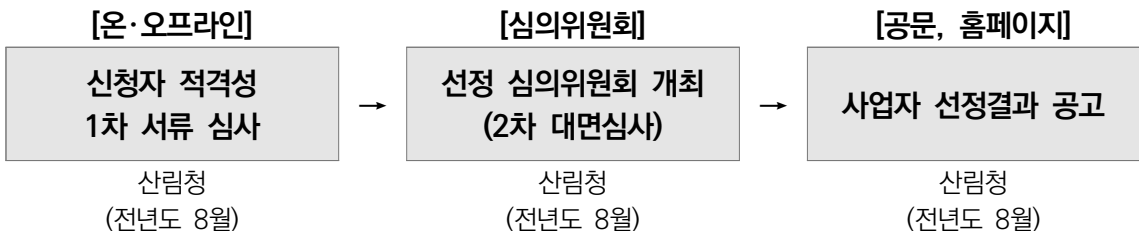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산림청은 전년도 7월까지 공모사업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고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28조제8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사업 우선순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을 고지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를 통하여 파악된 사업신청 규모 및 내역을 산림청에 제출
- 산림청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계획서, 대출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세부사항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참고 한다.

### 2. 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산림청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안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산림청(산림자원과)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1차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선정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2차 심사를 진행한다.
  - 1차 심사는 신청시설·금액, 운영실적 등 평가표에 따라 적·부만 판단
  - 1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 \* 시·군·구 담당자 또는 사업실행자가 사업계획 발표
  - 심사위원회에서는 발표 내용에 대하여 심사표에 따라 심사
    - \* 심사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 평가표에 따라 최고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확정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산림청은 1, 2차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산림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함) 제51조제2항)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지 및 규모, 설치시설 등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산림청 또는 사업시행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변경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I

## 사업 개요

## □ 목적

- 계속된 연작으로 지력이 약화된 관상수 재배포지의 토양의 물리성 및 화학성을 개량하고, 산성화된 토양 산도 교정 및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 사업내용

- 청정임산물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량 증대와 안전먹거리 제공 및 수출기반 마련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토양개량제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또는 단체
- 유기질비료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 지원내용 및 예산

- 토양 개량제 : 국비 70%, 지방비 30%
- 유기질비료 : 종류·등급별 정액지원(국비 1,000~1,400원, 지방비 600원 이상)
- '24년 예산 : 2,100백만원(국비2,100, 지방비 900)

## □ 사업 신청

- '24. 11~12월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 류재순 주무관 송은석	042-481-4194 042-481-4209

##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 토양개량제의 경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단체에 한하여 지원 단, 잔디는 농업경영체 포함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립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립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사업장(산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 우선 지원 >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단, 법인은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농업재해보험(농작물 및 농업인)에 가입한 생산자 및 단체(보험가입기간 미도래 시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 저온,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 표고재배사 냉·난방 시설, 관수·관정시설, 비가림시설, 냉해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지주대, 지지대, 받침대 등
- 산촌거점권역(시·군)\*의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응모시 가점부여

\* 산촌거점권역 : 과산군, 울진군, 인제군, 진안군, 평창군 5개 지역

-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서 지정받은 생산자 또는 단체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임업인,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 뚝은감 : (사)한국뚝은감협회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시·군 담당자)
- 'K FOREST FOOD'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
- 청년임업인('25년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연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

### < 지원 제한 >

- 「보조금법」 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3년)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뚝은감 : (사)한국뚝은감협회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시·군 담당자)

### < 참고·주의사항 >

-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 될 수 있음

-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 등은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이수하여야 보조금 교부됨

\* 산림소득분야 협·단체,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산림교육원, 대학교 등 산림·임업분야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고등학교·대학교 산림·임업분야 전공자 및 산림·임업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임업후계자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외) 자에 한해 보조금 교부

\* 온라인 강의는 이수 시간의 50%만 인정되며,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교육이수 가능(사업 시행 당년도 보조금 교부 전 3월 말까지 이수 조건이며, 동 기간까지 교육 미 이수자는 지원 제외)

-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임업인 등은 산림소득분야 교육 이수 여부와 관련 없이 소액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세금계산서·납품확인증 등을 통해 임업경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재배경력 인정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목이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1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 3. 지원대상

- 친환경임산물 재배를 위한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토양 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구입 비용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지원조건
  - 토양개량제 : 국비 70%, 지방비 30%, 자부담 - %
  - 유기질비료 : 정액 지원 (국비 1,000~1,400원, 지방비 600원 이상)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 토양개량제

구분	세부내용	
지원기준	- (석회질비료) 소석회, 석회고토, 부산석회 - (규산질비료) 규산질 - (목재제품) 목탄, 목초액 * (목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결과에 따른 품질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 * (목초액) KS인증을 받은 제품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부산석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단가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한도	수실류	(밭)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밭 이외 수실류) ha당 총사업비 756천원(밭의 1.5배)
	관상산림식물류	(관상산림식물류)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관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잔디) ha당 총사업비 1,150천원 *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기타 임산물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적정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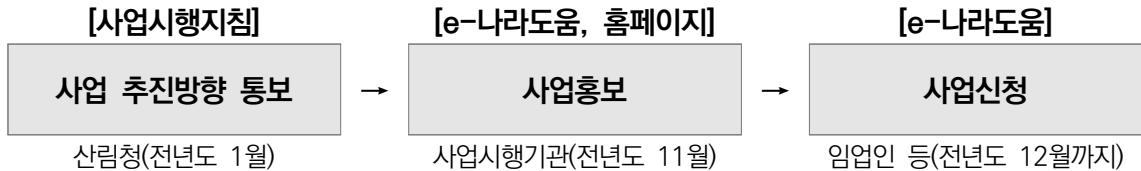
### ○ 유기질비료

구분	세부내용				
지원기준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단가	(단위 : 원/20kg)				
	구분	국고			지방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400		600이상
	부숙유기질비료	1,400	1,200	1,000	
지원한도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품목별 적정 시비량 적용				

□ '25년 산림소득사업(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신청·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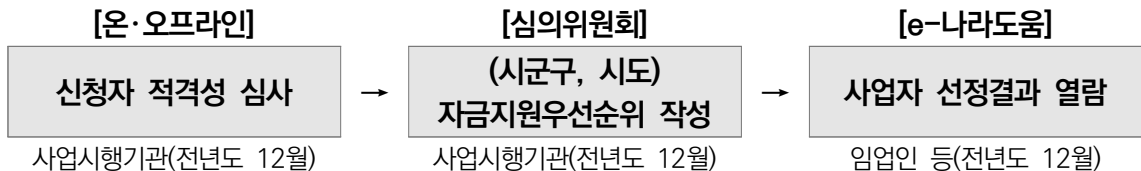
- '24. 12월초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시·군·구별 2024년도 사업 신청 물량을 바탕으로 추정한 2025년도 사업수요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해당 수요를 기초로 예산안 요구 ('24. 8월)
- 산림청에서는 예산 확정 후 '24. 12월말 예산 내시

1. 사업 공고 및 신청단계



- 산림청은 사업 전년도 1월초에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산림소득사업을 홍보한다.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산림소득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증빙자료(견적서 등)를 제출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I 사업 개요

## □ 목 적

-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지·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 □ 사업내용

- 작업로, 관정·관수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시설 등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구분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	소액사업
사업대상자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2년 이상 임산물 재배 중인 자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보조비율	국고 40%, 지방비 20%, 용자 -, 자부담 40%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지원한도	• 노지재배 1~5억원 이하, • 시설재배 1~7억원 이하	• 1억원 미만

## □ 지원내용 및 예산

- 종자·묘목 구입, 임내정리 및 식재, 관정·관수 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시설, 작업로, 모노레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자동화시설, 기계장비, 숲가꾸기(숙아베기, 천연림 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 등을 지원
  - \* 해당 보조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관리비용은 지원 불가
  - \* 사업계획에 숲가꾸기 포함시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어린나무가꾸기의 경우 3년) 경과하지 않은 사업지에는 숲가꾸기 지원 불가

※ 숲가꾸기가 필요한 사업지는 가급적 사업시행 전 '산림자원육성·관리(농특)' 단위사업 예산의 '숲가꾸기'와 연계하여 선행하고, 부득이 한 경우 본 사업으로 숲가꾸기를 실행하거나, 풀베기 등 가벼운 사업 위주 지원

○ '24년 예산 : 15,180백만원

(국비 15,180, 지방비 17,950, 용자 15,092, 자부담 14,881)

## □ 사업 신청

① 소액사업 : '24. 1~2월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② 공모사업 :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공모사업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 류재순 주무관 송은석	042-481-4194 042-481-4209

###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립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립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사업장(산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 우선 지원 〉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단, 법인은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농업재해보험(농작물 및 농업인)에 가입한 생산자 및 단체(보험가입기간 미도래 시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 저온,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 표고재배사 냉·난방 시설, 관수·관정시설, 비가림시설, 병해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지주대, 지지대, 받침대 등
- 산촌거점권역(시·군)\*의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응모시 가점부여
  - \* 산촌거점권역 : 괴산군, 울진군, 인제군, 진안군, 평창군 5개 지역
-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 또는 단체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 뚝은감 : (사)한국뚝은감협회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시·군 담당자)
- 'K FOREST FOOD'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
- 청년임업인의 연령요건을 충족한 경우('25년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만 40세 이상)

### < 지원 제한 >

- 「보조금법」 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3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뚝은감 : (사)한국뚝은감협회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시·군 담당자)

### < 참고·주의사항 >

-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 될 수 있음

-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 등은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이수하여야 보조금 교부됨
  - \* 산림소득분야 협·단체,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산림교육원, 대학교 등 산림·임업분야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고등학교·대학교 산림·임업분야 전공자 및 산림·임업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임업후계자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외) 자에 한해 보조금 교부
  - \* 온라인 강의는 이수 시간의 50%만 인정되며,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교육이수 가능(사업 시행 당년도 보조금 교부 전 3월 말까지 이수 조건이며, 동 기간까지 교육 미 이수자는 지원 제외)
-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임업인 등은 산림소득분야 교육 이수 여부와 관련 없이 소액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세금계산서·납품확인증 등을 통해 임업경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재배경력 인정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목이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1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의 지원 자격
  - (공모)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소액)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의 지원 자격
  - (공모)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소액)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3. 지원대상

- 임산물 생산을 규모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 및 소액)

구 분	세 부 내 용
산나물류·수실류 수목부산물류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저장·건조시설 등
산림버섯류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생산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긋기, 가지치기, 숙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구 분	세 부 내 용
관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정·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 생산 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약용·약초류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등

☞ 산양삼 종자·종묘의 구입 조건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20만원/kg 이내 가능)임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 및 소액)

구 분	세 부 내 용
목재생산을 위해 대상지 전체면적의 기존입목에 대한 숲가꾸기(모두베기 아님) 사업 실시 + 숲가꾸기를 실시한 산림의 하층에 산나물류, 약초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	<p>숙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p> <p>* 해당 보조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관리비용은 지원 대상 아님 : 숲가꾸기 사업 대상 아님</p> <p>*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 없이 하층의 공간을 활용하여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추진하려는 경우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임</p> <p>※ 숲가꾸기가 필요한 사업지는 가급적 사업시행 전 '산림자원육성·관리(농특)' 단위사업 예산의 '숲가꾸기'와 연계하여 선행하고, 부득이 한 경우 본 사업으로 숲가꾸기를 실행하거나, 풀베기 등 가벼운 사업 위주 지원</p>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p>종자·종묘구입, 임내정리 및 식재,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모노레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p> <p>*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활용하여 재배를 하려는 경우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대상 아님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p>

☞ 산양삼 종자·종묘의 구입 조건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20만원/kg 이내 가능)임

☞ 해당 보조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관리비용은 지원 불가

☞ 사업계획에 숲가꾸기 포함시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어린나무가꾸기의 경우 3년) 경과하지 않은 사업지에는 숲가꾸기 지원 불가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방자치단체 보조(국비 20%~40%, 지방비 20%~30%, 용자 0%~30%, 자부담 20%~4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총사업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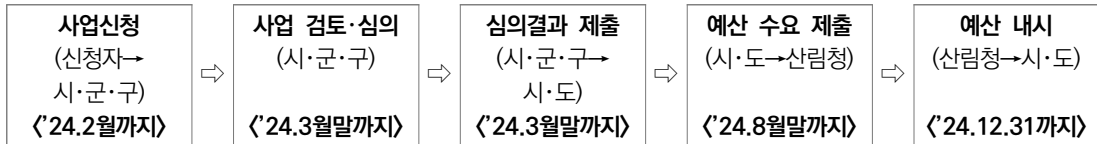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 : (노지) 1~5억원 이내, (시설) 1~7억원 이내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 : 1~5억원 이내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소액) : 1억원 미만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소액) : 1억원 미만

□ '25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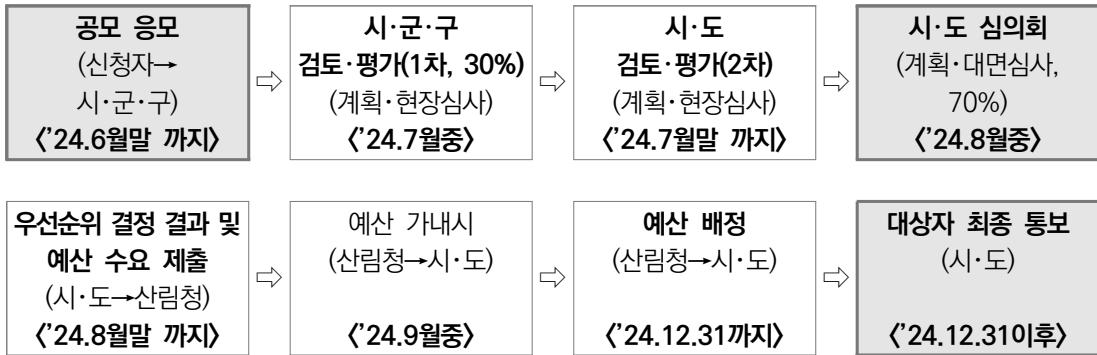
'24. 2월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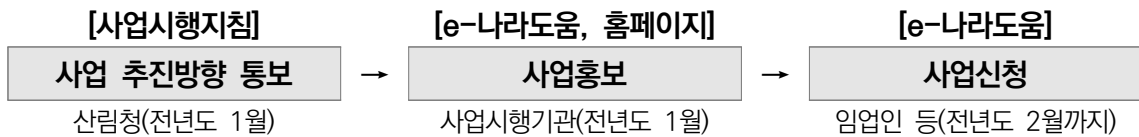
〈소액사업〉



〈공모사업〉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은 사업 전년도 1월초에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산림소득사업을 홍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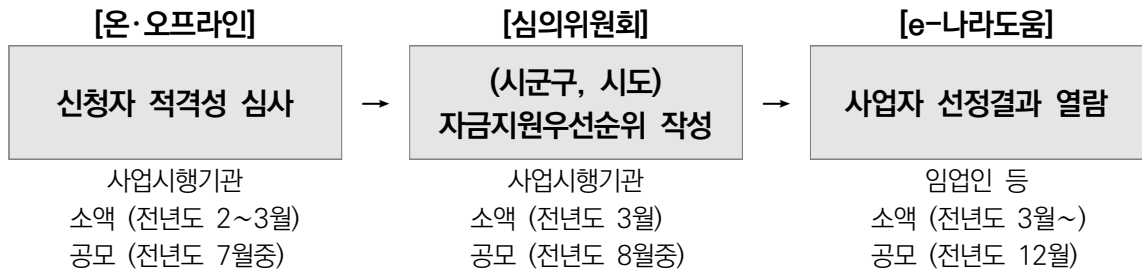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산림소득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증빙자료(견적서 등)를 제출해야 함

##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확인**해야 한다.
  - \* e나라도움을 통한 자격검증,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 e나라도움을 통한 수혜이력,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이력을 확인하여 중복·편중 지원 방지
- 유사자금\* 지원제한(「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
  - \*\* 「기본규정」 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증대 도모

## □ 사업내용

-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생산장비, 재해예방시설, 작업로시설(보수), 밤나무노령목 관리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지원비율 : 국비 20% : 지방비 30% : 용자 30% : 자부담 20%

## □ 지원내용 및 예산

- 생산장비 :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방제장비 등 지원  
\* 굴착기 지원 : 육림업 30ha이상 경영하는 자 포함
- 산림버섯 재해예방시설(보완) : 냉·난방시설, 관정·관수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산림버섯 재배 시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보완 지원
- 작업로 시설(보수) :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작업로 보수 지원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전지전정, 새순유도, 간벌, 저수고 재배 등 지원
- '24년 예산 : 6,141백만원(국비 6,141, 지방비 9,211, 용자 9,211, 자부담 6,141)

## □ 사업 신청

- '24. 1~2월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산림

산

림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특과	사무관 류재순 주무관 송은석	042-481-4194 042-481-4209

##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립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립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 사업장(산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 우선 지원 >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단, 법인은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별표6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농업재해보험(농작물 및 농업인)에 가입한 생산자 및 단체(보험가입기간 미도래 시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 저온,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 표고재배사 냉·난방 시설, 관수·관정시설, 비가림시설, 냉해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지주대, 지지대, 받침대 등
- 산촌거점권역(시·군)\*의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응모시 가점부여
  - \* 산촌거점권역 : 괴산군, 울진군, 인제군, 진안군, 평창군 5개 지역
-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 또는 단체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임업인,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 뚝은감 : (사)한국뚝은감협회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시·군 담당자)
- 'K FOREST FOOD'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
- 청년임업인의 연령요건을 충족한 경우('25년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만 40세 이상)

### < 지원 제한 >

- 「보조금법」 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3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뚝은감 : (사)한국뚝은감협회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시·군 담당자)

### < 참고·주의사항 >

-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 될 수 있음

-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 등은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이수하여야 보조금 교부됨
  - \* 산림소득분야 협·단체,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산림교육원, 대학교 등 산림·임업분야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고등학교·대학교 산림·임업분야 전공자 및 산림·임업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임업후계자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외) 자에 한해 보조금 교부
  - \* 온라인 강의는 이수 시간의 50%만 인정되며,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교육이수 가능(사업 시행 당년도 보조금 교부 전 3월 말까지 이수 조건이며, 동 기간까지 교육 미 이수자는 지원 제외)
-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임업인 등은 산림소득분야 교육 이수 여부와 관련 없이 소액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세금계산서·납품확인증 등을 통해 임업경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재배경력 인정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목이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1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 사업별 지원자격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및 생산자단체

### 3. 지원대상

- 임산물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재해예방시설, 작업로 보수 등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구 분	세 부 내 용
생산장비	(일반) 굴착기, 4륜구동 오토바이,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착기는 단기소득 임산물 등 재배면적 기준 이상인 자에 한하며, 면허를 필요로 하는 굴착기의 경우 면허 구비자(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해당조건을 구비하고 현재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가능하나 후 순위 배정) * 굴착기 지원 면적기준 - 수실류 : 15ha - 약용·약초·산나물류 : 10ha - 관상산림식물류(조경수) : 5ha - 육림업 : 30ha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거나 또는 타사업으로 지원받는 자 제외)

구 분	세 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력운반차 중 승용형과 4륜구동 오토바이는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10ha이상인 자에 한함</li> <li>*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li> <li>* 사업신청일 현재 5년 이내 유사사업으로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기계·장비 지원 불가</li> </ul>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지원(차량제외)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지원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산림버섯 재해 예방시설 (보완)	냉·난방시설, 관정·관수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산림버섯 재배 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 보완 * 원산지표시 규정 개정·시행에 따라, 수입배지에서 국내배지로 전환하기 위한 재배시설 지원
작업로 시설 (보수)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작업로 시설 설치, 노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설치조건'을 따르되,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하고 노폭을 최소화할 것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500백만원/km 범위 내 지원가능 * 위험구간 포장 시 15만원/m 지원가능 단, 포장 지원의 경우는 종단기술기와 포장계획 등이 포함된 설계 필수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숙야베기 등의 사업비 지원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자체 자본보조(국비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생산장비	(일반)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굴착기) 규격 제한없이 지원가능하나 총사업비 기준 지원한도 규격별 차등 지원(추가비용 자부담) * 규격별 굴착기 지원한도 - 장비중량 3.5톤 미만 : 40백만원/대 - 장비중량 3.5톤 이상 : 60백만원/대
	(지상방제장비)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친환경 방제장비)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작업로 시설 (보수)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총사업비 기준 1,292천원/ha * 숙야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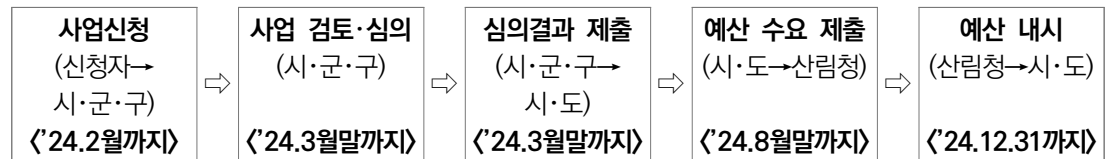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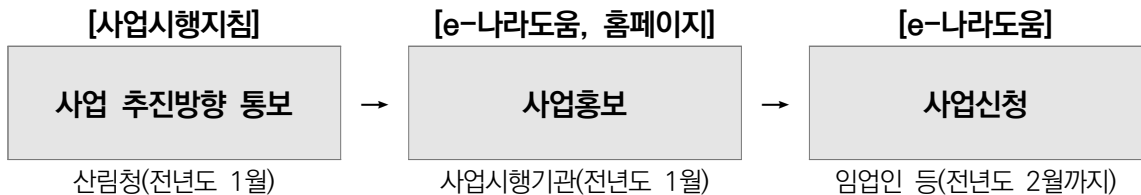
### □ '25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선정 절차

'24.2월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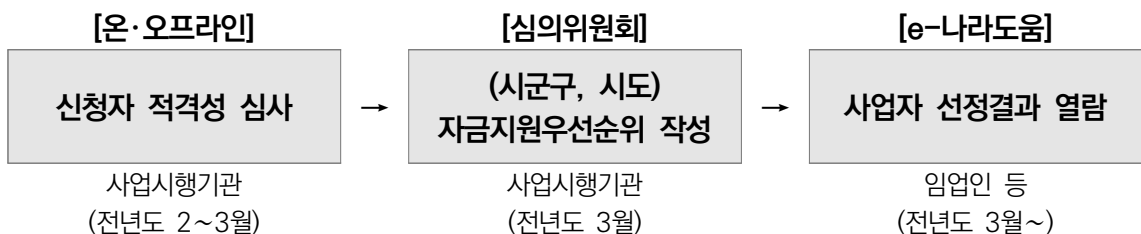
####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은 사업 전년도 1월초에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산림소득사업을 홍보한다.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산림소득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증빙자료(견적서 등)를 제출 해야 함

####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확인**해야 한다.
  - \* e나라도움을 통한 자격검증,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 e나라도움을 통한 수혜이력,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이력을 확인하여 중복·편중 지원 방지
- 유사자금\* 지원제한(「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
  - \*\* 「기본규정」 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향상 도모 및 보호·관리 주체로 육성하여 백두대간의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 마련

## □ 사업내용

- 백두대간 내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 관련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및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등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 지원 기준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개인사업 : 7.5백만원 이하로 지원
  - 공동사업 : 참여 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원 이하로 지원
  - 공모사업 : 100백만원 이상 300백만원 이하로 지원
- '24년 예산 : 5,934백만원(국비 4,154, 지방비 1,187, 자부담 593)

## □ 사업 신청

- 사업 시행 전년도 2월까지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 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사전 사업부지 확보, 자부담 능력 및 경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사무관 황재신 주무관 윤현희	042-481-8814 042-481-8815

## 1. 사업대상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단,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78조에 따라 부정수급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지원을 제한
    - \*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을 말한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 읍·면·동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당시의 법정동을 기준으로 한다.
    - \*\*\* 거주란 개인의 경우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며, 마을공동체·생산자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를 말함. 단,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①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생산자단체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 토지와 사업부지는 일치하지 않아도 됨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거주하는 마을공동체·생산자단체·주민

### < 지원 제한 >

- 「보조금법」 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3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지원요건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개인) 주민, (공동) 마을공동체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 (개인) 주민, (공모) 생산자단체
  - \* 공동사업자(마을공동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품목별 재배규모 기준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적용
  - \*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20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 지원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하고,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선정 우선순위

- 1)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2)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3)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 4)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산림버섯 생산시설, 버섯 자목, 방제·생산장비, 유기질비료 등
-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류 등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 기지원한 시설물 중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관수시설, 하우스시설 등이 사후관리 소요기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해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비 지원

\* 부기등기를 이행할 수 없는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의 사후관리기간은 부기등기를 이행하는 경우와 같은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함

#### 〈지원제외 대상〉

-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 부지 매입, 기본조사설계 및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절토, 성토 등) 비용
- 향아리, 오크통 등 소모품
- 버섯, 관상산림식물류 재배 및 대추나무 비가림시설 외 목적의 비닐하우스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 산림버섯류 생산기반 조성

- 산림버섯 생산시설 : 산림버섯 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등
- 톱밥배지 생산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 ○ 산림버섯 자목

- 표고버섯, 꽃송이버섯, 복령버섯 자목 등

#### ○ 기타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숲아베기, 전지전정 등
- 관수·관정시설, 대추 비가림시설
- 생산장비 : 굴삭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수확기, 밤 수확망 등 기타 생산장비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 지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준수

-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차량제외)
- 친환경 방제장비 :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로몬 등 시설비
- 냉해예방 시설 :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작업로 시설 :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밤, 대추, 뽕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 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 가능

○ 고로쇠 등 수액 생산기반조성

- 세척기, 호스(주선, 지선에 한함), 집수통 등 안전한 수액채취를 위한 시설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토양개량제 : (석회질비료) 소석회, 석회고토, 부산석회 / (규산질비료) 규산질 / (목재제품) 목탄, 목초액

\*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토양개량효과' 표시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유기질 비료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나.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 사업내용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의 작업종

○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난 등의 재배를 위한 시설

○ 기타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산림버섯(송이 외)·산약초·산채 등 단기임산물·산과일(산머루 등)·오갈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등

※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작업로 시설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품목 중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보수)에 따름

※ 백두대간보호지역 보호 목적의 사업으로 모노레일은 지원 제외

## 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사업내용 : 신선하고 위생적인 임산물 생산 및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가격안정

도모를 위한 저장·건조시설 지원

○ 임산물 가공시설

- 사업내용 : 임산물 전처리(세척·살균·예냉)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

○ 임산물 운반장비

- 사업내용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반 장비·기자재(지게차,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지원. 차량 제외)
- 공모사업자 및 '20년 이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공동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 \* 공모사업자가 운반장비만 신청 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 '20년 이전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 지원받은 저장·건조·가공시설의 규모 및 운반장비와의 연계활용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 \* 지게차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3톤 미만으로 하되, 공모 및 공동사업 구성원중 대형면허 소지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 및 운반장비의 경우 임산물의 계절성 등을 감안하여 농산물 등 기타 상품에 사용할 수 있음

## 라.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목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개발비를 필수 포함한 포장지제작비 지원

- \* 백두대간의 통일된 디자인이 요구되므로 디자인 개발 시 산림청과 협의 필수
- \* 백두대간과 관련이 없는 디자인개발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제외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적용. 총사업비는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3천만 원 이상 지원 시 사업계획서에 소득창출 효과 분석을 첨부하여야 함

- \* 3천만 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

○ 등기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부기등기 또는 가등기 이행 후 자금 지급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함

- 해당 지자체(시장·군수)는 최종 자금을 집행하기 전까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공동사업자) : ①자치규약 운영 ②연 1회 이상 마을회의 개최
  - (공모사업자) : ①분기별 1회(건) 이상 백두대간 보호활동 실시 ②지자체에 활동실적 보고(서식 2), ③산림청 또는 지자체의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요청 시 소득관련 자료 제출
  - (지자체) : ①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체결 현황 및 공모사업자 보호활동 실적을 산림청에 제출(사업실적 보고 시, 서식 3) ② 공모사업자 보호활동 이행여부 지도·점검
- ※ 공모사업자가 보호활동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 실적을 모두 이행할 때까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지원 제외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본원칙
  - 개인사업(1가구 사업을 의미)일 경우 7.5백만 원 이하로 지원
  - 공동사업(공모사업 외)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당 5백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 원 이하로 지원
  -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서류 제시 시 단가 조정가능(농협 등 구매 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 공모사업일 경우 100백만원 이상 300백만원 이하로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b>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개인, 공동)</b>		
산림버섯 생산시설	- 산림버섯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표고 목·꽃송이버섯 자목·복령버섯 자목 구입비 포함),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등 지원)	- 재배하우스 시설: m <sup>2</sup> 당 55,000원 기준(총사업비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 철골온실: 설계내역 기준 - 기계·장비: 구입가격 기준
	- 톱밥배지 생산시설: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종균배양시설: 설계내역 기준 - 톱밥배지시설: 설계내역 기준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li> <li>*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li> </ul>	
표고버섯 자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지에서 1,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li> <li>* 표고자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당 금액 : 5,000원 (W 12cm × L 120cm)</li> <li>*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li> <li>- 면적당 분수 : 1,000본/330㎡</li> <li>*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 확인</li> <li>*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20-58호)에서 표고원목 실거래가의 평균가격 적용</li> </ul>
꽃송이버섯자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꽃송이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60평) 이상의 꽃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li> <li>* 꽃송이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당 금액: 1,000원 (W 30cm × L 20cm)</li> <li>- 면적당 분수: 36본/㎡ (층적 또는 재배상 기준)</li> <li>- 지원 한도: (개인) 5,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10,000본 이내</li> <li>*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li> </ul>
복령버섯자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복령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li> <li>* 복령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당 금액 : 2,000원 (W 15~20cm × L 30cm)</li> <li>- 면적당 분수 : 577본/330㎡</li> <li>- 지원 한도 : (개인) 3,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8,000본 이내</li> <li>* 공모사업은 복령 자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li> <li>*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li> </ul>
밤나무 노령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숙아베기 등</li> <li>* '밤나무 간벌 및 정지전정 작업 지침' 참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사업비 기준 1,292천원/ha</li> <li>* 숙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li> </ul>
방제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li> <li>* 차량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li> <li>*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 등, 성페르몬 등 방제장비 시설</li> <li>*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li> <li>* '친환경 밤 생산 지원사업 실행요령' 참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li> </ul>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p>생산장비 * 차량은 지원대상 아님</p>	<p>-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삭기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농업용 굴삭기(자체중량 1톤 미만)에 한하며, 단기소득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동력운반차 중 승용형과 4륜구동 오토바이는 단기 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10ha 이상인 자에 한함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중요재산 부기등기) - 굴착기는 기계장비 운영일지(또는 장비 자체 내 기록장치를 통한 기록)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후 관리기간(구매일로부터 7년간) 동안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처분 금지 설정(부기) &lt; 부기 등록 내용 &gt; * 국고보조금 지급된 장비로 사후관리기간 동안 임산물 생산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 해당 기계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대여업'에 활용 불가</p>	<p>(지원단가)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 재배면적은 신청일 기준 산림소득작물 재배 중인 면적임 *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추가비용 자부담) (지원한도) 굴착기는 규격 제한 없이 지원가능하나 총사업비 기준 지원한도 규격별 차등 지원 (추가비용 자부담) * 규격별 굴착기 지원한도 - 장비중량 3.5톤 미만 : 40백만원/대 - 장비중량 3.5톤 이상 : 60백만원/대</p>
<p>관수·관정시설 (기타 품목)</p>		<p>스프링클러: 6,000천원/0.5ha 점적: 4,500천원/0.5ha 관정(6인치, 일반형) : 9,500천원/공 *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p>
<p>대추 비가림 시설</p>	<p>- 대추 이외 비가림시설이 필요한 임산물(머루 등) 가능</p>	<p>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 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p>
<p>냉해예방시설</p>	<p>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p>	<p>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 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p>
<p>작업로 시설</p>	<p>-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 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p>	<p>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 작업난 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 예) 경사도 10°미만 4백만 원, 10~20° 5백만 원, 20°이상 6백만 원</p>
<p>토양개량제</p>	<p>- 석회질비료: 소석회, 석회고토, 부산석회 - 규산질비료: 규산질 - 목재제품 : 목탄, 목초액 * (목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결과에 따른 품질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 * (목초액) KS인증을 받은 제품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 지역은 제외</p>	<p>기준보조율에 따라 지원 (수실류) - 밤: ha당 총사업비 504천 원 - 밤 이외: ha당 총사업비 756천 원(밤의 1.5배) (관상산림식물류)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p>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㉔부산석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관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잔디) ha당 총사업비 1,150천 원 *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기타 임산물)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적정량																	
유기질비료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단위 : 원/20kg)	-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품목별 적정 시비량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국고</th> <th rowspan="2">지방비</th> </tr> <tr> <th>특등급</th> <th>1등급</th> <th>2등급</th> </tr> </thead> <tbody> <tr> <td>유기질비료</td> <td colspan="3">(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400</td> <td rowspan="2">600</td> </tr> <tr> <td>부숙유기질비료</td> <td>1,400</td> <td>1,200</td> <td>1,000</td> </tr> </tbody> </table>	구분	국고			지방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400			600	부숙유기질비료	1,400	1,200	1,000	
	구분		국고				지방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400			600															
부숙유기질비료	1,400	1,200	1,000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개인, 공동)																			
송이산가꾸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의 작업종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 기준단가 적용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시설:하우스 시설 *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 유리 온실: 800천원/3.3㎡ - 아크릴 시설: 1,000천원/3.3㎡ * 기타 부대시설 추가 시 실단비를 적용 하되, 건적서 2개 이상 기준																	
	- 관수·관정시설 *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재배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관수시설 포함) * 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중모터 2HP 이상기준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사업 참조	* 소모성 자재(상토)는 지원대상 아님																	
보호울타리		- 전기 울타리: 1,700천원/0.5ha - 철조망: 7,400천원/0.5ha - 감시카메라: 조달단가 적용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건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관리사	시설규모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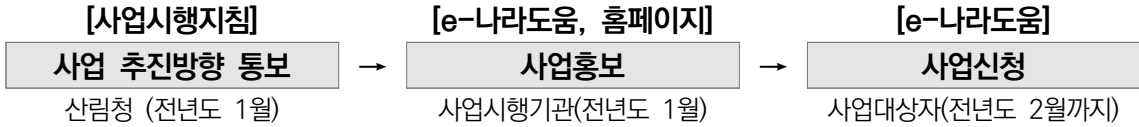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li> <li>*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li> </ul>	
인건비	-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숙아베기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2024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종자·묘목대	- 조경수 묘목 및 자생란, 분재는 수요가 있어 나라장터 또는 물가정보 등에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규격 미만으로 한함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산양삼 종자·종묘는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에 한정하며, 총 사업비 30% 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 종자·종묘 구입 단일사업은 불가
<b>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개인, 공모)</b>		
저장·건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판매장 등</li> <li>- 건축 외: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li> <li>*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의 시설규모(연면적) 총합이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li> <li>- (건축 외)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 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li> <li>* 조달 단가 우선 적용</li> <li>※ 단, 개인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최대 7.5백만원 이내 지원</li> </ul>
가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기, 가공라인 등</li> <li>-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한기, 봉합기, 자동소포장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li> <li>*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 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li> <li>-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li> <li>* 조달 단가 우선 적용</li> <li>※ 단, 개인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최대 7.5백만원 이내 지원</li> </ul>
운반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반장비: 지게차,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지원, 차량제외</li> <li>- 공모사업자, '20년 이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공동사업자에 한하여 지원</li> <li>* 공모사업자가 운반장비만 신청 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li> <li>* 조달 단가 우선 적용</li> <li>※ 단, 개인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최대 7.5백만원 이내 지원</li> </ul>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이전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 지원받은 저장·건조·가공시설의 규모 및 운반장비와의 연계활용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li> <li>* 지게차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3톤 미만으로 하되, 공모 및 공동사업 구성원중 대형면허소지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li> </ul>	
<b>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개인, 공동)</b>		
백두대간 브랜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목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개발비를 포함한 포장지제작비 지원</li> <li>* 백두대간과 관련이 없는 디자인개발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제외</li> </ul>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공모사업 공고 및 선정은 전년도 5월 경 별도 실시

#### 가. 산 립 청

- 사업 전년도 1월 초에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통보

#### 나. 지 자 체

- 도는 통보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시·군의 총괄부서로 통보(1월)
- 시·군의 총괄부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자체 공고문으로 30일 이상 공고
  - 공고문에는 e-나라도움 사용 방법, 시·군의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신청 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및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포함 필요
- 사업포기자 발생 시 대체 사업대상자 수시 신청 및 선정
  -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사업성의 적절성 검토 및 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다. 사업신청자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신청 또는 사업등록
  -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7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1월 말까지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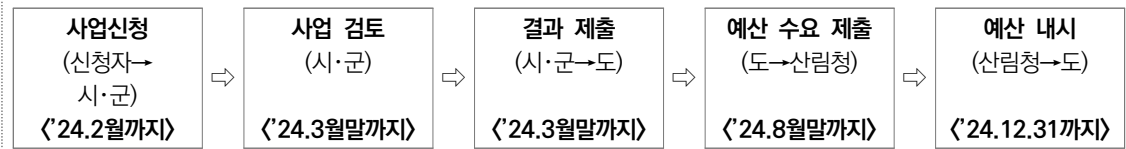
-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 시·군은 e-나라도움에 공고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대상 제외,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포함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 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침'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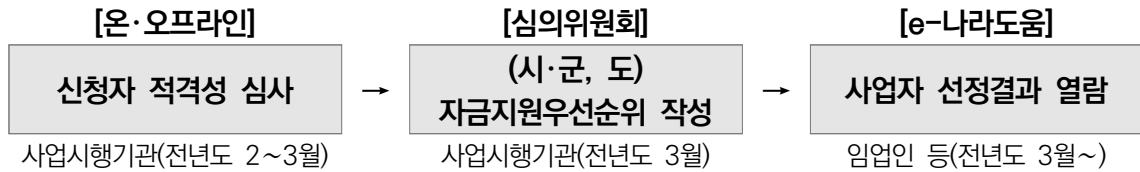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24.2월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에 신청

\* 시·군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2. 사업자 선정



- 시·군은 백두대간 주민지원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 원(국비+지방비)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심의위원회 상정 여부 등 결정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1)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 2)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 4)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관련 공동 또는 공모사업으로 참여자로 1회, 개인사업으로 1회 지원받은 경우 2회 받은 것으로 간주
  - \*\* 동일한 마을공동체가 구성원을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동일 마을공동체가 연속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
- 5)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AgriX, e나라도움)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임산물 주산지 중심으로 수출품 가공 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여 수출 임산물 규격·품질 관리 및 수출경쟁력 강화

## □ 사업내용

- 임산물 수출품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조성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공동 집하·출하 시설, 자동선별장비, 저온저장고 등 가공시설 및 장비 조성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규모 : 총 사업비 20억 1개소 또는 총 사업비 10억 2개소
- '24년 예산 : 2,000백만원(국비 1,000, 지방비 400, 자부담 600)

## □ 사업 신청

- 공모시기 : 매년 4~5월경('25년 추진사업의 경우 '24년 4~5월경 공모)
- 신청방법 : 공모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후 관할 지자체에 신청

## □ 대상자 선정

-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한국임업진흥원에 대상자를 추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사무관 박재신 주무관 이준영	042-481-4086 042-481-4087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소득지원실	실 장 김현근 주 임 김가현	02-6393-2561 02-6393-2565

##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생산자 단체 등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자격별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별표6」을 적용
- 공모신청 제한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를 준용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우
  - 최근 3년 동안 산림소득 공모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사업이 글로벌특화 시설 사업인 경우엔 제한 기간은 최근 2년 동안)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지역 임산물 생산 확대 및 활성화 기여,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등이 적정하고 지자체의 지원 및 유지 관리 계획이 타당할 것
- 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
  -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증빙자료
    - \* 사업(조성) 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가·감점 부여
  - 가점 부여(10점 한도)
    - 임산물 글로벌선도조직(2점), 수출협의회 참여업체(3점)
    - 글로벌 GAP, ISO, Halal 등 국제 공인인증기관 인증(2점)
    - 사전수요조사 시 신청자(2점)
    -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수상업체(3점)
    - K-FOREST FOOD 브랜드 지정업체(3점)

- 기존 선정사업자 지역(기초단체) 외 신규 지역(3점)
- 기존 선정 품목(감, 밤, 대추, 표고, 도라지, 산양삼) 외 신규 품목(1점)
- 감점 부여(15점 한도)
  - 농식품 수출 공정거래위반 제재(10점)
  - 수출농산물안전성 위반 제재(15점)

### 3. 지원대상

- 공모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2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로서, 관세통계 품목분류표(HSK)상의 산림청 소관 임산물
- 지원내용 : 수출품 생산시설 및 설비 구축(급속예냉설비, 자동선별장비 등)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부지는 반드시 신청법인 명의의 소유 토지
  - 사업비 중 부지 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실시설계 및 감리비, 토목 공사비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건설부문 요율을 참고하여 이내로 반영
  - 기본조사설계는 사업신청 전 자부담으로 추진(실시설계만 사업비 반영)
  -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 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의 사업은 가능
- 선별·포장·가공 시설 및 장비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반영. 단, 선별·가공·포장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조경수·분재 품목은 적용 제외
- 생산 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사업대상지는 유통·가공시설임을 감안하여 공장용지, 오폐수처리 및 산지전용 등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 사업부지가 미확보되거나 시설대상 토지에 담보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 추진시 준수사항
  - 지자체에서는 사업공모 신청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타부처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공모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이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예산심의 확정 이후 해당 시·군·구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 제한
    - \*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준용
  - 사업계획, 법인현황, 부지 확보 등 관련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등), 농업인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는 시·군·구 또는 시·도에 비치
  -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따름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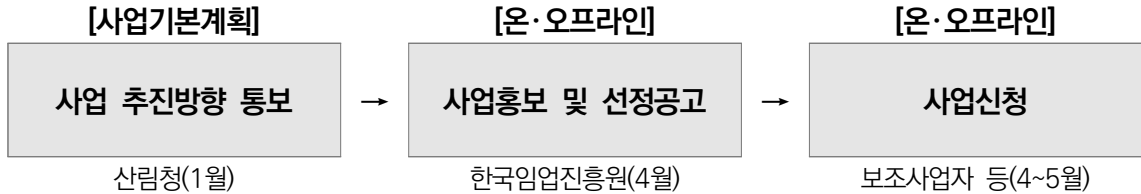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사업비 20억 1개소 또는 총사업비 10억 2개소

###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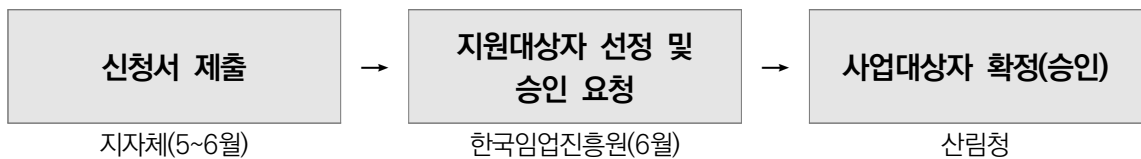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신청



- 산림청은 1월 중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시달한다.
- 한국임업진흥원은 사업기본계획에 의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에 보고하고, 계획에 따라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한국임업진흥원은 공고 실시 전, 사업설명회 등 사전홍보 및 사업 수요조사 실시
    - \* 지자체·수출협업체 등 관련기관 공문 발송 및 SNS를 통한 홍보 실시
  - 한국임업진흥원은 4월 중 공모기간을 정하여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자세한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신청자는 공모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사업신청서 및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 \* 사업(조성) 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2. 사업자 선정



- 해당 지자체는 자격요건, 산지전용 등 인허가 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검토하여 사업 공모 검토서와 함께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한다.
  - 지자체 확인사항
    - 시설대상 토지에 근저당 설정 여부 및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인지 확인

- 지원 대상 제외 여부 확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업체는 제외
  - 시설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가능 여부
- 한국임업진흥원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심사와 공개 발표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 평가위원회 구성 : 전문가 5인 내외(외부위원 50%이상 포함)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상자 적정성, 기대효과 등
  - 현장평가 : 평가위원이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현장을 방문 평가
  - 공개 발표 평가 : 현장 평가결과 득점이 60점 이상 업체만 발표기회 부여
-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는 필요시 서면평가 및 영상 발표평가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가능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임산물표준규격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지원

## □ 사업내용

-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 등 상품화 및 임산물표준규격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 디자인 개선사업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생산자(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내외부 포장재 지원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 건당 국비 10백만원 이내(총사업비 50백만원)
  - \* 상품화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연도의 다음연도는 지원 불가능(격년 지원 원칙 단, 수요부족 등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속지원 가능)
  -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의 50%이하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사용 가능
- '24년 예산 : 10,325백만원(국비2,065, 지방비3,097, 용자3,097, 자부담2,065)

## □ 사업 신청

- 장 소 : 신청서를 사업대상지 시군구 산림부서에 신청
- 신청기간 : 신청시기 : 전년도 1월~2월 중



## □ 대상자 선정

- 시군구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 심의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 김판중 주무관 오성완	042-481-4206 042-481-4207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산림부서	담당자	

산림

산

림

###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임산물 표준규격’ 산림청 고시 제2022-101호(2022.11.14.)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 50%이내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 가능

###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자체 자본보조(국비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사업비 50백만원/건(국비 10백만원/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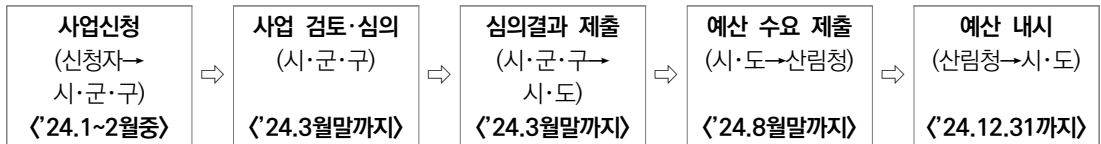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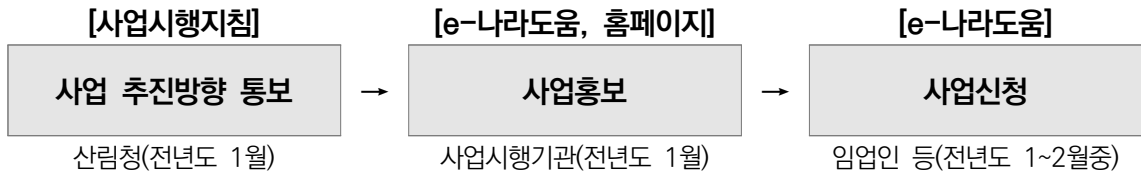
### □ '25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선정 절차

※ '24. 1~2월중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은 사업 전년도 1월초에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산림소득사업을 홍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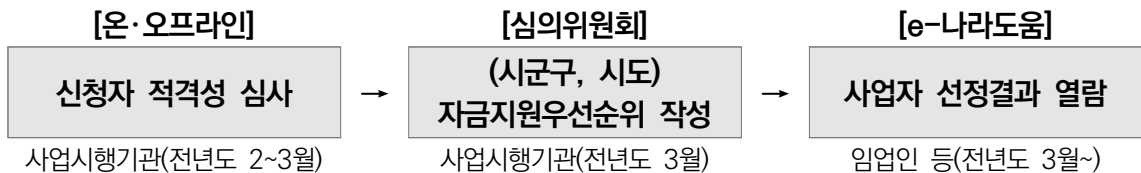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산림소득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증빙자료(견적서 등)를 제출 해야 함

####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의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국비+지방비) 이상인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확인해야 함

\* e나라도움을 통한 자격검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e나라도움을 통한 수혜이력,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산림소득분야사업의 이력을 확인하여 중복·편중 지원 방지

○ 유사자금\* 지원제한(「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

\*\* 「기본규정」 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서 검토 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1)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2)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4) 기타 사업시행지침에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 경우

○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기본규정」 별표 6)에 적합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 사업장(산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I 사업 개요

## □ 목 적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지원으로 임가의 산림소득 증대

## □ 사업내용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및 유통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생산자(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임산물 화물차량, 유통장비 및 기자재, 저장·건조시설, 가공·선별·포장 장비 등
- 지원 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구 분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화물차량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냉동·장탑차	국비 5백만원/건(총사업비 25백만원) 이내
유통 장비(지게차)	국비 6백만원/건(총사업비 30백만원) 이내
유통 기자재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저장·건조시설	국비 20백만원/건(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 * 저장·건조시설은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가공·선별·포장 장비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 탈삼제 : 국비 4백만원/kℓ 이내

- '24년 예산 : 22,800백만원(국비4,560, 지방비6,840, 용자6,840, 자부담4,560)

## □ 사업 신청

- 장 소 : 신청서를 사업대상지 시군구 산림부서에 신청
- 신청기간 : 신청시기 : 전년도 1월~2월 중

## □ 대상자 선정

- 시군구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 심의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 김판중 주무관 오성완	042-481-4206 042-481-4207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산림부서	담당자	

##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구 분	세 부 내 용
임산물 유통차량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 화물적재량 1톤 이상 / 냉동탑차 중복지원 불가 (냉동탑차) 신선도 유지 필요 임산물(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게차(2톤이하), 팔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지게차 지원은 저장시설(100㎡이상) 보유 임가 대상
저장·건조시설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가공·선별·포장 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선별기, 소포장기 등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삼제 등 * 임산물의 2차 가공을 통해 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장비의 지원인 경우, 가공식품의 원료 중 임산물이 50%이상 함유되어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자체 자본보조(국비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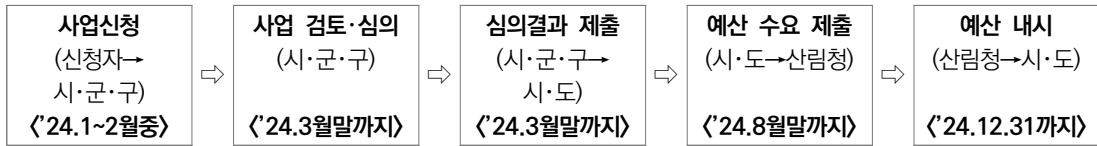
구 분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화물차량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냉동·장탑차	국비 5백만원/건(총사업비 25백만원) 이내
유통 장비(지게차)	국비 6백만원/건(총사업비 30백만원) 이내
유통 기자재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저장·건조시설	국비 20백만원/건(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 * 저장·건조시설은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가공·선별·포장 장비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 탈삼제 : 국비 4백만원/kℓ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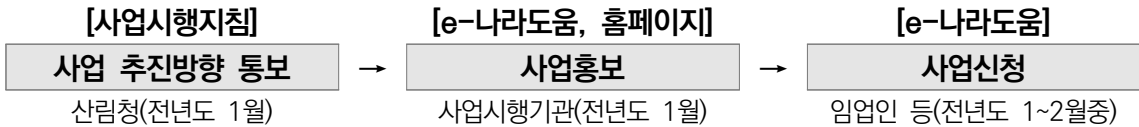
□ '25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선정 절차

※ '24. 1~2월중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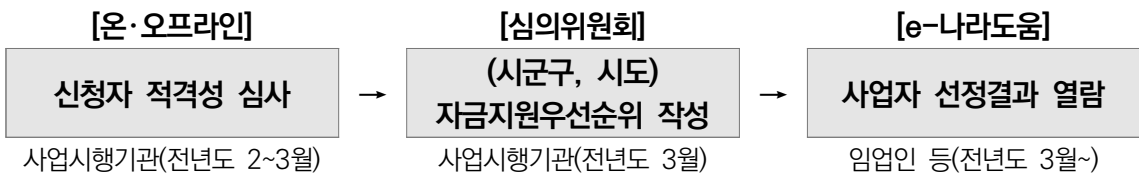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은 사업 전년도 1월초에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산림소득사업을 홍보한다.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산림소득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증빙자료(견적서 등)를 제출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의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국비+지방비) 이상인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확인해야 함

\* e나라도움을 통한 자격검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e나라도움을 통한 수혜이력,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산림소득분야사업의 이력을 확인하여 중복·편중 지원 방지

○ 유사자금\* 지원제한(「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

\*\* 「기본규정」 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서 검토 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1)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2)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4) 기타 사업시행지침에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 경우

○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기본규정」 별표 6)에 적합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 사업장(산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집, 저장, 가공 등 유통체계 구축 지원으로 유통효율성 제고

## □ 사업내용

- 임산물 유통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산림조합)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건축, 저장시설, 가공장비, 선별포장, 유통장비 등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20%, 용자 -, 자부담 30%
  - (일반) 물류/단순가공 : 국비(1~5억원)
  - (거점) 거점/복합가공 : 국비(5~10억원)
  - (복합거점) 대단위 소비지('시' 지역의 '동') 판매기능 추가 : 국비(20억원)
- '24년 예산 : 4,000백만원(국비2,000, 지방비800, 용자-, 자부담1,200)

## □ 사업 신청

- 장 소 : 신청서를 사업대상지 시군구 산림부서에 신청
- 신청기간 : 전년도 4월~6월 중

## □ 대상자 선정

- 공모사업 선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 김판중	042-481-4206
		주무관 오성완	042-481-4207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소득지원실	선 임 성미진	02-6393-2564

##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선별·가공·유통·상품화 하려는 생산자단체

## 2. 지원자격 및 요건

구분	지원자격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
- (일반)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1/10 이상 등
- (거점)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 계산하여 연간 200일 이상 가동, 총 출자금 3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 30명 이상인 법인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사업(공모)

구분	세부내용
건축(필수)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사무실·회의실, 부속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여과시설 등 1차 단순 가공 장비, 세척기, 가공라인 등

구분	세 부 내 용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합기, 자동소포장기, 컨베이어 등
유통장비	운반차량, 냉동탑차, 지게차, 파렛트, 기타자재
위생·판매시설	오페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ICT융복합 SW	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

####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방자치단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20%, 용자 0%, 자부담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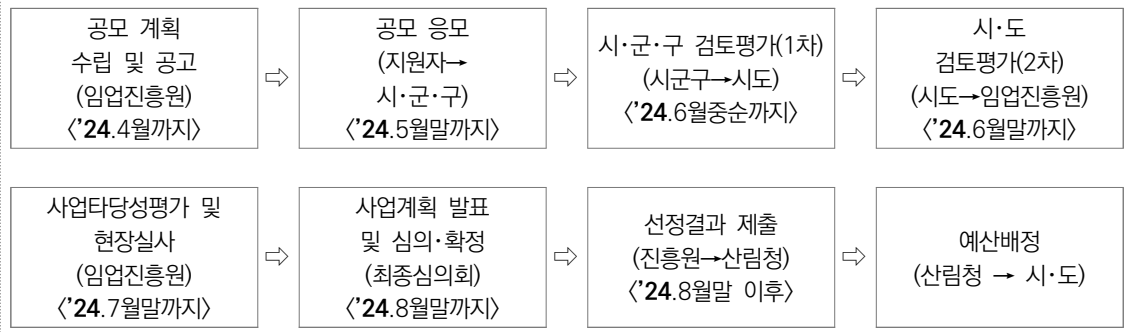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총사업비 기준)

- (일반) 유통센터(물류/단순가공) : 국비 1~5억원(총사업비 2~10억원)
- (거점) 유통센터(거점/복합가공) : 국비 5~10억원(총사업비 10~20억원)
  - \* 대단위 소비자(‘시’지역의 ‘동’)에 판매기능 등을 추가한 복합거점센터는 **총사업비 40억원까지 지원 가능**(국비 20억원)
- (보완) 기 지원받은 임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현대화·규모화 지원
  - \* 기 지원 건축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4'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준수

□ '25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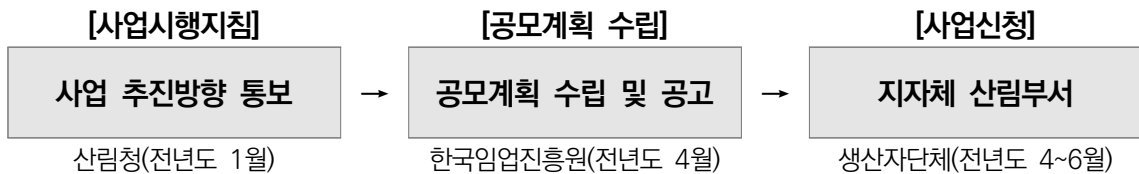
※ 공모사업 :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한국임업진흥원 공모계획 참고하여 일정 파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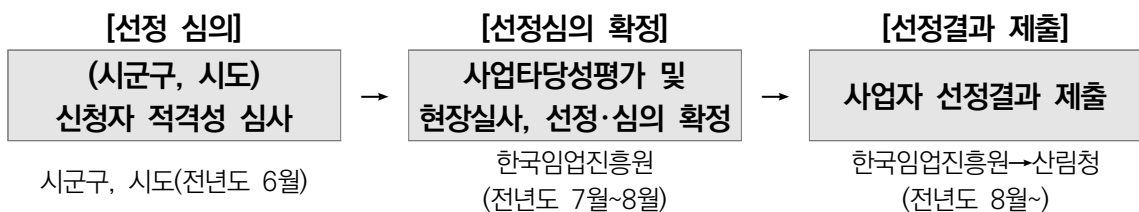
산림  
산  
림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은 전년도 1월 초에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은 사업 전년도 4월 말까지 공모 계획 수립 및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국비+지방비) 이상인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확인해야 함

\* e나라도움을 통한 자격검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e나라도움을 통한 수혜이력,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산림소득분야사업의 이력을 확인하여 중복·편중 지원 방지

○ 유사자금\* 지원제한(「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

\*\* 「기본규정」 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서 검토 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1)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2)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4) 기타 사업시행지침에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 경우

○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기본규정」 별표 6)에 적합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공모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확정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결과를 산림청 및 해당시도에 제출

○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 사업장(농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2차 가공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 □ 사업내용

- 임산물 2차 가공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산림조합)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건축, 가공장비, 선별포장, 위생, 판매시설 등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20%, 용자 - 자부담 30%
  - 개소당 국비 1,000백만원 이내(총사업비 2,000백만원)
- '24년 예산 : 2,000백만원(국비1,000, 지방비400, 용자 - 자부담600)

## □ 사업 신청

- 장 소 : 신청서를 사업대상지 시군구 산림부서에 신청
- 신청기간 : 신청시기 : 전년도 4월~6월 중

## □ 대상자 선정

- 공모사업 선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 김판중	042-481-4206
		주무관 오성완	042-481-4207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소득지원실	선 임 성미진	02-6393-2564

##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선별·가공·유통·상품화 하려는 생산자단체

## 2. 지원자격 및 요건

구분	지원자격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
- 법인운영 실적 2년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주주) 5인 이상인 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1/10 이상인 법인, 최근년도 임산물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가공산업활성화(공모)

구분	세부내용
건축	생산·가공시설,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부속시설 등
가공장비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기,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합기, 자동소포장기 등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방자치단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20%, 용자 0%, 자부담 30%)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총사업비 기준)

- 국비 개소당 10억원 이내(총사업비 2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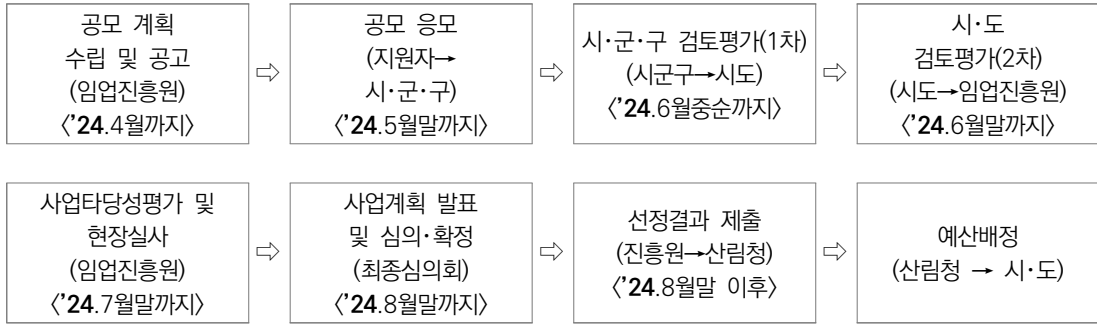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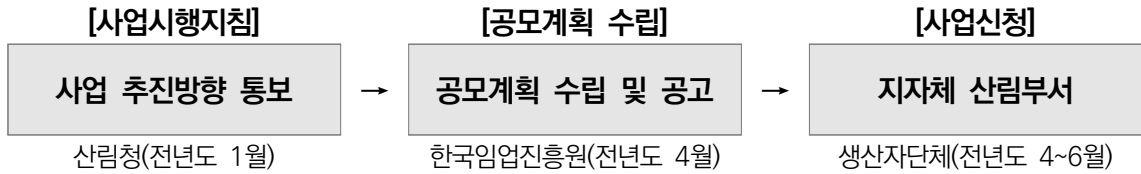
### □ '25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선정 절차

※ 공모사업 :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한국임업진흥원 공모계획을 참고하여 일정 파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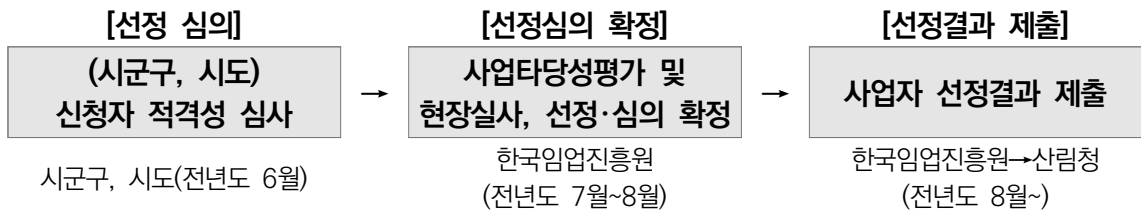


####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은 전년도 1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은 사업 전년도 4월 말까지 공모 계획 수립 및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확인해야 함

\* e나라도움을 통한 자격검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e나라도움을 통한 수혜이력,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산림소득분야사업의 이력을 확인하여 중복·편중 지원 방지

○ 유사자금\* 지원제한(「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

\*\* 「기본규정」 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서 검토 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1)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2)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4) 기타 사업시행지침에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 경우

○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기본규정」 별표 6)에 적합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공모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확정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결과를 산림청 및 해당시도에 제출

○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 사업장(농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 참여·추진

## □ 사업내용

- 임산물의 소비심리위축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임산물 직거래장터, 우수임산물 전시회, 홍보사업 등 소비활성화사업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단체, 협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임산물 직거래장터, 우수임산물 전시회, 임산물 홍보 등
- 지원 기준 : 국고 100%
  -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
- '24년 예산 : 265백만원(국비265, 지방비-, 용자-, 자부담-)

## □ 사업 신청

- 장 소 : 사업계획서를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 제출
- 신청기간 : 신청시기 : 당해연도 1~2월 중

## □ 대상자 선정

- 소비촉진 공모사업 선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 최홍주 주무관 양유진	042-481-1206 042-481-1848

산림

산

림

### 1. 사업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직거래장터, 우수임산물 전시회 개최
- 소비자 맞춤형 생산·직거래 등 유통과 홍보 방법 등에 대한 교육
- 단기소득임산물 소비촉진 기획홍보물 제작 지원

###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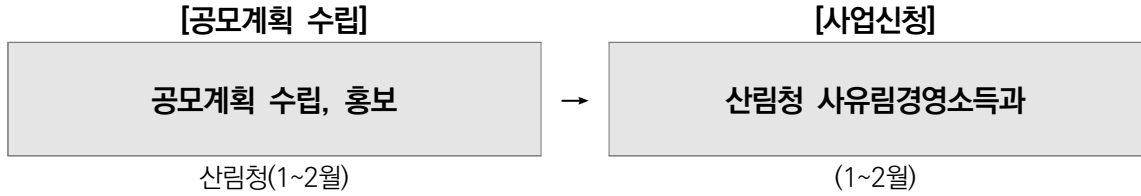
- 민간경상보조 보조(국비 100%)

###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국비 기준)

세부사업명	'24 예산 규모 (백만원)	비고
계	265	
임산물 소비촉진사업	265	○ 소규모로 운영하던 직거래장터를 규모있게 운영하여 효율성 제고 ○ 협회·단체 당 최대 2개 사업 신청 (동일한 세부사업 항목 내 중복지원 불가)
① 임산물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② 우수임산물 소비활성화		
③ 소비촉진 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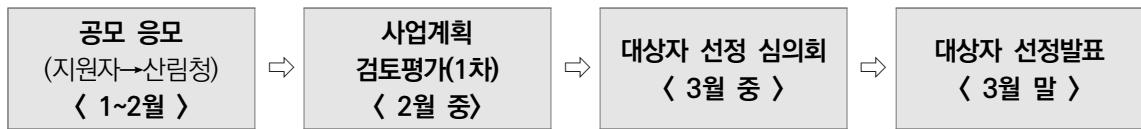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은 2월에 임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사업 공모계획을 사업대상자에게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실시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 추진 절차



- 선정 방법
  - 선정심의회 구성 : 7명 이내(외부전부가 50% 이상 포함)
  - 신청 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평가
  -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비촉진 기여 가능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 심의위원회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산림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 □ 사업내용

- 경제림조성,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산불피해지복구조림, 내화수림대조성 등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조성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산림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등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조림사업 대행
- 지원 기준 : 국고 50~60%
- '24년 예산 : 142,346백만원(국비 77,594, 지방비 58,331, 자부담 6,421)

## □ 사업 신청

- 임야가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시·군·구)에 조림사업신청
- 신청시기·방법 : 전년도 2월말, 방문신청

## □ 대상자 선정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을 한 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이용구 주무관 유기원	042-481-4185 042-481-4183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

산

림

### 1. 사업대상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산림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림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 산림경영계획상 조림사업 계획이 반영된 산림
  -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 임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이 반영된 산림
  - 대리경영, 협업경영이 설정된 산림
  - 산불피해지, 벌채지 등 조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기타 조림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3.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대상 세부 사업
조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림조성(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 특용자원조림, 유희토지조림)</li> <li>○ 큰나무조림(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li> <li>○ 지역특화조림(섬지역 산림가꾸기, 지역특화림 조성)</li> <li>○ 산불피해지복구조림</li> <li>○ 내화수림대 조성</li> </ul>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림사업 대행
  - 설계·감리비, 조림예정지정리비, 묘목대, 식재인건비, 부대비용 등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경제림조성 : 사업비의 90%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큰나무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특화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산불피해지복구조립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내화수립대 조성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조립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적용

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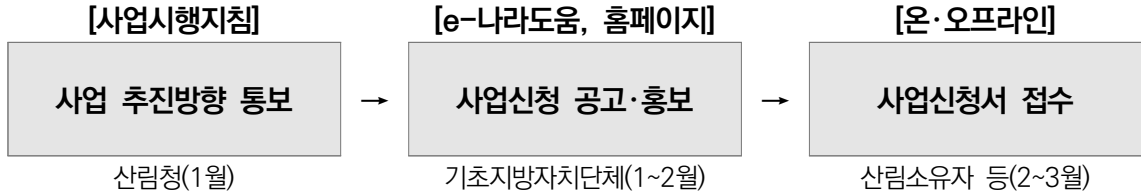
산

림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산림소유자 등 사업대상자로부터 조림사업신청서 접수(전년도 2월말)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조림사업신청서 검토 후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전년도 3월말)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 산림청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전년도 4월말)
- 산림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 요구(전년도 5월말)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국산목재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목재의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산주 소득을 늘려 국고 세입을 증대하고, 목재제품 제조시설 현대화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한-중 FTA 대응

## □ 사업내용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 제재·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교체 또는 보강 및 기존 목재생산업 운영자로서 목재산업시설 신규 설치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로서 해당 제조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자자체에서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여야 함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 지원 기준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지원 기준액 : 개소당 200백만원
- '24년 예산 : 1,200백만원(국비 480, 지방비 240, 자부담 480)

## □ 사업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시·군·구 녹지과 및 산림과로 신청
- 신청시기·방법 : 연중, 방문신청

## □ 대상자 선정

- 산림청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자를 모집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 선정기준에 따라 산림청 주관 지자체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사업수행 역량(15), 제조시설 가동실적 및 효율개선 노력도(25),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효과(25), 원료 및 자금 운영계획(30), 평가자 종합 평가(5)
- ※ 내내역사업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사무관 이성진 주무관 고정호	042-481-4204 042-481-4291



## 1. 사업대상자

-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로 목재산업시설의 현대화를 원하는 업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로서 해당 제조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자자체에서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여야 함

## 3. 지원대상

- 목재생산업으로 등록된 건조, 제재·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제재시설 등 장비 구입, 시설 보강 등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 제재·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교체 또는 보강 및 기존 목재생산업 운영자로서 목재산업시설 신규 설치
  - (제재시설) 락톱 및 원형톱, 자동제재기, 집진설비, 대차 등
  - (건조시설) 저온·중온·고온 건조기, 고온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
  - (가공시설) 스피들레스, 원주가공기, 프리컷 자동설비, 집성재설비, 칩제조시설, 톱밥제조시설 등
  - (목탄제조) 숯가마 생산시설, 원목절단기계, 숯 파쇄기, 컨베이어벨트, 집진기 등
  - (방부시설) 주약관, 저장탱크, 계량탱크, 진공펌프, 가압펌프 등
  - (기타) 원목 집재를 위한 기계장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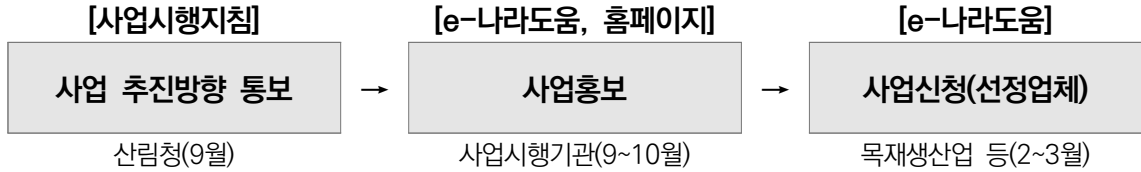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2억원(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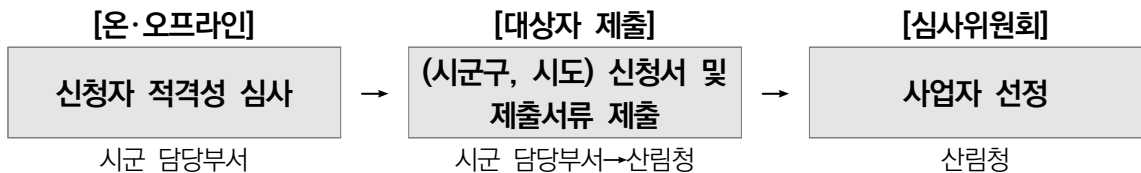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산림청)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 시달('23. 9.)
- (지자체) 시·군·구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공고문에 온라인 사용방법을 안내
  -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 (신청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별지 1호서식)
  - (제출서류)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최근 3년간 국산원목 매입실적 증명서,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수출 증명서류

### 2. 사업자 선정



- 시·도에서 산림청으로 제출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단, 사업규모에 미달될 경우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집행 지침”에 따름
  - \* 중복지원 받은 업체는 지원이 불가하나 국산 목재를 취급하는 업체에 한하여 중복 지원 가능(단, 지원받은 연도 기준 5년 경과한 경우)
- 산림청에서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시·도에 통지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 I 사업 개요

## □ 목 적

- 숲가꾸기사업에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 □ 사업내용

- (숲가꾸기패트roller) 주택 피해목 제거 등 국민생활 산림 민원 해결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산림사업 DB 구축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제한) 산림 기계 장비 및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또는 고교·대학 재학생
- (반복참여 제한) 숲가꾸기자원조사단에 한해 직접일자리 사업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 만 65세 이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반복참여 예외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참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안전장구류 구입 등 지원
- 지원 기준 : 사업 참여자 인건비(국고 50%, 지방비 50%)
  - 1일 임금 : 숲가꾸기패트roller 86,880원, 자원조사단 및 수집단 78,880원
- '24년 예산 : 21,832백만원(국비 10,916, 지방비 10,546)

## □ 사업 신청

- 신청 접수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산림부서에 신청
- 신청기간 : 각 사업시행 기관의 별도 공고에 따라 설정(매년 1~2월)
  - ※ 중도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추가 수시 모집 공고

## □ 대상자 선정

○ 산림청의 “재정지원일자리 종합 지침”에 따른 취약계층 우선선발

※ 내내역사업 : 숲가꾸기패트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이장춘 주무관 최승호	042-481-4218 042-481-4157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산림부서		

### 1. 사업대상자

- 농·산촌지역의 청·장년층 실업자로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제한) 산림 기계 장비 및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또는 고교·대학 재학생
- (반복참여 제한) 숲가꾸기자원조사단에 한해 직접일자리 사업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 만 65세 이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반복참여 예외

### 3. 지원대상

구분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숲가꾸기패트를
고용규모	200명	540명
고용대상	농·산촌 지역 취약계층 청·장년 실업자 우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보유자 우대 농·산촌 지역 취약계층
사업내용	산림자원조사 산림사업 DB 구축	생활권 덩굴제거 주택 피해목 제거
1일 임금	78,880원/8시간	86,880/8시간
고용기간	11개월	10개월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인건비, 보험료, 안전장구 구입비, 교육비 및 여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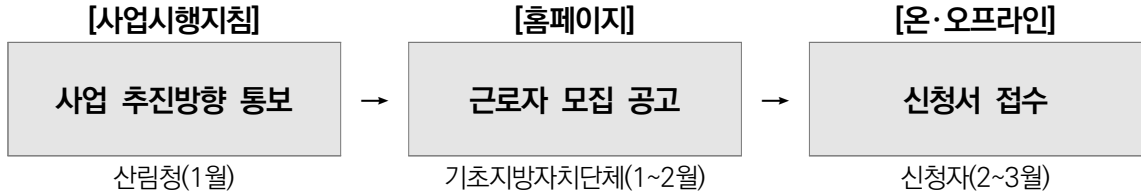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비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적용

## 1. 사업신청단계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모집공고 후 근로자 선발 (매년 초 또는 수시)

## I

## 사업 개요

## □ 목 적

-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 유도

## □ 사업내용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숲의 생육 단계별 적정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산림을 가치 있는 경제자원으로 육성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산림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숲가꾸기 사업비
- 지원 기준 : 사업비 100%(국고 50%, 지방비 50%)
- '24년 예산 : 324,006백만원(국비 162,003, 지방비 162,003)

## □ 사업 신청

- 장소 : 산림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시·군·구)
- 기간 : 전년도 2월 말(수시 신청 가능)

## □ 대상자 선정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에서 정하는 숲가꾸기 사업 대상 중 예산범위 내 지원대상자 선정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이장춘 주무관 오태봉	042-481-4218 042-481-4105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산림부서		



## 1. 사업대상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산림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및 지방자치단체 등
  - 산림경영계획상 숲가꾸기 사업 계획이 반영된 산림
  -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 임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이 반영된 산림
  - 대리경영, 협업경영이 설정된 산림
  - 인공조림지 및 경제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천연림 보육 대상지
  - 산불취약지역 등 산림재해 발생 위험지역이 높은 산림
  - 기타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3. 지원대상

- 조림지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숙아베기, 천연림 보육, 천연림개량, 공익림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산물수집 등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감리비, 숲가꾸기 사업 및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비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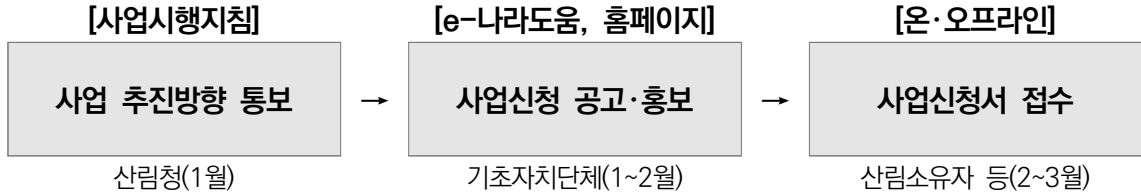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적용

###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신청단계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산림소유자 등 사업대상자로부터 숲가꾸기 사업 신청서 접수(전년도 2월말)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숲가꾸기 사업신청서 검토 후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전년도 3월말)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 산림청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전년도 4월말)
- 산림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 요구(전년도 5월말)